

연안관리 제도개선 연구

- 최종 보고서 -

2007. 2

연구기관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수산부
MINISTRY OF MARITIME AFFAIRS & FISHERIES

제 출 문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연안관리 제도개선 연구」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07년 2월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

이 정 환

연 구 진

연구 책임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김종덕 부연구위원

참여 연구진

윤진숙 부연구위원

남정호 부연구위원

이원갑 연구 위원

윤성순 책임연구원

장원근 책임연구원

신철오 책임연구원

박수진 책임연구원

최지연 책임연구원

정명국 연 구 원

최희정 연 구 원

김복희 행 정 원

홍수진 행 정 원

지문위원

명지대학교 이창희 교수

부경대학교 강대석 교수

국토연구원 김선희 박사

국토연구원 채미옥 박사

국토연구원 이원섭 박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노백호 박사

한국해양연구원 박성욱 박사

대통령직속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박창석 박사

국립수산과학원 박종화 박사

국립수산과학원 장대수 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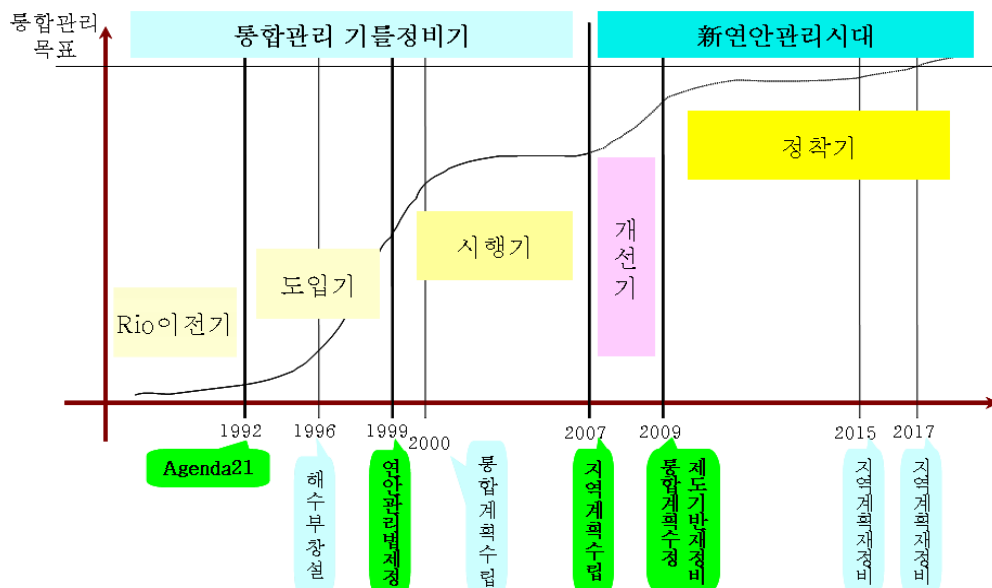
국립수산과학원 최광호 박사

요약문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우리나라는 1996년 해양수산부의 창설을 통하여 행정적인 연안통합관리기반을 구축되었고, 1999년의 연안관리법 제정과 2000년의 연안통합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본격적인 국가차원의 통합적 연안관리체계를 구축하였음. 그 후 연안관리지역계획의 수립과정을 통하여 연안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연안관리계 또는 담당자를 두어 연안관리를 위한 지역역량을 강화하고 있음.
- 본 연구는 우리나라 연안관리제도의 전반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실효적인 연안관리를 위한 수단으로서 연안용도구역제도와 자연해안 및 서식지순손실방지제도의 도입에 앞서 그 원리와 개념을 정립하여 우리나라에서의 적용 가능한 관리모델을 개발함으로써 보다 예측가능하고 효과적인 연안통합관리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新연안관리시대로의 진입을 위한 제도적인 정비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함.



[요약 그림-1] 연안관리의 시대적 변천과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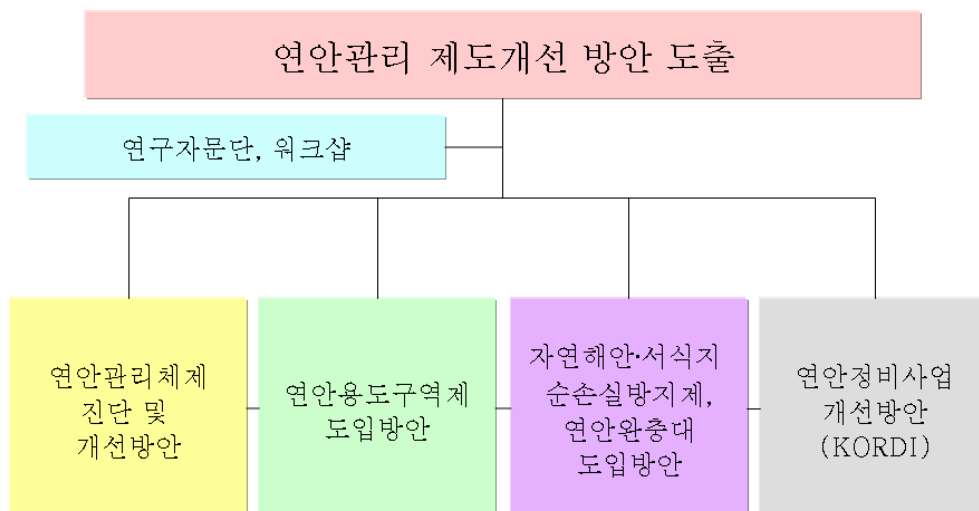
2. 연구내용

- 연안관리제도개선 방안
- 연안용도구역제도 검토 및 적용방안
- 자연해안 및 서식지순손실방지제도의 검토 및 적용방안
- 향후 연안관리제도개선 추진계획

3. 연구방법

- 기존 문헌 및 연구논문 조사
- 주요 관계자에 대한 설문 및 인터뷰조사
- 자문회의 및 워크샵 개최
- 해외 주요사례 문헌자료 및 현지조사
- 관련 국제기구의 가이드라인 등 분석

4. 연구 추진체계



제2장 연안관리제도의 성과와 한계

제1절 우리나라 연안의 모습

- 연안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연안의 범위는 영해와 육역의 일부지역(지적공부선의 해양 쪽 경계로부터 500m, 특정지역 1,000m)을 포함하여 약 74,220km²으로 추산되며, 관할해역의 면적은 약 447,000km²로 전 국토면적의 4.5배에 달하는 범위를 가짐.

<요약 표-1> 우리나라의 연안현황

구분	현황	비고
영해면적	71,000 km ²	국토면적대비 71%
대륙붕면적	345,000 km ²	국토면적대비 3배
관할해역(EEZ, 영해 등)면적	447,000 km ²	국토면적대비 4.5배
연안육역(500m기준)면적	3,220 km ²	국토의 3.2%
갯벌면적	2,550 km ²	국토면적대비 2.5%
도서의 수	3,167개	무인도서 2,675개
해안선 길이	11,914 km	
해양직접 유입 하천의 수	3,962개	국가13, 지방201, 소하천 3,748
연안해양보호구역현황	425개소 10,667.9 km ²	2006년말
연안시군구 인구수	13,058천명	전체인구의 27%
임해산업단지	68개 456,651천m ²	2005년
국가항만 현황	51개항	안벽 108 km
국가어항 현황	105개항	면적 56km ²
공유수면매립현황	689건 1,748 km ²	1985-2006기간 중
연안입지발전소	42개소(화력 36, 원자력 6)	2005년
광업권현황	1,167건 2,181 km ²	2005년
방조제(하구둑 포함)현황	1,601개소 1,193 km	2006년
해수욕장 이용객수	346개소 106,529천명	2006년
천해양식어업권현황	9,190건 1,247 km ²	2005년
어선수	91,608척	2005년

- 연안의 매립은 토지조성이라는 국가적인 의지에 따라 지난 40년간 급속히 이루어져 왔으며 이로 인하여 1985년 이후로만 1,748km²의 해수면이 상실되었으며 이는 영해면적의 2.5%에 이르고 매립이 용이한 수심 20m 이하 해수면의 약 13%에 이르고 있음.
- 낮은 수심과 갯벌이 분포하여 매립이 왕성하게 이루어져 왔던 서해연안의 경우 자연해안선은 겨우 34%정도만 남아 있는 실정임.
- 연안관리의 중요한 축의 하나인 하구역의 관리여건을 살펴보면 지방2급 이상의 하천 214개소 중에서 하구둑이 설치되어 있는 하천이 95개소로서 약 44%에 이르고 있음.
- 육상에서의 골재공급이 부족해진 1990년대 초반이후 연안지역은 골재공급원으로서 기능을 하게 되었으며, 1995년부터 2005년까지 채취된 바다골재의 양은 304,946천m³로서 연간 전체 공급량의 20% 이상을 점하고 있음.
- 연안의 관리는 1999년 제정된 연안관리법을 중심으로 공유수면관리법 및 공유수면매립법, 해양오염방지법, 습지보전법 등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져 왔으나 최근 이들 관련법의 개정 및 새로운 제도의 제정 등 해양환경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법률 정비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실정임.

제2절 연안관리의 성과

- 「연안관리법」의 가장 큰 성과는 육지에 인접한 해양자원 및 해양환경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연안육역과 연안해역을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연안통합관리(Integrated Coastal management: ICM)’개념을 법제화 하였다는데 있음.
- 또한 연안통합관리계획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 연안관리지역계획을 수립·고시하기 시작하면서 연안관리의 제도적 기반의 확대와 더불어 본격적으로 연안통합관리를 시행하는 단계로 접어들었음.
- 「연안관리법」 제13조에 따라 법정계획인 10년 단위의 연안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함으로써, 연안침식, 해일, 홍수범람 등 연안의 구조적 취약성을 보완하고, 연안개발의 다양화·복합화에 따른 연안훼손 및 해양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정비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음.
- 공유수면 매립 제2차 기본계획에서는 제1차 계획과는 달리 환경 분야의 검토를 강화하여 매립계획에 반영여부를 결정하였고, 농경지 확보를 위한 간척사업이나 도시용지 확보를

위한 대규모 매립을 가급적 제한하였으며, 또한 계획에 반영된 지역에 대해서도 면적을 최소화하거나 환경친화적인 매립공법을 적용하도록 조건을 제시하였음.

- 「연안관리법」 제4조(실태에 관한 조사)에 따라 연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연안의 실태에 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도록 명시되어 있음에 따라 이를 통해 연안통합 관리계획을 병행할 수 있도록 롤링플랜(rolling-plan)을 도입함으로써, 연안현황 및 연안 관리 실태가 반영된 실질적인 정책수립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음.
- 실태조사결과 및 연안통합관리에 필요한 현황자료를 관리·활용할 수 있는 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법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연안실태조사의 법제화는 연안실태와 현황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연안관리정보시스템의 구축”형태로 정책화되었음.
- 「연안관리법」의 제정 및 동법에 근거한 관리정책의 추진은 연안국으로서의 선진정책 추진 및 국제적인 동향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PEMSEA 등 해양환경 및 연안관리 국제기구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기반이 되었고, 그 결과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시켰음.

제3절 국내 연안관리제도

- 「연안관리법」은 연안의 통합관리를 위하여 연안해역과, 육지 및 무인도서를 포함한 연안 육역으로 구성된 연안에 대해 통합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연안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함으로써 연안을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었음.
- 따라서 「연안관리법」은 연안의 효율적인 보전·이용 및 개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연안에서 발생하는 모든 개발행위와 보전행위를 통합적으로 조정·관리함으로써 연안관리정책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여 체계적인 연안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라고 할 수 있음.
- 「연안관리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안해역과 연안육역의 범위 내에 포함되는 공간을 대상으로 하는 이용·개발 또는 보전과 관련되는 법률은 약 40 여개가 있으며,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포함할 경우 110 여개에 이를 정도로 매우 다양함.
- 관련 법률의 소관현황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해양수산부가 16개의 소관법률을 관장하고 있어 가장 많은 법률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뒤를 8개의 소관법률을 관장하고 있는 환경부가 따르고 있고, 그 밖에 건설교통부, 산업자원부, 농림부, 문화관광부, 행정자치부, 국방부, 재정경제부, 제주도 등이 연안관리와 관련된 법률을 운영하고 있음.

제4절 외국의 연안관리제도

1. 미국의 연안관리제도

- 미국의 연안관리에서 가장 핵심적인 법률은 연안역관리법(Coastal Zone Management Act)이며, 이외에도 연안 및 해양 관리와 관련된 법률로 국가해양보호구역법(National Marine Sanctuaries Act), 멸종위기종관리법(Endangered Species Act), 수산자원관리·보전법(Magnuson-Stevens Fisheries Management and Conservation Act), 하구복원법(Estuary Restoration Act), 해양법(Oceans Act) 등을 포함한 다양한 법률이 있음.
- 이중에서 1972년에 제정된 연안역관리법은 세계 최초로 '연안(coastal zone)'이라는 공간을 관리대상으로 한 법률로서 1976년, 1985년, 1990년, 1996년, 1999년의 모두 5차례에 걸쳐 개정되었으며, 현재 상무부(Department of Commerce)의 해양대기청(NOAA, National Oceanic & Atmospheric Administration) 내 해양·연안자원관리사무소(The Office of Ocean and Coastal Resource Management)에서 집행책임을 맡고 있음.
- 따라서 미국의 연안관리는 해양대기청에 의하여 연안관리프로그램, 기수역 연구·보전프로그램, 국가해양보호프로그램이 있고, 또한 환경보호청(EPA,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국가기수역프로그램을 통하여 관리되고 있는데, 환경보호청의 국가기수역프로그램을 제외하면 대부분 연안역관리법에 의한 것임.
- 특히 주정부의 자율관리에 중점을 둔 연안역관리법은 연안관리의 이행기준을 제시하기 보다는 주정부와 연방정부간 파트너십에 관한 기본방향을 제시하였고, 연방정부의 재정과 인센티브를 지원받기 위해 필요한 중요한 항목에 대해서만 주정부 연안관리프로그램에서 구체화하도록 규정하였음(Ehler, 2002).

2. 캐나다의 연안관리제도

- 캐나다는 연안관리에 관한 법정 의무가 연방정부와 주정부로 이원화되어 있는데, 이중에서 해양자원관리는 기본적으로 연방정부의 수산해양부(Department of Fisheries and Oceans)가 담당하는데 반하여, 주정부는 해안선과 일부 해양지역의 관리와 연안육역의 이용계획 수립의 권한을 가지고 있음(Gibson, 1999).

- 캐나다의 연안통합관리는 1994년 국가과학기술자문위원회의 해양·연안위원회는 해양 전략(Oceans Strategy)의 수립과 이를 위한 법률제정의 권고에 따라 먼저 1996년 해양자원 관리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다루고 있는 '해양법(Ocean Act)'을 제정하였으며, 이어서 2002년에는 '캐나다 해양전략(Canada's Ocean Strategy)'을 마련하였음(해양수산부, 2003).
- 이 중에서 캐나다의 해양법은 세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1부는 유엔해양법협약에 근거한 캐나다의 해양관할권 규정(Canada's Maritime Zone), 제2부는 캐나다의 하구 및 연안·해양 생태계를 위한 해양관리전략(Ocean Management Strategy), 제3부는 연안경비대, 해양과학기술 등 수산해양부장관의 관할에 속하는 연방정부의 권한·의무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다루고 있음.
- 하구 및 연안 해역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활동과 대응노력을 통합하기 위해 토지이용에 관한 사항을 다루는 연안통합관리계획은 연안이해당사자가 포럼을 구성하여 유용한 정보를 교환하고, 연안이용 이해상충을 조정하며, 특정지역에 관한 관리계획의 수립, 생태적 목표와 지표를 이용한 정책결정 등 과학과 지식을 기반으로 한 의사결정과 협력을 통한 계획수립을 강조하고 있음(해양수산부, 2003).
- 또한 '캐나다 해양전략(Canada's Ocean Strategy)'에서는 캐나다 하구 및 연안·해양생태계 관리에 관한 비전, 원칙, 정책목표를 제시하고 있음. 특히 정책목표는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 첫째, 해양환경의 이해와 보호, 둘째, 지속가능한 경제발전 지원, 셋째, 국제적 리더십 제고를 들 수 있음.
- 이외에 캐나다의 연안통합관리와 관련된 법률은 어류서식지 보호와 오염방지를 목적으로 한 '수산업법(Fisheries Act)', 오염방지와 지속가능한 환경·보건 보호를 위한 환경보호법(Environment Protection Act), 외국어선으로부터 캐나다 연안어업을 보호하기 위한 '연안어업보호법(Coastal Fisheries Protection Act)', 어항 및 관광항 관리·개선을 위한 '어항·관광항만법(Fishing and Recreational Harbours Act)', 등이 있음.

3. 중국의 연안관리제도

- 중국의 연안관리 관련법과 프로그램은 현재까지 별도로 존재하지 않으나(Lau, 2005), 연안관리와 관련된 법률은 다음과 같이 다양한 형태로 정비되어 있음.
 - 영해·접속수역법(the Law of the PRC on the Territorial Sea and the Contiguous Zone)

- 배타적경제수역 및 대륙붕법(the Law of the Exclusive Economic Zone and Continental Shelf of the PRC)
 - 해역이용·관리법(The Law of the PRC on the Use and Management of Sea Areas)
 - 수산업법(the Fisheries Law)
 - 해양환경보호법(the Marine Environmental Protection Law)
- 현재 중국에서 연안통합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정부부처는 토지자원부(the Ministry of Land and Resource)산하 국가해양국(State Oceanic Administration, SOA)으로, 해양환경보호과, 국제협력과, 해역이용관리과, 과학기술과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Lau, 2005).
- 해역이용·관리법은 항만, 양식, 광업, 제염 등 해역의 이용과 개발에 관한 모든 사항을 통합적 관점에서 다루는 법으로 해역기능에 따라 구획을 정한 용도구역제와 모든 해역행위에 관한 인·허가제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4. 일본의 연안·해양관련 체계

- 2003년 현재 일본의 연안역 및 해양관련 법률 및 조약 수는 238개에 이르는데, 이들 법률을 5개 해양구역(내륙, 연안육역, 연안해역, 근해, 공해)으로 나누어 분류하면 연안육역에 가장 많은 196개의 법률이 관련되어 있음.

<요약 표-2> 일본 연안역 및 해양관련 법률 및 조약

법률수	165 개(69%)	196 개(82%)	152 개(64%)	72 개(30%)	16 개(7%)
총 238 개			(전해역 69 개, 한정해역 84 개)		
		Coastal zone (연안역) 112 개			▽
구역	Inland (내륙)	Coastal land (연안육역)	Coastal water (연안해역)	Offshore water (근해)	High water (공해)

- 일본의 연안 보전·이용·개발과 관련된 법률로는 해안법(1956년), 공유수면매립법(1921년), 항만법(1950년), 세토나이카이환경보전특별조치법(1978년) 등이 있으며, 양호한 자연

경관, 식생, 야생생물의 서식지 등의 경우에는 자연환경보전법(1972년), 자연공원법(1957년),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1918년), 문화재보호법(1950년), 수산자원보호법(1951년), 연안어업정비개발법(1974년) 등이 적용되고 있어 연안관리법을 제외하고는 우리나라와 유사한 법체계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일본의 해양·연안관련 행정 및 정부조직을 보면, 내각관방을 비롯하여 내각부, 총무성, 외무성, 문부과학성, 농림수산성, 국토교통성, 환경성이 관련되어 있고, 방위청, 수산청, 자원에너지청, 해상보완청, 기상청 등 청 단위의 정부조직도 관련되어 있음. 이외에, 연안 및 해양자원관리과 관련한 각종 심의회뿐만 아니라, 기상연구소, 해상재해방지센터 등 주요 관련 행정법인도 관련되어 있음. 이들을 통하여 연안 및 해양의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들은 각종 법률과 복잡하게 연관되어 있음.

5. 호주의 연안관리정책

- 호주의 연안관리정책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국제사회의 인식변화를 수용하고 있음. 따라서 호주의 연안관리정책은 4개의 인자, 즉 지구의 기후변화, 지속가능한 개발, 통합자원관리를 위한 요구, 정책개발에 대한 지역사회 참여에 기반을 두고 있음(Thom & Harvey, 2000).
- 호주는 다양한 단계¹⁾의 정부구조를 가지고 있으나 대부분의 연안관리 관련 법률은 주정부차원에서 제정되었고, 이러한 연안 관련 법률의 대부분은 계획이나 다른 법률들과 강하게 연계되어 있음. 그러나 일반적으로 연안관리와 개발조절을 위한 많은 책임은 지방정부에 있음.
 - 1980년대 제정된 연안해역법(Coastal Water Act)은 연안에 접한 주정부의 해역관할권에 대해 해안선으로부터 3해리 이내의 해저관할권과 연안해역 관련 법률제정권을 부여하고 있음.
- 1992년 환경관리에 대한 정부간 협정(The Inter-Governmental Agreement on the Environment; IGAE)이 발효되었고, 이것은 바로 주정부에 제공되었음. 이와 함께 1995년 정부간에 협정된 연방정부의 연안정책은 연안자원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이것 역시 주정부에 제공되었음.
- 1998년에 수립된 호주의 해양정책(Australia's Ocean Policy)에서도 연방정부의 관할권 보

1) 호주의 정부시스템은 3단계로 연방정부(Commonwealth), 주정부(State and Territory government), 지방정부(local government)로 구성됨.

다는 지역단위의 생태계에 기반한 지역해양계획수립(Regional marine plans)을 제안했고, 국가해양자료회의, 국가해양자문위원회, 지역해양계획운영위원회, 국가해양사무국의 설립 등을 제안하였음.

제5절 연안관리법의 제도적 문제점

- 주요 연안국의 연안통합관리 정책을 유형별로 분석하면 다음의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추진되고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의 경우는 연안관리법에 의한 연안정책 및 입법방식과 타 법률에 의한 허가제도가 혼재되어 있는 형태임.
- 외국의 연안관리제도가 도입된 배경에는 연안의 환경과 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해서는 육상의 개발과 토지이용에 대한 적절한 관리가 필수적인데, 육지와 바다를 이분하여 다루는 종래의 이분법적 관리방식으로는 연안에 당면한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가 곤란하다는데 있었음.
- 선진 연안국은 대부분 중앙정부의 정책이나 입법은 거의 기금 조성에 주안점을 두고, 주정부의 정책은 실질적인 시행계획에 초점을 둬으로써 중앙정부에서 조성한 기금(Fund)을 가지고 주정부의 정책방향을 선도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실제 정책에 예산을 활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에서는 기금조성부분이 거의 제외되어 있으며, 실질적인 시행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실정임.
- 「연안관리법」은 연안의 공간범위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수단이 미흡하여, 연안이용의 조정과 지속가능한 공간 활용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법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고,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 우리나라는 연안관리 정책에서 선진적인 틀을 구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효과적인 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 및 인식의 미흡으로 인하여 연안통합관리 본연의 기능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

제6절 우리나라 연안관리정책의 운영실태 및 문제점

- 연안통합관리계획의 전반적인 이행실태를 살펴보면, 67.8%의 이행율(2006년 말 기준)을 보이고 있으며, 이를 권역별로 보면, 서해남부 I 권역(93.3%) > 서해중부 I 권역(83%) >

남해동부(76.4%) 순으로 이행되고 있음.

- 연안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관리수단인 연안관리지역계획의 수립현황을 보면, 전체 수립대상지역 77개소 중 2006년 말까지 해양수산부장관의 최종승인을 받은 곳은 총 38개소로서 50%정도에 그치고 있으나, 지역계획(안)을 작성하거나 작성하고 있는 곳도 27개소에 이르고 있음.

제3장 연안관리제도의 개선방안

제1절 현행 연안관리법의 문제점 도출

- 그동안의 연안관리정책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현행 연안관리법의 문제점을 4개의 주제별로 분류하고, 이의 해결을 위한 개선방안을 검토하고자 함.

<요약 표-3> 해양국토관리를 위한 기본법적 위상확보 방안

주제구분	문제점	개선방향
해양국토관리를 위한 기본법적 위상확보	기본법적 위상에 부합하는 법적 근거 부족	- 연안통합관리계획과 연안관리지역계획이 연안의 보전·이용·개발의 기본이 됨을 명시
		- 연안의 보전·이용·개발 시 해양수산부장관 및 관계지자체장의 협의권을 부여
		- 연안용도구역 및 연안기능구 준수의무 부여, 임의적인 수정을 제한
	연안관리정책 기본 원칙 미제시	- 연안관리의 기본법으로서 원칙 제시
연안관리권 소재 모호로 책임과 권한 불명확	- 연안해역의 국가소유를 명문화함으로써 해양의 통합적 정책추진이 가능토록 하고, 연안 육역에 대해서도 해안 보전을 위하여 매수되는 토지에 대해서도 국유임을 선언	
국가와 국민의 역할 불명확	- 국가 및 지자체가 수행하여야 할 연안관리분야의 임무와 공공재관리를 위한 국민의 자발적 참여와 협조를 강조하는 조항을 마련	

<요약 표-4> 통합계획/지역계획 절차 및 연안관리의 체계적 접근방안

주제구분	문제점	개선방향
통합계획/지역계획 절차 및 연안관리의 체계적 접근방안	통합적 조사를 위한 연계 부족	- 조사내용 구체화, 조사주기를 명시하여 체계적인 조사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함
		- 관련국가조사계획과의 연계실시를 통한 효율화 및 정보의 공동활용을 명문화
		- 지자체의 연안조사권한을 부여하여 자율적 관리를 실시하기 위한 기반 마련
	통합계획 수립주기 미정	- 5년으로 명문화하고 연안기본조사 등과 연계하여 수립되도록 규정
	통합계획의 성격과 역할에 대한 규정 미흡	- 연안관리정책방향 기본방향을 제시하여 기본계획으로서의 기능을 강화
		- 연안의 범위를 통합계획에서 정하도록 한 법규정을 준수하도록 함
	해수부장관 수립계획 수립절차/관리 방법 불명확	- 해수부장관 수립 지역계획도 공청회 등 절차를 명시하여 절차 투명성을 강화
		- 해양수산부장관 수립 지역계획 시장·군수·구청장 관리규정 명문화
	지역계획 역할/권한 미약	- 연안용도구역제, 자연해안관리, 연안완충대 등을 지역계획에 반영
		- 지형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연안육역을 확대할 수 있도록 규정
	지역계획 변경사유 미비	- 통합계획변경시 지역계획의 연동변경 명문화
	지역계획평가점검 체계 미흡	- 계획의 시행여건에 대한 평가를 명문화
	지역 연안관리역량 강화방안 부족	- 연안관리협의회를 두어 전문가자문과 지역합의를 통한 관리역량기반 강화
		- 연안청지기제도를 도입하여 민간참여 연안관리 도입
연안정보의 효율적인 관리방안 부재	- 연안정보 수집 및 정보화 근거마련 및 정보시스템 개발, 운영, 관리를 명시	
	- 연안백서를 통하여 행정통계를 체계화하고 통계관리수단을 마련	

<요약 표-5> 실질적 연안관리를 위한 관리수단 확보방안

주제구분	문제점	개선방향
실질적 연안 관리를 위한 관리수단 확보	전근대적 연안이용 방식 개선을 위한 법적 수단 부재	- 이용연안, 특수연안, 관리연안, 보전연안 등 연안용도구역 제도를 도입
		- 지속가능한 연안관리를 위한 자연해안 및 연안서식지의 관리의무를 둠
	효과적 연안구분 및 관리를 위한 수단 부재	- 육상의 토지적성평가와 유사한 연안공간적성평가의 도입 근거를 명문화
		- 연안기능구를 두어 연안용도구역제의 결점을 보완
		- 연안용도구역지정의 의제조항을 둬으로써 합법적 이용행 위간의 상충을 조정
	연안관리 대상행위 불명확	- 연안의 이용·개발시 협의의무를 부여하여 연안관리권의 실질적 행사근거 마련
		- 이용연안, 특수연안, 보전연안의 경우 기존법률에 따르도 록 하여 갈등요소를 최소화하고 관리연안구역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이용·개발행위 관리방안을 제시
		- 이용·개발행위협의 절차 및 기준을 정하여 투명한 연안용 도구역 관리방안 제시
	재해예방과 난개발 억제, 공공접근성 확 보를 위한 정책수단 부재	- 재해와 난개발로부터 연안을 보호하고 공공의 연안접근권 보장을 위해 연안완충대 도입
		- 연안완충대로 인하여 재산권 침해방지를 위해 토지매입 규정을 명문화
- 보호대상 연안서식지를 제시하고 순손실방지제 도입과 조 사를 위한 근거 마련		
정비사업과의 연계 미흡	- 연안환경개선사업의 지역계획 연계	
법률의 집행력을 높 일 수 있는 벌칙조 항 부재	- 행위제한규정과 허가절차를 어긴 행위에 대한 벌칙조항을 신설	

<요약 표-6> 통합관리를 위한 해양수산부의 조정기능강화 방안

주제구분	문제점	개선방향
통합관리를 위한 해양수산부의 조정기능강화	통합적 연안관리를 위한 연안범위 부적절	- 해안침식, 생물다양성 측면에서 중요한 하구역을 연안의 범위에 포함
		- 환경보전해역 및 특별관리해역을 연안범위로 포함시켜 연안의 통합관리 강화
	연안육역 관리를 위한 해수부 조정 권한 한계	- 연안육역 이용 및 개발시 해수부장관의 협의권 및 관계 기관 의무 규정 명문화
		- 연안에서의 계획수립, 수정 시 해수부장관과의 협의를 의무화
	연안통합관리를 위한 수단 부재	- 연안에서 구역 등을 지정 또는 변경할 경우 이해관계자의 합의에 의하여 도출된 연안용도구역 및 연안기능구와 부합되도록 함
	관련 국가계획과의 연계성 부족	- 국토종합계획, 국가환경종합계획 및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 해양환경보전종합대책, 해양생태계보전관리기본계획 등과의 연계의무 명문화
	중복이용되는 연안구역에 대한 조정방안 부재	- 2이상의 연안용도기능구가 포함되는 연안의 경우 조정 기준을 제시하고 우선이용순위에 따른 이용을 명문화하여 갈등의 최소화를 도모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기능 적정화	- 새로운 제도의 핵심적인 사항을 심의대상범위에 포함하여 권한을 강화시킴
		- 소위원회를 두어 효과적인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체계를 개선
	실태점검을 통한 부적절 관리에 대한 조치근거 부족	- 정기 연안관리실태 보고를 의무화
- 점검결과를 근거로 하여 시정을 요청할 수 있는 규정 도입		

제2절 연안관리법 개선방안

1. 해양국토관리를 위한 위상제고 및 실효성 확보

1) 연안의 보전·이용에 관한 기본법적 지위 부여

- 「연안관리법」은 우리나라의 연안을 효율적으로 보전·이용 및 개발하기 위하여 연안통합관리계획 및 지역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한 법임.
- 이와 같은 문제를 해소하는 동시에 「연안관리법」의 실효성을 확보함으로써 최소한 「연안관리법」상 연안해역에 대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준하는 법적지위를 부여할 필요가 있고 연안육역에 대해서도 다른 법률에 근거한 계획과 조화롭게 수립·변경되도록 하고, 통합계획의 이행강제력을 갖도록 「연안관리법」이 정비되어야 함.
- 또한 연안이용·개발 및 연안환경의 보전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주요시책 또는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경우에 해양수산부장관과 미리 협의하도록 하는 절차가 필요함.
- 「연안관리법」에 따른 통합계획 및 지역계획과 다른 법률에 근거한 계획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연안용도구역 및 연안기능구의 지정효력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노력이 필요함.

2) 연안관리정책의 기본원칙 설정

- 현행 「연안관리법」은 연안관리의 기본이념을 규정하고 있으나, 연안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와 국민의 연안접근권의 보장 및 연안환경보전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를 보완할 필요성이 있음.
- 연안의 관리적인 측면과 함께 연안이용의 기본원칙을 규정함으로써, 「연안관리법」이 연안에 대한 보전·관리와 이용·개발의 기본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

3) 연안관리권의 명문화를 통한 권한 및 책임소재의 명확화

- 연안해역의 국가소유를 명문화함으로써 통합적 정책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연안육역의 경우에도 해안보전을 위하여 매수된 토지는 국유로 함으로써 연안관리정책의 중

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도모한다. 또한 행정자치부에서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간 해상경계 획정'과 관련한 법률의 제정 시 연안해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다는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연안의 귀속을 법으로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함.

4) 연안관리에 있어서 국가 및 국민의 역할 명확화

- 통합적 연안관리의 기반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정책추진을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민에게 연안관리 책무를 부여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한 국가에 대해서는 바닷가 관리에 대한 의무를 법률로서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모든 국민에게는 국가 또는 지자체가 수립·추진하는 연안관리시책에 적극 협조하도록 책무를 부여함.

2. 통합계획 및 지역계획의 절차 등 관리체계 개선

1) 통합적 조사를 위한 연계 강화

- 현재 연안환경 및 연안생태계와 관련된 조사는 「자연환경보전법」상 전국자연환경조사, 「습지보전법」상 갯벌생태계조사,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해양생태계기본조사, 「연안관리법」상 연안침식모니터링 등 개별법에 근거하여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상호간의 연계성이 부족한 실정임.
- 따라서 향후에는 「연안관리법」상 연안실태조사는 관계 국가조사계획과 연계하여 실시되도록 개선되어야 하며, 지자체의 연안조사권한을 법률로 보장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함.

2) 통합계획의 수립주기 명문화

- 현행 「연안관리법」은 「자연환경보전법」, 「습지보전법」 등 관련 법률과 달리 통합계획의 수립주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책수립·추진에 모호성이 존재함.
- 다른 국가계획과 연계성을 강화하고 상호 보완적인 정책 시행을 위해서는 유사한 계획과 마찬가지로 통합계획의 수립주기를 명문화하여 예측가능한 연안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임.

3) 연안통합관리계획의 성격과 역할에 대한 규정 명확화

- 연안통합관리계획은 “통합”이라는 의미에서 알 수 있듯이 연안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안을 통괄하여 조정한다는 의미이며, 통합의 내용에는 관련 행정기관의 수평적·수직적 통합, 관계 법률간의 통합, 연안에 대한 이해관계자간의 통합, 부문간 및 학제간 통합 등이 포함되어 「연안관리법」이 규율하는 영역은 매우 광범위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종합계획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정 등과 같은 위치에서 다른 관련 법률에 의한 조치를 조정하지 못하고, 오히려 종속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이는 「연안관리법」이 기본법 내지 상위법으로서의 지위를 법적으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며, 계획 수립시 다른 법률에 의한 용도지정 또는 계획에 적합해야 한다는 규정이 「연안관리법」의 근본적인 한계라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연안통합관리계획의 위상을 제고하고, 연안을 종합적으로 보전·이용·개발하는 기본계획으로 기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통합계획의 성격을 명확히 하고, 준수 의무를 법제화 하는 노력이 필요함.

4) 해양수산부장관이 수립하는 지역계획 절차 명확화

- 현행법에서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수립하는 지역계획의 경우 통합계획의 절차를 따르도록 하고 있어 지역주민 공청회 및 관련지방청과의 협의기회가 생략되도록 하고 있어 충분한 협의를 통한 계획수립절차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5) 지역계획의 역할과 권한 강화

- 지역계획은 통합계획의 범위 내에서 수립하도록 되어 있으나, 지역계획이 연안관리의 실행계획으로서 기능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미흡하여 그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 또한 지역계획 수립을 위한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지침의 법적 근거가 미흡하고 지역계획 수립이 의무조항이 아닌 임의조항으로 정해져 있어 계획수립이 지연되고 전국적인 일관성이 결여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음.

6) 지역계획의 변경절차 적시

- 현행법에서는 지역계획의 변경에 대하여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거나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통합계획과의 연계에 대하여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적시할 필요가 있으며, 필요한 경우 이에 소요되는 예산지원에 대한 내용을 정하도록 함.

7) 지역계획의 평가 및 점검체계 강화

- 현행 「연안관리법」은 「자연환경보전법」, 「습지보전법」 등 관련 법률과 달리 통합계획의 수립주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책수립·추진에 모호성이 존재한다. 또한 지역계획 수립절차와 지역계획의 이행에 대한 관리·감독 및 사후평가를 위한 아무런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또한 지역계획 수립시 실질적 기준이 되었던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지침”의 내용상·효력상 한계로 인하여 지역계획의 수립에 어려움이 많았고, 미수립에 대한 정책적 불이익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계획의 수립을 촉진하고 기 수립된 지역계획에 대한 평가체계의 구축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것임.
- 한편 토지에서의 토지적성평가와 같은 환경친화적인 이용방안의 도입을 위한 별도의 평가수단을 마련하여 지역계획 수립의 적정성과 연안이용의 합리적 의사결정이 이용하도록 함.

8) 지자체의 관리역량 강화

- 연안관리에 대한 인식과 인적자원 부족으로 인하여 지역에서의 연안관리 시행에 많은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기초지자체의 관리역량을 강화시키고 이해관계자간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제도적 기반을 제공함.
- 연안관리정책의 집행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연안에 대한 대국민 교육과 정책홍보를 강화하고, 일반대중의 적극적인 정책참여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임. 즉, 교육 및 홍보를 위한 포상제도 또는 예산지원의 근거를 법률에 명문화함으로써 지속적인 연안관리교육·정책홍보, 지역협력체계를 활성화하는 노력이 필요함.

- 현행 “명예”라는 용어로 인해 지역주민, 어촌계 등이 연안관리정책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꺼려하고, 예산적인 지원에 어려움이 있었던 명예연안관리인제도를 “연안청지기제도” 또는 “연안지킴이제도”를 도입·운영하는 것이 필요함.
- 한편 권역별 지역 연구자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조사·연구체계를 구축하고,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여 조정·협력하는 선진 연안관리 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도입·운영하는 것을 중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9) 연안정보의 효과적인 관리방안 마련

- 연안관리지역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공간분석을 위한 각종자료를 전산화하는 과정에서 관련 행정기관에서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해당 자료의 제공을 거부하는 사례가 있으며, 자료의 적극적인 활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시 정보제공을 의무화 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야 함.
- 한편 건설교통부에서는 국토이용과 관련한 사항을 취합한 ‘국토이용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매년 발간하고 있는바, 해양수산부에서도 연안통합관리계획 및 지역계획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연안해역을 중심으로 필요한 연안육역에 관한 관련 정보를 취합하는 연안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는 것이 필요함.
- 이러한 연안정보체계에서는 연안용도구역의 지정·관리사항, 연안해안서식시순손실방지, 해안보전선 등의 자료를 정보화함으로써, 연안 지식정보의 원활한 생산·보급과 통합계획·지역계획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됨.

3. 연안관리의 실효적 관리수단의 미비

1) 전근대적 연안이용방식에 대한 대응 수단의 확보

- 연안해역의 이용은 신청주의에 의한 선점식 이용이 고착되어 있어 새로운 해역이용의 수요를 적절히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못하고 해역이 가지는 자원과 특성을 반영한 이용행위의 유도 등 효율적인 연안자원 활용을 실현할 수 있는 관리기반이 부재함.

- 또한 연안육역의 경우에도 해양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으며, 반대로 해양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해역의 이용과 조화롭게 활용하도록 하는 연계 관리방안이 미흡한 실정임.
- 현재 지침 상에서 연안구역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그 기준과 법적 기반이 모호하여 자율적인 연안관리를 시행하는 데는 많은 제약이 따르고 있음.

2) 효과적인 연안구분 및 관리를 위한 수단의 확보

- 현행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지침에서는 연안을 보전연안, 준보전연안, 이용연안, 개발조정연안, 개발유도연안 등 5개 연안으로 구분하여 관리방안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각 연안의 구분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고 인접 지자체와의 부조화 등 문제가 발생되고 있음.
- 따라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정하는 토지의 용도지역제도와 연계되며 해역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위지구의 지정을 가능하도록 하는 등 제도적인 보완방안을 마련함.

3) 연안관리대상행위 규정

- 연안에서의 행위는 이미 기존의 다양한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연안관리법에서 새롭게 정할 필요는 없음. 그러나 연안이용을 조정하고 새로운 연안이용 수요를 고려할 수 있도록 조정기능이 강화된 행위규제는 포함되어야 함.
- 특히 관리연안구역의 경우 목적이 정해지지 않은 구역으로 새로운 관리방향이 정해지는 경우에 신중한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행위제한을 두도록 함.
- 또한 연안관리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서 연안의 구역 등을 정하는 경우 반드시 연안관리자와 협의하도록 하여 통합적인 연안관리개념이 반영되도록 함.

4) 재해예방, 난개발방지 및 공공접근성 확보를 위한 기반 조성

- 현 연안관리법에는 재해예방을 위하여 연안정비사업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사업이 예방이 아닌 사후정비에 집중되어 있고 사업시행에 따라 2차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등 전반적인 연안재해방지정책의 방향전환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자연공물인 해양의 자유로운 이용과 연안경관의 효과적인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의 도입이 요구됨.
- 이를 위하여 선진연안국에서 적용하고 있는 연안완충대의 도입을 검토하고 이와 관련된 제도를 도입함.

5) 연안정비사업과 연안관리의 연계

- 현재의 연안통합관리계획에서는 연안정비사업의 기본방향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 연안정비사업은 지역의 수요에 따라 정해지고 있으며 지역계획과는 관계없이 실시되고 있는 실정으로 연안정비사업의 시행은 연안관리사업과 별개로 진행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
- 효과적인 연안의 관리에 있어서 연안정비사업은 중요한 사업수단으로서 반드시 연안관리계획이 연계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다만, 지자체 역량으로 대처하기 곤란한 재해방지사업의 경우에는 통합계획에서 기본방향만 제시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의 조사와 사업계획 수립을 통하여 추진하도록 하고, 연안환경개선사업의 경우에는 지역계획에서 사업을 결정하도록 하는 방안이 바람직함.

6) 법률의 집행력을 높이는 벌칙조항의 도입

- 현행법에서는 연안정비사업 및 연안점검에 지장을 주는 행위는 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것이 벌칙의 전부임.
- 그러나 새로운 연안관리수단의 도입에 맞도록 다른 법률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벌칙을 강화하도록 함.

4. 연안의 통합관리를 위한 해양수산부의 조정기능 강화

1) 연안의 범위 조정

- 통합적인 연안관리를 위하여 연안의 범위를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연안해역 및 연안육역의 관리를 위한 해양수산부의 조정권한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임. 또한 중복이용되는 연안구역에 대한 조정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연안의 범위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함.

- 한편 해양수산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적인 여건·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역 계획에서 연안육역을 확대하여 지정한 경우에도 연안에 범위에 포함되도록 명문화할 필요가 있음.

2) 연안육역관리를 위한 해양수산부의 조정권한 미흡

- 연안의 보전·이용 및 개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연안관리법」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연안이용·개발 및 연안환경의 보전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주요시책 또는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경우에 해양수산부장관과 미리 협의하도록 하는 절차가 필요함.
- 이에 '사전예방주의 원칙'과 '계획에 의한 연안관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연안관리법」에 연안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시책에 대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미리 협의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작성하는 지침을 개발계획 수립시 고려하도록 함.

4) 관련국가계획과의 연계성 강화

- 관련국가계획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아 통합계획의 범위와 일관성 있는 지역계획의 수립이 곤란하며, 계획 간의 조정과 불필요한 중복조사의 회피 등 효과적인 연안정책 추진을 위하여 관련계획의 범위를 적시할 필요가 있음.

5) 중복이용되는 연안구역에 대한 조정방안 제시

- 연안해역의 경우 수면, 수중, 해저 등 다양한 이용행태가 존재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복합적이고 다면적인 이용이 가능한 특징을 가지고 있음.
- 그러나 이러한 다면적 이용은 이해관계자간의 갈등으로 인하여 지속가능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고 일방적인 이용행위는 새로운 연안이용의 가능성을 차단하는 어려움이 발생됨.

6)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기능 강화

- 중앙연안관리심의회는 연안관리정책의 최고의사결정을 하는 심의기구로서 20명의 당연직 및 민간추천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 그러나 계획수립, 정비사업실시,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 등 다양하고 복합적인 연안정책을 평가하고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보다 전문성이 강화된 기반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7) 실태점검을 통한 부적절한 관리에 대한 조치근거마련

- 현행법에서는 관계행정기관의 부적절한 연안이용 또는 관리행위에 대하여 명확한 처리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 또한 연안이용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다른 법률에 비하여 부족한 실정이어서 강제력 있는 관리행위를 실시할 수 있는 기반이 부족함.

제4장 연안용도구역제

제1절 토지에서의 용도지역제도

- 우리나라의 토지에 대한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에 의하여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의 3가지 구획관리방식을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그 밖에 개별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양한 구역 등을 설정하고 있음.
- 국토계획법에서는 도시용지의 원활한 공급과 보전용지의 관리를 위하여 전 국토를 4개의 용도지역 즉,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나누어 기본적인 용도를 구분하고 있음.

<요약 표-7> 우리나라의 용도지역 지정현황(2005.12.31 현재)²⁾

(단위 : km²)

행정구역 면적	고시 면적	육 지					해 면			
		계	도시 지역	관리 지역	농림 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계	도시 지역	관리 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99,944.3 (중북)	106,114.5 (1,038.7)	100,472.4 (1,038.7)	16,020.0 (3.2)	25,868.9 (337.6)	51,023.3 (594.3)	7,560.3 (103.6)	5,642.1	1,019.8	1.6	4,620.7
비율	100.0%	94.7	15.1	24.4	48.1	7.1	5.3	1.0	-	4.4

- 우리나라는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미관·경관·안전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용도지구제도를 도입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고 있음.

<요약 표-8> 우리나라 용도지구 지정현황(2005.12.31 현재)³⁾

(단위 : km²)

계	경관 지구	미관 지구	고도 지구	방화 지구	방재 지구	시설 보호 지구	취락 지구	개발 진흥 지구	특 정 용 도 제 한 지 구	위락 지구	보전 지구	리모델 링지구
2,074.4	105.9	95.6	461.2	93.8	0.6	144.4	184.3	898.1	4.0	-	86.6	-

- 토지에서 "용도구역"이라 함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따로 정함으로써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방지,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토지이용의 도모, 토지이용의 종합적 조정·관리 등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하며 전국에 4,041.5km²가 지정되어 있음.

2) 2006년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연차보고서

3) 전계서

<요약 표-9> 토지에서의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비교표

구분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지정범위	- 전체토지에 적용 - 중복지정 불가	- 부분적으로 지정 - 타용도지역 및 지구와 중 복지정 가능	- 국부적으로 지정 - 구역간 중복지정 불가
지적목적	- 용도규제가 주목적 - 토지의 경제적, 효율적 이 용과 공공복리증진	- 건축규제가 주목적 - 공공의 안녕질서와 도시기 능 증진	- 이용제한 주목적 - 도시의 과밀화, 과대화 방지
지정형태	-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 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 경관지구, 미관지구, 고도 지구, 방화지구, 방재지구, 보존지구, 시설보호지구,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특정용도제한지구	- 시가화조정구역, 도시자연 공원구역, 수산자원보호구 역, 개발제한구역

- 그러나 이와 같은 토지관리제도의 구축에도 불구하고 국토이용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도시의 팽창과 기반시설의 정비, 여가활동에 대한 국민의 수요 등에 따라 토지의 개발도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과 동시에, 기능별로 나뉜 개별부처에 의하여 매우 복잡한 형태의 각종 지역, 지구, 구역이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음.
- 조사에 의하면 2004년말 현재 14개부처에서 121개 법률에 의거하여 총 324개 구역 등 지정되어 있으며, 파악이 가능한 82개법률 128개 구역의 지정면적만 567,292km²로서 전국토의 5.8배에 이르는 실정으로 중복지정으로 인한 토지이용상의 제약이 매우 큰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정부에서는 이러한 토지이용상의 난맥상을 정리하기 위하여 2005.12월에 토지이용규제기본법을 제정하여 구역 등의 정비를 통한 토지이용규제 간소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토지이용규제의 투명화를 위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청취를 의무화 하는 등 지정에 있어서의 절차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투명성을 제고시키는 노력을 실시하고 있음.
- 이와 더불어 환경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고 지적되어온 도시개발에 있어서 토지적성평가제도를 도입하여 개발목적과 부합되는 적지선정과 개발지 내에서의 보호필요지를 평가하여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요약 표-10> 토지적성평가 지표

평가특성	평가지표군	
물리특성	경사도, 표고, 재해발생위험지역	
지역적 특성	개발성지표	도시용지비율, 용도전용비율, 도시용지인접비율, 지가수준
	보전성지표	농업진흥지역비율, 전담과수원면적비율, 경지정리면적비율, 생태자연도, 녹지자연도, 임상도 상위등급비율, 보전산지비율
공간적 입지특성	개발성지표	기개발지와의 거리, 공공편익시설과의 거리, 도로와의 거리
	보전성지표	경지정리지역과의 거리, 공적규제지역과의 거리, 하천호소농업용저수지와 의 거리

제2절 연안용도구역제도

- 1992년 세계환경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의제21 제17장에서 연안과 해양의 관리에 있어서 통합관리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된 이후 통합적 관리라는 방향의 일치를 도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각 연안국들은 자국의 관리질서와 전통적인 해양이용 관습, 지속적인 해양이용 수요의 증가 및 환경오염의 심화, 과학적 역량의 격차 등으로 인하여 적절한 관리수단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한편, 최근에는 해양생태계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입된 해양보호구역(Marine Protected Area)의 성공적인 도입과 육상에서의 용도지역관리의 경험으로부터 연안의 관리에 이러한 구획관리의 개념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음. 제한된 해양보호구역내에서의 구획관리를 확대하고 이용이 집중된 연안에 대해서도 예측가능하고 체계적인 연안관리수단으로 연안용도구역제도가 검토되기 시작한 것임.
- 연안용도구역제도란 연안의 이용과 개발이 전근대적인 선점식으로 이루어져 효율적인 공간활용이 제한되거나 새로운 고부가가치 이용이 차별을 당하는 불합리성을 극복하고, 무계획적인 개발로 인하여 민감한 해양환경과 생태계가 무분별하게 훼손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연안의 이용실태 및 특성, 장래의 이용방향 등을 고려하여 용도를 미리 정하고 정해진 용도의 취지에 부합되는 관리행위를 허용함으로써 예측가능하고 균형과 조화를 통한 연안관리를 실현하는 제도로서 연안통합관리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안으로 알려져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1999년 연안관리법 제정 이후,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지침(2000.12)을 통하여 '연안구역'이라는 구획관리제도를 도입한 바 있음. 그러나 법적인 기반이 취약하고 명확한 기준제시의 미흡, 갈등조정체계 미비, 행위제한 및 벌칙 등 효과적인 제도 시행을 위한 수단이 부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이해의 정도가 미약하여 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타나고 있음.
- 따라서 연안용도구역제도라는 본질적이고 효과적인 연안통합관리 정책수단을 통하여 연안이용의 근간이 되는 연안환경과 생태계의 보전을 도모하고 합리적인 이용조정체계를 마련하여 연안이 지속가능하게 활용되고 그 결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연안용도구역제도는 연안통합관리를 실현하는 제도적 수단으로서 ①현재의 이용여건과 해양자원이용, 미래가치 등을 고려한 연안통합관리 실현을 통한 체계적인 해양국토 관리기반을 구축하고 ②복잡한 구역지정 간소화 및 이용수요 대응을 위한 계획적인 연안공간 관리제도 확보 ③개별 법률에 의한 사안대응적 허가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예방적 관리를 실현하여 연안이용을 둘러싼 갈등에 대응한 합리적 조정체계 구축 ④매립 등으로 갯벌, 어류산란장 등 해양생물서식 급감, 해역오염 심화 등 무분별한 연안개발로부터 해양환경 훼손 방지 수단 확보 ⑤이용공간의 원활한 공급 및 안정적 이용 촉진을 통한 안정적 연안공간 활용을 통한 해양경제기반 조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우리나라의 연안해역에서의 지정구역은 총 37개법률에 의하여 80개구역이 지정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8개법률 31개구역이 면허 또는 허가, 승인 등을 통하여 구역설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음.
- 이상의 연안여건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안용도구역제도 도입의 원칙을 제시하고자 함.
 - ① 합리적인 통합적 연안관리를 위하여 토지의 용도지역 특성과 해양의 다면적 이용특성을 고려한 관리체계를 구축
 - ② 연안육역 및 연안해역의 관리여건의 상이성을 감안한 차별적 접근
 - ③ 연안용도구역의 설정은 사회경제적인 요인과 이용수요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과학적인 정보의 확보상황에 따라 토지적성평가와 유사한 해역특성평가를 통하여 구획구분의 객관성과 해양생태환경의 고려를 추진해 나가도록 함

- ④ 현존하고 있는 해양에 대한 과학적 불확실성과 이용우선적인 경향을 가진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권자인 지자체의 무분별한 이용행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장관이 개발이용제한연안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도입함
- 연안을 국토계획법의 기조와 우리나라의 여건, 기존의 연안관리지역계획에서 채용하고 있는 분류기준을 고려하여 이용연안구역, 특수연안구역, 관리연안구역 및 보전연안구역의 4가지 유형의 연안용도구역으로 구분함.
 - 또한 연안기능구의 성격에 따라 적합한 연안용도구역으로 반영하게 함으로서 연안용도구역 지정의 일관성을 확보하도록 하였음.

<요약 표-11> 연안용도구역의 설정 목적 및 분류방법(안)

연안용도구역	용도구분 목적	해당 구역 등
이용연안구역	이용 또는 개발이 확정되어 있거나 개발이 예상되어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만법」에 따른 항만구역 및 「신항만건설촉진법」에 따른 신항만 건설예정지역 - 「어촌·어항법」에 따른 어항구역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및 지방산업단지 - 「골재채취법」에 따른 골재채취단지 - 「해저광물자원개발법」에 따른 해저광구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을 제외한 지역 - 연안기능구 중 항만구, 항로구, 어항구, 레저관광구, 해수욕장구, 광물자원구
특수연안구역	군사시설 및 국가 중요시설의 보호를 위하여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구역 또는 해양의 환경 및 생태계가 훼손되어 별도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군사시설 - 해양환경관리법에 의한 특별관리해역 - 전원개발촉진법에 의한 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예정구역 - 연안기능구 중 환경관리구, 해양조사구, 해양투기구, 재해관리구, 군사시설구 및 산업시설구
관리연안구역	이용 또는 개발의 용도가 정해지지 않았거나 중복 지정으로 인하여 이의 조정이 필요한 구역 또는 용도지정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연안구역, 특수연안구역 및 보전연안구역에 해당되지 않는 연안 - 연안기능구 중 이용유보구

<요약 표-11> (계속)

연안용도구역	용도구분 목적	해당 구역 등
보전연안구역	연안환경 및 자원의 보호, 해양문화의 보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 또는 보전할 필요가 있는 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계획법에 의한 농림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 및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 수산자원보호구역 -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해양생태계보호구역 - 해양환경관리법에 의한 환경보전해역 -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생태·경관보전지역, - 습지보전법에 의한 습지보호구역 - 독도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특정도서 -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구역 - 연안기능구 중 수산생물자원보호구, 생태보호구, 경관보호구, 공원구 및 어장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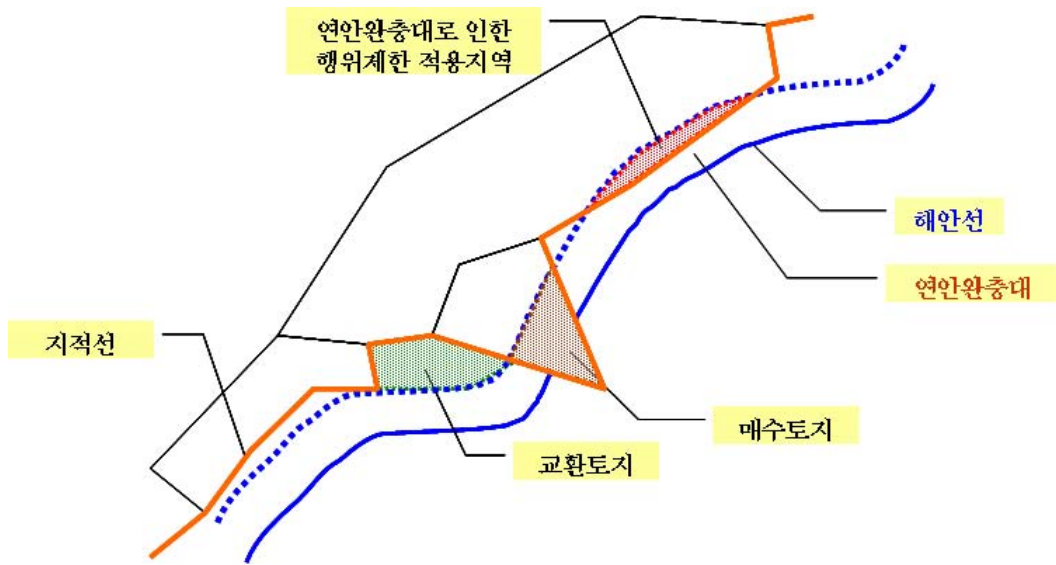
<요약 표-12> 연안기능구의 지정목적

연안기능구	지정목적
항만구	항만건설과 기능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능구
항로구	선박의 안전한 운행을 위하여 필요한 기능구
어항구	어항건설과 기능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능구
레저관광구	연안에서의 레저관광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능구
해수욕장구	해수욕장 기능의 유지를 위하여 고시된 기능구
광물자원구	광물 또는 골재자원 채취를 위하여 필요한 기능구
환경관리구	해수의 수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능구
수산생물자원보호구	수산자원의 보호와 육성이 필요한 기능구
생태보호구	연안서식지 또는 희귀해양생물의 서식지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능구
해양조사구	해수수질 또는 해양생태계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기능구
경관보호구	해상, 해중 또는 해저의 경관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기능구
해양투기구	해양투기를 위하여 필요한 기능구
공원구	법정공원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능구
재해관리구	해일, 파랑, 해수, 지반의 침식 또는 적조 등 연안재해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관리가 필요한 기능구
어장구	해면, 마을, 양식 등 어장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능구
군사시설구	군사시설의 보호에 필요한 기능구
산업시설구	에너지, 유류비축시설 등 국가기간산업시설의 유지에 필요한 기능구
이용유보구	중복이용으로 인하여 조정이 필요하거나 용도가 확정되지 못한 기능구

- 연안용도구역제는 희소자원에 해당하는 연안환경의 보호 외에도 연안이용을 둘러싼 갈등의 사전방지, 연안의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이용증진, 토지이용의 불확실성 감소, 관광자원의 확보, 유용생물종 서식지 확보, 해양오염에 대한 부담의 경감 등의 다양한 부수적 효과를 지니고 있음.
 - 연안용도구역의 지정 및 실시에 따라 ① 환경비용 감소 ② 민간부문의 거래비용 감소, ③ 공공부문의 행정비용 절감에 따른 편익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연안용도구역제의 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음. 첫째는 행정비용으로써 이는 설정과 시행에 따라서 공공부문에서 부담하는 비용임. 둘째로는 집행과정상에서 부담하는 집행비용이 있음.

제3절 연안완충대 개념의 도입

- 우리나라의 해안은 매립 및 기타 개발로 인하여 자연성이 급속하게 손상되고 있고, 지역에 따라서는 자연적인 해수면 상승현상과 부적절한 개발로 인하여 심각한 침식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임.
- 또한 해안에 연접하여 개발하는 경우 자연공물인 바다에 대한 공공의 접근성을 크게 제약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하여 해면의 사적 이용이 발생하거나 해면 자체의 활용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현상도 나타나게 됨.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연안의 경관을 효율적으로 보전하고 장기간의 해안선변화를 추정할 수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자연해안선으로부터 일정거리의 육역에 대해서는 연안완충대를 설정하여 연안재해로부터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해안의 자연성을 보전하여 육해역간의 생태적 연계성을 확보하고 자연치유적 해안관리를 도모함과 동시에 공공의 해안접근성으로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요약 그림-2] 연안완충대 개념도

제4절 연안용도구역제도 도입에 따른 예상문제점 및 대응방안

1. 연안육역에 대한 추가적인 규제도입 문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하여 국토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연안육역의 경우에도 이 법률에서 정하는 내용에 따라 관리되고 있어 연안용도구역제가 자칫 기존제도와 상충되거나 중복으로 지정되어 국민에게 불편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으나,
- 1990년대 이후 연안지역의 부동산가치의 증가에 따라 각종 개발압력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 생태환경과 보존가치를 고려한 이용방식이 시급하게 도입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도시계획 등을 통하여 경제이익창출만을 고려한 입지결정으로 연안육역의 훼손이 심화되고 있고 이것은 바로 해역의 환경저하로 이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현상이 관행화 되는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음.
- 따라서 육역의 개발행위에 대하여 연안관리자가 최소한의 협의권을 확보하면서 투명한 공간관리행정의 추진을 위해서는 연안용도구역제와 같은 검증된 보편타당한 제도의 도입이 불가피한 실정임.

- 한편, 하천 및 하구역을 연안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나, 하천과 하구역은 물질이동 및 생물서식지 기능측면에서 연안해역에 끼치는 영향이 매우 크지만(지방하천이상 해양직접유입 하천수 214개 중 하구독설치 하천 95개) 현재의 연안 관리법에서는 이 공간을 제척하고 있어 연안관리에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 환경관리 해역의 경우 오염물질관리만 해양환경관리법에서 정하고 있어 연안관리와 연계가 크게 부족하여 이를 보완하고자 함. 다만, 부내 협의를 통하여 각 법에서 정하는 계획 간에 상충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정이 필요함.

2. 기존 연안관리지역계획의 연안구역과의 상충여부

- 2002년부터 수립하고 있는 연안관리지역계획은 정부의 지원과 기초지자체의 자발적인 의지를 바탕으로 2006년말현재까지 38개 시군구에서 수립을 완료하였으며 2008년 하반기까지 전 연안시군구에서의 수립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음.
- 연안용도구역제도가 도입되면 기존의 연안관리지역계획에서 정한 연안구역은 변경이 불가피하며, 기존의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과정을 통하여 지역의 개발수요가 반영되고 공청회 등에서 나타난 주민의견이 융통성 있게 반영되던 과정이 생략됨으로서 현재의 지역계획보다 한층 강화된 양상을 나타낼 수밖에 없음.
- 또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할 가능성이 있는 개발유도연안, 개발조정연안, 이용연안의 경우 이용행위가 제한되는 보전연안구역으로 변경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고 재수립시 이러한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조정해 나갈 것임.
- 새로운 연안용도구역제도의 도입결과를 2006.8월에 고시된 가로림만 연안관리지역계획의 사례를 가지고 살펴보면 연안육역에서는 새로운 제도의 도입에 따른 기준명확화로 이용 및 개발용도의 면적이 크게 줄어들지만, 해역의 경우 거의 변동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다른 연안관리지역계획의 결과에서도 유사한 현상을 보일 것으로 전망됨.
- 그러나 이미 수립된 지역계획의 경우 이러한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부여하여 현 체계를 유지시킬 필요가 있고, 연안관리법이 개정되기 이전에 수립될 지역계획에서는 연안기능구를 명확하게 분류하고 이를 별도로 도면화하여 향후 개정되는 법에 따라 변경이 용이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며, 지역주민과의 협의시 이러한 여건을 충분히 설명하여 변경으로 인하여 새로운 갈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3. 연안육역에 대한 중복관리

- 동일한 공간에 대하여 중복적인 관리라는 비판적인 시각에도 불구하고 연안육역에 대한 관리는 연안관리의 중심적인 요인이 될 수밖에 없으며 이에 대한 협의권의 확보는 최소한의 대응수단으로 판단됨.
- 연안용도구역제도는 연안관리수단 중 가장 선진적인 방법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의 도입은 연안통합관리의 정책적 효과를 제고하고 연안국토의 합리적 관리를 위한 것으로 기존의 법률과 제도에서 반영되지 않은 연안의 특성 및 이들과의 연계성을 고려한 국토의 보전·이용 및 개발행위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조치임.

4. 연안육역과 연안해역의 상이한 관리체계

- 해역과 육역의 관리는 다음의 관점에서 상이점을 보임.
 - 재산권 이해관계가 상이함. 즉 육역의 경우 명확한 권리관계와 시장경제가 구축되어 있는 반면, 해역의 경우 공공재로서의 기능이 강하고 시장경제에서 가치를 판단하기 힘든 여건에 있음.
 - 구획관리(zoning)는 사유지에서의 사적인 행위를 계획 또는 규제하기 위하여 활용되는 것으로 해역은 기본적으로 사적인 행위제한을 실시하기 어려움
- 따라서 사유재산권이 확립된 육역과 그러하지 못한 해역, 배타적이용이 이루어지는 육역과 다면적 이용이 가능한 해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차별성을 갖는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병존가능행위의 설정과 이용우선순위부여방식의 도입을 통한 다면적 이용의 가능성을 보장하고자 함.
- 본 연구에서 제시된 18개 연안기능구 간의 병존가능성을 비교한 결과 병존가능성 지수가 가장 높은 연안기능구는 해양조사구로 나타났으며 환경관리구, 수산생물자원보호구, 항만구, 생태보호구, 이용유보구 등이 높은 수치를 보임.

제5절 주요 외국의 사례

1. 미국 로드아일랜드주의 연안역 용도구역 지정 사례

- 연안역 용도구역제를 도입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는 미국의 로드아일랜드 주 (면적: 3,144km², 해안선 길이: 676km)는 1971년에 제정된 '로드아일랜드 연안역관리법'에 근거하여 연안역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연안해역의 경우 보전해역, 저밀도 이용해역, 고밀도 遊船(Boating)해역, 다목적 해역, 상업 및 레크레이션 항만해역, 공업해안 및 상업항로 해역 등 6가지 용도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음

2. 미국 플로리다주 국립해양서식처 보호지의 용도구역 지정 사례

- 플로리다 주는 1990년에 제정된 Florida Keys National Marine Sanctuary and Protection Act에 의거하여 '국립해양서식처 보호지 (해역면적: 9,604km²)'를 다음과 같이 5개의 용도 구역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음.
 - 야생동물 관리지역 : 접근금지 지역, 자동차이용금지 지역, 자동차 저속이용 지역 등이 포함. 접근을 제한함으로써 야생동물의 서식환경 보호
 - 복원지역 : 광역의 다양한 서식처 포함. 다양한 서식처의 보호 및 보전을 목적으로 함
 - 서식처 보전지역 : 소비성 및 비소비성 이용행위들 간에 높은 강도의 상충문제가 발생하는 지역으로 특히 사람들이 많이 애용하는 천해의 산호초 지역
 - 현행관리지역 : 현재 이미 다른 기관 및 프로그램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지역
 - 특별이용지역 : 교육, 과학조사, 복원, 모니터링 등의 특별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지역

3. Virgin Island의 연안역 용도구역 지정 사례

- Virgin Island (면적: 342km², 해안선: 282km)의 연안역관리 프로그램은 망그로브, 산호초, 섬 등 '연안해역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지역'과 '세 개 주요도서의 육지부분'을 관리대상으로 하는데, 각 지역들은 '토지 및 해수이용계획'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음. '토지 및 해수이용계획'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은 종합적인 용도구역 지정으로 구성됨.

- 보전지역 : 망그로브, 산호초 등이 분포하는 지역. 제한된 여가활동 및 과학조사 허용
- 보존, 보전 및 전통적 이용지역 : 도시 워터프론트, 해변, 산호초, 염습지 등이 분포하는 지역. 농업, 임업, 전통적 어업, 해역의존적 여가활동 허용
- 해역의존적 상업 및 해양시설지역 : 개발된 해안, 모래해안 등이 분포하는 지역. 연안에 위치해야할 해양상업시설 및 저밀도 항만시설 허용
- 해역의존 및 해양관련 산업시설지역 : 개발된 해안·연안입지를 요구하는 고밀도 항만 및 상업, 산업행위 허용

4. 호주 대보초(Great Barrier Reef)지역의 연안역 용도구역 지정 사례

- 호주는 대보초(Great Barrier Reef)지역 (총길이: 2,012km)을 보호하기 위해 1975년 Great Barrier Reef Marine Park Act를 제정하고 구역별로 다양한 용도구역 지정계획을 수립하였음.
- 대표적인 사례로 Cairns Section의 경우는 용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7개지역으로 구분하고 있음.
 - 일반이용 지역 : 지역의 장기보전목적에 부합되는 다양한 여가 및 상업활동이 가능한 지역
 - 서식처 보호 지역 : 다양한 여가 및 상업활동은 허용하지만 트롤어업 활동 제한
 - 염하구 보존 지역 : 다양한 상업 및 여가활동을 허용하면서 염하구의 식생, 자연조류현상 등을 보호
 - 보존 공원 지역 : 제한된 낚시활동을 포함하여 여가활동 허용
 - 완충지역 : 여가활동을 허용하면서 보호
 - 국립 공원 지역 :관광객의 접근을 허용하면서 보호
 - 보전지역 : 관광객의 접근을 제한하면서 강력하게 보호

5. 터어키의 연안역 용도구역 지정 사례

- 터어키(면적: 780,580km², 해안선: 7,200km)는 1992년에 제정된 ‘연안역관리법’에 근거하여 연안역 용도구역제를 도입하였는데, 해안선에 평행하게 지역을 구분하여 해안선에서 가까울수록 행위제한을 강하게 부과하였음

- Shore Zone
 - 해안선과 해안 임계선 (shore edge line) 사이
 - 해안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 골재채취 등 금지
 - 토지이용허가권 필요
 - 항만, 어항, 교각, 등대, 부두, 방파제 등 해안보호 및 공익을 위한 해안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의 설치
 - 조선, 선박의 해체, 양식 등 행위의 성격상 육상에 위치할 수 없는 행위들을 위한 시설물
- Zone A
 - Shore zone으로부터 50m 너비의 해안대
 - 위에서 제시된 이용행위를 제외한 다른 종류의 건축행위는 허용안함.
 - 보행자 접근, 도보관광, 여가목적 허용
- Zone B
 - Zone A로부터 나머지 해안지대 (최소한 50m)
 - 도로, 공공여가·관광시설, 하수처리시설 등만 토지이용허가의 취득에 의해 가능

6. 중국 샤먼 해역 용도기능구역제

- 샤먼의 '해역 용도기능구역제'는 다양한 이용행위에 따른 이해상충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됨. 해양전문가그룹은 생태적·사회경제적 조건을 동시에 고려하여 이용행위에 관한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이해상충을 완화하며 생태계 보전과 연안자원 이용에 따른 사회경제적 이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식을 채택함.
- 9개의 용도기능구역으로 분류함.
 - 해운/항만 구역; 관광구역; 양식구역; 연안산업구역; 해양과학기술구역; 채광구역; 자연보호구역; 특수용도구역; 복원구역.
- 해역이용의 우선순위는 우선적, 조화적, 제한적 이용으로 설정하고, 용도구역내 이용우선순위는 주로 사회·경제적 이익 및 환경적인 영향에 의해 결정함.

7. PEMSEA의 연안용도구역제

- PEMSEA(동아시아해역 환경관리기구)는 연안통합관리의 구체적인 실천방안으로 용도구역의 설정을 통한 관리방식을 제안하고 있음.
- 연안용도구역의 분류방법으로는 아래와 같은 3가지 방식을 제시하고 있음.
 - ① 개발정도에 따른 분류 : 개발구역, 완충구역, 보전구역
 - ② 연안이용의 기능에 따른 분류 : 항만해운구, 관광구, 양식구, 산업구, 과학구, 광업구, 자연보호구, 특수구, 재개발구, 유보구
 - ③ 행위의 허용 및 병존정도에 따른 분류 : 제한이용구(특정수질에서 허용행위), 배타적 이용구(병존불가이용구), 다면이용구(병존가능이용구)

제5장 자연해안·서식지 손실 방지제도 도입

제1절 연구의 개요

- 국립해양조사원이 2001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전국 자연해안 조사결과에 따르면, 인천과 경기연안(도서제외)의 자연해안선은 당시 조사 대상 전체 해안선의 1%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음(국립해양조사원, 2002).
- 또한 자연해안·서식지 중 연안습지 생태계의 기능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갯벌은 간척과 매립으로 1988~2005년 기간 동안 25%이상이 손실된 것으로 나타났음(해양수산부, 2005).
- 생산력이 높고, 생태적·경제적 가치가 큰 것으로 알려진 하구역 습지는 제2차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이 완료되는 2011년에 최대 30%이상이 손실될 것이란 연구결과가 있음(이창희 외, 2001).
- 한편 대통령 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연안·해양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에 따르면 우리나라 서해안의 주요 서식지 10개소 중 2개소만이 산란 및 서식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음(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2005).

- 따라서 앞으로 우리나라 자연해안과 서식지 관리정책은 '보호구역 지정과 관리'중심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전체 자연환경 및 서식지의 면적과 기능을 유지(anti-degradation) 및 증진(enhancement)하는 관점'에서 시행할 필요가 있음.

제2절 자연해안 및 연안서식지 관리 문제점

1. 자연해안 및 서식지 개념

- 우리나라 법제도에는 해안, 자연해안, 인공해안에 관한 법률적 정의나 유형을 구분하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국립조사원에서는 해안조사를 실시하면서 다음과 같이 자연해안과 인공해안을 구분하고 있음.
 - 인공해안 : 방파제, 방조제, 사석, 호안-해안도로, 안벽
 - 자연해안 : 갯벌해안, 모래해안, 암반해안, 혼합해안
- 그러나 이러한 기준은 해안선에 인공적인 구조물이나 시설물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해안을 구분하고 있는바
 - 방파제, 방조제외에 사석, 호안, 해안도로, 안벽은 평소에 해수와 직접 접촉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며, 만조수위선 상부에 존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범위를 지정하지 않을 경우 유형분류에 한계가 있음.
- 이러한 여건을 고려할 때 자연해안은 사전적 정의, 관리목적상 정의 등을 통합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음.

<자연해안의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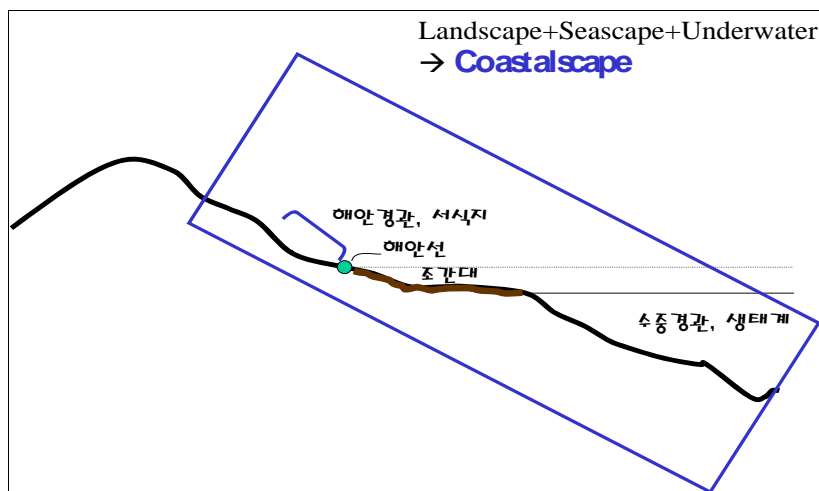
- '바다에 면한 육지 가운데 파랑과 조석 등의 영향을 직접 받는 띠모양의 지역 중 만조수위선에서 최초의 육상식생이 나타나는 지역까지 도로, 방파제, 방조제 등 어떠한 인공구조물도 설치되어 있지 않은 해안'
- 자연해안에는 암반해안, 모래해안, 갯벌해안, 혼합해안으로 구분할 수 있음.

- 국내 법령에서도 서식지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은 정의하고 있지 않음.
 - 생태계를 다루는 법률이나 일반적인 국토관리를 다루는 법률에서도 서식지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을 법적으로 정의하고 있지 않음.
-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서식지는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음.

<연안서식지의 정의>

- '상업적 유용생물종, 연안식생, 보호가치가 높은 생물종의 (산란)생육, 생식이 이루어지는 암반, 갯벌, 모래, 해양저질 분포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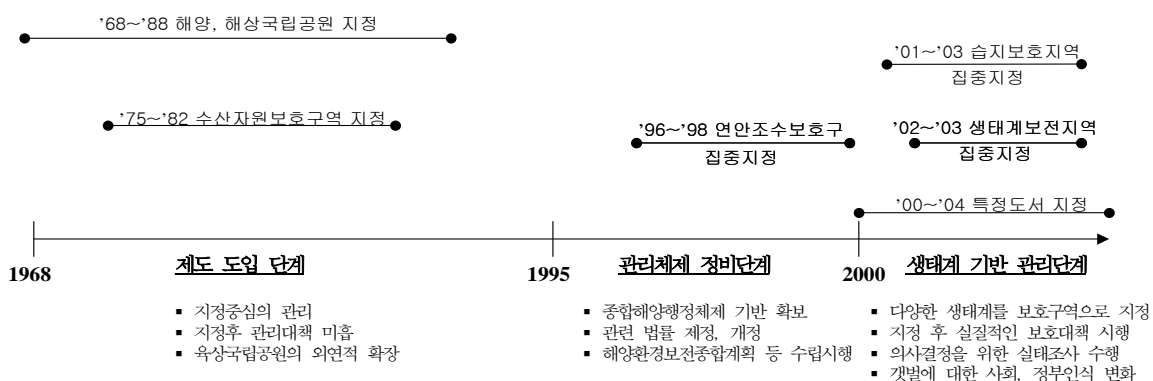
- 현재 일반적으로 알려진 연안서식지는 만, 갯벌, 사구, 암반조간대 등이며, 법률적으로 지정된 좁은 의미의 서식지는 수산자원보호구역(보호수면 등 포함), 야생동식물 보호지역, 특정도서, 천연기념물(생물종) 및 서식지역, 습지보호지역, 생태계보전지역(육지와 해양) 등임.
- 자연해안에 대한 훼손이나 잠재적 훼손 위협은 자연해안과 연결된 연안서식지에 대한 훼손위험이 될 수 있음. 따라서 자연해안-조간대-해중을 하나의 관리단위로 설정하고 이를 광의의 연안경관(Coastalscape)으로 규정하여 관리하여야 함.
- 이는 생태적 연결성을 기준으로 설정한 개념으로, 이러한 생태적 연결성 및 연안경관 개념에 비추어 볼 때 연안관리범위에서 하천구역이 제외된 현재의 법제는 개선이 필요함.



[요약 그림-3] 생태적 연결성을 고려한 연안경관 개념도

2. 자연해안 및 서식지 분포 현황

- 남정호(2004)에 따르면 자연해안과 연안해역 서식지 보호의 측면에서 우리나라 자연해안·서식지 관리정책은 크게 '제도 도입단계: 보호구역 지정 중심의 관리단계(1960년대~1990년대 초반)', '관리체제 정비단계 : 관련 법률 제정 및 정책시행 기반 구축(1990년대 중반~2000년)', '생태계 기반 관리 단계 : 해양생물종다양성 보호를 위한 다양한 생태계의 보호와 관리(2000년~)'으로 구분할 수 있음.



[요약 그림-4] 자연해안·서식지 관리정책 발달 과정

- 현재 자연해안과 서식지에 대한 정확한 자료는 파악되지 않고 있음. 국립조사원에서 전국해안을 대상으로 한 해안선조사나 환경부에서 1990년대 중반에 수행한 자연환경조사-해안지역-가 현재 자연해안에 대한 조사의 전부임.
- 연안서식지의 경우 갯벌의 생태계 및 지속가능한 이용정책을 개발할 목적으로 1999년부터 수행한 조사가 유일한바, 2006년부터 해양생태계조사를 병행하고 있어 향후 연안서식지에 관한 자료의 축적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요약 표-13> 우리나라의 연안·해양보호구역 지정현황

보호구역 명칭	개소	면적(km ²)	관련 부처	관련법령
생태계보전지역	5	104.573	환경부, 해양수산부	자연환경보전법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습지보호지역	7	174.993	환경부, 해양수산부	습지보전법
야생동식물보호구역	86	149.560	환경부	야생동식물보호법
특정도서	155	10.223	환경부	독도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국립공원	4	3,348.430	환경부	자연공원법
환경보전해역	4	2,192.770	해양수산부	해양오염방지법
수산자원보호구역	10	2,555.970	해양수산부, 건설교통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천연기념물	152	737.500	문화재청	문화재보호법
계	423	9,274.019	4	8

자료 : 남정호 외, 2004. 연안·해양보호구역 통합관리방안.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주: 천연기념물에는 명승을 포함함.

3. 자연해안 및 서식지 관리 문제점

- 연안관리제도 도입, 공유수면매립정책 개선에도 불구하고 자연해안, 서식지에 대한 물리적 훼손 진행
- 자연해안과 서식지에 대한 인식 미흡, 관리정책의 취약으로 해안 및 서식지의 체계적 관리에 한계(National Agenda 부재)
- 자연해안 및 서식지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자료의 부족 및 기존자료의 부정확
- 자연해안 및 서식지에 대한 개념과 국가정책 미정립

제3절 자연해안·서식지 관리 외국사례 및 시사점

1. 미국사례

- 미국의 서식지 순손실 방지정책의 기원은 1972년 미국 수질환경보전법(Clean Water Act, CWA) 제404조임.⁴⁾
- 수질환경보전법 제404조에서 제시한 서식지의 순손실 방지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것은 1987년 미국환경보호청(EPA)의 국가습지정책포럼(national wetlands policy forum)의 성과를 토대로 1989년 부시행정부의 대통령지침(presidential mandate)으로 확정되면서부터임.
- 국가습지정책포럼에서는 습지관리에 관한 단기목표를 '순손실제로화(no overall net loss)'로, 장기목표로는 순증(net gain)을 설정하였음.
 - 순손실제로화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이외에도 농업용 토지확보를 위해 습지매립을 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Farm Bill의 규정인 Swampbuster과 멸종위기종보호법(Endangered Species Act)이 있음.
- 미국 서식지 순손실 방지정책은 초기에는 면적을 기준으로 시행하였으나, 최근 들어 서식지 면적과 기능을 함께 고려하는 정책으로 전환되고 있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음.
- 한편 최근 들어 유역(watershed)내의 환경과 생물자원, 서식지를 함께 관리하는 정책을 채택하고 있는데, 미국은 이러한 통합적 접근을 실현하기 위해 연방정부 차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음
- 서식지와 생태계 보호를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복원정책을 토대로 서식지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수단의 우선순위와 절차를 개발하여 적용하는 것이 미국 NNL의 특징임.
- 이러한 순손실방지정책을 통해 미국의 경우 1989년부터 1992년까지 631.33km²의 습지가 사라졌으나, 이 기간동안 3,378.84km²의 습지를 복원하는 효과를 거두었음(Tolman, 1997).

4) "issue permits, after notice and opportunity for public hearings for the discharge of dredged or fill material into navigable waters at specified disposal sites"

2. 캐나다 프레이저 만

- 캐나다는 1991년 연방습지보전정책을 수립하면서 순손실방지 정책(mitigation)⁵⁾을 도입하였는데, 순손실 방지정책의 구체적인 시행방안은 지역별로 다르게 나타남
- 프레이저만 하구환경관리프로그램(FREMP)은 1977년에 출범하였는데, 하구환경관리프로그램 운영하면서 관리계획 수립 및 관련 부처간의 상호 연계성, 정책 및 기능의 조화에 중심을 두고 있음.
- 1985년에 조직한 Fraser River Estuary Management Program(FREMP)에는 6개의 관련부처와 기관들이 구성원으로 참여하고 있음.
 - 환경부(Environment Canada), 수산해양부(Fisheries and Oceans Canada), 물·토지·공기보호부(Ministry of Water, Land and Air Protection, 프레이저 북부 항만청(North Fraser Port Authority), 프레이저강 항만청(Fraser River Port Authority), 밴쿠버지역청(Greater Vancouver Regional District)
- 하구에 관련한 합리적 조정과 의사결정을 통해 유역을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이용하는 것이 목적인 FREMP는 7가지 하위 실천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음.⁶⁾
- 7가지 실천계획 중 어류 및 야생서식지 보호 실천계획(Fish and Wildlife habitat action Program)에서는 해안과 서식지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해안을 3개의 유형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음.
- Red Code(High Productivity) Habitat : Red code 지역은 중요한 수산생물과 야생동식물들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생산성이 풍부하고 다양한 서식지가 있는 곳임. 서식지의 손실이 불가피 할 경우 이것을 상쇄할 수 있는 대체습지(habitat compensation)를 해당지역 또는 주변에 개발 전에 조성해야 함.
 - 기본적으로 이 코드에 해당하는 지역은 개발이 제한되어 있으며, 불가피하게 개발이 필요한 경우 대체습지를 조성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 정책은 미국의 순손실방지정책(mitigation)과 동일함.

5) 생태계교란없이 자연적 생산능력 유지→개발사업 위치변경을 통한 영향 저감→개발계획 조정과 변경을 통한 영향저감→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여 영향 최소화→대체서식지 조정과 같은 보완조치 시행

6) ① An Action Program to integrate the Plan, ② Water and Sediment Action Program, ③ Fish and Wildlife Habitat Action Program, ④ Navigation and Dredging Action Program, ⑤ Log Management Action Program, ⑥ Industrial and Urban Development Action Program, ⑦ Recreation Action Program

- Yellow Code(Moderate Productivity) Habitat : 이 지역 서식지의 가치와 기능은 일반적인 수준을 보이는 지역임. 따라서 부분적으로 이용과 개발이 가능하지만, 사업 설계시 복원과 보상평가가 포함되어야 함. 서식지 기능과 생물에 미치는 불가피한 영향에 대한 보상을 생각하기 전에 최대한 가능한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야할 것임.
- Green Code(Low Productivity) Habitat : 이 지역은 항만, 주거, 도시개발로 서식지의 기능이 매우 제한되어 있는 지역인 바, 개발이 가능함.

3. 유럽사례

1) 발트해 사례

- 발트해7)는 유엔환경계획(UNEP)에서 해양환경·자원관리를 위한 특화된 정책인 지역해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시작한 1974년에 발트해 관리를 위한 협약을 채택하여 협력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협력프로그램의 법적 근거인 발트해 해양환경보호 협약(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Marine Environment of the Baltic Sea Area, Helsinki Convention(헬싱키 협약))은 육상, 해양, 대기 등 모든 해양오염원 관리에 관한 세계 최초의 국제협약임.
- 발트해의 서식지 및 자연해안을 다루는 제도는 발트해 환경관리종합계획(Baltic Sea Joint Comprehensive Environment Action Programme, JCP)의 습지 및 서식지 관리분야 계획인 "HELCOM HABITAT"임.
- 그러나 해안 및 서식지 보호를 위한 제도는 회원국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하고 있음.

7) 발트해는 덴마크와 스웨덴 사이의 협해를 통해 북해와 연결되어 있고 외해와의 해수순환은 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폐쇄성 해역임. 200여개의 강과 하천을 통해 유입되는 대량의 담수로 인해 평균염분도는 20%이하를 유지하고 있는 세계 최대의 기수해(brackish waters)로서, 해양·연안생태계는 담수생물과 해양생물이 공존하며 높은 생산력과 생물종다양성을 유지하고 있음.

<요약 표-14> 발트해 연안국가의 개발제한선 현황

국가	개발제한선 현황
독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변보호를 위해 해안으로부터 300m ○ 해양서식지 보호를 위해 해역에 대해서도 해안으로부터 100m, 500m, 1,000 이용제한 구역 설정
핀란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엄격한 개발제한선 제도는 없으나, 해안에서 100-200m
폴란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에서 육지방향으로 100-200m ○ 일부지역은 1,000m이며, 행위제한은 2-5km까지 가능
러시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외곽 1,000m 지역

- 발트해 연안국가에서 서식지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은 조직체계에서 나타나는데, HELCOM(헬싱키 협약)에서는 서식지 관리를 연안관리와 연계하여 시행하고 있음.

제4절 순손실 방지제 도입방안

1. 순손실방지제의 개념과 기본방향

- 자연해안 및 서식지의 순손실 방지제는 다음과 같이 개념을 설정할 수 있음.

‘연안과 해양에 소재하고 있는 자연해안·서식지의 다양한 가치를 보전하고 생태적 기능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자연환경 관리목표를 자연해안선의 길이, 서식지의 면적과 기능으로 설정하여 자연해안과 서식지를 관리하는 제도’

- 순손실방지제의 개념에 기초하여 자연해안 및 서식지 관리의 기본방향을 자연해안과 서식지의 상태 유지(Anti-degradation)와 건강성 증진(Enhancement)으로 설정할 수 있음.
- 자연해안 및 서식지의 순손실 방지제 도입을 위한 기본원칙으로는 다음의 세가지를 제시할 수 있음.
 - 가용한 현재의 자료에 기초한 관리우선순위 설정

- 관리우선순위에 기초한 점진적 접근
- 합리적 정책 시행을 위한 조사연구의 강화
- 사례지역 선정을 통한 정책정당성 확보 등임.

2. 순손실방지제 시행을 위한 정책방향

- 우리나라 자연해안과 서식지 관리정책은 '보호구역 지정과 관리'중심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전체 자연환경 및 서식지의 면적과 기능을 유지(anti-degradation)·증진(enhancement)하는 관점'에서 시행하도록 함.
- 자연해안·서식지 총량관리제 시행을 위해서는 해안선과 조간대 중심의 평면적 관리가 아닌 해안경관, 수중경관, 수중생태계를 포괄하는 입체적 관리가 시행되어야 함.
- 순손실 방지제를 시행하기 위한 기본사항을 우리나라 연안관리정책에 명시하고, 세부 규정을 하위법령 또는 관련 법률에 위임하여, 「공간관리 정책」과 「자연환경보전정책」사이의 유기적 연계와 통합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함.
- 특히 다른 법률에 의한 서식지 관리, 생태계 보호, 육상공간관리와 중복될 가능성이 있는바, 연안관리법에서는 통합과 조정을 위한 정책적 틀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함.
- 자연해안과 서식지는 행정적 관리단위, 법률에 의한 기계적 구분으로 분리하여 관리할 경우 공간의 생태적 연결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연안의 체계적 관리에 한계를 유발할 수 있음.
- 따라서 이미 다른 법령에 의해 실질적으로 유역관리가 시행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초기 입법당시 고려되었던 부처간 기능존중의 원칙은 제고될 필요가 있음.
- 특별관리해역 및 환경보전해역은 연안관리법에 의한 연안의 범위보다 육지부 연장이 확대되어있어, 실질적인 연안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음. 따라서 개별법에 의해 실효적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동 해역을 연안관리범위로 수용하도록 함.
- 현재 공유수면 및 갯벌에 대한 간척·매립의 엄격한 적용으로 중·대규모의 자연해안 및 서식지 훼손은 통제가 가능한 실정임. 그러나 소규모 개발 사업이나 점사용 형태의 공유수면매립사업은 중앙부처의 체계적 관리통제 범위 밖에 있는 한계가 있음.

- 따라서 중소기업 매립 및 점·사용 형태 매립사업의 체계적 관리 필요하며, 시범적으로
는정책실효성을 높이고 정부간 신뢰도 향상을 위해 “대규모 자연해안·서식지 추가손
실 방지 국가선언”과 같은 국가아젠다를 확정하여 시행하도록 함.
- 자연해안 및 연안서식지에 대한 개념이 정의되어 있지 않고, 일반적인 공유수면 관리(해
변관리 포함), 갯벌보전 및 해양생태계보전에 한정
 - 지정된 공간에 대한 관리정책(site-specific approach)이 아니라, 연안이라는 공간에 대
한 포괄적, 통합적 관리측면에서 접근/framework approach) 필요
- 자연해안 및 연안서식지에 법정 조사 강화 및 관련 자료 간 통합운영 체계 구축
 - 현재 국립해양조사원이 수행하고 있는 해안선 조사의 내용과 방법을 보강하여 자연해
안에 대한 조사체계를 강화하도록 함.
 - 해양수산부 내의 법정조사 뿐만 아니라, 환경부가 관장하는 법률에 근거한 법정조사
시스템을 통합 운영하여 최소한 부처간 조사체계에 대해서는 조사일정, 방법, 자료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여 풍부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함.
- 자연해안·서식지의 분류는 자연해안·서식지의 단위구분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에
서 출발하도록 함.
- 자연해안 및 서식지 국가통합 조사전략 수립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와 환경부로 이원화
된 조사시스템의 통합하도록 함.
- 자연해안 및 서식지 보호뿐만 아니라 연안재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특정지역의 일정한
구간(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지정)에 대해서는 연안완충대 지정제도를 도입
하여, 현재 추진 중인 연안용지역제 및 다른 법률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 서식지 및 생태
계보전정책과 연계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함.
- 전국자연해안 및 서식지에 대한 실태파악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관리목표를 구
체적으로 수치화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 자연해안 및 서식지에 대한 실태조사와 현재·
미래의 이용개발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1단계(향후 5년)
에서는 관리목표를 정성적으로 제시하도록 함.
- 상기한 바와 같이 자연해안 및 서식지 손실 방지정책은 과학적이고 종합적인 조사전
략에 근거한 자료의 체계적인 축적을 필요로 하므로 현재 여건에서 손실 방지정책을
전면적으로 시행하기에는 자료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지만, 가용한 자료가 확보되어 있거
나 법적 근거를 확보한 서식지 또는 사례지역에 대해서는 우선시행하도록 함.

제6장 연안관리법 개정안

제1절 연안관리법 전부개정안

- 본 개정안은 연안을 용도구역으로 구분하여 이용 상의 갈등을 조정하고 계획적인 연안 이용을 실현하도록 하였으며, 연안완충대와 자연해안 및 연안서식지 순손실방지제 같은 환경친화적인 관리수단을 도입함으로써 해양국토관리의 체계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또한 연안계획(통합계획 및 지역계획)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그 수립과 승인, 집행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자체 주도의 자율적 연안관리 기반에 중점으로 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그러나 본 연안관리법 개정은 연안이용에 대한 전반적인 재조정과 합의가 동반되어야 하는 과정이므로 세부적인 시행방안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와 관계전문가를 중심으로 충분한 협의와 논의과정을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시범사업 등을 통하여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사전대응방안 마련이 요구된다고 판단됨.
- 그리고 기존에 수립된 연안관리지역계획이 큰 무리 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두어 대응시간을 부여할 필요가 있으며, 기 확정된 연안이용에 대해서는 최대한 이를 반영하여 국가정책추진을 뒷받침하되, 이를 수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 연안관리자와의 협의 과정을 두어 무리한 연안개발이나 서식지 훼손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조정해 나가야 하며, 기 설정된 규제에 더하여 추가적인 규제는 최소화 하는 방안을 고려해 나가야 할 것임. 또한 보다 과학적인 제도 도입을 위하여 관련 조사 및 정보를 체계화하여 정책의사 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연안적성평가를 도입하여 각 연안구역의 특성이 고려된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음.
- 점증하고 있는 연안재해에 대한 피해를 저감하여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보호하여 공공용재산인 바다의 공적이용을 강화하기 위하여 제한된 범위 내에서 연안완충대를 설치하여 순응적 연안관리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이의 도입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기반을 마련하였음.



[요약 그림-5] 연안관리제도 개선을 통한 해양국토 관리 개념도

목 차

요 약 문	(1)
제1장 서론	1
1. 머리글	3
2. 연구내용	5
3. 연구방법	5
4. 연구의 추진경위	6
5. 연구 추진체계	6
제2장 연안관리제도의 성과와 한계	7
제1절 우리나라 연안의 모습	9
1. 연안의 현황	9
2. 관리 현황	16
제2절 연안관리의 성과	7
1. 연안관리의 체계적·제도적 관리기반 구축	7· 1
2. 국가 연안통합관리정책의 수립·시행	9 1
3.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연안관리체계 도입	0· 2
4. 체계적인 연안정비사업의 토대 마련	0 2
5. 환경친화적 공유수면매립 정책으로의 전환	1· 2
6. 연안실태조사 실시 및 연안관리정보시스템 구축	2· 2
7. 국제적 위상제고 및 연안관리연구의 활성화	3· 2
제3절 국내 연안관리제도	4
1. 연안관리법의 주요 내용과 한계	42

2. 관련 개별법률	3
제4절 외국의 연안관리제도	83
1. 미국의 연안관리제도	8
2. 캐나다의 연안관리제도	94
3. 중국의 연안관리제도	7
4. 일본의 연안·해양관련 체계	16
5. 호주의 연안관리정책	7
제5절 연안관리법의 제도적 문제점	27
1. 선진국 연안관련법과의 비교를 통한 문제점	2· 7
2. 연안관리법의 국내 시행과정을 통한 문제점	3· 7
제6절 우리나라 연안관리정책의 운영실태 및 문제점	5· 7
1. 연안통합관리계획의 추진실적 분석 및 부진사업의 문제점 분석	5· 7
2. 연안관리지역계획의 현황 및 문제점 분석	6· 7
3. 연안정비사업의 현황 및 문제점 분석	9· 7
제3장 연안관리제도의 개선방안	81
제1절 현행 연안관리법의 문제점 도출	3· 8
제2절 연안관리법 개선방안	88
1. 해양국토관리를 위한 위상제고 및 실효성 확보	8· 8
2. 통합계획 및 지역계획의 절차 등 관리체계 개선	2· 9
3. 연안관리의 실효적 관리수단의 미비	8· 9
4. 연안의 통합관리를 위한 해양수산부의 조정기능 강화	401
제4장 연안용도구역제	109
제1절 토지에서의 용도지역제도	1
1. 토지에서의 이용행위 규제 개요	1
2. 용도지역제도	112

3. 용도지구제도	118
4. 용도구역제도	120
5. 용도구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의 비교	2
6. 토지이용관리정책의 최근 변화	2
제2절 연안용도구역제도	9
1. 제도도입의 필요성	19
2. 연안용도구역제도의 도입목적	9
3. 우리나라 연안해역의 구역 등 지정 및 이용현황	61
4. 연안용도구역제도의 원칙	4
5. 연안용도구역 및 연안기능구의 설정방안	24
6. 연안용도구역제의 경제적 영향	4
제3절 연안완충대 개념의 도입	8
제4절 연안용도구역제도 도입에 따른 예상문제점 및 대응방안	0-5 1
1. 연안육역에 대한 추가적인 규제도입 문제	6
2. 기존 연안관리지역계획의 연안구역과의 상충여부	25 1
3. 연안육역에 대한 중복관리	6
4. 연안육역과 연안해역의 상이한 관리체계	4
5. 구획설정에 활용할 정보의 구축여부	8
제5절 해양수산부 의향조사 결과	1
제6절 주요 외국의 사례	18
1. 미국 로드아일랜드주의 연안역 용도구역 지정 사례	87 1
2. 미국 플로리다주 국립해양서식처 보호지의 용도구역 지정 사례	0-8 1
3. Virgin Island의 연안역 용도구역 지정 사례	8
4. 호주 대보초(Great Barrier Reef)지역의 연안역 용도구역 지정 사례	18 1
5. 터어키의 연안역 용도구역 지정 사례	3
6. 중국 샤먼 해역 용도기능구역제	8
7. PEMSEA의 연안용도구역제	18

제5장 자연해안·서식지 순손실 방지제도 도입	189
제1절 연구의 개요	191
1. 연구의 필요성 및 배경	191
2. 연구의 주요 내용 및 수행 방법	199
제2절 자연해안 및 연안서식지 관리 문제점	191
1. 자연해안 및 서식지 개념	195
2. 자연해안 및 서식지 분포 현황	199
3. 자연해안 및 서식지 관리 문제점	200
제3절 자연해안·서식지 관리 외국사례 및 시사점	2012
1. 미국사례	210
2. 캐나다 프레이저 만	212
3. 유럽사례	215
제4절 순손실 방지제 도입방안	2
1. 순손실방지제의 개념과 기본방향	2
2. 순손실방지제 시행을 위한 정책방향	2
제6장 연안관리법 개정안	231
제1절 연안관리법 전부개정안	3
제2절 연안관리법 신구법 대비표(안)	3
참 고 문 헌	337
부록 1 연안용도구역제도 도입을 위한 현황 및 의향조사	343
부록 2 연안관리법 개정 및 선진제도 도입을 위한 전문가 워크숍 개최결과 보고	8·4 3
부록 3 2007 연안관리 제도개선 전문가워크숍 개최결과 보고	163
부록 4 연안관리법 전부개정안 부처협의내용 검토	673
부록 5 우리나라 연안에서의 각종지역 등의 지정과 관리현황	014

부록 6. 토지이용규제를 하는 지역·지구 등(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5조)	1·24
부록 7. 우리나라 산업단지 지정현황	4
부록 8. 현행연안관리법과 하천법의 비교	24
부록 9 일본 해양개발추진계획	4

표목차

<표 2-1> 우리나라의 연안현황	01
<표 2-2> 우리나라의 연안매립 현황(1985년 이후)	4 1
<표 2-3> 서해연안 해안선 비율	21
<표 2-4> 연안침식모니터링 결과 분석	21
<표 2-5> 해안으로 직접 유입되는 하천 현황	4 1
<표 2-6> 우리나라의 방조제 및 하구둑 현황	4 1
<표 2-7> 하구둑 현황	4
<표 2-8> 전국 갯벌에서 도출된 쟁점의 유형별 구분	6 1
<표 2-9> 우리나라 연안통합관리법제 및 연구의 발전단계	8 1
<표 2-10> 제2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수요대비 반영비율	4 2
<표 2-11>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운영 및 행위제한	7 2
<표 2-12> 연안관리 관련 법률현황	82
<표 2-13> 주정부가 연방정부의 지원을 받기 위한 항목	0 4
<표 2-14> 미국 주정부 연안관리프로그램에 포함되어야 할 항목	1 4
<표 2-15> 미국연안관리제도의 주요변화	3 4
<표 2-16> 미국 연안역관리법에 따른 재정지출(2004년)	9 4
<표 2-17> ACAP 지역별 주요 이해당사자 및 주요쟁점	3 5
<표 2-18> ACAP 단계별 내용 및 중점과제	55
<표 2-19> 일본 연안역 및 해양관련 법률 및 조약	4 6
<표 2-20> 일본의 연안 및 해양 주요정책	46
<표 2-21> 일본행정부 내의 주요 해양관계부처간 연락회의	5 6
<표 2-22> 일본의 해양정책에 관한 최근의 정책제언 및 골자	5 6
<표 2-23> 연안에 대한 호주 주정부의 다양한 정의	9 6
<표 2-24> 연안통합관리계획 권역별 정책방향 이행실태 현황	6 7

<표 2-25>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현황(2007. 1월 현재)	7 7
<표 2-26> 연안정비계획 사업별 단계별 투자계획	9 7
<표 3-1> 해양국토관리를 위한 기본법적 위상확보 방안	4 8
<표 3-2> 통합계획/지역계획 절차 및 연안관리의 체계적 접근방안	5 8
<표 3-3> 실질적 연안관리를 위한 관리수단 확보방안	6 8
<표 3-4> 통합관리를 위한 해양수산부의 조정기능강화 방안	7 8
<표 4-1> 국토계획법에서의 용도지역 분류와 지정목적	511
<표 4-2> 우리나라의 용도지역 지정현황(2005.12.31 현재)	81
<표 4-3> 도시관리계획상 도시지역 용도지역 지정현황(2005.12.31 현재)	811
<표 4-4> 용도지구의 구분 및 지정목적	9
<표 4-5> 우리나라 용도지구 지정현황(2005.12.31 현재)	11
<표 4-6> 개발제한구역 지정현황	11
<표 4-7> 토지에서의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비교표	221
<표 4-8> 토지적성평가 지표	13
<표 4-9> 토지적성평가 활용 도면	14
<표 4-10> 사전환경성검토대상 행정계획	11
<표 4-11> 사전환경성검토가 필요한 보전이 필요한 지역 내의 개발사업	5 3 1
<표 4-12> 우리나라 해역에서의 지정가능 구역 등	71
<표 4-13> 해상에서의 면허(허가)구역	10
<표 4-14> 연안용도구역의 설정 목적 및 분류방법(안)	241
<표 4-15> 연안기능구의 지정목적	4
<표 4-16>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지침 상의 연안구역 기능부여 기준	3 5 1
<표 4-17> 기존 연안관리지역계획에서의 연안구역과의 연계방안	4 5 1
<표 4-18> 국토계획상의 용도지역 지정 변천경위	51
<표 4-19> 가로림만 연안관리지역계획의 연안구역 기능부여 기준 및 설정방법	6 5 1
<표 4-20> 가로림만 연안기능부여 기준표	7
<표 4-21> 주민공청회(안)에서의 연안구역별 면적	11

<표 4-22> 최종 고시된 연안구역별 면적	6
<표 4-23> 새로운 연안용도구역제(안)에서의 연안용도구역별 면적	261
<표 4-24> 시간적 특성을 고려한 해양에서의 대표적인 이용행태 분류	561
<표 4-25> 연안기능구간의 병존 가능 및 불가지수 비교	761
<표 4-26> 연안해역에서의 지정 구역등의 활용가능정보	861
<표 4-27> 미국 로드아일랜드주의 연안해역 용도구역 구분 및 관리정책	871
<표 4-28> 미국 로드아일랜드주의 연안육역 지형적 단위구분 및 관리정책	971
<표 4-29> Great Barrier Marine Park의 용도구역별 이용행위 제한	8
<표 4-30> 연안용도구역 설정에 필요한 정보	51
<표 4-31> 연안역의 생태적 특성과 이용간의 연계 매트릭스표	681
<표 4-32> 이용행위간의 병존성 검토	8
<표 5-1> 광역시 및 도별 해안선 길이(시화호내측, 새만금 내측 포함)	302
<표 5-2> 우리나라의 연안·해양보호구역 지정현황	52
<표 5-3> 발트해 연안국가의 개발제한선 현황	72
<표 5-4> 발트해 회원국의 연안보호구역 지정범위 현황	712

그림목차

[그림 1-1] 연안관리의 시대적 변천과 방향	5
[그림 2-1] 우리나라의 연안 및 해역구분	9
[그림 2-2] 1995 - 2004년간 연안재해 피해액	31
[그림 2-3] 1994 - 2005년간 바다골재채취 실적	51
[그림 2-4] 샤먼 연안통합관리 조정 메커니즘	9 5
[그림 2-5] 통합영향평가의 기본체계도	06
[그림 2-6] 호주 퀸즈랜드 ‘연안보호·관리법’상의 연안의 공간적 범위	0... 7
[그림 2-7] 연안정비계획의 사업 구성	08
[그림 4-1] 연속지적도 예시	04
[그림 4-2] 지가현황도 예시	05
[그림 4-3] 생태자연도 예시	06
[그림 4-4] 산림이용기본도 예시	07
[그림 4-5] 임상도 예시	08
[그림 4-6] 토지적성평가 방법	08
[그림 4-7] 연안완충대 개념도	09
[그림 4-8] 가로림만 연안관리지역계획 공청회 당시 도면	851
[그림 4-9] 가로림만 연안관리지역계획 최종승인도면	951
[그림 4-10] 연안용도구역제(안)를 이용한 도면	00
[그림 4-11] 서해연안의 각종 이용행위 분포도	01
[그림 4-12] 샤먼 해역별 용도구역제	08
[그림 4-13] 연안에서의 설정가능 기능구 및 병존성 검토 매트릭스	661
[그림 5-1] 자연해안 및 서식지 손실 방지제 법제도 정비 절차	491
[그림 5-2] 생태적 연결성과 기능을 고려한 연안경관 개념도	991
[그림 5-3] 자연해안·서식지 관리정책 발달 과정	02

[그림 5-4] 자연해안비율(해양수산부)	0
[그림 5-5] 자연해안비율	24
[그림 5-6] 광양만 해역의 해안선 및 지형 변화(1924년과 2002년)	702
[그림 5-7] FREMP 해안유형 구분 예	24
[그림 5-8] HELCOM 조직체계	218
[그림 5-9] 자연해안·서식지 손실 방지제 도입·운영 방향	422
[그림 5-10] 미국 North Carolina의 setback 정책	228
[그림 5-11] 우리나라 갯벌분포 현황	9
[그림 6-1] 연안관리제도 개선을 통한 해양국토 관리 개념도	432

제 1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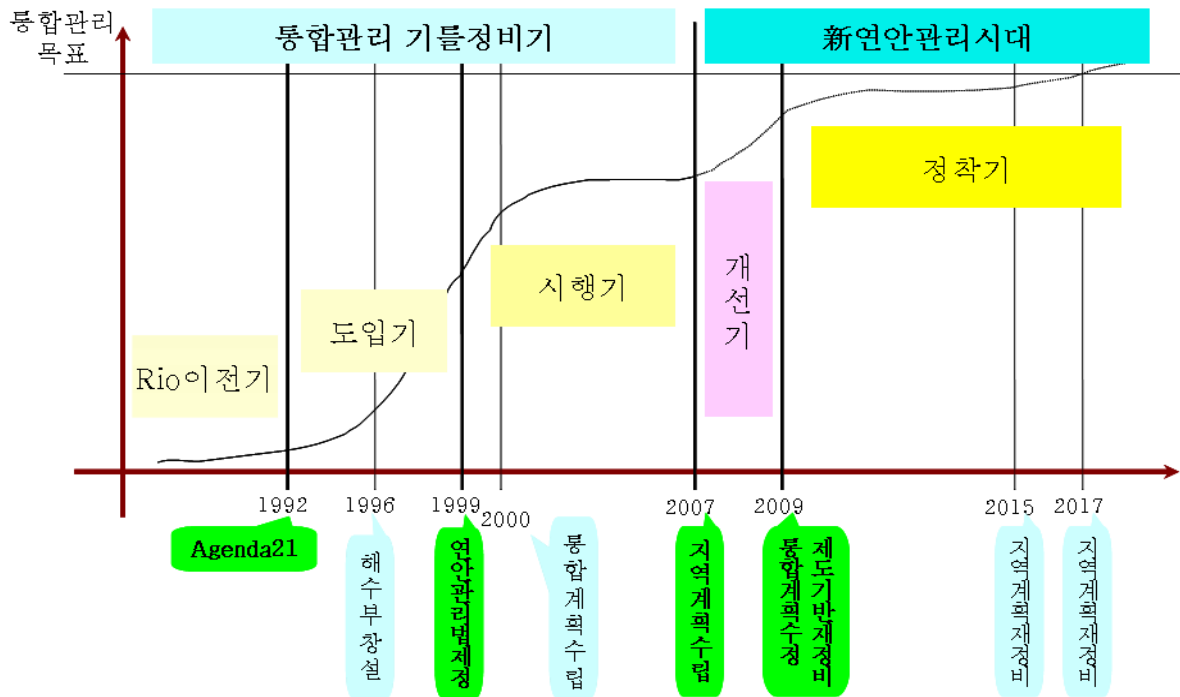
서 론

제1장 서론

1. 머리글

- ‘연안’은 바다와 육지의 생태계가 맞닿아 있는 공간으로 예로부터 인간을 비롯한 다양한 생물의 생활터전은 물론, 발전과 교류를 위한 모험과 도전의 기회를 제공해 주는 공간임.
- 연안은 지금도 전 세계 인구의 80%가 해안으로부터 80km 이내에 거주하고 있으며 해양 산업활동의 근거지일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해양생물이 일생 또는 부분생을 연안서식지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사회, 경제, 생태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가치를 가진 공간임.
- 최근에는 해양의 관할권에 대한 자국주의가 강해지고 있으며 자원전쟁이라고까지 일컬어지는 국내외의 자원확보 노력과 해양 탐사 및 채굴기술의 발전에 따라 수산업과 같은 전통적인 생물자원 이용수요 뿐만 아니라 해저광물자원 또는 해수 자체 등 비생물 자원을 이용하려는 수요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어 바다의 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 또한 주변의 인구밀도가 낮은 연안해역의 경우에는 개발의 용이성 때문에, 인구밀도가 높은 도시연안의 경우에는 저렴한 토지의 공급을 목적으로 매립 등 개발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으며, 해양생태계에 대한 정보의 부족과 겹쳐 무분별한 개발규모 설정과 입지선정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이 나타나고 있음.
- 이와 더불어 해수욕, 마리나 등과 같은 새로운 해양레저를 위한 국민들의 연안 이용수요도 크게 증가하고 있어 국가적인 전략을 토대로 한 효율적인 연안관리정책 추진이 요구되고 있음.
- 한편, 연안해역은 인간활동에 주로 기인하여 필연적으로 인근 유역으로부터 끊임없이 유입되는 오염물질 때문에 환경의 질이 저하되고 있으며, 방조제와 같은 육·해역 단절 인공구조물은 인간에게 그 혜택보다 더 큰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음.
- 1992년 AGENDA 21(의제21)로 칭하여진 지구적 차원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행동계획이 마련되고 연안과 해양의 통합관리가 이를 위한 효과적인 관리수단임이 선언된 후, 세계 각 연안국들은 다양한 형태의 연안관리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자국의 여건과 실정에 적합한 정책마련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1996년 해양수산부의 창설을 통하여 행정적인 연안통합관리기반을 구축되었고, 1999년의 연안관리법 제정과 2000년의 연안통합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본격적인 국가 차원의 통합적 연안관리체계를 구축하였음. 그 후 연안관리지역계획의 수립과정을 통하여 연안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연안관리계 또는 담당자를 두어 연안관리를 위한 지역역량을 강화하고 있음.
- 그러나 연안관리법 제정과정에서 실질적인 관리수단이 마련되지 못하고 실행계획의 성격을 갖는 연안관리지역계획의 법적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연안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실현한다는 연안정책의 기본목표 달성에 어려움을 주고 있는 것도 사실임.
- 이는 해양과 육지가 만나는 연안이 가지는 특수성, 해양의 불확실성과 전통적 이해와의 상충, 토지 관리에 비하여 부족한 경험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로서 다른 국가에서도 유사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 다만, 국내의 특수한 여건을 고려하여 보다 효과적인 연안관리 제도의 구축으로 실효성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갈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는 최근 과도한 어획능력과 해양에서의 활동이 다양화되고 대중국경제활동의 활성화로 인하여 서해안을 중심으로 연안의 훼손을 기반으로 하는 개발압력이 높아짐에 따라 이미 많은 해양생태계가 훼손되었고 지역주민과의 갈등도 점차 심화되는 양상을 보임.
- 본 연구는 지난 7년간의 연안관리의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연안관리제도의 전반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실효적인 연안관리를 위한 수단으로서 연안용도구역제도와 자연해안 및 서식지순손실방지제도의 도입에 앞서 그 원리와 개념을 정립하여 우리나라에서의 적용 가능한 관리모델을 개발함으로써 보다 예측가능하고 효과적인 연안통합관리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新연안관리시대로의 진입을 위한 제도적인 정비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현행제도에서 미흡한 부분으로 지적되는 연안관리지역계획의 실효성, 지역의 연안관리 운영역량, 과학적인 연안정보관리, 선점식 연안해역 이용행태 및 연안해역과 조화되지 못하는 무분별한 연안육역의 개발에 대한 대처수단을 확보하여, 일관성 있는 계획을 바탕으로 보다 체계적이고 예측가능한 연안관리 실현을 위한 전반적인 연안관리제도 리모델링을 추진하고자 함.



[그림 1-1] 연안관리의 시대적 변천과 방향

2. 연구내용

- 본 연구는 아래와 같이 크게 네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음.
 - 연안관리제도개선 방안
 - 연안용도구역제도 검토 및 적용방안
 - 자연해안 및 서식지순손실방지제도의 검토 및 적용방안
 - 향후 연안관리제도개선 추진계획

3. 연구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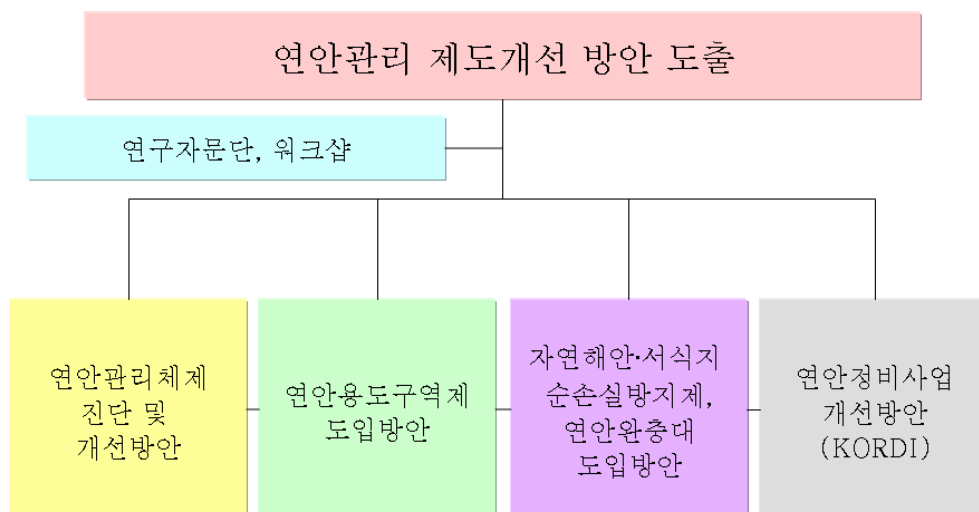
- 본 연구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입체적인 조사와 연구방법을 활용하였음.
 - 기존 문헌 및 연구논문 조사
 - 주요 관계자에 대한 설문 및 인터뷰조사

- 자문회의 및 워크샵 개최
- 해외 주요사례 문헌자료 및 현지조사
- 관련 국제기구의 가이드라인 등 분석

4. 연구의 추진경위

- '06. 4.11 위탁계약 체결
- '06. 4.26 착수보고회
- '06. 6.21 제1차 전문가워크샵
- '06. 9.28 중간보고회 개최
- '06.11.27 제1차 관계부처협의
- '06.12.28 제1차 최종보고회 개최
- '07. 1.24 제2차 관계부처협의
- '07. 2. 1 제2차 전문가워크샵 및 최종보고회

5. 연구 추진체계



제 2 장

연안관리제도의 성과와 한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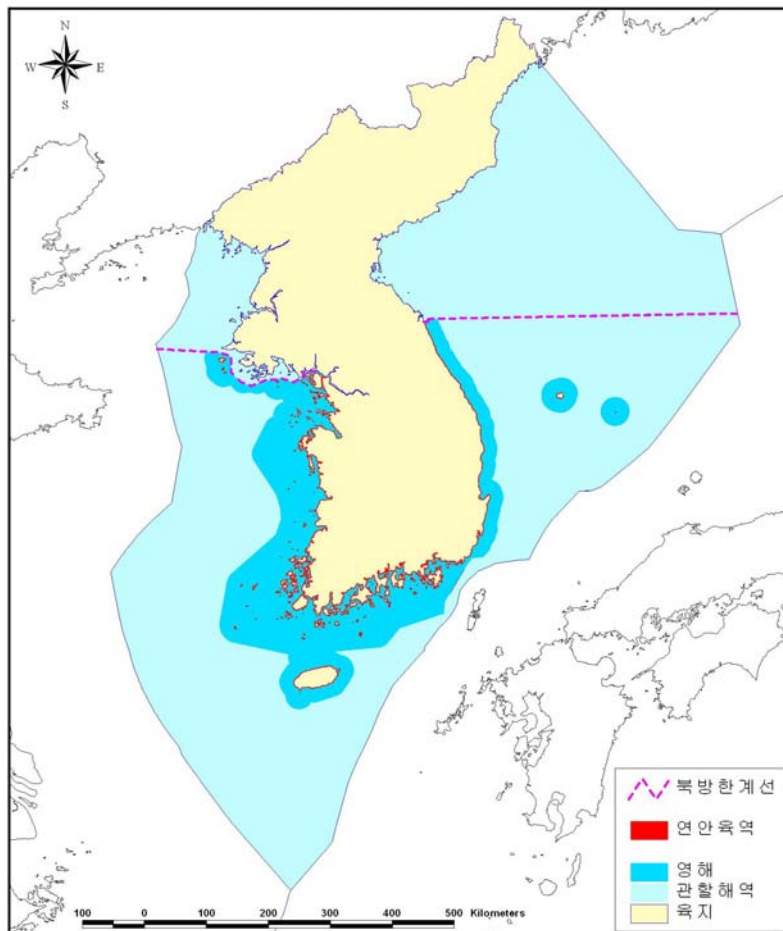
제2장 연안관리제도의 성과와 한계

제1절 우리나라 연안의 모습

1. 연안의 현황

1) 일반현황

- 연안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연안의 범위는 영해와 육역의 일부지역(지적공부선의 해양 쪽 경계로부터 500m, 특정지역 1,000m)을 포함하여 약 74,220km²으로 추산되며, 관할해역의 면적은 약 447,000km²로 전 국토면적의 4.5배에 달하는 범위를 가짐.



[그림 2-1] 우리나라의 연안 및 해역구분

- 연안은 또한 국토의 연장으로서 모든 해양활동의 기반이 되는 공간임. 특히, 1960년대 이후 국토 산업화정책의 추진으로 중공업 및 에너지 산업기지제공, 매립을 통한 저렴한 토지공급으로 산업경쟁력 강화, 청정한 해양환경으로부터 생산되는 풍부한 수산물의 제공 등 연안은 국가경제발전과 국민복지 향상에 커다란 기여를 해 왔음.

<표 2-1> 우리나라의 연안현황

구분	현황	비고
영해면적	71,000 km ²	국토면적대비 71%
대륙붕면적	345,000 km ²	국토면적대비 3배
관할해역(EEZ, 영해 등)면적	447,000 km ²	국토면적대비 4.5배
연안육역(500m기준)면적	3,220 km ²	국토의 3.2%
갯벌면적	2,550 km ²	국토면적대비 2.5%
도서의 수	3,167개	무인도서 2,675개
해안선 길이	11,914 km	
해양직접 유입 하천의 수	3,962개	국가13, 지방201, 소하천 3,748
연안해양보호구역현황	425개소 10,667.9 km ²	2006년말
연안시군구 인구수	13,058천명	전체인구의 27%
임해산업단지	68개 456,651천m ²	2005년
국가항만 현황	51개항	안벽 108 km
국가어항 현황	105개항	면적 56km ²
공유수면매립현황	689건 1,748 km ²	1985-2006기간 중
연안입지발전소	42개소(화력 36, 원자력 6)	2005년
광업권현황	1,167건 2,181 km ²	2005년
방조제(하구둑 포함)현황	1,601개소 1,193 km	2006년
해수욕장 이용객수	346개소 106,529천명	2006년
천해양식어업권현황	9,190건 1,247 km ²	2005년
어선수	91,608척	2005년

- 그러나 해양의 수용용량을 초과하는 무분별하고 급속한 개발과 연안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인간의 활동으로 인하여 연안의 생태적 균형은 상실되고 공간이용을 둘러싼 갈등으로 인하여 사회적 비용은 크게 증가하고 있음.
- 또한 선점식 해양이용의 구습이 개선되지 못하고 이용 후 관리체계가 마련되지 못한 결과, 연안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현명한 이용방안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2) 이용현황

- 연안의 매립은 토지조성이라는 국가적인 의지에 따라 지난 40년간 급속히 이루어져 왔으며 이로 인하여 1985년 이후로만 1,748km²의 해수면이 상실되었으며 이는 영해면적의 2.5%에 이르고 매립이 용이한 수심 20m 이하 해수면의 약 13%에 이르고 있음.
- 연안매립의 74%정도가 농업목적의 토지조성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공업단지 등 산업용지 목적의 연안매립도 전체의 10%에 이르고 있어, 저가의 토지조성으로 국가경제에 크게 기여한 반면, 해양생태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천해역의 상실은 해양생물자원의 감소와 공공재의 사유화라는 회복할 수 없는 부작용을 노출시키고 있음.

<표 2-2> 우리나라의 연안매립 현황(1985년 이후)

용도	개 수	매립계획면적(m ²)	비율(면적대비)
산업용지	99	171,630,768	9.8%
농업용지	30	1,285,214,952	73.5%
어항, 항만시설	308	104,982,641	6.0%
폐기물, 하수처리장	22	23,160,094	1.3%
발전시설	30	20,437,442	1.2%
도시용지	104	126,050,072	7.2%
문화관광시설, 공원	19	2,716,154	0.2%
기타	77	13,688,975	0.8%
합계	689	1,747,881,099	100.0%

자료 :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내부자료, 2006

- 이러한 연안매립은 해양서식지의 파괴뿐만 아니라 해역과 육역의 접이지대인 자연해안을 훼손하여 그 영향은 육역에 까지 미치고 있으며, 국민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공간을 파괴하고 인근해안의 침식이나 퇴적현상을 2차적으로 발생시키는 등 매우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 낮은 수심과 갯벌이 분포하여 매립이 왕성하게 이루어져 왔던 서해연안의 경우 자연해안선은 겨우 34%정도만 남아 있는 실정임.

<표 2-3> 서해연안 해안선 비율

구 분		길 이(m)			비 율(%)	
		인공해안	자연해안	총합계	인공해안	자연해안
서 해 안	경기도	316,279	45,410	361,689	87.4	12.6
	인천광역시	279,558	134,686	414,244	67.5	32.5
	전라남도*	250,227	129,773	379,999	65.8	34.2
	전라북도	211,465	58,693	270,158	78.3	21.7
	충청남도	292,644	317,951	610,595	47.9	52.1
합계		1,350,173	686,512	2,036,685	66.3	33.7

자료 : 연안해양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 국정과제회의자료, 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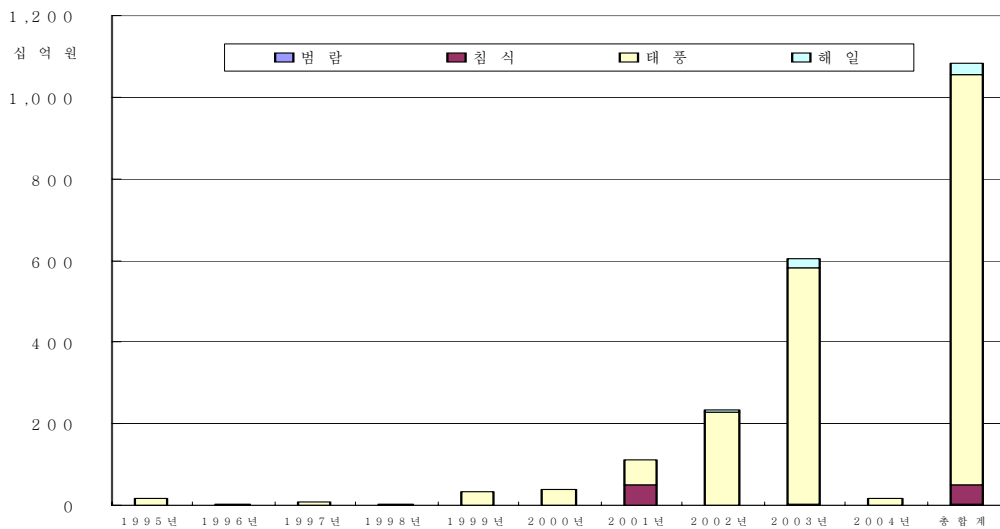
- 2003~2005년까지 해양수산부에서 실시한 연안침식 모니터링 결과를 보면, 침식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모래해안의 경우 연간 4m의 해안선 후퇴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등 연안의 침식은 매우 시급한 문제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음.

<표 2-4> 연안침식모니터링 결과 분석

구분	해수욕장	면적침식율(m ² /day)	해빈폭침식율(cm/day)	증감
1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해수욕장	-1.3553	-0.12	침식경향
2	충남 보령시 대천해수욕장	10.5581	1.01	퇴적경향
3	강원 속초시 영랑동해수욕장	-7.2010	-1.11	침식경향
4	강원 강릉시 경포대해수욕장	-24.6221	-1.49	침식경향
5	강원 강릉시 강문해수욕장	-16.3625	-1.36	침식경향
6	부산 수영구 광안리해수욕장	2.7844	0.25	퇴적경향
7	전남 완도군 명사십리해수욕장	2.1477	0.13	퇴적경향
8	충남 태안군 꽃지해수욕장	7.2371	0.37	퇴적경향
9	강원 삼척시 호산해수욕장	-6.8311	-0.53	침식경향
10	경북 울진군 봉평리해수욕장	0.8698	0.22	퇴적경향
11	울산 울주군 진해해수욕장	-42.2104	-6.49	침식경향
12	제주 제주시 이호해수욕장	-16.3078	-4.66	침식경향
13	인천 옹진군 장골해수욕장	-0.4449	-0.13	침식경향
평균		-7.06	-1.07	

자료 : 해양수산부, 연안침식 모니터링 체계구축, 2003-2006.

- 특히 지역경제의 중요한 기능을 하는 해수욕장의 경우, 해안의 침식은 곧 하계철 방문객의 감소로 이어지고 토사공급의 불균형으로 인한 연안생태계의 교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와 자연생태계에 동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로 국가적인 차원의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음.
- 한편, 연안지역은 산업시설과 주요 지역거점도시들이 입지하고 있어 기본적으로 태풍, 해일, 범람, 침식 등 재해에 매우 취약한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는 실정임.
- 아래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인명피해를 제외한 지난 10년간 연안재해 피해액은 10,750 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연간평균 1천억원이 상회하는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대부분의 피해는 태풍에 의한 피해로서 수산증양시설과 어항시설 등 비도시지역의 연안에서 발생되고 있음.



자료 : 해양수산부 연안관리정보시스템

[그림 2-2] 1995 - 2004년간 연안재해 피해액

- 연안관리의 중요한 축의 하나인 하구역의 관리여건을 살펴보면 지방2급 이상의 하천 214 개소 중에서 하구둑이 설치되어 있는 하천이 95개소로서 약 44%에 이르고 있음.
- 즉, 에너지와 물질순환을 공유하고 회유성 어족자원의 서식지인 하구역은 이미 많은 부분이 기능을 상실한 상태로 판단할 수 있으며 연안의 지속적인 이용과 회복을 위하여 복원을 근간으로 하는 하구역의 관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임.

<표 2-5> 해안으로 직접 유입되는 하천 현황

구분	전체	해안유입하천
총합계	26,549	3,962
국가하천	61	13
지방1급	52	4
지방2급	3,772	197
소하천	22,664	3,748

자료 : 하천일람(건설교통부, 2005); 연안실태조사(해양수산부, 2003,2004), 재해연보(소방방재청, 2004)

- 모든 하천은 최종적으로는 해양으로 유입되고 있으며, 하구가 직접 해양과 이어진 하천의 수도 전국의 26,549개소 중 14%에 달하고 있음.
- 이들 하천은 육상의 유기물질과 유해물질, 쓰레기 등 폐기물을 해양으로 이동시켜 해양생물의 서식에 큰 영향을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담수의 이동을 통하여 기수역 환경을 조성하고 에너지를 방출함으로써 토사를 운반하여 하구역 주변의 해안을 균형 있게 유지시키면서 독특한 물리환경을 이루고 있음.

<표 2-6> 우리나라의 방조제 및 하구둑 현황

구분	합계	국가관리	지방관리	비고
방조제 총괄 (하천유입방조제)	1,601 (279)	103 (52)	1,498 (227)	하구둑

자료 : 지속가능한 하구역 관리체계 구축방안 연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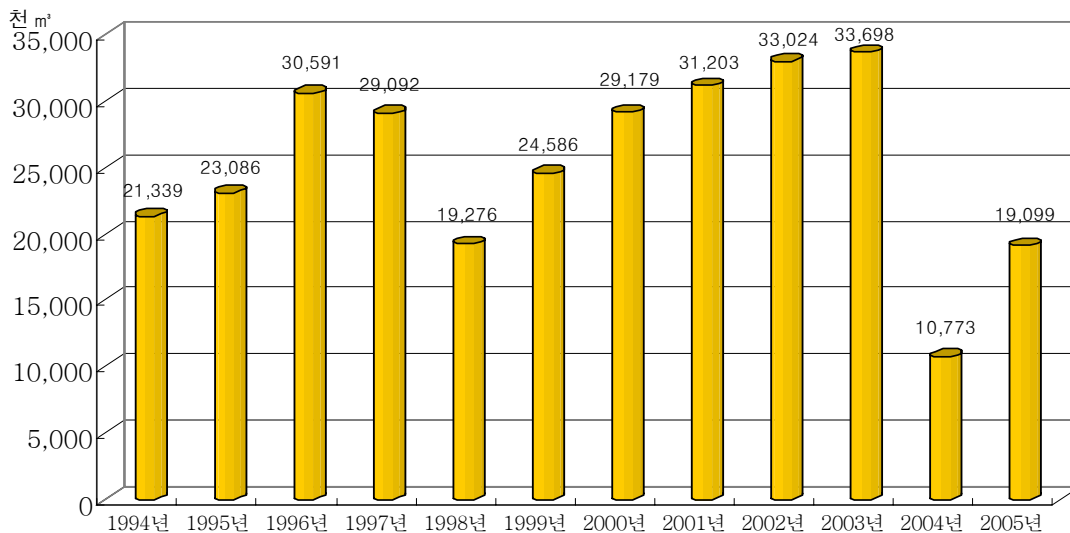
- 그러나 많은 하천이 하구둑 또는 방조제의 설치로 인하여 해양과 하천이 물리적으로 단절되거나 인위적인 수문조작을 통하여 단속적인 영향을 해양생태계에 주고 있는 실정임.

<표 2-7> 하구둑 현황

구분	계	하천등급		
		국가	지방2급	소하천
계	279	7	88	184
국가관리	52	7	35	10
지방관리	227	-	53	174

자료 : 지속가능한 하구역 관리체계 구축방안 연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2006

- 육상에서의 골재공급이 부족해진 1990년대 초반이후 연안지역은 골재공급원으로서 기능을 하게 되었으며, 1995년부터 2005년까지 채취된 바다골재의 양은 304,946천m³로서 연간 전체 공급량의 20% 이상을 점하고 있음.
- 이러한 바다골재채취는 저서생물의 서식에 큰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부유물과 해안침식으로 인한 영향 등 2차적인 피해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음.
- 또한 일본 동경만의 경우에서 보듯이 바다골재를 채취한 후 방치됨에 따라 변형된 해저지형을 중심으로 빈산소수괴가 발생하는 등 해양생태계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밀 조사 및 대책을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음.



자료 : 건설교통부 홈페이지

[그림 2-3] 1994 - 2005년간 바다골재채취 실적

- 한편, 소득의 증가와 교통수단의 발달, 여가시간 확대 등에 수반하여 연안을 휴식과 여가의 공간으로 활용하려는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2005년 현재 해수욕장의 연간 이용자수는 1억명/일을 초과한 것으로 추정되며 향후 이러한 증가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또한, 국민들의 자연보전의식의 증대와 생태관광과 같은 대체관광산업의 등장은 자연자원의 보전을 요구하게 될 것으로 판단되나 지자체의 개발의지와 기업도시와 같은 대규모 국가사업 위주의 연안에 대한 개발 및 이용압력은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이러한 개발 사업의 추진은 불가피하게 보전의지와 상충될 수밖에 없고 연안관리의 새로운 목적으로서 이러한 갈등의 조정과 사전예방적인 조치를 통하여 사회비용을 줄이고 효율적인 연안이용과 보전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의 개선이 요구됨.

<표 2-8> 전국 갯벌에서 도출된 쟁점의 유형별 구분

구분	보호구역 지정·관리	개발계획 (해안도로 포함)	매립·간척	모래유실 및 침식	양식장 관리	관광	수질·온배수 관리
인천·경기	영종·용유·무의·영흥·선재·대부 강화도 남단	인천·시흥	백령도 화성 평택	대이작도	인천·시흥	백령도	
충남	근흥·남면 오천	가로림만 원북	비인·장항	안면 원산도 비인·장항	가로림만	서산 안면	원북
전북	곰소만	곰소만, 압해도	새만금	변산			군산, 곰소만
전남	진도, 압해도 여자만	법성포, 지도-임수, 화원반도, 광양만	도암만 광양만	임자-사옥 비금-도초	법성포 여자만	증도	법성포
경남		사천-진주만, 남해도, 강진만, 통영, 진해만, 거제도, 낙동강하구			거제도		강진만
제주		남제주	북제주		남제주		

자료 : 갯벌생태계조사 및 지속가능한 이용방안 연구, 해양수산부, 2005

2. 관리 현황

- 연안의 관리는 1999년 제정된 연안관리법을 중심으로 공유수면관리법 및 공유수면매립법, 해양오염방지법, 습지보전법 등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져 왔으나 최근 이들 관련법의 개정 및 새로운 제도의 제정 등 해양환경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법률 정비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실정임.
 - 해양오염방지법을 폐지하고 해양환경관리법을 제정하여 시설중심의 오염물질 규제를 해양으로 유입하는 모든 오염물질로 확대하고, 해역이용영향심사제도 도입 등 해양환경의 종합적인 관리를 위한 제도의 정비 노력이 진행되고 있음.
 - 이와 함께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과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의 제정을 통해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를 강화하고 있음.

제2절 연안관리의 성과

1. 연안관리의 체계적·제도적 관리기반 구축

- 「연안관리법」은 ‘국가통합계획의 수립’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연안관리’라는 기본 이념을 바탕으로 참여와 합의를 기반으로 하는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법률임.
 - 연안은 바다와 바다에 인접한 일정거리의 육지가 공존하는 특수한 해양생태계로서 연안자원의 보호와 지속적인 이용을 위해서는 상호연관관계가 필수적임.
- 「연안관리법」의 가장 큰 성과는 육지에 인접한 해양자원 및 해양환경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연안육역과 연안해역을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연안통합관리(Integrated Coastal management: ICM)’개념을 법제화 하였다는데 있음.
- 따라서 연안관리제도 도입의 과정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대 이전에는 연안 관리에 대하여 학자들 간의 학문적 논의에 그쳤으며, 중앙정부의 정책은 주로 연안의 이용 측면에 중점을 두고 있었고, 국민적 인식 또한 연안의 환경문제에 덜 성숙해 있었으므로 연구자들에 의해 연안관리제도가 소개되는 수준에 머물렀음.
-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를 계기로 연안통합관리의 개념이 전 세계적으로 이슈화되기 시작하자 우리나라도 이에 발맞추어 연안통합관리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급기야 1996년에 ‘연안통합관리체제 구축을 위한 조사연구’사업이 수행되었음. 또한 해양수산부의 해양 정책의 근간이 되고 있는 ‘해양개발기본계획’ 및 ‘해양오염방지 5개년 계획(1997~2001)’에서도 연안통합관리체제 구축 및 연안관리법 제정의 필요성이 강조되었음.
- 1996년 8월에 창설된 해양수산부는 연안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통합해양환경관리체제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한층 더 박차를 가하여 해양수산부에 연안계획과를 신설 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1999년 연안관리법의 제정, 2000년 연안정비계획 및 연안통합관리계획의 수립 등 연안관리를 위한 법·제도적 관리기반을 구축하였음.
- 또한 연안통합관리계획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 연안관리지역계획을 수립·고시하기 시작 하면서 연안관리의 제도적 기반의 확대와 더불어 본격적으로 연안통합관리를 시행하는 단계로 접어들었음.

<표 2-9> 우리나라 연안통합관리법제 및 연구의 발전단계

발전 단계	연도	연구·조사	정책·제도	주관기관
개 념 도 입 기	1985~87	한국 연안역 종합개발연구		과학기술처 한국해양연구소
	1989	해면부 기초조사 및 이용계획수립 용역		건설부 국토개발연구원 한국해양연구소
	1990	해안편람		국토개발연구원
	1991	해양개발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연구		과학기술처 한국해양연구소
성 장 기	1992	유엔환경개발회의 (의제 21)		
	1992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 : 연안관 리법 제정의지 천명	
	1994~97	연안통합관리 사례연구 : 연안역 이용 및 통합관리를 위한 연구		과학기술처 한국해양연구소
	1995. 12		연안통합관리체제 구축계획 수립	건설교통부
	1996. 1		해양개발기본계획: 8대 과제 중의 하 나로 연안통합관리체제 구축 채택	총리실 과학기술처
	1996. 3~12	연안통합관리체제 구축을 위한 연구(I): 서해안 실태조사		건설교통부 한국해양연구소 국토개발연구원
제 도 수 립 기	1996. 8	해양수산부 신설		
	1997. 3		연안관리업무 건설교통부에서 해 양수산부로 이관	
	1997. 5		해양수산부 내 '연안역관리과 (현 연안계획과)' 신설	
	1997.8~ 1998. 8	연안통합관리체제 구축을 위한 연구(II): 남·동해안 실태조사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토개발연구원
	1998. 7.		'98 해양개발시행계획 확정: 연안 관리법 제정	해양수산부
	1999. 2.		연안관리법 공포 (시행:'99.8.9)	해양수산부
시 행 기	2000. 6		연안정비계획 고시	해양수산부
	2000. 8		연안통합관리계획 고시	해양수산부
	2001. 7		제2차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고시	해양수산부
	2003. 5~ 2004.10	연안실태에 관한 기초조사 연구 (서해안, 남동해안)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경희대, 단국대, 제주대
	2005. 6		용도구역제 및 순손실방지	청와대 지속가능발전위
	2001~2006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	각 지자체

자료 : 박규현, "우리나라의 연안통합관리 발전단계", 『해양수산부-미해양대기청 연안통합관리 워크숍 자료집』, 2002. 12.
; 일부 필자 조정

2. 국가 연안통합관리정책의 수립·시행

- 「연안관리법」의 제정 이전에는 종합적인 이용계획 없이 선신청자 위주로 연안의 이용·개발이 이루어졌고, 개별법령에 따라 소관부처별 개발·보전계획이 산발적으로 추진되는 문제가 지속되어 왔음.
 - 연안은 항만, 수산, 관광, 레저, 해양광물자원개발 등 다양하고 복잡한 활동이 경합·상충하는 입지적 특수성으로 인하여 연안에 관한 통합관리시스템이 필요
-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안관리를 위하여 연안환경을 보전하고 연안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도모할 수 있는 국가 연안통합관리정책이 “연안통합관리계획”의 수립·시행을 통하여 추진되었음.
- 연안통합관리계획은 국가단위의 상위계획으로서 이미 2000년 8월에 수립·고시¹⁾되었으며, 계획의 목적은 연안이용행위 간 통합,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통합, 해양공간과 육상공간 간 통합을 통해 생명·생산·생활의 장으로 연안을 재창조함으로써 연안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실현하는 것임.
- 따라서 연안통합관리계획은 전국을 총 10개 권역으로 나누고 각 권역별 연안이용의 기본목표와 연안통합관리의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음.
 - 주요 내용은 i) 보호지역 지정·관리를 통한 연안의 생태계 보호, ii) 해역별 특성에 맞는 연안오염부하 적정관리, iii) 연안개발계획의 축소·폐지 등 재조정, iv) 연안재해방지사업의 체계적 전개, v) 친수연안공간 조성 및 연안접근권 개선, vi) 지역계획 수립 촉진 및 지원 등임.
- 이러한 연안통합관리계획은 연안이용관련 여건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하여 매 5년마다 연안실태조사를 하고, 이를 통해 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한 롤링플랜(rolling - plan)으로서, 기초조사, 보완조사, 정밀조사로 구분하여 수행되고 있음.
- 이러한 실태조사의 결과는 통합계획, 연안정비계획 및 지역계획의 수립·수정, 연안관리정책방향의 설정 등에 활용됨.

1)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의해 작성된 초안(1999년)을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부처 협의와 환경보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안관리법 제5조를 근거로 해양수산부 고시 제 2000-58호로 고시되었음.

3.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연안관리체계 도입

- 「연안관리법」 제8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 연안의 효율적인 보전, 이용 및 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 통합계획의 범위 내에서 지역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자율적인 연안관리체계를 도입하였음.
 - 2개 이상의 자치구에 대한 연안관리지역계획의 경우 예외적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이 당해 연안관리지역계획을 수립 가능토록 되어 있음.
- 특히, i) 관할 연안의 관리에 관한 정책방향, ii) 통합계획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iii) 관할연안의 연안정비사업의 방향, iv) 기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연안관리지역계획에 포함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지자체의 자율성이 보장되고 있음.
- 지역연안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는 지역주민,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의 의견수렴, 관계기관 협의, 지역 및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 등 광범위한 의견수렴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 “합의에 의한 계획”으로서 참여와 합의에 의한 관리를 제도화하였음을 알 수 있음.
 - 지역연안관리계획의 수립 후에는 공보에 고시하고, 관계기관 장에게 통보하며, 일반인에게 열람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음

4. 체계적인 연안정비사업의 토대 마련

- 연안은 내륙의 집중강우에 따른 하구 침해부의 홍수범람, 해일, 고조 등에 의한 침수, 침식, 퇴적 등에 의한 피해 등 근본적으로 구조적 취약성을 지니고 있음. 또한 인구 및 산업의 집중에 따라 연안훼손 및 환경오염이 유발되고, 간척·매립 및 (구)준농림지역 난개발에 의한 연안생태계 파괴 등 개발압력의 집중으로 환경훼손이 가중되고 있으며, 재해 복구 위주의 단편적 시설 설치로 인하여 연안의 친수성 및 가치가 저하되고 있음.
- 따라서 「연안관리법」 제13조에 따라 법정계획인 10년 단위의 연안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함으로써, 연안침식, 해일, 홍수범람 등 연안의 구조적 취약성을 보완하고, 연안개발의 다양화·복합화에 따른 연안훼손 및 해양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정비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음.

- 「연안관리법」 제14조(연안정비계획)에는 i) 연안정비사업의 기본방향, ii) 연안정비사업의 중·장기 계획, iii) 연안정비사업의 연도별 내용 및 추진계획, iv) 기타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음.
- 또한, 연안정비계획은 행정자치부 등 6개 관계 중앙부처 및 11개 시·도 협의와 중앙연안관리심의회 심의를 거쳐 2000년 6월 수립 후 2003년 7월 수정 고시되었고, 현재 변경 고시된 상태임.
- 따라서 연안정비사업에는 i) 해안보호 및 훼손된 연안을 보전하는 연안보전사업, ii) 연안해역의 정화 및 폐선제거 등을 포함한 연안해역개선사업, iii) 친수연안 조성사업 등이 포함되어 있음.

5. 환경친화적 공유수면매립 정책으로의 전환

- 공유수면의 매립은 기본적으로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해 수립되는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의해 시행되는데, 동 계획은 10년 주기의 계획으로써 1990년 2월 건설부에서 제1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이 고시되었고, 2001년 7월에 제2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이 수립·고시되었음.
- 제2차 계획에서는 제1차 계획과는 달리 환경 분야의 검토를 강화하여 매립계획에 반영 여부를 결정하였고, 농경지 확보를 위한 간척사업이나 도시용지 확보를 위한 대규모 매립을 가급적 제한하였으며, 또한 계획에 반영된 지역에 대해서도 면적을 최소화하거나 환경친화적인 매립공법을 적용하도록 조건을 제시하였음.
- 매립수요지 조사 시 총 355개 요청 지구에 대해 186개 지구에 한해서만 계획에 반영함으로써 수요대비 반영비율이 52.4%에 달하지만 면적대비로는 반영비율이 9.8%에 불과해 수요요청에 비하여 2차 계획에 반영된 비율은 극히 미미함.

<표 2-10> 제2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수요대비 반영비율

구 분	수 요	반 영	반영비율
지구수	355개	186개	52.4%
면 적	390.346km ²	38.230km ²	9.8%

자료 : 해양수산부, 「제2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2001. 7.

- 이처럼, 국토확장적인 개발위주의 매립에서 해양환경 및 생태계 보전을 더 중시하는 친환경적인 공유수면매립으로 정책의 틀이 전환한 것은 연안이 단순한 개발의 대상이 아니며 일시적인 개발이익보다는 보전과의 조화를 통해 연안자원의 가치를 보다 높일 수 있다는 연안자원의 잠재적 가치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인식이 전환한 것으로서 연안관리법의 기본 취지의 영향을 받은 결과임.

6. 연안실태조사 실시 및 연안관리정보시스템 구축

- 「연안관리법」 제4조(실태에 관한 조사)에 따라 연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연안의 실태에 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도록 명시되어 있음에 따라 이를 통해 연안통합관리계획을 병행할 수 있도록 롤링플랜(rolling-plan)을 도입함으로써, 연안현황 및 연안관리 실태가 반영된 실질적인 정책수립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음.
 - 해안선이나 생태계 등 변화가 뚜렷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연안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완조사 또는 정밀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현재 해안선 변화가 뚜렷이 나타나는 동해안 지역 등을 중심으로 연안모니터링사업이 실시되고 있음.
 - 동 법 제25조 및 시행령 제17조에 있는 주기적 점검에 관한 사항은 조사에 준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연안의 이용개발이나 연안정비사업 시행상황 등 다양하게 연안에서 발생하는 상황을 점검하도록 되어 있음.
- 실태조사결과 및 연안통합관리에 필요한 현황자료를 관리·활용할 수 있는 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법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연안실태조사의 법제화는 연안실태와 현황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연안관리정보시스템의 구축”형태로 정책화되었음.
 - 따라서 동 시스템은 중앙부처, 지자체, 연구기관 등으로부터 수집된 자료를 DB화하여, 연안정책수립·집행, 개발계획의 타당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의 기초자료 등으로 이미 활용되고 있으며, 또한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과학적 자료에 근거한 연안관리행정을 수행하는데 기여하였음.

7. 국제적 위상제고 및 연안관리연구의 활성화

- 「연안관리법」의 제정 및 동법에 근거한 관리정책의 추진은 연안국으로서의 선진정책 추진 및 국제적인 동향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PEMSEA 등 해양환경 및 연안관리 국제기구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기반이 되었고, 그 결과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시켰음.
 - 동남아시아를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는 우리나라의 연안관리체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인도네시아, 태국 등에서는 적극적인 협조요청을 보내온 바 있음.
 - 또한 2002년도에는 UN사무총장에게 보고된 '해양과 유엔해양법 보고2)'에서 한국이 추진하고 있는 해양수산부 등 행정기구의 통합과 연안관리 노력을 캐나다 및 호주와 더불어 해양 및 연안의 통합관리에 있어서 가치 있는 사례로 제시되는 등 국제사회로부터의 평가도 받고 있음.
 - 10여개의 행정기관에 분산된 해양관련 기능이 해양수산부로 통합됨
 - 한국에서의 해양의 중요성과 정책의 주안점
- 한편 「연안관리법」의 제정을 계기로 외국의 연안관리제도 및 정책에 관한 분석이 활성화 되었으며, 주요 선진 연안국의 연안관리프로그램에 관한 연구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음.
 - 2002년 이후 매년 미국 NOAA와의 연안관리 정책연수를 통하여 재해관리, 연안계획, 정보관리 등의 분야에서 지속적인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음.
- 그리고 연안관리의 상호경험공유와 협력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관련국가와의 방문연수 프로그램이 활성화되고 있어 우리나라의 연안관리분야에 있어서의 주도적인 역할이 기대되고 있는 실정임.
 - 2005년 우리나라 지자체공무원 중국 샤먼 방문 및 연수
 - 2006년 우리나라 지자체공무원 호주 빅토리아주 방문 및 연수
 - 2006년 태국 및 인도네시아 지방공무원 연안관리 연수차 한국 방문

2) A/57/57 Oceans and thw law of the sea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2002

제3절 국내 연안관리제도

1. 연안관리법의 주요 내용과 한계

- 「연안관리법」은 연안에 대한 이용 및 개발을 종합적으로 조정하는 제도적 장치가 없이 그동안 개별 법률에 의하여 이용·개발됨에 따라 연안의 훼손과 환경오염이 과도하게 심화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1999년에 제정되었음.
- 제정 당시 동 법률은 연안의 통합관리를 위하여 연안해역과, 육지 및 무인도서를 포함한 연안육역으로 구성된 연안에 대해 통합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연안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함으로써 연안을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었음.
- 따라서 「연안관리법」은 연안의 효율적인 보전·이용 및 개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연안에서 발생하는 모든 개발행위와 보전행위를 통합적으로 조정·관리함으로써 연안관리정책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여 체계적인 연안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라고 할 수 있음.
- 「연안관리법」은 제정이후, 2002년 2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002년 12월 「산지관리법」 및 「환경정책기본법」, 2005년 4월 「소방법」, 2004년 2월 「야생동·식물보호법」, 2005년 5월 「어촌·어항법」, 2005년 8월 「산지관리법」에 의한 일부개정 등 총 7차례에 걸쳐 개정이 이루어졌으나, 모두 다른 법률의 부칙을 통한 타법개정 형태였고, 그 개정내용도 법률명칭 변경이나 자구수정 등 연안관리의 개선과는 무관한 것이었음.
- 「연안관리법」은 총 4개장, 29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안관리기본이념, 연안실태조사, 연안관리통합계획 및 지역계획의 수립, 연안정비사업, 연안관리심의회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 「연안관리법」은 제2조에서 연안의 범위를 연안해역(12해리 영해)과 연안육역(500m~1km) 및 무인도로 규정하고 있는 바, 연안관리에 관한 기본법인 동시에 연안육역과 연안해역을 포괄하는 적용범위가 매우 광범위한 것이 특징임.
 - 즉, 연안해역은 바닷가와 만조수위선으로부터 영해의 외측 한계까지의 바다이며, 연안육역은 연안해역의 육지측 경계선(지적공부 경계선)으로부터 500m~1km 범위 내 육지와 무인도서이고, 항만 및 산업단지의 경우 1km까지의 범위 내에서 설정 가능함.

- 「연안관리법」에 근거하여 수립되는 연안통합관리계획은 연안육역에서는 육상에서의 국토종합계획 또는 토지의 용도지역 지정과 같은 기본적인, 상위적 차원의 계획으로 기능하여야 함.
 - 그러나 「연안관리법」은 연안공간의 보전·이용 및 개발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총괄하는 법률로서 연안에 관한 기본법적 성격과 상위법적 지위를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되지 못하고, 연안통합관리계획 또한 다른 법률에 의하여 수립된 계획의 기본계획 내지 상위계획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음.
- 「연안관리법」 제정 당시 개별 법률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하여 포함된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계획이 수립되어 있거나 용도지역 등이 지정되어 있는 연안육역(환경보전 관련계획이 수립되어 있거나 용도지역 등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는 연안해역을 포함)에 대하여는 당해계획 또는 용도지역 등의 범위 안에서 계획을 수립·변경하여야 한다.”는 제 11조 규정은 「연안관리법」의 지위와 이행강제력을 약화시키는 주요한 원인이 되었음.
- 이와 같이 「연안관리법」 제정당시의 입법한계와 지속적인 개정작업을 통한 수정·보완이 진행되지 못한 결과, 연안의 이용·개발 및 보전의 통합적 조정·관리라는 「연안관리법」의 입법취지가 퇴색되고 있을 뿐 아니라 연안통합관리계획 및 연안관리지역계획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따라서 「연안관리법」과 관련 개별 법률과의 관계 재정립과 해양국토관리를 위한 위상 제고, 「연안관리법」의 집행력 강화를 위한 개정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음.

2. 관련 개별법률

- 「연안관리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안해역과 연안육역의 범위 내에 포함되는 공간을 대상으로 하는 이용·개발 또는 보전과 관련되는 법률은 약 40 여개가 있으며,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포함할 경우 110 여개에 이를 정도로 매우 다양함.
- 관련 법률의 소관현황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해양수산부가 16개의 소관법률을 관장하고 있어 가장 많은 법률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뒤를 8개의 소관법률을 관장하고 있는 환경부가 따르고 있고, 그 밖에 건설교통부, 산업자원부, 농림부, 문화관광부, 행정자치부, 국방부, 재정경제부, 제주도 등이 연안관리와 관련된 법률을 운용하고 있음.

- 연안관리와 관련된 주요 법률을 유형을 기준으로 구분해 보면, 기본법적 성격을 갖는 법률이 4개, 공간 이용에 관련된 법률이 18개, 자원개발에 관련된 법률이 9개, 환경 및 보호 관련 법률이 14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 「연안관리법」의 실효성 및 집행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도입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던 연안용도구역과 관련하여 연안의 보전·이용 및 개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법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농어촌정비법」, 「산지관리법」, 「항만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관광진흥법」, 「문화재보호법」 등 이용·개발관련 법률과 「해양오염방지법」, 「자연환경보전법」, 「습지보전법」, 「야생동·식물보호법」, 「자연공원법」 등 보전 관련 법률이 있음.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국토의 이용, 개발 및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과 집행에 관한 기본 법률로서, 광역도시계획, 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 이 법은 국토를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관리하며, 1종에서 도시지역의 경우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하며, 관리지역은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으로 구분하여 지정됨.]
- 따라서 다른 법률에 의한 토지이용에 관한 지역, 지구, 구역, 구획 등의 지정은 이법에 의한 용도지역,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의 지정목적에 부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연안관리법」상 연안관리지역계획의 경우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역,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에 부합되어야 하며, 5개 기능별로 구분되어야 하는 제약이 따름.
- 한편 이 법에서는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구역의 지정 및 변경은 도시관리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며,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내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규모 등은 당해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지정 목적에 따른 허용행위에 의하여 제한되므로 허용행위에 적합하여야 함.
- 예를 들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교통부장은 직접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을 받아 수산자원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

한 공유수면이나 그에 인접한 토지에 대하여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변경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음.

- 수산자원보호구역은 해양수산부에서 지속적으로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자원동태를 조사하고, 실질적인 관리정책을 수립·추진하고 있으나, 국토계획법에 규정되어 있어 연안관리에 여러 가지 애로점이 있음. 따라서 「농지법」상 농업진흥구역, 「자연환경보전법」상 생태·경관보전지역, 「수도법」상 상수원보호구역 등과 같이 별도의 개별 법률에 근거하여 구역을 지정한 후 이를 국토계획법과 연계시키는 형태로 법체계를 정비하는 것이 필요함.

<표 2-11>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운영 및 행위제한

구분	수산자원보호구역
용도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자	건설교통부장관
도시관리계획 결정효력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에 게 신고
지정목적	수산자원의 보호·육성
지정지역	공유수면이나 그에 인접된 토지
지정 또는 변경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
건폐율 및 용적율	20% 이하/ 80% 이하
행위제한의 예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계획사업에 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 가능 ○ 수산자원보호구역 안에 있는 산림 안에서의 입목의 벌채, 조림 및 육림의 허가기준에 관하여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름
행위제한 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산자원보호구역 안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하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상회복명령 - 원상회복명령 미이행 시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행정대집행 - 대집행비용은 개발행위허가자의 이행보증금을 이용

<표 2-12> 연안관리 관련 법률현황

관계 행정기관	기본법 성격	공간이용 관련법	자원개발 관련법	환경 및 보호 관련법
해양수산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수산발전기본법 · 연안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유수면관리법 · 공유수면매립법 · 항만법 · 신항만건설촉진법 · 어장관리법 · 어촌·어항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산업법 · 내수면어업법 · 어업자원보호법 · 기르는어업육성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환경관리법 · 독도의지속가능한 이용에관한법률 · 해양생태계의보전 및관리에관한법률 · 습지보전법(공동)
환경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정책기본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환경보전법 · 자연공원법 · 독도등도서지역생태 계보전에관한특별법 · 습지보전법(공동) · 수질환경보전법 · 폐기물관리법 · 야생동·식물보호법
건설교통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기본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 산업입지및개발에 관한법률 · 유통단지개발촉진법 · 도로법 · 도시개발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골재채취법 	
농림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촌정비법 · 산지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방사업법 · 방조제관리법
산업자원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염관리법 · 광업법 · 전원개발에관한특별법 · 해저광물자원개발법 	
문화관광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진흥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재보호법
행정자치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서개발촉진법 		
국방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군기지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어해면법
재정경제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자유구역의지정 및운영에관한법률 		
제주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 		

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경제자유구역의 개발계획과 절차에 관한 법률로서, 동법 상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은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도시개발사업계획의 수립, 택지개발촉진법상 예정지구의 지정 및 택지개발계획의 승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상 국가산업단지, 일반지방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관광진흥법」상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과 동일한 효과를 가짐.
- 개발사업시행자가 경제자유구역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34개의 개별법에 의한 허가, 인가, 지정, 승인, 협의 및 신고 등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며, 동 허가 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간주함.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상 인·허가에 대한 의제 중 연안관리와 관련하여 중요사항은 다음과 같음.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설립 등의 승인
 - 「공유수면매립법」상 매립면허, 매립실시계획의 인가·고시, 협의·승인
 - 「관광진흥법」상 관광지, 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
 - 「공유수면관리법」상 점·사용허가, 점·사용실시계획의 인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토지의 분할, 형질변경허가, 실시계획의 인가
 - 항만법상 항만공사시행의 허가 및 실시계획의 승인
 - 「골재채취법」상 골재채취의 허가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상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산업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 이 법에 의한 의제사항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관리계획까지 포함한다는 점에서 연안관리계획을 직접적으로 구속하는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률임.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은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과 산업의 합리적 배치를 통하여 균형있는 국토개발과 지속적인 산업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법률로 산업단지의

지정 및 고시를 하고 있으며, 산업단지개발계획에 따라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음.

- 산업단지로 지정된 지역도 연안관리계획에서 반영해야 할 중요 사항이며, 지정된 지역은 토지형질의 변경, 건축물의 건축, 토석·사력의 채취, 죽목의 식재, 토지의 굴착, 수산동식물의 채포 또는 양식목적의 시설물 설치 등의 행위가 제한됨.

4) 「항만법」

- 「항만법」은 항만의 지정·개발·관리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항만의 건설을 촉진하고, 그 관리·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법률로 항만기본계획, 항만의 개발, 항만의 관리 및 사용, 항만배후단지, 항만의 보전 및 공용부담, 항만에 관한 비용 및 수익, 감독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항만배후단지로 지정·고시된 지역 안에서 토지형질의 변경,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석·모래의 채취, 정당한 사유 없이 토석 또는 자갈을 채취하거나 수산물을 채취·양식하는 행위, 수질오염 등으로 인하여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발생시키는 행위, 준설토사를 지정된 장소 외에 버리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에 한함),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 항만기본계획에 의한 항만구역의 경우도 연안관리계획 수립시 개발조정연안 또는 개발유도연안으로 반영해야 할 사항임.

5) 「어촌어항법」

- 「어촌·어항법」은 어촌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비 및 개발에 관한 사항과 어항의 지정·개발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어촌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살기 좋은 어촌 건설과 국가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이 법의 규정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촌·어항에 관한 기초조사 및 정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어촌의 소득증대와 어촌·어항의 합리적인 개발 및 이용을 위하여 5년마다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또한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장환경조사 결과 환경오염이 심화되어 어장휴식, 신규 어업면허의 금지 등 어장환경의 보전·개선을 위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어장관리해역을 어장관리특별해역으로 지정할 수 있음.

- 연안관리계획 수립에 있어서도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어촌·어항법」에 의하여 규정된 사항에 구속되며, 어장관리특별해역에서의 행위제한도 그대로 적용됨.

- 어항의 지정권자는 어촌관광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어항구역 안에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어촌관광을 위한 구역을 설정할 수 있으며, 어촌관광구역 안에 해양관광·레저용 선박의 계류시설이나 관광객 편의시설 등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음.

6) 「해양환경관리법」

- 2007년 1월 19일에 제정된 「해양환경관리법」은 「해양오염방지법」이 해양환경에 관한 기본법적 지위를 갖도록 전면 개편된 법률임(법률 제8260호, 2008.1.20 시행예정).
- 「해양환경관리법」은 해양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이념과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 바다골재채취 등 각종 해양이용행위의 적정성 확보와 지속가능한 개발원칙에 따른 해양환경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역이용협의제도 강화 및 해역이용영향평가의 도입, 해양환경관리공단의 신설, 오염물질의 통합관리체제 구축, 해양환경기준 및 측정체계의 선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 기존 「해양오염방지법」은 선박으로부터의 해양오염방지를 목적으로 채택된 MARPOL 협약의 국내이행입법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해양으로 유입되는 각종 오염물질, 모래채취, 매립·간척 등 각종 해양이용행위에 대한 제도적 대응수단이 미흡하였음.
- 「해양환경관리법」은 선박기인 오염방지중심에서 보다 확대된 차원에서 연안환경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율하고 있으므로, 「연안관리법」상 연안환경에 관한 규정은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수단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형태로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7) 「관광진흥법」

- 「관광진흥법」은 관광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자원을 개발하며, 관광사업을 육성함으로써 관광진흥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법률로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은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신청에 의해 기본계획 및 권역계획을 기준으로 함.
- 관광개발기본계획에 따라 시도지사는 권역별관광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조성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는

조성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와 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음.

- 이 법에 의한 관광개발계획도 연안관리계획의 수립 시에 반영해야 할 사항임.

8) 「문화재보호법」

- 「문화재보호법」은 문화재를 보존하여 민족문화를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함과 아울러 인류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법률로서 문화재청장은 보물·국보의 지정, 중요무형문화재의 지정, 사적·명승·천연기념물의 지정에 있어서 문화재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할 수 있음.
- 연안관리계획 수립시 보호구역도 보전연안을 정하는 중요 항목이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개발사업을 계획·시행할 경우, 문화재(보호물과 보호구역을 포함)가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함.

9) 「자연환경보전법」

- 1991년에 제정된 「자연환경보전법」은 기본계획의 수립, 전국자연환경조사, 멸종위기 동·식물에 대한 지정·관리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 「자연환경보전법」은 연안환경 및 연안생태계의 보전과 관련이 있는바, 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자연생태·자연경관을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음.
 - 자연 상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보전 및 학술적 연구가치가 큰 지역
 - 지형 또는 지질이 특이하여 학술적 연구 또는 자연경관의 유지를 위하여 보전이 필요한 지역
 - 다양한 생태계를 대표할 수 있는 지역 또는 생태계의 표본지역
 - 그 밖에 하천·산간계곡 등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지역
- 한편, 환경부장관은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지속가능한 보전·관리를 위하여 생태적 특성, 자연경관 및 지형여건 등을 고려하여 생태·경관보전지역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지정·관리할 수 있음.

- 생태·경관핵심보전구역 : 생태계의 구조와 기능의 훼손방지를 위하여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특별히 보호하고자 하는 지역
- 생태·경관완충보전구역 : 핵심구역의 연접지역으로서 핵심구역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 생태·경관전이보전구역 : 핵심구역 또는 완충구역에 둘러싸인 취약지역으로서 지속가능한 보전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10)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무분별한 해양개발행위와 해양생물의 남획 등으로 인한 해안침식, 백사장유실, 서식지 파괴 등 해양생태계의 훼손 및 해양생물종의 감소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으나, 육상중심의 관리체계인 현행 「자연환경보전법」에서는 대응이 제대로 되고 있지 못함.
 - 해양생태계의 위협요인이 다양화·복잡화됨에 따라 훼손이 가속화되면서 해양생태계를 효율적으로 보전·관리하는데 있어서 「자연환경보전법」과 「야생동·식물보호법」에 기초한 정책추진에 한계가 있음.
 - 「자연환경보전법」의 생물종 관련규정과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을 통합하여 2004년 2월에 제정된 「야생동·식물보호법」의 경우에도 해양 생물종 또는 해양생태계에 적용하기 어려운 규정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었음.
- 해양생태계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위하여 독자적인 법체계의 마련이 필요하게 되어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2006년 10월 4일 제정되었음.
- 이 법은 총 65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i) 해양생태계보전 및 관리에 관한 국가의 책무, ii) 해양생태계보전 및 관리기본계획의 수립, iii) 해양생태계기본조사 실시, iv) 해양생태도 작성 및 보호대상해양생물의 보전, v) 해양생태계교란생물 및 유해해양생물의 관리, vi) 해양보호구역의 지정·관리, vii) 해양생물다양성보전대책 수립, viii)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징수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 이 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은 매 10년마다 해양생태계 관리정책의 기본이 되는 해양생태계보전·관리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해양생태계의 현황을 파악하고 효율적인 관리정책의 기반이 되는 해양생태계기본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 법률의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의 기본원칙을 설정하고,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국가의 책무를 강조하고 있으며, 국가차원에서 회유성 및 해양포유 동물을 보호하고, 해양보호구역을 해양의 특성에 맞게 세분화하여 특별관리하고, 해양생물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해양생태계를 훼손하는 일정 범위의 개발사업자에 대하여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 특히, 연안관리와 관련성이 높은 해양보호구역이 해양생태계 및 해양경관 등을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다음의 구역에 대하여 지정·관리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해양의 자연생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해양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학술적 연구 가치가 있는 해역
 - 보호대상해양생물의 서식지·산란지 등으로서 보전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해역 및 해양생태계의 대표·표본에 해당하는 해역
- 해양보호구역 내에서는 보호대상해양생물의 포획, 건축물의 신·증축행위 등 해양생태계를 훼손하는 행위가 금지됨.

11) 「습지보전법」

- 「습지보전법」은 습지의 효율적 보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습지와 그곳의 생물다양성의 보전을 도모하고, 습지에 관한 국제협약의 취지를 반영함으로써 국제협력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기 위한 법임.
- 「습지보전법」은 총 27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습지조사, 습지보전기본계획의 수립, 습지보호지역의 지정·해제, 습지보호지역 내 행위제한 및 출입제한, 중지명령 등이 주요 내용임.
- 환경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과 같이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있는 내륙습지와 연안습지에 대하여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고, 그 주변지역을 습지주변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음.
 - 자연 상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
 - 희귀하거나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이 서식·도래하는 지역
 - 특이한 경관적·지형적 또는 지질학적 가치를 지닌 지역

- 또한 다음과 같은 지역은 습지개선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음.
 - 습지보호지역 중 습지의 훼손이 심화되었거나 심화될 우려가 있는 지역
 - 습지생태계의 보전상태가 불량한 지역 중 인위적인 관리 등을 통하여 개선할 가치가 있는 지역
- 습지보호지역 또는 습지개선지역으로 지정된 습지에 대하여는 중대한 공익상·군사상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매립기본계획의 수립,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매립기본계획의 변경,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매립면허 또는 「골재채취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허가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습지보호지역 및 습지개선지역도 연안관리계획상 구역별 기능 부여시 보전연안으로 관리되어야 하며, 습지보전에 관한 사항은 연안환경관리 규정과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함.

12) 「자연공원법」

- 「자연공원법」은 자연공원의 지정·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 등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법률로 연안 지역에 해안국립공원 및 해상국립공원이 지정되어 있음.
- 「자연공원법」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관리하고 있는 해상국립공원에서 공원사업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공원관리청인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
- 즉, 공원 내에서 건축물 및 공작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이축행위, 광물채굴 및 토사 등의 채취행위, 개간 및 토지의 형질변경행위, 수면매립 및 간척행위, 하천 또는 호소의 물 높이나 수량의 증감행위, 야생동물수렵행위, 벌목 및 야생식물 채취행위, 가축의 방목행위 등은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기에 연안관리계획에 반드시 반영해야 할 중요한 관리요소임.
- 또한 공원의 환경을 훼손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공원의 보전·이용·보안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출입을 통제하거나 영업 및 그 밖의 행위도 금지할 수 있고, 자연공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배후지 또는 진입도로 주변의 일정구역을 공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음.

13) 「야생동·식물보호법」

- 「야생동·식물보호법」은 기존 「자연환경보전법」에 규정되어 있던 생물자원 및 생물 다양성 관련 규정과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을 통합하는 형태로 2002년 2월에 제정되었음.
- 「야생동·식물보호법」의 주요 목적은 야생동·식물과 그 서식환경을 체계적으로 보호·관리함으로써 야생동·식물의 멸종을 예방하고,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시켜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함과 아울러 사람과 야생동·식물이 공존하는 건전한 자연환경을 확보하는데 있음.
- 동 법률은 크게 생물종의 지정관리와 서식처의 보전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즉,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지정·관리, 야생동·식물의 보호와 그 서식환경 보전을 위한 야생동·식물보호계획의 수립, 야생동물의 불법포획 금지, 생물자원의 보전을 위해 지정종의 국외반출시 승인절차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 환경부장관은 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의 보호 및 번식을 위하여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음.
-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특별보호구역의 위치·면적·지정일시 등을 고시하여 미리 국민에게 알려야 하며,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건축물 및 공작물의 신축·증축 및 토지형질변경 제한, 토석 채취 등이 제한됨.
- 이러한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도 연안관리계획상 보전연안으로 관리해야 할 중요 지역임.
-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 또는 시·도보호구역 안에서 다른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용·개발 등의 행위를 하거나 이용·개발 등의 허가·인가·승인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시·도보호구역 또는 보호구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함.

14) 기타 관련 법률

- 그 밖에 연안관리통합계획 및 연안관리계획의 수립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이용·개발 계획으로는 「도로법」상의 도로개설 예정부지, 「광업법」 및 「골재채취법」상의 광업권 구역, 골재채취예정지, 골재채취단지, 「어장관리법」상의 어장구역, 「육성수면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상 육성수면, 「전원개발에 관한 특별법」상 발전소 부지 등이 있음.

- 연안환경 및 연안생태계의 보호·복원과 관련이 있는 보전지역으로는 「산지관리법」상 보전임지(보전연안), 「독도 등 도서지역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상 특정도서 등이 있음.

제4절 외국의 연안관리제도

- 1992년 리우 지구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의제21의 제17장에서는 해양 및 연안역의 보호와 해양생물자원의 현명한 이용과 개발, 보전에 대한 합의를 도출한 바 있음
 - 본 의제21에서는 아래의 7개 분야에 있어 개념, 목적, 활동, 실행수단별로 방향을 제시한 바 있음.
 - a. Integrated management and sustainable development of coastal areas, including exclusive economic zones;
 - b. Marine environmental protection;
 - c. Sustainable use and conservation of marine living resources of the high seas;
 - d. Sustainable use and conservation of marine living resources under national jurisdiction;
 - e. Addressing critical uncertainties for the management of the marine environment and climate change;
 - f. Strengthening international, including regional, cooperation and coordination;
 - g. Sustainable development of small islands.
- 이를 계기로 많은 연안국들은 자국의 여건을 고려하고 연안통합관리정책의 도입을 추진한 바 있으며, 우리나라도 이러한 국제적인 흐름과 국내적 여건이 성숙되어 해양수산부의 발족과 연안관리법의 제정과 같은 구체적인 정책을 시행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음.
- 본 연구에서는 연안관리의 대표적인 국가이며 우리나라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미국, 캐나다, 호주, 중국 및 일본의 연안관리정책과 제도를 살펴보고자 함.

1. 미국의 연안관리제도

1) 미국 연안의 개요

- 미국은 전체 인구 중 141백만명이 연안으로부터 50마일 이내에 거주하고 있고, 2025년에는 전체인구의 75%가 연안에 거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전체 무역량의 95%, 무역액의 37%가 수운을 통한 교역으로 7,400억 달러의 국내총생산에 기여하고, 13백만명의 고용창출효과를 거두고 있음.
- 해양은 28백만명의 고용창출과 매년 189백만명의 국내관광객을 유치하고 있으며, 매년 수산물 550억불을 소비하고 있고, 원유의 30%, 천연가스의 23%가 영해 외의 대륙붕에서 생산되고 있음.

2) 연안역관리법과 연안관리현황

- 미국의 연안관리에서 가장 핵심적인 법률은 연안역관리법(Coastal Zone Management Act)이며, 이외에도 연안 및 해양 관리와 관련된 법률로 국가해양보호구역법(National Marine Sanctuaries Act), 멸종위기종관리법(Endangered Species Act), 수산자원관리·보전법(Magnuson-Stevens Fisheries Management and Conservation Act), 하구복원법(Estuary Restoration Act), 해양법(Oceans Act) 등을 포함한 다양한 법률이 있음³⁾.
- 이중에서 1972년에 제정된 연안역관리법⁴⁾은 세계 최초로 ‘연안(coastal zone)’이라는 공간을 관리대상으로 한 법률로서 1976년, 1985년, 1990년, 1996년, 1999년의 모두 5차례에 걸쳐 개정되었으며, 현재 상무부(Department of Commerce)의 해양대기청(NOAA, National Oceanic & Atmospheric Administration) 내 해양·연안자원관리사무소(The Office of Ocean and Coastal Resource Management)에서 집행책임을 맡고 있음.
- 따라서 미국의 연안관리는 해양대기청에 의하여 연안관리프로그램, 기수역 연구·보전프로그램, 국가해양보호프로그램이 있고, 또한 환경보호청(EPA,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국가기수역프로그램을 통하여 관리되고 있는데, 환경보호청의 국가기수역프로그램을 제외하면 대부분 연안역관리법에 의한 것임.
- 연안·해양환경 관련 사항을 포괄적으로 다루기 위한 연안역관리법은 연안관련 정부부처간의 협력뿐만 아니라 연방정부와 주정부간의 자발적 협력을 근간으로 하고 있음. 즉, 연안자원이용을 둘러싼 이해상충의 해소로 연안자원보호와 경제적·여가적·문화적 수요 사이의 균형을 추구하고(Balancing), 연안자원의 관리에 관한 결정과정에서 주정부 및 지방정부의 결정에 우선권을 주고 있으며(Emphasizes Primacy of State Decisions), 각

3) <http://coastalmanagement.noaa.gov/pcd/legislation.html>(2003. 2. 12)

4) 이 법의 제정으로 국가차원의 연안관리방향은 수산, 해운, 항만, 수질관리, 해안선 침식, 환경 등을 기능적으로 분류하여 관리하는 전통적 방식에서 벗어나 해역과 육역생태계가 만나 형성된 독특한 공간인 연안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갖게 되었음.

정부기관과 일반인의 자발적인 참여(Participatory)를 유도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음(Lott, 2002; 해양수산부, 2003).

- 따라서 연안역관리법의 내용을 보면, 연안자원의 보전·보호·개발·복원·개선, 주정부 및 지방정부의 연안관리프로그램 지원, 특별대책지역 관리계획 수립, 관련 정부부처 및 일반인의 참여·협력 제고, 관련 정부부처 및 국제기구와 조정·협력강화, 연안환경 및 자원관리 여건변화 대응, 국가하구연구보전시스템 구축·관리, 연안·하구 환경관리기술 개발·적용·공유, 기금조성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특히 주정부의 자율관리에 중점을 둔 연안역관리법은 연안관리의 이행기준을 제시하기 보다는 주정부와 연방정부간 파트너십에 관한 기본방향을 제시하였고, 연방정부의 재정과 인센티브를 지원받기 위해 필요한 중요한 항목에 대해서만 주정부 연안관리프로그램에서 구체화하도록 규정하였음(Ehler, 2002).

<표 2-13> 주정부가 연방정부의 지원을 받기 위한 항목

① 자연자원의 보호(연안역 범위 내에서 갯벌, 하구, 해변, 사구, 도서, 산호초, 어족자원, 야생생물 및 서식지 등)	⑦ 행정절차의 조정 및 단순화, 연방정부와 지속적인 협의와 조정
② 연안재해관리(자연재해와 자연제방의 역할을 하는 해변, 사구, 갯벌, 군소도서 등 훼손에 따른 인명과 재산피해의 최소화)	⑧ 연안관리의사결정에 일반인 및 지방정부 참여
③ 연안수질관리	⑨ 해양생물자원의 종합계획, 보전, 관리(연안에 입지한 양식장시설과 오염원시설 관리)
④ 연안 의존형 이용행위의 우선 고려	⑩ 육지침강과 해수면상승에 대비한 연구개발
⑤ 여가를 목적으로 한 연안접근권 개선	⑪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지역에 대한 특별관리 계획 수립
⑥ 훼손된 도시수변공간과 항만의 재활성화 지원 기회 확대	⑫ 연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잠재적 이용이 포함된다.

- 연안역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연안역(Coastal Zone)'의 범위는 해변부의 경우 해안선으로부터 3마일까지로 단일기준으로 규정한 반면, 육역은 육상 활동으로부터 해양환경의 보호나 해수면상승으로 인한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역여건에 따라 달리 설정하도록 하였음.⁵⁾ 즉, 주정부의 자연환경·사회경제적 이용현황 등 지역여건에 따라 연안역

5) 미국 연방정부의 해역관할범위는 3해리 이상부터로, 연안육역과 3마일 이하는 연방정부의 권한이 없음. 따라서 이러한 한계를 극복·보완하기 위해 연안정비사업, 해양보호구역(marine sanctuary), 하구역보전연안연구체계를 도입함.

의 범위를 결정하도록 함에 따라 주정부에서는 자율적으로 지형, 하천, 해안 등 물리적 특성, 해안으로부터 거리 등의 거리적 기준, 행정적 기준 등 육역범위를 설정하기 위해 다양한 기준을 활용하고 있음.

- 연안역관리법에 따르면, 주정부의 연안관리프로그램은 해양대기청의 승인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무부장관은 연방정부의 정책방향과 일관성, 이해당사자와 협의과정 여부, 다른 계획과의 조정과 연안관리의 효과적 수단 확보 여부 등 기본적인 사항만 검토하면 승인하도록 함. 주정부가 NOAA의 승인을 얻으려면 연안역관리법에서 규정한 14가지 항목을 연안관리프로그램에 포함시켜야 하며, 특히 연안육역과 해역에서 가능한 행위와 과도한 연안이용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법적 수단에 대해 반드시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함.

<표 2-14> 미국 주정부 연안관리프로그램에 포함되어야 할 항목

① 연안관리의 공간적 범위(육역과 해역 포함)	⑩ 국가시설입지와 같은 중요한 입지계획에 관한 협의과정
② 육역·해역의 허용행위	⑪ 주·지방정부 연안관리의 책임부서 지정 및 제도적 보장
③ 과도한 연안이용행위에 대한 법적 규제수단	⑫ 대중 참여의 제도적 보장
④ 특별관리(개선)구역의 지정과 목록 구성	⑬ 연안관리프로그램에 따른 주정부 모든 부처의 역할 등 운영 메커니즘
⑤ 연안관리프로그램의 운영조직 구성	⑭ 연안내로 유입되는 오염된 오수관리 정책과 메커니즘
⑥ 해변보호·접근권 개선 계획	
⑦ 연안에너지시설의 입지계획 과정	
⑧ 연안침식 및 해안선 관리를 위한 계획 과정	
⑨ 각 정부의 개발계획 조정 및 부처간 협의과정	

- 연방정부와 주정부간의 협력관리를 핵심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연안역관리법은 이와 같은 파트너쉽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연방정부와의 일관성 원칙(Federal Consistency), 연안정비프로그램(Coastal Zone Enhancement Program), 연안비점오염원관리프로그램(The Coastal Nonpoint Pollution Control Program)을 규정하고 있음.

- 일관성 원칙은 연방정부와의 협력과 조정을 통해 주정부가 관할연안을 관리하기 위해 활용하는 수단임. 즉, 주정부가 연방정부의 정책이 주정부 관할연안에 대한 연안관리프로그램의 정책방향과 일치하는지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연방정부의 정책이 '가능한 최대한' 수준까지 주정부의 연안관리프로그램의 방향과 일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해양수산부, 2003).⁶⁾

6) 연방정부의 일관성 원칙의 사례를 보면, 미국 사법부는 메사추세츠주 보스턴 도시에 연방청사를 건설하려는 반면, 메사추세

- 연안정비프로그램은 연안역관리법에서 제시한 9가지 중요한 사항인, 습지보호, 연안재해관리, 누적·이차적 영향 감소, 연안 접근성 개선, 해양 거버넌스, 특별관리구역 계획 수립·이행, 해양쓰레기 감소, 에너지 및 정부시설 입지, 농업영향감소에 대해 평가한 후, 그 성공여부와 필요성에 따라 연안정비기금(coastal zone enhancement grants)을 추가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였음.
- 비점오염원관리프로그램은 비점오염원이 지속가능한 연안 공간 이용을 위협하는 주요 요인으로 부각되면서 연안비점오염원관리프로그램의 마련·시행에 관한 사항이 1990년 연안역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추가되었음. 특히 비점오염원 관리는 환경보호청과 해양대기청간의 협력관계에 기반을 두는데, 연안관리프로그램은 '청정수법(Clean Water Act)'에 명시된 비점오염원관리프로그램과 주정부 연안관리프로그램의 개정·변경을 통해 실행할 수 있도록 했으며(해양수산부, 2003), 프로그램의 내용은 오염원차단에 중점을 둔 오염원관리수단의 설계, 연안수질 증진을 위한 지방정부의 노력증진 등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
- 한편, 연안역관리법은 상무부장관으로 하여금 연안 주정부들이 연안비점오염원관리프로그램의 수립·이행을 포함하는 연안역 관리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시행하도록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각 주정부가 지원받는 금액은 연안인구, 해안선길이에 따라 달라지는데, 각 주정부는 이에 대응하는 일정 부분의 기금을 출연하여야 함. 연안역관리법은 각 주정부의 연안역관리프로그램이 상무부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해양수산부, 2003).

- 1) 관리대상 연안역의 경계
- 2) 연안역에서 허용 가능한 육역 및 해역 이용행위
- 3) 연안역 특별대책지역 파악 및 지정
- 4) 육역 및 해역 이용행위의 조절을 위한 주정부의 관리수단
- 5) 특정지역에서 이용행위의 우선순위결정에 관한 지침
- 6) 연안역관리프로그램 이행 기구의 조직에 관한 사항
- 7) 해안(beach)의 정의, 공공해안과 기타 공공연안지역의 보호 및 접근성 제고 계획
- 8) 해안침식 감소와 침식지역 복원 계획

추주 연안관리프로그램에서는 이 지역에 대해 일반인 접근권 개선에 관한 관리방향을 제시하였음. 연방정부 일관성 원칙을 적용한 결과, 일반 시민이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게 설계가 변경되었고, 현재는 해안 산책길을 가진 청사가 건립되었다고 함.

<표 2-15> 미국연안관리제도의 주요변화

연도	주요 내용	특징
1899	하천 및 항만법 제정	선박이나 해안지역에서 바다에 영향을 주는 투기 및 방류 금지
1953	외대륙붕영토법, 해저지형영토법	해양개발, 특히 석유와 천연가스의 채굴시 발생하는 주정부와 연방정부 갈등에 대응
1966	해양자원 및 기술에 관한 법률	해양과학·기술·자원 위원회를 설치, 이 위원회에서 제출된 Our Nation and the Sea(Stratton Report)에 의해 연안역관리법의 제정과 연안자원관리의 국가정책 수립이 제시됨
1960년대	환경보전에 관한 일반적인 법률의 제정	국가환경정책법, 청정대기법, 청정수법, 멸종위기종법, 연방수질오염통제법
1972	연안역관리법 제정	연안역관리법
1976	연안역관리법 제1차 개정	에너지자원의 개발활동에 동반되는 각종 영향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지원을 주정부에 제공
1980	연안역관리법 제2차 개정	연안역의 자연환경 중요성에 대한 인식제고를 목적에 포함시키고, 연안자원개선 프로그램 포함
1986	연안역관리법 제3차 개정	하구역의 보호구역 지정, 해안지역의 자유접근과 중요한 해안에 대한 토지매입을 위한 재정지원 등
1990	연안역관리법 제4차 개정	연안역의 자연환경보호를 위해 연안역 관리계획이 승인된 주에 대해 비점오염원대책을 실시
1999	연안역관리법 제5차 개정	국가하구조사준비기구의 확충 및 주의 기능강화
2000	미국 해양법 제정	미국 해양정책위원회 설치
2003	Pew 재단의 제언	지속가능한 바다이용을 위한 독립적인 행정기구의 설치 등을 주장
2004	미국 해양정책위원회 보고서 제출	백악관 및 의회의 지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보고서 제출

3) 미국의 연안통합관리 프로그램 내용

- 미국 연안통합관리 프로그램의 개요
 - 연안역 관리 법안
 - 연방, 주정부 및 지역 계획
 - 연방 정책의 일관성 유지
 - 특별관리구역 계획/분쟁해결

□ 연안역관리법

○ 1972년 연안역관리법 제정시행

○ 주요 목적

1) 자원의 균형 유지

- 경제적, 레크리에이션, 및 문화적 필요에 따른 자원보호의 균형 유지

《 미국의 해안 》

- 해안선 길이 : 153,561km(95,439 mile)
- 해안의 넓이 : 9,382,732km²(3,622,676 sq miles)
- 인구(2000년 현재) : 122,411,728(해안지방)
- 주 및 관할지역 수 : 35개

2) 주정부 결정에 대한 우선권 강조

- 주정부 및 지역기관들은 연방정부의 지침에 따라 연안자원을 관리함.

3) 참여

- 법안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방에서 연방까지 전범위의 정부와 시민들의 참여를 격려함.

□ 국가적 프로그램 집행

○ NOAA

- 국가적 연안관리 목적 추진

- 주정부 관리능력 유지 및 강화

- 재정적 지원, 기술적 지원, 지지, 모니터링 및 감독

○ 주정부 연안관리 프로그램

- 포괄적인 연구, 교육, 지도 및 관리프로그램 시행

- 주정부 관리능력 강화

□ 연방정부 요소

○ 인원 및 예산

- 연방정부 인원 : 해양 및 연안 자원 관리 사무소 70-75명
- 연간 예산 : 시행(5백만불), 주정부 지원(1억불)
- 연방관리자는 광범위한 교육과 경험을 갖추게 되며, 가장 전문적인 관리는 고학력자임. 따라서 교육/경험분야의 예는 다음과 같음.
 - 통신, 연안역 관리, 해양정책, 정치학, 도시/지역 계획, 이학분야, 경제학, 생물/생태학, 대민 행정, 법률

□ 주정부 요소

- 참가 주/령/연방 : 34
- 허가된 프로그램 시행중인 해안선 길이 : 95,331 miles(153,420km)
- 연안관리 전문가 : 1,100명 이상
- 협약의 연간 가치 : 1억불

□ 군/지역 요소

- 몇몇 주정부는 군 또는 지역 정부에 관리권을 위임
 - 노스캐롤라이나 : 토지사용계획
 - 루이지애나 : 습지 규제
 - 오레건 : 도시성장 계획
 - 알래스카/캘리포니아 : 완전한 지역 연안 프로그램
 - 모든 34개 주정부의 관리프로그램은 어느 정도 지역정부의 참여를 포함

□ 연방정부의 일관성 유지

- 연방정부의 일관성 유지는 주정부 연안역에 있는 임의의 토지 또는 해역 사용 또는 자연자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연방법이 주 연안관리프로그램의 실행가능한 정책과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

□ 연방 법안

- 연방정부기관 활동 및 개발계획
- 연방의 허가 또는 허용행위
- 대륙붕 외해 원유 및 천연가스 개발 계획
- 주정부 또는 지역기관에 대한 연방정부의 재정적 지원

□ 연방정부의 일관성 유지에 따른 이득

- 주정부를 위한 강력한 도구
 - 주정부 정책의 연방 법안에 적용
 - 지리적 경계 없음
 - 구분에 대한 예외 사항 없음 - 효과성 테스트 적용
- 주정부-연방정부 협조 사항
 - 협동, 조기 협조, 협상
 - 연방 기관 및 주정부가 연안관리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원조
 - 주정부는 검토된 법안의 거의 95%와 일치토록 함.
- 대중적 참여
 - 연방 법안에 대한 주정부 및 대중 지원을 구축할 수 있음.
 - 연방 법안에 대한 소모적인 최종단계에서의 법안 변경을 피할 수 있음.

□ 국가적 이익 보호

- 연안관리 효과에 의해 발생하는 일관성
- NOAA는 연방프로그램 및 프로그램 변경 허가
 - 연방기관, 기업 및 시민참여
- 연방기관 활동-연방기관은 실행 가능한 최대한의 범위에서 전적으로 일치할 경우 주정부의 반대에 관계없이 진행 가능
- 주정부 반대의견을 통상부장관에게 청원(비 연방)
 - OCRM 또는 장관에 의한 중재

□ 프로그램 평가 및 감독

- 재정적 지원
- 주기적 평가
- 성능 측정의 신 국가적 시스템
 - 연안 위험 및 생태 서식지 보호와 같은 사안들

□ 지역 구분 및 계획

- 미국내 국가적 지역구분 또는 토지 이용계획 전무
- 연방정부는 많은 연안역을 소유하고 관리함(보호국, 피난 등)
- 군 또는 지역 단위에서 행해진 지역분할
- 토지 이용 계획은 주로 지역의 책임

□ 주정부에 대한 지원 : 지지

- 주정부 입법 및 사법기관과의 상호 작용
 - 오하이오주 연안 위험 정책 개선
 - 미시시피주에서 시행한 적절한 관리 임용
 - 노스캐롤라이나주의 에너지 정책의 명료화
 - 주정부 연안역 관리계획의 입안/유지 역할 및 가시화

□ 주정부에 대한 기술적 지원

- 해안선 지도화 : 주정부의 주요 지역은 일상적인 NOAA의 임무 수행시 포함됨
- 도크 및 부두 : 주정부의 요청으로 기술 워킹 개최
- 로드아일랜드 : 평균 고조선 결정
- 사우스캐롤라이나 : 연안 수질 기준의 분석
- 정보교환 : 프로그램 정책 및 소요에 대하여 E-mail을 이용한 포럼 및 데이터베이스화

□ 분쟁 해결

- 분쟁은 모든 지역에 상존
- 각 주정부는 자체적 절차 보유
- 다수의 모델 : 연방정부 일관성, 국가적 하구 계획

□ 2004년 연안역관리법에 따른 재정지출

- 미국의 연안역관리법에 따른 총 재정지출은 303.3백만불, 이중에서 연방정부가 173.1백만불을 지출하고, Matching Fund로서 130.2백만불 지출
 - 2004년의 연안역관리법에 따른 재정지출을 보면, 연방정부가 약 57%의 기금을 지원하고, Matching Fund가 약 43%를 차지하고 있음.
- 연방정부의 재정지출 내역(총 173.1백만불)
 - 연안관리프로그램 : 79백만불
 - 국가기수역연구보전시스템 : 35.8백만불
 - 연안기수육역보전프로그램 : 50.8백만불
 - 프로그램 지원 : 7.5만불
- Matching Fund 내역(총 130.2백만불)
 - 연안관리프로그램 : 65.5백만불
 - 국가기수역연구보전시스템 : 13.9백만불
 - 연안기수육역보전프로그램 : 50.8백만불

<표 2-16> 미국 연안역관리법에 따른 재정지출(2004년)

(단위: 백만불, %)

프로그램	기금	
	연방 fund (%)	matchig fund
- Coastal management program:	79.0 (45.6)	65.5
· Protecting & restoring coastal habitat:	17.3	13.6
· Mitigating coastal hazards:	3.4	2.9
· Protecting coastal water quality:	13.1	12.4
· Enhancing public access:	4.3	4.3
· Comprehensive planning for coastal community development:	11.4	8.8
· Government coordination and public involvement:	22.0	15.6
· State program management:	7.5	7.9
- National estuarine research reserve system:	35.8 (20.7)	13.9
· Local research, education and operations	8.8	
· Graduate research fellowships	1.0	
· System-wide monitoring	3.5	
· Coastal training program	2.6	
· National communication and administrative support	0.2	
· Construction and land acquisition	19.7	
- Coastal estuarine land conservation program :	50.8 (29.3)	50.8
- Program support :	7.5 (4.3)	
총 계	173.1	130.2

자료: Coastal Zone Management Act Funding Summary 2004, Office of Ocean and Coastal Resource Management, National Ocean Service, NOAA.

2. 캐나다의 연안관리제도

1) 해양법(Ocean Act)

- 캐나다는 연안관리에 관한 법정 의무가 연방정부와 주정부로 이원화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해양자원관리는 기본적으로 연방정부의 수산해양부(Department of Fisheries and Oceans)가 담당하는데 반하여, 주정부는 해안선과 일부 해양지역의 관리와 연안육역의 이용계획 수립의 권한을 가지고 있음(Gibson, 1999).

- 캐나다의 연안통합관리는 1994년 국가과학기술자문위원회의 해양·연안위원회는 해양 전략(Oceans Strategy)의 수립과 이를 위한 법률제정의 권고에 따라 먼저 1996년 해양자원 관리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다루고 있는 '해양법(Ocean Act)'⁷⁾을 제정하였으며, 이어서 2002년에는 '캐나다 해양전략(Canada's Ocean Strategy)'을 마련하였음(해양수산부, 2003).
- 이 중에서 캐나다의 해양법은 세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1부는 유엔해양법협약에 근거한 캐나다의 해양관할권 규정(Canada's Maritime Zone), 제2부는 캐나다의 하구 및 연안·해양 생태계를 위한 해양관리전략(Ocean Management Strategy), 제3부는 연안경비대, 해양과학기술 등 수산해양부장관의 관할에 속하는 연방정부의 권한·의무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다루고 있음.
- 여기서, 연안통합관리와 관련된 부문은 제2부인 해양관리전략부문인데, 캐나다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 등이 다양한 이해당사자와 협력하여 하구, 연안, 해양 생태계의 국가전략을 개발하고 이행하되, 현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 하구-연안-해양의 통합 환경관리(integrated management), 사전예방주의 접근(precautionary approach)이라는 세 가지 원칙에 따라 국가전략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하구 및 연안 해역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활동과 대응노력을 통합하기 위해 토지이용에 관한 사항을 다루는 연안통합관리계획은 연안이해당사자가 포럼을 구성하여 유용한 정보를 교환하고, 연안이용 이해상충을 조정하며, 특정지역에 관한 관리계획의 수립, 생태적 목표와 지표를 이용한 정책결정 등 과학과 지식을 기반으로 한 의사결정과 협력을 통한 계획수립을 강조하고 있음(해양수산부, 2003).
- 그 외 연방정책 및 프로그램의 조정, 자문기구 및 관리기구의 설치, 해양 환경질에 관한 지침, 목적 및 기준의 수립 등 통합관리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정책수단을 부여하고, 해양보호구역의 설정과 이를 관리하기 위한 권한을 규정하고 있음.⁸⁾
- 또한 '캐나다 해양전략(Canada's Ocean Strategy)'에서는 캐나다 하구 및 연안·해양생태계 관리에 관한 비전, 원칙, 정책목표를 제시하고 있음. 특히 정책목표는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 첫째, 해양환경의 이해와 보호, 둘째, 지속가능한 경제발전 지원, 셋째, 국제적 리더십 제고를 들 수 있음.

7) 캐나다의 연안통합관리는 기존의 어업관리에서 광범위한 해양관리를 추구하는 해양자원의 관리를 위한 새로운 전략의 일환으로 시작되었으며, 이를 위한 기본법으로 1996년에 해양법(Ocean Act)을 제정하였음.

8) 캐나다의 연안관리 권한은 미국처럼 연방정부차원에서 이행되기 보다는 주정부의 요구에 의한 경우가 대부분으로, 주 정부는 관할구역 내 연안육역 이용계획 뿐만 아니라 해안선과 일부해역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음.

- 이러한 정책방향을 이행하는 수단으로 이해상충 감소와 지속가능한 자원이용을 위한 통합관리계획의 수립, 조정과 협력을 위한 포럼, 파트너십을 통한 책임증진과 대중인식 제고를 제시하였음.
- 따라서 수산해양부에서는 해양 전략의 일환으로 통합관리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지침서 성격을 지닌 '캐나다 하구 및 연안·해양환경 통합관리를 위한 기본정책방향(Policy and Operational Framework for Integrated Management of Estuarine, Coastal and Marine Environments in Canada)'을 마련하였음. 이 기본정책방향은 통합관리정책에 관한 법적 맥락, 개념, 원칙 및 통합관리시행에 관한 지역차원의 정책, 운영 기구, 계획수립·이행과정을 명시하고 있어, 각 지역에서 연안·해양통합관리계획을 수립하는데 기본 지침서로 활용하도록 하였음.
- 이외에 캐나다의 연안통합관리와 관련된 법률은 어류서식지 보호와 오염방지를 목적으로 한 '수산업법(Fisheries Act)', 오염방지와 지속가능한 환경·보건 보호를 위한 환경보호법(Environment Protection Act)⁹⁾, 외국어선으로부터 캐나다 연안어업을 보호하기 위한 '연안어업보호법(Coastal Fisheries Protection Act)', 어항 및 관광항 관리·개선을 위한 '어항·관광항만법(Fishing and Recreational Harbours Act)', 등이 있음.¹⁰⁾

2) 대서양연안실천프로그램(Atlantic Coastal Action Program, ACAP)

- 캐나다 대서양 연안은 노바스코샤, 뉴브런즈윅, 프린스에드워드섬, 뉴펀들랜드로 둘러싸여 있고, 인구는 약 220만명, 해안선 길이는 4만km에 달함. 해안은 주로 해식에, 만, 하구, 피오르드, 습지, 갯벌, 해변 등의 다양한 지형으로 이루어져 있고, 연안·해양생물의 서식지로 기능하고 있어 오랜 세월 동안 수산, 양식, 물류, 관광 등 연안 의존형 사회경제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지역이었음.
- 그러나 1990년대 초반 오염, 서식지 훼손, 자원남획으로 연안환경은 급격히 악화되었고 그 결과 사회경제활동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되었음.¹¹⁾
- 캐나다 환경부는 악화된 대서양 연안환경을 복원·유지하기 위해서 1991년부터 지역이해 당사자의 참여와 지원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연안관리 프로그램인

9) 환경보호법은 독성물질과 유해폐기물 관리·규제가 캐나다의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에 위협을 줄이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지속성 독성물질을 완전히 제거해야 할 필요성을 처음으로 법률에 규정한 법입.

10) 자세한 사항은 「연안실태에 관한 조사-서해안 연안실태조사-(해양수산부, 2003)」 중 pp. 365-368 참조.

11) 연안환경이 악화되면서 수산업에 영향을 미쳐 이 시기에 어업인 4만명이 실직상태였다고 함(Ellsworth, 1997).

대서양연안실천프로그램(Atlantic Coastal Action Program, ACAP)을 마련·시행하고 있음.¹²⁾

- ACAP의 목적은 지역역량 강화를 통한 연안생태계 보전, 지역사회의 책임성 확보와 지역차원의 연안관리 전담조직을 구성하는 것으로, 대서양 연안에 모두 적용되는 프로그램 이라기보다는 지역이해당사자가 직접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환경이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제기된 지역에 한하여 실시하였음. 따라서 ACAP가 실시된 지역은 총 4개주의 14개 지역으로, 대부분 자연서식처 훼손, 생활·산업폐수 등에 의한 수질악화, 연안이용행위 이해상충 등이 문제점으로 나타난 지역이었음.
- 캐나다 환경부는 14개의 ACAP 지역의 관리를 위해 몇 가지 관리원칙을 제시하였음. 즉, 연안관리단위는 행정구역이 아니라 반드시 유역단위(watershed)로 설정할 것,¹³⁾ 모든 이해당사자가 참여할 것, 특히 환경문제를 유발한 이해당사자는 반드시 참여할 것, 지역단위에서 환경쟁점사항 규명 및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그에 따른 이행이 반드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역역량을 강화 할 것, 합의에 의한 의사결정과정을 거칠 것, 캐나다 환경부는 하나의 이해당사자로 참여하고 파트너십을 유지할 것, 개별 지역은 종합환경관리계획(Comprehensive Environmental Management Plan, CEMP)을 수립할 것 등임.
- 특히 ACAP의 이행과정 중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조직으로 독립적인 비영리단체로서 비전과 목표를 공유한 캐나다 환경부와 ACAP 각 지역이 대서양연안실천프로그램을 통해 공식적으로 연계됨에 따라, 비영리단체임에도 불구하고 ACAP 전담조직은 정부부처보다 강력한 집행력을 행사할 수 있었고, 환경보호에 대한 통합적 접근과 지역사회의 권한강화는 대서양 연안실천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운영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음.¹⁴⁾

12) 캐나다 환경부는 연방정부 차원의 연안관리계획을 마련하여 이행하였지만 지역사회에 적용하는데 한계가 노출됨에 따라 철저한 지역사회 연안관리프로그램인 대서양연안관리프로그램을 만들어 냄.

13) 각 ACAP 지역 면적은 최대 13,465km²에서부터 최소 325km²까지 다양함.

14) 14개 지역별로 구성된 비영리단체는 이사회, 코디네이터, 사무실을 갖추고 있고, 캐나다 환경부는 재정지원, 지역이해당사자는 자원봉사, 물품제공, 재정지원 등을 실천함. 캐나다 환경부가 실시한 대서양 연안실천프로그램의 경제적 평가 결과에 따르면, 1997~2001년간 ACAP 지역의 총 지출규모는 13.5백만달러이지만, 5년간 매년 482명의 고용기회가 창출되었고, GDP 22백만달러, 세입 8백만달러의 수익을 올렸다고 함. 또한 캐나다 환경부는 매년 6백만달러를 지원했으나 이 사업과 관련된 연방정부의 지원금액은 22백만달러로 환경부 지원금의 12배임(Environment Canada, 2002).

<표 2-17> ACAP 지역별 주요 이해당사자 및 주요쟁점

커뮤니티	운영조직	이해당사자	쟁점사항																	
			도시/산업	촌락/농어촌	경공업	수산/양식/산림	산업및생활하수유출	수질및저질오염	농업용수유출	토양침식	해안개발	낙시및조개채취금지	이의적이용훼손	야생생물및서식처훼손	어류이동및산란지훼손	연안이용이해상충	대기질악화	건강성	경관의심미적가치문제	
Cape Breton, NS	ACAP-Cape Breton Inc	✓					✓	✓					✓	✓	✓		✓	✓	✓	✓
Annapolis, NS	Clean Annapolis River Project		✓				✓	✓	✓	✓			✓	✓		✓	✓	✓		
Lunenburg/Mahone Bay, NS	Bluenose ACAP			✓	✓	✓	✓				✓	✓	✓			✓				
Pictou, NS	Pictou Harbor Environmental Protection Project	✓			✓	✓	✓				✓	✓	✓	✓		✓				✓
St. Croix, NB	St Croix Estuary Project Inc.	✓			✓	✓	✓						✓	✓		✓	✓			
Letang, NB	Eastern Charlotte Waterway Inc.	✓			✓	✓	✓						✓	✓		✓	✓			
Staint John, NB	ACAP Saint John Inc.	✓			✓	✓	✓				✓	✓	✓	✓	✓	✓	✓	✓	✓	✓
Miramichi, NB	Miramichi River Environment Assessment Committee	✓			✓	✓	✓						✓	✓	✓	✓				
Madawaska, NB/PQ	Société d'araagement de la rivire Madawaska et du lae Tmisf.mu	✓			✓	✓	✓		✓	✓			✓	✓		✓				
Bedeque Bay, PEI	Bedeque bay Environment Management Association		✓	✓	✓	✓	✓	✓	✓	✓	✓	✓	✓	✓		✓				
Cardigan Bay, PEI	Southeast Environmental Association		✓		✓	✓	✓	✓	✓	✓	✓	✓	✓							
Humber Arm, NF	Humber Arm Environmental Association Inc.	✓					✓	✓	✓				✓	✓		✓				
St. John's Harbor, NF	St. John's Harbor ACAP Inc.	✓					✓	✓				✓	✓	✓		✓				✓

출처 : Ellsworth, 1997

○ 지역별로 수립된 종합환경관리계획(Comprehensive Environment Management Plan)은 총 5단계에 걸쳐 수립되었음.

- 첫 번째 단계는 연안관리 이해당사자의 협력을 유도해 내기 위하여 지역주민, 상공인, 과학자, 환경시민단체, 유역관리 관련부처 공무원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임.¹⁵⁾ 이 단계의 중점 추진사업은 지침서 개발, 교육·훈련과 계획수립을 위한 워크숍 개최로, 통상 2~3개월이 소요되며, 이 과정에서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기본방향을 설정함.

15) 캐나다 환경부는 다른 파트너들과 마찬가지로 계획수립과정에 참여했지만 계획수립과정을 조정하지는 않음.

- 두 번째 단계는 이해당사자의 합의에 기초하여 비전(vision)을 마련하는 단계로, 비전은 이해당사자들이 지역사회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공유하는 최종 목표로, 지속적인 노력이 이루어지는 방향임.¹⁶⁾ 이 단계의 중점 추진사업은 비전수립을 위한 워크숍 운영 지침 작성, 비전의 적합성을 검토하기 위한 협의과정, 과학기술적 지원 등으로 비전과 관리목표를 설정하는데 3~6개월 정도 소요됨.
- 세 번째 단계는 현재 환경상태와 환경상태 목표 간의 차이를 규명하기 위해 현재의 환경질(Environment Quality)을 평가하는 단계로, 지역의 정보와 지식을 최대한 활용하여 정확한 환경상태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환경질 평가는 현 환경상태를 전반적으로 규명한 환경상태보고서 작성과 환경 및 사회경제적 평가를 통합한 환경위해도 평가로 나누어지며, 이 단계를 통해 생태계 복원에 필요한 구체적인 실천전략이 마련되고, 환경개선 및 보호기회 증진, 환경인식제고를 위한 교육기회가 제공됨. 이 단계의 중점사업은 환경상태보고서 작성, 환경위해도 평가 지침마련, 교육 및 훈련 시행이 주를 이루는데, 현 환경상태를 규명하는 단계는 2~4개월, 세부적인 환경위해도 평가는 2년 정도 소요됨.
- 네 번째 단계는 환경상태보고서작성과 환경질 평가를 통해 도출된 여러 가지 해양환경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해결방안을 선정하는 과정으로, 어떤 경우는 동시에 한 문제 이상 해결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다른 경우는 한 가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문적인 대응방안이 마련되기도 함. ACAP 개별 지역이 선택한 대응방안은 객관적인 평가와 기준에 따라 마련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기준은 사회경제적·환경적 여건을 반영해야 하고,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해 선택하도록 하였음. 이 단계의 중점사업은 선택한 대응방안을 종합환경관리계획으로 통합하고, 이해당사자의 이해와 합의를 거쳐야 하므로, 이 단계의 소요시간은 1~3년 정도임.
- 마지막 단계는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합한 대응방안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이행을 위한 이행주체 설정, 예산 설계를 하는데 통상 1~2년 정도 소요됨.

16) 이 단계를 통해 이해당사자들이 함께 비전을 세우고 공유하는 것은 지역관리역량을 증진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하며, 비전이 없으면, 단순한 쟁점을 해결하는 대응책에 불과했을 것이라고 판단함.

<표 2-18> ACAP 단계별 내용 및 중점과제

단계	내용	중점과제	기간
1단계	공식적인 위원회 구성 CEMP 프레임워크 개발	○ 지역운영위원회 조직 ○ CEMP수립을 위한 작업계획 마련	2~3개월
2단계	비전·기본목표 마련	○ 비전·목표·추진전략 워크숍 개최 ○ 이해당사자의 합의도출	3~6개월
3단계	환경상태 규명	○ 환경질 평가 시행 - A과정: 지역의 환경프로필 작성 - B과정: 세부적 환경위해도 평가	A과정 : 2~4개월 B과정 : 2년
4단계	문제해소를 위한 대응방안 선택	○ 대응방안에 관한 평가 ○ 기술적 선택목록 작성 ○ 선택한 대응방안이 사회경제적, 환경적 요인 에 유용한 것인가를 평가 ○ 지역이해당사자의 합의	1~3년
5단계	종합환경관리계획 수립	○ 실천계획 수립 ○ 이행기간·이행주체·예산설계 ○ 모니터링·평가시행	1~2년

출처 : Ellsworth, 1997

○ 대서양연안실천프로그램을 실시한 각 지역의 주요 추진사업은 지속가능발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향상, 생물·문화적 다양성 보호·관리, 수질관리, 지역주민의 역량제고, 환경모니터링 및 정보공유사업 등임.17) ACAP를 이행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첫째, ACAP는 공간적 경계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의 경계도 초월하게 되는 등 월경적

17) ACAP의 각 사이트별 주요사업은 다음과 같음.

- 지속가능발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 하수질수향상을 경제적 수단으로 활용(조개양식, 스포츠 낚시), 쓰레기 처리를 위한 인공갯벌 조성, 제조업자와 협을 통한 오염방지, EFP(environmental farm plans)의 개발·이행을 통한 농장주 지원, 전통산업 증진을 위한 교육실시, 생태관광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
- 생물·문화다양성 보호 : 연안자원 이용도면 작성, 보호구역 지정 및 보호관리협정 체결, 토지위탁, 자연·문화유산 이행 및 활용, 자연·문화유산 홍보사업 추진
- 수질관리: 적시·정확한 수질정보 제공, 시민참여 수질모니터링 실시, 오수처리 증진, 오염방지 산업단지 육성, 누설 및 비효율적 수로체계 개선 등
- 지역주민 역량제고: 직장교육, 포럼개최, 모든 시민에게 책무성 부여할 수 있는 기회제공, 쓰레기 감시, 공모사업 창출 및 참여기회를 증진하기 위한 중개인제도 실시
- 환경모니터링 및 정보공유: Eco-action센터 건립, 이용자편의의 GIS시스템 구축, 뉴스레터, 캐나다환경부의 커뮤니티 기반 환경계획수립지침서 개발, 전자네트워크 구축 등

(越境的) 환경관리를 위한 역량이 제고되었음. 예를 들면, 펀디만¹⁸⁾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는 4개의 지역간에 파트너십이 형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Canada-US Gulf of Maine program 협력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국가간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었음.

- 둘째, 갈등의 내용과 갈등해소방안을 공유하여 이해당사자의 책임감이 제고되었음. 비전수립, 쟁점사항 공유, 대응전략 구축, 이행 등 일련의 연안관리과정을 경험하면서 이해당사자들은 정책이행 및 결과에 대한 책임감을 높이게 되었고, 이를 통해 소모적인 이해상충을 피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갈등이 발생했을 경우에도 이를 해결할 수 있었음.
- 셋째, 과학적 정보 수요의 확인, 과학적 프로젝트의 참여,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생산을 위한 모니터링 및 조직 구성을 통해 의사결정시 과학적 정보를 활용함으로써 시민들이 수질개선을 위한 오수처리 시설을 설치하는데 동의하게 되었음.
- 넷째, 지역이해당사자들의 협력적 의사결정, 새로운 관리수단과 모델, 공유된 정보, 연계성 강화 등으로 지역이해당사자의 역량이 제고되었음.
- 마지막으로 캐나다 환경부는 기존의 수직적이고 경직된 업무방식을 수평적이고 팀단위의 업무방식으로 변환함에 따라 정부가 지역사회에 대해 명령하고 조정하려는 기존의 입장에서 탈피하여 지역사회를 지원하고 역량을 증진하려는 방향으로 접근방법이 변하게 되어 효과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하게 되었음. 이외에 지역사회와 관련된 연방정부 및 주정부, 협회, 기업간에 파트너십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지역사회가 스스로 자신의 수요를 규명해 내고, 자신들의 수요에 맞는 정책·프로그램·서비스를 스스로 만들어낼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이행과정과 평가과정에도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었음.¹⁹⁾

18) 우리나라의 갯벌과 유사한 형태인 펀디만은 만 입구에서부터 안쪽까지 300km정도 되는 염습지로 캐나다 노바스코샤주와 뉴브런즈윅주 사이에 위치함.

19) 전통적인 방식에서는 주로 연안지역사회에서 일어나는 수요를 정부가 인식하여 그에 대응하는 정책, 프로그램, 서비스를 고안하였음.

3. 중국의 연안관리제도

1) 중국의 연안관리관련 법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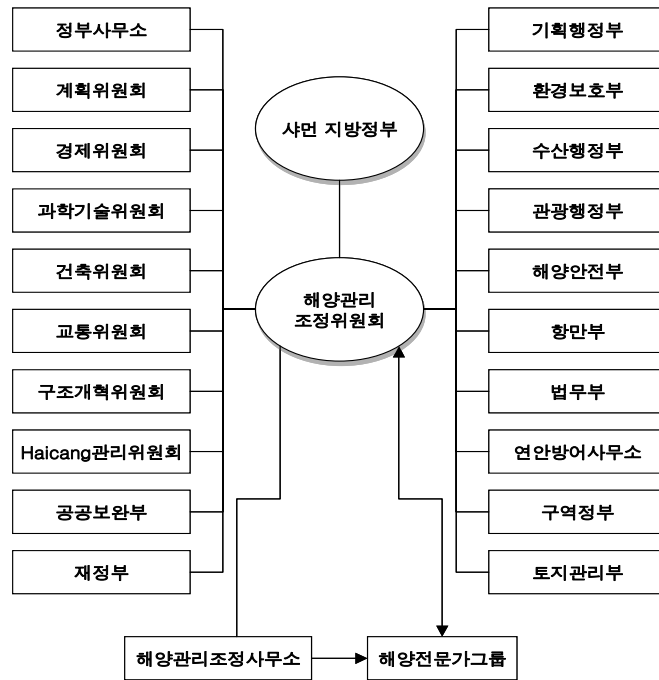
- 중국의 연안관리 관련법과 프로그램은 현재까지 별도로 존재하지 않으나(Lau, 2005), 연안관리와 관련된 법률은 다음과 같이 다양한 형태로 정비되어 있음.
 - 영해·접속수역법(the Law of the PRC on the Territorial Sea and the Contiguous Zone)
 - 배타적경제수역 및 대륙붕법(the Law of the Exclusive Economic Zone and Continental Shelf of the PRC)
 - 해역이용·관리법(The Law of the PRC on the Use and Management of Sea Areas)
 - 수산업법(the Fisheries Law)
 - 해양환경보호법(the Marine Environmental Protection Law)
- 현재 중국에서 연안통합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정부부처는 토지자원부(the Ministry of Land and Resource)산하 국가해양국(State Oceanic Administration, SOA)으로, 해양환경보호과, 국제협력과, 해역이용관리과, 과학기술과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Lau, 2005).
- 중국의 연안관리와 연관된 법률 중 연안통합관리를 잘 반영한 법률은 해역이용·관리법과 해양환경보호법으로, 이 중에서 해역이용·관리법은 연안해역의 이용·개발을, 해양환경보호법은 연안해역의 환경보호를 담당하고 있음.
 - 해역이용·관리법은 항만, 양식, 광업, 제염 등 해역의 이용과 개발에 관한 모든 사항을 통합적 관점에서 다루는 것으로(해양수산부, 2003), 해역기능에 따라 구획을 정한 용도구역제와 모든 해역행위에 관한 인·허가제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특히 해역용도구역제를 설정하는 원칙에 대해 해역의 위치와 자연자원·환경적 특징을 기초로 과학적으로 해역의 기능을 명확히, 사회경제발전에 필요한 각 행위의 용도를 종합계획 차원에서 입안, 생태환경의 보호·개선과 해역의 지속적 이용으로 해양경제발전을 촉진, 해양교통 안전을 보장, 국방의 안전을 보장하는 등으로 규정해 놓았음.
 - 해양환경보호법은 해양생태계 보호를 포함하여 해양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오염 활동, 즉 육상기인 오염관리까지도 통합적으로 다루고 있음. 해양생태보호의 대상은 맹그로브, 산호초, 연안습지, 만, 하구, 중요한 어업수역 등 전형적이고 대표적인 해양시스템을 유지하는 지역, 해양생물의 중요서식지, 역사문화유적지, 자연경관지 등을 해양자연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음(해양수산부, 2003).

2) 샤먼 연안통합관리프로그램

- 샤먼시는 1984년에 경제개발 특구²⁰⁾로 지정된 이후 과도한 연안개발로 인해 해양오염, 서식처 파괴, 수산자원 남획, 다양한 이용행위 상충 등과 같은 문제점에 직면하였으나, 1994년 PEMSEA의 연안통합관리 시범사업지역²¹⁾으로 선정되면서 시행한 연안통합관리 프로그램으로 1995~2001년까지 연평균 GDP성장률 15.7%를 유지하면서도 모범적인 환경 관리지역으로 변모하였음.
- 샤먼 연안통합관리프로그램은 다양하고 복잡한 인간 이용행위와 관련된 연안자원 생태계와 지속가능성에 대한 명확한 이해, 생태·사회·경제정보의 통합으로 자원이용의 최적화, 개발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학제간·부문간 협력 증진과 통합전략 구축, 연안·해양 국제규정 준수 및 환경·사회경제 목표달성을 위한 샤먼 지방정부의 역량증진 지원을 목표로 이행하였음.
- 이에 따라 연안통합관리 시범사업 시행 이전에 연안·해양을 부문적으로 다루었던 12개 이상의 중앙·지방정부는 연안통합관리시범사업의 시행 후인 1995년 후반에 부처간·부문간 조정을 위한 '샤먼 연안통합관리사업 조정위원회(Xiamen ICM project Coordination Committee, PCC)'로 통합됨에 따라 과거 다양한 부처에 의해 연안·해양관련 쟁점사항을 관리하면서 발생했던 문제점, 즉 정책간 단절 및 관련 부처간 상충, 관리범위와 기능의 중복 등을 해소할 수 있었음.
 - 동 위원회는 시범사업 완료 후, '해양관리조정위원회(Marine Management and Coordination Committee, MMCC)'로 전환되어 현재 해양·연안개발 계획과 해역 이용행위와 관련된 인·허가사항 등을 통합적으로 담당하고 있음(<그림 2-1>).
- 또한 연안관리 법률체계의 정비와 통합법을 강화하였는데, 해역이용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1997)을 통해 연안·해양자원의 이용관련 쟁점사항 및 다목적 자원이용에 관한 관리원칙 제시, 해양관리조정위원회(MMCC)와 해양관리조정사무소(MMCO)의 제도화, 연안관련사업의 검토·승인과정을 담당하고 과학적 의사결정, 연안공간 이용료 적용에 관한 기관 간 조정기준을 제시하였음. 이외에 해양관리조정위원회 내에 항만, 수산, 환경, 연안경비대의 핵심공무원으로 실무팀을 구성하여 통합·조정된 법률 집행체계를 더욱 강화하였음.

20) 경제성장의 요인은 천혜의 조건을 갖춘 항만, 온화한 기후, 수려한 경관뿐만 아니라 Xiamen-Zhangzhou- Quanzhou의 무역삼각지대, 홍콩·대만과 인접한 전략적 요충지, 풍부한 과학기술과 인적자원을 들 수 있음.

21) 샤먼 연안통합관리프로그램은 PEMSEA의 시범사업으로 시작되었고, 사업의 목적은 연안통합관리 역량강화와 연안통합관리 접근방식을 통한 해양환경오염의 해소에 있었음. 샤먼 연안통합관리시범프로그램 1단계 사업은 1994~1999년에 진행되었고, 현재는 샤먼정부에서 2단계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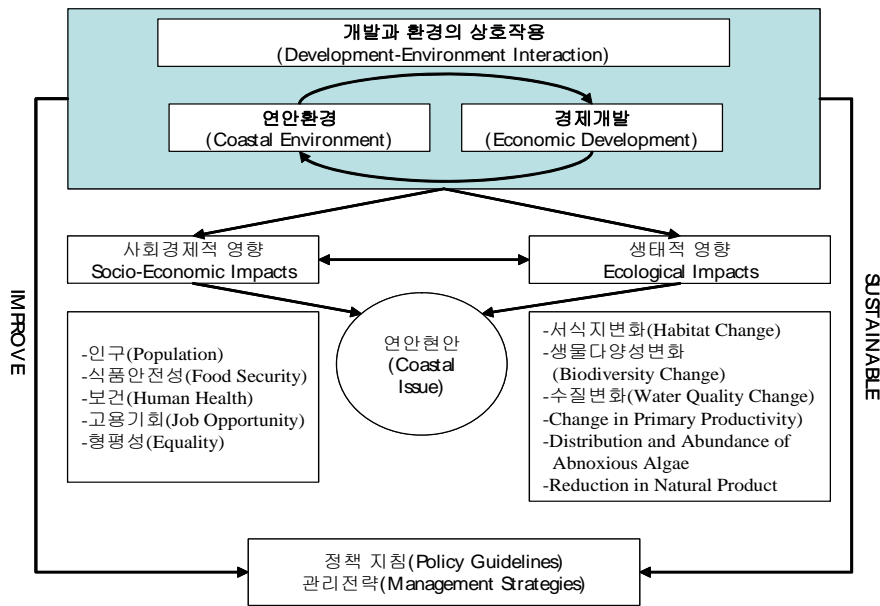
출처: McCleave, 2003

[그림 2-4] 사면 연안통합관리 조정 메커니즘

- 특히, 사면시의 연안관리가 성공할 수 있었던 중요한 요인은 지속적인 과학기술의 지원이었는데, 1996년 연안통합관리 시범사업에서는 해양과학자, 법률전문가, 경제학자, 과학자, 도시계획전문가들로 해양전문가그룹(Marine Experts Group, MEG)을 구성하여, 이 그룹으로 하여금 과학기술, 사회경제 현안에 대한 자문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였음. 이로 인해 여러 부처간 협력이 증진되었고, 연안통합관리 적용과 환경관리계획 이행에 있어 지방정부에 대한 원활한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음.
- 과학기술 지원의 주요 성과는 해역 용도구역제, 통합영향평가, 누적영향평가제의 도입, 연안통합관리의 사회경제적 편익 평가 등임. 특히 해역 용도구역제²²⁾는 다양한 이용행위 사이의 상충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한 관리수단으로, 해양전문가그룹은 생태적 여건과 사회경제적 조건을 동시에 고려하여 이용행위에 관한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이해상충을 조정하며 생태계 보전과 연안자원 이용에 따른 사회경제적 이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식을 정책결정자로 하여금 채택하도록 하였음.

22) 해역 용도구역은 해운/항만 구역, 관광구역, 양식구역, 연안산업구역, 해양과학기술구역, 채광구역, 자연보호구역, 특수 용도구역, 복원구역으로 구분하고, 해역이용의 우선순위는 우선적, 조화적, 제한적 이용으로 설정하며, 용도 구역내 이용우선순위는 주로 사회·경제적 이익 및 환경적인 영향에 의해 결정함.

- 이와 같이 과학과 정책의 결합은 연안통합관리프로그램 성공의 중요한 요인으로, 과학기술적 지원이 어떻게 연안통합관리의 성공적 이행에 기여할 수 있는가를 명확히 보여준 사례라 할 수 있음. 예를 들어, 통합영향평가과정을 통해 경제개발의 누적영향을 증명하였으며, 해역환경특성과 사회경제적 이용행위에 관한 정보를 지리정보체계로 통합함으로써 해역용도구역을 설정하였고, 용도구역별로 해역이용·관리우선순위 선정, 부정적 결과에 관한 사전예방방법 및 저감기준 등을 마련할 수 있었음.



출처: Hong, 2004

[그림 2-5] 통합영향평가의 기본체계도






- 마지막으로 환경정책결정자와 관리자의 인식제고를 위해 ‘연안의 지속가능발전 교육훈련 센터’를 샤먼대학교와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설립하였음. 동 센터는 동아시아의 연안관리자와 공무원들에게 연안통합관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것으로 확대되었고, PEMSEA와 공동으로 현장학습, 워크숍 개최, 매년 실시되는 훈련과정을 통해 국가 및 지역단위 연안관리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도록 개발하였음.
- 따라서 샤먼 연안통합관리가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은 샤먼정부와 연안관리 관련부처의 관리역량강화, 연안환경실태평가와 전략적 환경관리계획 수립, 정부 부처·부서간 이해상충 조정 메커니즘 개발, 연안통합관리를 위한 법률체제 정비 및 체계화, 이해상충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해역 용도구역제’ 개발, 해양환경관리 법제도 집행 강화, 과학지원 및 정책자문 기구 설립·운영 등임.

4. 일본의 연안·해양관련 체계

1) 일본의 연안·해양관련 법률

- 2003년 현재 일본의 연안역 및 해양관련 법률 및 조약 수는 238개에 이르는데, 이들 법률을 5개 해양구역(내륙, 연안육역, 연안해역, 근해, 공해)으로 나누어 분류하면 연안육역에 가장 많은 196개의 법률이 관련되어 있음. 연안해역의 경우에도 총 152건의 법률이 적용되고 있고, 연안해역과 연안육역을 동시에 포괄하는 법률의 수도 112건으로 나타나고 있음.
- 법률 중 해역전체를 포괄하는 것은 총 69개이고 일부해역을 한정해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84개에 이르고 있음.

<표 2-19> 일본 연안역 및 해양관련 법률 및 조약

법률수	165 개(69%)	196 개(82%)	152 개(64%)	72 개(30%)	16 개(7%)
총 238 개			(전해역 69 개, 한정해역 84 개)		
					
	Coastal zone (연안역) 112 개				▽
구역	Inland (내륙)	Coastal land (연안육역)	Coastal water (연안해역)	Offshore water (근해)	High water (공해)

자료 : 김종덕, 연안역이용관리에 있어서 이해관계자 구성 및 시민참가에 관한 연구, 2003

- 일본의 연안 보전·이용·개발과 관련된 법률로는 해안법(1956년), 공유수면매립법(1921년), 항만법(1950년), 세토나이카이환경보전특별조치법(1978년) 등이 있으며, 양호한 자연경관, 식생, 야생생물의 서식지 등의 경우에는 자연환경보전법(1972년), 자연공원법(1957년),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1918년), 문화재보호법(1950년), 수산자원보호법(1951년), 연안어업정비개발법(1974년) 등이 적용되고 있어 연안관리법을 제외하고는 우리나라와 유사한 법체계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이 중에서 우리나라의 연안관리법에 준하는 법률인 해안법은 해일, 고조, 파랑 기타 해수 또는 지반의 변화에 의한 피해로부터 해안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즉, 동

법은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고조대책·침식대책 등 해안보전사업, 해안의 청소, 레크리에이션의 장소로서의 정비 등 환경보전대책을 정하고 있음. 따라서 해안법에 의하면 당해 해안을 관할하는 도도부현 지사는 해안방비·국토보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해안 구역에 대하여 해안보전구역을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해안법의 내용은 총칙(1조~4조), 해안보전구역에 관한 관리(5조~24조), 해안보전구역에 관한 비용(25조~37조), 해안보전구역에 관한 관리 등의 특례(37조의2), 일반공공해안구역에 관한 관리 및 비용(37조의3~37조의8), 잡칙(38조~40조의5), 벌칙(41조~43조)

2) 연안·해양관련 정책

- 일본의 해양·연안관련 행정 및 정부조직을 보면, 내각관방을 비롯하여 내각부, 총무성, 외무성, 문부과학성, 농림수산성, 국토교통성, 환경성이 관련되어 있고, 방위청, 수산청, 자원에너지청, 해상보완청, 기상청 등 청 단위의 정부조직도 관련되어 있음. 이외에, 연안 및 해양자원관리과 관련한 각종 심의회뿐만 아니라, 기상연구소, 해상재해방지센터 등 주요 관련 행정법인도 관련되어 있음. 이들을 통하여 연안 및 해양의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들은 각종 법률과 복잡하게 연관되어 있음.
- 최근 국토교통성이 확정한 해양·연안역 정책대강을 살펴보면, 8개의 기본방향과 95개의 실천사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8개의 기본방향의 요지는 다음과 같음.
 - 해상에서의 안전확보
 - 안전항행이 가능한 수역확보 및 조약 부적합선박의 배제 등에 의한 해상교통의 안전확보
 - 테러, 사고, 재해 등에 관한 대책 강화
 - 해상보안업무체제의 충실
 - 국토보전 및 방재대책 추진
 - 방재 또는 감재에 의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 해안침식대책, 외딴섬 교통 확보 등에 의한 국경 외딴섬 등의 보전
 - 대륙붕 등의 조사, 명확한 경계감시 등에 의한 해양권의 확보
 - 환경보호 및 보전 추진
 - 해양·연안역 환경 모니터링 체제 강화

- 유출유, 표류 쓰레기 등 해양오염 등예의 명확한 대응
- 자연환경 및 아름다운 경관의 회복
 - 갯벌, 해초장 등의 재생
 - 구조물의 경관과의 조화나 표착쓰레기 대책 추진
 - 육역에서의 수질오탁부하의 경감
- 해양·연안역의 이용 추진
 - 해상수송의 활성화
 - 미이용 토지의 신기능 입지 촉진
 - 낮은 환경부하 선박 등의 기술개발
 - 메가플로트 등을 활용한 해양의 새로운 이용 추진
- 해양·연안역에 대한 친근감 및 이해 증진
 - 친수공간의 확보나 레크리에이션 활성화
 - 해양·연안역에 관한 지식의 보급 및 이해 향상
- 종합적 관리 추진
 - 다양한 주체의 참여와 연계, 협동에 의한 계획 책정
- 국제사회와의 협조 및 협력관계 확립
 - 국제적인 체제에의 적극적인 참여
 - 동남아시아 제국의 해상보완능력 향상 지원
 - 해양환경 또는 방재에 관한 기술이나 정보의 제공
- 이러한 기본방침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성 내의 해양·연안역 정책추진본부(가칭)를 설치하여 종합적이고 전략적으로 시책을 전개해 나갈 예정임.

<표 2-20> 일본의 연안 및 해양 주요정책

정책명	정책의 목적
<p>연안역의 종합적인 이용계획 책정을 위한 시행 지침 국토교통성, 1990년</p>	<p>본 지침은 제4차 전국종합개발계획의 취지에 맞추어 연안역의 환경보전과 안전확보를 도모함과 동시에 다면적 이용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유도하여 종합적, 광역적인 이용에 의한 매력적인 지역진흥을 이루기 위해 지방공공단체가 주체가 되어 지역계획 등과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연안역의 종합적인 이용계획을 수립하는데 참고가 되는 지침임. 이 지침은 시행적인 지침으로서 수립된 것으로 앞으로 지방공공단체의 계획수립의 추진과정에서 각 단체의 의향에 따라 필요한 경우 수정을 하면서 최종적인 지침으로 정비해 나감.</p>
<p>21세기의 국토그랜드디자인 국토교통성, 1998년</p>	<p>풍요로운 생활의 원천이 되는 경제사회의 활력을 유지하면서, 혜택에 의해 인간사회를 지탱하는 자연을 보전하고 회복함과 동시에 인간이 시도하는 모든 활동에 풍요로운 충실감과 살아가는 의미를 부여하는 문화를 창조하여 사람들에게 다양한 삶의 선택이 가능하도록 할 수 있는 국토의 구상 계획임.</p>
<p>연안역권종합관리계획 책정을 위한 지침 국토교통성, 2000년</p>	<p>지구환경에 대한 의식이 높아지고 유엔해양법조약에서 정하는 우리의 원리와 의무를 고려하여 연안역을 인류공유의 재산인 귀중한 국토공간으로서 인식하고, 그 다양한 기능 및 자원을 적절히 보전함과 동시에 다면적 이용을 추진해 가기 위해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추진하고자 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아름답고 안전하며 생명력있는 모습의 연안역을 복원, 창조하여 후손들에게 물려준다. (2) 양호한 환경의 형성, 안전의 확보 및 다면적 이용의 조화를 도모한다. (3) 다양한 관계자의 참가에 의해 매력있는 자립적인 지역을 만들어 나간다.
<p>해양·연안역 정책대강 국토교통성, 2006년</p>	<p>해양·연안역에 있어서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는 각각이 독립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관련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련있는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해가는 것이 필요함.</p> <p>따라서 해양·연안역에 관한 행정분야의 대부분을 가지고 있는 국토교통성은 일본의 해양·연안역 정책으로 8개의 기본방향과 95개의 실천내용을 확정하였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상에서의 안전확보, 국토보전 및 방재대책 추진, 환경보호 및 보전 추진, 자연환경 및 아름다운 경관의 회복, 해양·연안역의 이용 추진, 해양·연안역에 대한 친근감 및 이해 증진, 종합적 관리 추진, 국제사회와의 협조 및 협력관계 확립

<표 2-21> 일본행정부 내의 주요 해양관계부처간 연락회의

명칭	구성원		
해양개발관계부처 연락회의 (1980년 설치)	내각관방부장관(사무, 의장), 내각관방부장관보(부의장), 총무성, 외무성, 문부과학성, 수산청, 자원에너지청, 국토교통성, 환경성		
연락회의 오키노토리시마 활용작업부회 (1993년 설치)	내각참사관(내각관방부장관보소속), 총무성, 외무성, 문부과학성, 수산청, 자원에너지청, 국토교통성(종합정책국, 하천국), 환경성, 후생노동성(읍저버)		
유류오염사건에 대한 준비 및 대응에 관한 관계부처 연락회의 (1995년 설치)	내각관방내각참사관, 내각부정책통괄관소속 참사관(재해대응대책담당), 경찰청, 방위청(장관관방 시설과 환경대책실, 운영국 운영과), 총무성, 소방청, 법무성, 외무성, 문부과학성(대신관방 문교시설부 시설계획과, 연구개발국 해양지구과), 후생노동성, 수산청, 자원에너지청, 경제산업성(원자력안전보안원 광산보안과), 국토교통성(종합정책국, 하천국, 항만국 환경기술과), 해상보안청, 환경성		
대륙붕조사에 관한 관계부처연락회의 (2002년 설치)	<table border="0"> <tr> <td>내각관방부장관보(외정, 의장), 내각관방부장관보(내정), 방위청, 외무성, 문부과학성, 수산청, 자 원에너지청, 국토교통성, 해상보 안청, 환경성</td> <td><간사회구성원> 내각관방내각참사관(내각관방부장관 보소속), 방위청, 외무성, 문부과학성, 수산청, 자원에너지청, 국토교통성, 환 경성, 해상보안청(해양정보부 기획과, 대륙붕조사실)</td> </tr> </table>	내각관방부장관보(외정, 의장), 내각관방부장관보(내정), 방위청, 외무성, 문부과학성, 수산청, 자 원에너지청, 국토교통성, 해상보 안청, 환경성	<간사회구성원> 내각관방내각참사관(내각관방부장관 보소속), 방위청, 외무성, 문부과학성, 수산청, 자원에너지청, 국토교통성, 환 경성, 해상보안청(해양정보부 기획과, 대륙붕조사실)
내각관방부장관보(외정, 의장), 내각관방부장관보(내정), 방위청, 외무성, 문부과학성, 수산청, 자 원에너지청, 국토교통성, 해상보 안청, 환경성	<간사회구성원> 내각관방내각참사관(내각관방부장관 보소속), 방위청, 외무성, 문부과학성, 수산청, 자원에너지청, 국토교통성, 환 경성, 해상보안청(해양정보부 기획과, 대륙붕조사실)		

<표 2-22> 일본의 해양정책에 관한 최근의 정책제언 및 골자

경제인단체연합회 『21세기 해양 그랜드디자인』 - 우리나라 200해리수역에 있어서의 해양개발네트 워크 구축- 2000년 6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정책을 국토정책으로 추진하기 위해 「21세기 국토그랜드디자인」에 맞추어 명명함 · 2003년3월의 「산업기술국가전략15분야」에서 해양분야가 에너지·조선·식량의 3개로 분산되어 버린 것에 대하여 통일적인 국가프로젝트의 필요성을 산업계가 제언 · 일본주변해역을 그 특성에 맞추어 7개의 해역으로 구분하여 각각에 해상기지를 순차적으로 건설하여 네트워크를 구축 · 해상기지 시범사업 국가적 프로젝트로서 제언
일본연안역학회 『연안역의 지속적인 이용과 환경보전을 위한 제언』 2000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안역의 지속적인 이용을 위해 환경의 보전·개선·회복의 개념을 바탕으로 통합관리의 제도적인 방안을 제언 · 연안역의 범위를 「영해, 연안시정촌 및 하천유역」으로 규정하고 연안역관리의 주체를 부문별 행정분야로부터 독립시키는 방안을 제시 · 연안역관리를 위해 이념법으로서 「연안역관리법」과, 실행법으로서 「연안역통합관리법」의 제정을 제안하고, 통합관리의 실현을 위해 3단계접근방안(제도정비 및 시범사업, 시범사업 지역확대, 전국적용 및 통합제도 정비)과 관리재원의 확보 제시

<표 2-22> (계속)

단체	주요내용
<p>일본재단 『해양과 일본 : 21세기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해양 정책에 관한 제언』</p> <p>2002년 5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적인 해양정책의 수립 · 해양정책 수립과 시행을 위한 행정조직 정비 · 종합적 연안역관리의 법제정비 · 수산자원 합리적 관리, 어업과 타해양이용의 조정 · 배타적경제수역 및 대륙붕관리의 구체화 · 해양에 관한 청소년교육 및 학제적 교육·연구의 충실
<p>과학기술·학술심의회 해양개발분과회</p> <p>-2001년 자문요청에 대한 답신-</p> <p>『장기적 전망에서 해양개발의 기본적 구상 및 추진방안에 대하여』</p> <p>2002년 8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다를 지킨다」, 「바다를 이용한다」, 「바다를 안다」의 균형 있는 정책으로의 전환 · 국제적인 시야로 전략적인 해양정책 및 기획·입안 · 종합적인 시점에서 해양정책을 입안하고 관계부처가 연계하여 시책을 실시 · 해양보전: 해양환경 가치평가 실시 등 4항목 · 해양이용: 재생가능에너지나 광물·에너지자원이용 등 5항목 · 기반정비사항: 종합적 시점에서 해양정책 실시를 위한 기획·입안시스템의 검토 등 4항목
<p>(사)해양산업연구회</p> <p>『우리나라200해리수역의 해양관리네트워크구축에 관한 제언』</p> <p>2003년 5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타적경제수역 및 대륙붕은 국토관리에 준하는 가장 중요한 과제로서 국가가 관리(도서의 진흥·활용/대륙붕조사의 추진) · 해양관리를 위한 기본법제정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 - 5년 이내에 EEZ 및 대륙붕의 개발·이용·보전의 국가전략을 정하는 기본법제 - 해양관리네트워크구축의 핵심조치로 해양정책통괄실 설치 · 해양관리기본계획(가칭)의 수립이 필요 · 해양관리의 기반인 해양정보정비 조속 착수 · 국민의 이해를 얻는 것과 동시에 인재를 육성함
<p>국토교통성 연안역통합관리연구회</p> <p>『연안역통합관리연구회 제언』</p> <p>2003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안역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지역을 중심으로 분석을 실시하고 대책을 통합적으로 취해나갈 필요성이 있음을 제언 · 연안역의 개별문제를 「이용과 환경의 문제」, 「이용상의 문제」, 「방재대책과 환경문제」, 「방재대책과 이용의 문제」, 「방재대책상의 문제」, 「환경·이용·방재 각 측면에 관계된 문제」로 분류하여 시책을 추진 · 향후, 연안역통합관리계획서를 적극적으로 수립해 나갈 필요성으로 제시

<표 2-22> (계속)

단체	주요내용
자민당정무조사회(해양권익에 관한 워킹그룹) 『해양권익을 지키기 위한 9가지 제언』 2004년 6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권익관계자료회의」(가칭)를 설치하여 전략적인 정책을 수립·실시 · 중간선의 일본 쪽에 대해 정부주도의 자원조사 및 광업권의 부여·시범채굴의 실시 · 동지나해의 경계확정문제를 조속히 해결 · 2009년 대륙붕한계 연장신청을 위한 조사 촉진 · 평시로부터 유사시로 이행하는 그레이존 사태에의 대응을 포함한 관저의 위기관리체계 정비 · 센카쿠제도 주변정비에 관한 해상보안청의 경비·감시체제 강화 · 중국해양조사선에 의연하게 대처 · 오키노토리섬, 센카쿠제도에 대한 우리나라의 시정권을 강화 · 자위대의 능력강화와 일미안보의 틀을 활용하여 각종사태에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확보
해양정책연구재단 『해양과 일본, 21세기 해양정책제언』 2005년 1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기본법의 제정 · 종합적 해양행정을 위한 기구정비 · 배타적경제수역 및 대륙붕의 관리체계 구축 · 해양의 안전보장 확립 · 해양환경의 보호·보전·재생의 추진 · 해양생태계를 고려한 해양자원의 개발추진 · 통합연안역관리시스템 구축을 향한 노력 강화 · 방재·감재의 추진 · 해양관리를 위한 해양정보의 정비 · 종합적 해양정책 실현을 위한 연구·교육 및 홍보추진

5. 호주의 연안관리정책

1) 국가차원의 연안관리제도

- 호주의 연안관리정책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국제사회의 인식변화를 수용하고 있음. 따라서 호주의 연안관리정책은 4개의 인자, 즉 지구의 기후변화, 지속가능한 개발, 통합자원관리를 위한 요구, 정책개발에 대한 지역사회 참여에 기반을 두고 있음(Thom & Harvey, 2000).

- 호주는 다양한 단계²³⁾의 정부구조를 가지고 있으나 대부분의 연안관리 관련 법률은 주 정부차원에서 제정되었고, 이러한 연안 관련 법률의 대부분은 계획이나 다른 법률들과 강하게 연계되어 있음. 그러나 일반적으로 연안관리와 개발조절을 위한 많은 책임은 지방정부에 있음.
 - 1980년대 제정된 연안해역법(Coastal Water Act)은 연안에 접한 주정부의 해역관할권에 대해 해안선으로부터 3해리 이내의 해저관할권과 연안해역 관련 법률제정권을 부여하고 있음.
 - 연안해역관리와 관련된 연방정부 법률로는 대보호해양공원법, 멸종위기종관리법, 환경법, 환경보호법, 수산관리법, 해양구조물법 등이 있음.
- 1991년 연안환경의 악화에 대한 하원의 환경·오락·예술 상임위원회(the House of Representatives Standing Committee on Environment, Recreation and the Arts)의 조사 보고서에 해당하는 '상처입은 해안선(The Injured Coastline)'은 연안관리정책의 개발을 위한 기폭제 역할을 담당하였음. 이에 따라 1991년 10월 수상은 복잡한 자원관리 문제에 대하여 중앙정부에 독립적인 충고를 하는 것으로 설립된 자원평가위원회(Resource Assessment Commission; RAC)로 하여금 연안지대에 있는 건물, 관광, 양식장, 관련 개발에 대한 조사를 지휘할 것을 의뢰하였음.
- 1992년 환경관리에 대한 정부간 협정(The Inter-Governmental Agreement on the Environment; IGAE)이 발효되었고, 이것은 바로 주정부에 제공되었음. 이와 함께 1995년 정부간에 협정된 연방정부의 연안정책은 연안자원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이것 역시 주정부에 제공되었음.
- RAC는 1993년 호주의 연안이용·관리실태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여기서 호주의 연안관리 문제점에 대해 호주연안통합관리체제의 부재로 인한 관리의 비효율성을 지적하고, 국가연안관리목표, 관리수단, 지역이해당사자의 참여, 연안관리 재정확보 및 지원 등에 대한 연안자원관리법(Coastal Resource Management Act) 제정과 국가연안실천 프로그램 수립을 권고하였음. 이에 따라 중앙정부는 연안관리에 있어서 협력의 주도권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주정부와 지방정부와 협상을 시작하였음.
- 그러나 주정부에서는 주정부 자체의 고유권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함에 따라, 연방정부에서는 연안자원관리법 대신 1995년 연방정부 연안정책(Commonwealth Coastal Policy)이라는 비법정 정책수단을 채택하였음.

23) 호주의 정부시스템은 3단계로 연방정부(Commonwealth), 주정부(State and Territory government), 지방정부(local government)로 구성됨.

- 1998년에 수립된 호주의 해양정책(Australia's Ocean Policy)에서도 연방정부의 관할권 보다는 지역단위의 생태계에 기반한 지역해양계획수립(Regional marine plans)을 제안했고, 국가해양각료회의, 국가해양자문위원회, 지역해양계획운영위원회, 국가해양사무국의 설립 등을 제안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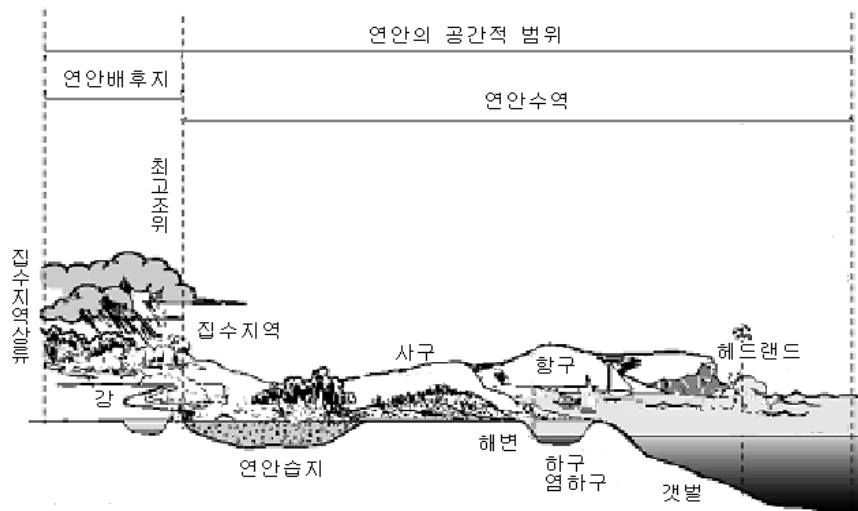
<표 2-23> 연안에 대한 호주 주정부의 다양한 정의

주정부	연안의 정의
New South Wales (연안정책, 1997)	- 개방 연안에는 고위수준면의 1km 육지 연안 벨트 - 만, 하구, 연안 호수, 섬, 연안 하천에는 밀물일 때 주변의 1km 거리까지 포함 - 연안 정책은 거대도시 지역과 뉴캐슬, 중앙연안, 시드니 도시지역을 배제
Northern Territory (연안관리정책, 1985)	- Northern Territory의 연안 지대는 해안선에 가깝거나 해안선과 상호작용하는 바다, 육지, 수로로 구성 - Northern Territory 정부에 의해서 관리되는 앞바다의 섬과 바다를 포함
Queensland (연안 보호 및 관리법, 1995)	- 연안지대는 연안의 물과 연안 육지면에 있는 모든 지역을 포함 - 연안지대에는 자연적 현상뿐 아니라 연안 및 연안자원에 영향을 미치거나 잠재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생태적·자연적 과정까지 포함 - 연안지대는 주의 연안 해면뿐만 아니라 활동이 연안자원에 영향을 미치는 배수지역까지를 포함
Tasmania (주정부 연안정책, 1996 : 개정 1999년과 2002년 법적인 문제제기)	- 연안지대는 적어도 다음의 기본요소를 포함 · 해저, 조수지역, 해안 · 사구, 비치, 해식애, 해식대, 암석지역 · 물, 식물, 동물 · 대기 · 습지, 염습지, 연안의 내륙을 따라 연해 있는 석호와 습지 · 관련 식생지역 · 관련 동물 서식지 지역 · 관련 인간 서식지와 인간 활동 지역 - 연안지대는 바다쪽으로 영해의 외곽 한계까지 확대하고 있고, 내륙 쪽으로는 위에 목록화된 요소에 의해서 연안의 환경과 쾌적함에 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는 활동, 이용, 개발이 포함되도록 필요한 범위, 그리고 연안 정책의 원리, 목적, 결과를 성취하기 위한 범위까지 확대 가능
South Australia (연안보호법, 1972 - 조정, 통제)	- 연안해역 경계: 도시지역에서는 고위수준면에서 100m(농촌지역에서는 550m), 평균 저위수준면에서 바다 쪽으로 3해리 - 연안육역 경계: 썰물과 밀물의 영향을 받는 하구, 작은 만, 셋강, 만이나 호수 내에 있는 모든 육지를 포함하고, 육역 경계는 법률에 따라 다양해질 수 있음.
Victoria (연안관리법, 1995)	- 연안지대는 · 연안 배수구역의 해역쪽 부분에 있는 육지와 물, 주정부의 경계 내의 바다와 해저(일반적으로 고위 수준면으로부터 3해리)
Western Australia (정부 견해보고서, 1983)	- 30m 깊이의 연안해면, 암초, 하구, 감조하천 및 육지 등은 연안의 작용에 필연적으로 영향을 받음. - 폭풍에 의한 이상고조나 이동사구 등에 의해 물에 잠기는 지역, 염생식물지역 등 포함

Nick Harvey & Brian Caton, 2003, Coastal Management -in Australia, Oxford university press,에서 정리

2) 지역단위의 연안관리제도

- 주정부 차원의 연안관리 법률로는 남오스트레일리아주의 연안보호법(1972년), 뉴사우스웨일즈주의 연안보호법(1979년), 퀸즈랜드주의 연안보호·관리법(1995) 등이 있음. 특히 퀸즈랜드주의 연안보호·관리법은 연안관리의 목적, 연안보호자문위원회(coastal protection advisory council)와 지역자문위원회(regional consultive council) 설치, 주정부 및 지방정부의 연안관리계획 수립, 육역과 해역의 관할구역 설정, 연안보호 및 연안구조물에 관한 고지, 연안건축물의 바다쪽 경계선 설정 등의 내용으로 구성됨. 그러나 연안보호·관리법에서는 개발평가 및 허가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1997년에 새롭게 통합계획법(Integrated Planning Act)을 제정하고, 이 법의 내용을 연안법과 연계하여 다루도록 함.
- 연안보호·관리법에서는 연안을 '연안해역과 물리적, 생태적, 자연적 과정 및 연안 혹은 연안자원에 영향을 미치거나 잠재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간의 행위가 일어날 수 있는 연안육역'이라고 정의하고 있음. 즉, '연안(Coastal Zone)' 범위에 연안해역 뿐만 아니라 연안배후지인 집수지역까지 포함시킴으로써 연안자원을 포괄적으로 다루도록 함.



[그림 2-6] 호주 퀸즈랜드 '연안보호·관리법'상의 연안의 공간적 범위

- 또한 지방단위의 연안관리지역계획은 주정부 연안계획의 틀 안에서 수립되는데, 주정부 연안계획은 연안관리에 대한 방향 및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지방정부 연안계획은 주정부 연안관리방향과 일치하도록 수립하며, 주정부 연안계획에서 명시된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 지역적 관점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함. 따라서 연안관리지역계획은 주정부 연

안계획과의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함.

- 또한, 연안관리지역계획에서는 특별한 연안자원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 핵심연안구역(Key Coastal Site)을 지정토록 하고, 연안구역 내에서도 구체적인 연안관리를 요하는 구역에 대해 연안 locality를 지정토록 하며, 구체적 정보, 특정지침 및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도록 함.

제5절 연안관리법의 제도적 문제점

1. 선진국 연안관련법과의 비교를 통한 문제점

- 국내의 연안관리 제도와 주요 선진국의 연안관리 제도를 비교·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제기됨.
- 주요 연안국의 연안통합관리 정책을 유형별로 분석하면 다음의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추진되고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의 경우는 연안관리법에 의한 연안정책 및 입법방식과 타 법률에 의한 허가제도가 혼재되어 있는 형태임.

□ 주요 연안국의 연안통합관리 정책 유형

- 연안정책 및 입법방식 : 이해당사자 합의를 기초로 한 공공정책으로 추진
- 네트워크 방식 : 기존 법률 및 계획의 효율적인 연계를 통한 추진
- 조닝제도(Zoning)에 의한 방식 : 연안용도구역제도 및 허가제도의 동시실시
- 허가제도를 통한 관리방식 : 특정행위에 대한 허가 또는 제한

- 외국의 연안관리제도가 도입된 배경에는 연안의 환경과 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해서는 육상의 개발과 토지이용에 대한 적절한 관리가 필수적인데, 육지와 바다를 이분하여 다루는 종래의 이분법적 관리방식으로는 연안에 당면한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가 곤란하다는데 있었음.
- 본 연구에서는 미국의 '72 연안역 관리법(US Coastal Zone Management Act), 캐나다의 '99 해양법(Ocean Act) 및 통합관리계획(Integrated Management and Plan), 호주의 연방정부 연안정책(Commonwealth Coastal Policy), 중국의 해역사용관리법 등의 관련 제도와 우리나라의 연안관리 제도를 비교·분석해 보았음.
- 그 결과, 선진 연안국은 대부분 중앙정부의 정책이나 입법은 거의 기금 조성에 주안점을 두고, 주정부의 정책은 실질적인 시행계획에 초점을 둬으로써 중앙정부에서 조성한 기금

(Fund)을 가지고 주정부의 정책방향을 선도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실제 정책에 예산을 활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에서는 기금조성부분이 거의 제외되어 있으며, 실질적인 시행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실정임.

- UNEP, UNDP, IOC 등 국제기구에서도 '92 유엔환경개발회의 의제 21의 제17장에서 “연안통합관리”와 관련하여 각 연안의 통합관리정책의 수립 및 법제도 정비, 연안 이용실태 파악, 주요 연안관리사안에 대한 대책마련, 연안관리계획 및 실행 시 사전예방적 대책 수립, 연안자원 및 환경에 대한 적절한 경제적 평가방법 사용, 연안관리계획 수립 및 정책결정 과정에 이해당사자가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을 권고하고 있음.
- 각 연안국은 의제 21의 권고사항을 수용하기 위해 법을 제정하거나 연안관리를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현재 총 연안국의 약 35%에 달하는 62개국에서 연안통합관리의 개념을 도입하고 있음
-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연안관리법에도 중앙연안심의회나 지역연안관리심의회, 공청회 개최, 명예연안관리인 제도 등 정책결정 과정에 이해당사자가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의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음. 이것은 실제로 국가적·민족적 특성의 차이로 볼 수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토론문화나 이해당사자 간의 협력체제 구축 등이 어려운 과제로 남아 있음을 시사하고 있음.

2. 연안관리법의 국내 시행과정을 통한 문제점

- 「연안관리법」은 연안의 공간범위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수단이 미흡하여, 연안이용의 조정과 지속가능한 공간 활용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법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고,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 우리나라는 연안관리 정책에서 선진적인 틀을 구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효과적인 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 및 인식의 미흡으로 인하여 연안통합관리 본연의 기능이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음.
- 관련된 부문별 연안관리정책과 조화 및 연계가 충분하지 못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데 한계가 있음.
- 따라서 연안관리법의 국내 시행과정을 통한 문제점을 먼저 살펴보면, 현행 연안관리법은 타 법률에 대한 우선적 지위보장과 강제력 확보조항의 결여로 법의 실효성 보장이 미흡

하고, 이를 근거로 한 연안통합관리계획의 규범력도 미흡해질 수밖에 없는 실정임.

- 또한, 현행 연안관리법을 보면, 연안공간·자원관리를 위한 실질적인 관리수단이 미흡한 것으로 보이는데, 연안통합관리계획 및 지역연안관리계획의 수립 주기 명시,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지침’에 의한 용도구역 지정을 연안관리법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아울러 연안관리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성 강화 및 연안환경 관련 제도적 장치의 확대가 필요한데, 이를 위하여 연안관리정책의 지원을 위한 연안정보화의 제도적 명시가 필요하고, 중앙연안관리심의회 제도보다는 전문성을 강화한 소위원회 구성을 요구하며, 자연해안 순손실방지제, 연안경관관리 등 연안환경관련 제도적 장치를 더욱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음.
- 연안관리법에서의 구체적인 개선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제3장에서 종합적으로 다루기로 함.

제6절 우리나라 연안관리정책의 운영실태 및 문제점

1. 연안통합관리계획의 추진실적 분석 및 부진사업의 문제점 분석

- 연안통합관리계획의 전반적인 이행실태를 살펴보면, 67.8%의 이행율(2006년 말 기준)을 보이고 있으며, 이를 권역별로 보면, 서해남부 I 권역(93.3%) > 서해중부 I 권역(83%) > 남해동부(76.4%) 순으로 이행되고 있음.
 - 특히, 높은 이행율은 연안개발계획 조정부문 중에서 공유수면매립계획에 대한 정책방향이며, 이는 연안통합관리계획 고시이후 해양수산부의 공유수면매립에 관한 제한이 강화된 것을 반영하는 것임.
 - 지방자치단체가 추구하는 방향과 일치할 경우 이행율이 높는데, 특히 연안친수공간 조성이나 골재채취 부문이며, 중앙부처가 추구하는 연안오염관리 부문이나 해양보호구역 지정 부문의 이행율도 높음.
 - 서해중부II 권역의 이행율이 특히 저조한데, 이는 최근 서해안고속도로의 건설로 수도권으로부터 시간거리의 절감으로 인한 개발압력이 커짐에 따라 개발 욕구가 강해져서 나타나는 현상임.
- 이처럼 추진실태가 부진한 이유가 되는 개발욕구로 인한 개발압력의 강화는 「연안관리법」이 제시하고 있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저해하는 것으로 주민 및 지자체 공무원들의 연안 및 해양환경에 대한 인식 전환이 요구되며, 이에 따른 교육 및 홍보활동의 강화가 필수적임.
- 또 다른 부진의 이유로는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의견조정 부재를 들 수 있는데, 현재 연안관리법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조정할 수 있다는 약간의 조항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이들을 조정할 수 있는 수단이 부재하다고 볼 수 있음.
 - 이것은 연안관리법이 추구하는 원리에 위배되는 것으로 실제로 연안관리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법 위상제고와 더불어 조정역할을 할 수 있는 기구나 전담조직이 요구됨.
 - 따라서 지자체의 연안이용 및 개발방향을 중앙정부가 추구하는 정책방향과 부합시키기 위해서는 의견조정과 더불어 지자체에 교부하는 교부금이나 matching fund의 조성이 관건이 될 것임.

<표 2-24> 연안통합관리계획 권역별 정책방향 이행실태 현황

권역	총 사업수	이행완료	이행중	미이행	이행율(%)
서해중부 I	53	32	12	9	83.0
서해중부 II	28	11	1	16	42.9
서해남부 I	15	5	9	1	93.3
서해남부 II	23	11	6	6	73.9
남해서부	65	18	20	27	58.5
남해중부	112	38	34	40	64.3
남해동부	72	27	28	17	76.4
동해남부	30	1	17	12	60.0
동해중부	41	3	26	12	70.7
제주	36	5	18	13	63.9
총합	475	151	171	153	67.8

해양수산부, 2003·2004, 연안실태에 관한 기초조사에서 발췌하여 2006년 말 기준으로 재정리

2. 연안관리지역계획의 현황 및 문제점 분석

- 연안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관리수단인 연안관리지역계획의 수립현황을 보면, 전체 수립대상지역 77개소 중 2006년 말까지 해양수산부장관의 최종승인을 받은 곳은 총 38개소로서 50%정도에 그치고 있으나, 지역계획(안)을 작성하거나 작성하고 있는 곳도 27개소에 이르고 있음.
- 연안관리지역계획의 추진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현재 부진한 이유는 아직 지자체에서 연안관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의무적으로 지역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규정이 미비하고 지역계획수립을 위한 지침의 법적 근거가 취약한 것에도 그 원인이 있음.
 - 따라서 지자체 공무원들은 정책방향으로 구성된 연안통합관리계획과 용도구역으로 구성된 연안관리지역계획 간의 연관성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연안관리 추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
 - 지자체의 공무원들을 지원하는 지역의 발전연구소들도 마찬가지로 연안관리의 원리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이 부진한 원인이 되고 있음.
- 연안관리지역계획의 지속적인 추진은 연안관리법을 용도구역 체제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의 결과로 도출된 도면의 구축 및 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정보시스템의 역할이 중요함.

<표 2-25>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현황(2007. 1월 현재)

시·도	시·군·구	수립완료	수립중		미수립	비고
			용역완료	용역중		
부산광역시 (10)	중 구		◎			'02년 완료
	동 구		◎			
	남 구		◎			
	서 구		◎			
	사하구		◎			
	해운대구		◎			
	수영구		◎			
	영도구		◎			
	강서구		◎			
	기장군		◎			
인천광역시 (8)	중 구	◎				'05년 수립
	동 구	◎				"
	서 구	◎				"
	남 구	◎				"
	남동구	◎				"
	연수구	◎				"
	강화군			◎		'06년 지원
	옹진군	◎				'06년 수립
울산광역시 (4)	동 구				◎	'07년 시행예정
	남 구				◎	항만구역/'07 국가시행
	북 구				◎	'07년 시행예정
	울주군				◎	'07년 시행예정
경기도 (5)	안산시	◎				'06년 수립
	평택시				◎	항만구역/'07 국가시행
	시흥시				◎	항만구역/'07 국가시행
	김포시			◎		'06년 지원(07.3 계약)
	화성시	◎				'06년 수립
강원도 (6)	삼척시	◎				'06년 수립
	동해시			◎		'06.10-'07.10('06국고)
	강릉시	◎				'06년 수립
	속초시	◎				
	양양군			◎		'05.9-'06.9('05국고)
	고성군		◎			'05.3-'06.3('05국고)
충청남도 (7) (국가)	서산시	◎				'03년 수립
	보령시	◎				'06년 수립
	아산시				◎	방조제/'07 국가시행
	당진군		◎			'05.4-'06.4
	태안군				◎	'07년 시행예정
	서천군	◎				'06년 수립
	홍성군	◎				'05년 수립
	가로림만	◎				'06년 수립

<표 2-25> (계속)

시·도	시·군·구	수립완료	수립중		미수립	비고
			용역완료	용역중		
전라북도 (4)	군산시	○				'06년 수립('05국고)
	김제시				○	새만금
	부안군				○	
	고창군			○		
전라남도 (16)	목포시		○			
	순천시	○				'06년 수립
	광양시	○				'05년,국가시행
	여수시	○				'06년 수립
	영광군	○				'06년 수립
	합평군	○				'05국고,'06년 수립
	무안군	○				'06년 수립
	신안군	○				'05국고,'06년 수립
	영암군				○	하구둑/'07 국가시행
	해남군	○				'06년 수립('04국고)
	진도군		○			
	완도군	○				'06년 수립
	강진군	○				06년 수립('04국고)
	장흥군	○				'06년 수립
보성군	○				06년 수립('04국고)	
고흥군			○		'04국고	
경상북도 (5)	포항시			○		06.12-07.12
	경주시	○				'05년 수립
	영덕군	○				'05년수립('04국고)
	울진군	○				'05년 수립
	울릉군				○	'06.8-'07.6('06국고)
경상남도 (9)	마산시		○			추가용역
	진해시		○			
	창원시				○	항만구역/'07 국가시행
	거제시	○				'06년 수립
	사천시		○			
	통영시	○				'06년 수립
	하동군		○			
	남해군		○			추가용역(06.11-07.1)
고성군	○				'06년 수립	
제주도 (2)	제주시	○				'05년 수립
	서귀포시	○				"
합계(77)		38	20	7	12	수립율 50%

※ 수립현황 77개소는 가로림만 지역계획('06년 수립)을 포함한 수치임

※ 지역계획 미수립 지자체 12개소 중 울산남구, 평택, 시흥, 아산, 영암군, 창원은 '07년 국가시행

※ 예상지원요건 : 재정자립도 25.3% 이하, 육지부 해안선이 79.84km 이상

3. 연안정비사업의 현황 및 문제점 분석

- 연안정비계획은 연안관리법 제13조에 의해 수립되는 법정계획이며 연안보전, 연안해역개선 및 친수연안의 조성을 위한 사업계획의 성격을 지닌 것으로 연안관리법에서는 효율적인 대처방안으로써 10년 단위의 연안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음.²⁴⁾

<표 2-26> 연안정비계획 사업별 단계별 투자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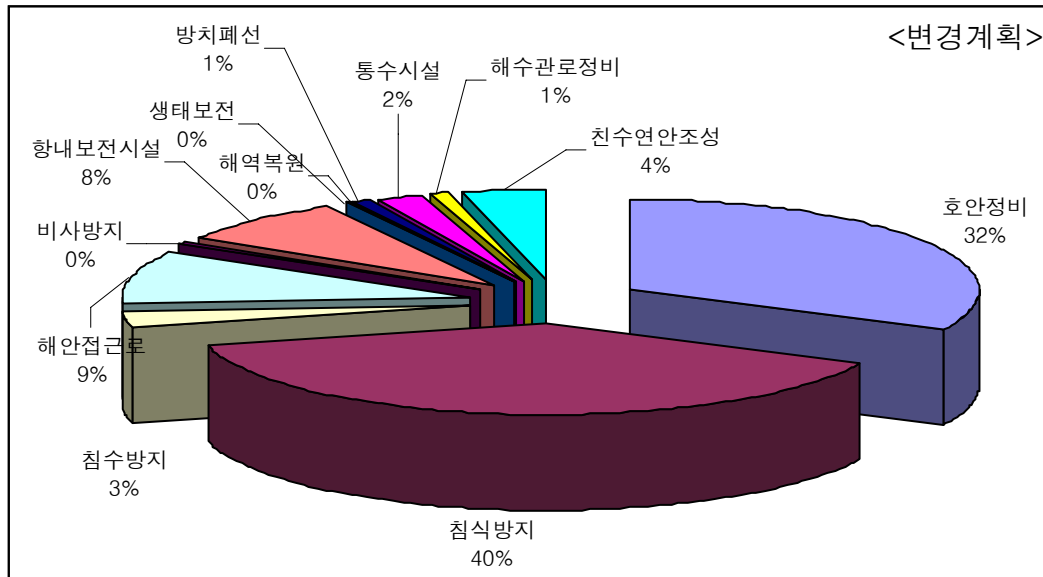
사업구분	당초계획						변경계획					
	전체		1단계 (2000~2004)		2단계 (2005~2009)		전체		1단계 (2000~2004)		2단계 (2005~2009)	
	건수	사업비	건수	사업비	건수	사업비	건수	사업비	건수	사업비	건수	사업비
총 계	680	980,800	130	275,934	550	704,866	628	730,832	125	277,744	503	453,088
연안보전사업	630	900,286	125	243,367	505	656,919	577	644,535	120	243,598	457	400,937
호안정비	245	164,578	65	42,644	180	121,934	203	170,342	64	45,278	139	125,064
침식방지	229	586,352	31	134,634	198	451,718	244	353,195	28	145,527	216	207,668
침수방지	23	25,353	4	11,500	19	13,853	18	25,470	3	4,448	15	21,022
해안접근로	74	97,159	16	48,866	58	48,293	59	70,320	16	43,061	43	27,259
비사방지	2	980	2	980	-	-	2	980	2	980	-	-
항내보전시설	57	25,864	7	4,743	50	21,121	51	24,228	7	4,304	44	19,924
해역개선사업	30	59,139	5	32,567	25	26,572	26	52,410	5	34,146	21	18,264
생태보전	2	9,903	2	9,903	-	-	2	10,104	2	10,104	-	-
해역복원	1	16,214	1	16,214	-	-	1	18,742	1	18,742	-	-
방치폐선	4	1,733	1	1,250	3	483	4	684	1	100	3	584
통수시설	11	28,222	1	5,200	10	23,022	14	21,080	1	5,200	13	15,880
해수관로정비	12	3,067	-	-	12	3,067	5	1,800	-	-	5	1,800
친수연안조성사업	20	21,375	-	-	20	21,375	25	33,887	-	-	25	33,887
친수연안조성	20	21,375	-	-	20	21,375	25	33,887	-	-	25	33,887

자료 : 해양수산부 고시 제 2003-45호(변경)

- 동 계획은 제1차 연안정비계획이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지자체의 수요를 반영하고, 친수연안 조성사업을 보완함으로써 연안보전사업에 편중된 문제점을 개선하여 사업을 다양화하였음.

24) 연안관리법 제2조에서는 연안정비사업의 종류를 ① 해일, 파랑, 해수 또는 지반의 침식 등으로부터 해안을 보호하고 훼손된 해안을 정비하는 사업 ② 연안해역의 정화, 폐선의 제거 등 연안해역을 보전 또는 개선하는 사업 ③ 휴식공간을 조성하는 등 연안을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 등으로 구분함.

- 변경된 사업계획에는 총 628건을 사업대상으로 하였는데, 이 가운데 577건이 연안보전 사업(재해방지), 해역개선사업은 26건, 친수연안조성사업 25건으로 계획되었으며, 2009년까지 2단계로 투자계획을 마련하였음.



자료: 연안정비계획변경수립, 2006.7.31

[그림 2-7] 연안정비계획의 사업 구성

- 연안정비변경계획을 보면, 연안보전사업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연안보전사업 중에서 침식방지사업이 약 42%, 호안방지사업이 약 35%, 해안접근로가 약 10%를 차지하고 있음.
 - 대부분이 연안보전사업으로, 이 중에서 해역복원사업과 친수연안조성사업이 각각 약 4%만을 차지하고 있어 대부분이 연안보전사업임을 나타냄.
- 동 변경계획은 당초계획과 거의 유사하며, 건수와 사업비에서 약간 축소되었으나 사업별로는 비슷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 특히, 2단계 사업에서는 연안보전사업에서 비사방지, 해역개선사업에서 생태보전 및 해역복원사업이 전무한데, 이것은 당초계획과도 일치함.
- 이러한 연안정비사업의 문제는 이름 그대로 연안을 정비하는데 목적을 두게 되어 대부분 호안정비와 침식방지사업이며, 이들은 또한 해안도로 겸용이라는 특징으로 인하여 더욱 선호되고 있음.
 - 따라서 동 사업은 해안도로를 건설하기 위한 사업으로 변질되고 있으며, 동시에 자연해안을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음.

제 3 장

연안관리제도의 개선방안

제3장 연안관리제도의 개선방안

제1절 현행 연안관리법의 문제점 도출

○ 그동안의 연안관리정책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현행 연안관리법의 문제점을 4개의 주제별 (해양국토관리를 위한 기본법적 위상부족, 통합계획과 지역계획의 절차 및 연안관리의 체계적 접근방안 미비, 실효적 연안관리를 위한 관리수단 미비, 통합적 관리를 위한 해양수산부의 조정기능 미흡)로 분류하고, 이의 해결을 위한 개선방안을 검토하고자 함.

① 해양국토관리를 위한 기본법적 위상확보

- 기본법적 위상에 부합하는 제도적 뒷받침 미흡
- 연안관리를 위한 기본적인 원칙선언 부재
- 연안에 대한 관리권자 모호로 인한 책임과 권한소재 불명확
- 연안관리를 위한 국가와 국민의 역할에 대한 명확한 제시 부재

② 통합계획/지역계획의 절차 및 연안관리의 체계적 접근방안 마련

- 통합적 조사를 위한 연계 부족
- 통합계획의 수립주기 미정으로 정책수립의 비 예측성 증가
- 통합계획의 성격과 역할에 대한 규정미흡
- 해양수산부장관 수립 지역계획의 수립절차 및 관리방법 불명확
- 지역계획의 역할과 권한 미약
- 지역계획의 변경절차 불명확
- 지역계획의 평가 및 점검체계 미흡
- 지자체의 연안관리역량 부족
- 연안정보의 효과적인 관리방안 부재

③ 실효적 연안관리를 위한 관리수단의 확보 미비

- 연안의 전근대적 이용방식 개선을 위한 법적 수단 부재
- 효과적인 연안구분 및 이용행위 촉진을 위한 방법론 부재
- 실질적 연안 관리를 위한 규제대상행위 불명확

- 연안정비사업과 연안관리와의 연계 미흡
- 법률의 집행력을 높일 수 있는 벌칙조항이 부재
- ④ 통합적 관리를 위한 해양수산부의 조정기능강화
 - 통합적 연안관리를 위한 연안의 범위 부적절
 - 연안육역의 관리를 위한 해양수산부의 조정권한 부적절
 - 연안통합관리를 위한 수단의 부재
 - 다른 국가계획과의 연계성 부족
 - 중복이용되는 연안구역에 대한 조정방안 부재
 - 중앙연안관리심의회 기능 적정화
 - 실태점검을 통한 부적절관리에 대한 처분 근거 부족
- 다음 표는 위에서 논의된 연안관리법의 문제점에 대한 각 주제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표 3-1〉 해양국토관리를 위한 기본법적 위상확보 방안

주제구분	문제점	개선방향
해양국토관리를 위한 기본법적 위상확보	기본법적 위상에 부합하는 법적 근거 부족	- 연안통합관리계획과 연안관리지역계획이 연안의 보전·이용·개발의 기본이 됨을 명시
		- 연안의 보전·이용·개발 시 해양수산부장관 및 관계지자체장의 협의권을 부여
		- 연안용도구역 및 연안기능구 준수 의무 부여, 임의적인 수정을 제한
	연안관리정책 기본 원칙 미제시	- 연안관리의 기본법으로서 원칙 제시
	연안관리권 소재 모호로 책임과 권한 불명확	- 연안해역의 국가소유를 명문화함으로써 해양의 통합적 정책추진이 가능토록 하고, 연안 육역에 대해서도 해안 보전을 위하여 매수되는 토지에 대해서도 국유임을 선언
국가와 국민의 역할 불명확	- 국가 및 지자체가 수행하여야 할 연안관리분야의 임무와 공공재관리를 위한 국민의 자발적 참여와 협조를 강조하는 조항을 마련	

<표 3-2> 통합계획/지역계획 절차 및 연안관리의 체계적 접근방안

주제구분	문제점	개선방향
통합계획/지역계획 절차 및 연안관리의 체계적 접근방안	통합적 조사를 위한 연계 부족	- 조사내용 구체화, 조사주기를 명시하여 체계적인 조사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함
		- 관련국가조사계획과의 연계실시를 통한 효율화 및 정보의 공동활용을 명문화
		- 지자체의 연안조사권한을 부여하여 자율적 관리를 실시하기 위한 기반 마련
	통합계획 수립주기 미정	- 5년으로 명문화하고 연안기본조사 등과 연계하여 수립되도록 규정
	통합계획의 성격과 역할에 대한 규정 미흡	- 연안관리정책방향 기본방향을 제시하여 기본계획으로서의 기능을 강화
		- 연안의 범위를 통합계획에서 정하도록 한 법규정을 준수하도록 함
	해수부장관 수립계획 수립절차/관리 방법 불명확	- 해수부장관 수립 지역계획도 공청회 등 절차를 명시하여 절차 투명성을 강화
		- 해양수산부장관 수립 지역계획 시장·군수·구청장 관리규정 명문화
	지역계획 역할/권한 미약	- 연안용도구역제, 자연해안관리, 연안완충대 등을 지역계획에 반영
		- 지형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연안육역을 확대할 수 있도록 규정
	지역계획 변경사유 미비	- 통합계획변경시 지역계획의 연동변경 명문화
	지역계획평가점검 체계 미흡	- 계획의 시행여건에 대한 평가를 명문화
	지역 연안관리역량 강화방안 부족	- 연안관리협의회를 두어 전문가자문과 지역합의를 통한 관리역량기반 강화
- 연안청지기제도를 도입하여 민간참여 연안관리 도입		
연안정보의 효율적인 관리방안 부재	- 연안정보 수집 및 정보화 근거마련 및 정보시스템 개발, 운영, 관리를 명시	
	- 연안백서를 통하여 행정통계를 체계화하고 통계관리수단을 마련	

<표 3-3> 실질적 연안관리를 위한 관리수단 확보방안

주제구분	문제점	개선방향
실질적 연안관리를 위한 관리수단 확보	전근대적 연안이용 방식 개선을 위한 법적 수단 부재	- 이용연안, 특수연안, 관리연안, 보전연안 등 연안용도구역 제도를 도입
		- 지속가능한 연안관리를 위한 자연해안 및 연안서식지의 관리의무를 둠
	효과적 연안구분 및 관리를 위한 수단 부재	- 육상의 토지적성평가와 유사한 연안공간적성평가의 도입 근거를 명문화
		- 연안기능구를 두어 연안용도구역제의 결점을 보완
		- 연안용도구역지정의 의제조항을 둬으로써 합법적 이용행 위간의 상충을 조정
	연안관리 대상행위 불명확	- 연안의 이용·개발시 협의의무를 부여하여 연안관리권의 실질적 행사근거 마련
		- 이용연안, 특수연안, 보전연안의 경우 기존법률에 따르도록 하여 갈등요소를 최소화하고 관리연안구역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이용·개발행위 관리방안을 제시
		- 이용·개발행위협의 절차 및 기준을 정하여 투명한 연안용도구역 관리방안 제시
	재해예방과 난개발 억제, 공공접근성 확보를 위한 정책수단 부재	- 재해와 난개발로부터 연안을 보호하고 공공의 연안접근권 보장을 위해 연안완충대 도입
		- 연안완충대로 인하여 재산권 침해방지를 위해 토지매입 규정을 명문화
- 보호대상 연안서식지를 제시하고 순손실방지제 도입과 조사를 위한 근거 마련		
정비사업과의 연계 미흡	- 연안환경개선사업의 지역계획 연계	
법률의 집행력을 높일 수 있는 벌칙조항 부재	- 행위제한규정과 허가절차를 어긴 행위에 대한 벌칙조항을 신설	

<표 3-4> 통합관리를 위한 해양수산부의 조정기능강화 방안

주제구분	문제점	개선방향
통합관리를 위한 해양수산부의 조정기능강화	통합적 연안관리를 위한 연안범위 부적절	- 해안침식, 생물다양성 측면에서 중요한 하구역을 연안의 범위에 포함
		- 환경보전해역 및 특별관리해역을 연안범위로 포함시켜 연안의 통합관리 강화
	연안육역 관리를 위한 해수부 조정 권한 한계	- 연안육역 이용 및 개발시 해수부장관의 협의권 및 관계 기관 의무 규정 명문화
		- 연안에서의 계획수립, 수정 시 해수부장관과의 협의를 의무화
	연안통합관리를 위한 수단 부재	- 연안에서 구역 등을 지정 또는 변경할 경우 이해관계자의 합의에 의하여 도출된 연안용도구역 및 연안기능구와 부합되도록 함
	관련 국가계획과의 연계성 부족	- 국토종합계획, 국가환경종합계획 및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 해양환경보전종합대책, 해양생태계보전관리기본계획 등과의 연계의무 명문화
	중복이용되는 연안구역에 대한 조정방안 부재	- 2이상의 연안용도기능구가 포함되는 연안의 경우 조정 기준을 제시하고 우선이용순위에 따른 이용을 명문화하여 갈등의 최소화를 도모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기능 적정화	- 새로운 제도의 핵심적인 사항을 심의대상범위에 포함하여 권한을 강화시킴
		- 소위원회를 두어 효과적인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체계를 개선
	실태점검을 통한 부적절 관리에 대한 조치근거 부족	- 정기 연안관리실태 보고를 의무화
- 점검결과를 근거로 하여 시정을 요청할 수 있는 규정 도입		

제2절 연안관리법 개선방안

- 본 절에서는 앞서 제시된 연안관리법 개선방향을 현행법 조문별로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를 정하여 개정안 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1. 해양국토관리를 위한 위상제고 및 실효성 확보

- 현행 「연안관리법」 기본법으로서 위상확보를 위한 제도적인 기반이 매우 미흡한 상황이며, 연안관리를 위한 기본원칙선언이 없고, 연안에 대한 관리권자의 모호성에 따른 책임과 권한소재가 불명확하며 또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연안관리정책에 대하여 국민의 역할과 참여촉진을 위한 근거 규정이 미비되어 있음.

1) 연안의 보전·이용에 관한 기본법적 지위 부여

- 「연안관리법」은 우리나라의 연안을 효율적으로 보전·이용 및 개발하기 위하여 연안통합관리계획 및 지역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한 법임.
- 이와 같은 문제를 해소하는 동시에 「연안관리법」의 실효성을 확보함으로써 최소한 「연안관리법」상 연안해역에 대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준하는 법적지위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 연안육역에 대해서도 다른 법률에 근거한 계획과 조화롭게 수립·변경되도록 하고, 통합계획의 이행강제력을 갖도록 「연안관리법」이 정비되어야 함.
- 또한 연안이용·개발 및 연안환경의 보전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주요시책 또는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경우에 해양수산부장관과 미리 협의하도록 하는 절차가 필요함.
 - ‘사전예방주의 원칙’과 ‘계획에 의한 연안관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연안관리법」에 연안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시책에 대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미리 협의하도록 함.
- 「연안관리법」에 따른 통합계획 및 지역계획과 다른 법률에 근거한 계획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연안용도구역 및 연안기능구의 지정효력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노력이 필요함.

조문(안)

(주요시책의 협의 등)

-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연안의 보전·이용 및 개발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주요시책 또는 계획을 수립·시행하거나 지역·지구·구역 또는 구획 등(이하 “구역 등”이라 한다)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해양수산부장관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함.
- 연안에서 보전·이용 및 개발에 관한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 법에서 정하는 각종 계획에 적합하여야 함.

(다른 계획등과의 관계)

- 통합계획과 지역계획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하는 연안해역과 연안육역의 보전·이용 및 개발에 관한 계획의 기초가 됨.
- 해양수산부장관은 연안환경을 보전하고 연안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계획이나 지정된 구역 등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음.

(연안용도구역 및 연안기능구의 준수 등)

-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연안에 구역 등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연안용도구역 및 연안용도기능구의 지정목적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함.

2) 연안관리정책의 기본원칙 설정

- 현행 「연안관리법」은 연안관리의 기본이념을 규정하고 있으나, 연안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와 국민의 연안접근권의 보장 및 연안환경보전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를 보완할 필요성이 있음.
- 연안의 관리적인 측면과 함께 연안이용의 기본원칙을 규정함으로써, 「연안관리법」이 연안에 대한 보전·관리와 이용·개발의 기본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

조문(안)

(연안관리의 기본원칙) 연안의 보전·이용 및 개발은 다음의 기본원칙에 따라야 한다.

- 연안은 모든 국민의 자산으로서 공익에 적합하고 현재와 장래의 세대를 위하여 지속 가능한 보전·이용 및 개발되도록 할 것
- 연안자원의 이용과 개발은 연안환경의 보전과 조화·균형을 이루도록 할 것
- 생태적·문화적·경제적 가치가 조화롭게 공존될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관리되도록 할 것
- 국민이 연안환경의 보전과 관리에 참여하고, 연안을 건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증진되도록 할 것
- 연안의 이용과 개발로 인하여 발생하는 갈등은 과학적인 조사를 근거로 조정할 것

3) 연안관리권의 명문화를 통한 권한 및 책임소재의 명확화

- 연안해역의 국가소유를 명문화함으로써 통합적 정책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연안 육역의 경우에도 해안보전을 위하여 매수된 토지는 국유로 함으로써 연안관리정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도모한다. 또한 행정자치부에서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간 해상경계 획정’과 관련한 법률의 제정 시 연안해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다는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연안의 귀속을 법으로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함.
- 중국에서도 「해역사용관리법」 제3조에서 “해역은 국가에 귀속하는 것이다. 국무원은 국가를 대신하여 해역의 소유권을 행사한다. 어떠한 단체나 개인의 불법점거, 상매(商賣) 또는 기타 형식으로 해역을 불법적으로 양도해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연안해역의 소유권은 국가만이 갖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음.
- 또한 해역과 유사한 자연공물인 하천을 관리하는 하천법에서도 하천을 국가소유로 정하는 등 명문화된 근거를 두고 있음.
- 그리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수립한 지역계획의 시행에 대한 규정이 모호한 부분이 있어 이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음.

조문(안)

(연안의 귀속)

- 연안해역은 국유로 하고 본 법에 의하여 매수·교환되는 연안육역의 토지의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의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가 관리청이 되는 국유재산으로 함.

(지역계획의 시행)

- 필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수립한 지역계획의 시행과 변경은 당해 시장·군수·구청장이 시행토록 함.

4) 연안관리에 있어서 국가 및 국민의 역할 명확화

- 통합적 연안관리의 기반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정책추진을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민에게 연안관리 책무를 부여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한 국가에 대해서는 바닷가 관리에 대한 의무를 법률로서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모든 국민에게는 국가 또는 지자체가 수립·추진하는 연안관리시책에 적극 협조하도록 책무를 부여함.

조문(안)

(국가 등의 책무)

- 국가 또는 지자체는 연안의 지속가능한 보전·이용 및 개발을 위하여 조치를 강구함.
 1. 연안환경 훼손을 방지하고 연안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이용 및 개발사업 수립·시행
 2. 연안재해피해 예방 및 복구를 위한 계획의 수립·시행
 3. 자연해안 및 연안서식지의 훼손을 예방하고 기능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대책의 수립·시행
 4. 연안관리를 위한 조사·연구·기술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5. 훼손된 연안환경에 대한 복원·복구 대책의 수립·시행
 6.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연안주민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의 수립·시행
 7. 연안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통한 국민인식의 증진
 8. 국민의 연안관리 참여활동 촉진
 9. 연안통합관리의 실현을 위한 남북한 및 국제협력의 증진
- 국민은 국가 또는 지자체의 시책에 협조하는 등 연안의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 연안이용자는 연안환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2. 통합계획 및 지역계획의 절차 등 관리체계 개선

1) 통합적 조사를 위한 연계 강화

- 현재 연안환경 및 연안생태계와 관련된 조사는 「자연환경보전법」상 전국자연환경조사, 「습지보전법」상 갯벌생태계조사,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해양생태계기본조사, 「연안관리법」상 연안침식모니터링 등 개별법에 근거하여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상호간의 연계성이 부족한 실정임.
- 따라서 향후에는 「연안관리법」상 연안실태조사는 관계 국가조사계획과 연계하여 실시되도록 개선되어야 하며, 지자체의 연안조사권한을 법률로 보장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함.

조문(안)

(조사사업의 연계)

- 해양수산부장관은 연안에 대한 조사 등을 실시하는 경우 다른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관련 국가조사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도록 함.
- 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다만, 자연해안, 바닷가 현황 등에 대한 조사는 10년마다 실시함.

2) 통합계획의 수립주기 명문화

- 현행 「연안관리법」은 「자연환경보전법」, 「습지보전법」 등 관련 법률과 달리 통합계획의 수립주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책수립·추진에 모호성이 존재함.
- 다른 국가계획과 연계성을 강화하고 상호 보완적인 정책 시행을 위해서는 유사한 계획과 마찬가지로 통합계획의 수립주기를 명문화하여 예측가능한 연안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임.

조문(안)

(연안통합관리계획의 수립)

- 해양수산부장관은 연안을 종합적으로 보전·이용 및 개발하기 위하여 5년마다 연안통합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3) 연안통합관리계획의 성격과 역할에 대한 규정 명확화

- 「연안관리법」은 연안관리와 관련된 개별 법률과 혼재되어 있는 상태이며, 연안통합관리 계획 및 연안관리지역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상호연계성 부족에 따른 중복규제 우려와 실효성 저하라는 문제점이 계속하여 제기되어 왔음.
- 연안통합관리계획은 “통합”이라는 의미에서 알 수 있듯이 연안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안을 통괄하여 조정한다는 의미이며, 통합의 내용에는 관련 행정기관의 수평적·수직적 통합, 관계 법률간의 통합, 연안에 대한 이해관계자간의 통합, 부문간 및 학제간 통합 등이 포함되어 「연안관리법」이 규율하는 영역은 매우 광범위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종합계획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정 등과 같은 위치에서 다른 관련 법률에 의한 조치를 조정하지 못하고, 오히려 중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이는 「연안관리법」이 기본법 내지 상위법으로서의 지위를 법적으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며, 계획 수립시 다른 법률에 의한 용도지정 또는 계획에 적합해야 한다는 규정이 「연안관리법」의 근본적인 한계라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연안통합관리계획의 위상을 제고하고, 연안을 종합적으로 보전·이용·개발하는 기본계획으로 기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통합계획의 성격을 명확히 하고, 준수 의무를 법제화 하는 노력이 필요함.

조문(안)

- 통합계획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의하여 수립되는 연안해역과 연안육역의 보전·이용 및 개발에 관한 계획의 기초가 됨.
- 해양수산부장관은 연안환경을 보전하고 연안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계획이나 지정된 구역 등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음.

4) 해양수산부장관이 수립하는 지역계획 절차 명확화

- 현행법에서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수립하는 지역계획의 경우 통합계획의 절차를 따르도록 하고 있어 지역주민 공청회 및 관련지방청과의 협의기회가 생략되도록 하고 있어 충분한 협의를 통한 계획수립절차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 이의 개선을 위하여 보다 수립절차를 분명하고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조문(안)

-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역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미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여 지역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5) 지역계획의 역할과 권한 강화

- 지역계획은 통합계획의 범위 내에서 수립하도록 되어 있으나, 지역계획이 연안관리의 실행 계획으로서 기능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미흡하여 그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 또한 지역계획 수립을 위한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지침의 법적 근거가 미흡하고 지역계획 수립이 의무조항이 아닌 임의조항으로 정해져 있어 계획수립이 지연되고 전국적인 일관성이 결여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음.
- 이의 개선을 위하여 선진적인 정책수단의 도입과 지역계획의 체계적인 수립과 관리를 위한 제도개선이 요구되고 있음.

조문(안)

(연안관리지역계획의 수립)

- 지역계획은 통합관리계획의 범위 안에서 수립·관리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함.

(지역계획의 내용 및 권한)

-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할 것.

1. 관할 연안의 범위
2. 계획수립 대상연안
3. 관할 연안의 관리에 관한 정책방향
4. 통합계획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5. 연안용도구역 및 연안기능구의 설정
6. 자연해안의 훼손 방지 및 기능의 유지·증진을 위한 대책
7. 관할 연안의 연안환경개선사업의 방향 및 추진계획
8.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연안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은 연안관리지역계획으로 결정함.

- 연안의 보전·이용 및 개발행위에 대하여 협의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토록 하고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토록 함.

6) 지역계획의 변경절차 적시

- 현행법에서는 지역계획의 변경에 대하여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거나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통합계획과의 연계에 대하여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적시할 필요가 있으며, 필요한 경우 이에 소요되는 예산지원에 대한 내용을 정하도록 함.

조문(안)

- 해양수산부장관은 통합계획의 내용에 중대한 변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하여 지역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역계획의 변경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7) 지역계획의 평가 및 점검체계 강화

- 현행 「연안관리법」은 「자연환경보전법」, 「습지보전법」 등 관련 법률과 달리 통합계획의 수립주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책수립·추진에 모호성이 존재한다. 또한 지역계획 수립절차와 지역계획의 이행에 대한 관리·감독 및 사후평가를 위한 아무런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또한 지역계획 수립시 실질적 기준이 되었던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지침”의 내용상·효력상 한계로 인하여 지역계획의 수립에 어려움이 많았고, 미수립에 대한 정책적 불이익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계획의 수립을 촉진하고 기 수립된 지역계획에 대한 평가체계의 구축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것임.
-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지역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감독·조정권한을 부여하여, 지역계획이 통합계획에 부합되어 수립되고, 수립 후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 한편 토지에서의 토지적성평가와 같은 환경친화적인 이용방안의 도입을 위한 별도의 평가수단을 마련하여 지역계획 수립의 적정성과 연안이용의 합리적 의사결정이 이용하도록 함.

조문(안)

(연안의 주기적 점검)

-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역계획을 비롯한 본 법에서 정하는 각종 계획의 시행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지역계획의 이행실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함.
- 해양수산부장관은 점검 및 평가 결과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점검 및 평가결과를 연안정비사업의 수립·시행, 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의 수립, 어장관리특별관리해역의 지정에 반영하도록 함.

(연안용도구역의 평가 등)

- 해양수산부장관은 연안용도구역을 지정하기 위하여 연안의 특성, 입지 또는 활용가능성 등을 고려한 연안의 공간적성에 대한 평가(이하 “연안공간적성평가”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8) 지자체의 관리역량 강화

- 연안관리에 대한 인식과 인적자원 부족으로 인하여 지역에서의 연안관리 시행에 많은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기초지자체의 관리역량을 강화시키고 이해관계자간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제도적 기반을 제공함.
- 연안관리정책의 집행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연안에 대한 대국민 교육과 정책홍보를 강화하고, 일반대중의 적극적인 정책참여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임. 즉, 교육 및 홍보를 위한 포상제도 또는 예산지원의 근거를 법률에 명문화함으로써 지속적인 연안관리교육·정책홍보, 지역협력체계를 활성화하는 노력이 필요함.
- 현행 “명예”라는 용어로 인해 지역주민, 어촌계 등이 연안관리정책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꺼려하고, 예산적인 지원에 어려움이 있었던 명예연안관리인제도를 “연안청지기제도” 또는 “연안지킴이제도”를 도입·운영하는 것이 필요함.
 - 현재 명예연안관리인제도는 유명무실하여 시민참여 연안관리를 실시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관리범위와 역할을 명확하게 하고 그에 상응하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서는 해수욕장 시민참여관리제도(Beach Adopt

Program)와 같은 관리위탁계약과 같은 형식을 통하여 특별하게 관리가 필요한 연안공간이나 시기에 연안청지기(지킴이)의 활동을 도입하는 방안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방안이 모색되어야 하며 이러한 활동에 따른 모니터링 결과가 지역연안관리의 중요한 요인으로 다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함.

- 한편 권역별 지역 연구자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조사·연구체계를 구축하고,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여 조정·협력하는 선진 연안관리 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도입·운영하는 것을 중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조문(안)

(시·군·구 연안관리협의회 및 시민참여방안)

- 시장·군수·구청장은 의견수렴 및 자문을 위하여 시·군·구 연안관리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함.

1. 지역계획의 수립·변경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관할연안에서의 이용·개발행위의 승인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관할연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해양수산부장관과 시·도지사는 시·군·구 연안관리협의회가 활성화되도록 지원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연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안청지기과 같은 시민참여방안을 강화함.

9) 연안정보의 효과적인 관리방안 마련

- 연안관리지역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공간분석을 위한 각종자료를 전산화하는 과정에서 관련 행정기관에서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해당 자료의 제공을 거부하는 사례가 있으며, 자료의 적극적인 활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시 정보제공을 의무화 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야 함.
- 한편 건설교통부에서는 국토이용과 관련한 사항을 취합한 ‘국토이용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매년 발간하고 있는바, 해양수산부에서도 연안통합관리계획 및 지역계획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연안해역을 중심으로 필요한 연안육역에 관한 관련 정보를 취합하는 연안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는 것이 필요함.

- 이러한 연안정보체계에서는 연안용도구역의 지정·관리사항, 연안해안서식시순손실방지, 해안보전선 등의 자료를 정보화함으로써, 연안 지식정보의 원활한 생산·보급과 통합계획·지역계획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됨.
- 또한 연안정보시스템의 효율적 운영·관리, 연안실태조사 결과의 D/B화를 통해 연안관리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노력이 필요함.
 - 전국 연안의 현황 및 통계, 지표 등 수집되거나 조사·관찰된 연차별 자료를 일반인의 접근용이성과 정책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체계화된 연안백서의 정기적인 발간이 필수적임.

(연안정보체계 및 연안에 대한 조사의 실시)

- 해양수산부장관은 연안관리정책의 합리적인 수립과 집행을 위하여 연안정보체계를 구축·관리하며 필요한 연안현황을 조사하여 연안이용계획의 수립과 집행에 활용함.
- 해양수산부장관은 연안의 효율적인 관리와 정보의 수집을 위하여 5년마다 연안의 현황에 관한 정기조사를 실시하며 정보의 종류에 따라 조사주기를 조정함.
- 해양수산부장관은 연안기본조사 등을 실시하는 경우 다른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관련 국가조사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함.
- 해양수산부장관은 매년 연안의 현황에 대한 백서와 통계를 발간함.

3. 연안관리의 실효적 관리수단의 미비

1) 전근대적 연안이용방식에 대한 대응 수단의 확보

- 연안해역의 이용은 신청주의에 의한 선점식 이용이 고착되어 있어 새로운 해역이용의 수요를 적절히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못하고 해역이 가지는 자원과 특성을 반영한 이용행위의 유도 등 효율적인 연안자원 활용을 실현할 수 있는 관리기반이 부재함.
- 또한 연안육역의 경우에도 해양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으며, 반대로 해양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해역의 이용과 조화롭게 활용하도록 하는 연계 관리방안이 미흡한 실정임.

- 현재 지침 상에서 연안구역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그 기준과 법적 기반이 모호하여 자율적인 연안관리를 시행하는 데는 많은 제약이 따르고 있음.
- 이러한 여건을 고려하여 연안을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하여 용도구역으로 구분하고 자연해안 등과 같은 중요한 연안자원의 효과적인 보전과 재해로부터의 국토를 보전하고 연안의 고유경관을 보호할 수 있는 연안완충대의 도입을 검토함.
- 다만, 각 제도의 관리주체는 현재 우리나라의 관리역량과 여건을 고려하여 선정하도록 함.

조문(안)

(연안용도구역제도의 도입)

- 연안의 예측가능한 관리방안을 구축하고 지속가능한 이용 및 개발과 효과적인 보전을 위하여 연안용도구역제도를 도입하고 연안관리지역계획에서 이를 정하도록 함.
- 정해진 연안용도구역은 지역계획으로 정하는 법정구역으로 준수의 의무를 부여하여 연안관리수단으로서 기능과 역할을 갖도록 함.

(연안완충대의 설정)

-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일, 파랑, 해수 또는 이로 인한 지반의 침식 등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연안의 자연건강성을 유지하며 공공의 연안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안완충대를 설정하도록 함.
- 연안완충대에서는 일부 행위를 제한하고 필요한 경우 토지의 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 교환, 보상 등 영구적인 보전조치를 시행하도록 함.

(자연해안 및 연안서식지 순손실방지제 등)

- 해양수산부장관은 자연해안과 연안서식지의 효과적인 보전과 연안환경의 기능 증진 등을 위하여 자연해안 및 연안서식지 순손실방지제를 실시함.
- 해양수산부장관은 자연해안 순손실방지제의 실시를 위하여 중앙연안관리심의회 심의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도록 함.

2) 효과적인 연안구분 및 관리를 위한 수단의 확보

- 현행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지침에서는 연안을 보전연안, 준보전연안, 이용연안, 개발조정연안, 개발유도연안 등 5개 연안으로 구분하여 관리방안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각 연안의 구분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고 인접 지자체와의 부조화 등 문제가 발생되고 있음.
- 따라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정하는 토지의 용도지역제도와 연계되며 해역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위지구의 지정을 가능하도록 하는 등 제도적인 보완방안을 마련함.
- 이 경우 토지의 용도지역제도를 새로운 기준의 도입없이 수용할 수 있도록 하여 법률간의 상충을 최소화 시키고 해역의 3차원적 이용잠재력을 고려하여 하위지구개념을 도입하도록 함.
- 또한 기존의 연안구역구분이 어느 정도 반영되고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추진함.

조문(안)

(연안의 용도구분)

- 연안은 이용실태, 자연환경적 특성 및 장래의 이용방향 등을 고려하여 이용 또는 개발이 확정되어 있거나 개발이 예상되는 구역인 이용연안구역, 군사시설 및 국가 중요시설의 보호를 위하여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구역 또는 해양의 환경 및 생태계가 훼손되어 다른 법률에서 별도로 지정하거나 지정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구역인 이용연안구역, 연안환경 및 자원의 보호, 해양문화의 보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정하거나 지정할 필요가 있는 구역인 보전연안구역과 이용 또는 개발의 용도가 정해지지 않았거나 다른 법률에 의하여 구역 등이 중복 지정되어 이의 조정이 필요한 구역 또는 용도지정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구역인 관리연안구역으로 구분함.

(연안기능구의 지정)

-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계 법률에 따라 지정된 구역 등을 고려하여 연안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연안기능구를 지정할 수 있으며 해양이용의 특성을 고려한 중복지정도 가능하도록 함.

3) 연안관리대상행위 규정

- 연안에서의 행위는 이미 기존의 다양한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연안관리법에서 새롭게 정할 필요는 없음. 그러나 연안이용을 조정하고 새로운 연안이용 수요를 고려할 수 있도록 조정기능이 강화된 행위규제는 포함되어야 함.
- 특히 관리연안구역의 경우 목적이 정해지지 않은 구역으로 새로운 관리방향이 정해지는 경우에 신중한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행위제한을 두도록 함.
- 또한 연안관리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서 연안의 구역 등을 정하는 경우 반드시 연안관리자와 협의하도록 하여 통합적인 연안관리개념이 반영되도록 함.

조문(안)

(연안용도구역 및 연안기능구의 준수 등)

-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연안에 구역 등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연안용도구역 및 연안기능구의 지정목적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함.
-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연안용도구역의 범위 안에서 다른 법률에 의하여 구역 등을 지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함.

(다른 법률에 의한 연안용도구역의 지정·변경 제한)

-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따른 연안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대한 연안관리지역계획의 결정을 의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계획을 허가·인가·승인 또는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당해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함.

(관리연안구역에서의 행위제한)

- 관리연안구역에서 지정된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당해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도록 함.

4) 재해예방, 난개발방지 및 공공접근성 확보를 위한 기반 조성

- 현 연안관리법에는 재해예방을 위하여 연안정비사업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사업이 예방이 아닌 사후정비에 집중되어 있고 사업시행에 따라 2차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등 전반적인 연안재해방지정책의 방향전환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자연공물인 해양의 자유로운 이용과 연안경관의 효과적인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의 도입이 요구됨.
- 이를 위하여 선진연안국에서 적용하고 있는 연안완충대의 도입을 검토하고 이와 관련된 제도를 도입함.

조문(안)

(연안완충대의 관리)

- 연안완충대는 보전연안구역으로 설정함.
- 연안완충대 안에서는 연안환경의 변화를 야기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제한함.
 1. 해양과 육상의 생태적 연계성을 현저하게 훼손할 우려가 높은 인공구조물의 설치
 2. 쓰레기 또는 오염물질을 쌓아두거나 이를 해역으로 유출시키는 행위
 3. 광물, 골재 등 토석의 채취나 지형변화를 발생시키는 행위
 4. 연안완충대의 관리를 위한 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5. 그 밖에 풀·나무의 채취 및 벌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연안서식지의 보전)

- 국가는 간석지 및 하구역 등 연안습지, 산호초 및 해초군락, 해안사구, 염생식물군락지 등과 같은 주요 연안서식지를 보전하여야 함.

5) 연안정비사업과 연안관리의 연계

- 현재의 연안통합관리계획에서는 연안정비사업의 기본방향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 연안정비사업은 지역의 수요에 따라 정해지고 있으며 지역계획과는 관계없이 실시되고 있는 실정으로 연안정비사업의 시행은 연안관리사업과 별개로 진행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

- 효과적인 연안의 관리에 있어서 연안정비사업은 중요한 사업수단으로서 반드시 연안관리계획이 연계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다만, 지자체 역량으로 대처하기 곤란한 재해방지사업의 경우에는 통합계획에서 기본방향만 제시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의 조사와 사업계획 수립을 통하여 추진하도록 하고, 연안환경개선사업의 경우에는 지역계획에서 사업을 결정하도록 하는 방안이 바람직함.

조문(안)

(연안관리계획과 연안정비사업의 연계)

- 통합계획에서는 연안환경개선사업 및 연안재해방지사업의 기본방향을 정함.
- 해양수산부장관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연안의 재해방지를 위하여 10년마다 연안재해방지기본계획을 수립함.
- 연안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역계획의 범위 안에서 수립하도록 함.

6) 법률의 집행력을 높이는 벌칙조항의 도입

- 현행법에서는 연안정비사업 및 연안점검에 지장을 주는 행위는 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것이 벌칙의 전부임.
- 그러나 새로운 연안관리수단의 도입에 맞도록 다른 법률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벌칙을 강화하도록 함.

조문(안)

(벌칙)

- 연안완충대 안에서 불법행위에 대한 벌칙조항을 신설함.
- 연안용도구역에서의 행위제한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벌칙조항을 신설함.
- 벌칙조항에는 양벌규정을 두도록 함.

4. 연안의 통합관리를 위한 해양수산부의 조정기능 강화

1) 연안의 범위 조정

- 통합적인 연안관리를 위하여 연안의 범위를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연안해역 및 연안육역의 관리를 위한 해양수산부의 조정권한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임. 또한 중복이용되는 연안구역에 대한 조정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연안의 범위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함.
- 한편 해양수산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적인 여건·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역계획에서 연안육역을 확대하여 지정한 경우에도 연안에 범위에 포함되도록 명문화할 필요가 있음.
- 「해양환경관리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해양공간에 포함되어 오염물질의 배출규제가 실시되는 '하구역'에 관하여도 중기적으로 연안관리 차원에서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도록 법제화 하는 작업이 요구됨.

조문(안)

- “연안해역”이라 함은 바닷가(「수로업무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해안선으로부터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를 말한다) 및 「수로업무법」의 규정에 따른 해안선으로부터 영해의 외측한계까지의 바다를 말하며 하구역의 공유수면을 포함함.
- “연안육역”이라 함은 무인도서와 연안해역의 육지쪽 경계선으로부터 500미터(「항만법」 규정에 따른 지정항만, 「어촌·어항법」 규정에 따른 국가어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경우에는 1천미터) 범위안의 육지지역, 「해양환경관리법」 규정에 따라 지정된 환경보전해역 및 특별관리해역의 육지지역, 하구역의 육지부로서 연안통합관리계획에서 정한 지역을 말함
-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적인 여건·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지역계획에서 연안육역을 확대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함.

2) 연안육역관리를 위한 해양수산부의 조정권한 미흡

- 연안의 보전·이용 및 개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연안관리법」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연안이용·개발 및 연안환경의 보전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주요시책 또는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경우에 해양수산부장관과 미리 협의하도록 하는 절차가 필요함.
- 이에 '사전예방주의 원칙'과 '계획에 의한 연안관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연안관리법」에 연안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시책에 대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미리 협의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작성하는 지침을 개발계획 수립시 고려하도록 함.

조문(안)

(다른 법률에 의한 연안용도구역의 지정·변경 제한)

-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따른 연안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대한 연안관리지역계획의 결정을 의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계획을 허가·인가·승인 또는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당해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함.

(이용·개발행위 등의 협의)

- 연안용도구역에서의 보전·이용 및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연안용도구역을 구성하는 각 구역 등 및 연안기능구를 결정하는 관계 법률에서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한 미리 당해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함.

4) 관련국가계획과의 연계성 강화

- 관련국가계획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아 통합계획의 범위와 일관성 있는 지역계획의 수립이 곤란하며, 계획 간의 조정과 불필요한 중복조사의 회피 등 효과적인 연안정책 추진을 위하여 관련계획의 범위를 적시할 필요가 있음.

조문(안)

(다른 계획 등과 연계)

- 통합계획은 국토종합계획, 국가환경종합계획 및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 해양환경관리 종합계획, 해양생태계의 보전·관리기본계획, 습지보전기본계획, 어장관리기본계획,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등 주요 연안에서의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함.

5) 중복이용되는 연안구역에 대한 조정방안 제시

- 연안해역의 경우 수면, 수중, 해저 등 다양한 이용행태가 존재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복합적이고 다면적인 이용이 가능한 특징을 가지고 있음.
- 그러나 이러한 다면적 이용은 이해관계자간의 갈등으로 인하여 지속가능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고 일방적인 이용행위는 새로운 연안이용의 가능성을 차단하는 어려움이 발생됨.
- 따라서 이러한 연안이용상의 중복이용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둠으로서 효과적인 관리정책을 구축하도록 함.

조문(안)

(2이상의 기능을 가지는 연안에 대한 관리)

- 연안이 2이상의 연안기능구에 걸치는 경우 그 면적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인 부분에 대하여는 그 구역의 가장 넓은 면적이 속하는 연안기능구를 적용함.
- 다만, 보호기능이 부여된 기능구와 중복되는 경우 연안기능구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당해 보호구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
- 하나의 기능구로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우선이용순위를 정하여 중복지정으로 인하여 발생될 수 있는 갈등을 최소화하도록 조정함.
- 어느 하나의 연안용도구역으로 결정하기 곤란한 연안 또는 지정된 이용유보구는 관리연안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봄.

6) 중앙연안관리심의회 의 기능 강화

- 중앙연안관리심의회는 연안관리정책의 최고 의사결정을 하는 심의기구로서 20명의 당연직 및 민간추천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 그러나 계획수립, 정비사업실시,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 등 다양하고 복합적인 연안정책을 평가하고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보다 전문성이 강화된 기반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조문(안)

(중앙연안관리심의회)

- 중앙연안관리심의회는 다음과 같음.
 1. 통합계획 및 지역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연안재해방지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3. 연안용도구역 및 연안기능구의 지정·변경에 관한 사항
 4. 자연해안 및 연안서식지 손실방지제에 관한 사항
 5. 지역계획으로 반영된 연안환경개선사업의 사업비 배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소위원회)

- 중앙연안관리심의회는 원활한 심의·조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소위원회를 둘 수 있음.
 1. 연안계획 소위원회
 2. 공유수면매립 소위원회
 3. 연안정비 소위원회
- 중앙연안관리심의회 및 소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및 연안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전문위원을 둘 수 있음.

7) 실태점검을 통한 부적절한 관리에 대한 조치근거마련

- 현행법에서는 관계행정기관의 부적절한 연안이용 또는 관리행위에 대하여 명확한 처리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 또한 연안이용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다른 법률에 비하여 부족한 실정이어서 강제력 있는 관리행위를 실시할 수 있는 기반이 부족함.

조문(안)

(연안의 이용·개발행위 등의 사후관리)

-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규정에 따른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허가·면허·인가·승인 등을 하거나 협의내용을 반영하지 아니하고 허가 등을 한 때 또는 피허가자 등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협의를 한 때에는 그 허가 등의 취소, 사업의 중지, 공작물의 철거·운영정지 및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해당 행정기관에게 요청할 수 있음.

제 4 장

연안용도구역제

제4장 연안용도구역제

- 본 장에서는 검토 대상인 연안용도구역제는 물론, 이의 논리적 근거가 되는 토지이용규제와 용도지역제도의 전반을 살펴보고자 함.
- 그리고 우리나라의 연안관리여건과 현행 제도와의 연계방안 등을 고려한 연안용도구역제 구축방안을 제시하고 이미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해외사례를 살펴보고자 함.
- 또한 제도도입에 따르는 예상문제점과 해양수산부 간부를 대상으로 한 의향조사결과를 분석하여 전반적인 제도도입 여건을 파악하고자 함

제1절 토지에서의 용도지역제도

- 우리나라의 토지에 대한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에 의하여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의 3가지 구획관리방식을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그 밖에 개별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양한 구역 등을 설정하고 있음.
- 토지공간을 이용수요 및 위치적 특성에 따라 미리 용도를 정하여 관리하는 용도지역제도는 토지관리를 위한 기본적인 통제수단으로 많은 국가에서 활용되고 있음.
- 토지용도지역제도는 기본적으로 토지의 사유화에 따른 자유이용권한을 사회적 수요와 공공의 이익에 부합되도록 조정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토지개발수요를 예상하여 용도지역을 정하고 각 용도지역별 행위규제 또는 개발수준을 정함으로써 계획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할 목적으로 도입하고 있음.

1. 토지에서의 이용행위 규제 개요

- 토지의 이용을 규제하는 방법을 크게 분류하면 ‘개발허가방식(Use Permission)’과 ‘구획설정방식(Zoning)’으로 분류할 수 있음
 - 개발허가방식은 원칙적으로 개발을 제한하고 신청이 있는 경우 각각의 사안에 대한 평가를 거쳐 개발을 승인하는 형식임. 이 제도는 다양한 여건의 변화에 대응하기가 용이하고 통합된 단일법에 의하여 관리되는 경우 배타적 이용을 가능하게 하여 갈등관리

가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현실적으로 이러한 여건을 충족시키기가 어렵고 '신청 후 대응'이라는 수동적인 체계로 인하여 체계적인 자원관리를 실현하기 어려우며, 허용 행위에 대한 일관된 기준의 적용이 어려워 의사결정 적합성에 대한 사후관리에 많은 노력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동일공간에 대한 동시적인 수요에 대한 대응이 곤란하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음

- 구획설정방식은 용도지역제도 대표되는 방식으로 토지의 수요를 추정하여 미리 적정한 토지의 이용위치와 규모를 정하여 구획(zone)으로 획정하여 두고 수요자로 하여금 이러한 기 설정된 구획의 용도에 가능한 개발행위를 알 수 있도록 하여 수요자 및 행정 관리자가 투명한 상태에서 행위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식임. 이 제도는 토지수요를 예상하고 체계적으로 공간을 활용할 수 있으며 투명한 승인절차를 실현하고 관리비용이 저감된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사회적인 여건변화에 대응하는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과 초기의 구획설정과정에서 많은 갈등요인을 안고 있다는 점이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구획의 중복설정을 허용하는 누적적 구획설정방식이 도입되어 있음
- 미리 구획을 설정하여 기대되는 효과로는 ①건강과 환경의 보호 ②소유권리에 대한 안정감 부여 ③불만의 저감 ④안정적 기반시설확대 등을 들 수 있음

2. 용도지역제도

-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일본식민지시대인 1934년에 '조선시가지계획령'에 의해 최초로 법제화된 토지이용규제가 도입되었고 현재 국토계획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 기타 자치법규에 근거하여 실시되고 있음.
- 국토계획법에서는 도시용지의 원활한 공급과 보전용지의 관리를 위하여 전 국토를 4개의 용도지역 즉,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나누어 기본적인 용도를 구분하고 있음.
- 용도지역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않게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임

- 이와는 별도로 개별법에서 별도의 목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구역 등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이들 개별법의 구역 등은 건설교통부 지침에 의거하여 각각의 용도지역으로 분류되고 있음
- 또한 각 개별 필지에는 지목이 부여되어 있어 기본적인 토지의 활용범위가 결정되고 있으나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에 의거하여 이용강도와 목적이 별도로 정해지고 있음

○ 도시지역의 규모결정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짐.

① 주거지역

- 상정(想定)인구밀도에 의한 방법(A)

$$R_a = \sum_{i=1}^n \frac{P_i}{D_i}$$

R_a = 주거지역 총면적
 P_i = 주거 입지별 배분된 상정인구
 D_i = 주거 입지별 상정 인구밀도
 $i \sim n$ = 주거 입지별 인구밀도 계층구분

- 추정 인구밀도에 대한 개략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음.

고밀도 주거지역 : 300인/ha 이상

중밀도 주거지역 : 100 - 300인/ha

저밀도 주거지역 : 100인/ha 이하

- 주택수와 1호당 상정(想定)부지면적에 의한 방법

- 주택수를 구한다

$$\frac{\text{계획인구}}{\text{가구당 인구}} = \text{주택수(A)}$$

- 시가화구역내에 수용될 주택수를 구한다.(B)
- 주택지에 수용 주택호수를 구한다.(C)
- 주택부지면적(D)

$$(C) \times \text{주택1호당 부지면적} = (D)$$

$$\text{주택용지(E)} = \frac{D}{1-\text{공공용지율}}$$

- 주거지역면적(F) =
$$\frac{E}{1-\text{혼합률}}$$

② 상업지역(B)

- 수용인구와 건물면적에 의한 방법

A = 상업지역면적

a = 1인당 평균 상면적(10m² 내외)

$$A = \frac{a \times p}{rN(1-e)}$$

p = 상업지역수용인구(3차산업 인구의 80% 내외)

r = 건폐율(70% 내외)

N = 평균층수

e = 공공공지율(35% 내외)

- 종업원 1인당 바닥면적, 평균건축 총면적, 평균건폐율에 의한 방식

$$b = \text{업종별 종업원수} \times \text{1인당 바닥면적} \times \frac{1}{\text{평균건축 총면적}} \times \frac{1}{\text{평균건폐율}}$$

$$B = b \times \frac{1}{1-\text{공공용지율}}$$

b = 상업부지면적

B = 상업용지면적

③ 공업지역(C)

- 종업원 1인당 또는 출하액당 공장부지면적에 의한 방법

C = 업종별 종업원수 × 업종별 1인당 부지면적

C = 업종별 출하액 × 출하액당 부지면적

$$\text{공업용지면적} = \frac{C}{1-\text{공공용지율}}$$

※ 종업원 1인당 면적 : 중공업 500m², 경공업 150m²

※ 공공용지율(도로율) : 중공업, 경공업 10~20%

- 공장입지기준 고시에 의한 방법

- 공장면적 = 공장기준면적+녹지면적+환경시설면적

$$\text{공업기준면적률} = \frac{1}{1-\text{공공용지율}} \times 100$$

녹지 면적률 = 공장건축면적의 5/100~10/100

환경시설 면적률 = 공장대지면적의 25/100

④ 녹지지역

- 녹지면적 = 도시계획구역-(A+B+C)

<표 4-1> 국토계획법에서의 용도지역 분류와 지정목적

용도지역		세분	지정목적
도시지역	주거지역	제1종전용주거 제2종전용주거 제1종일반주거 제2종일반주거 제3종일반주거 준주거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 저층주택 중심의 주거환경 조성 중층주택 중심의 주거환경 조성 중·고층주택 중심의 주거환경 조성 주거기능에 상업 및 업무기능 보완
	상업지역	중심상업 일반상업 근린상업 유통상업	도심·부도심의 상업·업무기능 확충 일반적인 상업 및 업무기능 담당 근린지역의 일용품 및 서비스 공급 도시내 및 지역간 유통기능의 증진
	공업지역	전용공업 일반공업 준공업	중화학공업, 공해성 공업 등을 수용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공업의 배치 경공업 수용 및 주·상·업무기능의 보완
	녹지지역	보전녹지 생산녹지 자연녹지	도시의 자연환경·경관·산림 및 녹지공간 보전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을 유보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제한적 개발허용
관리지역	보전관리	-	보전이 필요하나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 곤란
	생산관리	-	농·임·어업생산을 위해 필요하나 농림지역으로 지정이 곤란 토지
	계획관리	-	도시지역 편입이 예상, 계획·체계적 관리 필요
농림지역		-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
자연환경보전지역		-	자연환경 등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육성

- 관리지역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함.
 -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 또는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지정
 -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상의 준도시지역과 준농림지역은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봄
 - 관리지역은 기초조사와 토지적성평가에 따라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함
 - 관리지역을 세분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관리지역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 '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의하여 토지적성평가를 시행하여야 함. 토지적성평가의 결과를 기초로 해당지역을 5단계로 구분하고 각 등급의 면적 및 필지분포, 도시기본계획 등을 고려하여 세 가지 용도지역으로 구분함
- 농림지역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함.
 - 농림지역은 도시지역에 속하지 않는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 등으로서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지정함
 - 관리지역안에서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과 관리지역안의 산림중 산지관리법에 의하여 보전산지로 지정·고시된 지역으로서 당해 고시에서 농림지역으로 구분된 지역은 농림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봄
- 자연환경보전지역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함
 -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자연환경·수자원·해안·생태계·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지정함
 - 관리지역안의 산림중 산지관리법에 의하여 보전산지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당해 고시에서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구분하는 경우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봄
 - 도시지역외의 지역으로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다음의 각 지역은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음
 - (1)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전산지
 - (2)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조수보호구역
 - (3) 습지보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습지보호지역
 - (4) 수질환경보전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호소수질보전구역

- (5) 토양환경보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토양보전대책지역
 - (6) 자연공원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공원과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보호구역
 - (7) 독도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도서
 - (8) 문화재보호법 제6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명승 및 천연기념물과 그 보호구역
 - (9) 수도법에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 (10) 농지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 (11) 자연환경보전법 제18조·제23조·제29조·제30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보전지역, 임시생태계보전지역, 완충지역, 시·도생태계보전지역 및 생태자연도 1·2 등급 권역과 별도관리지역
 - (12)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및 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수변구역
 - (13) 연안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연안육역
 - 무인도는 환경부의 「자연환경조사」결과 및 「특정도서」지정내용 등을 참고하여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의 변경을 검토할 수 있음
- 용도지역의 지정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음.
- 계획수립 :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
 - 지역지정(변경) 결정 : 건교부장관, 시·도지사
 - 지정절차 : 도시관리계획 결정 절차에 따름
- ※ 지역은 도시계획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지정하며, 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에 대하여는 2이상의 지역이 중복 지정될 수 없음.

<표 4-2> 우리나라의 용도지역 지정현황(2005.12.31 현재)²⁵⁾

(단위 : km²)

행정구역 면적	고시 면적	육 지					해 면			
		계	도시 지역	관리 지역	농림 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계	도시 지역	관리 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99,944.3 (중복)	106,114.5 (1,038.7)	100,472.4 (1,038.7)	16,020.0 (3.2)	25,868.9 (337.6)	51,023.3 (594.3)	7,560.3 (103.6)	5,642.1	1,019.8	1.6	4,620.7
비율	100.0%	94.7	15.1	24.4	48.1	7.1	5.3	1.0	-	4.4

<표 4-3> 도시관리계획상 도시지역 용도지역 지정현황(2005.12.31 현재)²⁶⁾

(단위 : km²)

도시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미지정지역
17,039.8	2,121.2	264.1	793.1	12,608.1	1,253.3

3. 용도지구제도

- 우리나라는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미관·경관·안전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용도지구제도를 도입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고 있음
 - 도시내 지역별 기능이나 특성에 따라 경관지구, 미관지구, 고도지구 등 13개 지구가 있으며, 지구는 지역과는 달리 토지마다 반드시 지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 경관·미관·특정용도제한지구는 지역실정에 맞게 시·도 조례로 세분할 수 있음.
 - 시·도 조례로 용도지구를 신설할 수 있으나, 당해 용도지역·용도구역의 행위제한을 완화하는 용도지구를 신설할 수는 없고 행위제한을 강화하는 용도지구 신설만 허용
 - 용도지구의 지정
 - 계획수립 :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
 - 지구지정(변경) 결정 : 건교부장관, 시·도지사
 - 지정절차 : 도시관리계획 결정 절차에 따름
- ※ 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지구를 지정하며, 2이상의 지구를 중복하여 지정할 수 있음

25) 2006년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연차보고서

26) 전계서

<표 4-4> 용도지구의 구분 및 지정목적

지 구 명	지 정 목 적
<p>법</p> <p>(1) 경관지구 ① 자연경관지구 ② 수변경관지구 ③ 시가지경관지구 (2) 미관지구 ① 중심미관지구 ② 역사문화미관지구 ③ 일반미관지구 (3) 고도지구 ① 최고고도지구 ② 최저고도지구 (4) 방화지구 (5) 방재지구 (6) 보존지구 ① 문화자원보존지구 ② 중요시설물보존지구 ③ 생태계보존지구 (7) 시설보호지구 ① 학교시설보호지구 ② 공용시설보호지구 ③ 항만시설보호지구 ④ 공항시설보호지구 (8) 취락지구 ① 자연취락지구 ② 집단취락지구 (9) 개발진흥지구 ① 주거개발진흥지구 ② 산업개발진흥지구 ③ 유통개발진흥지구 ④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⑤ 복합개발진흥지구 (10) 특정용도제한</p>	<p>(1) 경관을 보호·형성하기 위하여 ① 자연경관의 보호 또는 도시의 자연풍치 유지 ② 주요 수계의 수변 자연경관을 보호·유지 ③ 주거지역의 양호한 환경조성과 시가지의 경관보호 (2) 도시미관조성을 위하여 건축물의 높이규모등을 제한 ① 토지이용도가 높은 지역의 미관을 유지·관리 ② 문화재와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 등의 미관을 유지·관리 ③ 중심미관 및 역사문화미관이외의 곳의 미관을 유지 (3) 도시토지의 고도이용을 위하여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 ① 도시환경과 경관보호, 과밀방지 위해 최고한도 정함 ② 토지이용 고도화, 도시경관 보호위해 최저한도 정함 (4) 화재위험 예방을 위해 필요한 지역의 건물구조를 규제 (5) 풍수해, 산사태, 지반의 붕괴 기타 재해의 예방 (6) 문화재, 중요시설물 및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보존 ① 문화재와 문화적으로 보존가치 큰 지역의 보호·보존 ② 국방상 또는 안보상의 중요한 시설물의 보호와 보존 ③ 동식물서식처등 생태적 보존가치 큰 지역의 보호·보존 (7) 학교, 항만, 공용시설, 공항시설의 보호 ① 학교의 교육환경을 보호·유지 ② 공용시설을 보호하고 공공업무기능을 효율화 ③ 항만기능을 효율화하고 항만시설의 관리·운영 ④ 공항시설의 보호와 항공기의 안전운항 (8) 녹지지역 등과 개발제한구역안의 취락을 정비 ① 녹지지역 등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한 지구 ② 개발제한구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한 지구 (9) 주·상·공·유통물류·관광·휴양기능의 개발·정비 ① 주거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 ② 공업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 ③ 유통·물류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 ④ 관광·휴양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 ⑤ 위의 2가지 이상의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 (10) 주거기능, 청소년 보호등을 목적으로 특정시설입지를 제한</p>
<p>시 행 령</p> <p>(11) 아파트지구 (12) 위락지구 (13) 리모델링지구</p>	<p>(11) 아파트의 집단적인 건설·관리 (12) 위락시설의 집단화로 다른 지역의 환경을 보호 (13) 노후 밀집지역에서 현재의 환경을 유지하면서 정비</p>

<표 4-5> 우리나라 용도지구 지정현황(2005.12.31 현재)²⁷⁾

(단위 : km)

계	경관 지구	미관 지구	고도 지구	방화 지구	방재 지구	시설 보호 지구	취락 지구	개발 진흥 지구	특정 용도 제한 지구	위락 지구	보전 지구	리모델링지구
2,074.4	105.9	95.6	461.2	93.8	0.6	144.4	184.3	898.1	4.0	-	86.6	-

4. 용도구역제도

- 토지에서 "용도구역"이라 함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따로 정함으로써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방지,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토지이용의 도모, 토지이용의 종합적 조정·관리 등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함.
 - 개발제한구역 : 건설교통부장관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장관의 요청이 있어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관리하고 있음
 - 도시자연공원구역 : 시·도지사는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도시지역 안의 식생이 양호한 산지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
 - 시가화조정구역 : 건설교통부장관은 직접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을 받아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계획적·단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기간동안 시가화를 유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
 - 수산자원보호구역 : 건설교통부장관은 직접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을 받아 수산자원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공유수면이나 그에 인접된 토지에 대한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

27) 전게서

<표 4-6> 개발제한구역 지정현황

(2005.12.31 현재)

권역별	행정구역	지정면적(km ²)		비고
		당초	현재	
계		5,397.1	4,041.5	
대도시		4,294.0	4,041.5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도 21개 시군	1,566.8	1,514.2	서울, 인천, 경기
부산권	부산, 양산시, 김해시일부	597.1	447.4	부산, 경남(김해 일부, 양산)
대구권	대구, 경산시, 칠곡.고령군	536.5	532.9	대구, 경북
광주권	광주, 나주시, 담양. 화순. 장성군	554.7	531.6	광주, 전남
대전권	대전, 공주·계룡시, 금산·연기·옥천·청원군일부	441.1	433.8	대전, 충남, 충북
울산권	울산시	283.6	277.1	울산
마창진권	마산·진해·창원시, 김해시일부 함안군	314.2	304.5	경남(마산, 진해, 창원, 함안, 김해 일부)
중소도시		1,103.1	-	
춘천권	춘천시, 홍천군	294.4	-	
청주권	청주시, 청원군일부	180.1	-	
전주권	전주·제시, 완주군	225.4	-	
여수권	여수시	87.6	-	
진주권	진주·사천시	203.0	-	
통영권	통영시	30.0	-	
제주권	제주시, 북제주군	82.6	-	

※ 개발제한구역은 '71.7.30~'76.12.29에 5,397.1km²(1특별시, 6광역시, 37시, 18군, 49구)에 지정되었으나, '99.7.22 수립한 「개발제한구역제도개선방안」에 따라 '00.1.11부터 1,355.6km²가 해제되어 현재 4,041.5km²(1특별시, 6광역시, 29시, 15군, 49구)에 지정되어 있음.

자료 : 건설교통부 도시환경기획관실

5. 용도구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의 비교

- 현재 우리나라의 토지에서 시행하고 있는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을 비교하면 다음 표와 같음.

<표 4-7> 토지에서의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비교표

구분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지정범위	- 전체토지에 적용 - 중복지정 불가	- 부분적으로 지정 - 타용도지역 및 지구와 중복지정 가능	- 국부적으로 지정 - 구역간 중복지정 불가
지적목적	- 용도규제가 주목적 - 토지의 경제적, 효율적 이용과 공공복리증진	- 건축규제가 주목적 - 공공의 안녕질서와 도시기능 증진	- 이용제한 주목적 - 도시의 과밀화, 과대화 방지
지정형태	-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 경관지구, 미관지구, 고도지구, 방화지구, 방재지구, 보존지구, 시설보호지구,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특정용도제한지구	- 시가화조정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 용도지역은 국토관리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용도지구는 세부적인 건축물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용도구역은 이용 또는 보전의 특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실시함으로써 획일적인 구획구분에서 발생될 수 있는 불합리성을 보완하고 있음.
- 특히 개발제한구역의 경우에는 별도의 입법을 통하여 제한행위를 규정하고 사유재산권의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보상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경제사회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그 규모의 조정을 실시하는 등 규제에 따른 부작용을 보완해 나가고 있음.

6. 토지이용관리정책의 최근 변화

- 그러나 이와 같은 토지관리제도의 구축에도 불구하고 국토이용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도시의 팽창과 기반시설의 정비, 여가활동에 대한 국민의 수요 등에 따라 토지의 개발도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과 동시에, 기능별로 나뉜 개별부처에 의하여 매우 복잡한

형태의 각종 지역, 지구, 구역이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음.

- 조사에 의하면 2004년말 현재 14개부처가 관장하는 121개 법률에 의거하여 총 324개 구역 등 지정되어 있으며, 파악이 가능한 82개법률 128개 구역의 지정면적만 567,292km²로서 전국토의 5.8배에 이르는 실정으로 중복지정으로 인한 토지이용상의 제약이 매우 큰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정부에서는 이러한 토지이용상의 난맥상을 정리하기 위하여 2005.12월에 토지이용규제기본법을 제정하여 구역 등의 정비를 통한 토지이용규제 간소화를 추진하고 있음.
 - 이 법에서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203개 지역 및 지구와 타법의 위임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는 지역 및 지구와 총리령, 부령 및 자치법규에 규정된 지역 및 지구로 건설교통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하는 지역 및 지구만을 인정하고 있으며 지역, 지구, 구역 등을 신설하고자하는 경우 토지이용규제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추가적인 구역 등의 설정을 제한하는 정책을 추진 중임
- 또한 토지이용규제의 투명화를 위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청취를 의무화 하는 등 지정에 있어서의 절차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투명성을 제고시키는 노력을 실시하고 있음.
- 그리고 규제내용을 전산화하여 규제지도를 작성함으로써 토지 수요자 또는 소유자가 이용하고자하는 토지의 규제여건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정보기반을 강화하고 있음.
- 이와 더불어 환경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고 지적되어온 도시개발에 있어서 토지적성평가제도를 도입하여 개발목적과 부합되는 적지선정과 개발지 내에서의 보호필요지를 평가하여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 토지적성평가제도는 관리지역을 보전, 생산, 계획관리지역으로 상세분류하는 경우와 도시계획시설, 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설정을 위한 평가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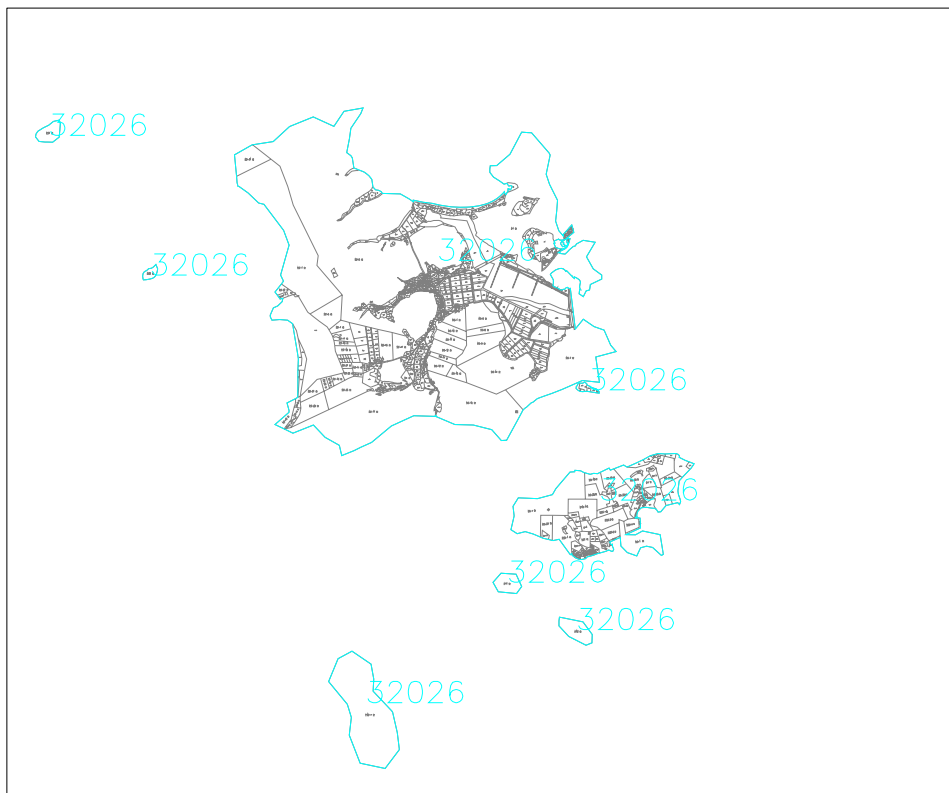
<표 4-8> 토지적성평가 지표

평가특성	평가지표군	
물리특성	경사도, 표고, 재해발생위험지역	
지역적 특성	개발성지표	도시용지비율, 용도전용비율, 도시용지인접비율, 지가수준
	보전성지표	농업진흥지역비율, 전담과수원면적비율, 경지정리면적비율, 생태자연도, 녹지자연도, 임상도 상위등급비율, 보전산지비율
공간적 입지특성	개발성지표	기개발지와의 거리, 공공편익시설과의 거리, 도로와의 거리
	보전성지표	경지정리지역과의 거리, 공적규제지역과의 거리, 하천호소농업용저수지와 의 거리

<표 4-9> 토지적성평가 활용 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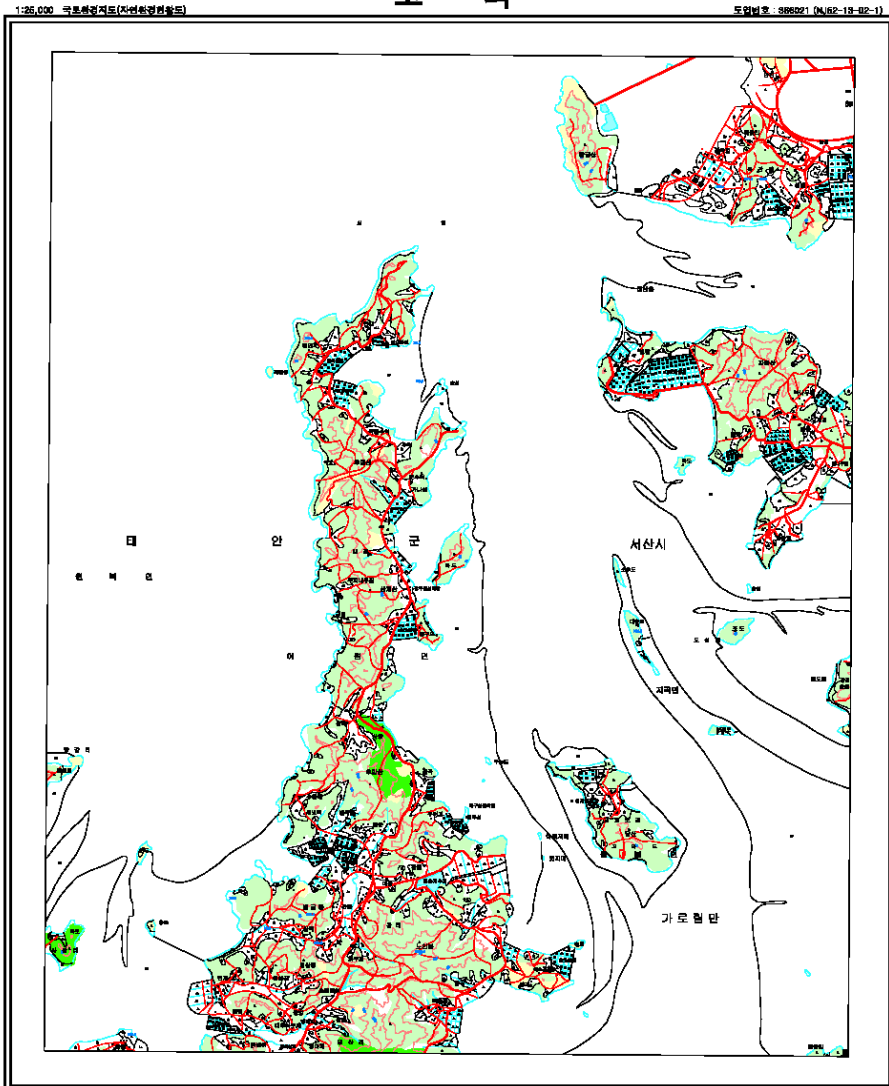
도면종류	관리기관	축척
①연속지적도	지자체	-
②토지특성도	국립지리정보원	1:5000
③지적도면전산자료	행자부, 지자체	1:500, 1:6000
④지가현황도	지자체	1:5000
⑤수치지형도	국립지리정보원	1:5000
⑥생태자연도	환경부	1:25000
⑦녹지자연도	환경부	1:50000
⑦임상도, 산림이용기본도	산림청	1:25000

- ① 연속지적도 :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지적도면전산자료를 국립지리정보원에서 제작한 수치지형도에 맞도록 편집한 편집지적도를 연속해서 이어 붙인 도면



[그림 4-1] 연속지적도 예시

고 파



1:25,000 국토계획지도(자연환경보전도) 도합번호 : 88621 (N)R2-13-B2-1

출력 : 1:25,000

<인식도 분할>

생태자연도

- 1 등급
- 2 등급
- 3 등급(산림지역)
- 4 등급(수역지역)

별도관리지역

- 국가특별관할 수역(해양영역)
- 생태문화경관지역
- 포수보호구역
- 산악보호구역
- 습지보호구역
- 수생태문화경관지역
- 대기환경문화경관지역
- 주상암반
- 도립공원
- 국립공원
- 특별도서

구분	구분명	구분번호		구분내용	구분위치
		지역번호	구분번호		
생태자연도	1등급	01	01	생태자연도 1등급	고평면 내
	2등급	02	02	생태자연도 2등급	고평면 내
	3등급(산림지역)	03	03	생태자연도 3등급(산림지역)	고평면 내
	4등급(수역지역)	04	04	생태자연도 4등급(수역지역)	고평면 내
별도관리지역	국가특별관할 수역(해양영역)	05	05	국가특별관할 수역(해양영역)	고평면 내
	생태문화경관지역	06	06	생태문화경관지역	고평면 내
	포수보호구역	07	07	포수보호구역	고평면 내
	산악보호구역	08	08	산악보호구역	고평면 내
	습지보호구역	09	09	습지보호구역	고평면 내
	수생태문화경관지역	10	10	수생태문화경관지역	고평면 내
	대기환경문화경관지역	11	11	대기환경문화경관지역	고평면 내
	주상암반	12	12	주상암반	고평면 내
	도립공원	13	13	도립공원	고평면 내
	국립공원	14	14	국립공원	고평면 내
특별도서	15	15	특별도서	고평면 내	

환경부 인·관·림·해양·농·수산·국립

인	관	림	해양	농	수산	국립

중·충·남·도

충청	충남	충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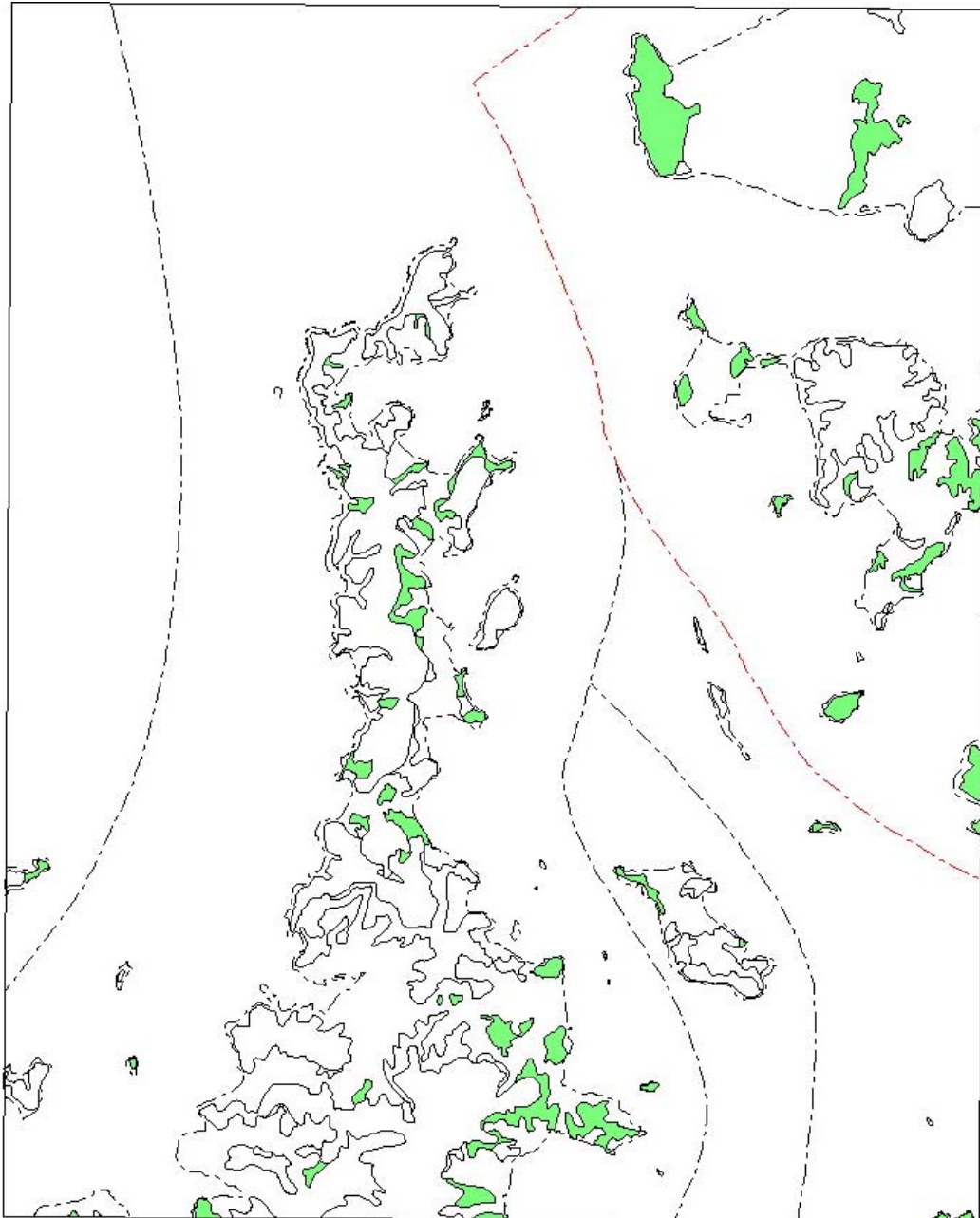
1:25,000 국토계획지도(자연환경보전도)

<일러두기>

1. 이 도면은 국토계획법 제120조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국토계획법 제121조 제1항에 따라 작성된 도면과 함께 사용된다.
2. 이 도면은 국토계획법 제120조 제2항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국토계획법 제121조 제1항에 따라 작성된 도면과 함께 사용된다.
3. 이 도면은 국토계획법 제120조 제3항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국토계획법 제121조 제1항에 따라 작성된 도면과 함께 사용된다.
4. 이 도면은 국토계획법 제120조 제4항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국토계획법 제121조 제1항에 따라 작성된 도면과 함께 사용된다.
5. 이 도면은 국토계획법 제120조 제5항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국토계획법 제121조 제1항에 따라 작성된 도면과 함께 사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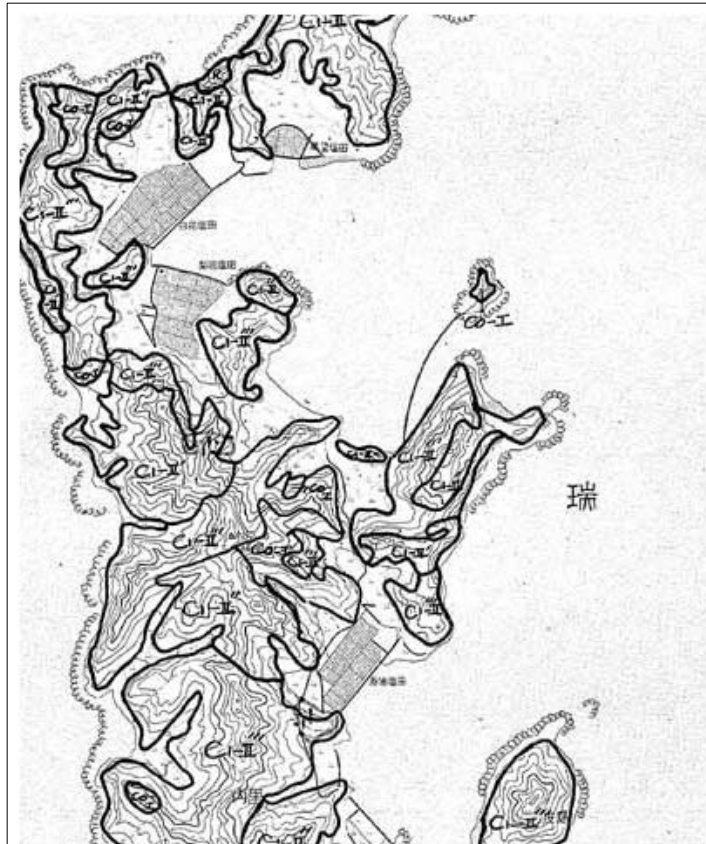
[그림 4-3] 생태자연도 예시

- ⑥ 산림이용기본도 : 임야도를 기초로 산지의 구분, 식생 등의 자료 포함하여 산림청에서 관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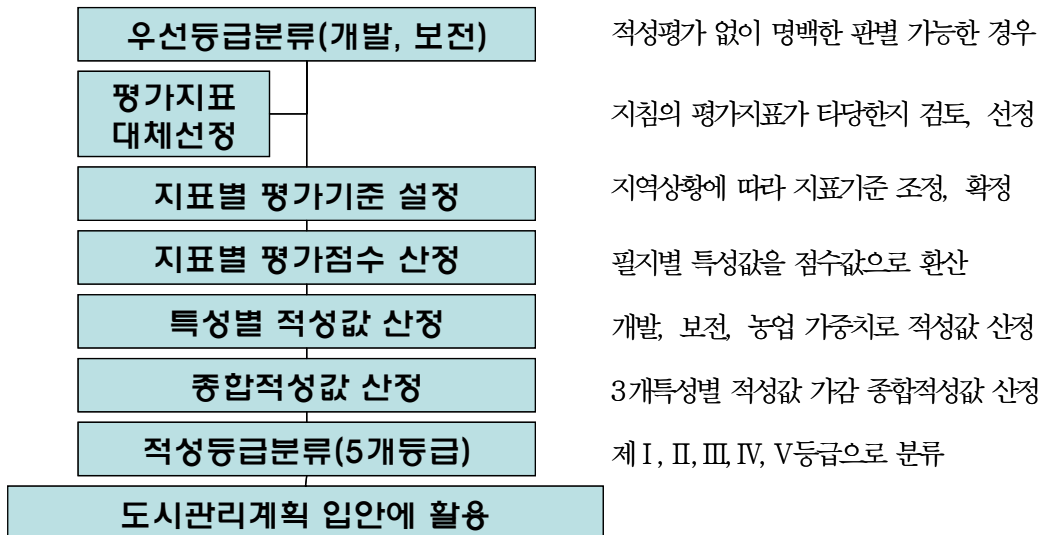


[그림 4-4] 산림이용기본도 예시

⑦ 임상도 (2차 임상도 : 1978~1980, 국립산림과학원)



[그림 4-5] 임상도 예시



[그림 4-6] 토지적성평가 방법

제2절 연안용도구역제도

- 연안을 해역과 육역이 연계된 하나의 독립된 공간으로 인정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노력은 1965년 미국 샌프란시스코만 보전개발위원회에 의하여 최초로 시도되었으며, 1972년 미국의 연안역관리법(Coastal Zone Management Act)이 제정됨으로서 법제도의 구축이 시작되었음.
- 그 후 국제기구 등을 중심으로 연안의 통합적 관리에 대한 시범사업이 산발적으로 실시되었으나, 1992년 세계환경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의제21 제17장에서 연안과 해양의 관리에 있어서 통합관리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된 이후 각 연안국들은 이에 대한 연구와 시범사업을 통하여 급속하게 도입하고 있는 실정임.
- 그러나, 통합적 관리라는 방향의 일치를 도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각 연안국들은 자국의 관리질서와 전통적인 해양이용 관습, 지속적인 해양이용 수요의 증가 및 환경오염의 심화, 과학적 역량의 격차 등으로 인하여 적절한 관리수단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즉, 기존 이용행위와의 조정의 곤란, 수동적 해양관리의 한계, 불충분한 해양정보, 해양의 변화성 등 다양한 현상을 담아낼 수 있는 관리수단을 구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한편, 최근에는 해양생태계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입된 해양보호구역(Marine Protected Area)의 성공적인 도입과 육상에서의 용도지역관리의 경험으로부터 연안의 관리에 이러한 구획관리의 개념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음. 즉 제한된 해양보호구역내에서의 구획관리를 확대하고 이용이 집중된 연안에 대해서도 이러한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예측가능하고 체계적인 연안관리수단으로 연안용도구역제도가 검토되기 시작한 것임.

1. 제도도입의 필요성

- 연안용도구역제도란 연안의 이용과 개발이 전근대적인 선점식으로 이루어져 효율적인 공간활용이 제한되거나 새로운 고부가가치 이용이 차별을 당하는 불합리성을 극복하고, 무계획적인 개발로 인하여 민감한 해양환경과 생태계가 무분별하게 훼손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연안의 이용실태 및 특성, 장래의 이용방향 등을 고려하여 용도를 미리 정하고 정해진 용도의 취지에 부합되는 관리행위를 허용함으로써 예측가능하고 균형과 조

화를 통한 연안관리를 실현하는 제도로서 연안통합관리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안으로 알려져 있음.

- 1992년의 지구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의제21(Agenda 21)의 제17장에서 제시한 연안의 통합적인 관리 선언 이후, 많은 국가에서 통합관리를 위한 노력을 실시해 왔고 현재에는 100여개 이상의 국가에서 600여개소의 시범운영 경험을 쌓아 왔음. 최근에는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미국, 중국, 영국 등 주요 연안국들은 국가차원에서 연안 또는 해양용도 구역제도의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실정임.
- 현재까지 선진국에서는 제한된 범위에서의 연안용도구역제도가 도입되어 왔으며 여러 가지 대처해야할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음. 연안용도구역제의 실시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연안에 대한 기존의 이해관계를 어떻게 조정하여 새로운 관리의 틀 속으로 끌어들이고 어떠한 과학적, 사회적인 기준으로 구역을 구획하여 투명하게 관리해 나갈 것인가 하는데 있음. 또한 육역이 포함된 우리나라의 연안관리에 있어 기 설정된 육역의 계획과 어떻게 연계체계를 만들어 갈 것인가가 관건임.
-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1999년 연안관리법 제정 이후,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지침(2000.12)을 통하여 ‘연안구역’이라는 구획관리제도를 도입한 바 있음. 그러나 법적인 기반이 취약하고 명확한 기준제시의 미흡, 갈등조정체계 미비, 행위제한 및 벌칙 등 효과적인 제도 시행을 위한 수단이 부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이해의 정도가 미약하여 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타나고 있음.
- 따라서 연안용도구역제도라는 본질적이고 효과적인 연안통합관리 정책수단을 통하여 연안이용의 근간이 되는 연안환경과 생태계의 보전을 도모하고 합리적인 이용조정체계를 마련하여 연안이 지속가능하게 활용되고 그 결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할 필요가 있음.

2. 연안용도구역제도의 도입목적

- 연안용도구역제도는 연안통합관리를 실현하는 제도적 수단으로서 ①현재의 이용여건과 해양자원이용, 미래가치 등을 고려한 연안통합관리 실현을 통한 체계적인 해양국토 관리기반을 구축하고 ②복잡한 구역지정 간소화 및 이용수요 대응을 위한 계획적인 연안공간 관리제도 확보 ③개별 법률에 의한 사안대응적 허가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예방적

관리를 실현하여 연안이용을 둘러싼 갈등에 대응한 합리적 조정체계 구축 ④매립 등으로 갯벌, 어류산란장 등 해양생물서식 급감, 해역오염 심화 등 무분별한 연안개발로부터 해양환경 훼손 방지 수단 확보 ⑤이용공간의 원활한 공급 및 안정적 이용 촉진을 통한 안정적 연안공간 활용을 통한 해양경제기반 조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한편, 도시계획의 경우 토지적성평가와 같은 도시시설의 위치결정과정에 있어 연안해역의 특성과 이용여건을 고려하지 않아 연안육역에서의 난개발적 상황에 대한 대응방안이 없는 실정임.
- 또한 연안지역의 개발 및 이용계획의 수립 시 환경부의 사전환경성검토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검토시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 검토대상에서 제외되는 계획과 사업에 대한 대비는 없는 실정이므로 연안용도구역을 활용한 협의가 필요함.

<표 4-10> 사전환경성검토대상 행정계획

구분	행정계획의 종류·규모
가. 도시의 개발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2) 「도시개발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개발계획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른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의 지정 (4)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및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5)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른 예정지구의 지정 (6)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에 따른 국민임대주택단지개발계획 및 국민임대주택단지에정지구의 지정 (7)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9조에 따른 민간부문 제안사업 및 동법 제10조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이 영에 따라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한 사업에 관한 계획은 제외한다) (8)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6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총공사비 50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계획(도로건설공사는 고속국도건설공사에 한한다) (9)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개발구역의 지정 (10) 「유통단지개발 촉진법」 제5조에 따른 유통단지개발계획 및 유통단지의 지정 (11) 「유통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른 유통산업발전기본계획 (12) 「유통산업발전법」 제6조에 따른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

<표 4-10> (계속)

구분	행정계획의 종류·규모
가. 도시의 개발	(13) 「유통산업발전법」 제7조에 따른 지역별 시행계획 (14) 「유통산업발전법」 제34조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개발촉진지구의 지정 (15)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16)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재정비촉진계획
나. 산업입지 및 산업 단지의 조성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의 지정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일반지방산업단지의 지정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농공단지의 지정 (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유치지역의 지정 (6)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이미 개발된 산업단지 또는 개별 공장부지에 지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이 포함되는 협동화실천계획 (8)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8조의2에 따른 문화산업진흥기구의 지정
다. 에너지 개발	「전원개발촉진법」 제11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의 지정
라. 항만의 건설	(1) 「항만법」 제5조에 따른 항만기본계획 (2) 「신항만건설촉진법」 제3조에 따른 신항만건설기본계획 (3) 「신항만건설촉진법」 제5조에 따른 신항만건설예정지역의 지정 (4) 「어촌·어항법」 제17조에 따른 어항의 지정 (5) 「어촌·어항법」 제1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어항기본계획
마. 도로의 건설	(1) 「도로법」 제23조의2에 따른 도로정비기본계획 (2) 「도로법」 제2조 및 「국도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도로(고속국도를 제외한다)의 건설공사 계획
바. 수자원의 개발	(1)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댐건설장기계획 (2)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댐건설기본계획 (3) 「농어촌정비법」 제4조에 따른 농어촌정비종합계획 (4) 「농어촌정비법」 제6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정비계획 (5) 「농어촌정비법」 제7조에 따른 농업기반정비사업기본계획
사. 철도의 건설	(1) 「철도건설법」 제4조에 따른 국가철도망구축계획 (2) 「철도건설법」 제7조에 따른 사업별 철도건설기본계획 (3) 「도시철도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도시철도기본계획 (4) 「도시철도법」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

<표 4-10> (계속)

구분	행정계획의 종류·규모
아. 공항의 건설	(1)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제4조에 따른 신공항건설에 관한 기본계획 (2) 「항공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공항개발기본계획
자. 하천의 이용 및 개발	(1) 「소하천정비법」 제6조에 따른 소하천정비종합계획 (2) 「소하천정비법」 제7조에 따른 소하천정비중기계획 (3) 「소하천정비법」 제8조에 따른 소하천정비시행계획 (4) 「하천법」 제17조에 따른 하천정비기본계획
차. 개간 및 공유수면의 매립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카. 관광단지의 개발	(1) 「관광진흥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관광개발기본계획 (2) 「관광진흥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권역별관광개발계획 (3) 「관광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관광지등의 지정 (4) 「온천법」 제3조에 따른 온천원보호지구의 지정 (5) 「온천법」 제4조에 따른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 (6) 「자연공원법」 제13조에 따른 도립공원계획의 결정 (7) 「자연공원법」 제14조에 따른 국립공원계획의 결정
타. 특정지역의 개발	(1)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광역개발권역의 지정 (2)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광역개발사업계획 (3)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개발촉진지구의 지정 (4)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개발촉진지구개발계획 (5)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에 따른 특정지역의 지정 (6)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6조의4에 따른 특정지역개발계획 (7)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에 따른 지역종합개발지구의 지정 (8)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38조의3에 따른 지역종합개발지구 개발계획 (9) 「농어촌정비법」 제31조의2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개발계획 (10) 「농어촌정비법」 제32조에 따른 마을정비구역의 지정 (11) 「농어촌정비법」 제79조 및 제80조에 따른 한계농지정비지구의 지정 (12)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광역시설계획

<표 4-10> (계속)

구분	행정계획의 종류·규모
다. 특정지역의 개발	(13)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른 폐광지역진흥지구의 지정 (14)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폐광지역환경보전계획 (15)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른 개발계획 (16)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연차별 개발계획 (17)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에 따른 국제화계획지구의 지정 (18)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특구의 지정 (19)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특구육성종합계획 (20)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4조에 따른 특구관리계획
파. 체육시설의 설치	(1) 「청소년활동진흥법」 제47조에 따른 청소년수련지구의 지정 (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
하. 폐기물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 및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의 설치	(1) 「폐기물관리법」 제8조에 따른 폐기물처리기본계획 (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입지의 선정 (3)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에 따른 분뇨 및 축산폐수처리기본계획
거. 국방·군사시설의 설치	(1)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실시계획 (2) 「군용항공기지법」 제6조에 따른 기지구역의 결정 (3) 「해군기지법」 제3조에 따른 해군기지구역의 설정
너. 토석·모래·자갈·광물 등의 채취	「골재채취법」 제21조의2에 따른 골재채취예정지의 지정(공유수면에 지정할 때에는 10만m ² 이상 25만m ² 미만에 한한다)

<표 4-11> 사전환경성검토가 필요한 보전이 필요한 지역 내의 개발사업

구분	보전이 필요한 지역에 따른 개발사업의 종류·규모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적용지역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호에 따른 관리지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다음의 면적 이상인 것 (가) 보전관리지역 : 5,000제곱미터 (나) 생산관리지역 : 7,500제곱미터 (다) 계획관리지역 : 10,000제곱미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호에 따른 농림지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7,500제곱미터 이상인 것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호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호에 따른 관리지역에서의 동법 시행령 별표 20 제2호 타목 및 별표 27 제2호 타목(별표 20 제2호 타목에 따른 공장에 한한다)
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적용지역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 「자연환경보전법」 및 「야생동·식물보호법」 적용지역	(1)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 및 제12조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동법 제23조에 따른 시·도 생태·경관보전지역을 포함한다)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다음의 면적 이상인 것 (가) 핵심구역 : 5,000제곱미터 (나) 완충구역 : 7,500제곱미터 (다) 전이구역 : 10,000제곱미터 (2)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 및 제22조에 따른 자연유보지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3)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7조에 따른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 및 동법 제33조에 따른 야생동·식물보호구역(시·도야생동·식물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라. 「산지관리법」 적용지역	(1)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 나목에 따른 공익용산지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10,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2) 공익용산지 외의 산지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50,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마. 「자연공원법」 적용지역	(1) 「자연공원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원자연보존지구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2) 「자연공원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원자연환경지구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7,500제곱미터 이상인 것

<표 4-11> (계속)

구분	보전이 필요한 지역에 따른 개발사업의 종류·규모
바. 「습지보전법」 적용 지역	(1) 「습지보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습지보호지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2) 「습지보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습지주변관리지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7,500제곱미터 이상인 것 (3) 「습지보전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습지개선지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7,5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사. 「수도법」, 「하천법」, 「소하천정비법」 및 「지하수법」 적용지역	(1) 「수도법」 제3조제7호에 따른 광역상수도가 설치된 호소의 경계면(계획홍수위를 기준으로 한다)으로부터 상류로 1킬로미터 이내인 지역(팔당댐 상류의 남한강·북한강의 경우에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특별대책지역 I 권역으로서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변구역의 지정대상이 되는 지역의 경계선 이내의 지역으로 한다)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7,500제곱미터(「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5,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사. 「수도법」, 「하천법」, 「소하천정비법」 및 「지하수법」 적용지역	(2) 「하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10,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3) 「소하천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하천구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7,500제곱미터 이상인 것 (4) 「지하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지하수보전구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아. 그 밖의 개발사업	사업계획 면적이 가목 내지 사목에 따른 최소 사전환경성검토대상 면적의 60% 이상인 개발사업 중 환경오염, 자연환경훼손 등으로 지역균형발전과 생활환경이 파괴될 우려가 있는 사업으로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미리 시·도 또는 시·군·구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사전환경성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3. 우리나라 연안해역의 구역 등 지정 및 이용현황

- 분석결과, 우리나라의 연안해역에서의 지정구역은 총 37개법률에 의하여 80개구역이 지정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음.
- 이중 연안유역 및 해역을 공동으로 지정가능한 구역은 20개법률 51개 구역 등으로 나타났음.

<표 4-12> 우리나라 해역에서의 지정가능 구역 등

	법률명	지역, 구역, 지구 등	지정권자
어업 및 수산 자원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 등에대한주권적권리의행사에관한 법률	특정금지구역	해양수산부장관
	어업협정	한일 중간수역	-
		한중 잠정조치수역	-
	기르는 어업육성법	기르는 어업 개발지구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어업자원보호법	어업자원보호관할수역	국가
	수산물품질관리법	지정해역	해양수산부장관
		주변해역	-
	수산업법	어업의 금지구역	해양수산부장관
		어로한계선	국방부장관
		조업수역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보호수면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육성수면	시도지사
		특정어업금지구역	해양수산부장관
		어구사용금지구역	해양수산부장관
		포획금지구역	해양수산부장관
	어장관리법	유어장	시장·군수·구청장
		어장관리해역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어장관리특별해역	어장관리특별해역	해양수산부장관
		국도계획법	수산자원보호구역
항만 및 안전	개항질서법	항로	지방해양수산청장
		정박지	지방해양수산청장
	어촌어항법	어항구역(어촌관광구역)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항만법	항만구역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항만개발예정지구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신항만건설촉진법	신항만건설예정지역	해양수산부장관
	선박안전법	항행구역(평수구역, 연해구역, 근해구역, 원양구역)	해양수산부장관
	도선법	도선구역	해양수산부장관
	해상교통안전법	교통안전특정해역	해양수산부장관
		지정항로	해양수산부장관
		유조선통항금지해역	해양수산부장관
수상레저안전법	수상레저활동금지구역	해양경찰서장, 시장·군수·구청장	

<표 4-12> (계속)

법률명		지역, 구역, 지구 등	지정권자
해양 관리	배타적경제수역법	배타적경제수역	국가
	연안관리법	연안육역	해양수산부장관
보전 및 보호	해양수산발전기본법	해중경관지구	해양수산부장관
		해양보호구역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생태계의보전및관리에관한법률	시도해양보호구역	시도지사
		국토계획법	자연환경보전지역
	습지보전법	습지보호지역	해양수산부장관,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습지주변관리지역	해양수산부장관,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습지개선지역	해양수산부장관,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야생동식물보호법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	환경부장관
		시도야생동식물보호구역	시도지사
		야생동식물보호구역	시장·군수·구청장
	문화재보호법	보호구역	문화재청장
	자연공원법	국립공원	환경부장관
		도립공원	시도지사
		군립공원	시장·군수·구청장
		공원보호구역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자연환경보전법	생태·경관보전지역	환경부장관
자연유보지역		환경부장관	
시도생태·경관보전지역		시도지사	
자연휴식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보전 및 보호	독도등도서지역의생태계보전에관 한특별법	특정도서	환경부장관
		시도특정도서	시도지사
	해양오염방지법	환경보전해역	해양수산부장관
		특별관리해역	해양수산부장관
		폐기물배출해역	해양수산부장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 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절대보전지역	제주도지사
상대보전지역		제주도지사	
관리보전지역		제주도지사	

<표 4-12> (계속)

법률명		지역, 구역, 지구 등	지정권자
자원 개발	골재채취법	골재채취예정지	건설교통부장관
		골재채취구역	건설교통부장관
		골재채취단지	건설교통부장관
		골재채취금지구역	건설교통부장관
	광업법	광구	산업자원부장관
	해저광물자원개발법	해저광물개발구역	산업자원부장관
		해저광구	산업자원부장관
		해저조광구	산업자원부장관
	관광진흥법	관광지	문화관광부장관
		관광단지	문화관광부장관
		관광특구	문화관광부장관
	기업도시개발특별법	기업도시개발구역	건설교통부장관
	전원개발촉진법	전원개발사업구역	산업자원부장관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		산업자원부장관	
군사 등 기타	군사시설보호법	군사시설보호구역	국방부장관
	해군기지법	해군기지구역	국방부장관
	항공법	공항구역	건설교통부장관
		비행정보구역	건설교통부장관
		항공로	건설교통부장관
관제구		건설교통부장관	

- 이 밖에도 8개법률 31개구역이 면허 또는 허가, 승인 등을 통하여 구역설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음.

<표 4-13> 해상에서의 면허(허가)구역

법률명	면허(허가)구역명	면허(허가)권자, 절차
공유수면매립법	매립지구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기르는 어업육성법	관리수면	시도지사
내수면어업법	면허(양식, 정치망, 공동, 조류채취)	시장·군수·구청장
내수면어업법	허가(자망, 종묘채포, 연승, 패류채취, 낚시, 낭장망, 각망)	시장·군수·구청장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의행사에관한법률	어업활동허가	해양수산부장관
수산업법	면허(정치망, 해조류양식, 패류양식, 어류등양식, 복합양식, 협동양식, 마을어업)	시장·군수·구청장
수산업법	허가(근해, 원양, 연안, 육상해수양식, 종묘생산, 구획)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유선및도선사업법	영업구역	해양경찰청장
공유수면관리법	점사용허가	해양수산부장관, 시장·군수·구청장
어촌어항법	어항시설사용허가	어항관리청

- 또한 해역이용의 고도화 및 과학적 측정기술의 발달, 지방자치제도의 정착 및 전통적인 지역사회의 붕괴로 인하여 지자체간의 해상이용에 대한 분쟁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며, 향후 연안의 관리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으로 판단됨.

4. 연안용도구역제도의 원칙

- 이상의 연안여건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안용도구역제도 도입의 원칙을 제시하고자 함.
 - ① 합리적인 통합적 연안관리를 위하여 토지의 용도지역 특성과 해양의 다면적 이용특성을 고려한 관리체계를 구축
 - 연안공간의 자연환경, 이용특성, 인문사회적 특성과 토지에서의 용도지역을 고려하여 이용연안구역, 특수연안구역, 관리연안구역 및 보전연안구역의 4가지 구역으로 구분되 영해와 연안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연안육역의 범위를 통합적으로 아우르는 연안을 대상으로 지정관리함.
 - 연안용도구역의 목적이 달성되도록 필요에 따라 행위제한 규정을 두도록 하되, 기존의 보전목적의 개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행위제한 이상의 규제는 회피함으로서 실효성을 확보함
 - 해양공간의 3차원적 이용가능성과 복합이용의 증가추세를 고려하여 연안기능구를 도입하여 연안용도구역제도가 가지는 경직성을 극복하고 우선이용순위의 제시를 통하여 갈등조정과 다면적 자원이용을 위한 기반을 마련함
 - ② 연안육역 및 연안해역의 관리여건의 상이성을 감안한 차별적 접근
 - 연안육역의 경우, 기존 토지용도지역에서 제시하고 있는 분류를 최대한 반영하여 동일 공간에 대한 관리정책간의 모순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도록 하되, 이를 고려하여 지정된 연안용도구역 도입 이후에는 토지의 용도지역변경 등에 있어 연안관리자와 반드시 협의하도록 함으로서 연안개발 및 이용에 대한 간접관리권을 확보토록 함. 단, 연안해역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연안서식지(해안사구, 석호, 연안습지 등)에 대해서는 보전해역으로 지정하여 직접적인 관리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함.
 - 연안해역의 경우에는 이미 지정된 각종 구역 등을 연안기능구로 흡수하여 통합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함
 - 다만, 연안해역 및 연안육역의 통합관리를 위하여 연안용도구역의 4가지 분류는 동일하게 적용함
 - ③ 연안용도구역의 설정은 사회경제적인 요인과 이용수요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과학적인 정보의 확보상황에 따라 토지적성평가와 유사한 해역특성평가를 통하여 구획구분의 객관성과 해양생태환경의 고려를 추진해 나가도록 함

- ④ 현존하고 있는 해양에 대한 과학적 불확실성과 이용우선적인 경향을 가진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권자인 지자체의 무분별한 이용행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장관이 개발이용제한연안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도입함

5. 연안용도구역 및 연안기능구의 설정방안

- 연안을 국토계획법의 기초와 우리나라의 여건, 기존의 연안관리지역계획에서 채용하고 있는 분류기준을 고려하여 이용연안구역, 특수연안구역, 관리연안구역 및 보전연안구역의 4가지 유형의 연안용도구역으로 구분함.
- 각각의 연안용도구역에 대해서는 육상의 경우 기존의 용도지역을 충실하게 반영하도록 하고 해양기반의 법정개발계획을 전반적으로 수용하며, 기 설정된 각종 법정 지역, 지구, 구역 등을 반영하도록 함.
- 또한 연안기능구의 성격에 따라 적합한 연안용도구역으로 반영하게 함으로서 연안용도구역 지정의 일관성을 확보하도록 하였음.
- 연안기능구의 경우, 기존의 법률에서 정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여 18개의 기능구를 설정하도록 하되, 하위법령에서 지자체장의 융통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조정의 여지를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표 4-14> 연안용도구역의 설정 목적 및 분류방법(안)

연안용도구역	용도구분 목적	해당 구역 등
이용연안구역	이용 또는 개발이 확정되어 있거나 개발이 예상되어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만법」에 따른 항만구역 및 「신항만건설촉진법」에 따른 신항만건설예정지역 - 「어촌·어항법」에 따른 어항구역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및 지방산업단지 - 「골재채취법」에 따른 골재채취단지 - 「해저광물자원개발법」에 따른 해저광구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을 제외한 지역 - 연안기능구 중 항만구, 항로구, 어항구, 레저관광구, 해수욕장구, 광물자원구

<표 4-14> (계속)

연안용도구역	용도구분 목적	해당 구역 등
특수연안구역	군사시설 및 국가 중요시설의 보호를 위하여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구역 또는 해양의 환경 및 생태계가 훼손되어 별도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군사시설 - 해양환경관리법에 의한 특별관리해역 - 전원개발촉진법에 의한 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예정구역 - 연안기능구 중 환경관리구, 해양조사구, 해양투기구, 재해관리구, 군사시설구 및 산업시설구
관리연안구역	이용 또는 개발의 용도가 정해지지 않았거나 중복 지정으로 인하여 이의 조정이 필요한 구역 또는 용도지정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연안구역, 특수연안구역 및 보전연안구역에 해당되지 않는 연안 - 연안기능구 중 이용유보구
보전연안구역	연안환경 및 자원의 보호, 해양문화의 보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 또는 보전할 필요가 있는 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계획법에 의한 농림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 및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 수산자원보호구역 -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해양생태계보호구역 - 해양환경관리법에 의한 환경보전해역 -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생태·경관보전지역, - 습지보전법에 의한 습지보호구역 - 독도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특정도서 -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구역 - 연안기능구 중 수산생물자원보호구, 생태보호구, 경관보호구, 공원구 및 어장구

<표 4-15> 연안기능구의 지정목적

연안기능구	지정목적
항만구	항만건설과 기능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능구
항로구	선박의 안전한 운행을 위하여 필요한 기능구
어항구	어항건설과 기능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능구
레저관광구	연안에서의 레저관광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능구
해수욕장구	해수욕장 기능의 유지를 위하여 고시된 기능구
광물자원구	광물 또는 골재자원 채취를 위하여 필요한 기능구
환경관리구	해수의 수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능구
수산생물자원보호구	수산자원의 보호와 육성이 필요한 기능구
생태보호구	연안서식지 또는 희귀해양생물의 서식지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능구
해양조사구	해수수질 또는 해양생태계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기능구
경관보호구	해상, 해중 또는 해저의 경관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기능구
해양투기구	해양투기를 위하여 필요한 기능구
공원구	법정공원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능구
재해관리구	해일, 파랑, 해수, 지반의 침식 또는 적조 등 연안재해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관리가 필요한 기능구
어장구	해면, 마을, 양식 등 어장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능구
군사시설구	군사시설의 보호에 필요한 기능구
산업시설구	에너지, 유류비축시설 등 국가기간산업시설의 유지에 필요한 기능구
이용유보구	중복이용으로 인하여 조정이 필요하거나 용도가 확정되지 못한 기능구

6. 연안용도구역제의 경제적 영향

1) 사회경제적 측면에서의 편익

- 사적 재산권에서 만일 재산권의 사용 및 활용과정에 불확실성이 개입되는 경우에는 불확실성을 회피하기 위해 필연적으로 거래비용(transaction cost)이 수반됨. 이러한 거래비용은 거의 대부분의 민간경제활동에서 나타날 수 있음.
- 연안의 이용실태와 특성을 고려하여 미리 용도를 지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연안용도구역제는 연안지역의 활용에서 존재할 수 있는 불확실성을 사전에 제거시켜 줌으로써 민간의 경제활동이나 토지이용을 원활하게 해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임.

- 연안용도구역제는 희소자원에 해당하는 연안환경의 보호 외에도 연안이용을 둘러싼 갈등의 사전방지, 연안의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이용증진, 토지이용의 불확실성 감소, 관광자원의 확보, 유용생물종 서식지 확보, 해양오염에 대한 부담의 경감 등의 다양한 부수적 효과를 지니고 있음.
 - 따라서 연안용도구역제의 도입으로 인한 사회경제적인 효과와 영향을 적절하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시장가치와 비시장가치를 동시에 고려해야 할 것임.
 -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본다면 연안용도구역제의 편익은 ① 시장가치(시장에서 거래되는 재화나 서비스의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미쳐 사회적 후생증진을 야기하는 형태로 발생하는 가치를 의미)와 ② 비시장적 가치(시장에서 거래되지는 않으나 경제주체들의 후생변화를 발생시키는 형태로 발생하는 가치를 의미)로 구분할 수 있음.
 - 또한 연안용도구역의 지정 및 실시에 따라 ① 환경비용 감소 ② 민간부문의 거래비용 감소, ③ 공공부문의 행정비용 절감에 따른 편익으로 구분할 수 있음
- 환경비용의 감소는 무분별한 연안개발 수요를 사전에 적절히 차단하고 자연환경, 이용특성, 인문사회적 특성이 개발에 적합한 지역으로 유도하여 효과적인 연안환경의 보호가 가능하도록 함에 따라 사회적으로 증진될 수 있는 편익을 의미함. 이러한 환경비용의 감소는 '핵심자원의 효율적 보전을 통한 해양생태계 가치 보존 및 증진'이라고 할 수 있음.
 - 연안생태계의 보존과 증진에 따라 부수적으로 얻을 수 있는 중요한 편익으로는 관광자원확보와 해양오염에 대한 부담경감을 꼽을 수 있음.
- 민간부문의 거래비용 감소는 사전에 용도에 맞는 구역의 설정으로 인한 정보획득비용의 감소로 이해할 수 있음.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최근 들어 연안에 대한 개발수요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사전에 특정한 경제행위를 통해 연안을 이용할 수 있는가의 여부와 어느 정도의 경제행위까지 허용되는가를 미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함.
 - 현실적으로 연안에 대해 사유재산권이 확립되었다고 하더라도 많은 부분이 국가에 의해 소유·관리되는 부분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임
 - 따라서 연안지역의 경우에는 고유재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이용가능여부에 대한 정보는 불완전한 상태이고 따라서 이를 완전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거래비용이 수반됨. 그러므로 용도구역의 설정과 이러한 정보의 종합적 공개는 일종의 '재산권 제도의 명확화'로 이해할 수 있음. 재산권 제도의 불명확성은 민간의 거래비용을 야기하는 가장 주요한 원인으로 꼽히고 있으며, 따라서 재산권과 관련된 정보를 명확히 하는 경우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행동을 사전에 자율적으로 규율하는 효과가 있음.

- 연안용도구역제의 경우 공공부문의 행정비용 및 집행비용에 대한 절감효과도 크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이는 민간간의 개발수요나 공공목적 개발의 경우 사안별로 검토하고 판단해야 하는 절차를 크게 경감함으로써 발생하는 편익에 해당함. 이와 같은 행정비용 및 집행비용의 절감은 '계획적 이용을 통한 사회관리비용 절감', '관리의 매뉴얼화를 통한 행정비용 저감', '사안별 대응체계에서 발생하는 별도 조사 및 검토 비용 절감', '허가 적합성 검증 또는 분쟁 등에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 절감', '적절한 개발위치선정 회피에 따른 자연환경 보상비용 최소화'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편익을 유형별로 구분해 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 (1) 계획적 이용을 통한 사회관리비용 절감
 - (2) 관리의 매뉴얼화를 통한 행정비용 저감
 - (3) 사안별 대응체계에서 발생하는 별도 조사 및 검토 비용 절감
 - (4) 허가적합성 검증 또는 분쟁 등에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 절감
 - (5) 적절한 개발위치선정 회피에 따른 자연환경 보상비용 최소화
 - (6) 핵심자원의 효율적 보전을 통한 해양생태계 가치 보존, 증진
 - (7) 경제활동 불확실성 감소로 인한 비용 절감 및 개발촉진

2) 사회경제적 측면에서의 비용

- 연안용도구역제의 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음. 첫째는 행정비용으로써 이는 설정과 시행에 따라서 공공부문에서 부담하는 비용임. 둘째로는 집행과정상에서 부담하는 집행비용이 있음.
 - 행정비용은 주로 연안용도구역의 설정을 위한 조사·연구에 소요되는 초기 투자비용과 연안용도구역을 상황과 여건에 맞도록 수정·보완·유지하는데 드는 유지비용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집행비용은 민간과의 관계에서 연안용도구역제를 실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의미함. 예를 들어 민간소유토지의 일부가 연안완충대로 인한 행위제한에 적용받게 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따라 행위제한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주어져야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이 집행비용에 해당함. 또한 이러한 민간토지의 매수하거나 교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도 집행비용에 해당함.

3) Great Barrier Reef Marine Park의 경제적 효과 측정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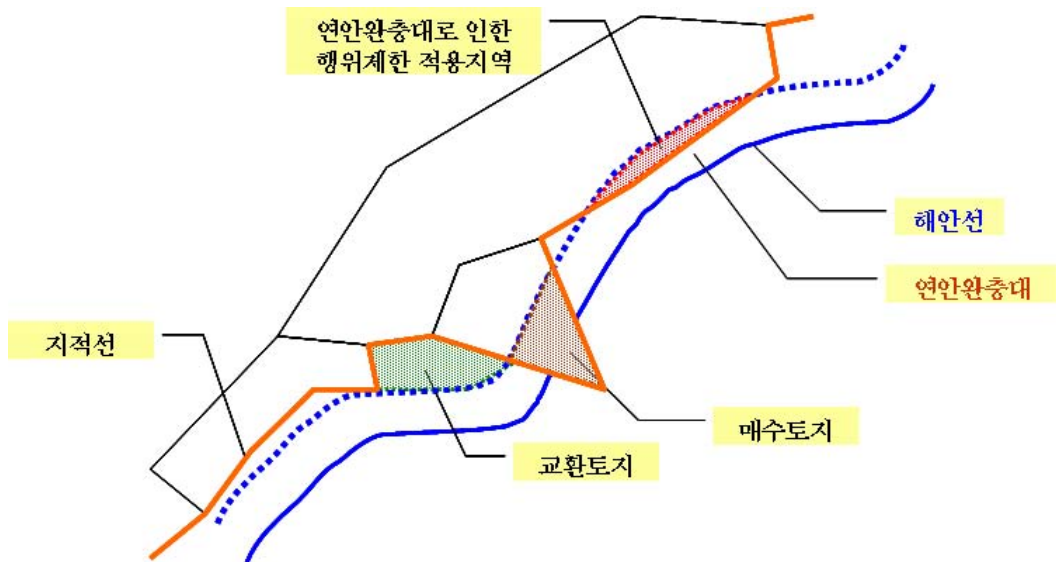
- 호주의 대보초관리국(GBRMPA)에서는 지난 2003년 대보초에 대한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로 인해 발생한 사회·경제적 효과를 조사한 바 있음.²⁸⁾
 - 조사에 따르면 대보초지역의 관광은 연간 40억 달러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으며, 2003년 방문객은 9백 3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음. 방문객들이 지역에서 사용하는 소비지출은 400억 달러에 달하며, 2002년을 기준으로 관광산업에서의 고용은 33,100명으로 집계되었음.
 - 어업분야에서는 상업분야와 관광낚시가 각각 1억 3천만 달러와 2억 4천만 달러의 부가가치를 갖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관광이나 어업과 같은 자연자원의 사용가치 외에 비시장재화로 분류되는 비사용가치 측면에서는 연간 9천 800만 달러의 존재가치와 3천 300만 달러의 보존가치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28) Great Barrier Reef Marine Park Authority(GBRMPA), Summary report of the social and economic impacts of the rezoning of the Great Barrier Reef Marine Park, 2003.

제3절 연안완충대 개념의 도입

- 우리나라의 해안은 매립 및 기타 개발로 인하여 자연성이 급속하게 손상되고 있고, 지역에 따라서는 자연적인 해수면 상승현상과 부적절한 개발로 인하여 심각한 침식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임.
- 그러나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는 연안정비사업을 추진하여 침식을 물리적으로 막거나 포락지로 인정하여 토지를 공유수면화 하는 방안으로 추진되고 있음.
- 이러한 대응방식은 정부예산을 특정 사유지의 보호에 사용한다는 특혜시비의 원인이 되거나, 연안정비사업을 계기로 개발이 추진되는 등 문제점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포락지화의 경우 사유재산권의 국가 보호의무를 방치하는 양면적인 단점을 가지고 있음.
- 또한 해안에 연접하여 개발하는 경우 자연공물인 바다에 대한 공공의 접근성을 크게 제약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하여 해면의 사적 이용이 발생하거나 해면 자체의 활용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현상도 나타나게 됨.
- 그리고 최근 해양관광산업의 급속한 발달과 교통망의 확충 등 접근성의 개선으로 연안 육역에서의 개발행위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지역의 자연경관 및 전통문화와 상치되는 무질서한 개발사태가 증가하고 있음.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연안의 경관을 효율적으로 보전하고 장기간의 해안선변화를 추정할 수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자연해안선으로부터 일정거리의 육역에 대해서는 연안완충대를 설정하여 연안재해로부터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해안의 자연성을 보전하여 육해역간의 생태적 연계성을 확보하고 자연치유적 해안관리를 도모함과 동시에 공공의 해안접근성으로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 연안완충대는 연안육역의 일부분일 뿐만 아니라 그 기능을 고려하여 보전연안구역으로 정하고 일정한 행위규제를 두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나, 육역의 기능과 특성에 따라 대응할 수 있도록 협의를 통한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 연안완충대에 위치한 사유토지의 경우 평가에 의하여 재산권침해가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정부에서 매입하여 국유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제한적인 지장을 받는 토지에 대해서는 이용 상의 인센티브를 제공함과 더불어 연안완충대의 보전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고 이를 불이행하여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는 정부의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균형 있는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연안완충대 내의 사유지에 대한 정부의 매입재원은 적정한 평가에 따라 인근 바닷가 중에서 토지로 전환된 국유재산(잡종재산)과 교환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공유지 또는 국유지가 연안완충대에 위치한 경우에는 토지의 전용과 매각을 최대한 억제하여 정부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도록 함.
- 선진 연안국에서는 이와 유사한 해안보전제도를 실시하여 해안선의 자연성을 유지하고 재해에 대한 자연적 대비를 도모하고 있음.
- 미국 연안건설제어선(Coastal Construction Control Line), 네델란드 기준해안선(Base Line), 영국 임계기준해안선(Critical Coastal Line) 등이 있음



[그림 4-7] 연안완충대 개념도

제4절 연안용도구역제도 도입에 따른 예상문제점 및 대응방안

1. 연안육역에 대한 추가적인 규제도입 문제

- 해양환경 및 생태계의 훼손 원인 중 대부분이 육상에서의 인간활동에 기인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 특히 수심이 낮은 연안해역은 인근 육역의 개발이나 이용행태로부터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미국, 호주 등 많은 국가에서 육역을 포함한 관리, 즉 유역관리를 시행하고 있음.
- 우리나라도 1999년 연안관리법을 제정하여 해안선에서 약 500m 범위의 육지를 연안육역으로 설정하여 해역환경을 고려한 이용행위가 이루어지도록 유도하는 제도적인 기틀을 마련한 바 있으나, 육역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정책수단이 제외된 채 시행하게 되어 연안의 지속가능한 이용의 실현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하여 국토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연안육역의 경우에도 이 법률에서 정하는 내용에 따라 관리되고 있어 연안용도구역제가 자칫 기존제도와 상충되거나 중복으로 지정되어 국민에게 불편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으나,
- 1990년대 이후 연안지역의 부동산가치의 증가에 따라 각종 개발압력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 생태환경과 보존가치를 고려한 이용방식이 시급하게 도입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도시계획 등을 통하여 경제이익창출만을 고려한 입지결정으로 연안육역의 훼손이 심화되고 있고 이것은 바로 해역의 환경저하로 이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현상이 관행화 되는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음.
- 또한 어촌과 같은 전통적인 연안지역사회가 연안의 무분별한 개발로 문화적 지속가능성도 큰 위협을 받고 있으나 연안관리자가 이에 대한 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안은 거의 없고 조정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도 취약한 실정임.
- 따라서 육역의 개발행위에 대하여 연안관리자가 최소한의 협의권을 확보하면서 투명한 공간관리행정의 추진을 위해서는 연안용도구역제와 같은 검증된 보편타당한 제도의 도입이 불가피한 실정임.
- 또한 연안용도구역제는 추가적인 토지이용규제의 신설보다는 연안지역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협의절차에 중점을 두어 과도한 이용규제를 지양하고 중복지정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 하는 방안으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음. 즉, 토지의 용도지역을 최대한 반영하고 기존의 이용질서를 수용하되, 향후 발생하는 변화에 대한 협의권을 확보하려는 것임.

- 연안육역의 연안구역제 실시에 있어서는 기존의 계획과 이용여건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고, 연안해역의 보전과 이용에 있어 육역의 이용이 조화롭게 이루어지도록 조정요청권 및 협의권을 부여하여 토지관리청과의 협력과 견제의 틀을 만들고자 하는 것임.
- 기존의 연안육역개발방식에 따라 나타나는 주요 지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1985년 이후 690여건의 각종 매립사업의 시행
 - 수력을 제외한 전국 47개 발전소 중 42개소 연안입지(2003)
 - 하천과 해양을 단절시키는 방조제 1,690개소
 - 국가산업단지 35개소(414km²) 중 23개소(374km²) 연안입지(2003)
- 또한 이러한 연안육역개발에 따른 해역에서의 현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서해안 자연해안 비율 33.7%로 감소
 - 1987년 이후 전국 갯벌의 20% 이상 상실
 - 서해안 어류산란지 10개소에서 2개소로 감소
 - 1990-2005기간 중 어획량 전국 25.5%, 서해안 47%, 경기 70% 감소
 - 연안침식 등 재해취약현상 급증
- 한편, 하천 및 하구역을 연안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나, 하천과 하구역은 물질이동 및 생물서식지 기능측면에서 연안해역에 끼치는 영향이 매우 크지만(지방하천이상 해양직접유입 하천수 214개 중 하구둑설치 하천 95개) 현재의 연안 관리법에서는 이 공간을 제척하고 있어 연안관리에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 환경관리 해역의 경우 오염물질관리만 해양환경관리법에서 정하고 있어 연안관리와 연계가 크게 부족하여 이를 보완하고자 함. 다만, 부내 협의를 통하여 각 법에서 정하는 계획 간에 상충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정이 필요함.
- 또한 연안육역을 일률적으로 연안범위를 확정하는 데서 오는 한계를 보완, 극복하고 주변지역의 특성, 통합관리 필요성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하고자 하며 다만, 연안육역 결정시 관련기관협의, 지역계획(안) 관계부처협의, 지역 및 중앙심의회 등 충분한 검토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문제발생을 최소화하고자 함.

2. 기존 연안관리지역계획의 연안구역과의 상충여부

- 현재 연안관리지역계획수립지침에 의거하여 수립되고 있는 연안관리지역계획은 연안용도구역과 유사한 연안구역을 설정하고 있음.
- 그러나 각 연안구역의 설정기준이 모호하고 공간분류의 기준으로 설정하기 어려운 항목이 포함되어 있어 현실상의 적용기준으로는 미흡한 점이 나타나고 있음.
- 따라서 각 지자체에서는 주민공청회 및 관련기관협의를 통하여 이를 조정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연안구역을 설정하기 때문에 지역간의 일관성이 부족하고 계획의 관리에 있어서도 정확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못함.
- 그러나 2002년부터 수립하고 있는 연안관리지역계획은 정부의 지원과 기초지자체의 자발적인 의지를 바탕으로 2006년말현재까지 38개 시군구에서 수립을 완료하였으며 2008년 하반기까지 전 연안시군구에서의 수립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음.
- 본 계획은 연안용도구역제와 유사한 방식의 관리방안이 수립과정에 있어서 관련부처 및 기관의 협의과정과 지방 및 중앙연안관리심의회, 주민공청회 등을 통하여 확정되는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 도입되고 활용되는 단계에 있으며, 연안용도구역제는 이러한 기존의 틀과 정합성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연구가 추진 중에 있음.
- 연안용도구역제도가 도입되면 기존의 연안관리지역계획에서 정한 연안구역은 변경이 불가피하며, 기존의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과정을 통하여 지역의 개발수요가 반영되고 공청회 등에서 나타난 주민의견이 융통성 있게 반영되던 과정이 생략됨으로서 현재의 지역계획보다 한층 강화된 양상을 나타낼 수밖에 없음.
 - 기존의 5개 연안구역은 특성에 따라 아래와 같이 4개 연안용도구역으로 재분류될 수 있으나, 미확정 개발계획과 지역주민의 숙원사업, 보호구역의 일관된 적용 등을 고려하면 규제의 강도는 강화되는 방향으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됨
 - 특히 이용연안, 개발조정연안, 개발유도연안으로 설정된 현 계획의 변화가 예상되며, 육역의 경우에도 관리지역이 세분화됨에 따라 변화가 발생될 것으로 전망됨

<표 4-16>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지침 상의 연안구역 기능부여 기준

연안 구역	지정 기준
절대보전연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경관이나 생태계 등을 감안할 때 자연상태 그대로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은 절대보전연안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절대보전연안으로 설정하여야 하는 지역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암석해안이나 자연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자연경관이 뛰어난 지역 2. 야생동식물 서식지 또는 도래지 3. 하구부, 저습지 등 생태계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4. 풍부한 수산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청정해역 5. 자연환경보전지역, 문화재보호구역, 자연생태계 보전지역 등 관련법률 또는 계획상 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6. 기타 지역계획 수립주체가 절대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준보전연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우수한 자연경관 및 생태계를 보유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보전을 원칙으로 하되 생태학습장, 연안접근로 등 휴양을 위한 소극적 개발 등 환경친화적 활용이 요구되는 지역 2. 보전연안과 개발연안 사이의 완충이 필요한 지역
이용연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하면서 연안공간 및 자원의 이용이 요구되는 지역 2. 기존의 연안보호를 위한 시설의 설치 또는 정비가 필요한 지역
개발조정연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이미 산업화나 도시화가 되어 있는 지역 2. 기존의 활성화된 용도를 존중하여 환경친화적인 정비가 요구되는 지역 3. 개발예정지로 되어 있으나 개발계획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지역 4. 현재 개발가능성이 불투명하고 공간구조상 기능부여가 유보된 지역 5. 친수공간으로서 잠재력은 있으나 향후 여건변화를 감안하여 개발을 검토해 볼 수 있는 지역
개발유도연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략적 용도를 도입하여 도시 및 연안기능 활성화가 필요한 지역 2. 도시 및 연안공간 구조상 거점지역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는 지역

- 연안용도구역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기존의 계획과 조정이 필요한 부분으로, 이러한 조정은 현 규정에서 명확한 연안구역 구분기준이 제시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임. 현재에는 이러한 모호성을 지역주민과 관계부처, 지역심의회를 거쳐 조정하게 함으로서 지자체별로 상이한 기준이 적용되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으며, 심지어는 인근 지자체간에도 인접한 연안의 관리방향이 상이하게 나타나는 실정임.

- 新연안관리법에서는 이러한 모호성과 일관성 결여를 극복하기 위하여 연안용도구역 구분기준을 법에서 명확하게 제시하고 수립권자의 자율권을 동시에 부여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이고 예측가능한 연안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므로, 시행과정에서 기존계획과 신계획기준 적용으로 인한 어느 정도의 불일치 및 조정과정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됨.

<표 4-17> 기존 연안관리지역계획에서의 연안구역과의 연계방안

연안 구역	현행 지정 기준	연안용도구역 적용시 조정
개발 유도 연안	1. 전략적 용도를 도입하여 도시 및 연안기능 활성화가 필요한 지역	이용연안 또는 특수연안
	2. 도시 및 연안공간 구조상 거점지역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는 지역	이용연안
개발 조정 연안	1. 이미 산업화나 도시화가 되어 있는 지역	이용연안
	2. 기존의 활성화된 용도를 존중하여 환경친화적인 정비가 요구되는 지역	이용연안
	3. 개발예정지로 되어 있으나 개발계획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지역	관리연안
	4. 현재 개발가능성이 불투명하고 공간구조상 기능부여가 유보된 지역	관리연안
	5. 친수공간으로서 잠재력은 있으나 향후 여건변화를 감안하여 개발을 검토해 볼 수 있는 지역	이용연안 또는 관리연안
이용 연안	1.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하면서 연안공간 및 자원의 이용이 요구되는 지역	관리연안 또는 이용연안
	2. 기존의 연안보호를 위한 시설의 설치 또는 정비가 필요한 지역	이용연안 또는 특수연안
준 보전 연안	1. 우수한 자연경관 및 생태계를 보유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보전을 원칙으로 하되 생태학습장, 연안접근로 등 휴양을 위한 소극적 개발 등 환경친화적 활용이 요구되는 지역	관리연안, 보전연안 또는 이용연안
	2. 보전연안과 개발연안 사이의 완충이 필요한 지역	관리연안
절대 보전 연안	1. 암석해안이나 자연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자연경관이 뛰어난 지역	보전연안 또는 관리연안
	2. 야생동식물 서식지 또는 도래지	보전연안 또는 관리연안
	3. 하구부, 저습지 등 생태계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보전연안 또는 관리연안
	4. 풍부한 수산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청정해역	보전연안 또는 관리연안
	5. 자연환경보전지역, 문화재보호구역, 자연생태계 보전지역 등 관련법률 또는 계획상 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보전연안
	6. 기타 지역계획 수립주체가 절대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보전연안

- 또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할 가능성이 있는 개발유도연안, 개발조정연안, 이용연안의 경우 이용행위가 제한되는 보전연안구역으로 변경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고 재수립시 이러한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조정해 나갈 것임.
 - 그리고 기존 연안구역들이 관리연안구역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도 新연안관리법에서는 일괄적인 규제가 아닌 협의를 통한 문제해결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협의절차를 명확하게 하고 지역의 여건을 고려한 조정을 추진한다면 제도도입에 따른 큰 혼란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
- 한편, 기존의 연안구역 지정방식을 변경하려는 것은 지난 7년간의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과정에서 나타난 개발조정연안의 모호성, 준보전연안 및 보전연안간의 유사성, 이용연안의 의미상의 혼돈으로 인한 지역별 일관성 결여, 연안의 기능을 명확하게 고려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간에 조사된 다양한 해양과학적인 조사결과를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국토계획상의 용도지역의 경우에도 관리어건과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약 10년 주기로 변경·조정되어 왔음을 알 수 있음.
- 또한 연안관리법개정안은 국토계획의 방향과 동일하게 5개 연안구역에서 4개 연안용도구역으로 단순화하여 관리의 효율을 높이고 국토계획을 내용을 수용하기 용이하도록 한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음.

<표 4-18> 국토계획상의 용도지역 지정 변천경위

법령 및 변동연도	용도지역의 종류
국토이용관리법 제정(1972)	도시지역, 농업지역, 산림지역, 공업지역, 자연 및 문화재보전지역, 유보지역 (6개 용도지역)
국토이용관리법 개정(1982)	도시지역, 취락지역, 경지지역, 산림보전지역, 공업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관광휴양지역, 수산자원보전지역, 개발촉진지역, 유보지역 (10개 용도지역)
국토이용관리법 개정(1993)	도시지역, 준도시지역, 농림지역, 준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5개 용도지역)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정(2002)	도시지역, 농림지역, 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4개 용도지역)

- 새로운 연안용도구역제도의 도입결과를 2006.8월에 고시된 가로림만 연안관리지역계획의 사례를 가지고 살펴보면 아래와 같음.
- 아래표는 최종적으로 적용된 가로림만 연안관리지역계획 연안구역 설정기준임
- 해역의 경우 갯벌의 보전을 위하여 전 해역을 준보전연안으로 지정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용하여 관리지역은 이용연안으로 분류하였음

<표 4-19> 가로림만 연안관리지역계획의 연안구역 기능부여 기준 및 설정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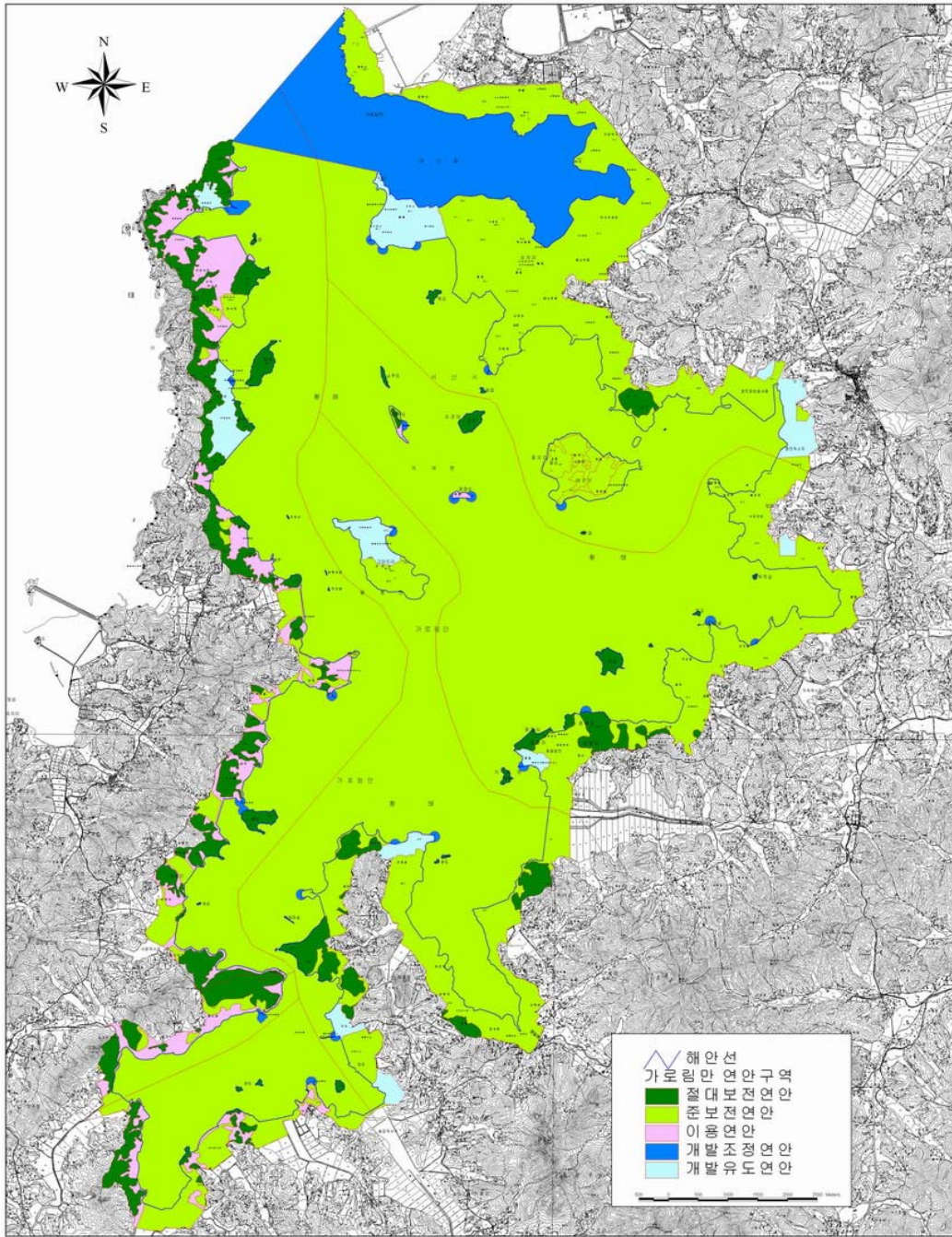
연안구역	가로림만 연안구역 설정기준	
절대보전연안	육역	·도시기본계획상 도시공원 ·특정도서 ·무인도서
	해역	·해당사항 없음
준보전연안	육역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
	해역	·갯벌, 공유수면
이용연안	육역	·보전산지이외 임야 ·도시계획상 관리지역 ·농업진흥지역이외 농지 ·기타 특정개발계획이나 보호구역이 아닌 지역 ·유인도서 일부
	해역	·해당사항 없음
개발조정연안	육역	·해당사항 없음
	해역	·항만 및 어항구역 ·도시계획구역외 축제식양식장
개발유도연안	육역	·개발계획 확정 추진지역 ·전략적 개발추진 지역 ·지역주민생계관련 사업계획지
	해역	·해당사항 없음

- 위의 적용결과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 아래 그림 임.
- 농림지역 등 보전적 가치가 강한 용도지역의 경우에도 논의과정과 지역의 토지여건을 고려하여 준보전연안으로 분류되었으며, 절대보전연안의 경우에는 무인도서, 특정도서 및 도시지역의 도시공원만이 분류되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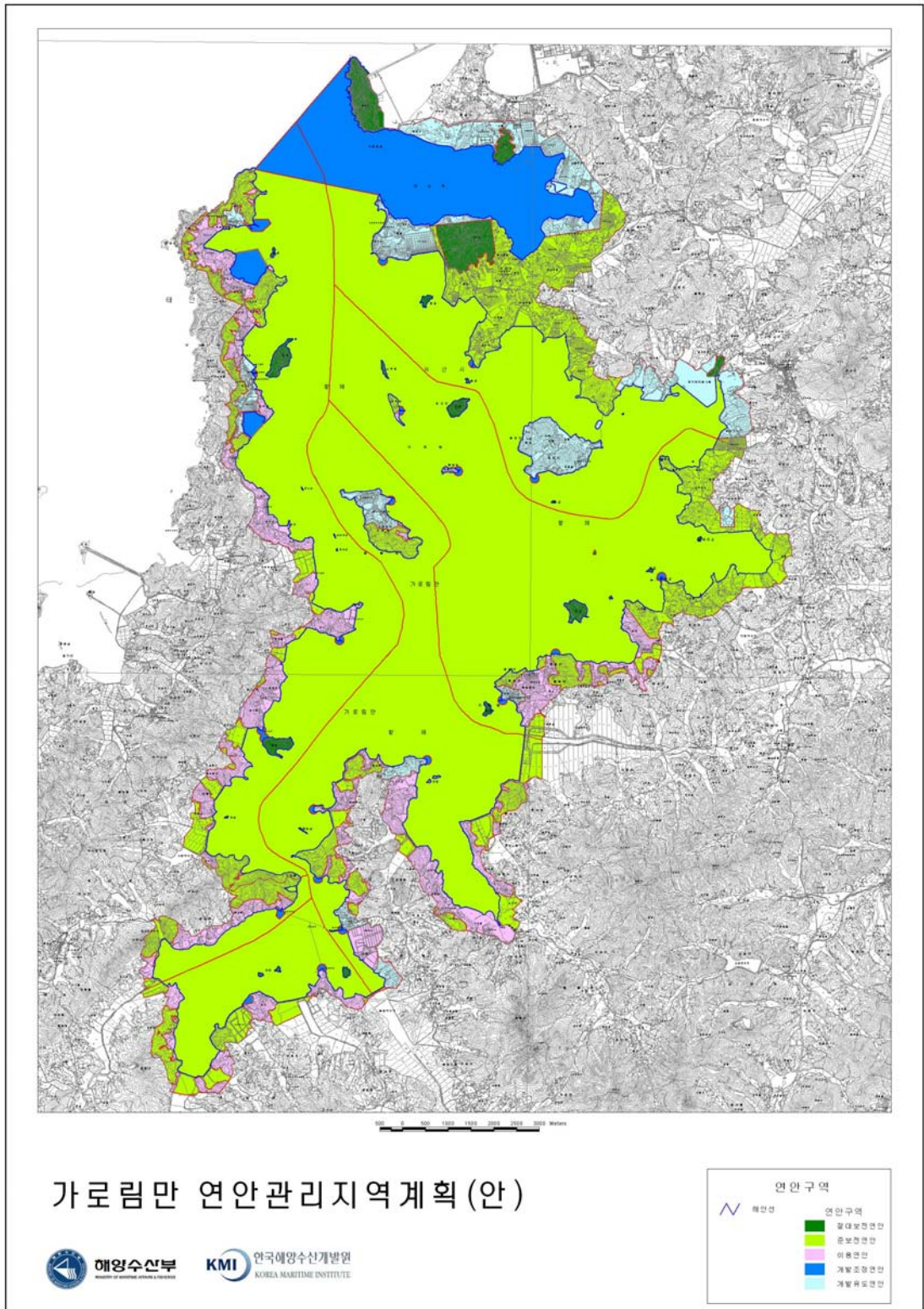
<표 4-20> 가로림만 연안기능부여 기준표

구 분			보전		이용	개발	
			절대보전	준보전		개발조정	개발유도
용도 지역	도시 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녹지지역	도시공원				
		공업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기타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					
		준보전산지					
생태	갯벌						
	특정도서, 무인도서						
이용	도시계획구역외 축제식 양식장						
지역 개발	관광개발계획						
	항만 및 어항구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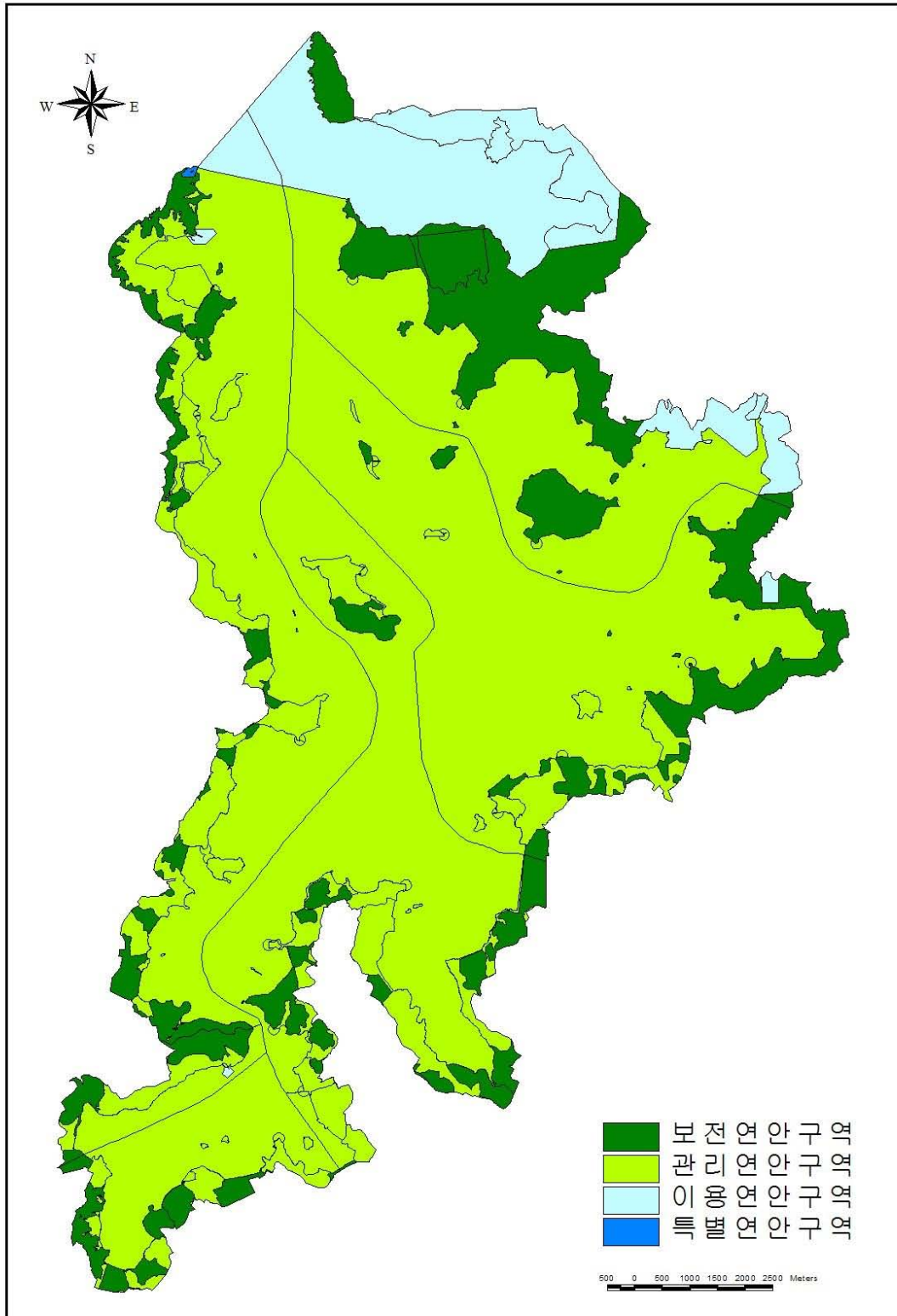
- 그림 3-10과 그림 3-11은 해양수산부의 지침에 의거하여 공청회 초안으로 마련되었던 초안도면과 최종 심의회를 통과하여 확정된 도면을 비교한 것임.
- 그림 3-12는 새롭게 제시된 연안용도구역기준을 활용하여 작성한 도면임.
 -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되고 있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일부 유원지계획 등이 반영되어 있지 않으나, 도면의 구성상 공청회 초안과 매우 유사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음
 - 이러한 현상은 대부분의 연안관리지역계획에서, 특히 연안육역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 토지소유자와의 갈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그림 4-8] 가로림만 연안관리지역계획 공청회 당시 도면



[그림 4-9] 가로림만 연안관리지역계획 최종승인도면



[그림 4-10] 연안용도구역제(안)를 이용한 도면

- 구역별 구분면적을 비교하면 개발 및 이용의 성향이 강한 이용연안·개발조정·개발유도연안의 비율이 공청회 당시의 전체면적의 17.2%에서 최종고시에서는 21.5%로 증가했음을 알 수 있음. 또한 新연안관리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용연안·특수연안의 비율은 10.4%정도로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하지만 연안해역의 구역을 비교하면 공청회당시, 최종고시, 신법에 의한 적용이 각각 10.21%, 10.8%, 9.91%로 유사한 값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따라서 가로림만의 경우 연안육역에서는 새로운 제도의 도입에 따른 기준명확화로 이용 및 개발용도의 면적이 크게 줄어들지만, 해역의 경우 거의 변동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다른 연안관리지역계획의 결과에서도 유사한 현상을 보일 것으로 전망됨.
- 하지만 이러한 문제는 新연안관리법에서도 연안육역에서의 연안용도구역의 설정은 기존의 각종 지역·지구·구역 지정결과를 수용한다는 측면에서 새로운 규제의 설정이라고는 볼 수는 없을 것임.

<표 4-21> 주민공청회(안)에서의 연안구역별 면적

(단위 : 천㎡, %)

구 분	합계	절대보전	준보전	이용연안	개발조정	개발유도
소계	160,737	10,095	122,977	9,089	13,765	4,811
	100.00	6.28	76.51	5.65	8.56	2.99
육역	48,806	10,095	22,471	9,089	2,339	4,811
	100.00	20.68	46.04	18.62	4.79	9.86
해역	111,931	-	100,506	-	11,426	-
	100.00	-	89.79	-	10.21	-

<표 4-22> 최종 고시된 연안구역별 면적

(단위 : 천㎡, %)

구 분	합계	절대보전	준보전	이용연안	개발조정	개발유도
소계	159,851	3,109	122,401	12,392	12,175	9,774
	100.0	1.9	76.6	7.8	7.6	6.1
육역	47,282	3,109	22,001	12,392	5	9,774
	100.0	6.6	46.5	26.2	0.0	20.7
해역	112,569	-	100,400	-	12,169	-
	100.0	-	89.2	-	10.8	-

<표 4-23> 새로운 연안용도구역제(안)에서의 연안용도구역별 면적

(단위 : 천㎡, %)

구 분	합계	보전연안구역	관리연안구역	이용연안구역	특별관리연안구역
소계	159,851	27,080	116,195	16,538	38
	100.00	16.94	72.69	10.35	0.02
육역	47,282	27,080	14,782	5,382	38
	100.00	57.27	31.27	11.38	0.08
해역	112,569	-	101,413	11,156	-
	100.00	-	90.09	9.91	-

- 그러나 이미 수립된 지역계획의 경우 이러한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부여하여 수립된 내용을 당분간 유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현재 수립된 지역계획이 38개소이나 이의 대부분이 2005 - 2006년 기간 중에 수립되었고 나머지 지역의 지역계획도 2007 - 2008년 기간 중에 수립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유예기간을 두어 일정기간 기 수립된 지역계획을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다만, 유예기간은 두되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지침을 변경하여 기 수립된 지역계획의 운용 시에는 새롭게 도입될 제도의 취지와 부합되는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명시할 필요가 있음(예 : 기 수립된 연안관리지역계획의 연안구역은 비록 지정목적에 맞는 이용행위일 지라도 연안환경 및 연안서식지의 여건을 고려하여 이용행위가 이루어지도록 관리하여야 함. 특히 이용연안 및 개발조정연안, 개발유도연안의 경우 인근연안의 환경여건과 서식지 등을 고려하여 지속가능한 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를 거쳐 관리되어야 함)
 - 또한 지자체에서 기 수립된 지역계획에 따라 연안을 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함으로서 전국적인 일관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 나가야할 것임(예 : 기 수립된 지역계획을 효과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함)
- 연안관리법이 개정되기 이전에 수립될 지역계획은 향후 개정을 고려하여 이에 대비할 수 있는 조치를 사전에 취할 필요가 있음.
 - 기 수립된 지역계획과의 정합성을 위하여 법이 개정되기까지는 연안구역은 그대로 존치하되, 개정안에서 정하는 18개의 연안기능구의 개념이 도입될 수 있도록 지침을 개

정하고 성과물에도 연안기능구 도면을 제출하도록 하여 향후 도입될 연안용도구역으로의 전환이 용이하도록 사전조치를 해야 할 것임(예 : 지역계획의 연안구역 결정에 있어서는 제시된 연안기능구를 고려하여 이에 부합되도록 구분된 도면을 지역연안관리심의회 및 중앙연안관리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함)

- 그리고 자연해안 및 서식지관리, 연안완충대의 도입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추가로 실시할 수 있도록 지침에 반영해야 함(예 : 지역계획 수립 시에는 관할 행정구역 내의 해안선 및 자연해안 분포현황 도면자료, 연안서식지 현황, 태풍 등 재해기록, 특히 자연현상, 인근해역의 조위변화, 해저지형여건 등을 조사하여야 함)
- 또한 지역주민공청회를 비롯한 이해관계자와의 협의 시에는 제도의 변화와 동반된 여건을 충분히 설명하여 제도의 변화에 대한 오해를 줄이고 새로운 갈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3. 연안육역에 대한 중복관리

- 연안육역을 연안관리법에서 지정하고 그 관리에 참여하고자 하는 것은 연안해역의 지속 가능한 이용과 보전을 위하여 불가피한 조치이며 직접적인 영향이 받기 때문에 500m라는 매우 제한된 범위를 정하고 이용행위를 허가 또는 승인하는 경우 연안관리자(시장·군수·구청장, 시·도지사, 해양수산부장관)와 협의하도록 하는 것임.
- 동일한 공간에 대하여 중복적인 관리라는 비판적인 시각에도 불구하고 연안육역에 대한 관리는 연안관리의 중심적인 요인이 될 수밖에 없으며 이에 대한 협의권의 확보는 최소한의 대응수단으로 판단됨.
- 또한 연안육역의 경우 연안관리지역계획 작성 시부터 도시계획 등 기존의 토지이용계획을 충분히 반영하고 지역주민공청회, 관련행정기관과의 협의, 지역연안관리심의회 및 중앙연안관리심의회 등의 체계적인 절차와 다양한 의견반영기회가 제공되고 있어 기존의 계획이 무시되거나 누락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변경을 통하여 이를 즉각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연안용도구역제도는 연안관리수단 중 가장 선진적인 방법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의 도입은 연안통합관리의 정책적 효과를 제고하고 연안국토의 합리적 관리를 위한 것으로 기존의 법률과 제도에서 반영되지 않은 연안의 특성 및 이들과의 연계성을 고려한 국토

의 보전·이용 및 개발행위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조치임.

- 예를 들어, 환경정책기본법에서는 연안육역에서의 개발이용행위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와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대규모사업으로 극히 제한된 범위이고 사업계획 시 연안특성이 반영되지 않은 용도지역 지정, 토지입지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도시계획의 경우에도 연안해역의 이용실태와 자원을 고려하지 않고 있어 실질적으로 연안 난개발에 대한 대응이 어려워 이를 보완하는 것임. 다만, 타 법률에 의하여 해수부장관과 협의하는 때에는 관련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여 중복되는 절차를 생략토록 할 필요가 있음.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개정 2004. 6.15.)에서는 다음과 같은 용도지역 구분기준을 정하고 있음.
 - 3-1-7-1. 농림지역은 도시지역에 속하지 않는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 등으로서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지정
 - 3-1-8-3. 도시지역외의 지역으로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다음의 각 지역은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음(세부조항 생략)
 - 3-1-8-4. 무인도는 환경부의 「자연환경조사」결과 및 「특정도서」지정내용 등을 참고하여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의 변경을 검토
- 따라서 전문적인 관리역량을 가진 기관에서 체계적으로 지정·관리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국토계획법에서도 수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연안육역의 경우에는 도시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경우 자연환경관리지역에 준하는 관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4. 연안육역과 연안해역의 상이한 관리체계

- 해역과 육역의 관리는 다음의 관점에서 상이점을 보임.
 - 재산권 이해관계가 상이함. 즉 육역의 경우 명확한 권리관계와 시장경제가 구축되어 있는 반면, 해역의 경우 공공재로서의 기능이 강하고 시장경제에서 가치를 판단하기 힘든 여건에 있음.
 - 구획관리(zoning)는 사유지에서의 사적인 행위를 계획 또는 규제하기 위하여 활용되는 것으로 해역은 기본적으로 사적인 행위제한을 실시하기 어려움

- 또한 해역의 이용은 다음과 같이 시간적 분포특성을 가지고 있어 입체적 동시적 이용이 가능한 특징을 나타냄

<표 4-24> 시간적 특성을 고려한 해양에서의 대표적인 이용행태 분류

시간적 특성			
이동이용	단기이용	장기이용	영구이용
상업물류	통발	양식어업	부두
레크레이션 항행	어구	정박장	항행보조시설
어업	일시정박	해상부유시설	해양보호구역
수영			마리나

- 따라서 사유재산권이 확립된 육역과 그러하지 못한 해역, 배타적이용이 이루어지는 육역과 다면적 이용이 가능한 해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차별성을 갖는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병존가능행위의 설정과 이용우선순위부여방식의 도입을 통한 다면적 이용의 가능성을 보장하고자 함.
 - 해역이용의 경우 아래 표와 같이 병존가능성을 검토하여 우선순위 및 다면적 이용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음
 - 병존가능성이 낮은 행위에 대해서는 연안이용행위 허가 등의 절차에 있어서 신중한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허가가 이루어지더라도 이용으로 인한 이익을 연안관리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항만구	항로구	어항구	레저관광구	해수욕장구	광물자원구	환경관리구	수산생물자원보호구	생태보호구	해양조사구	경관보호구	해양투기구	공원구	재해관리구	어장구	군사시설구	산업시설구	이용유보구
항만구	○	○	△	X	X	○	△	△	○	X	X	X	△	X	○	○	X
	항로구	△	X	X	△	○	△	△	○	X	X	△	△	△	△	△	○
		어항구	○	△	X	○	△	△	○	△	X	△	△	△	X	X	X
			관광레저구	○	X	△	△	X	○	△	X	△	X	△	X	X	△
				해수욕장구	X	X	△	X	○	△	X	△	X	△	X	X	○
					광물자원구	X	X	X	△	X	X	X	X	X	X	△	X
						환경관리구	○	○	○	○	X	△	△	△	△	△	○
							자원보호구	○	○	○	X	○	△	○	X	X	○
								생태보호구	○	○	X	○	△	△	△	X	○
									해양조사구	○	○	○	○	○	△	△	○
										경관보호구	X	○	X	△	X	X	△
											해양투기구	X	X	X	X	X	X
												공원구	X	△	X	X	△
													재해관리구	△	X	X	△
														어장구	X	X	△
															군사시설구	△	△
																산업시설구	X
																	이용유보구

○ : 병존가능 △ : 병존일부가능 X : 병존불가능

[그림 4-13] 연안에서의 설정가능 기능구 및 병존성 검토 매트릭스

- 본 연구에서 제시된 18개 연안기능구 간의 병존가능성을 비교한 결과 병존가능성 지수가 가장 높은 연안기능구는 해양조사구로 나타났으며 환경관리구, 수산생물자원보호구, 항만구, 생태보호구, 이용유보구 등이 높은 수치를 보임.
- 반대로 병존불가능 지수가 가장 높은 연안기능구로는 해양투기구, 광물자원구, 산업시설구, 군사시설구 등이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이들 기능구는 병존가능성지수도 극히 낮은 상태를 보여 다른 이용행위와의 경합이 발생하는 경우 갈등유발의 소지가 높고 배타적인 이용형태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음.

<표 4-25> 연안기능구간의 병존 가능 및 불가지수 비교

연안기능구	병존가능지수	병존불가지수
항만구	6	7
항로구	4	4
어항구	4	5
레저관광구	3	7
해수욕장구	3	9
광물자원구	0	14
환경관리구	8	3
수산생물자원보호구	7	4
생태보호구	6	5
해양조사구	14	0
경관보호구	5	7
해양투기구	1	16
공원구	4	6
재해관리구	1	8
어장구	2	5
군사시설구	1	10
산업시설구	1	11
이용유보구	6	5

5. 구획설정에 활용할 정보의 구축여부

- 현재까지 파악된 연안용도구역 설정에 활용가능한 연안해역의 정보와 향후 추가적으로 검토되어야할 정보는 다음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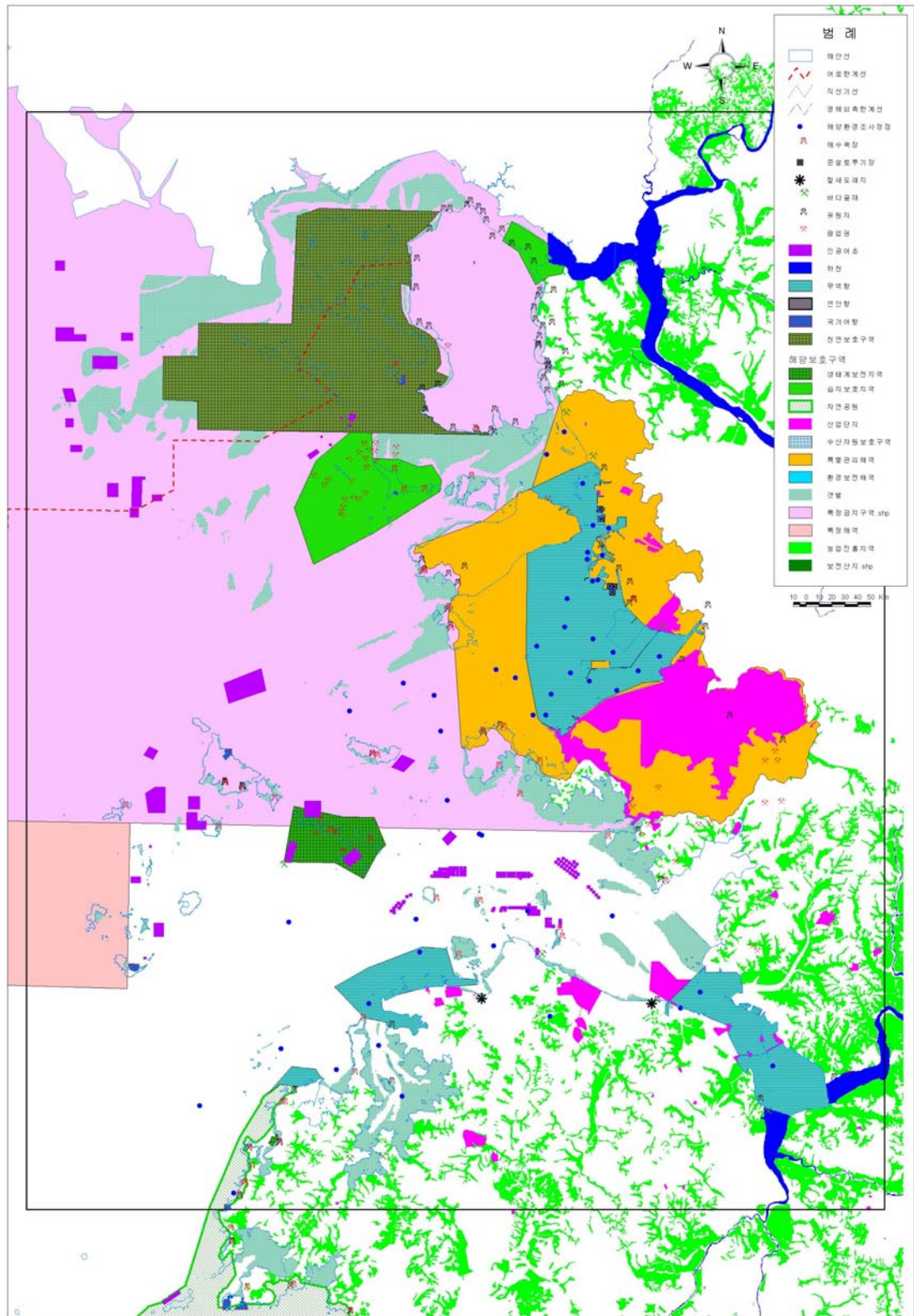
<표 4-26> 연안해역에서의 지정 구역등의 활용가능정보

구분	기 확보 정보의 내용	추가 확보 필요정보
경계정보	한일 중간수역 한중 잠정조치수역 어로한계선 어업자원보호관할수역 연안육역 해안선 경계 국가하천, 지방하천	바닷가 위치 하천구역
금지구역정보	특정금지구역 특정어업금지구역 유조선통항금지구역 어업금지구역 어구사용금지구역 포획금지구역	수상레저활동금지구역
자원정보	골재채취예정지 골재채취구역 골재채취지	광구 해저광물개발구역 해저광구 해저조광구
특정이용구역정보	국가어항구역 지정항만구역 교통안전특정해역 지정항로 정박지 도선구역 특별관리해역 폐기물배출해역 산업단지 조업수역 지정해역 주변해역 공유수면매립지구	어장, 양식장, 어업권 위치정보 관광단지, 관광지, 관광특구 공유수면 접사용 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예정지 해수욕장

<표 4-26> (계속)

구분	기 확보 정보의 내용	추가 확보 필요 정보
보호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습지보호지역 습지주변관리지역 습지개선지역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 시도야생동식물보호구역 야생동식물보호구역 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 생태경관보전지역 환경보전해역 특정도서 해양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연안생태계정보	갯벌정보 생태자연도 인공어초 및 바다목장 해양환경측정망	해양생태도 재해피해구역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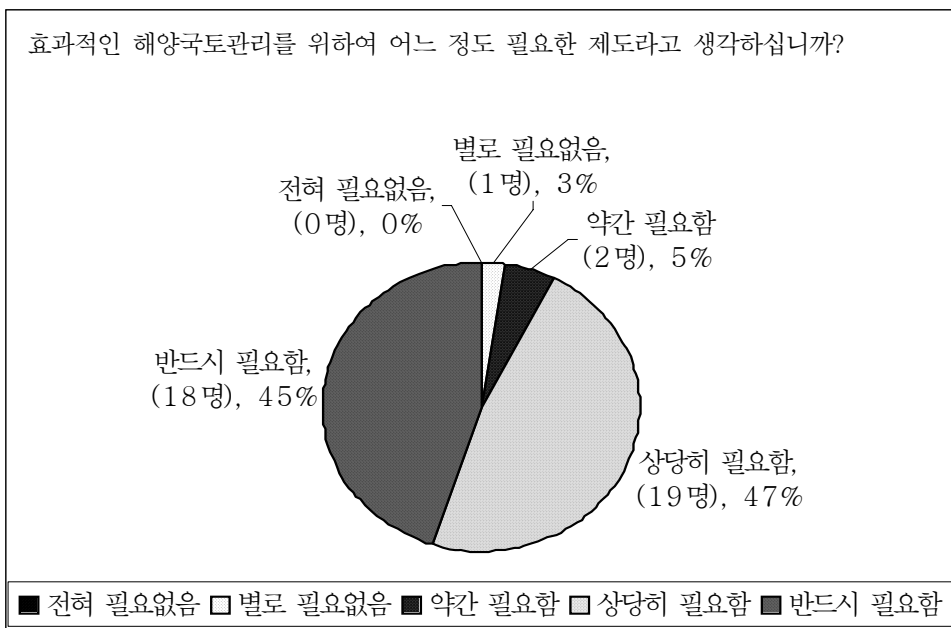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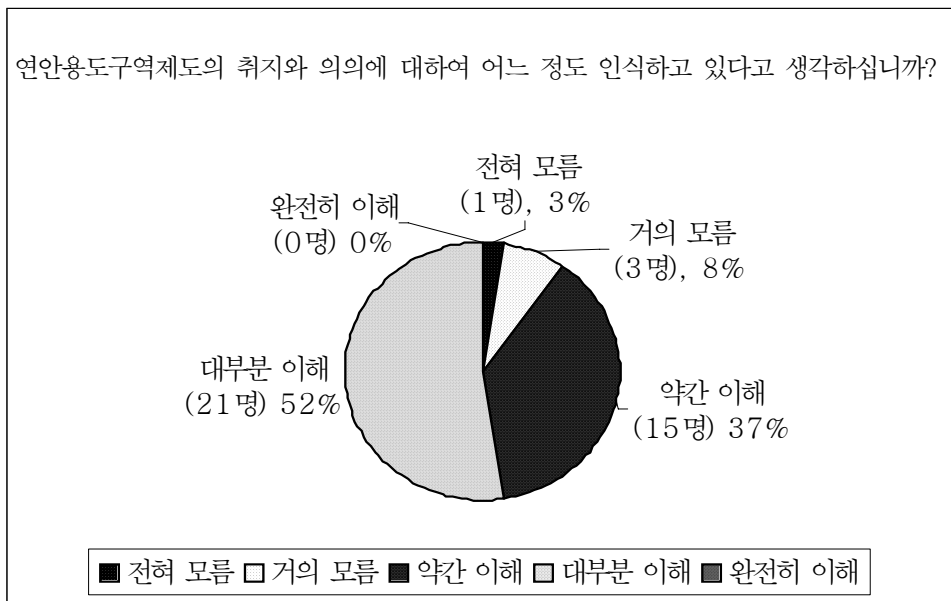
- 그러나 현재 확보된 정보의 수준이 지형도상의 도면정보나 문서정보가 주축을 이루고 있어 연안용도구역의 획정을 위한 정밀한 정도의 도면정보가 제공되기 어려운 여건에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현재 분포하고 있는 개별정보를 공인된 절차를 거쳐 전자정보로 확정해야 할 것이며, 특히 연안용도구역의 운영을 위해서는 전국의 표준화된 기본도가 제공되어야 할 것임. 현재 연안관리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고 있는 연안정보도를 현행화하여 기본도로 활용하고 각 지자체와 네트워크 구축을 통하여 정보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 아래 그림은 경기만 인근의 연안에 지정되어 있는 각종 보호구역과 관리계획을 도식화한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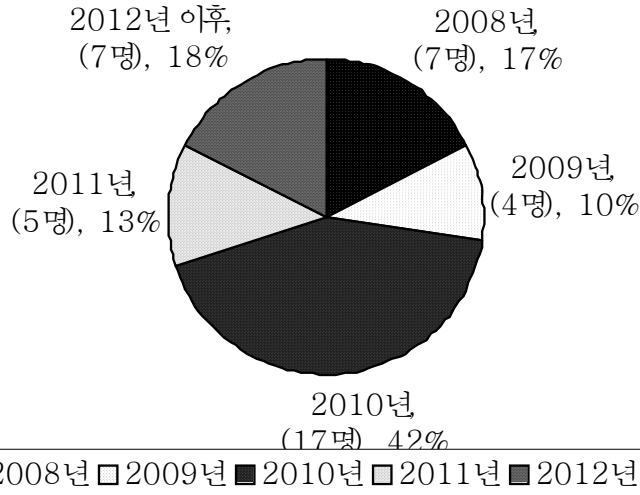
[그림 4-11] 서해연안의 각종 이용행위 분포도

제5절 해양수산부 의향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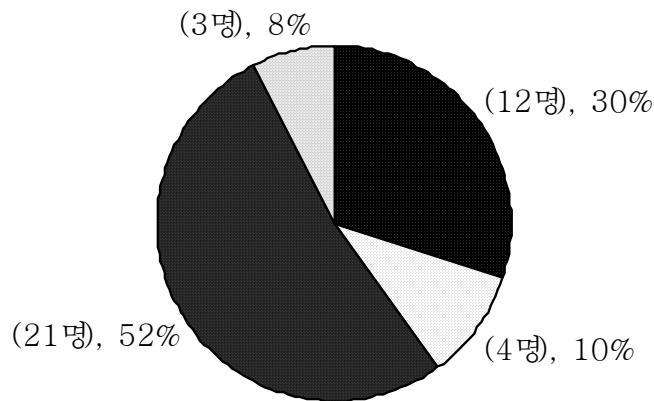
- 연안용도구역제도에 대한 해양수산부 본부 및 산하기관의 의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과·팀장급 간부를 대상으로 의향조사를 실시하였음.
- 조사기간은 2006. 8. 28부터 9. 8까지 실시하였음.
- 조사대상자 98명중 40명의 의향조사서가 회수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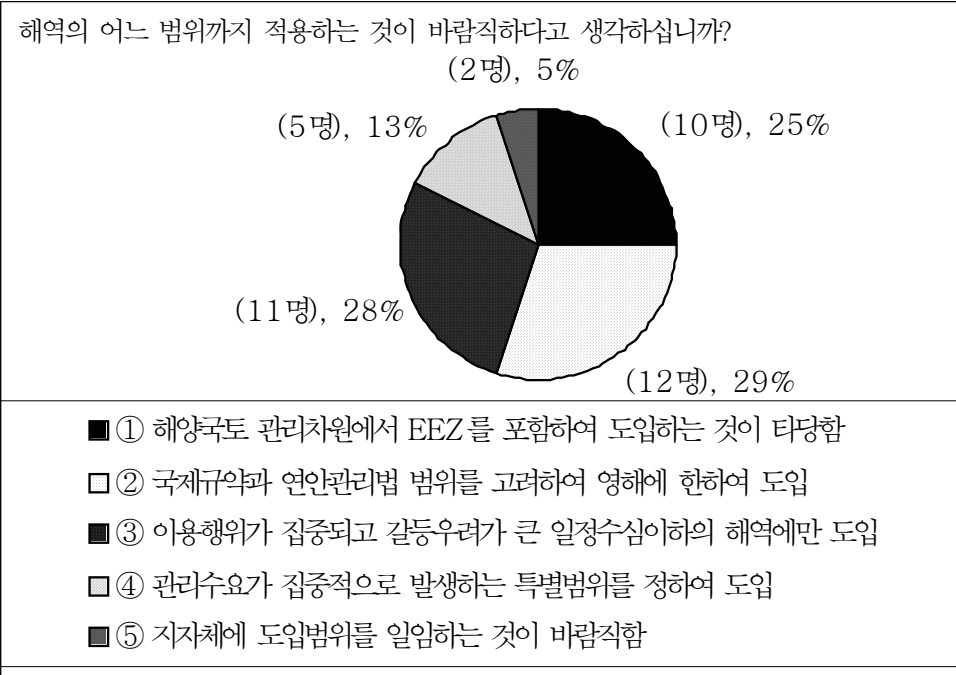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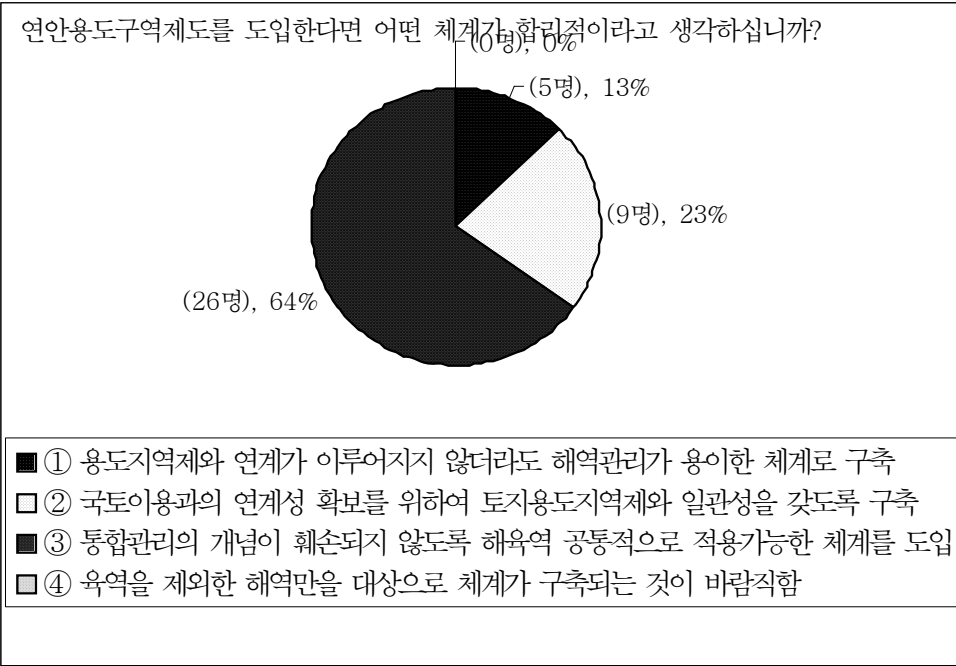
본 제도의 본격적인 도입시기는 언제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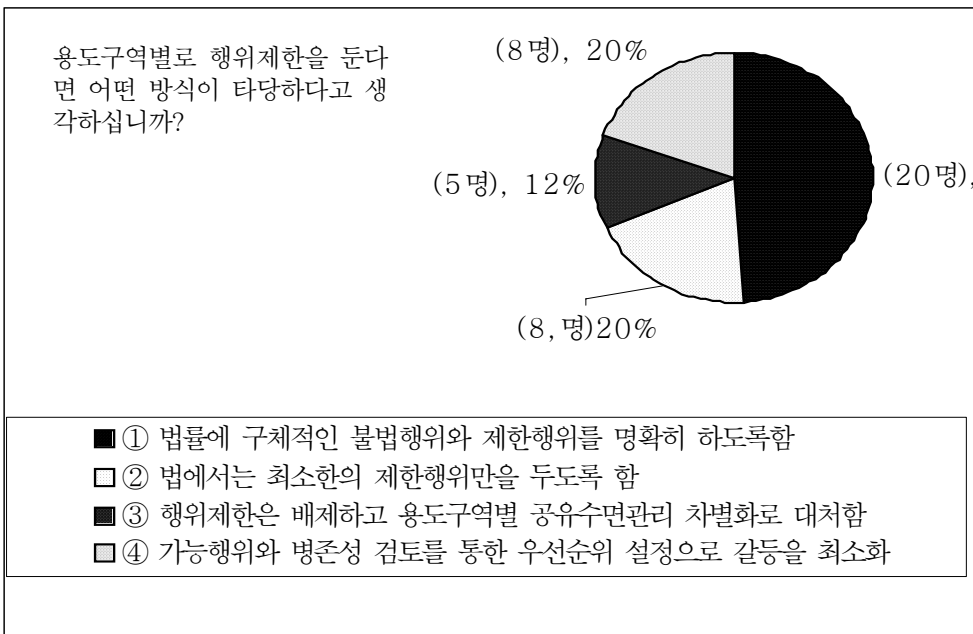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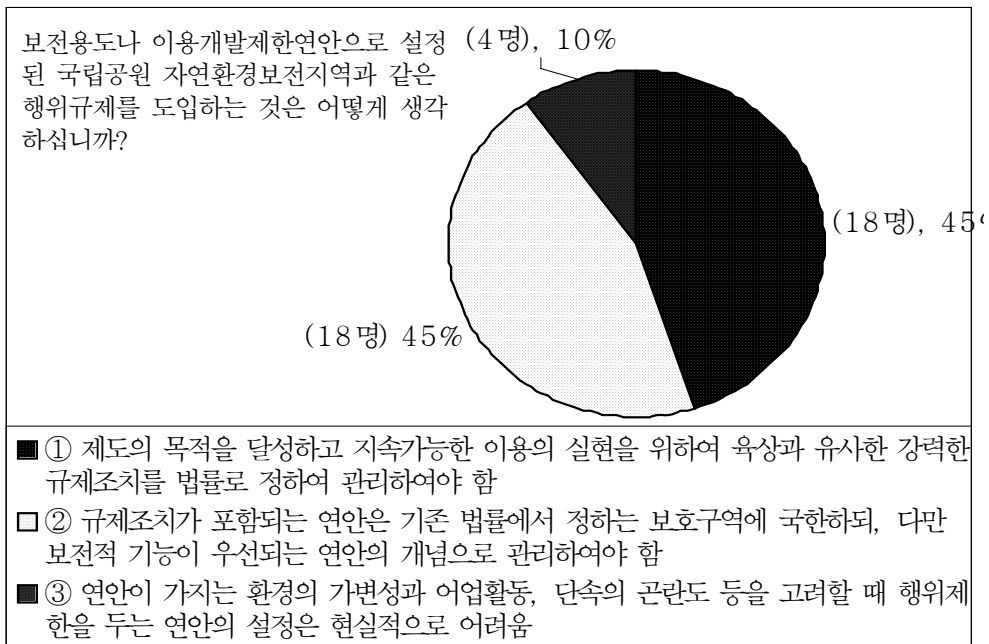


우리나라에 도입되는 경우 기대되는 가장 큰 효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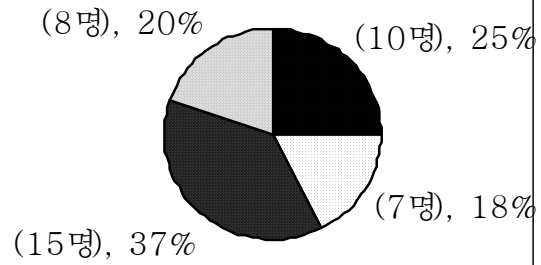


- ① 본격적인 해양국토의 관리를 위한 체계 구축
- ② 불필요한 갈등요인을 사전예방하여 지속가능한 연안이용 도모
- ③ 무분별한 연안이용을 제어하여 해양환경과 생태계를 효과적으로 보호
- ④ 진취적인 해양개발과 안정적 경제활동을 위한 여건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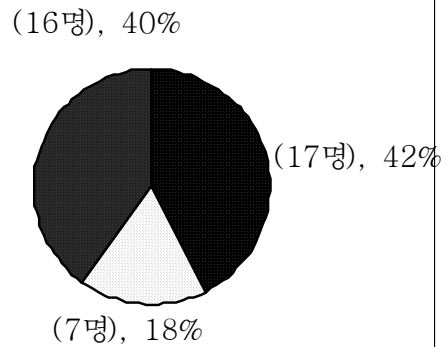


용도구역별로 기능행위의 우선순위를 둔다면 무엇을 기준으로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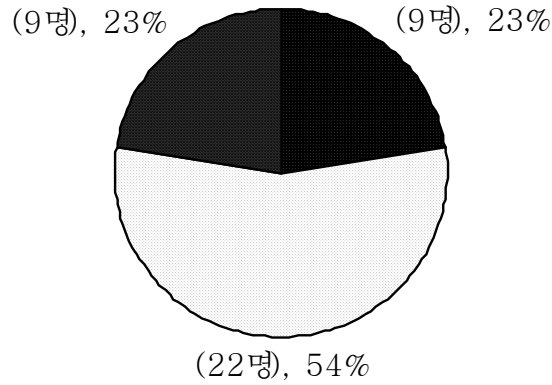
- ① 가장 많은 이해관계자를 가진 행위를 중심으로 우선순위를 부여
- ② 현재 이용행위와 경제적 기여도를 기준으로 우선순위 부여
- ③ 국가적인 해양관리 정책방향에 부합되는 지를 우선순위 기준
- ④ 자연생태환경요인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지속가능성에 주안점을 둠

해역에는 이미 개별 법률과 각종 법정계획, 또는 관행에 따라 다양한 구역이 지정되어 있거나 공유수면 점사용 등 이용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에 대하여 용도구역제도가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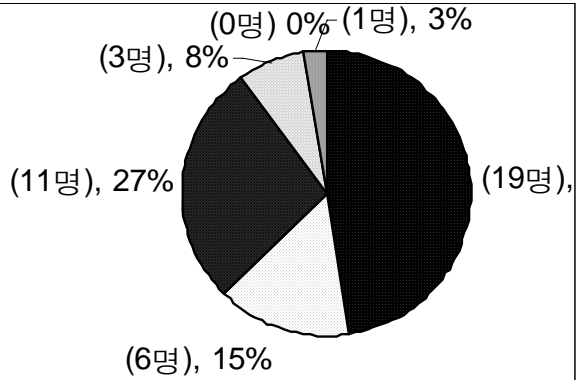
- ① 기존의 이용행위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재조정을 실시해야 함
- ② 적법한 근거로 지정되어 이용행위가 이루어지는 공간은 제외
- ③ 용도구역과 기능구를 도입하여 기존행위를 수용

적절한 연안용도구역제도의 관리주체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갈등조정, 정보수집, 단속능력 등을 고려할 때 해양수산부 직접 관리
- ② 해양수산부는 방침을 제정 시달하고 지자체에서 방침에 준하여 관리
- ③ 관리청으로 구분하고 공통의 지침을 활용하여 관리

연안용도구역제 도입에 있어서 예상되는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기존 이용행위간의 조정
- ② 과학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근거자료의 결여
- ③ 행위제한 설정 및 단속 등 실질적인 관리의 곤란
- ④ 분산된 관리청간의 권한 및 책임조정 등과 같은 관리체계 구축
- ⑤ 국방, 외교 등 특수여건의 반영 및 조정
- ⑥ 기타

- 의향조사결과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음.
 - 연안용도구역제도의 취지와 목적의 이해도 3.4 (5점 만점)
 - 제도의 필요성 4.4 (5점 만점)
 - 본격적인 제도도입 시기 '2010년 이후' 74%
 - 제도의 가장 큰 기대효과는 '무분별한 연안이용제어와 해양환경 및 생태계 보호' 53%
 - '육·해역에 모두 적용가능한 새로운 관리체계 도입' 65%
 - 도입의 범위로는 '영해' 30%, '일정수심이하 해역' 28%, 'EEZ' 25%
 - 보전연안에 대해서는 '법률로 정하는 강력한 행위제한 필요' 45%, '보전적 기능 우선개념' 45%
 - 행위제한 방식으로는 '법률에서 명확하게 제시' 50%
 - 행위우선순위 판정기준으로는 '국가정책 부합도' 38%
 - '기존 이용행위에 대한 재조정 필요' 43%, '기존행위 수용하고 보완조치 도입' 40%
 - 제도 관리주체는 '지자체관리, 해수부지침시달' 55%
 - 예상되는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기존 행위간의 조정' 48%

제6절 주요 외국의 사례

1. 미국 로드아일랜드주의 연안역 용도구역 지정 사례

- 연안역 용도구역제를 도입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는 미국의 로드아일랜드 주 (면적: 3,144km², 해안선 길이: 676km)는 1971년에 제정된 ‘로드아일랜드 연안역관리법’에 근거하여 연안역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연안해역의 경우 보전해역, 저밀도 이용해역, 고밀도 遊船(Boating)해역, 다목적 해역, 상업 및 레크레이션 항만해역, 공업해안 및 상업항로 해역 등 6가지 용도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음

<표 4-27> 미국 로드아일랜드주의 연안해역 용도구역 구분 및 관리정책

연안해역 용도구역	지정기준	관리정책
보전해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야생동물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또는 인접 해역 ○ 자연서식지를 유지하고 자연경관의 중요성이 보존되어 있거나 기타 특이한 가치를 보전하고 있는 해역 ○ 심한 파도, 홍수 및 침식현상 등에 노출되어 구조물 설치에 부적합한 해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경관, 야생동물 및 식물 서식지로서의 가치를 저해할 가능성이 있거나 해역의 수질 또는 자연해안의 형태에 불리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는 활동과 이용행위로부터 보호·보전
저밀도 이용해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밀도의 휴양 및 거주활동을 지탱할 수 있는 심미적 가치가 높은 해역 ○ 주기적인 정박지로 수질이 좋아 어류와 야생동물 서식지로 유지되고 있는 해역도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경관, 수질, 서식처로서의 높은 가치를 유지하고 가능한 복원하면서 저밀도의 이용행위를 허용
고밀도 遊船해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부분 레크레이션 Boating 활동이 활발한 해역 ○ 부근해안이 선박 정박지, 소형선박 수리소, 기타 해역의존 상업활동 지역으로 개발된 해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밀도의 선박운항 및 선박운항 지원 활동을 보호, 보전, 증강시키는데 주요 목적이 있음 ○ 기타 활동들은 그것들이 레크레이션 선박운항활동을 현저히 방해하지 않을 한도까지만 허용

<표 4-27> (계속)

연안해역 용도구역	지정기준	관리정책
다목적 해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류·야생동물의 서식지로서 가치를 유지하면서 다양한 상업활동 및 여가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해역 해역의존적인 상업, 산업 및 고밀도 여가 활동이 일어나는 해안선에 인접한 해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 해역내에서 공존해야 하는 다양한 활동들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는데 주요목적이 있음 전통적 활동과 새로운 해역의존적 개발활동 간의 변화하는 특성은 생태계를 보전·복원한다는 원칙에 따라 균형있게 조정
상업 및 레크리에이션 항만해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광, 여가 및 상업등 다양한 이용활동이 일어나는 해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레크리에이션 선박, 어업, 레스토랑 및 기타 해역의존적인 상업 등 다양한 항만관련 활동들 간의 균형을 유지하고, 효율적인 공간이용을 촉진하며, 관광사업에 유익한 자연경관을 보호
산업해안 및 상업항로 해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역의존적인 상업 및 산업활동을 위해 광범위하게 변화된 해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운업 및 어업에 관련된 상업활동을 촉진하고 현대화하는데 목적이 있음

- 연안 육역의 경우는 지형적·문화적 특성에 따라 해변, 사주·사취, 연안습지, 해안절벽, 암석해안, 인공해안, 역사지 등으로 유형을 구분하여 각종 연안이용행위를 관리하고 있음

<표 4-28> 미국 로드아일랜드주의 연안육역 지형적 단위구분 및 관리정책

연안육역 지형적 단위	지정기준	관리정책
해빈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안선을 따라서 파도와 연안류가 모래나 자갈을 쌓아 올려서 만들어 놓은 퇴적지대 평균 저조선에서 사구, 곶, 연안보호 시설 등의 기저면까지 분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광 및 휴양지로서의 가치가 높은 해변의 자연적 특성 및 공공 접근성을 보호 연안류 및 이안류의 작용을 방해하는 행위 방지 위험성이 높은 지대의 건축행위 방지 해빈의 경관 및 생태적 가치 보호
사주 및 사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만입에 연안류에 의하여 해저의 모래 및 자갈이 퇴적되어 연안을 따라 이루어진 가늘고 긴 지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개발지역으로 분류된 경우 태풍 및 허리케인으로 인한 침해로부터 보호, 보전 및 복원 개발지역으로 분류된 경우 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태풍 및 침식으로 인한 위협으로부터 보호

<표 4-28> (계속)

연안육역 지형적 단위	지정기준	관리정책
연안습지	○ 주기적으로 해수에 의해 침수되는 지역	○ 연안습지를 보호하고 가능한 복원
곶, 해안절벽	○ 바다로 뿔족하게 내민 육지의 끝	○ 해변에 퇴적물을 공급하고 태풍 및 해일의 완충작용을 하는 동 지역의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방지 ○ 인접지역에서 동 지역의 특성을 약화시킬 수 있는 건설행위 방지 ○ 동 지역의 경관적, 생태적 가치 보호
암석해안	○ 기반암이 암봉이나 표석으로 뒤덮인 지대로 평균 저조선 이하에서 평균 고조선 이상까지 분포 ○ 조수 웅덩이들이 포함	○ 침식을 방지하고 해양 동식물에게 서식처를 제공하는 동지역의 기능을 보호 ○ 동 지역의 여가 및 경관적 가치 보호
인공해안	○ 연안보전시설 및 기타 인공시설물들이 자연적 지형요소보다 우점하는 연안지대	○ 침식을 완화시키고 연안지형을 보호하는 해안보전시설 유지 ○ 더 이상 기능을 하지 않는 해안보전시설이 있는 연안의 경우 쇄설물이 축적되는 것을 방지
사구	○ 파도의 작용으로 형성된 융기성 모래퇴적지대	○ 파도 및 바람에 의한 침식작용을 증가시킬 수 있는 활동 금지 ○ 위험지대에서의 건축활동 금지 ○ 태풍의 위험으로부터 주민 보호 ○ 태풍의 위험을 완충시키는 사구의 기능증진 ○ 사구의 경관 및 생태적 가치 보호
역사 및 고고학적 중요지역	○ 국가 및 주의 문화유적지로 등록되었거나 등록될 잠재력이 높은 지역	○ 역사적으로 고고학적으로 가치가 높은 연안역을 보전 및 보호

2. 미국 플로리다주 국립해양서식처 보호지의 용도구역 지정 사례

- 플로리다 주는 1990년에 제정된 Florida Keys National Marine Sanctuary and Protection Act에 의거하여 '국립해양서식처 보호지 (해역면적: 9,604km²)'를 다음과 같이 5개의 용도구역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음.

- 야생동물 관리지역 : 접근금지 지역, 자동차이용금지 지역, 자동차 저속이용 지역 등이 포함. 접근을 제한함으로써 야생동물의 서식환경 보호
- 복원지역 : 광역의 다양한 서식처 포함. 다양한 서식처의 보호 및 보전을 목적으로 함
- 서식처 보전지역 : 소비성 및 비소비성 이용행위들 간에 높은 강도의 상충문제가 발생하는 지역으로 특히 사람들이 많이 애용하는 천해의 산호초 지역
- 현행관리지역 : 현재 이미 다른 기관 및 프로그램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지역
- 특별이용지역 : 교육, 과학조사, 복원, 모니터링 등의 특별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지역

3. Virgin Island의 연안역 용도구역 지정 사례

- Virgin Island (면적: 342km², 해안선: 282km)의 연안역관리 프로그램은 망그로브, 산호초, 섬 등 '연안해역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지역'과 '세 개 주요도서의 육지부분'을 관리대상으로 하는데, 각 지역들은 '토지 및 해수이용계획'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음.'토지 및 해수이용계획'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은 종합적인 용도구역 지정으로 구성됨.
 - 보전지역 : 망그로브, 산호초 등이 분포하는 지역. 제한된 여가활동 및 과학조사 허용
 - 보존, 보전 및 전통적 이용지역 : 도시 워터프론트, 해변, 산호초, 염습지 등이 분포하는 지역. 농업, 임업, 전통적 어업, 해역의존적 여가활동 허용
 - 해역의존적 상업 및 해양시설지역 : 개발된 해안, 모래해안 등이 분포하는 지역. 연안에 위치해야할 해양상업시설 및 저밀도 항만시설 허용
 - 해역의존 및 해양관련 산업시설지역 : 개발된 해안·연안입지를 요구하는 고밀도 항만 및 상업, 산업행위 허용
- Virgin Island의 경우는 특히 연안역 용도구역 지정시 해수면을 기준으로 한 고도높이를 사용하여 그 고도가 낮고 해안에서 가까울수록 행위제한을 강하게 부여하고 있음.

4. 호주 대보초(Great Barrier Reef)지역의 연안역 용도구역 지정 사례

- 호주는 대보초(Great Barrier Reef)지역 (총길이: 2,012km)을 보호하기 위해 1975년 Great Barrier Reef Marine Park Act를 제정하고 구역별로 다양한 용도구역 지정계획을 수립하였음.

- 대표적인 사례로 Cairns Section의 경우는 용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7개지역으로 구분하였으며 각각의 용도구역별 행위제한은 아래 표와 같음.
- 일반이용 지역 : 지역의 장기보전목적에 부합되는 다양한 여가 및 상업활동이 가능한 지역
- 서식처 보호 지역 : 다양한 여가 및 상업활동은 허용하지만 트롤어업 활동 제한
- 염하구 보존 지역 : 다양한 상업 및 여가활동을 허용하면서 염하구의 식생, 자연조류현상 등을 보호
- 보존 공원 지역 : 제한된 낚시활동을 포함하여 여가활동 허용
- 완충지역 : 여가활동을 허용하면서 보호
- 국립 공원 지역 :관광객의 접근을 허용하면서 보호
- 보전지역 : 관광객의 접근을 제한하면서 강력하게 보호

<표 4-29> Great Barrier Marine Park의 용도구역별 이용행위 제한

이용행위	일반이용 지역	서식처 보호지역	염하구 보호지역	보전공원지역	완충지역	국립공원지역	보전지역
다이빙, 보트, 사진촬영	YES	YES	YES	YES	YES	YES	입장불허
낚시 (line fishing)	YES	YES	YES	LIMITED	NO	NO	
견지낚시 (trolling)	YES	YES	YES	표영성 어류만 가능	표영성 어류만 가능	NO	
작살낚시 (스노클링 경우만)	YES	YES	YES	제한된 지역에서만 가능	NO	NO	
채취	PERMIT	PERMIT	NO	NO	NO	NO	
제한된 채취	YES	YES	YES	NO	NO	NO	
물고기 미끼채취 (도수채취)	YES	YES	YES	YES	NO	NO	
물고기 미끼 (그물채취)	YES	YES	YES	YES	표영성 어류만 가능	NO	
게 채취	YES	YES	YES	채취량 제한	NO	NO	
굴 채취	YES	YES	YES	현지에서 즉시 섭취하는 양으로 제한	NO	NO	
상업적 어업	YES	YES	YES	NO	NO	NO	
트롤어업	YES	NO	NO	NO	NO	NO	
비행	YES	YES	YES	YES	YES	YES	

주 : YES: 허용, NO: 금지, PERMIT: 허가필요, LIMITED: 제한적으로 허용

5. 터어키의 연안역 용도구역 지정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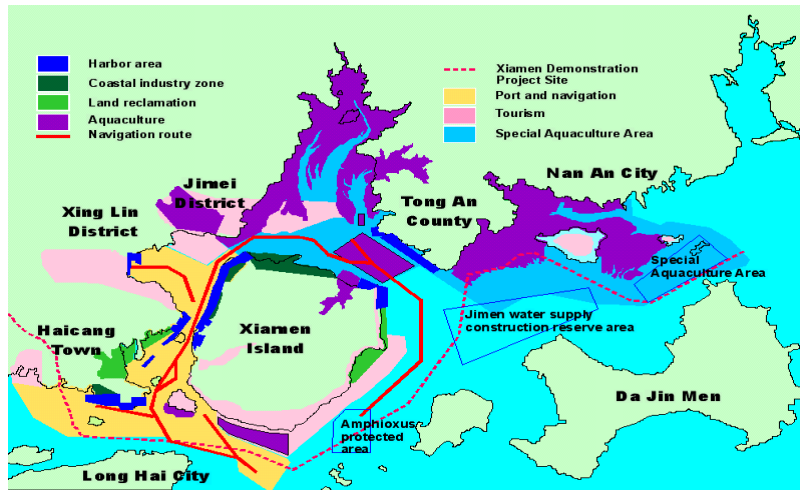
- 터어키(면적: 780,580km², 해안선: 7,200km)는 1992년에 제정된 '연안역관리법'에 근거하여 연안역 용도구역제를 도입하였는데, 해안선에 평행하게 지역을 구분하여 해안선에서 가까울수록 행위제한을 강하게 부과하였음
- Shore Zone
 - 해안선과 해안 임계선 (shore edge line) 사이
 - 해안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 골재채취 등 금지
 - 토지이용허가권 필요
 - 항만, 어항, 교각, 등대, 부두, 방파제 등 해안보호 및 공익을 위한 해안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의 설치
 - 조선, 선박의 해체, 양식 등 행위의 성격상 육상에 위치할 수 없는 행위들을 위한 시설물
- Zone A
 - Shore zone으로부터 50m 너비의 해안대
 - 위에서 제시된 이용행위를 제외한 다른 종류의 건축행위는 허용안함.
 - 보행자 접근, 도보관광, 여가목적 허용
- Zone B
 - Zone A로부터 나머지 해안지대 (최소한 50m)
 - 도로, 공공여가·관광시설, 하수처리시설 등만 토지이용허가의 취득에 의해 가능

6. 중국 샤먼 해역 용도기능구역제

- 샤먼의 '해역 용도기능구역제'는 다양한 이용행위에 따른 이행상충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됨. 해양전문가그룹은 생태적·사회경제적 조건을 동시에 고려하여 이용행위에 관한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이해상충을 완화하며 생태계 보전과 연안자원 이용에 따른 사회경제적 이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식을 채택함.
- 9개의 용도기능구역으로 분류함.
 - 해운/항만 구역; 관광구역; 양식구역; 연안산업구역; 해양과학기술구역; 채광구역; 자연

보호구역; 특수용도구역; 복원구역.

- 해역이용의 우선순위는 우선적, 조화적, 제한적 이용으로 설정하고, 용도구역내 이용우선 순위는 주로 사회·경제적 이익 및 환경적인 영향에 의해 결정함.
- 1997년 샤먼 지방정부는 23개 부처가 참여한 가운데 해역별 용도기능구역제를 해역관리의 지침으로 활용하기 위해 행정규범을 채택함.
- 1999년 5월에는 샤먼대학교 전문가에 의해 해역별 용도기능구역제를 관리하기 위한 통합 정보관리시스템이 구축됨에 따라 해양관리조정사무소(MMCO)가 해역이용 허가 승인시 동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음.



[그림 4-12] 샤먼 해역별 용도구역제

7. PEMSEA의 연안용도구역제

- PEMSEA(동아시아해역 환경관리기구)는 연안통합관리의 구체적인 실천방안으로 용도구역의 설정을 통한 관리방식을 제안하고 있음.
- 연안용도구역의 분류방법으로는 아래와 같은 3가지 방식을 제시하고 있음.
 - ① 개발정도에 따른 분류 : 개발구역, 완충구역, 보전구역
 - ② 연안이용의 기능에 따른 분류 : 항만해운구, 관광구, 양식구, 산업구, 과학구, 광업구, 자연보호구, 특수구, 재개발구, 유보구
 - ③ 행위의 허용 및 병존정도에 따른 분류 : 제한이용구(특정수질에서 허용행위), 배타적 이용구(병존불가이용구), 다면이용구(병존가능이용구)

- 구획설정과 더불어 아래와 같은 연안이용규제방식을 도입하여 용도구역이 보전적 가치를 실현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관리수단으로 기능하도록 하고 있음
 - 해안선의 매립, 제거, 경사변화를 주는 행위
 - 주거용 구조물, 상업/산업 구조물, 레저용 구조물, 마리나, 하수처리시설, 개별오수처리 시설 등 구조물의 설치 제한 및 입지조정
 - 오염물질 유출제한, 외해 폐기물배출 엄격제한
 - 연성해안보호시설의 도입과 적지선정
 - 에너지관련 사업의 환경영향 최소화 방안
 - 준설, 양빈, 매립, 광물채굴 및 굴삭 등 극단적인 연안환경 영향사업의 최소화
 - 양식, 상업 및 레저어업 등 어업활동의 적정수준 유지
 - 도로, 교량, 주차장, 철도, 공항, 다이빙/유어선/정박시설등의 설치 제한
 - 민감생물 채집 및 수확(산호, 조개, 갑각류, 관상어류 등)을 제한
- 또한 연안용도구역설정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다음과 같은 자료의 구축을 요구하고 있음.

<표 4-30> 연안용도구역 설정에 필요한 정보

자료 성격	자료내용
기본자료	해안선현황(도면화), 수문 및 해양조건(도면화), 주요생물서식지(도면화), 지질 자료(도면화), 수질기준 및 분류도명
연안자원이용	어업(어장, 양식장위치의 도면화), 항구(도면화), 항로(도면화), 관광(주요해변 도면화), 레저(주요레저행위와 장소의 도면화), 매립(기건설 또는 건설계획 도면화), 유전개발(도면화), 통신용 배선 및 배관(도면화), 발전소 및 에너지시설(도면화), 주거단지 및 산업단지(도면화), 연안농업지대(도면화), 역사 및 문화재(도면화), 폐기물배출 및 투기지역(도면화), 연안친수공간개발(도면화), 군사 시설(가능한 범위내의 도면화), 기타 표시가능한 연안이용
다면이용갈등과 위협 정보	현재 또는 미래의 잠재적인 이용행위로 인한 위협요인, 이용상의 갈등요인(장소, 시간, 행위, 영향 등)
계획정보	분야별 이용 및 공간계획, 토지이용계획, 사회경제개발계획, 인프라 설치계획, 해양보호구역 등 환경보전관련계획
법제도 정보	연안환경관련 법률, 토지이용 및 구획관리에 관한 법률, 기타 정부의 개발·보전·이용에 관한 법률
도면정보	대축적의 지형도, 해저지형도, 행정구역도, 토지이용도, 항공사진 및 위성사진, 서식지 또는 민감환경자원도, 재해관련 도면, 환경측정망 위치도면, 자원 및 환경관리정책 적용도면

- 연안용도구역을 설정할 경우, 활용할 수 있는 과학적 근거 이외에 사회적인 여건을 고려하고, 해양의 다면적 이용을 감안하여 연안역의 생태적 특성과 이용행위간의 병존가능성을 고려하여 최종적인 의사판단을 하도록 하고 있음.

<표 4-31> 연안역의 생태적 특성과 이용간의 연계 매트릭스표

	1	2	3	4	5	6	7	8	9	10	11	12
산림지	×	○	×	×	○	×	×	×	×	×	×	×
황무지	×	○	○	×	○	○	○	○	×	×	×	×
경작지	-	○	×	×	×	×	×	×	×	×	×	×
담수지역	×	×	○	-	×	○	○	×	○	○	○	○
해안사구	×	○	×	×	○	○	○	×	×	×	×	×
광물채굴지	○	○	○	○	○	○	○	×	×	×	×	×
목초지	○	○	○	○	○	×	×	×	×	×	×	×
담수습지	○	×	×	×	○	○	○	○	○	○	○	○
갯벌	×	×	○	×	○	○	○	×	○	○	○	○
모래해안	×	○	×	○	○	○	○	×	×	×	×	×
기수습지	○	-	○	×	○		○	○	○	×	○	×
하구역	×	×	×	×	○	○	○	○	○		○	○
석호	×	×	×	×	○	○	○	×	×	-	-	-
해수면	×	×	×	×	○	○	○	○	○	○	○	○
해저면	×	×	○	×	×	○	○	○	×	○	×	×
산호초	×	×	×	×	○	×	×	×	○	○	○	○
해초군락	×	×	○	×	○	×	×	×	○	○	○	○
홍수립	○			○	○	○	×	×	○	○	○	○
소도서	○	○	○	○	○	○	×	○	○	○	○	○

1 : 농업, 2 : 임업, 3 : 광업, 4 : 주거지, 5 : 레저, 6 : 상업/공업, 7 : 인프라, 8 : 폐기물처리, 9 : 항행, 10 : 어업, 11 : 양식업, 12 : 해조류양식

<표 4-32> 이용행위간의 병존성 검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											
3	○	○										
4	○	○	○									
5	○	○	○	○								
6	○	○	○	○	○							
7	×	×	○	○	○	○						
8	×	○	○	×	×	×	×					
9	×	×	○	×	○	×	×	×				
10	○	×	×	×	○	×	×	×	○			
11	○	×	×	×	○	×	○	×	○	○		
12	×	×	×	×	○	○	×	×	○	○	○	

1 : 농업, 2 : 임업, 3 : 광업, 4 : 주거지, 5 : 레저, 6 : 상업/공업, 7 : 인프라, 8 : 폐기물처리, 9: 항행, 10 : 어업
 11 : 양식업, 12 : 해조류양식

제 5 장

자연해안·서식지 순손실 방지제도 도입

제5장 자연해안·서식지 순손실 방지제도 도입

제1절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필요성 및 배경

- 1990년대 중반 이전까지 자연해안, 연안 및 해양서식지에 대한 사회의 관심과 정부의 정책은 i) 새로운 토지를 확보하기 위한 매립·간척, ii) 공유수면의 점용과 사용을 위한 허가제도 시행, iii) 수산업 양식, iv) 항만, 어업 및 해양관광을 위한 기반시설 확보와 같이 개발이나 비가역적 이용에 한정되었음.
- 해상 및 해안 국립공원이나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과 같은 연안 및 해양지역에 대한 보전정책이 진행되기는 했지만 기본적인 정책방향을 개발과 이용이 주를 이루었음.
- 갯벌의 경제적, 생태적 가치가 주목을 받고, 해양환경보전에 대한 관심이 대규모 유해성적조와 기름유출 사고를 통해 높아지면서 국가의 자연해안, 연안 및 해양서식지에 대한 정책변화가 나타났음.
- 특히 대규모 유해성적조와 기름유출에 의한 환경피해를 경험하면서 개발과 보전의 조화로운 균형을 유지하는 정책개발을 추진하였으며, 1996년부터 1998년까지 진행한 연안의 자연환경, 사회경제활동에 대한 실태조사의 수행, 연안관리법의 제정은 이러한 정책변화를 반영한 대표적 사례임.
- 연안관리법의 제정과 함께 연안관리법의 제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다른 개별분야의 법제도 정비도 병행되었는데, 습지보전법과 해양수산발전기본법을 제정하고, 해양오염방지법·공유수면매립법·공유수면관리법을 개정하였음.
- 연안통합관리를 비롯하여 습지보전, 해양생태계와 환경보호에 대한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하여, 국가차원의 자원·공간관리 기본방향은 '비가역적이고 무분별한 육지중심의 개발'에서 '보전과 개발의 균형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 극대화'로 전환하게 되었음.
- 이에 따라 육상기인오염물질의 해양유입 저감, 보호가치가 높은 갯벌과 해양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구역 지정, 오염이 심하게 진행된 오염우심해역의 특별관리해역 지정, 연안관리지역계획수립 확대 등의 성과가 나타났음.

- 이러한 외형적 성과(output)로는 연안의 습지보호구역과 해양생태계보전지역 등 해양보호구역의 증가, 관련 법제도의 정비, 관리계획의 수립과 시행, 투자예산의 확대 등이 있음.
- 그러나 국립해양조사원이 2001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전국 자연해안 조사결과에 따르면, 인천과 경기연안(도서제외)의 자연해안선은 당시 조사 대상 전체 해안선의 1%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음(국립해양조사원, 2002).
- 또한 자연해안·서식지 중 연안습지 생태계의 기능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갯벌은 간척·매립 사업으로 1988~2005년 기간 동안 25%이상이 손실된 것으로 나타났음(해양수산부, 2005).
- 생산력이 높고, 생태적·경제적 가치가 큰 것으로 알려진 하구역 습지는 제2차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이 완료되는 2011년에 최대 30%이상이 손실될 것으로 분석되었음(이창희 외, 2001).
 - 이는 해양자원과 공간의 합리적 개발과 보전을 통해 종합해양행정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보호구역 지정확대와 매립계획면적 감소로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연해안과 서식지의 훼손·감소는 지속될 것임을 시사함.
- 한편 대통령 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연안·해양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에 따르면 우리나라 서해안의 주요 서식지 10개소 중 2개소만이 산란 및 서식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음(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2005).
- 따라서 앞으로 우리나라 자연해안과 서식지 관리정책은 ‘보호구역 지정과 관리’중심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전체 자연환경 및 서식지의 면적과 기능을 유지(anti-degradation) 및 증진(enhancement)하는 관점’에서 시행할 필요가 있음.²⁹⁾

29) 육상활동으로부터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범지구실천계획(GPA, Global Programme of Action for the Protection of the Marine Environment from Land-based Activities)에서는 해양환경에 영향을 주는 9가지 육상활동의 하나로 서식지의 물리적 변형을 설정하고 있음.

2. 연구의 주요 내용 및 수행 방법

1) 연구의 주요 내용

-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
 - ▷ 순손실 방지제의 개념 및 도입 필요성 검토
 - ▷ 우리나라 자연해안·서식지 관리문제점 도출
 - ▷ 국내외 유사제도 사례수집을 통한 시사점 도출
 - ▷ 순손실방지제의 도입·시행 방안 마련

2) 연구의 수행 방법

(1) 자연해안 및 서식지 순손실 방지제의 개념

- 연구의 대상이 되는 자연해안, 서식지, 순손실 방지제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기 위해 국내외 연구에서 정의하고 있는 개념 사례를 분석하였음.
- 이러한 사례와 우리나라 연안관리 현황 및 여건을 토대로 '개념'을 제시하였음.

(2) 우리나라 자연해안 및 서식지 관리 문제점 도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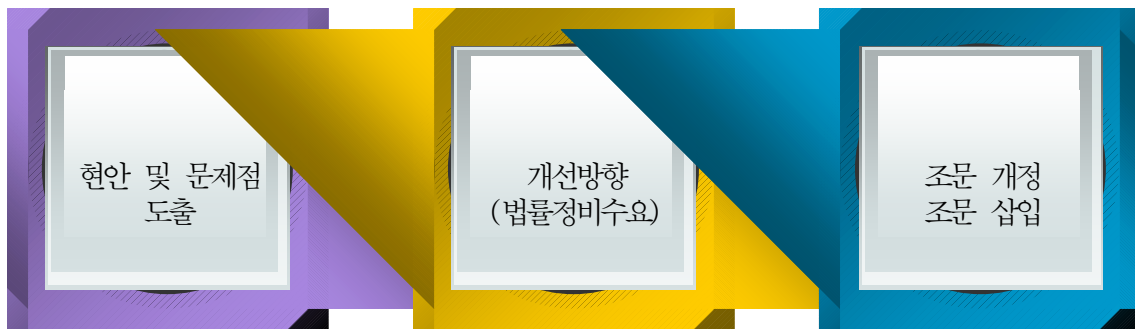
- 우리나라 자연해안 및 서식지의 이용, 개발, 보전과 관련한 주요 통계자료, 관리실태, 법령상의 흠결 등을 검토하여 관리 문제점을 도출
- 관리문제점은 이후 자연해안 및 서식지 관리를 위한 정책방향의 기초자료로 활용

(3) 국내외 유사제도 사례를 수집하고 시사점 도출

- 서식지 순손실 방지제를 채택하고 있는 외국의 중점적으로 분석하여 우리나라 연안관리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음.
- 사례연구는 미국과 유럽을 주요 대상으로 no-net loss, wetland banking system 제도를 분석하였음.

(4) 자연해안·서식지 순손실 방지제도 도입·시행 및 법제도 정비 방안 제시

- 우리나라 자연해안 및 서식지 관리여건, 외국의 시사점을 토대로 순손실 방지제의 도입과 시행을 위한 방안을 제시
- 동 제도의 도입 및 시행방안은 궁극적으로 법률정비 수요를 의미함.



[그림 5-1] 자연해안 및 서식지 순손실 방지제 법제도 정비 절차

제2절 자연해안 및 연안서식지 관리 문제점

1. 자연해안 및 서식지 개념

1) 자연해안

- 일반적으로 해안은 해수와 육지가 만나는 곳으로 해안선은 선(line)³⁰⁾의 개념이, 해안은 면(space)의 개념을 적용함.
 - 해안은 연안과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이 가능하지만, 관계 법령 또는 관리의 목적상 범위가 달라질 수 있음.
- 해안선의 경우 조수 간만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이용하는 목적에 따라 평균, 지오이드(geoid)³¹⁾ 등의 개념을 적용함.³²⁾
 - 관리목적상 만조수위선이나 간조수위선을 사용하기도 함.
- 따라서 법령에 해안선의 개념을 도입할 때에는 법령의 제정목적에 부합하여야 하며, 관리여건을 고려하여야 함. 이 연구의 목적이 면(面)개념 또는 띠 개념을 고려한 해안(coast)이므로 해안선의 법적 개념이나 적용방안은 연구의 범위에서 제외함.
- 사전적 의미에서 해안은 ‘바다에 면한 육지 가운데 파랑과 조석 등의 영향을 직접 받는 폭이 좁은 띠 모양의 지역’으로 정의하지만, 사전적 의미를 관리에 직접 활용하는 데에는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음.
 - “좁은 띠”는 추상적 개념으로 법률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수치로 표현된 구체적인 범위를 제시하여야 함.

30) a line that forms the boundary between the land and the ocean or a lake

31) 평균 해수면과 동등한 중력의 점을 연결하여 된 지구의 면. 물리적으로 생각된 이상적인 지구의 형체(한국어 사전, The Korean Monolingual Dictionary (c) 1996-1999, Microsoft Corporation. Licensed from Mr. Jae Soo Cho)

32) 육지와 해면의 경계선. 해면은 조석·파랑·기압변화 등으로 오르내리므로 해안선의 위치와 형태는 날마다 시시각각으로 변동한다. 그리고 빙하성 해면변화, 해식작용, 육지로부터의 퇴적작용, 지각운동으로 인한 융기·침강운동 등으로 장기적으로도 그 위치와 형태가 변한다. 그날그날의 조석의 변화에 입각해서 평균적인 고조위(高潮位)와 저조위에 대응하는 해안선을 각각 고조선·저조선이라고 한다. 또 저조선으로부터 내륙 쪽의 파랑·조석의 영향이 직접 미치는 범위를 해변이라 하고, 특히 폭풍이 불 때, 파랑의 영향이 미치는 내륙 쪽의 한계선, 즉 해변의 내륙한계선을 넓은 의미의 해안선이나 연안선(沿岸線)이라고 한다(<http://www.yahoo.co.kr> 사진)..

- “파랑과 조석의 영향을 직접 받는”의 의미는 시기, 해황, 기상상태에 따라 그 범위가 달라지므로 ‘몇 년 동안의 상태를 관찰하여야 하는지’, ‘영향에는 어떠한 내용이 있는 지’를 제시하여야 함.
- 한편, 우리나라 법제도에는 해안, 자연해안, 인공해안에 관한 법률적 정의나 유형을 구분하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국립조사원에서는 해안조사를 실시하면서 다음과 같이 자연해안과 인공해안을 구분하고 있음.
 - 인공해안 : 방파제, 방조제, 사석, 호안-해안도로, 안벽
 - 자연해안 : 갯벌해안, 모래해안, 암반해안, 혼합해안
- 그러나 이러한 기준은 해안선에 인공적인 구조물이나 시설물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해안을 구분하고 있는바
 - 방파제, 방조제 외에 사석, 호안, 해안도로, 안벽은 평소에 해수와 직접 접촉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며, 만조수위선 상부에 존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범위를 지정하지 않을 경우 유형분류에 한계가 있음.
- 결국 자연해안과 인공해안을 구분하는 일차적인 기준은 「인공적인 시설물 설치여부」이지만 인공적인 시설물 설치여부 판단할 때 해안선으로부터 어느 정도 범위까지인지를 설정하는 것이 병행되어야 함.
- 외국의 사례에서도 별도로 자연해안에 대한 개념을 법률이나 정책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관련 문헌도 매우 극소수임.
 - 일부 연구에서는 “인공시설물 설치여부”를 조건대로 한정하는 경우가 있지만 사구의 경우 조건대 상부의 사회경제활동이 사구생태계 및 해안지형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범위를 확장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이러한 여건을 고려할 때 자연해안은 사전적 정의, 관리목적상 정의 등을 통합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음.

<자연해안의 정의>

- ‘바다에 면한 육지 가운데 파랑과 조석 등의 영향을 직접 받는 띠모양의 지역 중 만조수위선에서 최초의 육상식생이 나타나는 지역까지 도로, 방파제, 방조제 등 어떠한 인공구조물도 설치되어 있지 않은 해안’
- 자연해안에는 암반해안, 모래해안, 갯벌해안, 혼합해안으로 구분할 수 있음.

- 다만, 자연해안이 아닌 해안 중 만조수위선에서 육상식생이 나타나지 않더라도 해빈, 암반 등 자연지형이 존재하고 있는 해안은 '반자연 해안'으로 구분하여, 해안관리에서 자연해안, 반자연해안, 인공해안으로 나누어 관리하는 것이 필요함.

2) 서식지

- 국내 법령에서도 서식지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은 정의하고 있지 않음.
 - 생태계를 다루는 법률이나 일반적인 국토관리를 다루는 법률에서도 서식지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을 법적으로 정의하고 있지 않음.
- 다만, 자연환경, 생태계에 대한 정의는 일부 법령에서 정의하고 있음.
 -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서는 자연생태계(제2조 제2호)를 '일정한 지역의 생물공동체와 이를 유지하고 있는 무기적 환경이 결합된 물질계 또는 기능계를 말하며, 화석·중유석등과 같이 퇴적·풍화·용해작용이나 화산활동 등에 의하여 자연적으로 생성된 물질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자연생태계는 지형, 지질, 자연환경을 포괄하는 개념임.
- 자연환경보전법에서는 자연환경과 생태계를 별도로 정의하고 있음.
 - 이 법률에 따르면 자연환경은 '지하·지표(해양을 포함한다)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생태계 및 자연경관을 포함한다)'로 규정하고 있음.
 - '생태계'는 '일정한 지역의 생물공동체와 이를 유지하고 있는 무기적(무기적) 환경이 결합된 물질계 또는 기능계'로 정의하고 있음.
- 한편, 사전적 의미로 서식지는 '식물이나 동물이 자연적 혹은 일상적으로 생활하며 성장하는 지역 또는 환경'으로 정의하고 있음.³³⁾
 - Morrison 등은 서식지를 '특정종의 점유를 촉진하고 개체군인 성장, 재생산할 수 있는 자원이 있는 지역'으로 정의하고 있음. 여기에서 자원은 먹이, 지표, 물, 환경조건(기온, 강수량, 경쟁자 및 상위포식자 여부 등)을 의미함.³⁴⁾

33) Merriam-Webster online dictionary "the place or environment where a plant or animal naturally or normally lives and grows"

34) Habitat (from the Latin for "it inhabits"): "it is an area with the combination of resources like, food, cover, water, and environmental conditions (temperature, precipitation, presence or absence of predators and competitors) that

- 자연생태계가 경관, 무생물 환경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인데 반하여 서식지는 ‘생물의 성장과 생식’이라는 생태적 기능이 이루어지는 곳이라는 구체적인 특징을 보이는 공간임을 주지할 필요가 있음.
- 서식지를 정의할 때에는 이러한 특징과 사전적 의미를 고려해야할 뿐만 아니라, 관리목적에 동시에 포함하는 개념까지 확장할 필요가 있음.
- 즉, 관리대상 생물을 어떤 범위까지 포함할 것인지를 설정해야 하는바, 미소생물 집단인 박테리아, 플랑크톤까지 포함할 것인지 규정해야 함.
- 현재 서식지를 보호하기 위한 일차적인 정책적 관심은 유용생물종, 해안지역의 생태적 다양성과 건강성을 상징하는 연안식생, 보호가치가 높은 생물(해양과 육상지역의 식물과 동물을 포함함)로 한정할 수 있음.
-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서식지는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음.

<연안서식지의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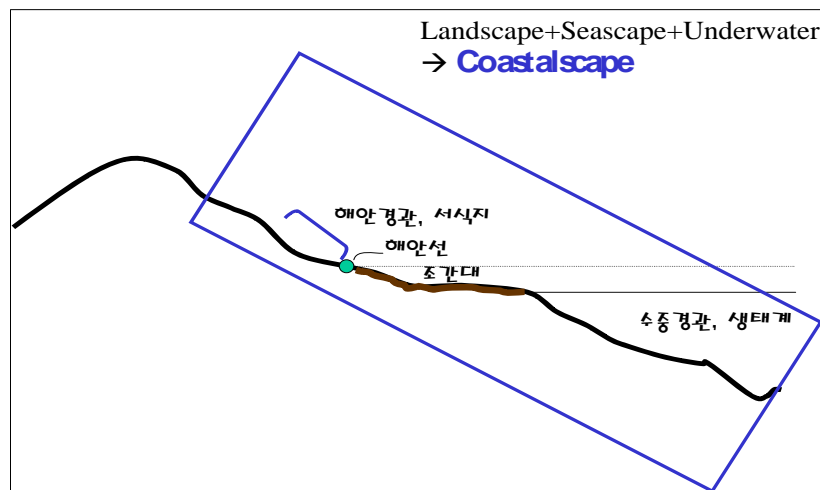
- ‘상업적 유용생물종, 연안식생, 보호가치가 높은 생물종의 (산란)생육, 생식에 중요한 기능이 이루어지는 암반, 갯벌, 모래, 해양저질 분포 지역’

- 현재 일반적으로 알려진 연안서식지는 만, 갯벌, 사구, 암반조간대 등이며, 법률적으로 지정된 좁은 의미의 서식지는 수산자원보호구역(보호수면 등 포함), 야생동식물 보호지역, 특정도서, 천연기념물(생물종) 및 서식지역, 습지보호지역, 생태계보전지역(육지와 해양) 등임.
- 따라서 향후 서식지의 보전과 합리적인 이용을 위해 서식지 순수실 방지제를 도입할 경우 대상이 되는 연안서식지는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으며, 관리를 위해서는 이러한 서식지 규정에 따라 지도에 서식지의 분포형태와 면적을 표시하도록 함.
 - 간석지 및 하구습지 등 연안습지
 - 산호초 및 해조류(해초) 군락
 - 해안사구
 - 염생식물 군락지 등

promotes occupancy by individuals of a given species and allows those individuals to survive and reproduce" (Morrison et al., 1992). <http://www.ikzm-d.de/showaddon.php?text=199>

3) 연안경관(coastalscape)의 개념 정립 및 하구역

-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연해안(반자연해안)과 서식지는 불가분의 관계이며, 자연해안(반자연해안)의 존재 자체는 연안서식지의 기능을 유지하는데 필요함
- 따라서 자연해안의 유지와 보호는 연안서식지의 보호와 유지에 직접적인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고, 자연해안과 서식지는 생태적으로 연결되어 있음.
- 자연해안에 대한 훼손이나 잠재적 훼손 위협은 자연해안과 연결된 연안서식지에 대한 훼손위협이 될 수 있음. 따라서 자연해안-조간대-해중을 하나의 관리단위로 설정하고 이를 광의의 연안경관(Coastalscape)으로 규정하여 관리하여야 함.
- 이는 생태적 연결성과 기능을 기준으로 설정한 개념으로, 이러한 생태적 연결성 및 연안경관 개념에 비추어 볼 때 연안관리범위에서 하천구역이 제외된 현재의 법제는 개선이 필요함.
- 즉, 하천의 담수와 해수가 만나는 수생생태계 및 이에 영향을 미치는 유역(watershed)은 생태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연안서식지에 포함되는바 하구역을 연안관리 범위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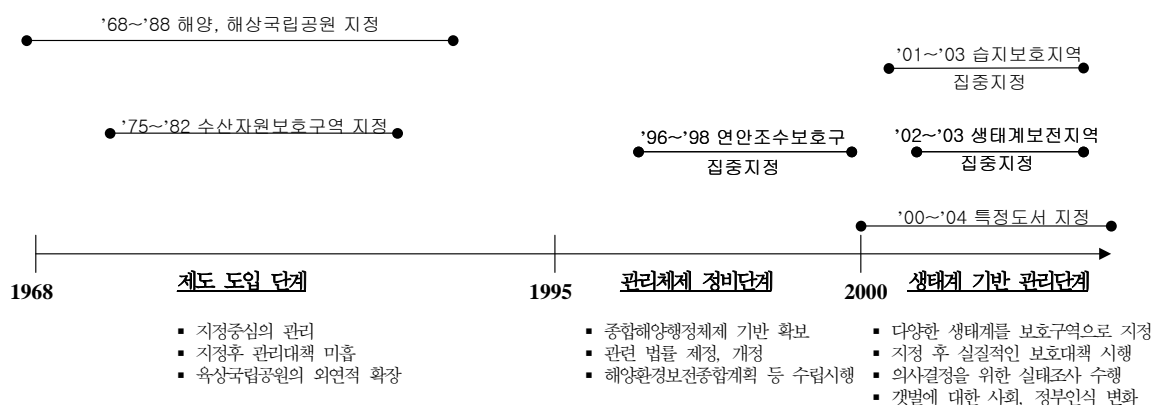


[그림 5-2] 생태적 연결성과 기능을 고려한 연안경관 개념도

2. 자연해안 및 서식지 분포 현황

1) 자연해안 및 연안서식지 관리정책 발달과정 개요

- 남정호(2004)에 따르면 자연해안과 연안해역 서식지 보호의 측면에서 우리나라 자연해안·서식지 관리정책은 크게 '제도 도입단계: 보호구역 지정 중심의 관리단계(1960년대~1990년대 초반)', '관리체제 정비단계: 관련 법률 제정 및 정책시행 기반 구축(1990년대 중반~2000년)', '생태계 기반 관리 단계: 해양생물종다양성 보호를 위한 다양한 생태계의 보호와 관리(2000년~)'으로 구분할 수 있음.



[그림 5-3] 자연해안·서식지 관리정책 발달 과정

- 제도 도입단계에서는 해상·해양국립공원과 수산자원보호구역(기존 수산자원보전지역)이 지정되었고, 이 보호구역 관리를 위한 기본정책방향으로 행위제한을 채택하였음.
 - 수산자원보호구역 제도의 도입³⁵⁾은 해양생태계와 유용해양생물의 보전이라는 생물자원 관리개념을 도입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수산자원의 산란, 서식여건을 증진하기 위한 적극적인 사업의 개발과 투자의 부족으로 '지정후 관리대책 부재'라는 관리 문제점이 있음.
- 1990년대 중반 대규모 유해성적조와 기름오염 발생, 갯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는 정부정책의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되었음. 이 시기에 법률정비, 담당부서 설치 등의

35) 1975년 3월 21일 한산만 일대 712.40km²(육상 290.68km²포함) 연안이 최초의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후 수산자원보호구역은 10개소 4,092.45km²로 확대되었음. 가장 최근에 지정된 수산자원보호구역은 완도, 남해통영, 남해통영 II 3개소로 1982년 1월 8일에 3개소가 동시에 지정되었음.

가시적 성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연안지역에서는 간척·매립 사업이 진행되었고, 방파제·방조제·해안도로·사석·침식방지시설과 같은 인공 구조물이 해양생태계의 가치와 기능에 대한 고려없이 무분별하게 설치되었음.

- 한편, 자연해안과 서식지 관리를 위한 법률이 제·개정되고, 국가정책을 시행할 세부 관리지침이 현장에 적용되었던 2000년대 초반에 정책 시행의 구체적인 성과가 나타났음.
 - 제2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반영된 매립계획면적(38.23km²)이 제1차 매립계획면적(1,402.97km²)의 2.7%로 줄어든 것은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는 사례임.
 - 또한 습지보전법 제정 이후 습지보호지역이 추가로 지정되었고,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해양생태계보전지역이 지정된 사례 등은 중요한 성과임.

2) 자연해안·서식지 분포 현황

- 해양생물이 서식·산란하는 연안서식지는 해안과 물리적·생물학적·화학적·지질학적 으로 연결되어 있어, 자연해안의 연장이지만, 현재의 자연환경보전정책에서는 자연해안 과 서식지를 별개의 생태영역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 도입한 연안경관(coastalscape)의 개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법령화하는 것이 필요함.
- 현재 자연해안과 서식지에 대한 정확한 자료는 파악되지 않고 있음. 국립조사원에서 전 국해안을 대상으로 한 해안선조사나 환경부에서 1990년대 중반에 수행한 자연환경조사-해안지역-가 현재 자연해안에 대한 조사의 전부임.
- 연안서식지의 경우 갯벌의 생태계 및 지속가능한 이용정책을 개발할 목적으로 1999년부터 수행한 조사가 유일한바, 2006년부터 해양생태계조사를 병행하고 있어 향후 연안서식 지에 관한 자료가 축적될 것으로 기대됨.
 - 따라서 해안 및 연안서식지의 보전과 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가용한 자료의 양은 많지 않은 실정이며, 자료의 질도 한계로 나타나고 있는 실정임.
- 자료의 한계와 부정확은 국가기관이 수행한 조사 자료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인데, 이 연구에서는 자연해안에 관한 자료는 국가기관에서 발표한 자료와 별도의 검증된 자 료를 제한적으로 활용하였음

- 서식지의 경우 일반적인 보호구역을 ‘관리가능한 서식지’로 고려할 수 있는데,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자연생태계, 자연환경 중 서식지기능만을 고려한 서식지 분포에 관한 자료는 현재 국가차원에서 확보하고 있지 않음. 따라서 이 연구에서 제시하는 서식지 자료는 ‘관리가능한 서식지’에 국한했음을 밝혀둠.

(1) 자연해안 현황

- 우리나라 해안은 크게 자연해안, 반자연해안, 인공해안으로 구분³⁶⁾할 수 있는데, 이 연구에서는 ‘모래해안, 해식애, 파식대, 헤드랜드, 시스텍, 해안사구, 사주, 육계도, 자갈해안, 해식애, 파식대, 시스텍 등을 자연해안으로 규정’하였음. 이중 반자연해안은 앞서 기술하바와 같이 만조수위선에 인공구조물이 접촉하여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반자연해안으로 규정함.
 - 자연해안은 특히 생태적 연결성을 고려하여 분류할 수 있음. 예를 들어 넓은 갯벌이 발달한 부안군 곰소만 일대 해안은 소규모의 간척을 통해 조성된 농경지, 염전, 양식장이 분포하고, 대부분이 제방으로 이루어져 있어 인공해안이나 반자연해안으로 분류할 수 있음.
- 현재 우리나라 해안에 대한 조사결과는 조사기관, 조사시기별로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먼저 국가에서 조사한 자료를 소개하고, 별도의 참고자료를 제시하였음.
- 해양수산부가 조사하여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육지부의 자연해안은 5,059.26km로 전체 해안선(6,359.08km) 중 79.6%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도서부를 포함할 경우 자연해안은 10,519.01km로 전체해안 중 87.3%로 매우 높은 비율로 나타났음.
 - 해양수산부의 조사에서는 별도로 반자연해안을 구분하고 있지 않은데, 향후 추가적인 개발이나 이용에 대한 합리적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반자연해안에 관한 조사가 필요함.
 - 이 연구에서는 자연해안, 반자연해안, 인공해안으로 구분한 가용한 자료가 없어서 자연해안과 인공해안으로만 구분하였음.

36) 인공해안과 자연해안에 대한 법적 정의나 과학적인 구분기준이 없고, 앞에서 제기한 기준에 따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인공구조물 존재여부를 구분기준으로 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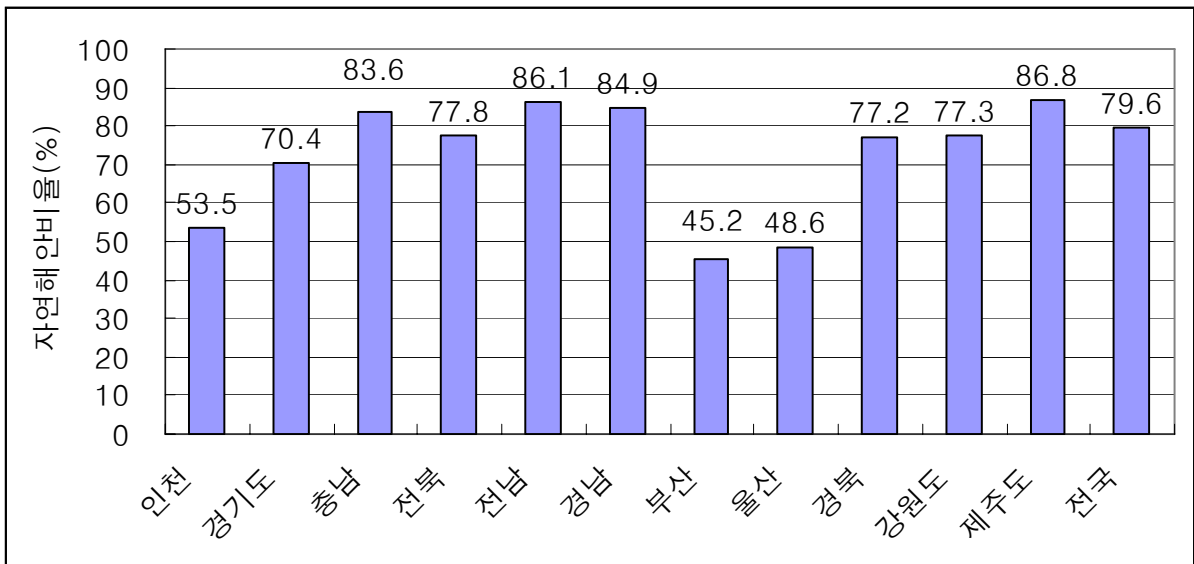
<표 5-1> 광역시 및 도별 해안선 길이(시화호내측, 새만금 내측 포함)

(단위 : km)

구분	전체 길이	육 지 부			도 서 부		
		총 길이	자연 해안선	인공 해안선	총길이	자연 해안선	인공 해안선
전 국	12,051.54 (11,914.05)	6,359.08 (6,228.42)	5,059.26 (4,953.28)	1,299.82 (1,275.14)	5,692.46 (5,685.63)	5,459.75 (5,452.92)	232.71 (232.71)
인천	954.53	364.48	194.91	169.57	590.05	547.66	42.39
경기도	357.18 (219.69)	309.83 (179.17)	218.02 (112.04)	91.81 (67.13)	47.35 (40.52)	45.86 (39.03)	1.49 (1.49)
충남	986.40	698.32	583.99	114.33	288.08	285.11	2.97
전북	504.41	264.76	205.95	58.81	239.65	229.29	10.36
전남	5,540.01	2,103.61	1,810.96	292.65	3,436.40	3,309.45	126.95
경남	2,093.21	1,346.55	1,143.36	203.19	746.66	720.81	25.85
부산	313.92	223.87	101.22	122.65	90.05	85.18	4.87
울산	135.83	131.94	64.12	67.82	3.89	3.89	-
경북	428.00	321.37	248.03	73.34	106.63	97.86	8.77
강원도	318.1	286.03	221.17	64.86	32.07	32.07	-
제주도	419.95	308.32	267.53	40.79	111.63	102.57	9.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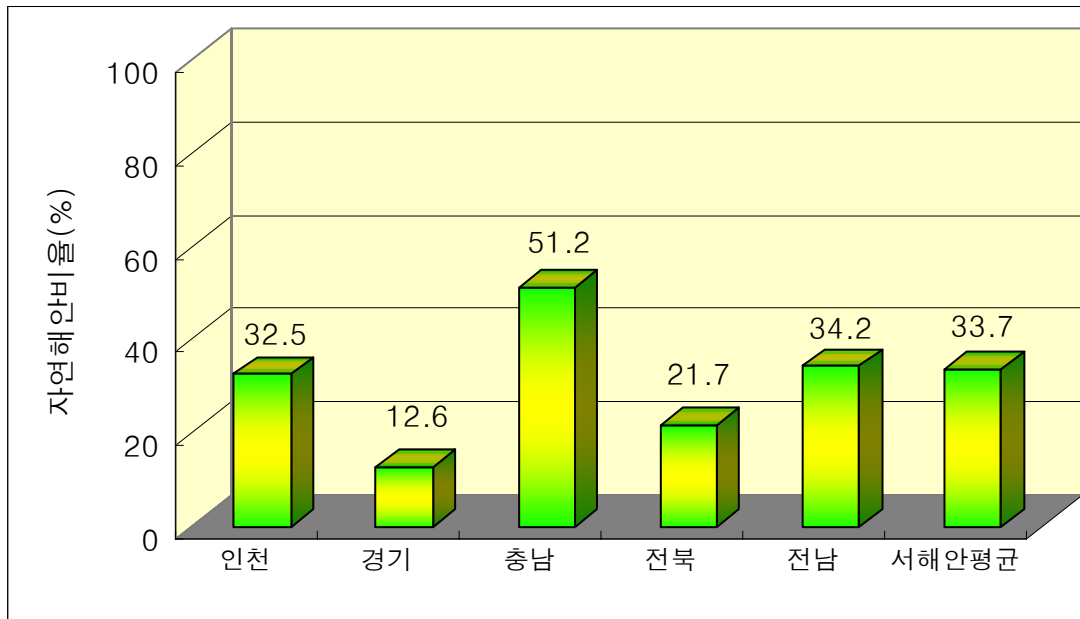
자료 : 해양수산부(2004) 내부 자료

주 : ()은 시화호 내측을 포함하지 않은 해안선 길이



[그림 5-4] 자연해안비율(해양수산부)

- 그러나 2002년 기준 인천·김포·시흥의 자연해안은 1.1km로 해안선 총연장 123.9km의 1%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되었음(국립해양조사원, 2002 참조)³⁷⁾
 - 또한, 태안군 안면도, 홍성군, 보령시 일부지역의 연안육지부 해안선 조사에서도 인공해안은 117.0km로 나타나 이 지역 총 해안선 연장 227.5km의 51.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국립해양조사원, 2003 참조).
 - 따라서 개발압력이 높은 연안육지부만을 대상으로 해안조사를 실시할 경우 전남, 경남과 같이 도서가 많은 지역의 인공해안 비율은 크게 높아질 것으로 판단됨.
- 박한산(2004)³⁸⁾에 따르면 인천, 경기, 충남 전북, 전남(서해안) 연안육지부의 인공해안비율은 각각 67.5%, 87.4% 47.9% 78.3% 65.8%, 66.3%로 나타나, 자연해안비율은 육지부의 경우 33.7%로 매우 낮은 수준임.
 - 이 연구에서는 해안의 특성을 구분할 과학적인 분류기준이 없고, 전 연안을 체계적으로 조사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자연해안과 인공해안으로만 구분하여 현황을 파악하였으며, 만조수위선만을 기준으로 하였음을 밝혀둠.³⁹⁾



[그림 5-5] 자연해안비율⁴⁰⁾

37) 국립해양조사원(2002)에 따르면 시화호 간척사업으로 해안선 총연장은 90km나 줄어들었음(시화호 내부해안102km, 방조제 길이 12km).

38) 저자 개인교신

39) 현재 국립해양조사원에서는 해안선 실측조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해양수산부에서도 해안조사를 수행하고 있으나 i) 전문가와 의사결정자 간 합의된 분류기준이 없으며, ii) 해안선조사 방법이 정형화되어 있지 않고, iii) 해안선조사의 범위가 대부분의 도서를 제외한 연안육지부에 한정되어 있음.

(2) 연안서식지 현황

- 연안서식지는 자연해안과 별개의 해양생태계가 아닌 자연해안의 연장임은 주지의 사실임. 현재까지 자연해안과 서식지를 단일한 생태계로 설정하여 전국 연안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조사·연구를 수행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 다른 연안서식지는 서식지 관련 법률에서 정한 보호구역으로 한정하였음

<표 5-2> 우리나라의 연안·해양보호구역 지정현황

구 분	개소	면적(km ²)			관련 부처	관련법령
		소계	육역	해역		
생태·경관보전지역 ⁴¹⁾	2	34.3	0	34.3	환경부	자연환경보전법
습지보호지역 ⁴²⁾	9	238.1	93.9	144.2	해양수산부 환경부	습지보전법
야생동식물보호구역	86	149.5	149.5	0.0	환경부	야생동식물보호법
특정도서	153	10.0	10.0	0.0	환경부	독도등도서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국립공원	4	3,348.4	667.5	2,680.9	환경부	자연공원법
환경보전해역	4	1,882.1	933.0	949.1	해양수산부	해양오염방지법
수산자원보호구역	10	4,098.1	1,542.1	2,556.0	건설교통부 ⁴³⁾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천연기념물	153	835.9	742.3	93.6	문화재청	문화재보호법
해양보호구역	4	70.4	0.0	70.4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계의보전및관리에관한법률
계	425	10,666.8	4,138.3	6,528.5	4	9

주: 1. 생태·경관보전지역에는 환경부가 지정한 낙동강하구와 소항사구 지역을 포함함.
 2. 습지보호지역 중 환경부가 지정한 3개소 포함(신두리사구의 두웅습지, 낙동강하구, 한강하구).
 3. 해양보호구역 4개소는 과거 생태·경관보전지역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곳으로 법제정 후 6개월 후인 2007년 4월 3일부터 시행됨.

자료: 육근형·남정호, 2007. 생물다양성협약(CBD) 동향 및 대응방향-연안·해양보호구역 분야, 월간해양수산

40) 박한산의 분석에서 활용한 기본도는 해양수산부 연안정보도(1:25,000)이며, 국립조사원이 발표한 자료의 기본도는 전자해도(1:75,000-250,000)임. 전자해도는 해양의 입장에서 해안선을 파악하기 때문에 간조수위선 기준으로 설정하는 반면, 연안정보도는 평균해수면을 기준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인공해안비율이 높게 나타났음. 또한, 기본도의 축적을 본 연구에서는 대축적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자세한 분류가 가능하여 인공해안과 자연해안을 효과적으로 구분할 수 있었음.

41) 과거 '생태계보전지역'이었으나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해역 부분이 분리되면서 「자연환경보전법」이 개정되어 '생태계보전지역'은 육지부만을 대상으로 하는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개칭됨. 행정통계에는 낙동강하구는 1999년 「습지보전법」이 제정되면서 이전의 '낙동강하구생태계보전지역'이 '낙동강하구습지보호지역'으로 명칭 변경되어 구분되었어야 하나, 낙동강하구(34.0km)가 생태·경관보전지역과 습지보호지역 양쪽 모두에 동일한 면적으로 존재하고 있음.

42) 한강하구습지보호지역의 경우 하천구역 하류의 연안구역 일부에 습지보호지역이 지정되어 있으나 그 해면 면적이 확보되지 않아 여기서는 한강하구습지보호지역의 면적 34.0km²을 육역에 포함함.

43) 해양수산부 이관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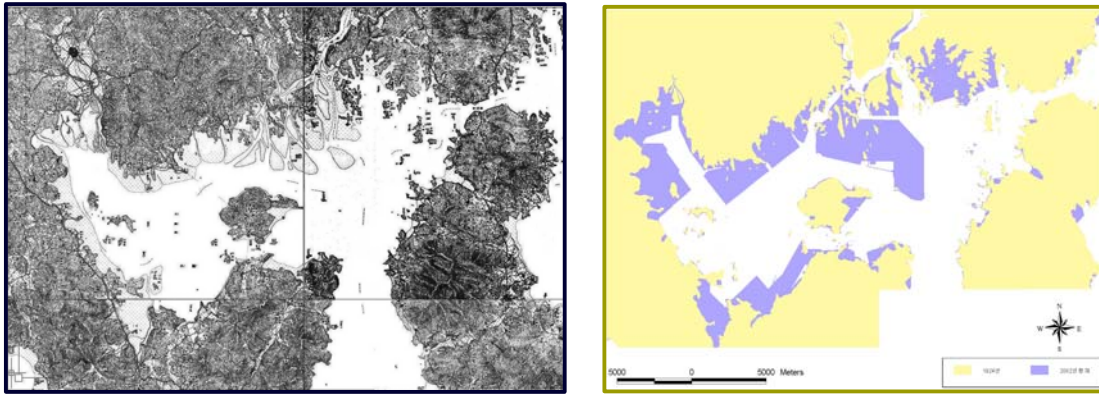
- 이 연구에서 다룰 연안·해양보호구역은 보호가치가 높고, 생태적 대표성을 확보하고 있는 생태·경관보전지역, 습지보호지역, 야생동식물보호구역, 특정도서, 국립공원, 환경관리해역(환경보전해역), 수산자원보호구역, 천연기념물(문화재보호구역)임.
 - 이 범주에 속하는 보호구역은 총 425개소이며, 지정면적은 10,666.8km²로 우리나라 국토면적(99,514km²)의 10.7%, 해면부의 2.4%, 영해면적의 15.0%에 해당함(육근형·남정호, 2007 참조).
 - 한편 남정호 외(2004)에 따르면 각 보호구역별 평균 면적은 특정도서가 0.065km²로 가장 작고, 국립공원이 837.1km²로 가장 넓게 나타났음.
- 우리나라 연안·해양보호구역은 상기한 바와 같이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에 걸쳐 집중적으로 지정되었음. 특히 습지보호지역, 해양생태계보전지역, 특정도서와 같이 자연해안·서식지 관리의 일차적인 대상이 되는 보호구역의 경우 2000년~2003년에 집중적으로 지정되었음.
- 그러나 이러한 적극적인 보호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자연해안과 서식지는 여전히 심각한 개발압력에 노출되어 있음. 대표적인 자연해안·서식지인 갯벌은 1987년부터 1997년 사이에 25%가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고, 사회적·경제적·생태적 측면에서 다양한 기능과 가치를 제공하고 있는 하구역 자연해안과 서식지의 훼손가능성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이창희 등, 2002).⁴⁴⁾
- 특히 수산생물의 산란과 서식에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만이나 강하구 등은 1970년대 이후 연안에 집중된 개발사업으로 인해 10개의 중요서식지는 2개로 감소하였음.
 - 영산강하구, 함평만, 곰소만, 만경강하구, 동진강 하구, 금강하구,천수만, 아산만, 남양만, 시화호(소래포구) → 함평만, 곰소만

3. 자연해안 및 서식지 관리 문제점

- 연안관리제도 도입, 공유수면매립정책 개선에도 불구하고 자연해안, 서식지에 대한 물리적 훼손 진행
- 1999년 연안관리법제정 및 2000년 연안통합관리계획 수립, 제2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의 매립계획면적 1차 기본계획의 10% 수준으로 급감하였으나

44) 제2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서 하구역을 대상으로 한 매립계획면적은 10.58km²로 전체 매립계획면적(38.23km²)의 27.7%를 차지하였음.

- 80년대 중반 이후 전체 매립계획면적 1389.4km²중 175.9km²완료, 203.4km² 실효, 758.5km²(128건)이 공사 중이며, 251.7km²(315건)가 계획 중임(지속위 내부자료).
- 60년대 이후 집중적인 개발이 이루어졌던 하구역의 경우 2010년이 되면 현재 남아있는 갯벌 등 서식지와 공유수면의 30%가 추가로 훼손될 전망이다.
- 수산자원의 산란 및 서식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핵심 서식지는 10개에서 8개로 감소하였고, 자연해안은 서해안의 경우 33.7%에 이를 정도로 인공해안화가 진행되었음(박한산, 2004; 남정호, 2004).



[그림 5-6] 광양만 해역의 해안선 및 지형 변화(1924년과 2002년)

- 자연해안과 서식지에 대한 인식 미흡, 관리정책의 취약으로 해안 및 서식지의 체계적 관리에 한계(National Agenda 부재)
- 습지보전법 제정 및 습지보호구역 지정, 해양생태계보전지역 지정, 수산자원보호구역, 환경보전해역, 국립공원 등 다양한 형태의 보호구역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호구역에 한정하여 관리
 - 이러한 보호구역 내에서도 지역주민 정주여건 개선목적으로 진행되는 정부의 다양한 지원사업(어촌종합개발사업, 연안정비사업 등)으로 자연해안 및 서식지가 훼손되고 있음.
- ※ 습지보전법 제17조 제1항에 습지훼손면적의 존치는 습지보호지역, 습지개선지역에 해당하며, 존치면적은 훼손면적의 1/4(동법 시행령 제14조). 인공습지의 경우 권장사항으로 물리적으로 훼손된 습지의 복원을 강제할 법적 근거와 이를 시행할 자원확보 및 인센티브가 없는 것이 한계임.

- 국가의 해안선 관리정책은 관광목적의 해변관리, 재해취약 지역의 대중적 처방에 기초한 시설물 설치 위주 정책, 해안도로 정비에 한정되어 있어
 - 자연해안 및 서식지의 체계적 관리로 인해 창출될 현재 및 잠재적 부가가치에 대해선 정책적 관심이 미흡한 실정임.
- ※ Balmford *et al.*(2002)에 따르면 자연생태계보전 정책의 편익/투자비율은 최대 100에 이를 정도로 매우 높은바, 장기적으로는 보전정책의 부가가치가 단순개발보다는 클 것으로 판단됨.

□ 자연해안 및 서식지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자료의 부족 및 기존자료의 부정확

- 자연해안과 서식지에 대해 “보전 중심의 보호정책”이 아닌, 「부가가치 창출을 극대화하기 위한 체계적 관리」, 「연안관리법의 제정목적에 충실한 균형적 관리」에 필요한 자료가 부족한 실정임.
 - 해안에 대한 조사는 현재 서해안 지역에 한정되어 완료되었으며, 육지부(main land)를 중심으로 진행(도서에 대한 조사 미흡)
- 자연해안에 대한 해양수산부의 공식 발표자료와 실제 측량자료 사이에 knowledge gap 이 큰 것으로 확인
 - 경기인천, 충청남도의 해안선 실측자료와 추출자료 사이의 자연해안선 비율은 최고 50%차이가 나타났음.
 - ※ 충남도 전체 인공해안선(114km)보다 3개 시군 인공해안선(117km)이 긴 것으로 나타나 자료신뢰성 의문(지속가능발전위원, 2005)
- 서식지에 대한 자료는 해양수산부의 ‘갯벌생태계 조사’자료에 한정되어 있으며, 환경부의 전국자연환경조사, 전국무인도서 조사, 토지피복도 구축사업, 물환경정보시스템에서도 자연해안과 해양생물자원의 서식지에 대한 체계적 조사 미흡(→8개 법정조사 사이의 연계 미흡)
 - ※ 산호초 지도, 염생식물지도, 갈피서식지도 등 서식지 조사 및 조사결과 관리체계 미흡

<자료의 부정확사례>

- 2002년부터 서해안에 대한 직접 측량결과를 보면, 2002년 인천(강화, 옹진 제외), 김포, 시흥 조사 지역의 총 해안선 연장은 123.9km이지만, 자연해안은 1.1km로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03년 조사지역인 안면도, 홍성군, 보령시 지역의 연안육지부 해안선조사에서 조사 총 해안선 연장 227.5km 중, 인공해안은 117.0km으로 조사지역의 자연해안 비율은 48.5%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 국립해양조사원의 수치해도를 이용하여 추출한 충남도 전체를 대상으로 한 연안육지부의 인공해안선은 114.3km로 3개시군 일부지역의 인공해안선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나 오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또한 태안군, 홍성군, 보령시의 인공해안은 45.0km로 실제 측량결과보다 60km이상 차이가 나 수치해도를 이용한 추출결과의 신뢰성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
- 결과적으로 전남, 충남, 전북의 경우 자연해안 비율이 35%이하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 실제로 해안선과 이에 연결된 서식지는 심각한 훼손상태에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자연해안 및 서식지에 대한 개념과 국가정책 미정립

- 자연해안(또는 인공해안) 및 서식지에 대한 법적 개념이 부재할 뿐만 아니라 관리차원의 개념도 부재한 실정임.
- 보호구역 위주의 정책으로 유용해양생물자원 및 기초해양생물자원의 산란, 서식에 중요한 “서식지”에 대한 법적 근거가 취약하여 관리가 미흡함.

제3절 자연해안·서식지 관리 외국사례 및 시사점

- 자연해안과 서식지를 유지, 보전, 복원하기 위한 정책을 일찍부터 개발하여 시행하고 있는 국가는 미국, 캐나다 등 북미국가, 영국, 덴마크, 발트해연안국가를 비롯한 유럽 국가임.
- 이 절에서는 미국의 No-net Loss(NNL)사례를 중심으로 유럽국가의 자연해안 및 서식지 관리사례를 분석하였음.
 - 선진국의 경우 갯벌, 염습지, 사구 등 연안지역의 서식지와 경관에 대해서는 순손실방지제와 같은 체계적이고 강력한 규제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반면, 해안선에 대해서는 캐나다와 영국의 일부지역에 한정하여 시행 중에 있음.

1. 미국사례

1) 미국 연방정부 정책 개요

- 미국의 서식지 순손실 방지정책의 기원은 1972년 미국 수질환경보전법(Clean Water Act, CWA) 제404조임.⁴⁵⁾
 - 1970년 이후 20년 동안 습지자원의 50%이상이 사라진 것으로 조사되었으며(Mitch and Gosselink, 1993; Environmental Concern Inc. 홈페이지에서 재인용). 멕시코만의 Galvaston Bay의 경우 산업개발, 도시확장, 항만, 댐건설, 농업기인 오염물질로 인해 1956~1978년 기간동안 매년 121.7km², 1978~1990년 기간동안에는 매년 98km²의 연안서식지 손실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되었음(Sasser et al, 1986; Johnston et al., 1995에서 재인용).
- 수질환경보전법 제404조에서 제시한 서식지의 순손실 방지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것은 1987년 미국환경보호청(EPA)의 국가습지정책포럼(national wetlands policy forum)의 성과를 토대로 1989년 부시행정부가 이를 대통령지침(presidential mandate)으로 확정되면서부터임.

45) "issue permits, after notice and opportunity for public hearings for the discharge of dredged or fill material into navigable waters at specified disposal sites"

- 국가습지정책포럼에서는 습지관리에 관한 단기목표를 ‘순손실제로화(no overall net loss)’로, 장기목표로는 순증(net gain)을 설정하였음.
 - 순손실제로화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이외에도 농업용 토지확보를 위해 습지매립을 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Farm Bill의 규정인 Swampbuster와 멸종위기종보호법(Endangered Species Act)이 있음.
- 매립면허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통해 습지개발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했던 수질환경보전법의 제404조는 일정규모의 습지개발사업에 대해 미국환경보호청과 육군공병단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미국 서식지 순손실 방지정책은 초기에는 면적을 기준으로 시행하였으나, 최근 들어 서식지 면적과 기능을 함께 고려하는 정책으로 전환되고 있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음.
 - 미국공병단과 환경청은 1992년에 서식지 보전 정책방향을 습지의 면적에서 습지의 기능과 가치에 대한 순손실 방지정책으로 전환하였음
 - 또한 미국 어류 및 야생동식물관리기구(Fish and Wildlife Service)가 수립한 1990년 미국 습지보전계획(Wetlands Action Plan)에서는 면적유지가 정책목표였으나, 1997년에 생태계의 전체 기능을 유지하는 것으로 정책목표가 변경하였음.
- 한편 최근 들어 유역(watershed)내의 환경과 생물자원, 서식지를 함께 관리하는 정책을 채택하고 있는데, 미국은 이러한 통합적 접근을 실현하기 위해 연방정부 차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음
 - 2002년 12월 24일 마련한 서식지 규제지침(Regulatory guidance letter), 수질환경보전법 제404조와 항만법(Rivers and Harbors Act of 1899) 제10조가 유역관리체제에 토대를 둔 생태계·서식지 관리의 법적 근거임.
- 서식지와 생태계 보호를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복원정책을 토대로 서식지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수단의 우선순위와 절차를 개발하여 적용하는 것이 미국 No Net Loss정책의 특징임.
 - 미국 공병단의 보호정책은 「잠재적 영향회피→피할 수 없는 영향 최소화→피할 수 없는 영향에 대해서는 보완조치 시행(avoid→minimize→mitigate(restoration, enhancement, creation))」으로 정책수단을 적용하는 우선순위와 절차를 제시하고 있음.
- 이러한 순손실방지정책을 통해 미국의 경우 1989년부터 1992년까지 631.33km²의 습지가 사라졌으나, 이 기간동안 3,378.84km²의 습지를 복원하는 효과를 거두었음(Tolman, 1997).

2) 로드아일랜드 주

- 미국 로드아일랜드 주는 연안관리를 위한 수단으로 용도지역제를 도입하고 있는 대표적인 지역으로 미국 연방정부보다 1년 앞선 1971년에 연안역관리법을 제정하여 연안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로드아일랜드주의 용도지역은 해역중심이며, 육상에 대해서는 자연생태계 및 경관보호를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음.
 - 연안해역의 경우 보전해역, 저밀도 이용해역, 고밀도 遊船(Boating)해역, 다목적 해역, 상업 및 레크레이션 항만해역, 공업해안 및 상업항로 해역 등 6가지 용도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음(행위관리).
 - 연안 육역은 자연환경, 지형, 경관, 역사문화 자산의 특성을 고려하여 해변, 사주·사취, 연안습지, 해안절벽, 암석해안, 인공해안, 역사지 등으로 유형을 구분하고 있음(서식지 및 경관 관리).
- 로드아일랜드 주정부의 육역에 대한 용도지역제의 특징은 개별 행위에 대한 행위제한보다는 일정구간의 완충지대(buffer zone)나 연안보전선(setback)을 지정하여 육상활동을 관리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음.
- 주정부의 연안자원관리프로그램(Rhode Island Coastal Resources Management Programme)의 Section 140은 연안보전선, Section 150은 완충지대 설정에 관한 제도적 근거임.
 - 연안보전선 제도가 행위제한을 중심에 두고 있다면, 완충지대는 연안식생 보전에 우선을 두는 제도라고 할 수 있음.
 - 두 제도 모두 고밀도 연안관리 및 잠재적 행위를 지속가능한 발전을 고려하여 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2. 캐나다 프레이저 만

1) 프레이저만 하구관리 프로그램 개요

- 캐나다는 1991년 연방습지보전정책을 수립하면서 손실방지 정책(mitigation)⁴⁶⁾을 도입

46) 생태계교란없이 자연적 생산능력 유지→개발사업 위치변경을 통한 영향 저감→개발계획 조정과 변경을 통한 영향저감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여 영향 최소화→대체서식지 조정과 같은 보완조치 시행

하였는데, 순순실 방지정책의 구체적인 시행방안은 지역별로 다르게 나타남. 이 연구에서는 캐나다 연방정책이 성공적으로 적용되어 실현되고 있는 프레이저 하구역을 사례지역으로 선정하였음.

- 프레이저만 하구환경관리프로그램(FREMP)은 1977년부터 운영되었는데, 하구환경관리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관리계획 수립 및 관련 부처간의 상호 연계성, 정책 및 기능의 조화에 중심을 두고 있음.
- 캐나다⁴⁷⁾ 프레이저 강 유역은 수력개발, 어업, 항만, 산업 등의 다양한 행위가 복합적으로 존재하고 있고, 이로 인해 서로 다른 기능 사이에 이해상충이 발생하고 있음.
- 1985년에 조직한 Fraser River Estuary Management Program(FREMP)에는 6개의 관련부처와 기관들이 구성원으로 참여하고 있음.
 - 환경부(Environment Canada), 수산해양부(Fisheries and Oceans Canada), 물·토지·공기보호부(Ministry of Water, Land and Air Protection, 프레이저 북부 항만청(North Fraser Port Authority), 프레이저강 항만청(Fraser River Port Authority), 밴쿠버지역청(Greater Vancouver Regional District)
- 하구에 관련한 합리적 조정과 의사결정을 통해 유역을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이용하는 것이 목적인 FREMP는 7가지 하위 실천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음.⁴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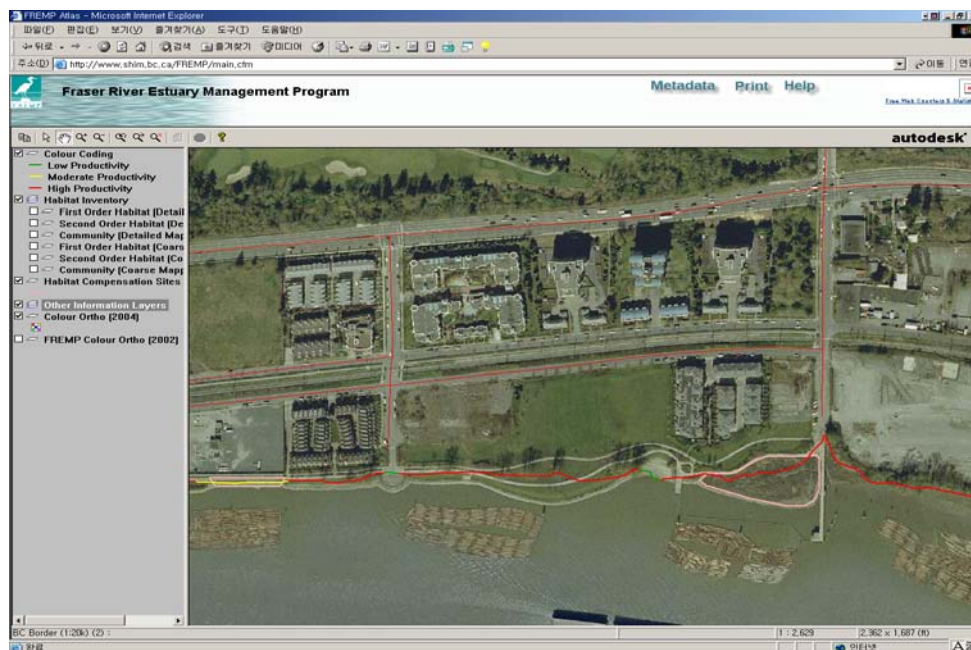
2) 해안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용도구분

- 7가지 실천계획 중 어류 및 야생서식지 보호 실천계획(Fish and Wildlife habitat action Program)에서는 해안과 서식지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해안을 3개의 유형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음.

47) 캐나다는 연방과 지방정부 차원에서 보호구역을 지정하는 프로그램이 있음. 'Marine Protected Areas (MPAs)'은 1997년에 연방차원에서 해양법에 의해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프로그램으로 해양 포유동물과 그 서식지를 포함한 어족 자원의 보호, 위기종 해양생물과 서식처 보호, 높은 생물 다양성을 지닌 해양지역의 보호, 관련 부처의 위임에 의한 해양자원이나 서식처 보호 등의 목적으로 지정·관리됨. 이 MPAs내에서는 용도지역을 지정하게 되며, 대상 지역이나 지정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인간 활동을 규제함. MPAs 프로그램은 연방 프로그램으로서 다른 프로그램들과 함께 상호 보완적으로 해양 환경 보전을 위해 기여함.

48) ① An Action Program to integrate the Plan, ② Water and Sediment Action Program, ③ Fish and Wildlife Habitat Action Program, ④ Navigation and Dredging Action Program, ⑤ Log Management Action Program, ⑥ Industrial and Urban Development Action Program, ⑦ Recreation Action Program

- 이러한 해안구분은 기본적으로 서식지에 대한 자연과학적 가치 및 분류체계에 근거하고 있는데, 서식지 전체를 유형별로 구분하고 있음(FREMP habitat classification; Colour Coding).
 - 서식지는 보호수준, 이용개발 수준에 따라 세가지로 구분하며, 지도에 적색, 황색, 녹색으로 구분함.
- Red Code(High Productivity) Habitat : Red code 지역은 중요한 수산생물과 야생동식물들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생산성이 풍부하고 다양한 서식지가 있는 곳임. 서식지의 손실이 불가피 할 경우 이것을 상쇄할 수 있는 대체습지(habitat compensation)를 해당지역 또는 주변에 개발 전에 조성해야 함.
 - 기본적으로 이 코드에 해당하는 지역은 개발이 제한되어 있으며, 불가피하게 개발이 필요한 경우 대체습지를 조성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 정책은 미국의 순손실방지정책(mitigation)과 동일함.
- Yellow Code(Moderate Productivity) Habitat : 이 지역 서식지의 가치와 기능은 일반적인 수준을 보이는 지역임. 따라서 부분적으로 이용과 개발이 가능하지만, 사업 설계시 복원과 보상평가가 포함되어야 함. 서식지 기능과 생물에 미치는 불가피한 영향에 대한 보상을 고려하기 전에 최대한 가능한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고 있음.
- Green Code(Low Productivity) Habitat : 이 지역은 항만, 주거, 도시개발로 서식지의 기능이 매우 제한되어 있는 지역인 바, 개발이 가능함.



[그림 5-7] FREMP 해안유형 구분 예(49)

- 프레이저 하구 내에 조간대와 강 기슭 지역을 포함한 해안선은 서식지 특성의 상대적 가치와 기능을 중심으로 분류함. 서식지 형태는 갯벌, 염습지, 해안림을 포함하며, 유형 구분에 따라 개발자들이 사업 승인을 위한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해당지역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도움을 줌.
 - 최종적으로 개발사업의 승인은 FREMP 개발사업조정과정(Coordinated Project Review Process)을 거쳐서 이루어짐.
- 한편 하구지역 해안선은 생태계가 매우 역동적이고, 서식 생물상의 변화가 많은 지역이므로, 해안선 유형구분은 주기적으로 갱신이 필요함.
 - 2002년에 유형구분 작업이 이루어진 후 2005년에 수정·변경하였고, 수정변경 결과를 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공기관 및 민간영역에 제공하고 있음.
- 이러한 정보시스템의 구축과 개발은 프레이저 강 하구지역의 정보를 이해관계자 사이에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효과적인 의사결정 도구로서 기능함.
 - 유형구분이 생태계 현황 및 관리여건을 반영하여 합리적이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식지 보호와 관리를 위한 지침으로 이를 채택하였음. 특히 서식지의 손실과 증가 등 서식지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음.

3. 유럽사례

1) 발트해 사례

(1) 발트해 현황

- 발트해⁵⁰⁾는 유엔환경계획(UNEP)에서 해양환경·자원관리를 위한 특화된 정책인 지역해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시작한 1974년부터 발트해 관리를 위한 협약을 채택하여 협력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49) <http://www.shim.bc.ca/FREMP/main.cfm>

50) 발트해는 덴마크와 스웨덴 사이의 협해를 통해 북해와 연결되어 있고 외해와의 해수순환은 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폐쇄성 해역임. 200여개의 강과 하천을 통해 유입되는 대량의 담수로 인해 평균염분도는 20%이하를 유지하고 있는 세계 최대의 기수해(brackish waters)로서, 해양·연안생태계는 담수생물과 해양생물이 공존하며 높은 생산력과 생물종다양성을 유지하고 있음.

- 협력프로그램의 법적 근거인 발트해 해양환경보호 협약(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Marine Environment of the Baltic Sea Area, Helsinki Convention(헬싱키 협약))은 육상, 해양, 대기 등 모든 해양오염원 관리에 관한 세계 최초의 국제협약임.
 - 발트해 면적은 415,266km²로 황해와 비슷하고⁵¹⁾, 유역은 14개 국가⁵²⁾에 걸쳐 있는데 유역면적은 해역면적의 4배 이상(1,733,850 km²)이며, 평균수심은 50m로 황해 평균수심(44m)과 비슷함(강대석·남정호, 2002에서 재인용).⁵³⁾
- 유역에 거주하는 인구는 8천5백만명이며, 71%는 도시지역에 거주하고 있음.
 - 인구밀도는 지역에 따라 매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데, 핀란드와 스웨덴 북부지역은 10명/km²으로 매우 낮은 반면, 독일, 덴마크, 폴란드의 도시지역 인구밀도는 500명/km²으로 매우 높음.
 - 해안선으로부터 10km이내에 거주하는 연안인구는 1천5백만으로 전체 유역인구의 17.6%임.
- 이 협약에서 다루고 있는 현안은 해양오염, 생물종다양성 및 어획량 감소, 생태계 및 서식지 훼손임. 특히 부영양화를 유발하는 영양염류가 유입하고 있고 수산물 생산량은 발트해 환경악화, 서식지 훼손 등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⁵⁴⁾
- 발트해의 서식지 및 자연해안을 다루는 제도는 발트해 환경관리종합계획(Baltic Sea Joint Comprehensive Environment Action Programme, JCP)의 습지 및 서식지 관리분야 계획인 "HELCOM HABITAT"임.
 - 그러나 해안 및 서식지 보호를 위한 제도는 회원국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하고 있음.

(2) 개발제한선(Setback Line) 및 연안보호구역

- 발트해 회원국 중 해안선으로부터 개발제한선을 설정하여 엄격하게 연안개발을 관리하고 있는 국가는 독일, 핀란드, 폴란드, 러시아 4개국임.

51) 헬싱키 협약 관할면적 370,000km²이며, 황해는 발해만을 포함할 경우 총면적은 460,000km²로 확대됨.

52) EC와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독일,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러시아, 폴란드, 스웨덴 등 9개국이 서명당사국으로 참여하였고, 각국의 비준을 거쳐 2000년 발효되었음.

53) <http://www.helcom.fi/environment/introduction.html>

54) <http://www.helcom.fi/manandsea/fisheries.html> (2002. 10. 25)

- 개발제한선은 독일의 경우 육역과 해역을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는데, 육역의 경우 해안선으로부터 300m, 해역의 경우 100m, 500m, 1,000m로 구분하고 있음.⁵⁵⁾

<표 5-3> 발트해 연안국가의 개발제한선 현황

국가	개발제한선 현황
독일	○ 해변보호를 위해 해안으로부터 300m ○ 해양서식지 보호를 위해 해역에 대해서도 해안으로부터 100m, 500m, 1,000 이용제한 구역 설정
핀란드	○ 엄격한 개발제한선 제도는 없으나, 해안에서 100-200m
폴란드	○ 해양에서 육지방향으로 100-200m ○ 일부지역은 1,000m이며, 행위제한은 2-5km까지 가능
러시아	○ 도시외곽 1,000m 지역

- 한편, 엄격한 개발제한선은 아니지만,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이용개발이 가능한 보호구역제도는 리투아니아를 제외한 모든 회원국에서 도입하고 있음.
 - 육역 및 해역에 대해 보호구역을 지정하는 국가는 독일, 핀란드, 라트비아, 러시아, 스웨덴임.⁵⁶⁾

<표 5-4> 발트해 회원국의 연안보호구역 지정범위 현황

국가	육역(m)		해역(m)
	엄격한 보호	부분 제한	
독일	300	3,000	100~1,000
유럽연합	100~200	-	-
핀란드	50~200	-	100~200
덴마크	100~200	-	-
라트비아	300	5,000~7,000	300
리투아니아		-	-
폴란드	100~200(최대 1,000)	2,000~5,000	-
러시아	100	2,000~3,000	100
스웨덴	100~300	-	100~300

55) <http://www.coasalguides.org/icm/baltic/main.html>

56) <http://www.coasalguides.org/icm/baltic/main.html>

(3) 조직체계

- 발트해 연안국가에서 서식지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은 조직체계에서 나타나는데, HELCOM(헬싱키 협약)에서는 서식지 관리를 연안관리와 연계하여 시행하고 있음.
- 이 조직에서 운영하고 있는 실무그룹에서 관리분야는 육상기인오염원관리, 선박기인오염원관리, 유류오염방제, 서식지 보호 및 연안관리로 구분하며, 각 분야별 실무그룹 및 각 분야별 정책지원을 위한 지원그룹으로 구성되어 있음.
- 서식처 보호 및 연안관리 실무그룹(Nature Conservation and Coastal Zone Management, HELCOM Habitat)⁵⁷⁾은 천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위협종의 보호, 서식처 관리 및 보호구역 관리 등 생물종다양성보호와 지속가능한 발전과 관련한 사업을 수행하는 실무그룹임.
- 이 실무그룹의 주요 사업내용은 연안통합관리체제 구축,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 어업자원 관리, 해양포유동물 및 연어 보호 등이며, 기본적인 관리원칙으로 '생태계 접근관리 원칙'을 채택하고 있음(강대석, 남정호, 2002 참조)..
- 1994년 HELCOM의 권고사항을 토대로 133개 해양 및 연안생태지역에 대한 위협정도 평가사업을 수행하였고, 이를 토대로 1998년 적색목록을 작성하였음⁵⁸⁾. 현재 수행하고 있는 현안사업으로는 철갑상어 보호사업(Save the Common Sturgeon in the Baltic Sea), 외래종 D/B구축사업(Database on Alien Species in the Baltic Sea) 등이 있음.



[그림 5-8] HELCOM 조직체계

57) <http://www.helcom.fi/helcom/groupstaskforce/helcomhabitat.html> (2002. 10. 10)

58) "Red List of marine and coastal biotopes and biotopes complexes of the Baltic Sea, Belt Sea and Kattegat"

2) 기타 사례

(1) 덴마크

- 덴마크는 1993년 계획수립법(Planning Act)을 제정하였으며, 1994년 다시 이를 개정하였는데, 이 법률을 적용하는 지리적 범위는 육지부는 해안으로부터 3km임.
- 우리나라의 연안관리계획 수립체제와 유사하게 지방정부에서 실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는데, 연안지역 계획수립과정은 일상적인 다른 분야 계획수립과정과 통합된 방식으로 이루어짐.
- 1992년 제정한 자연보호법(Protection of Nature Act)은 도시지역 외곽에 해안에서 300m 범위의 육지부를 보호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초기에는 적용범위가 100m였으나 1999년에 300m로 확장하였음.
- 덴마크의 No-net Loss는 다른 나라에 비해 훨씬 강력한 이행규정을 담고 있는데, 2,500㎡이상의 염습지나 100㎡이상의 호수와 연못에 대해서는 mitigation을 비롯한 순손실방지 정책을 적용하고 있음.⁵⁹⁾
- 계획수립법과 자연보호법은 해역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해역에 대해서는 교통부(Ministry of Transportation) 산하의 연안관리청(Coastal Authority)이 다른 법률에 근거하여 연안보전정책을 시행함.

(2) 영국 사례

- 영국은 국가차원의 No-net loss를 법령으로 입법하여 시행하고 있지는 않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자연해안 보호 정책을 시행하고 있거나 민간단체가 이를 주요 현안으로 제기하여 활동하고 있음.
 - 영국법령이 성문법체계보다는 관습법 체계를 따르고 있지만, 성문법인 지방계획법(Town and Country Planning Act)이 제정된 1947년에 국가차원의 연안계획 수립체제를 확립한 것으로 보고 있음.⁶⁰⁾

59) http://www.ramsar.org/forum_mitigation_hugett_bis.htm

60) <http://www.unesco.org/csi/act/russia/legalpro5.htm>

- Kent지역의 해안선 272 km (170miles) 중 37%는 자연해안 보전 정책의 대상이 되어 연안보전지역(Coastal Preservation Areas)으로 지정되었음. 연안보전지역의 폭은 지역마다 다른데 해안선으로부터 274m(300yard)에서 8km(5mile)까지 다양함.
 - 연안보전지역 제도를 통해 Kent 지역의 주요 해안선은 사회경제활동을 제한하는 지역이 되었음.
- 영국의 Wales지역의 Leighton에 대한 연안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활용한 지침서 중 해변지역의 보전분야 지침서(안)는 연안후퇴선(연안보전지역)을 지정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제시하고 있음.
- 이 지침서(안)에 따르면 새로운 연안보전지역을 지정할 때 주로 연안침식, 자연재해를 핵심변수로 채택하고 있음.
 - 기간은 100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100년 동안 가능한 침식, 100년 주기 최대 태풍 재해에 의한 침식, 향후 100년 동안 해안선 상승의 잠재적 범위, 안전확보를 위한 최소 범위(20m) 등임.
- 이러한 변수를 기준으로 Leighton 지역의 연안후퇴(연안보전지역)는 해안선으로부터 최소 65m, 최대 132m로 산정되었음.
- 민간단체가 주도하는 국민신탁(National Trust)의 하나인 Neptune프로젝트는 자연해안 보전에 관한 민간영역의 활동을 보여주는 것으로, 640km(400 miles)의 해안이 보호해안이 되었음.

(3) 터어키 사례

- 터어키(면적: 780,580km², 해안선: 7,200km)는 1992년에 제정한 '연안역관리법'에 근거하여 연안후퇴(연안보전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해안선에 평행하게 지역을 구분한 다음 해안선에서 가까울수록 행위제한 정도가 증가하는 정책을 채택하고 있음.
 - 해안보전지역(shore zone), Zone A, Zone B 등 3개로 연안을 구획하는 연안후퇴(setback)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 해안보전지역(shore zone)은 해안선의 지형적 변화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며, 해양과 육지 사이에 에너지 흐름이 연속성이 확보된 지역임.

- 이 지역에서 해안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 골재채취는 금지하고 있으며, 항만, 어항 등 이용개발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토지이용 허가권권을 획득한 후에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 항만, 어항, 교각, 등대, 부두, 방파제 등 해안보호 및 공익을 위한 해안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의 설치
 - 조선, 선박의 해체, 양식 등 행위의 성격상 육상에 위치할 수 없는 행위들을 위한 시설물의 설치
- Zone A는 해안보전지역으로부터 50m 너비의 해안구역으로, 해안보전지역에서 허용가능한 이용행위를 제외한 다른 종류의 건축행위는 허용안함.
 - 보행자 접근, 도보관광, 여가목적 허용
- Zone B는 Zone A로부터 나머지 해안구역으로 최소 50m의 공간이며, 도로, 공공여가·관광시설, 하수처리시설 등에 대해서만 토지이용허가를 확보한 후에 건설 및 설치가 가능함.

(4) 일본

- 일본의 해안선 보호정책은 토지구역과 같은 물리적 형상 및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 및 인명피해 방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서식지 보전정책과 거리가 있음.
 - 자연재해방지를 위한 해안보호정책은 재해방지시설을 연안에 집중적으로 설치하여 결과적으로 자연해안 및 서식지 훼손이 나타났음.
- 일본이 전국연안을 대상으로 한 해안조사사업의 결과를 보면 자연해안의 훼손상태를 볼 수 있는데, 자연해안은 일본 본토 4개 섬에서 45% 이내 수준임.
 - 일본은 해안을 자연해안, 반자연해안, 인공해안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반자연해안은 넓은 의미의 자연해안이라고 할 수 있음.
- 세토내해(Seto Inland Sea) 연안은 고밀도 연안이용 및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공간이지만 개발압력이 형성되지 않은 해안지역이 있음.
- 이 지역은 해양스포츠, 레저목적으로 보전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해수욕장이 61개소가 있음.
 - 세토내에 연안 10개 지자체는 남아있는 자연해안을 보호하기 위한 법령을 1994년 제정하였으며(1994. 12. 31), 91개 지역이 자연해안보전지역(natural conservation coastline area)으로 지정되었음.⁶¹⁾

제4절 순손실 방지제 도입방안

- 순손실 방지제를 자연해안과 서식지 관리에 도입하는 것은 우리나라 연안관리 관련 법률과 제도 전반에 대한 변화를 필요로 함.
 - 이는 기존의 연안에 대한 자원이용, 공간의 이용 및 개발 중심의 정책 기조를 자연환경의 보전에 기초한 합리적인 이용 및 개발로 변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임.
- 이 절에서는 앞서 살펴보았던 우리나라의 자연해안 및 서식지 관리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인 “순손실 방지제”의 도입방안을 제시하였음.
- 순손실 방지제의 도입을 위해서는 순손실 방지제의 개념을 정립하고 기본방향을 제시하여야 하며, 이에 기초하여 관련 정책방향을 도출하는 것이 필요함.

1. 순손실방지제의 개념과 기본방향

- 순손실 방지제는 앞서 살펴보았던 외국의 사례에 비추어 볼 때 “현재의 자연해안 및 서식지가 더 이상 훼손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함.
- 따라서 자연해안 및 서식지의 순손실 방지제는 다음과 같이 개념을 설정할 수 있음.

‘연안과 해양에 소재하고 있는 자연해안·서식지의 다양한 가치를 보전하고 생태적 기능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자연환경 관리목표를 자연해안선의 길이, 서식지의 면적과 기능으로 설정하여 자연해안과 서식지를 관리하는 제도’

- 순손실방지제의 개념에 기초하여 자연해안 및 서식지 관리의 기본방향을 자연해안과 서식지의 상태 유지(Anti-degradation)와 건강성 증진(Enhancement)으로 설정할 수 있음.
- 자연해안 및 서식지의 순손실 방지제는 상기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 연안관리의 전반적인 정책기조의 변화를 필요로 하고, 기존의 연안지역 사회경제활동 패턴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됨.

61) <http://www.env.go.jp/en/wpaper/1994/eae2300000055.html> (05. 7. 31)

- 또한 자연해안과 서식지 손실 방지제의 도입에 필요한 기초현황자료, 자연해안과 서식지의 생태적 기능에 대한 조사연구가 부족하고, 자연해안 및 서식지의 손실 방지제에 관한 이해관계자 및 관련 부처의 인식이 미흡한 여건을 고려하여 도입해야 함.
- 따라서 자연해안 및 서식지의 손실 방지제 도입을 위한 기본원칙으로는 다음의 세가지를 제시할 수 있음.
 - 가용한 현재의 자료에 기초한 관리우선순위 설정
 - 관리우선순위에 기초한 점진적 접근
 - 합리적 정책 시행을 위한 조사연구의 강화
 - 사례지역 선정을 통한 정책정당성 확보 등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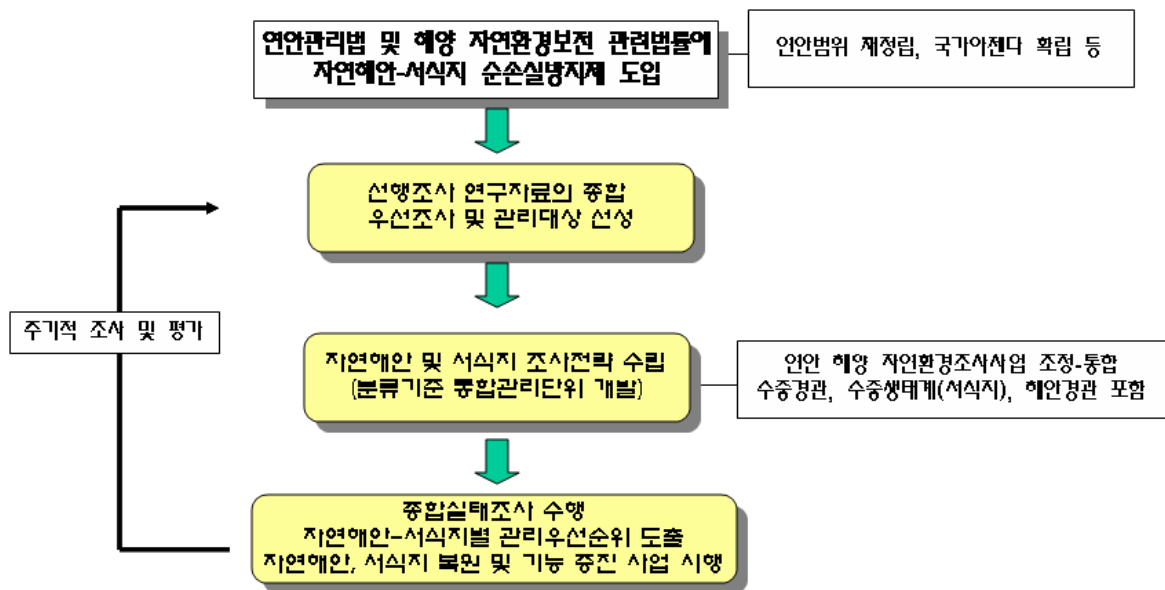
2. 손실방지제 시행을 위한 정책방향

1) 자연해안·서식지 관리정책 기초 변화

- 우리나라 자연해안과 서식지 관리정책은 '보호구역 지정과 관리'중심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전체 자연환경 및 서식지의 면적과 기능을 유지(anti-degradation)·증진(enhancement)하는 관점'에서 시행하도록 함.
- 이를 위해 공간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자연해안과 서식지를 하나의 관리단위, 정책단위로 설정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자연해안과 서식지를 일체의 조사단위로 설정하여 조사연구를 수행함.
 - 해양생물이 서식·산란하는 서식지는 자연해안과 물리적·생물학적·화학적·지질학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자연해안의 연장으로 인식하여 효과적 관리에 필요한 정책개념을 도입함.
- 자연해안·서식지 총량관리제 시행을 위해서는 해안선과 조간대 중심의 평면적 관리가 아닌 해안경관, 수중경관, 수중생태계를 포괄하는 입체적 관리가 시행되어야 함.
 - 이를 위해 기존의 평면적 관리체제, 희귀생물·유용생물 중심의 관리체제 극복 필요

2) 순손실 방지제 시행을 위한 국가추진체계 구축

- 순손실 방지제를 시행하기 위한 기본사항을 우리나라 연안관리정책에 명시하고, 세부 규정을 하위법령 또는 관련 법률에 위임하여, 「공간관리 정책」과 「자연환경보전정책」 사이의 유기적 연계와 통합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함.
- 특히 다른 법률에 의한 서식지 관리, 생태계 보호, 육상공간관리와 중복될 가능성이 있는바, 연안관리법에서는 통합과 조정을 위한 정책적 틀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함.
- 일례로 조사연구의 경우 기존 다른 법령에 의한 법정조사와 연계하는 통합조사체제를 마련하고, 현재 조사연구에 대해서도 법적 근거를 부여하도록 함.



[그림 5-9] 자연해안·서식지 순손실 방지제 도입·운영 방향

3) 연안관리 육역범위 조정

- 자연해안과 서식지는 행정적 관리단위, 법률에 의한 기계적 구분으로 분리하여 관리할 경우 공간의 생태적 연결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연안의 체계적 관리에 한계를 유발할 수 있음.

- 섬진강을 비롯하여 자연형 하구를 유지하고 있는 지역의 경우 생태적 연결성이 매우 높아 이를 통합적 관점에서 관리하지 않을 경우 해역서식지에 직접적이고 큰 영향을 주는 하천구역이 제외되므로 통합적 관리를 실현하는데 한계가 있음.
 - 우리나라 하구역은 집중적인 개발로 자연해안과 서식지가 심각하게 훼손되어 향후 이용개발행위에 대해 공간관리차원에서 합리적 조정이 필요한 지역임.
 - 하천법에 의해 배제된 지역을 연안관리범위에 포함하여 실질적 연안관리가 가능하도록 추진함.
- 따라서 이미 다른 법령에 의해 실질적으로 유역관리가 시행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초기 입법당시 고려되었던 부처간 기능존중의 원칙은 유지되어야 함.
 - 자연해안 및 연안서식지 훼손이 집중되어 정책조정이 필요한 하구역 및 특별관리해역, 자연해안과 서식지 보전이 필요한 환경보전해역을 연안의 범위에 포괄하도록 함.
- 특별관리해역 및 환경보전해역은 연안관리법에 의한 연안의 범위보다 육지부 연장이 확대되어있어, 실질적인 연안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음.
 - 따라서 개별법에 의해 실효적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동 해역을 연안관리범위로 수용하도록 함.

4) 국가아젠다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연안관리지역계획에 반영

- 현재 공유수면 및 갯벌에 대한 간척·매립의 엄격한 적용으로 중·대규모의 자연해안 및 서식지 훼손은 통제가 가능한 실정임. 그러나 소규모 개발 사업이나 점사용 형태의 공유수면매립사업은 중앙부처의 체계적 관리통제 범위 밖에 있는 한계가 있음.
- 따라서 중소규모 매립 및 점·사용 형태 매립사업의 체계적 관리 필요하며, 시범적으로는 정책실효성을 높이고 정부간 신뢰도 향상을 위해 “대규모 자연해안·서식지 추가손실 방지 국가선언”과 같은 국가아젠다를 확정하여 시행하도록 함.

5) 적극적인 복원정책 추진

- 자연해안 및 연안서식지에 대한 개념이 정의되어 있지 않고, 일반적인 공유수면 관리(해변관리 포함), 갯벌보전 및 해양생태계보전에 한정

- 지정된 공간에 대한 관리정책(site-specific approach)이 아니라, 연안이라는 공간에 대한 포괄적, 통합적 관리측면에서 접근/framework approach) 필요
- 구체적인 정책수단은 개별 법률에서 수용·근거규정을 마련하도록 하고, 연안관리법에서는 기본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함.

6) 관리체계화를 위한 지식 및 관리역량 강화

- 자연해안 및 연안서식지에 법정 조사 강화 및 관련 자료 간 통합운영 체계 구축
 - 현재 국립해양조사원이 수행하고 있는 해안선 조사의 내용과 방법을 보강하여 자연해안에 대한 조사체계를 강화하도록 함.
 - 동 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조사활동은 연안실태조사와 달리 법적 근거가 취약한 바, 매년 예산확보 여부에 따라 조사연구의 범위가 달라져 체계적인 자료의 축적에 한계가 있음.
 - 따라서 조사인력 및 예산, 관리능력을 고려하여 기본조사는 10년 단위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일본의 경우 10년 마다 조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매년 조사결과를 발표함.
 - 이를 위해 해양수산부 내의 법정조사 뿐만 아니라, 환경부가 관장하는 법률에 근거한 법정조사 시스템을 통합 운영하여 최소한 부처간 조사체계에 대해서는 조사일정, 방법, 자료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여 풍부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함.
- 자연해안·서식지의 분류는 자연해안·서식지의 단위구분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에서 출발하도록 함.
 - 단위구분을 위한 기준항목에는 해안경관 가치, 해안선의 특징(모래, 갯벌, 암반, 도로, 석축, 방파제 등), 연안육지부의 사회경제 현황에 근거한 개발압력 수준, 서식지의 기능, 수중경관 가치, 수중 해양생물종다양성 등 지형적, 물리적, 생물학적, 사회적 특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함.
 - 이런 단위 구분기준과 자연해안·서식지에 대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개별 자연해안·서식지에 대한 보호우선순위나 훼손위협정도를 산출함.
- 자연해안 및 서식지 국가통합 조사전략 수립
 - 해양수산부와 환경부로 이원화된 조사시스템의 통합
 - 일원화보다는 현재 양 부처의 고유기능은 유지하되 정책의 추진과정에서 통합, 협

력메커니즘을 구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확보(관련 법 시행령 개정)

※ 우리나라 자연해안서식지에 대한 주요 조사는 연안통합관리 계획 수립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연안실태조사(해양수산부), 습지보전법에 근거한 갯벌생태계 조사(해양수산부), 자연환경보전법에 근거한 해안자연환경조사(환경부), 특정도서 지정을 위한 무인도서 실태조사(환경부), 전국해안선 조사(국립해양조사원)가 있음.

- 관리목표를 정량적으로 설정하고, 개발사업의 인허가, 보호구역 지정, 복원사업의 우선 순위 설정 등을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의사결정지원에 필요함.

○ 관리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및 홍보활성화

- 보호구역 관리자를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프로그램 개발·운영, 지방자치단체와 현장관리자를 위한 관리매뉴얼 개발, 참여형 교육프로그램 개발, 홍보대상과 내용을 고려한 다양한 자료의 제작 배포 등

7) 연안완충대 지정(Coastal Bumper Strip, CBS, 해안보전선제도) 제도 도입

○ 자연해안 및 서식지 보호뿐만 아니라 연안재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특정지역의 일정한 구간(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지정)에 대해서는 연안완충대 지정제도를 도입하여, 현재 추진 중인 연안용도지역제 및 다른 법률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 서식지 및 생태계보전정책과 연계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함.

- 연안완충대는 해양으로부터 자연재해에 대한 경제적, 사회적 피해를 줄여 안연육역의 사회경제활동의 안전성을 높이고, 육상으로부터 해양환경 영향을 줄일 수 있는 정책수단임.

- 국가별로는 setback나 retreat로 불리기도 하지만, setback이 강력한 행위제한을 담고 있다는 부정적 인식이 있는바, 법적기능은 동일하되 명칭에서 기인하는 부정적 영향을 차단할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 자연해안 및 서식지 연안완충대 지정과정과 계획수립과정의 통합

- 연안완충대의 지정은 사유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역이해관계자의 저항을 불러올 수 있고, 이에 따라 지정하는 과정에서 이해상충이 심각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있음.

- 구체적인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연안완충대 지정정책은 해당 공간 및 주변공간을 어떻게 보전, 이용, 개발할 것인지에 대한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접근이 전제되어야 함.

- 연안완충대의 지정을 위한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 연안의 물리적, 생태적 특성을 비롯한 자연환경여건 및 사회경제적 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별로 탄력적으로 적용함.
- 미국의 North Carolina주는 연안식생이 분포하는 시작점으로부터 60feet(약 18m)까지 연안완충대 지정정책(setback)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평균 침식률의 30배 거리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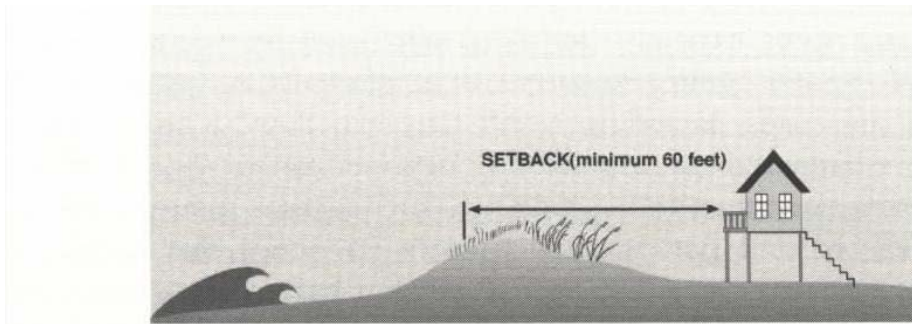


Figure 6.1. North Carolina Division of Coastal Management enforces a setback minimum of 60 feet. (From North Carolina Division of Coastal Management.)

[그림 5-10] 미국 North Carolina의 setback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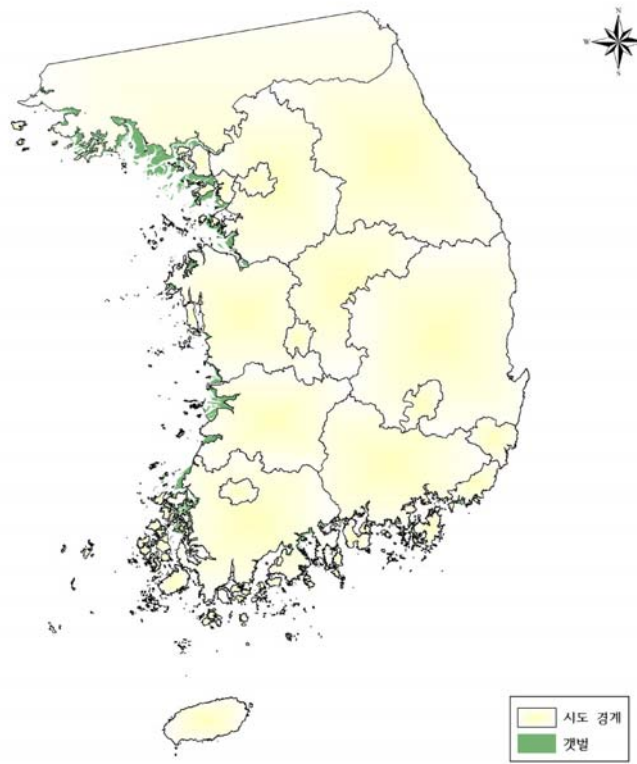
8) 관리목표 수치화보다는 정성적 목표 설정

- 현재 전국자연해안 및 서식지에 대한 실태파악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관리목표를 구체적으로 수치화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
- 물론 장기적으로는 전국, 지역별로 자연해안의 보전비율을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자연해안 및 서식지에 대한 실태조사와 현재·미래의 이용개발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1단계(향후 5년)에서는 관리목표를 정성적으로 제시하도록 함.
- 시범연안에서 시행한 결과를 토대로 정책수단, 방법, 지침을 개발하여 1단계 사업을 완료한 후에 2011년부터 타 연안으로 확대 적용도록 함.

9) 가용한 자료가 있는 해안 및 서식지에 대해 우선 시행 - 시범연안 선정

- 상기한 바와 같이 자연해안 및 서식지 손실 방지정책은 과학적이고 종합적인 조사전략에 근거한 자료의 체계적인 축적을 필요로 함.

- 현재 여건에서 순손실 방지정책을 전면적으로 시행하기에는 자료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지만, 가용한 자료가 확보되어 있거나 법적 근거를 확보한 서식지 또는 사례지역에 대해서는 우선 시행하도록 함.
 - 예를 들어 갯벌 서식지의 경우 보전을 목적으로 한 법률인 습지보전법이 존재하고, 2000년부터 실시한 조사연구를 통해 축적한 자료가 있음.
 - 즉, 전국연안의 갯벌면적 및 지역별 면적, 단위갯벌의 기능에 관한 기초자료가 확보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갯벌에 대해서는 우선 시행하도록 함.
- 우리나라 갯벌면적은 2,442km²로 국토면적 99,514km²의 2.5%이며, 영해면적의 3.4%에 해당함.



[그림 5-11] 우리나라 갯벌분포 현황

- 한편, 갯벌지역 외에도 이해상충 조정 및 정책기능의 조화가 필요한 하구역을 시범연안에 포함할 수 있음. 이는 하구역이 우리나라 연안관리의 다양한 현안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이고, 다른 연안에 비해 상대적으로 조사연구자료가 축적되어 있기 때문임.

○ 따라서 시범연안은 자료의 가용성과 지역의 대표성을 포함하여 다음과 같은 기준에 기초하여 선정하도록 함.

① 국내 연안관리 현안의 대표성 확보 여부

- 연안관리 현안이 집약되어 있어 시범사업의 결과를 다른 지역에 적용할 수 있는 시사점을 효과적으로 도출할 수 있는 지역으로 선정함.
- 연안습지가 분포한 하구역, 고밀도/저밀도 사회경제활동 지역 등 2~3개 선정

② 과학적, 절차적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 여부

- 가용한 자료의 양이 상대적으로 풍부하고, 자료의 질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지역
- 산업체, 전문연구기관, 민간단체 등 이해당사자의 합리적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관련 경험이 축적되어 있는 지역

③ 정책목표의 효과적 달성을 위한 관련 법제 적용가능성

- 시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가 가능하도록 법정 관리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거나 포함된 지역
- 해양수산부의 관련 법제(공유수면, 해역관리, 수산, 항만)를 활용하기가 용이한 지역

제 6 장

연안관리법 개정안

제6장 연안관리법 개정안

제1절 연안관리법 전부개정안

- 앞선 장에서 검토하였던 현행 연안관리법의 문제점을 전면적으로 보완하고 예측가능한 연안관리를 위하여 기존의 연안이용행태 및 미래의 연안수요를 고려한 연안관리법 전부 개정안을 마련하였음.
- 본 개정안은 연안을 용도구역으로 구분하여 이용 상의 갈등을 조정하고 계획적인 연안 이용을 실현하도록 하였으며, 연안완충대와 자연해안 및 연안서식지 순손실방지제 같은 환경친화적인 관리수단을 도입함으로써 해양국토관리의 체계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또한 연안계획(통합계획 및 지역계획)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그 수립과 승인, 집행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자체 주도의 자율적 연안관리 기반에 중점으로 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그러나 본 연안관리법 개정은 연안이용에 대한 전반적인 재조정과 합의가 동반되어야 하는 과정이므로 세부적인 시행방안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와 관계전문가를 중심으로 충분한 협의와 논의과정을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시범사업 등을 통하여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사전대응방안 마련이 요구된다고 판단됨.
- 그리고 기존에 수립된 연안관리지역계획이 큰 무리 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두어 대응시간을 부여할 필요가 있으며, 기 확정된 연안이용에 대해서는 최대한 이를 반영하여 국가정책추진을 뒷받침하되, 이를 수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 연안관리자와의 협의 과정을 두어 무리한 연안개발이나 서식지 훼손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조정해 나가야 하며, 기 설정된 규제에 더하여 추가적인 규제는 최소화 하는 방안을 고려해 나가야 할 것임. 또한 보다 과학적인 제도 도입을 위하여 관련 조사 및 정보를 체계화하여 정책의사 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연안적성평가를 도입하여 각 연안구역의 특성이 고려된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음.
- 점증하고 있는 연안재해에 대한 피해를 저감하여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보호하여 공공용재산인 바다의 공적이용을 강화하기 위하여 제한된 범위 내에서 연안완충대를 설치하

여 순응적 연안관리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이의 도입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기반을 마련하였음.



[그림 6-1] 연안관리제도 개선을 통한 해양국토 관리 개념도

연안관리법 전부개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연안의 효율적인 보전·이용 및 개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연안환경을 보전하고 연안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도모하여 연안을 쾌적하고 풍요로운 삶의 터전으로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연안”이라 함은 연안해역과 연안육역을 말한다.
2. “연안해역”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지역을 말한다.

- 가. 바닷가(「수로업무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해안선으로부터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를 말한다)
 - 나. 「수로업무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해안선으로부터 영해의 외측한계까지의 바다
3. “연안육역”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지역을 말한다.
- 가. 무인도서
 - 나. 연안해역의 육지쪽 경계선으로부터 500미터(「항만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지정항만, 「어촌·어항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어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경우에는 1천미터) 범위안의 육지지역, 「해양환경관리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환경보전해역 및 특별관리해역의 육지지역, 제8호의 규정에 따른 하구역의 육지부로서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연안통합관리계획에서 정한 지역
 - 다.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확대하여 지정한 연안육역
4. “연안환경개선사업”이라 함은 연안의 환경개선과 공공이용목적의 친수공간조성을 위하여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연안관리지역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 가. 훼손된 연안을 복원하고 기능을 증진하는 사업
 - 나. 휴식공간조성, 시민의 접근성 증진을 위한 친수공간조성사업
 - 다. 그 밖에 연안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5. “연안재해방지사업”이라 함은 해일, 파랑, 해수 또는 지반의 침식 등에 의한 연안 훼손을 방지하고 정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 가. 훼손된 해안을 정비하고 침식 등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
 - 나. 해수범람, 내수배제불량 등으로 인한 염해 및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한 사업
 - 다. 연안에서 발생하는 모래바람에 의한 가옥이나 농작물의 피해를 막기 위한 사업
 - 라. 연안해역을 정화 또는 개선할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
 - 마. 기타 연안의 재해방지를 위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6. “연안용도구역”이라 함은 효율적인 연안의 보전·이용 및 개발을 통하여 공공의 복리를 증진할 목적으로 연안의 용도를 미리 정하여 중복되지 아니하게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연안통합관리계획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연안관리지역계획으로 결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7. “연안기능구”라 함은 연안용도구역의 기능을 증진·보완하여 연안의 합리적인 보전·이용 및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연안의 이용상태 및 기능에 따라 연안관리지역계획으로 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8. “하구역”이라 함은 하천의 담수와 해수가 만나 혼합하는 공유수면 및 당해 공유수면에 영향을 미치는 육지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9. “자연해안” 및 “연안서식지”는 다음 각 목을 말한다.

가. 자연해안 : 바닷가 또는 일정구간의 연안에 인위적인 방법으로 조성된 시설, 도로 등의 구조물이 없어 자연상태의 해안선이 유지되고 있는 해안

나. 연안서식지 : 해양생물의 산란, 서식, 생장에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공간

10. “연안완충대”라 함은 연안재해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자연해안과 연안서식지의 기능을 유지·증진 및 공공의 연안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수로업무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해안선으로부터 연안육역방향으로 설정하는 연안의 일정지역을 말한다.

11. “순손실방지제”라 함은 자연해안 및 연안서식지의 다양한 가치를 보전하고 생태적 기능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연환경 관리목표를 자연해안선의 길이, 연안서식지의 면적과 기능으로 설정하여 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12. “연안정보”라 함은 연안통합관리계획 및 연안관리지역계획의 수립·관리 등 연안관리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

제3조(연안의 귀속) ①연안해역은 이를 국유로 한다.

②제30조 내지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매수·교환되는 연안육역의 토지의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가 관리청이 되는 국유재산으로 한다.

제4조(바닷가의 관리) 국가는 연안환경 및 생태계(이하 “연안환경”이라 한다)가 훼손되지 않도록 바닷가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연안관리의 기본원칙) 연안의 보전·이용 및 개발은 다음의 기본원칙에 따라야 한다.

1. 연안은 모든 국민의 자산으로서 공익에 적합하고 현재와 장래의 세대를 위하여 지속 가능한 보전·이용 및 개발되도록 할 것
2. 연안자원의 이용과 개발은 연안환경의 보전과 조화·균형을 이루도록 할 것
3. 생태적·문화적·경제적 가치가 조화롭게 공존될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관리되도록 할 것
4. 국민이 연안환경의 보전과 관리에 참여하고, 연안을 건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증진되도록 할 것

5. 연안의 이용과 개발로 인하여 발생하는 갈등은 과학적인 조사를 근거로 조정할 것
제6조(국가 등의 책무)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연안의 지속가능한 보전·이용 및 개발을 위하여 다음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 연안에서의 이용과 개발행위로 인한 연안환경의 훼손을 방지하고 연안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이용 및 개발사업의 수립·시행
2. 연안재해피해 예방 및 복구를 위한 계획의 수립·시행
3. 자연해안 및 연안서식지의 훼손을 예방하고 기능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대책의 수립·시행
4. 연안관리를 위한 조사·연구·기술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5. 훼손된 연안환경에 대한 복원·복구 대책의 수립·시행
6.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연안주민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의 수립·시행
7. 연안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통한 국민인식의 증진
8. 국민의 연안관리 참여활동 촉진
9. 연안통합관리의 실현을 위한 남북한 및 국제협력의 증진

②모든 국민은 연안의 보전·이용 및 개발을 위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는 등 연안의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연안을 보전·이용 및 개발하고자 하는 자는 연안환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주요시책의 협의 등) ①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연안의 보전·이용 및 개발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주요시책 또는 계획을 수립·시행하거나 지역·지구·구역 또는 구획 등(이하 “구역 등”이라 한다)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해양수산부장관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연안에서 보전·이용 및 개발에 관한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안통합관리계획, 연안관리지역계획 및 연안재해방지기본계획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제2장 연안의 통합관리

제8조(연안통합관리계획의 수립)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연안을 종합적으로 보전·이용 및 개발하기 위하여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연안

통합관리계획(이하 “통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통합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통합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통합계획의 내용) ①통합계획에는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안의 범위
2. 계획수립 대상연안
3. 연안관리에 관한 기본정책방향
4. 연안환경의 보전, 연안의 지속가능한 개발 등 연안의 바람직한 보전·이용 및 개발에 관한 사항
5. 연안의 복원 및 연안기능의 유지·증진에 관한 사항
6. 연안용도구역 및 연안기능구의 설정방향 및 관리목표
7. 연안완충대 설정과 자연해안 및 연안서식지의 관리방향
8. 연안환경개선사업 및 연안재해방지사업의 기본방향
9.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연안의 범위 및 계획수립 대상지역을 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행정구역 및 지형
2. 다른 법령에 의한 용도지역 등의 구분 및 토지이용 등에 관한 계획
3. 하천의 수계, 조류 및 해저지형의 특성
4. 연안환경 및 경관 등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5. 수산업·광업·관광산업 등 해역의 이용현황
6. 육상에서 발생한 오염원의 확산범위
7. 사회·경제적 활동의 연관성

제10조(통합계획의 고시 등)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통합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시·도지사는 지체 없이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관할연안에 대한 통합계획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고시·통보 및 열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연안관리지역계획의 수립 등)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연안관리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의 체계적인 수립 및 관리를 위한 지침(이하 “수립·관리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연안의 효율적인 보전·이용 및 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 통합계획의 범위 안에서 수립·관리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는 관할연안의 효율적인 보전·이용 및 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으로서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연안관리지역계획이 고시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 통합계획의 범위 안에서 2이상의 시·군·구에 대한 지역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역계획을 직접 수립할 수 있다.

④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여 지역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제50조의 규정에 따른 지역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⑤해양수산부장관이 지역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미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여 지역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⑥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지역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⑦연안의 이용 및 개발은 지역계획의 범위 내에서 실시되어야 한다.

⑧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역계획은 당해 연안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당해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시행한다.

⑨제4항 및 제5항의 관계 행정기관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지역계획의 내용) ①제11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할 연안의 범위
2. 계획수립 대상연안
3. 관할 연안의 관리에 관한 정책방향

4. 통합계획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5. 연안용도구역 및 연안기능구의 설정
6. 자연해안의 훼손 방지 및 기능의 유지·증진을 위한 대책
7. 관할 연안의 연안환경개선사업의 방향 및 추진계획
8. 그 밖에 지역계획을 수립하는 해양수산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조제3호나목 및 제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역적인 여건·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계획에서 연안육역을 확대하여 지정할 수 있다. 연안육역을 확대하여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연안의 범위설정에 대하여 지역계획 수립 전에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3조(지역계획의 고시 등)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역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보에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며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지역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이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해양수산부장관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역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14조(통합계획 등의 변경) ①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통합계획 또는 지역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그 변경을 요청하는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통합계획의 내용에 중대한 변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하여 지역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역계획의 변경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③제8조 및 제10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합계획의 변경의 경우에 이를 각각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0조의 규

정에 한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제11조제4항 내지 제6항 및 제13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역계획의 변경의 경우에 이를 각각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3조의 규정에 한하여 이를 준용한다.

⑤제11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수립한 지역계획의 변경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시장·군수·구청장이 이를 시행한다.

제15조(다른 계획 등과 연계) ①통합계획은 「국토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환경종합계획 및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 「해양환경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해양환경관리종합계획,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따른 해양생태계의 보전·관리기본계획, 「습지보전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습지보전기본계획, 「어장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어장관리기본계획,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등과 연계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②통합계획과 지역계획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의하여 수립되는 연안해역과 연안육역의 보전·이용 및 개발에 관한 계획의 기초가 된다. 다만, 연안육역의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련계획을 고려하여 통합계획과 지역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연안환경을 보전하고 연안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계획이나 지정된 구역 등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④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연안의 보전·이용 및 개발과 관련되는 계획을 수립·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계획이 확정되는 경우 지체 없이 해양수산부장관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해양수산부장관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연안의 보전·이용 및 개발과 관련되는 계획과 지정된 구역 등이 변경 또는 확정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내용에 적합하게 통합계획 또는 지역계획을 변경하고 이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3장 연안용도구역의 지정 및 관리

제16조(연안의 용도구분) 연안은 이용실태, 자연환경적 특성 및 장래의 이용방향 등을 고

려하여 다음과 같은 연안용도구역으로 구분한다.

1. 이용연안구역 :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이용 또는 개발이 확정되어 있거나 개발이 예상되는 구역
2. 특수연안구역 : 다른 법률에 따라 군사시설 및 국가 중요시설의 보호를 위하여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구역 또는 해양의 환경 및 생태계가 훼손되어 다른 법률에서 별도로 지정하거나 지정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구역
3. 보전연안구역 :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연안환경 및 자원의 보호, 해양문화의 보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정하거나 지정할 필요가 있는 구역
4. 관리연안구역 : 이용 또는 개발의 용도가 정해지지 않았거나 다른 법률에 의하여 구역 등이 중복 지정되어 이의 조정이 필요한 구역 또는 용도지정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구역

제17조(연안용도구역의 관리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연안용도구역 및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연안기능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8조(연안용도구역의 지정 등) ①연안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은 연안관리지역계획으로 결정한다.

②연안용도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연안기능구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19조(다른 법률에 의한 구역 등의 연안용도구역 지정) ①다음 각 호에 따라 지정 또는 고시된 구역 등은 이 법에 따른 이용연안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1. 「항만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 항만구역 및 「신항만건설촉진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항만건설예정지역
2. 「어촌·어항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어항구역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및 지방산업단지
4. 「골재채취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골재채취단지
5.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해저광구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을 제외한 지역
7.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항만구, 항로구, 어항구, 레저관광구, 해수욕장구, 광물자원구

8.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역

②다음 각 호에 따라 지정 또는 고시된 구역 등은 이 법에 따른 특수연안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1. 「군사시설보호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군사시설보호구역
2. 「해양환경관리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특별관리해역
3.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예정구역
4.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환경관리구, 해양조사구, 해양투기구, 재해관리구, 군사시설구 및 산업시설구
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역

③다음 각 호에 따라 지정 또는 고시된 구역 등은 이 법에 따른 보전연안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및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과 같은 법제40조의 규정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
2. 「농지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3. 「산지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보전산지
4.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해양생태계보호구역
5. 「해양환경관리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환경보전해역
6.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
7. 「습지보전법」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습지보호구역
8.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특정도서
9. 「자연공원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자연공원
10.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수산생물자원보호구, 생태보호구, 경관보호구, 공원구 및 어장구
11.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역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거나 어느 하나의 연안용도구역으로 결정하기 곤란한 연안 또는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이용유보구는 관리연안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구역 등의 지정이 해제되거나 개발이 완료되는 경우에는 평가를 통하여 연안용도구역 및 연안기능구를 변경할 수 있다.

⑥제5항의 규정에 따른 평가방법 및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연안용도구역의 평가 등)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연안용도구역을 지정하기 위하여 연안의 특성, 입지 또는 활용가능성 등을 고려한 연안의 공간적성에 대한 평가(이하 “연안공간적성평가”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연안공간적성평가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연안용도구역 및 연안기능구의 준수 등) ①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연안에 구역 등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연안용도구역 및 연안기능구의 지정목적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연안용도구역의 범위 안에서 다른 법률에 의하여 구역 등을 지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2조(다른 법률에 의한 연안용도구역의 지정·변경 제한) ①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따른 연안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대한 연안관리지역계획의 결정을 의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계획을 허가·인가·승인 또는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당해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당해 시장·군수·구청장의 협의 또는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는 경우에는 제21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3조(연안기능구의 지정) ①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 또는 관계 법률에 따라 지정된 구역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안기능구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안기능구를 중복하여 지정할 수 있다.

1. 항만구 : 항만건설과 기능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능구
2. 항로구 : 선박의 안전한 항해를 위하여 필요한 기능구
3. 어항구 : 어항건설과 기능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능구
4. 레저관광구 : 연안에서의 레저관광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능구
5. 해수욕장구 : 해수욕장 기능의 유지를 위하여 고시된 기능구
6. 광물자원구 : 광물 또는 골재자원 채취를 위하여 필요한 기능구

7. 환경관리구 : 해수의 수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능구
8. 수산생물자원보호구 : 수산자원의 보호와 육성이 필요한 기능구
9. 생태보호구 : 연안서식지 또는 희귀해양생물의 서식지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능구
10. 해양조사구 : 해수수질 또는 해양생태계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기능구
11. 경관보호구 : 해안, 해상, 해중 또는 해저의 경관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기능구
12. 해양투기구 : 해양투기를 위하여 필요한 기능구
13. 공원구 : 법정공원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능구
14. 재해관리구 : 해일, 파랑, 해수, 지반의 침식 또는 적조 등 연안재해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관리가 필요한 기능구
15. 어장구 : 해변, 마을, 양식 등 어장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능구
16. 군사시설구 : 군사시설의 보호에 필요한 기능구
17. 산업시설구 : 발전소 등 에너지관련시설, 유류비축시설 등 국가기간산업시설의 유지에 필요한 기능구
18. 이용유보구 : 중복이용으로 인하여 조정이 필요하거나 용도가 확정되지 못한 기능구
19.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능구

②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연안기능구를 지역계획에서 다시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연안기능구를 세분하는 경우에는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중복지정된 연안기능구는 제2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정절차를 거치되,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용유보구로 지정한다.

제24조(2이상의 연안기능구에 걸치는 연안에 대한 적용기준) ①연안이 2이상의 연안기능구에 걸치는 경우 그 면적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인 부분에 대하여는 그 구역의 가장 넓은 면적이 속하는 연안기능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환경보호구, 수산생물보호구, 생태보호구 및 경관보호구(이하 "보호구 등"이라 한다)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그 연안기능구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당해 보호구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연안을 활용할 수 있는 연안기능구의 우선이용순위를 정하여 중복지정으로 인하여 발생될 수 있는 갈등을 최소화하도록 조정한다.

③연안기능구의 우선이용순위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이용·개발행위 등의 협의) ①이용연안구역·특수연안구역·보전연안구역에서의 보전·이용 및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행정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제19조제1항 내지 제3항의 연안용도구역을 구성하는 각 구역 등 및 연안기능구를 결정하는 관계 법률에서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한 미리 당해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관리연안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당해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2. 토지의 형질변경
3. 토석의 채취
4. 연안 식생의 제거 및 식재
5. 연안해역에서의 이용·개발행위
6.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③제2항의 규정은 협의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협의하지 않고 이를 시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 및 당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1.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2. 국가안보상 긴급히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른 법률에 의하여 당해 시장·군수·구청장의 협의 또는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이용·개발행위 등의 협의절차) ①제2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연안의 보전·이용 및 개발행위에 대한 협의를 하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연안보전·이용·개발계획서를 첨부한 협의요청서를 당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전·이용 및 개발행위의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협의 또는 승인을 얻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2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협의를 완료한 후 협의대상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는 이용·개발행위 등의 협의를 다시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보전·이용·개발행위 등의 협의기준)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협의요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협의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1. 연안용도구역별 특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용·개발행위의 규모에 적합할 것
2. 통합계획 및 지역계획의 내용에 적합할 것
3. 연안환경개선사업 및 연안재해방지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을 것
4. 주변해역의 환경, 생태계 및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5. 기존의 이용·개발행위와 병존가능하고 행위로 인한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6.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부합할 것

제4장 해안 및 연안서식지 관리

제28조(연안완충대의 설정)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해일, 파랑, 해수 또는 이로 인한 지반의 침식 등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연안의 자연건강성을 유지하며 공공의 연안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안완충대를 설정할 수 있다.

②연안완충대를 설정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6조 및 제54조의 규정에 따른 조사 및 다른 법률에 의한 조사의 결과를 고려하여 설정하여야 하며, 당해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중앙연안관리심의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연안완충대의 설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자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④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연안완충대를 설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시·도지사는 지체 없이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관할연안에 설정된 연안완충대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9조(연안완충대의 관리) ①연안완충대는 제1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전연안구역으로 설정하도록 한다.

②누구든지 연안완충대 안에서는 연안환경의 변화를 야기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해양과 육상의 생태적 연계성을 현저하게 훼손할 우려가 높은 인공구조물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조물의 설치
2. 쓰레기 또는 오염물질을 쌓아두거나 이를 해역으로 유출시키는 행위
3. 광물, 골재 등 토석의 채취나 지형변화를 발생시키는 행위
4. 연안완충대의 관리를 위한 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5. 그 밖에 연안완충대의 관리를 위하여 금지하여야 할 행위로서 풀·나무의 채취 및 벌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연안완충대의 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행위 또는 시설의 설치
2. 다른 법률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실시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인가·허가 또는 승인 등을 하는 경우.
3. 연안완충대를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또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④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협의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1. 군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해가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⑤연안완충대의 설정방법 등 연안완충대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제26조제3항의 규정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협의에 이를 준용한다.

제30조(연안완충대 설정에 따른 토지의 매수) ①제28조의 규정에 따른 연안완충대의 설정으로 토지를 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히 감소된 토지 또는 당해 토지의 사용 및 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이하 “매수대상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

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당해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1. 연안완충대 설정 당시부터 당해 토지를 계속 소유한 자
 2. 연안완충대의 설정으로 당해 토지의 사용·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기 전에 당해 토지를 취득하여 계속 소유한 자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자로부터 당해 토지를 상속받아 계속 소유한 자
-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매수청구를 받은 토지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준에 해당되는 때에는 이를 매수하여야 한다.
- ③매수대상토지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매수청구의 절차 등)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토지의 매수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매수대상여부 및 매수예상가격 등을 매수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매수대상토지로 통보를 한 때에는 5년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매수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매수대상토지를 매수하여야 한다.

③매수대상토지를 매수하는 가격(이하 “매수가격”이라 한다)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당해 토지의 위치·형상·환경 및 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매수한 토지는 해양수산부의 재산으로 귀속된다.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토지매수방법 및 절차, 매수가격의 산정시기 및 산정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감정평가비용의 부담)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매수가격의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수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매수청구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정평가에 소요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수청구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매수예상가격에 비하여 매수가격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 하락한 경우
2. 법령의 개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 매수청구의 사유가 소멸된 경우
- ③매수청구인이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을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세채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제33조(협이에 따른 토지 등의 매수·교환)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연안완충대 설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연안완충대안의 토지 및 그 토지의 정착물(이하 이 조에서 “토지·정착물”이라 한다)을 매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연안완충대안의 토지·정착물을 협의매수하는 경우의 매수가격의 산정시기·방법 및 기준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 제70조, 제71조, 제74조 내지 제77조, 제78조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효과적인 해안의 보호를 위하여 연안완충대안의 사유지와 바닷가 중 해양수산부 소유의 국유지를 국유재산법 제4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환할 수 있다.

④제31조제4항의 규정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협의 또는 교환되는 토지·정착물의 귀속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34조(연안서식지의 보전) 국가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연안서식지를 보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 간석지 및 하구역 등 연안습지
2. 산호초 및 해초군락
3. 해안사구
4. 염생식물군락지
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안서식지

제35조(순손실방지제 등)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자연해안과 연안서식지의 효과적인 보전과 연안환경의 기능 증진 등을 위하여 자연해안 및 연안서식지 순손실방지제(이하 “순손실방지제”라고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국가는 훼손된 자연해안을 복원하고 순손실방지제의 정책목표 달성을 위하여 연안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자연해안의 복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순손실방지제의 시행과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복원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자연해안 관리목표 설정)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연해안 순손실방지제의 실시를 위하여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중앙연안관리심의회 심의를 거쳐 자연해안의 관리목표를 설정하여야 한다.

-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연안의 이용·관리실태, 권역별·지역별 자연해안 분포현황 등을 고려하여 자연해안 관리목표를 권역별·지역별로 구분하여 설정할 수 있다.
-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자연해안 관리목표를 설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④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연해안의 관리목표 설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⑤자연해안 실태조사, 자연해안 관리목표 설정기준 등 자연해안 관리목표 설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연안환경개선사업 및 연안재해방지사업

제37조(연안환경개선사업시행자) ①연안환경개선사업은 지역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 이를 수행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규모이상의 사업
2. 2이상의 광역시·도에 걸쳐 시행할 필요가 있는 사업
3. 「항만법」에 따른 지정항만구역 및 「어촌·어항법」에 따른 국가어항구역 안에서의 사업
4. 그 밖에 공공의 이해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연안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닌 자가 연안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지정을 받아 실시하여야 한다.

1. 「항만법」에 따른 지정항만구역 및 「어촌·어항법」에 따른 국가어항구역 안의 연안 : 해양수산부장관
2. 제1호외의 연안 :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연안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인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제38조(연안환경개선사업실시계획) ①제37조의 규정에 따른 연안환경개선사업시행자가 연안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역계획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안환경개선사업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해양수산부 장관이 아닌 연안환경개선사업시행자가 연안환경개선사업실시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양수산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해양수산부 장관은 직접 연안환경개선사업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연안환경개선사업실시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 장관이 직접 수립한 연안환경개선사업실시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해양수산부 장관은 직접 연안환경개선사업실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연안환경개선사업실시계획을 승인한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39조(연안재해방지기본계획의 수립) ①해양수산부 장관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연안의 재해방지를 위하여 10년마다 연안재해방지기본계획을 수립한다.

②해양수산부 장관은 연안재해방지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중앙연안관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해양수산부 장관은 연안재해방지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40조(연안재해방지기본계획의 내용) 연안재해방지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안재해방지사업의 기본 방향
2. 연안재해방지사업의 중장기 계획
3. 연안재해방지사업의 연도별 내용 및 추진계획
4. 연안재해방지를 위한 연안이용행위간 조정계획
5. 그 밖에 해양수산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1조(연안재해방지기본계획의 변경) ①해양수산부 장관은 연안의 여건변화 등으로 인하여 연안재해방지기본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변경을 요청하는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②제3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연안재해방지기본계획의 변경

에 관하여 이를 각각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긴급한 경우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한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수립·고시된 연안재해방지기본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연안재해방지기본계획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2조(연안재해방지사업의 시행자) ① 「항만법」에 따른 지정항만 구역 안과 「어촌·어항법」에 따른 국가어항구역 안에서의 연안재해방지사업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이를 시행한다. 다만,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연안재해방지사업의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이를 시행할 수 있다.

②제1항외의 연안에 대한 연안재해방지사업은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이를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이를 시행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규모이상의 사업
2.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사업
3. 2이상의 광역시·도에 걸쳐 시행할 필요가 있는 사업
4. 기타 공공의 이해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연안재해방지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닌 자가 연안재해방지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지정을 받아 실시하여야 한다.

1. 「항만법」에 따른 지정항만 구역 및 「어촌·어항법」에 따른 국가어항구역 안의 연안 : 해양수산부장관
2. 제1호외의 연안 : 제2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연안재해방지사업의 시행자인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제43조(연안재해방지사업실시계획의 수립 등) ①제42조의 규정에 따른 연안재해방지사업의 시행자가 연안재해방지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는 연안재해방지기본계획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안재해방지사업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이 아닌 연안재해방지사업의 시행자가 연안재해방지사업실시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긴급한 경우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직접 연안재해방지사업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연안재해방지사업실시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이 직접 수립한 연안재해방지사업실시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④해양수산부장관은 직접 연안재해방지사업실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연안재해방지사업실시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4조(연안의 긴급 방재대책)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해일, 파랑, 해수 또는 지반의 침식 등에 의한 연안재해로 긴급한 방재대책이 요구될 경우에는 제4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안의 긴급 방재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긴급방재대책을 수립·시행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5조(인·허가 등의 의제) ①해양수산부장관이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연안환경개선 사업실시계획을 공고하거나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연안재해방지사업실시계획을 고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인가·결정·면허·협의·동의·승인·신고 또는 해제 등(이하 이 조에서 “인·허가 등”이라 한다)이 행하여진 것으로 보며,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의한 인·허가 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건축허가 등의 동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신고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조소 등의 설치허가
2. 「농어촌정비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의 사용승인
3. 「농지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4. 「사방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사방지안에서의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사방지의 지정해제
5.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채석허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같은 법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 같은 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른 보안림의 지정해제
6. 「야생동·식물보호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른 시·도야생동·식물보호구역 및 야생동·식

물보호구역 지정의 해제

7. 「초지법」 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초지의 전용허가·신고 또는 협의
8. 「수산업법」 제69조의 규정에 따른 보호수면안에서의 공사시행의 승인
9. 「전기사업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른 전기사업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및 같은 법 제62조의 규정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의 규정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의 규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의 규정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11. 「하수도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허가
12. 「도로법」 제8조의 규정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 등의 허가, 같은 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
13.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사도의 개설 등의 허가
14.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 및 사용허가, 같은 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15.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매립면허, 같은 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및 같은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16. 「소하천정비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
17. 「골재채취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18.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무연분묘의 개장허가
19.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1항 단서조항의 규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의 허가
20. 「군사시설보호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과의 협의
21. 「군용항공기지법」 제16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과의 협의
22. 「해군기지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과의 협의
2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도시공원 안에서의 점용의 허가

24. 「해양환경관리법」 제84조의 규정에 따른 해역이용협의

25.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해양보호구역의 지정 해제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직접 연안환경개선사업 또는 연안재해방지사업의 실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거나, 제38조제2항 또는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연안환경개선사업 또는 연안재해방지사업의 실시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연안환경개선사업실시계획 또는 연안재해방지사업실시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협의와 관련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은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인·허가 등의 의제를 위한 처리기준 및 절차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처리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이를 통합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46조(토지 등의 수용·사용) ①연안환경개선사업시행자 또는 연안재해방지사업시행자는 연안환경개선사업 또는 연안재해방지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따른 토지·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토지·물건 또는 권리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③제38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공고 또는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고시가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의 시행기간 내에 할 수 있다.

제47조(비용의 부담) ①연안환경개선사업과 연안재해방지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경비는 사업시행자가 이를 부담한다.

②정부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담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③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연안환경개선사업 또는 연안재해방지사업이 아닌 공사 또는 행위로 인하여 연안환경개선사업 또는 연안재해방지사업이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연안환경개선사업 또는 연안 재해방지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인을 제공한 공사의 시행자 또는 행위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따라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가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그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6장 연안관리심의회 및 시·군·구 연안관리협의회

제48조(중앙연안관리심의회) ①연안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소속하에 중앙연안관리심의회를 둔다.

1. 통합계획 및 지역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연안재해방지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3. 연안용도구역 및 연안기능구의 지정·변경에 관한 사항
4. 자연해안 및 연안서식지 순손실방지제에 관한 사항
5. 지역계획으로 반영된 연안환경개선사업의 사업비 배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구성, 심의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소위원회) ①제48조의 규정에 따른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원활한 심의·조정을 위하여 중앙연안관리심의회에 다음 각 호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연안계획 소위원회
2. 공유수면매립 소위원회
3. 연안정비 소위원회

②중앙연안관리심의회 및 소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및 연안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소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③소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심의범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0조(지역연안관리심의회) ①지역계획의 수립·변경 그 밖에 관할 연안의 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지사소속하에 지역연안관리심의회를 둔다.

②지역연안관리심의회의 기능,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51조(시·군·구 연안관리협의회)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한 의견수렴 및 자문을 위하여 그 소속 하에 시·군·구 연안관리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지역계획의 수립·변경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관할연안에서의 이용·개발행위의 승인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관할연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과 시·도지사는 시·군·구 연안관리협의회가 활성화되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③ 시·군·구 연안관리협의회의 기능,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52조(연안청지기)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연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안청지기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연안청지기의 자격, 위촉방법 및 직무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장 연안정보체계의 구축 등

제53조(연안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통합계획, 지역계획 또는 연안관리정책의 합리적인 수립과 집행을 위하여 연안의 지형·지물 등의 위치 및 속성, 연안이용, 해안선 등에 대한 다양한 지리정보와 항만·어항·도로·산업·도시·해양자원 등 인문·사회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연안정보체계를 구축·관리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연안현황을 조사하고 이를 지도로 제작하여 통합계획 또는 지역계획과 각종 연안이용계획의 수립과 집행 등을 위한 자료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54조(연안기본조사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연안의 효율적인 관리와 정보의 수집을 위하여 5년마다 연안의 현황에 관한 정기조사(이하 “연안기본조사”라고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연안기본조사의 내용 중 자연해안, 바닷가 현황 등에 대한 조사측량은 10년마다 실시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결과 자연적 또는 인위적 요인으로 인하여 해안이나 연안환경 등의 변화가 뚜렷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보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연안환경개선사업 또는 연안재해방지사업 등을 위하여 특별한 관

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정밀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해양수산부장관은 연안기본조사 등을 실시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관련 국가조사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한다.

⑤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⑥시·도지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에 대한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계획 및 조사결과에 관하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조사결과에 따라 연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⑦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의 내용,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5조(연안백서 등의 발간)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매년 연안의 현황에 대한 백서와 통계를 발간할 수 있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백서와 통계의 발간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연안백서 및 통계의 내용,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6조(연안정보의 운영) ①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하여 연안정보체계의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연안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54조의 규정에 따른 각종 조사의 실시에 관한 사항
2. 제55조의 규정에 따른 연안백서 및 통계의 작성·관리
3. 연안관리정보시스템의 구축, 관리 및 정보의 현행화
4. 그 밖에 효율적인 연안정보의 관리를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제53조 및 제56조의 규정에 따른 연안정보체계의 구축과 운영 및 전문기관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장 보칙

제57조(연안의 주기적 점검)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통합계획, 지역계획 및 연안재해방지기본계획의 시행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지역계획의 이행실태에 관한 자체평가보고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점검 및 평가 결과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시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그 조치계획 및 조치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점검 및 평가결과를 연안환경개선사업 및 연안재해방지사업의 수립·시행, 「어촌·어항법」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의 수립, 「어장관리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어장관리특별관리해역의 지정에 반영하도록 한다.

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점검의 내용·방법, 평가의 범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8조(토지 등에의 출입 등) ①연안환경개선사업시행자 또는 연안재해방지사업시행자와 제54조의 규정에 따른 조사 및 제57조의 규정에 따른 점검을 실시하는 공무원(이하 “연안사업시행자 등”이라 한다)은 연안환경개선사업이나 연안재해방지사업 또는 연안의 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이 점용하는 토지나 연안해역(이하 이 조에서 “토지 등”이라 한다)에 출입(조사관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재료적치장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사용 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죽목·토석 기타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타인이 점용하는 토지 등에 출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출입하고자 하는 날의 5일전까지 그 점유자에게 그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그 점유자가 현장에 없거나 주소불명으로 그 동의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읍·면·동의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하며, 게시 또는 공고한 후 14일이 경과한 때에는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본다.

③일출 전·일몰 후에는 토지 등의 점유자의 승낙 없이 택지 또는 담장이나 울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 등에 출입 할 수 없다.

④연안사업시행자 등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타인의 토지를 재료적치장 또는 임시도로

로 일시사용하거나 죽목·토석 기타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는 경우에는 토지 또는 장애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토지 또는 장애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을 알 수 없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토지의 점유자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출입·일시사용 및 장애물의 변경·제거행위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지 못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59조(손실보상) ①연안사업시행자 등은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는 때에는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연안사업시행자 등과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제60조(권한의 위임·위탁) ①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그 소속기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57조의 규정에 따른 연안의 주기적 점검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자원의 보전 및 이용 등에 관한 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61조(자료제출 협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제8조제3항, 제28조제3항, 제36조제2항, 제54조제5항, 제55조제2항 및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2조(연안의 이용·개발행위 등의 사후관리) ①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2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협의나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허가·면허·인가·승인 등(이하 이 조에서 “허가 등”이라 한다)을 하거나 협의내용을 반영하지 아니하고 허가 등을 한 때 또는 피허가자 등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협의를 한 때에는 그 허가 등의 취소, 사업의 중지, 공작물의 철거·운영정지 및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해당 행정기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행정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에 따

라야 한다.

②제1항의 해당 행정기관은 제25조제1항 및 제2항, 제29조제3항에 따른 협의의견을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하며, 피허가자 등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명령하여야 한다.

제9장 벌칙

제63조(벌칙) ①연안완충대 안에서 제29조제2항 각 호의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25조 제1항 및 제2항,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협의를 하지 아니하거나(협의를 하였으나 협의를 완료되지 않은 경우 포함) 협의내용을 위반하여 이용 또는 개발행위 등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4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에 종업원이 그 법인이나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3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과한다.

제65조(과태료) ①정당한 사유 없이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출입, 일시사용 및 장애물의 변경·제거를 방해 또는 거부한 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안관리지역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수립된 연안관리지역계획은 이 법에 의하여 새로이 수립 또는 변경되기 전까지는 이 법에 의하여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2절 연안관리법 신구법 대비표(안)

현 행	개정안(1차협의)	개정안(2차협의)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p>제1조(목적) 이 법은 연안의 효율적인 보전·이용 및 개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연안환경을 보전하고 연안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도모하여 연안을 쾌적하고 풍요로운 삶의 터전으로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현행과 같음)</p>	<p>제1조(목적) (현행과 같음)</p>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연안"이라 함은 연안해역과 연안육역을 말한다.</p> <p>2. "연안해역"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지역을 말한다.</p> <p>가. 바닷가(만조수위선으로부터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를 말한다)</p> <p>나. 만조수위선으로부터 영해의 외측한계까지의 바다</p> <p><신설></p> <p>3. "연안육역"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지역을 말한다.</p> <p>가. 무인도서</p> <p>나. 연안해역의 육지쪽 경계선으로부터 500미터</p>	<p>제2조(정의) ----- -----.</p> <p>1. (현행과 같음)</p> <p>2. -----.</p> <p>가. -----(수로업무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해안선-----)</p> <p>나. 해안선-----</p> <p>다. 제8호의 규정에 따른 하구역의 공유수면</p> <p>3. (현행과 같음)</p> <p>가. (현행과 같음)</p> <p>나 .</p>	<p>제2조(정의) ----- -----.</p> <p>1. (현행과 같음)</p> <p>2. -----.</p> <p>가.-----([수로업무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해안선-----)</p> <p>나. [수로업무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해안선-----</p> <p>다. 제8호의 규정에 따른 하구역의 공유수면</p> <p>3. (현행과 같음)</p> <p>가. (현행과 같음)</p> <p>나 .</p>

현행	개정안(1차협의)	개정안(2차협의)
<p>(항만법에 의한 지정항만, 「어촌·어항법」에 따른 국가어항 또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천미터) 범위안의 육지지역(하천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하천구역을 제외한다)으로서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연안통합관리계획에서 정한 지역</p> <p><신설></p> <p><신설></p> <p>가.~라. <신설></p>	<p>----- ----(「항만법」 제3조의 규정-----, -----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국가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 육지지역, 「해양오염방지법」 제4조의4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환경보전해역 및 특별관리해역의 육지지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하구역의 육지부로서 제8조----- ----- 다.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확대하여 지정한 연안육역 4.“연안환경개선사업”이라 함은 연안의 환경개선과 공공이용목적의 친수공간조성을 위하여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연안관리지역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훼손된 연안서식지를 복원하고 기능을 증진하는 사업 나. 연안경관을 보전하기 위한 사업 다. 휴식공간조성, 시민의 접근성 증진을 위한 친수공간조성사업</p>	<p>----- ----- (「항만법」 제3조의 규정-----, ----- -----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국가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 육지지역, 「해양환경관리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환경보전해역 및 특별관리해역의 육지지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하구역의 육지부로서 제8조----- ----- 다.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확대하여 지정한 연안육역 4.“연안환경개선사업”이라 함은 연안의 환경개선과 공공이용목적의 친수공간조성을 위하여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연안관리지역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훼손된 연안을 복원하고 기능을 증진하는 사업 (삭제) 나. 휴식공간조성, 시민의 접근성 증진을 위한 친수공간조성사업</p>

현 행	개정안(1차협의)	개정안(2차협의)
<p>4. <u>"연안정비사업"이라 함은 연안에서 시행하는 다음 각목의 사업으로서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u></p> <p><u>가. 해일, 파랑, 해수 또는 지반의 침식등으로부터 해안을 보호하고 훼손된 해안을 정비하는 사업</u></p> <p><u>나. ~다 <신설></u></p> <p><u>나. 연안해역의 정화, 폐선의 제거등 연안해역을 보전 또는 개선하는 사업</u></p> <p><u>다. 휴식공간을 조성하는 등 연안을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u></p> <p><신설></p> <p><신설></p>	<p>라. 그 밖에 연안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사업</p> <p>5. "연안재해방지사업"----- 해일, 파랑, 해수 또는 지반의 침식 등에 의한 연안 훼손을 방지하고 정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다음 각 목의 -----.</p> <p>가. 훼손된 해안을 정비하고 침식 등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p> <p>나. 해수범람, 내수배제불량 등으로 인한 염해 및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한 사업</p> <p>다. 연안에서 발생하는 모래바람에 의한 가옥이나 농작물의 피해를 막기 위한 사업</p> <p>라. -----을 정화 또는 개선할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p> <p>다. (삭제)</p> <p>마. 기타 연안의 재해방지를 위해 대통령이 정하는 사업</p> <p>6. "연안용도구역"이라 함은 효율적인 연안의 보전·이용 및 개발을 통하여 공공의 복리를 증진할 목적으로 연안의 용도를 미리 정하여 중복되</p>	<p><u>다. 그 밖에 연안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사업</u></p> <p>5. "연안재해방지사업"----- 해일, 파랑, 해수 또는 지반의 침식 등에 의한 연안 훼손을 방지하고 정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다음 각 목의 -----.</p> <p>가. 훼손된 해안을 정비하고 침식 등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p> <p>나. 해수범람, 내수배제불량 등으로 인한 염해 및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한 사업</p> <p>다. 연안에서 발생하는 모래바람에 의한 가옥이나 농작물의 피해를 막기 위한 사업</p> <p>라. -----을 정화 또는 개선할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p> <p>다. (삭제)</p> <p>마. 기타 연안의 재해방지를 위해 대통령이 정하는 사업</p> <p>6. "연안용도구역"이라 함은 효율적인 연안의 보전·이용 및 개발을 통하여 공공의 복리를 증진할 목적으로 연안의 용도를 미리 정하여</p>

회 행	개정안(1차협의)	개정안(2차협의)
<신설>	지 아니하게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연안통합관리 계획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연안관리지역계획으로 결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중복되지 아니하게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연안통합관리계획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연안관리지역계획으로 결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신설>	7.“연안기능구”라 함은 연안용도구역의 기능을 증진·보완하여 연안의 보전·이용 및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연안의 이용상태 및 기능에 따라 연안관리지역계획으로 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7.“연안기능구”라 함은 연안용도구역의 기능을 증진·보완하여 연안의 보전·이용 및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연안의 이용상태 및 기능에 따라 연안관리지역계획으로 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신설>	8.“하구역”이라 함은 하천의 담수와 해수가 만나 혼합하는 공유수면 및 당해 공유수면에 영향을 미치는 육지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8.“하구역”이라 함은 하천의 담수와 해수가 만나 혼합하는 공유수면 및 당해 공유수면에 영향을 미치는 육지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신설>	9.“자연해안” 및 “연안서식지”는 다음 각 목을 말한다.	9.“자연해안” 및 “연안서식지”는 다음 각 목을 말한다.
가. ~나 <신설>	가. 자연해안 : 바닷가 또는 일정구간의 연안에 인위적인 방법으로 조성된 시설, 도로 등의 구조물이 없어 자연상태의 해안선이 유지되고 있는 해안	가. 자연해안 : 바닷가 또는 일정구간의 연안에 인위적인 방법으로 조성된 시설, 도로 등의 구조물이 없어 자연상태의 해안선이 유지되고 있는 해안
<신설>	나. 연안서식지 : 해양생물의 산란, 서식, 생장에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공간	나. 연안서식지 : 해양생물의 산란, 서식, 생장에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공간
<신설>	10.“연안완충대”라 함은 연안재해로부터 국토를	10.“연안완충대”라 함은 연안재해로부터 국

회 행	개정안(1차협의)	개정안(2차협의)
<p data-bbox="235 603 324 635"><신설></p> <p data-bbox="235 842 324 874"><신설></p>	<p data-bbox="860 368 1444 539">보전하고 자연해안과 연안서식지의 기능을 유지·증진 및 공공의 연안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해안선으로부터 일정거리에 설정하는 육지부를 말한다.</p> <p data-bbox="860 603 1444 826">11.“순손실방지제”라 함은 자연해안 및 연안서식지의 다양한 가치를 보전하고 생태적 기능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연환경 관리목표를 자연해안선의 길이, 연안서식지의 면적과 기능으로 설정하여 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p> <p data-bbox="860 842 1444 970">12.“연안정보”라 함은 연안통합관리계획 및 연안관리지역계획의 수립·관리 등 연안관리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p>	<p data-bbox="1480 368 2027 587">토를 보전하고 자연해안과 연안서식지의 기능을 유지·증진 및 공공의 연안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수로업무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해안선으로부터 연안육역방향으로 설정하는 연안의 일정지역을 말한다.</p> <p data-bbox="1480 603 2027 874">11.“순손실방지제”라 함은 자연해안 및 연안서식지의 다양한 가치를 보전하고 생태적 기능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연환경 관리목표를 자연해안선의 길이, 연안서식지의 면적과 기능으로 설정하여 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p> <p data-bbox="1480 890 2027 1018">12.“연안정보”라 함은 연안통합관리계획 및 연안관리지역계획의 수립·관리 등 연안관리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p>
<p data-bbox="235 1042 324 1074"><신설></p>	<p data-bbox="860 1042 1444 1121">제3조(연안의 귀속) ①연안해역은 이를 국유로 한다.</p> <p data-bbox="860 1137 1444 1313">②제30조 내지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매수·교환되는 연안육역의 토지의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해양수산부가 관리청이 되는 국유재산으로 한다.</p>	<p data-bbox="1480 1042 2027 1121">제3조(연안의 귀속) ①연안해역은 이를 국유로 한다.</p> <p data-bbox="1480 1137 2027 1313">②제30조 내지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매수·교환되는 연안육역의 토지의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해양수산부가 관리청이 되는 국유재산으로 한다.</p>

현행	개정안(1차협의)	개정안(2차협의)
<신설>	제4조(바닷가의 관리) 국가는 연안환경 및 생태계(이하 “연안환경”이라 한다)가 훼손되지 않도록 바닷가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바닷가의 관리) 국가는 연안환경 및 생태계(이하 “연안환경”이라 한다)가 훼손되지 않도록 바닷가를 관리하여야 한다.
<p>제3조(연안관리의 기본이념) 연안은 생태적·문화적·경제적 가치가 조화롭게 공존될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관리되도록 한다.</p> <p>1. ~ 5. <신설></p>	<p>제5조(연안관리의 기본원칙) 연안의 보전·이용 및 개발은 다음의 기본원칙에 따라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연안은 모든 국민의 자산으로서 공익에 적합하고 현재와 장래의 세대를 위하여 지속가능한 보전·이용 및 개발되도록 할 것 2. 연안자원의 이용과 개발은 연안환경의 보전과 조화·균형을 이루도록 할 것 3. 생태적·문화적·경제적 가치가 조화롭게 공존될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관리되도록 할 것 4. 국민이 연안환경의 보전과 관리에 참여하고, 연안을 건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증진되도록 할 것 5. 연안의 이용과 개발로 인하여 발생하는 갈등은 과학적인 조사를 근거로 조정할 것 	<p>제5조(연안관리의 기본원칙) 연안의 보전·이용 및 개발은 다음의 기본원칙에 따라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연안은 모든 국민의 자산으로서 공익에 적합하고 현재와 장래의 세대를 위하여 지속가능한 보전·이용 및 개발되도록 할 것 2. 연안자원의 이용과 개발은 연안환경의 보전과 조화·균형을 이루도록 할 것 3. 생태적·문화적·경제적 가치가 조화롭게 공존될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관리되도록 할 것 4. 국민이 연안환경의 보전과 관리에 참여하고, 연안을 건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증진되도록 할 것 5. 연안의 이용과 개발로 인하여 발생하는 갈등은 과학적인 조사를 근거로 조정할 것
<신설>	제6조(국가 등의 책무)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	제6조(국가 등의 책무) ①국가 또는 지방자

현행	개정안(1차협의)	개정안(2차협의)
	<p>단체는 연안의 지속가능한 보전·이용 및 개발을 위하여 다음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연안에서의 이용과 개발행위로 인한 연안환경의 훼손을 방지하고 연안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이용 및 개발사업의 수립·시행 2. 연안재해피해 예방 및 복구를 위한 계획의 수립·시행 3. 자연해안 및 연안서식지의 훼손을 예방하고 기능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대책의 수립·시행 4. 연안관리를 위한 조사·연구·기술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5. 훼손된 연안환경에 대한 복원·복구 대책의 수립·시행 6.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연안주민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의 수립·시행 7. 연안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통한 국민인식의 증진 8. 국민의 연안관리 참여활동 촉진 9. 연안통합관리의 실현을 위한 남북한 및 국제협력의 증진 <p>②모든 국민은 연안의 보전·이용 및 개발을 위</p>	<p>치단체는 연안의 지속가능한 보전·이용 및 개발을 위하여 다음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연안에서의 이용과 개발행위로 인한 연안환경의 훼손을 방지하고 연안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이용 및 개발사업의 수립·시행 2. 연안재해피해 예방 및 복구를 위한 계획의 수립·시행 3. 자연해안 및 연안서식지의 훼손을 예방하고 기능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대책의 수립·시행 4. 연안관리를 위한 조사·연구·기술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5. 훼손된 연안환경에 대한 복원·복구 대책의 수립·시행 6.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연안주민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의 수립·시행 7. 연안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통한 국민인식의 증진 8. 국민의 연안관리 참여활동 촉진 9. 연안통합관리의 실현을 위한 남북한 및 국제협력의 증진 <p>②모든 국민은 연안의 보전·이용 및 개발을 위</p>

회 행	개정안(1차협의)	개정안(2차협의)
	<p>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는 등 연안의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p>③연안을 보전·이용 및 개발하고자 하는 자는 연안환경의 훼손이 최소화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위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는 등 연안의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p>③연안을 보전·이용 및 개발하고자 하는 자는 연안환경의 훼손이 최소화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신설></p>	<p>제7조(주요시책의 협의 등) ①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연안의 보전·이용 및 개발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주요시책 또는 계획을 수립·시행하거나 지역·지구·구역 또는 구획 등(이하 “구역 등”이라 한다)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해양수산부장관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연안에서 보전·이용 및 개발에 관한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안통합관리계획, 연안관리지역계획 및 연안재해방지기본계획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p>	<p>제7조(주요시책의 협의 등) ①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연안의 보전·이용 및 개발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주요시책 또는 계획을 수립·시행하거나 지역·지구·구역 또는 구획 등(이하 “구역 등”이라 한다)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해양수산부장관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연안에서 보전·이용 및 개발에 관한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안통합관리계획, 연안관리지역계획 및 연안재해방지기본계획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p>

현 행	개정안(1차협의)	개정안(2차협의)
<p>제4조(실태에 관한 조사) ①해양수산부장은 연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연안의 실태에 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p> <p>②해양수산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초 조사결과 해안선이나 생태계 등의 변화가 뚜렷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보완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p> <p>③해양수산부장은 연안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정밀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p> <p>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 내용·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4조(실태에 대한 조사) (삭제) ⇒ 제54조(연안기본조사 등)로 조문위치 변경</p>	<p>(좌 동)</p>
<p>제2장 연안의 통합관리</p>	<p>제2장 연안의 통합관리</p>	<p>제2장 연안의 통합관리</p>
<p>제5조(연안통합관리계획의 수립) ①해양수산부장은 연안을 종합적으로 보전·이용·개발하기 위하여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연안관리심의회를 거쳐 연안통합관리계획(이하 "통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p> <p>②해양수산부장은 통합계획을 수립하고자 하</p>	<p>제8조(연안통합관리계획의 수립) ①----- ----- -----제48조----- -----거쳐 5년마다 연안통합관리계획(-----) -----)----- 하여야 한다.</p> <p>②-----</p>	<p>제8조(연안통합관리계획의 수립) ①----- ----- -----제48조----- -----거쳐 5년마다 연안통합관리계획(-----) -----)----- 하여야 한다.</p> <p>②-----</p>

현 행	개정안(1차협의)	개정안(2차협의)
<p>는 때에는 미리 <u>광역시장·도지사</u>(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p> <p>③해양수산부장관은 통합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u>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u></p>	<p>----- 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p> <p>③-----</p> <p>----- . (이 경우 이하 삭제)</p>	<p>----- 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p> <p>③-----</p> <p>----- . (이 경우 이하 삭제)</p>
<p>제6조(통합계획의 내용) ①통합계획에는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연안육역의 범위</u> 2. <u>계획수립대상 지역</u> 3. 연안관리에 관한 기본정책방향 4. 연안환경의 보전, 연안의 지속가능한 개발등 연안의 바람직한 보전·이용 및 개발에 관한 사항 5. ~7. <신설> 	<p>제9조(통합계획의 내용) ①-----</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연안의 범위 2. 계획수립 대상연안 3. ~4. (현행과 같음) 5. 연안의 복원 및 연안경관의 보전방향 6. 연안용도구역 및 연안기능구의 설정방향 및 관리목표 7. 연안완충대 설정과 자연해안 및 연안서식지 	<p>제9조(통합계획의 내용) ①-----</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연안의 범위 2. 계획수립 대상연안 3. ~4. (현행과 같음) 5. 연안의 복원 및 연안경관의 보전방향 6. 연안용도구역 및 연안기능구의 설정방향 및 관리목표 7. 연안완충대 설정과 자연해안 및 연안서식지

현행	개정안(1차협의)	개정안(2차협의)
<p>5. 다른 법령에 의한 인·허가등 연안에서의 행위제한 또는 지원등에 관한 사항</p> <p>6. 관계행정기관간에 연안의 보전·이용 및 개발에 관한 정책등이 상충될 경우 그 조정에 관한 사항</p> <p>7. 연안정비사업의 기본방향</p> <p>8. 기타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연안육역의 범위 및 계획수립대상지역을 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p> <p>1. 행정구역 및 지형</p> <p>2. 다른 법령에 의한 용도지역 등의 구분 및 토지이용 등에 관한 계획</p> <p>3. 하천의 수계, 조류 및 해저지형의 특성</p> <p>4. 연안의 생태계 등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p> <p>5. 수산업·공업·관광산업등 해역의 이용현황</p> <p>6. 육상에서 발생한 오염원의 확산범위</p> <p>7. 사회·경제적 활동의 연관성</p>	<p>의 관리방향</p> <p>5.~6. (생략)</p> <p>8. 연안환경개선사업 및 연안재해방지사업-----</p> <p>9.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p> <p>②-----연안의 범위 및-----</p> <p>-----.</p> <p>1.~3. (현행과 같음)</p> <p>4. 연안환경 및 경관 등 -----</p> <p>5.~7. (현행과 같음)</p>	<p>지의 관리방향</p> <p>5.~6. (생략)</p> <p>8. 연안환경개선사업 및 연안재해방지사업--</p> <p>9.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p> <p>-----연안의 범위 및-----</p> <p>-----.</p> <p>1.~3. (현행과 같음)</p> <p>4. 연안환경 및 경관 등 -----</p> <p>5.~7. (현행과 같음)</p>

현 행	개정안(1차협의)	개정안(2차협의)
<p>제7조(통합계획의 고시등)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통합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시·도지사는 지체없이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u>관할구역에 대한 통합계획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u> 하여야 한다.</p> <p>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통보 및 열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0조(통합계획의 고시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 관할연안에 -----.</p> <p>③ (현행과 같음)</p>	<p>제10조(통합계획의 고시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관할연안에 -----.</p> <p>③ (현행과 같음)</p>
<p>제8조(연안관리지역계획의 수립등) <u><신설></u></p> <p>①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연안의 효율적인 보전·이용 및 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 <u>통합계획의 범위안에서 연안관리지역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u></p>	<p>제11조(연안관리지역계획의 수립 등)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연안관리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의 체계적인 수립 및 관리를 위한 지침(이하 “수립·관리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고시하여야 한다.</p> <p>②----- -----통합계획의 범위 안에서 수립·관리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p>	<p>11조(연안관리지역계획의 수립 등)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연안관리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의 체계적인 수립 및 관리를 위한 지침(이하 “수립·관리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고시하여야 한다.</p> <p>②----- ----- 통합계획의 범위 안에서 수립·관리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p>

현 행	개정안(1차협의)	개정안(2차협의)
<p>②시·도지사는 관할연안의 효율적인 보전·이용 및 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으로서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안관리지역계획이 고시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 통합계획의 범위안에서 2이상의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에 걸쳐 연안관리지역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은 시·도지사가 2이상의 시·군·구에 대한 연안관리지역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통합계획의 수립절차에 따라 당해연안관리지역계획을 직접 수립할 수 있다.</p> <p>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안관리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p>1. 관할 연안의 관리에 관한 정책방향</p> <p>2. 통합계획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p> <p>3. 관할연안의 연안정비사업의 방향</p> <p>4. 기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 <p>④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대통령령</p>	<p>③----- ----- ----- ----- ----- 2이상의 시·군·구에 대한 지역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역계획을 직접 수립할 수 있다.</p> <p>③ (삭제) ⇒ 제12조제1항으로 조문위치 변경</p> <p>④----- -----</p>	<p>③----- ----- ----- ----- ----- 2이상의 시·군·구에 대한 지역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역계획을 직접 수립할 수 있다.</p> <p>③ (삭제) ⇒ 제12조제1항으로 조문위치 변경</p> <p>④----- -----</p>

현 행	개정안(1차협의)	개정안(2차협의)
<p>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여 지역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연안관리심의회 심의를 거쳐 해양수산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p> <p><신설></p> <p>⑤해양수산부 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연안관리심의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p> <p><신설></p> <p><신설></p> <p><신설></p>	<p>----- ----- -----제50조의 규정에 따른 ----- -----.</p> <p>⑤해양수산부 장관이 지역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미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여 지역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중앙연안관리심의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p> <p>⑥----- 지역계획을 승인하고자 ----- 중앙연안관리심의회 -----.</p> <p>⑦연안의 이용 및 개발은 지역계획의 범위 내에서 실시되어야 한다.</p> <p>⑧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역계획은 당해 연안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당해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시행한다.</p> <p>⑨제4항 및 제5항의 관계 행정기관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 ----- -----제50조의 규정에 따른 ----- -----.</p> <p>⑤해양수산부 장관이 지역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미리 ----- 지역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중앙연안관리심의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p> <p>⑥----- 지역계획을 승인하고자 -----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중앙연안관리심의회 -----.</p> <p>⑦연안의 이용 및 개발은 지역계획의 범위 내에서 실시되어야 한다.</p> <p>⑧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역계획은 당해 연안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당해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시행한다.</p> <p>⑨제4항 및 제5항의 관계 행정기관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현행	개정안(1차협의)	개정안(2차협의)
<p><u>제8조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안관리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u></p> <p><u>1. ~2. <신설></u></p> <p>1. 관할 연안의 관리에 관한 정책방향 2. 통합계획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u>3. 관할연안의 연안정비사업의 방향</u></p> <p><u>5. ~7. <신설></u></p> <p>4. 기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 <p><u><신설></u></p>	<p>제12조(지역계획의 내용) ①제11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계획에는 ----- -----.</p> <p>1. 관할 연안의 범위 2. 계획수립 대상연안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3. (삭제) 5. 연안용도구역 및 연안기능구의 설정 6. 자연해안 및 연안서식지의 훼손 방지 및 기능의 유지·증진을 위한 대책 7. 관할 연안의 연안환경개선사업의 방향</p> <p>8. 그 밖에 지역계획을 수립하는 해양수산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p> <p>②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조제3호나목 및 제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역적인 여건·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역계획에서 연안육역을 확대하여 지정할 수 있다.</p>	<p>제12조(지역계획의 내용) ①제11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계획에는 ----- -----.</p> <p>1. 관할 연안의 범위 2. 계획수립 대상연안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3. (삭제) 5. 연안용도구역 및 연안기능구의 설정 6. <u>자연해안의</u> 훼손 방지 및 기능의 유지·증진을 위한 대책 7. 관할 연안의 연안환경개선사업의 방향 및 <u>추진계획</u></p> <p>8. 그 밖에 지역계획을 수립하는 해양수산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p> <p>②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조제3호나목 및 제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역적인 여건·특성 등을 고려하여 <u>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u> 지역계획에서 연안육역을 확대하여 지정할 수 있다. <u>연안육역을 확대하여 지정하고자</u></p>

현행	개정안(1차협의)	개정안(2차협의)
<p><신설></p>	<p>③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지역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연안의 범위설정에 대하여 지역계획 수립 전에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p>	<p>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지역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연안의 범위설정에 대하여 지역계획 수립 전에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p>
<p>제9조(지역계획의 고시등)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제8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보에 고시하고,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며,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제8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보에 고시하고,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없이 이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해양수산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역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p>	<p>제13조(지역계획의 고시 등) ①----- -----제 11 조 제 2 항 의 규 정 에 ----- ----- ----- ----- ----- ②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 관보 또는 공보에----- ----- ③ ~ ④ (현행과 같음)</p>	<p>제13조(지역계획의 고시 등) ①----- -----제 11 조 제 2 항 의 규 정 에 ----- ----- ----- ----- ----- ②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 관보 또는 공보에----- ----- ③ ~ ④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1차협의)	개정안(2차협의)
<p>제10조(통합계획등의 변경) ①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통합계획 또는 지역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거나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그 변경을 요청하는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p> <p><신설></p> <p>②제5조 및 제7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합계획의 변경의 경우에 이를 각각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에 한하여 이를 준용한다.</p> <p>③제8조제4항·제5항 및 제9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계획의 변경의 경우에 이를 각각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규정에 한하여 이를 준용한다.</p> <p><신설></p>	<p>제14조(통합계획 등의 변경) ① (현행과 같음)</p> <p>②해양수산부장관은 통합계획의 내용에 중대한 변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하여 지역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p> <p>③제8조 및 제10조의 규정은 ----- ----- -----제10조의 규정에 ----- -----.</p> <p>④제11조제4항 내지 제6항 및 제13조의 규정은 ----- ----- -. --, -----제13조의 ----- -----.</p> <p>⑤제11조제3항에 의한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p>	<p>제14조(통합계획 등의 변경) ① (현행과 같음)</p> <p>②해양수산부장관은 통합계획의 내용에 중대한 변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하여 지역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p> <p>③제8조 및 제10조의 규정은 ----- ----- -----제10조의 규정에 ----- -----.</p> <p>④제11조제4항 내지 제6항 및 제13조의 규정은 ----- ----- -. --, -----제13조의 ----- -----.</p> <p>⑤제11조제3항에 의한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p>

현행	개정안(1차협의)	개정안(2차협의)
	<p>도지사가 수립한 지역계획의 변경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연안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이를 시행한다.</p>	<p>시·도지사가 수립한 지역계획의 변경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연안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이를 시행한다.</p>
<p><u>제11조(다른 계획등과의 관계) <신설></u></p> <p><신설></p>	<p>제15조(다른 계획 등과 연계) ①통합계획은 「국토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국토종합계획,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환경종합계획 및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 「해양오염방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해양환경보전종합대책,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해양생태계의 보전·관리기본계획, 「습지보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습지보전기본계획, 「어장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어장관리기본계획,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등과 상호 연계하여 수립하여야 한다.</p> <p>②통합계획과 지역계획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의하여 수립되는 연안해역과 연안육역의 보전·이용 및 개발에 관한 계획의 기초가 된다. 다만, 연안육역의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련계획</p>	<p>제15조(다른 계획 등과 연계) ①통합계획은 「국토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환경종합계획 및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 「<u>해양환경관리법</u>」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해양환경관리종합계획,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따른 해양생태계의 보전·관리기본계획, 「습지보전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습지보전기본계획, 「어장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어장관리기본계획,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등과 <u>연계</u>하여 수립하여야 한다.</p> <p>②통합계획과 지역계획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의하여 수립되는 연안해역과 연안육역의 보전·이용 및 개발에 관한 계획의 기초가 된다. 다만, 연안육역의 경우 대통령령이 정</p>

현행	개정안(1차협의)	개정안(2차협의)
<p>①<u>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통합계획 또는 지역계획을 수립·변경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계획이 수립되어 있거나 용도지역등이 지정되어 있는 연안육역(환경보전관련 계획이 수립되어 있거나 용도지역등이 지정되어 있는 지역에 있어서는 연안해역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당해계획 또는 용도지역등의 범위안에서 이를 수립·변경하여야 한다. 다만, 연안환경을 보전하고 연안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계획이나 지정된 용도지역등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u></p> <p>②<u>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연안육역(환경보전관련 계획의 수립 또는 용도지역등의 지정 대상이 되는 지역에 있어서는 연안해역을 포함한다)에 대한 계획을 수립·변경하거나 용도지역등을 지정·변경·해제할 경우 통합계획 또는 지역계획에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해양수산부장</u></p>	<p>획을 고려하여 통합계획과 지역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p> <p>③<u>해양수산부장관은 연안환경을 보전하고 연안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계획이나 지정된 구역 등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u></p> <p>④----- 연안의 보전·이용 및 개발과 관련되는 계획을 수립·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계획이 확정되는 경우 지체 없이 해양수산부장관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내용을 -----.</p>	<p>하는 관련계획을 고려하여 통합계획과 지역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p> <p>③<u>해양수산부장관은 연안환경을 보전하고 연안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계획이나 지정된 구역 등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u></p> <p>④----- 연안의 보전·이용 및 개발과 관련되는 계획을 수립·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계획이 확정되는 경우 지체 없이 해양수산부장관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내용을 -----.</p>

현 행	개정안(1차협의)	개정안(2차협의)
<p>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③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 수·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통보내용에 적합하게 통합 계획 또는 지역계획을 변경하고 이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p>	<p>⑤-----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연안의 보전·이용 및 개발과 관련 되는 계획과 지정된 구역 등이 변경 또는 확정 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내용에----- -----.</p>	<p>⑤-----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연안의 보전·이용 및 개발과 관련되는 계획과 지정된 구역 등이 변경 또 는 확정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내용에 --- -----.</p>
<p>제12조(통합계획등의 준수) 관계행정기관의 장 은 연안에서 연안의 보전·이용 및 개발에 관한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합계획 및 지역 계획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p>	<p>(삭제)</p>	<p>(좌동)</p>
<p><신설></p>	<p>제3장 연안용도구역의 설정</p>	<p>제3장 연안용도구역의 지정 및 관리</p>
<p><신설></p>	<p>제16조(연안의 용도구분) 연안은 이용실태, 자 연환경적 특성 및 장래의 이용방향 등을 고려하 여 다음과 같은 연안용도구역으로 구분한다. 1. 이용연안구역 :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이용 또는 개발이 확정되어 있거나 개발이 예상 되는 구역</p>	<p>제16조(연안의 용도구분) 연안은 이용실태, 자연환경적 특성 및 장래의 이용방향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연안용도구역으로 구 분한다. 1. 이용연안구역 :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이용 또는 개발이 확정되어 있거나 개</p>

회 행	개정안(1차협의)	개정안(2차협의)
	<p>2. 특수연안구역 : 다른 법률에 따라 군사시설 및 국가 중요시설의 보호를 위하여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구역 또는 해양의 환경 및 생태계가 훼손되어 다른 법률에서 별도로 지정하거나 지정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구역</p> <p>3. 관리연안구역 : 이용 또는 개발의 용도가 정해지지 않았거나 다른 법률에 의하여 구역 등이 중복 지정되어 이의 조정이 필요한 구역 또는 용도지정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구역</p> <p>4. 보전연안구역 :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연안환경 및 자원의 보호, 해양문화의 보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정하거나 지정할 필요가 있는 구역</p>	<p>발이 예상되는 구역</p> <p>2. 특수연안구역 : 다른 법률에 따라 군사시설 및 국가 중요시설의 보호를 위하여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구역 또는 해양의 환경 및 생태계가 훼손되어 다른 법률에서 별도로 지정하거나 지정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구역</p> <p>3. <u>보전연안구역</u> :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연안환경 및 자원의 보호, 해양문화의 보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정하거나 지정할 필요가 있는 구역</p> <p>4. <u>관리연안구역</u> : 이용 또는 개발의 용도가 정해지지 않았거나 다른 법률에 의하여 구역 등이 중복 지정되어 이의 조정이 필요한 구역 또는 용도지정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구역</p>
<신설>	<p>제17조(연안용도구역의 관리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연안용도구역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연안기능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p>	<p>제17조(연안용도구역의 관리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연안용도구역 및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연안기능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p>
<신설>	<p>제18조(연안용도구역의 결정) ①연안용도구역</p>	<p>제18조(연안용도구역의 지정 등) ①연안용</p>

회 행	개정안(1차협의)	개정안(2차협의)
	<p>의 지정 또는 변경은 연안관리지역계획으로 결정한다.</p> <p>②연안용도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연안기능구를 고려하여야 한다.</p>	<p>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은 연안관리지역계획으로 결정한다.</p> <p>②연안용도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제23조의 규정에 <u>따른</u> 연안기능구를 고려하여야 한다.</p>
<p><신설></p>	<p>제19조(연안용도구역의 지정) ①다음 각 호에 따라 지정 또는 고시된 구역 등은 이 법에 따른 이용연안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항만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항만 2. 「어촌·어항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항구역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 및 지방산업단지 4. 「골재채취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단지 5.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해저광구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p>제19조(다른 법률에 의한 구역 등의 연안용도구역 지정) ①다음 각 호에 따라 지정 또는 고시된 구역 등은 이 법에 따른 이용연안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항만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u>따른</u> 항만 2. 「어촌·어항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u>따른</u> 어항구역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u>따른</u> 국가산업단지 및 지방산업단지 4. 「골재채취법」 제34조의 규정에 <u>따른</u> 골재채취단지 5.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제3조의 규정에 <u>따른</u> 해저광구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회 행	개정안(1차협의)	개정안(2차협의)
	<p>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을 제외한 지역</p> <p>7.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항만구, 항로구, 어항구, 레저관광구, 해수욕장구, 광물자원구</p> <p>8.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구역</p> <p>②다음 각 호에 따라 지정 또는 고시된 구역 등은 이 법에 따른 특수연안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p> <p>1. 「군사시설보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군사시설보호구역</p> <p>2. 「해양오염방지법」 제4조의4의 규정에 의한 특별관리해역</p> <p>3.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예정구역</p> <p>4.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환경관리구, 해양조사구, 해양투기구, 재해관리구, 군사시설구 및 산업시설구</p> <p>5.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구역</p> <p>③다음 각 호에 따라 지정 또는 고시된 구역 등은 이 법에 따른 보전연안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p>	<p>36조의 규정에 따른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을 제외한 지역</p> <p>7.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항만구, 항로구, 어항구, 레저관광구, 해수욕장구, 광물자원구</p> <p>8.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구역</p> <p>②다음 각 호에 따라 지정 또는 고시된 구역 등은 이 법에 따른 특수연안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p> <p>1. 「군사시설보호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군사시설보호구역</p> <p>2. 「해양환경관리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특별관리해역</p> <p>3.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예정구역</p> <p>4.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환경관리구, 해양조사구, 해양투기구, 재해관리구, 군사시설구 및 산업시설구</p> <p>5.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구역</p> <p>③다음 각 호에 따라 지정 또는 고시된 구역 등은 이 법에 따른 보전연안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p>

회 행	개정안(1차협의)	개정안(2차협의)
	<p>로 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및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과 같은 법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수산자원보호구역 2. 「농지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3. 「산지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보전산지 4.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해양생태계보호구역 5. 「해양오염방지법」 제4조의4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해역 6.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생태·경관보전지역 7. 「습지보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습지보호구역 8.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도서 9. 「자연공원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공원 10.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수산생물자원보호구, 생태보호구, 경관보호구, 공원구 및 어장구 	<p>것으로 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규정에 <u>따른</u>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및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과 같은 법제40조의 규정에 <u>따른</u> 수산자원보호구역 2. 「농지법」 제30조의 규정에 <u>따른</u> 농업진흥지역 3. 「산지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u>따른</u> 보전산지 4.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u>따른</u> 해양생태계보호구역 5. 「<u>해양환경관리법</u>」 제15조의 규정에 <u>따른</u> <u>환경보전해역</u> 6.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의 규정에 <u>따른</u> 생태·경관보전지역 7. 「습지보전법」 제8조의 규정에 <u>따른</u> 습지보호구역 8.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4조의 규정에 <u>따른</u> 특정도서 9. 「자연공원법」 제4조의 규정에 <u>따른</u> 자연공원 10.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u>따라</u> 지정된 수산생물자원보호구, 생태보호구, 경관보호구, 공원구 및 어장구

회 행	개정안(1차협의)	개정안(2차협의)
	<p>11.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역</p> <p>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거나 어느 하나의 연안용도구역으로 결정하기 곤란한 연안 또는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이용유보구는 관리연안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p> <p>⑤제1항 내지 제3항에 해당하는 구역 등의 지정이 해제되거나 개발이 완료되는 경우에는 평가를 통하여 연안용도구역 및 연안기능구를 변경할 수 있다.</p> <p>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방법 및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11.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역</p> <p>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거나 어느 하나의 연안용도구역으로 결정하기 곤란한 연안 또는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u>따</u>라 지정된 이용유보구는 관리연안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p> <p>⑤제1항 내지 제3항의 <u>규정에</u> 해당하는 구역 등의 지정이 해제되거나 개발이 완료되는 경우에는 평가를 통하여 연안용도구역 및 연안기능구를 변경할 수 있다.</p> <p>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방법 및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신설>	<p>제20조(연안용도구역의 평가 등)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연안용도구역을 지정하기 위하여 연안의 특성, 입지 또는 활용가능성 등을 고려한 연안의 공간적성에 대한 평가(이하 “연안공간적성평가”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p> <p>②연안공간적성평가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20조(연안용도구역의 평가 등)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연안용도구역을 지정하기 위하여 연안의 특성, 입지 또는 활용가능성 등을 고려한 연안의 공간적성에 대한 평가(이하 “연안공간적성평가”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p> <p>②연안공간적성평가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회 행	개정안(1차협의)	개정안(2차협의)
<신설>	<p>제21조(연안용도구역 및 연안기능구의 준수 등) ①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연안에 구역 등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연안용도구역 및 연안용도기능구의 지정목적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p> <p>②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연안용도구역의 범위 안에서 다른 법률에 의하여 구역 등을 지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당해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p> <p>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p>	<p>제21조(연안용도구역 및 연안기능구의 준수 등) ①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연안에 구역 등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연안용도구역 및 연안용도기능구의 지정목적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p> <p>②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연안용도구역의 범위 안에서 다른 법률에 의하여 구역 등을 지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당해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p> <p>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p>
<신설>	<p>제22조(다른 법률에 의한 연안용도구역의 지정·변경 제한) ①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따른 연안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대한 연안관리지역계획의 결정을 의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계획을 허가·인가·승인</p>	<p>제22조(다른 법률에 의한 연안용도구역의 지정·변경 제한) ①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따른 연안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대한 연안관리지역계획의 결정을 의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계획</p>

회 행	개정안(1차협의)	개정안(2차협의)
	<p>또는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당해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당해 시장·군수·구청장의 협의 또는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는 경우에는 제21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p>	<p>을 허가·인가·승인 또는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당해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당해 시장·군수·구청장의 협의 또는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는 경우에는 제21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p>
<p><신설></p>	<p>제23조(연안기능구의 지정) ①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 또는 관계 법률에 따라 지정된 구역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안기능구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안기능구를 중복하여 지정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항만구 : 항만건설과 기능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능구 2. 항로구 : 선박의 안전한 운행을 위하여 필요 	<p>제23조(연안기능구의 지정) ①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 또는 관계 법률에 따라 지정된 구역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안기능구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안기능구를 중복하여 지정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항만구 : 항만건설과 기능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능구 2. 항로구 : 선박의 안전한 항해를 위하여 필

연 행	개정안(1차협의)	개정안(2차협의)
	<p>한 기능구</p> <p>3. 어항구 : 어항건설과 기능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능구</p> <p>4. 레저관광구 : 연안에서의 레저관광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능구</p> <p>5. 해수욕장구 : 해수욕장 기능의 유지를 위하여 고시된 기능구</p> <p>6. 광물자원구 : 광물 또는 골재자원 채취를 위하여 필요한 기능구</p> <p>7. 환경관리구 : 해수의 수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능구</p> <p>8. 수산생물자원보호구 : 수산자원의 보호와 육성이 필요한 기능구</p> <p>9. 생태보호구 : 연안서식지 또는 희귀해양생물의 서식지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능구</p> <p>10. 해양조사구 : 해수수질 또는 해양생태계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기능구</p> <p>11. 경관보호구 : 해안, 해상, 해중 또는 해저의 경관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기능구</p> <p>12. 해양투기구 : 해양투기를 위하여 필요한 기능구</p>	<p>요한 기능구</p> <p>3. 어항구 : 어항건설과 기능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능구</p> <p>4. 레저관광구 : 연안에서의 레저관광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능구</p> <p>5. 해수욕장구 : 해수욕장 기능의 유지를 위하여 고시된 기능구</p> <p>6. 광물자원구 : 광물 또는 골재자원 채취를 위하여 필요한 기능구</p> <p>7. 환경관리구 : 해수의 수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능구</p> <p>8. 수산생물자원보호구 : 수산자원의 보호와 육성이 필요한 기능구</p> <p>9. 생태보호구 : 연안서식지 또는 희귀해양생물의 서식지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능구</p> <p>10. 해양조사구 : 해수수질 또는 해양생태계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기능구</p> <p>11. 경관보호구 : 해안, 해상, 해중 또는 해저의 경관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기능구</p> <p>12. 해양투기구 : 해양투기를 위하여 필요한 기능구</p>

회 행	개정안(1차협의)	개정안(2차협의)
	<p>13. 공원구 : 법정공원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능구</p> <p>14. 재해관리구 : 해일, 파랑, 해수, 지반의 침식 또는 적조 등 연안재해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관리가 필요한 기능구</p> <p>15. 어장구 : 해면, 마을, 양식 등 어장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능구</p> <p>16. 군사시설구 : 군사시설의 보호에 필요한 기능구</p> <p>17. 산업시설구 : 발전소 등 에너지관련시설, 유류비축시설 등 국가기간산업시설의 유지에 필요한 기능구</p> <p>18. 이용유보구 : 중복이용으로 인하여 조정이 필요하거나 용도가 확정되지 못한 기능구</p> <p>19.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능구</p> <p>②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연안기능구를 지역계획에서 다시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연안기능구를 세분하는 경우에는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p>	<p>13. 공원구 : 법정공원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능구</p> <p>14. 재해관리구 : 해일, 파랑, 해수, 지반의 침식 또는 적조 등 연안재해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관리가 필요한 기능구</p> <p>15. 어장구 : 해면, 마을, 양식 등 어장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능구</p> <p>16. 군사시설구 : 군사시설의 보호에 필요한 기능구</p> <p>17. 산업시설구 : 발전소 등 에너지관련시설, 유류비축시설 등 국가기간산업시설의 유지에 필요한 기능구</p> <p>18. 이용유보구 : 중복이용으로 인하여 조정이 필요하거나 용도가 확정되지 못한 기능구</p> <p>19.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능구</p> <p>②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연안기능구를 지역계획에서 다시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연안기능구를 세분하는 경우에는 당해</p>

회 행	개정안(1차협의)	개정안(2차협의)
	<p>협의하여야 한다.</p> <p>③중복지정된 연안기능구는 제2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절차를 거치되,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용유보구로 지정한다.</p>	<p>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p> <p>③중복지정된 연안기능구는 제2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정절차를 거치되,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용유보구로 지정한다.</p>
<p><신설></p>	<p>제24조(2이상의 연안기능구에 걸치는 연안에 대한 적용기준) ①연안이 2이상의 연안기능구에 걸치는 경우 그 면적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인 부분에 대하여는 그 구역의 가장 넓은 면적이 속하는 연안기능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환경보호구, 수산생물보호구, 생태보호구 및 경관보호구(이하 “보호구 등”이라 한다)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그 연안기능구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당해 보호구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p> <p>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연안을 활용할 수 있는 연안기능구의 우선이용순위를 정하여 중복지정으로 인하여 발생될 수 있는 갈등을 최소화하도록 조정한다.</p>	<p>제24조(2이상의 연안기능구에 걸치는 연안에 대한 적용기준) ①연안이 2이상의 연안기능구에 걸치는 경우 그 면적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인 부분에 대하여는 그 구역의 가장 넓은 면적이 속하는 연안기능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환경보호구, 수산생물보호구, 생태보호구 및 경관보호구(이하 “보호구 등”이라 한다)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그 연안기능구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당해 보호구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p> <p>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연안을 활용할 수 있는 연안기능구의 우선이용순위를 정하여 중복지정으로 인하여 발생될 수 있는 갈등을 최소화하도록 조정한다.</p>

회 행	개정안(1차협의)	개정안(2차협의)
	③연안기능구의 우선이용순위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연안기능구의 우선이용순위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u><신설></u>	<p>제25조(이용·개발행위 등의 협의) ①이용연안구역·특수연안구역·보전연안구역에서의 보전·이용 및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행정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제19조제1항 내지 제3항의 연안용도구역을 구성하는 각 구역 등 및 연안기능구를 결정하는 관계 법률에서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한 미리 당해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p> <p>②관리연안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당해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2. 토지의 형질변경 3. 토석의 채취 4. 연안 식생의 제거 및 식재 5. 연안해역에서의 이용·개발행위 6.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p>③제2항의 규정은 협의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p>	<p>제25조(이용·개발행위 등의 협의) ①이용연안구역·특수연안구역·보전연안구역에서의 보전·이용 및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행정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제19조제1항 내지 제3항의 연안용도구역을 구성하는 각 구역 등 및 연안기능구를 결정하는 관계 법률에서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한 미리 당해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p> <p>②관리연안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당해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2. 토지의 형질변경 3. 토석의 채취 4. 연안 식생의 제거 및 식재 5. 연안해역에서의 이용·개발행위 6.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p>③제2항의 규정은 협의한 사항을 변경하는</p>

회 행	개정안(1차협의)	개정안(2차협의)
	<p>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협의하지 않고 이를 시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 및 당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2. 국가안보상 긴급히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p>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른 법률에 의하여 당해 시장·군수·구청장의 협의 또는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협의하지 않고 이를 시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 및 당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2. 국가안보상 긴급히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p>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른 법률에 의하여 당해 시장·군수·구청장의 협의 또는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신설>	<p>제26조(이용·개발행위 등의 협의절차) ①제2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안의 보전이 용 및 개발행위에 대한 협의를 하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연안보전이용·개발계획서를 첨부한 협의요청서를 당해 시장·군수·구</p>	<p>제26조(이용·개발행위 등의 협의절차) ①제2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u>따라</u> 연안의 보전이용 및 개발행위에 대한 협의를 하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연안보전이용·개발계획서를 첨부한 협의요청서를 당해</p>

회 행	개정안(1차협의)	개정안(2차협의)
	<p>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전·이용 및 개발행위의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협의 또는 승인을 얻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신설></p>	<p>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전·이용 및 개발행위의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협의 또는 승인을 얻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③제2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협의를 완료한 후 협의대상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는 이용·개발행위 등의 협의를 다시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신설>	<p>제27조(보전·이용·개발행위 등의 협의기준)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요청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협의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연안용도구역별 특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용·개발행위의 규모에 적합할 것 2. 통합계획 및 지역계획의 내용에 적합할 것 	<p>제27조(보전·이용·개발행위 등의 협의기준)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요청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협의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연안용도구역별 특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용·개발행위의 규모에 적합할 것 2. 통합계획 및 지역계획의 내용에 적합할 것

현행	개정안(1차협의)	개정안(2차협의)
	<p>3. 연안환경개선사업 및 연안재해방지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을 것</p> <p>4. 주변해역의 환경, 생태계 및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p> <p>5. 기존의 이용·개발행위와 병존가능하고 행위로 인한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p> <p>6.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부합할 것</p>	<p>3. 연안환경개선사업 및 연안재해방지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을 것</p> <p>4. 주변해역의 환경, 생태계 및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p> <p>5. 기존의 이용·개발행위와 병존가능하고 행위로 인한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p> <p>6.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부합할 것</p>
<u><신설></u>	제4장 해안 및 연안서식지 관리	제4장 해안 및 연안서식지 관리
<u><신설></u>	<p>제28조(연안완충대의 설정)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해일, 파랑, 해수 또는 이로 인한 지반의 침식 등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연안의 자연건강성을 유지하며 공공의 연안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안선으로부터 연안육역 방향으로 일정거리에 연안완충대를 설정할 수 있다.</p> <p>②연안완충대를 설정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6조 및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 및 다른 법률에 의한 조사의 결과를 고려하여 설정하</p>	<p>제28조(연안완충대의 설정)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해일, 파랑, 해수 또는 이로 인한 지반의 침식 등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연안의 자연건강성을 유지하며 공공의 연안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u>연안완충대를 설정할 수 있다.</u></p> <p>②연안완충대를 설정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6조 및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 및 다른 법률에 의한 조사의 결과를 고려하</p>

회 행	개정안(1차협의)	개정안(2차협의)
	<p>여야 하며, 당해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p> <p>③해양수산부장관은 연안완충대의 설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자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p> <p>④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안완충대를 설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시·도지사는 지체 없이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관할연안에 설정된 연안완충대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p>	<p>여 설정하여야 하며, 당해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p> <p>③해양수산부장관은 연안완충대의 설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자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p> <p>④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안완충대를 설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시·도지사는 지체 없이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관할연안에 설정된 연안완충대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p>
<신설>	<p>제29조(연안완충대의 관리) ①연안완충대는 제1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전연안구역으로 설정하도록 하며, 연안완충대 안에서는 연안환경의 변화를 야기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p>	<p>제29조(연안완충대의 관리) ①연안완충대는 제1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전연안구역으로 <u>설정하도록 한다.</u></p> <p>②누구든지 연안완충대 안에서는 연안환경의 <u>변화를 야기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u></p>

현행	개정안(1차협의)	개정안(2차협의)
	<p>1. 해양과 육상의 생태적 연계성을 현저하게 훼손할 우려가 높은 인공구조물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조물의 설치</p> <p>2. 쓰레기 또는 오염물질을 쌓아두거나 이를 해역으로 유출시키는 행위</p> <p>3. 광물, 골재 등 토석의 채취나 지형변화를 발생시키는 행위</p> <p>4. 연안완충대의 관리를 위한 시설을 훼손하는 행위</p> <p>5. 그 밖에 연안완충대의 관리를 위하여 금지하여야 할 행위로서 풀·나무의 채취 및 벌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p> <p>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실시할 수 있다.</p> <p>1. 연안완충대의 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행위 또는 시설의 설치</p> <p>2. 다른 법률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실시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인가·허가 또는 승인 등을 하는 경우. 다만,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p>	<p><u>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u></p> <p>1. 해양과 육상의 생태적 연계성을 현저하게 훼손할 우려가 높은 인공구조물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조물의 설치</p> <p>2. 쓰레기 또는 오염물질을 쌓아두거나 이를 해역으로 유출시키는 행위</p> <p>3. 광물, 골재 등 토석의 채취나 지형변화를 발생시키는 행위</p> <p>4. 연안완충대의 관리를 위한 시설을 훼손하는 행위</p> <p>5. 그 밖에 연안완충대의 관리를 위하여 금지하여야 할 행위로서 풀·나무의 채취 및 벌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p> <p>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실시할 수 있다.</p> <p>1. 연안완충대의 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행위 또는 시설의 설치</p> <p>2. 다른 법률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실시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인가·허가 또는 승인 등을 하는 경우. <u>(이 경우 이하 삭제)</u></p>

현행	개정안(1차협의)	개정안(2차협의)
	<p>야 한다.</p> <p>3. 연안완충대를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또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p> <p>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협의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군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해가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p>④연안완충대의 설정방법 등 연안완충대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3. 연안완충대를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또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p> <p>④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협의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군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해가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p>⑤연안완충대의 설정방법 등 연안완충대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⑥제26조제3항의 규정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협의에 이를 준용한다.</p>
<신설>	<p>제30조(연안완충대 설정에 따른 토지의 매수)</p> <p>①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연안완충대의 설정으로</p>	<p>제30조(연안완충대 설정에 따른 토지의 매수) ①제28조의 규정에 따른 연안완충대의</p>

회 행	개정안(1차협의)	개정안(2차협의)
	<p>토지를 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히 감소된 토지 또는 당해 토지의 사용 및 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이하 “매수대상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당해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연안완충대 설정 당시부터 당해 토지를 계속 소유한 자 2. 연안완충대의 설정으로 당해 토지의 사용·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기 전에 당해 토지를 취득하여 계속 소유한 자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자료부터 당해 토지를 상속받아 계속 소유한 자 <p>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를 받은 토지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해당되는 때에는 이를 매수하여야 한다.</p> <p>③매수대상토지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설정으로 토지를 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히 감소된 토지 또는 당해 토지의 사용 및 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이하 “매수대상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당해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연안완충대 설정 당시부터 당해 토지를 계속 소유한 자 2. 연안완충대의 설정으로 당해 토지의 사용·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기 전에 당해 토지를 취득하여 계속 소유한 자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자료부터 당해 토지를 상속받아 계속 소유한 자 <p>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매수청구를 받은 토지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해당되는 때에는 이를 매수하여야 한다.</p> <p>③매수대상토지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회 행	개정안(1차협의)	개정안(2차협의)
<p><신설></p>	<p>제31조(매수청구의 절차 등)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토지의 매수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매수대상여부 및 매수예상가격 등을 매수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수대상토지로 통보를 한 때에는 5년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매수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매수대상토지를 매수하여야 한다.</p> <p>③매수대상토지를 매수하는 가격(이하 “매수가격”이라 한다)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당해 토지의 위치·형상·환경 및 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p> <p>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한 토지는 해양수산부의 재산으로 귀속된다.</p> <p>⑤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매수방법 및 절차, 매수가격의 산정시기 및 산정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31조(매수청구의 절차 등)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토지의 매수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매수대상여부 및 매수예상가격 등을 매수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u>따라</u> 매수대상토지로 통보를 한 때에는 5년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매수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매수대상토지를 매수하여야 한다.</p> <p>③매수대상토지를 매수하는 가격(이하 “매수가격”이라 한다)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당해 토지의 위치·형상·환경 및 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p> <p>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u>따라</u> 매수한 토지는 해양수산부의 재산으로 귀속된다.</p> <p>⑤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u>따른</u> 토지매수방법 및 절차, 매수가격의 산정시기 및 산정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현행	개정안(1차협의)	개정안(2차협의)
<p><신설></p>	<p>제32조(감정평가비용의 부담)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매수가격의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한다.</p> <p>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수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매수청구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정평가에 소요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수청구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매수예상가격에 비하여 매수가격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 하락한 경우 2. 법령의 개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매수청구의 사유가 소멸된 경우 <p>③매수청구인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을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세채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p>	<p>제32조(감정평가비용의 부담)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u>따른</u> 매수가격의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한다.</p> <p>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수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매수청구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정평가에 소요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수청구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매수예상가격에 비하여 매수가격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 하락한 경우 2. 법령의 개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u>따른</u> 토지매수청구의 사유가 소멸된 경우 <p>③매수청구인이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을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세채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p>

현행	개정안(1차협의)	개정안(2차협의)
<p><신설></p>	<p>제33조(협이에 따른 토지 등의 매수·교환)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연안완충대 설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연안완충대안의 토지 및 그 토지의 정착물(이하 이 조에서 “토지·정착물”이라 한다)을 매수할 수 있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안완충대안의 토지·정착물을 협의매수하는 경우의 매수가격의 산정시기·방법 및 기준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 제70조, 제71조, 제74조 내지 제77조, 제78조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p> <p>③해양수산부장관은 효과적인 해안의 보호를 위하여 연안완충대안의 사유지와 바닷가 중 해양수산부 소유의 국유지로 등록한 토지를 국유재산법 제4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환할 수 있다.</p> <p>④제31조제4항의 규정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 또는 교환되는 토지·정착물의 귀속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p>	<p>제33조(협이에 따른 토지 등의 매수·교환)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연안완충대 설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연안완충대안의 토지 및 그 토지의 정착물(이하 이 조에서 “토지·정착물”이라 한다)을 매수할 수 있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연안완충대안의 토지·정착물을 협의매수하는 경우의 매수가격의 산정시기·방법 및 기준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 제70조, 제71조, 제74조 내지 제77조, 제78조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p> <p>③해양수산부장관은 효과적인 해안의 보호를 위하여 연안완충대안의 사유지와 바닷가 중 해양수산부 소유의 국유지로 등록한 토지를 국유재산법 제4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환할 수 있다.</p> <p>④제31조제4항의 규정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협의 또는 교환되는 토지·정착물의 귀속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p>

현행	개정안(1차협의)	개정안(2차협의)
<u>신설</u> >	<p>제34조(연안서식지의 보전과 복원) ①국가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연안서식지를 보전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간석지 및 하구역 등 연안습지 2. 산호초 및 해초군락 3. 해안사구 4. 염생식물군락지 5.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연안서식지 <p>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해안 및 연안서식지조사 또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해양생태계기본조사 등의 결과를 고려하여 연안서식지 보전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p> <p>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안서식지 보전대책을 수립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p> <p>④연안서식지 보전대책의 내용과 실시방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34조(연안서식지의 보전) 국가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연안서식지를 보전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간석지 및 하구역 등 연안습지 2. 산호초 및 해초군락 3. 해안사구 4. 염생식물군락지 5.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연안서식지 <p>②~④ 삭제</p>
<u><신설></u>	제35조(순손실방지제 등)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제35조(순손실방지제 등) ①해양수산부장관

회 행	개정안(1차협의)	개정안(2차협의)
	<p>자연해안과 연안서식지의 효과적인 보전을 위하여 자연해안 및 연안서식지 순손실방지제(이하 “순손실방지제”라고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p> <p>②국가는 훼손된 자연해안 및 연안서식지의 기능 회복을 위하여 연안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자연해안 및 연안서식지의 복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p> <p>③순손실방지제의 시행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복원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은 자연해안과 연안서식지의 효과적인 보전을 위하여 자연해안 및 연안서식지 순손실방지제(이하 “순손실방지제”라고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p> <p>②국가는 훼손된 자연해안을 복원하고 순손실방지제의 정책목표 달성을 위하여 연안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자연해안의 복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p> <p>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순손실방지제의 시행과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복원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신설>	<p>제36조(자연해안 및 연안서식지조사)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순손실방지제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연해안 및 연안서식지에 관한 조사(이하 “연안서식지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p> <p>②해양수산부장관은 연안서식지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p>	<p>제36조(자연해안 관리목표 설정)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연해안 순손실방지제의 실시를 위하여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중앙연안관리심의회 심의를 거쳐 자연해안의 관리목표를 설정하여야 한다.</p> <p>②해양수산부장관은 연안의 이용·관리실태, 권역별·지역별 자연해안 분포현황 등을 고려하여 자연해안 관리목표를 권역별·지역별로 구분하여 설정할 수 있다.</p>

회 행	개정안(1차협의)	개정안(2차협의)
	<p>③연안서식지조사의 항목과 다른 법률에 의한 연안지역조사와의 연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③<u>해양수산부장관은 자연해안 관리목표를 설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u></p> <p>④<u>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연해안의 관리목표 설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u></p> <p>⑤<u>자연해안 실태조사, 자연해안 관리목표 설정기준 등 자연해안 관리목표 설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p>
<p><u>제3장 연안정비사업</u></p>	<p><u>제5장 연안환경개선사업 및 연안재해방지사업</u></p>	<p><u>제5장 연안환경개선사업 및 연안재해방지사업</u></p>
<p><신설></p>	<p><u>제37조(연안환경개선사업시행자)</u> ①연안환경개선사업은 지역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 이를 수행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통령이 정하는 일정한 규모이상의 사업 2. 2이상의 광역시도에 걸쳐 시행할 필요가 있는 	<p><u>제37조(연안환경개선사업시행자)</u> ①연안환경개선사업은 지역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 이를 수행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통령이 정하는 일정한 규모이상의 사업 2. 2이상의 광역시도에 걸쳐 시행할 필요가 있는

회 행	개정안(1차협의)	개정안(2차협의)
	<p>사업</p> <p>3. 「항만법」 의한 지정항만구역 및 「어촌·어항법」에 의한 국가어항구역 안에서의 사업</p> <p>4. 그 밖에 공공의 이해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으로 대통령이 정하는 사업</p> <p>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연안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p> <p>③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닌 자가 연안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하고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지정을 받아 실시하여야 한다.</p> <p>1. 「항만법」 의한 지정항만구역 및 「어촌·어항법」에 의한 국가어항구역 안의 연안 : 해양수산부장관</p> <p>2. 제1호외의 연안 :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연안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인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p>	<p>는 사업</p> <p>3. 「항만법」에 따른 지정항만구역 및 「어촌·어항법」에 따른 국가어항구역 안에서의 사업</p> <p>4. 그 밖에 공공의 이해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으로 대통령이 정하는 사업</p> <p>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연안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p> <p>③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닌 자가 연안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하고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지정을 받아 실시하여야 한다.</p> <p>1. 「항만법」에 따른 지정항만구역 및 「어촌·어항법」에 따른 국가어항구역 안의 연안 : 해양수산부장관</p> <p>2. 제1호외의 연안 :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연안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인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p>

회 행	개정안(1차협의)	개정안(2차협의)
<p><신설></p>	<p>제38조(연안환경개선사업실시계획) ①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연안환경개선사업시행자가 연안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역계획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안환경개선사업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p> <p>②해양수산부장관이 아닌 연안환경개선사업시행자가 연안환경개선사업실시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③해양수산부장관은 직접 연안환경개선사업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안환경개선사업실시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이 직접 수립한 연안환경개선사업실시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38조(연안환경개선사업실시계획) ①제37조의 규정에 따른 연안환경개선사업시행자가 연안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역계획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안환경개선사업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p> <p>②해양수산부장관이 아닌 연안환경개선사업시행자가 연안환경개선사업실시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③해양수산부장관은 직접 연안환경개선사업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연안환경개선사업실시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이 직접 수립한 연안환경개선사업실시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다.</p>

현 행	개정안(1차협의)	개정안(2차협의)
	<p>④해양수산부장관은 직접 연안환경개선사업실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안환경개선사업실시계획을 승인한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p>	<p>지 아니하다. ④해양수산부장관은 직접 연안환경개선사업실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연안환경개선사업실시계획을 승인한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p>
<p>제13조(연안정비계획의 수립) ①해양수산부장관은 <u>효율적인 연안정비사업</u>을 위하여 10년 단위로 연안정비계획(이하 "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이 경우 다음 각호의 법률을 적용받는 연안에 대하여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수립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시계획법 2.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3. 유통단지개발촉진법 4. 자연환경보전법 5. 자연공원법 6. 독도등도서지역의생태계보전에관한특별법 7. 호소수질관리법 8. 수도법 	<p>제39조(연안재해방지기본계획의 수립) ①---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연안의 재해방지를 ----- 10년마다 연안재해방지기본계획을 -----.(이 경우 이하 삭제)</p> <p>1.~9. (삭제)</p>	<p>제39조(연안재해방지기본계획의 수립) ①--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연안의 재해방지를 ----- 10년마다 연안재해방지기본계획을 -----.(이 경우 이하 삭제)</p> <p>1.~9. (삭제)</p>

현행	개정안(1차협의)	개정안(2차협의)
<p>9. 야생동·식물보호법</p> <p>②해양수산부장관은 <u>정비계획</u>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u>제22조의 규정</u>에 의한 중앙연안관리심의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p> <p>③해양수산부장관이 <u>정비계획</u>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p>	<p>②해양수산부장관은 연안재해방지기본계획을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연안관리심의회 -----.</p> <p>③해양수산부장관은 연안재해방지기본계획을 -----.</p>	<p>②해양수산부장관은 연안재해방지기본계획을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중앙연안관리심의회 -----.</p> <p>③해양수산부장관은 연안재해방지기본계획을 -----.</p>
<p>제14조(정비계획의 내용) 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연안정비사업의 기본방향 2. 연안정비사업의 중·장기 계획 3. 연안정비사업의 연도별 내용 및 추진계획 <p><신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4. 기타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제40조(연안재해방지기본계획의 내용) 연안재해방지기본계획에는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연안재해방지사업의 ----- 2. 연안재해방지사업의 ----- 3. 연안재해방지사업의 ----- 4. 연안재해방지를 위한 연안이용행위간 조정계획 5. 그 밖에 ----- 	<p>제40조(연안재해방지기본계획의 내용) 연안재해방지기본계획에는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연안재해방지사업의 ----- 2. 연안재해방지사업의 ----- 3. 연안재해방지사업의 ----- 4. 연안재해방지를 위한 연안이용행위간 조정계획 5. 그 밖에 -----
<p>제15조(정비계획의 변경)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연안상태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정비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p>	<p>제41조(연안재해방지기본계획의 변경) ① -----연안의 여건변화 ----- 연안재해방지기본계획----- 인정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변경을 요청하는 때에는-----.</p>	<p>제41조(연안재해방지기본계획의 변경) ① -----연안의 여건변화 ----- 연안재해방지기본계획----- 인정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변경을 요청하는 때에는--.</p>

현 행	개정안(1차협의)	개정안(2차협의)
<p>②제1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u>정비계획</u>의 변경에 관하여 이를 각각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u>경미한 사항</u>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한하여 이를 준용한다.</p> <p><신설></p>	<p>②제3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 연안재해방지기본계획----- . -----, ----- 긴급한 -----경우나 경미한 사항을 -----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 .</p> <p>③해양수산부장관은 수립·고시된 연안재해방지기본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연안재해방지기본계획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②제3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 연안재해방지기본계획 ----- . -----, ----- 긴급한 경우나 경미한 사항을 -----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 .</p> <p>③해양수산부장관은 수립·고시된 연안재해방지기본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연안재해방지기본계획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제16조(연안정비사업의 시행자) ①항만법에 의한 지정항만 구역안의 연안에 대한 연안정비사업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이를 시행한다. 다만,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연안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이를 시행할 수 있다.</p> <p>②항만법에 의한 지정항만 구역외의 연안에 대한 연안정비사업은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이를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연안정비사업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이를 시</p>	<p>제42조(연안재해방지사업의 시행자) ① 「항만법」에 따른 지정항만 구역 안과 「어촌·어항법」에 의한 국가어항구역 안에서의 연안재해방지사업은 ----- 연안재해방지사업의 ----- .</p> <p>②제1항외의 연안에 대한 연안재해방지사업은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 .</p>	<p>제42조(연안재해방지사업의 시행자) ① 「항만법」에 따른 지정항만 구역 안과 「어촌·어항법」에 따른 국가어항구역 안에서의 연안재해방지사업은 ----- 연안재해방지사업의 ----- .</p> <p>②제1항외의 연안에 대한 연안재해방지사업은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 .</p>

현행	개정안(1차협의)	개정안(2차협의)
<p>행할 수 있다.</p> <p>1. 대통령이 정하는 일정한 규모이상의 사업</p> <p>2.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사업</p> <p>3. 2이상의 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걸쳐 시행할 필요가 있는 사업</p> <p>4. 기타 공공의 이해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p> <p>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연안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p> <p>④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닌 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지정을 받아 당해연안에서 연안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p> <p>1. 항만법에 의한 지정항만 구역안의 연안 : 해양수산부장관</p> <p>2. 제1호외의 연안 :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연안정비사업의 시행자인 시·도지사 또는 시</p>	<p>1. (현행과 같음)</p> <p>2. (현행과 같음)</p> <p>3. 2이상의 광역시·도에----- -----</p> <p>4. --- 영향이 큰 사업으로 대통령이 정하는 사업</p> <p>③----- 연안재해방지사업----- -----</p> <p>④----- -----아닌 자가 연안재해방지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 -----</p> <p>----- 지정을 받아 실시하여야 한다.</p> <p>1. 「항만법」에 의한 지정항만 구역 및 「어촌·어항법」에 의한 국가어항구역 안의 연안 : 해양수산부장관</p> <p>2.----- : ----- 연안재해방지사업의 -----</p>	<p>1. (현행과 같음)</p> <p>2. (현행과 같음)</p> <p>3. 2이상의 광역시·도에 ----- -----</p> <p>4. --- 영향이 큰 사업으로 대통령이 정하는 사업</p> <p>③----- 연안재해방지사업----- -----</p> <p>④----- -----아닌 자가 연안재해방지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 -----</p> <p>-- 지정을 받아 실시하여야 한다.</p> <p>1. 「항만법」에 따른 지정항만 구역 및 「어촌·어항법」에 따른 국가어항구역 안의 연안 : 해양수산부장관</p> <p>2. ----- : ----- 연안재해방지사업의 -----</p>

현행	개정안(1차협의)	개정안(2차협의)
<p>장·군수·구청장</p> <p>제17조(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의 수립 등) ①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연안정비사업의 시행자(이하 "연안정비사업시행자"라 한다)가 연안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u>정비계획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이하 "정비실시계획"이라 한다)</u>을 수립하여야 한다.</p> <p>②해양수산부장관이 아닌 연안정비사업시행자가 <u>정비실시계획을</u>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다만 이하 신설)</p> <p>③해양수산부장관은 직접 <u>정비실시계획을</u> 수립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u>정비실시계획을</u> 승인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이 직접 수립한 <u>정비실시계획을</u>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p> <p>④해양수산부장관은 직접 <u>정비실시계획을</u> 수립</p>	<p>-----</p> <p>제43조(연안재해방지사업실시계획의 수립 등) ①제42조----- 연안재해방지사업의 시행자가 연안재해방지사업을----- 연안재해방지기본계획의 ----- 연안재해방지사업실시계획을 -----.</p> <p>②----- 연안재해방지사업의 시행자가 연안재해방지사업실시계획 ----- .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긴급한 경우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③----- 연안재해방지사업실시계획을 ----- 연안재해방지사업실시계획을 ----- 연안재해방지사업실시계획을 -----.</p> <p>④----- 연안재해방지사업실시계획을</p>	<p>-----</p> <p>제43조(연안재해방지사업실시계획의 수립 등) ①제42조----- 연안재해방지사업의 시행자가 연안재해방지사업을----- 연안재해방지기본계획의 ----- 연안재해방지사업실시계획을 -----.</p> <p>②----- 연안재해방지사업의 시행자가 연안재해방지사업실시계획 ----- .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긴급한 경우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③----- 연안재해방지사업실시계획을----- 연안재해방지사업실시계획을 ----- 연안재해방지사업실시계획을 -----.</p> <p>④----- 연안재해방지사업실시계획을</p>

현 행	개정안(1차협의)	개정안(2차협의)
또는 변경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u>정비실시계획</u> 을 승인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연안재해방지사업실시계획을 ----- -----.	----- 연안재해방지사업실시계획을 ----- -----.
<신설>	제44조(연안의 긴급 방재대책)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해일, 파랑, 해수 또는 지반의 침식 등에 의한 연안재해로 긴급한 방재대책이 요구될 경우에는 제4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안의 긴급 방재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 방재대책을 수립·시행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4조(연안의 긴급 방재대책)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해일, 파랑, 해수 또는 지반의 침식 등에 의한 연안재해로 긴급한 방재대책이 요구될 경우에는 제4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안의 긴급 방재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긴급방재대책을 수립·시행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인·허가등의 의제) ①해양수산부장관이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u>정비실시계획</u> 을 고시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허가·인가·결정·면허·협의·동의·승인·신고 또는 해제 등(이하 이 조에서 "인·허가등"이라 한다)이 행하여진 것으	제45조(인·허가 등의 의제) ① ----- 제38조제4항의----- 연안환경개선사업실시계획을 공고하거나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안재해방지사업실시계획을 ----- -----(-----)-----	제45조(인·허가 등의 의제) ① ----- 제38조제4항의----- 연안환경개선사업실시계획을 공고하거나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안재해방지사업실시계획을 ----- -----(-----)-----

현행	개정안(1차협의)	개정안(2차협의)
<p>로 보며, 다음 각호의 관계 법률에 의한 인·허가 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p> <p>1. <u>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u>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u>소방시설공사업법</u>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신고 및 <u>위험물안전관리법</u>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허가</p> <p>2. <u>농어촌정비법</u>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승인</p> <p>3. <u>농지법</u>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전용허가</p> <p>4. <u>사방사업법</u>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안에서의 벌채등의 허가 및 <u>동법</u>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의 지정해제</p> <p>5. <u>산지관리법</u>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u>산지전용신고</u>,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u>동법</u>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p> <p>6. <u>야생동·식물보호법</u>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시·도야생동·식물보호구역 및 야생동·식물보</p>	<p>----- ----- 1.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소방시설공사업법」 ----- -----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 ----- 2. 「농어촌정비법」 ----- ----- 3. 「농지법」 ----- 4. 「사방사업법」 ----- ----- 같은 법 ----- ----- 5. 「산지관리법」 -----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25조의 규 정에 의한 채석허가, ----- ----- ----- ----- 6. 「야생동·식물보호법」 ----- -----</p>	<p>----- ----- 1.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 률」 -----, 「소방시설공사업법」 ----- ----- -----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 ----- ----- 2. 「농어촌정비법」 ----- ----- 3. 「농지법」 ----- 4. 「사방사업법」 ----- ----- 같은 법 ----- ----- 5. 「산지관리법」 -----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채석허가, ----- ----- ----- ----- 6. 「야생동·식물보호법」 ----- -----</p>

현행	개정안(1차협의)	개정안(2차협의)
<p>호구역 지정의 해제</p> <p>7. <u>초지법</u>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등의 허가 및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의 전용허가·신고 또는 협의</p> <p>8. <u>수산업법</u>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수면안에서의 공사시행의 승인</p> <p>9. <u>전기사업법</u>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u>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u></p> <p>10. <u>도시계획법</u>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등의 허가,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u>도시계획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의 인가</u></p> <p>11. <u>하수도법</u>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허가</p> <p>12. <u>도로법</u>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동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 시행등의 허가, 동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점용허가</p>	<p>-----</p> <p>7. 「초지법」 -----</p> <p>-----</p> <p>8. 「수산업법」 -----</p> <p>-----</p> <p>9. 「전기사업법」 제61조의 ----- 의한 전기사업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및 같은 법 제62조의 규정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p> <p>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p> <p>11. 「하수도법」 제24조의 -----</p> <p>-----</p> <p>12. 「도로법」 -----</p> <p>-----</p> <p>-----</p> <p>-----</p>	<p>-----</p> <p>7. 「초지법」 -----</p> <p>-----</p> <p>8. 「수산업법」 -----</p> <p>-----</p> <p>9. 「전기사업법」 제61조의 ----- 의한 전기사업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및 같은 법 제62조의 규정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p> <p>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p> <p>11. 「하수도법」 제24조의 -----</p> <p>-----</p> <p>12. 「도로법」 -----</p> <p>-----</p> <p>-----</p> <p>-----</p>

현 행	개정안(1차협의)	개정안(2차협의)
<p>13. <u>사도법</u>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의 개설등의 허가</p> <p>14. <u>공유수면관리법</u>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용 및 <u>사용허가</u></p> <p>15. <u>공유수면매립법</u>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매립면허, <u>동법</u>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및 <u>동법</u>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 또는 승인</p> <p>16. <u>소하천정비법</u>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p> <p>17. <u>골재채취법</u>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의 허가</p> <p>18. <u>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u>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무연분묘의 개장허가</p> <p>19. ~ 26. <신설></p>	<p>13. 「사도법」 ----- -----</p> <p>14. 「공유수면관리법」 ----- ----- 사용허가, 같은 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p> <p>15. 「공유수면매립법」 ----- -----, 같은 법 ----- 같은 법 ----- -----</p> <p>16. 「소하천정비법」 ----- -----</p> <p>17. 「골재채취법」 ----- -----</p> <p>18.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의 -- -----</p> <p>19.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1항 단서조항의 규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의 허가</p> <p>20. 「군사시설보호법」 제10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과의 협의</p>	<p>13. 「사도법」 ----- -----</p> <p>14. 「공유수면관리법」 ----- ----- 사용허가, 같은 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p> <p>15. 「공유수면매립법」 ----- -----, 같은 법 ----- 같은 법 ----- -----</p> <p>16. 「소하천정비법」 ----- -----</p> <p>17. 「골재채취법」 ----- -----</p> <p>18.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의 ----- -----</p> <p>19.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1항 단서조항의 규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의 허가</p> <p>20. 「군사시설보호법」 제10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과의 협의</p>

현행	개정안(1차협의)	개정안(2차협의)
<p>②해양수산부장관은 직접 <u>정비실시계획</u>을 수립 또는 변경하거나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u>정비실시계획</u>을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u>정비실시계획</u>에 제1항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p>	<p>21. 「군용항공기지법」 제16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과의 협의 2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 안에서의 점용의 허가 23. 「자연공원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 사업시행 및 공원시설관리의 허가, 같은 법 제23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행위허가와 같은 법 제71조의 규정에 따른 공원관리청과의 협의 24. 「해군기지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과의 협의 25. 「해양오염방지법」 제4조의8의 규정에 의한 해역이용 협의 26.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해양보호구역의 지정 해제 ②----- 연안환경개선사업 또는 연안재해방지사업의 실시계획을-----, 제38조제2항 또는 제43조제2항의----- 연안환경개선사업 또는 연안재해방지사업의 실시계획을----- 연안환경개선사업실시계획</p>	<p>21. 「군용항공기지법」 제16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과의 협의 <u>22. 「해군기지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과의 협의</u> 2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 안에서의 점용의 허가 24. 「해양환경관리법」 제84조의 규정에 따른 해역이용 협의 25.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해양보호구역의 지정 해제 ②----- 연안환경개선사업 또는 연안재해방지사업의 실시계획을-----, 제38조제2항 또는 제43조제2항의----- 연안환경개선사업 또는 연안재해방지사업의 실시계획을----- 연안환경개선사업실시계획</p>

현행	개정안(1차협의)	개정안(2차협의)
	또는 연안재해방지사업실시계획에 -----. <신설>	또는 연안재해방지사업실시계획에 -----.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협의와 관련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은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인·허가 등의 의제를 위한 처리기준 및 절차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처리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이를 통합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p>제19조(토지등의 수용·사용) ①연안정비사업시행자는 연안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u>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 관한법률</u>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물건 또는 권리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u>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u>을 준용한다.</p> <p>③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가 있는 때에는 <u>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u></p>	<p>제46조(토지 등의 수용·사용) ①연안환경개선사업시행자 또는 연안재해방지사업시행자는 연안환경개선사업 또는 연안재해방지사업의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p> <p>②-----</p> <p>-----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p> <p>③제38조제4항의 ----- 공고 또는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p>	<p>제46조(토지 등의 수용·사용) ①연안환경개선사업시행자 또는 연안재해방지사업시행자는 연안환경개선사업 또는 연안재해방지사업의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p> <p>②-----</p> <p>-----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p> <p>③제38조제4항의 ----- 공고 또는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p>

현행	개정안(1차협의)	개정안(2차협의)
<p>를 제20조제1항 및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u>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 및보상에관한법률</u>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의 시행기간내에 할 수 있다.</p>	<p>-----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같은 법 ----- .</p>	<p>-----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같은 법 ----- .</p>
<p>제20조(비용의 부담) ①연안정비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경비는 <u>연안정비사업시행자가</u> 이를 부담한다. ②정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담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제21조(원인자 부담) ①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u>연안정비사업</u>이 아닌 공사 또는 행위로 인하여 <u>연안정비사업</u>이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u>당해연안정비사업에</u>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인을 제공한 공사의 시행자 또는 행위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p>	<p>제47조(비용의 부담) ①연안환경개선사업과 연안재해방지사업의----- 사업시행자가 -----. ② (현행과 같음) ③ ----- --연안환경개선사업 또는 연안재해방지사업이 ----- 연안환경개선사업 또는 연안재해방지사업이----- 당해 연안환경개선사업 또는 연안재해방지사업에 ----- ----- .</p>	<p>제47조(비용의 부담) ①연안환경개선사업과 연안재해방지사업의----- 사업시행자가 -----. ② (현행과 같음) ③ ----- --연안환경개선사업 또는 연안재해방지사업이 ----- 연안환경개선사업 또는 연안재해방지사업이----- 당해 연안환경개선사업 또는 연안재해방지사업에----- ----- .</p>

현행	개정안(1차협의)	개정안(2차협의)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가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그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p>	<p>④제3항의----- ----- -----</p>	<p>④제3항의----- ----- -----</p>
<p style="text-align: center;">제4장 연안관리심의회</p>	<p style="text-align: center;">제6장 연안관리심의회 및 시·군·구 연안관리협의회</p>	<p style="text-align: center;">제6장 연안관리심의회 및 시·군·구 연안관리협의회</p>
<p>제22조(중앙연안관리심의회) ①연안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소속하에 중앙연안관리심의회를 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통합계획 및 지역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u>정비계획</u>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p><신설></p> <p><신설></p> <p><신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3. 기타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③중앙연안관리심의회 <u>의 구성 및 운영등에</u>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48조(중앙연안관리심의회) ①(현행과 같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행과 같음) 2. 연안재해방지기본계획----- 3. 연안용도구역의 설정에 관한 사항 4. 자연해안 및 연안서식지 순손실방지제에 관한 사항 5. 지역계획으로 반영된 연안환경개선사업의 사업비 배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 <p>② ----- 구성, 심의기준 및 방법 등에 -----</p>	<p>제48조(중앙연안관리심의회) ①(현행과 같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행과 같음) 2. 연안재해방지기본계획----- 3. <u>연안용도구역 및 연안기능구의 지정·변경에</u> 관한 사항 4. 자연해안 및 연안서식지 순손실방지제에 관한 사항 5. 지역계획으로 반영된 연안환경개선사업의 사업비 배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 <p>② ----- 구성, 심의기준 및 방법 등에 -----</p>

현행	개정안(1차협의)	개정안(2차협의)
<p><신설></p>	<p>제49조(소위원회) ①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연안관리심의회는 원활한 심의·조정을 위하여 중앙연안관리심의회에 다음 각 호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연안계획 소위원회 2. 공유수면매립 소위원회 3. 연안방재 소위원회 <p>②중앙연안관리심의회 및 소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및 연안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소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p> <p>③소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심의범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49조(소위원회) ①제48조의 규정에 따른 중앙연안관리심의회는 원활한 심의·조정을 위하여 중앙연안관리심의회에 다음 각 호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연안계획 소위원회 2. 공유수면매립 소위원회 3. <u>연안정비</u> 소위원회 <p>②중앙연안관리심의회 및 소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및 연안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소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p> <p>③소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심의범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23조(지역연안관리심의회) ①지역계획의 수립·변경 기타 관할 연안의 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지사소속하에 지역연안관리심의회를 둔다.</p> <p>②지역연안관리심의회는 기능,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u>시·도의 조례</u>로 정</p>	<p>제50조(지역연안관리심의회) ①----- -----그 밖에 ----- ----- ----- -----</p> <p>②----- ----- 지방자치단</p>	<p>제50조(지역연안관리심의회) ① ----- ----- 그 밖에 ----- ----- -----</p> <p>②----- ----- 지방자치</p>

현 행	개정안(1차협의)	개정안(2차협의)
한다.	체의 -----.	단체의 -----.
<p><u><신설></u></p>	<p>제51조(시·군·구 연안관리협의회)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한 의견수렴 및 자문을 위하여 그 소속 하에 시·군·구 연안관리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역계획의 수립·변경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관할연안에서의 이용·개발행위의 승인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관할연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p>②해양수산부장관과 시·도지사는 시·군·구 연안관리협의회가 활성화되도록 지원할 수 있다.</p> <p>③시·군·구 연안관리협의회는 기능,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p>	<p>제51조(시·군·구 연안관리협의회)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한 의견수렴 및 자문을 위하여 그 소속 하에 시·군·구 연안관리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역계획의 수립·변경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관할연안에서의 이용·개발행위의 승인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관할연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p>②해양수산부장관과 시·도지사는 시·군·구 연안관리협의회가 활성화되도록 지원할 수 있다.</p> <p>③시·군·구 연안관리협의회는 기능,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p>
<p>제24조(명예연안관리인) ①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연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p>	<p>제52조(연안청지기) ①시장·군수·구청장은 ----- -----</p>	<p>제52조(연안청지기) ①시장·군수·구청장은 ----- -----</p>

현 행	개정안(1차협의)	개정안(2차협의)
<p>우에는 <u>명예연안관리인</u>을 위촉할 수 있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u>명예연안관리인</u>의 자격, 위촉방법 및 직무범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 연안청지기를 ----- .</p> <p>②----- 연안청지기의 ----- ,</p> <p>----- .</p>	<p>----- 연안청지기를 ----- .</p> <p>②----- 연안청지기의 ----- ,</p> <p>----- .</p>
<p><신설></p>	<p>제7장 연안정보체계의 구축 등</p>	<p>제7장 연안정보체계의 구축 등</p>
<p><u><신설></u></p>	<p>제53조(연안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통합계획, 지역계획 또는 연안관리정책의 합리적인 수립과 집행을 위하여 연안의 지형·지물 등의 위치 및 속성, 연안이용, 해안선 등에 대한 다양한 지리정보와 항만·어항·도로·산업·도시·해양자원 등 인문·사회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연안정보체계를 구축·관리하여야 한다.</p> <p>②해양수산부장관은 연안현황을 조사하고 이를 지도로 제작하여 통합계획 또는 지역계획과 각종 연안이용계획의 수립과 집행 등을 위한 자료로 제공하여야 한다.</p>	<p>제53조(연안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통합계획, 지역계획 또는 연안관리정책의 합리적인 수립과 집행을 위하여 연안의 지형·지물 등의 위치 및 속성, 연안이용, 해안선 등에 대한 다양한 지리정보와 항만·어항·도로·산업·도시·해양자원 등 인문·사회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연안정보체계를 구축·관리하여야 한다.</p> <p>②해양수산부장관은 연안현황을 조사하고 이를 지도로 제작하여 통합계획 또는 지역계획과 각종 연안이용계획의 수립과 집행 등을 위한 자료로 제공하여야 한다.</p>
<p>제4조(실태에 관한 조사)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연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연안의</p>	<p>제54조(연안기본조사 등) ①----- 관리와 정보의 수집을 ----- 현황에 관한 정기조사(이</p>	<p>제54조(연안기본조사 등) ①----- 관리와 정보의 수집을 ----- 현황에 관한 정기조</p>

현 행	개정안(1차협의)	개정안(2차협의)
<p>실태에 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p> <p>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초 조사결과 해안선이나 생태계 등의 변화가 뚜렷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보완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p> <p>③해양수산부장관은 연안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정밀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p> <p><신설></p> <p><신설></p> <p><신설></p>	<p>하 “연안기본조사”라고 한다)를 -- ----- . 다만, 연안기본조사의 내용 중 자연 해안, 바닷가 현황 등에 대한 조사측량은 10년마다 실시한다.</p> <p>②-----조사결과 자연적 또는 인위적 요인으로 인하여 해안이나 연안환경 등의 ----- ----- 실시할 수 있다.</p> <p>③----- 연안환경개선사업 또는 연안재해방지사업 등을 위하여 특별한 관리가 ----- .</p> <p>④해양수산부장관은 연안기본조사 등을 실시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관련 국가조사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한다.</p> <p>⑤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p> <p>⑥사·도지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에 대한 제1항 내지 제3</p>	<p>사(이하 “연안기본조사”라고 한다)를 -- ----- . 다만, 연안기본조사의 내용 중 자연 해안, 바닷가 현황 등에 대한 조사측량은 10년마다 실시한다.</p> <p>②-----조사결과 자연적 또는 인위적 요인으로 인하여 해안이나 연안환경 등의 -- ----- 실시할 수 있다.</p> <p>③----- 연안환경개선사업 또는 연안재해방지사업 등을 위하여 특별한 관리가----- .</p> <p>④해양수산부장관은 연안기본조사 등을 실시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관련 국가조사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한다.</p> <p>⑤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p> <p>⑥사·도지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에 대한 제1항 내</p>

현행	개정안(1차협의)	개정안(2차협의)
<p>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 내용·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계획 및 조사결과에 관하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조사결과에 따라 연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p> <p>⑦제1항 내지 제6항의 ----- -----그 밖에----- .</p>	<p>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계획 및 조사결과에 관하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조사결과에 따라 연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p> <p>⑦제1항 내지 제6항의 ----- -----그 밖에----- .</p>
<p><신설></p>	<p>제55조(연안백서 등의 발간)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매년 연안의 현황에 대한 백서와 통계를 발간할 수 있다.</p> <p>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백서와 통계의 발간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p> <p>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안백서 및 통계의 내용,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55조(연안백서 등의 발간)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매년 연안의 현황에 대한 백서와 통계를 발간할 수 있다.</p> <p>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백서와 통계의 발간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p> <p>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연안백서 및 통계의 내용,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신설></p>	<p>제56조(연안정보의 운영) ①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하여 연안정보체계의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p>	<p>제56조(연안정보의 운영) ①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하여 연안정보체계의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p>

현 행	개정안(1차협의)	개정안(2차협의)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의 내용·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을 한 결과 시정조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시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그 조치계획 및 조치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에 관한 자체평가보고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 및 평가 결과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시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p> <p>④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 및 평가결과를 연안환경개선사업 및 연안재해방지사업의 수립·시행, 「어촌어항법」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의 수립, 「어장관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어장관리특별관리해역의 지정에 반영하도록 한다.</p> <p>⑤----- 및 제2항의--- 점검의 내용·방법, 평가의 범위·방법 그 밖에-----.</p>	<p>실태에 관한 자체평가보고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점검 및 평가 결과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시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p> <p>④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점검 및 평가결과를 연안환경개선사업 및 연안재해방지사업의 수립·시행, 「어촌어항법」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의 수립, 「어장관리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어장관리특별관리해역의 지정에 반영하도록 한다.</p> <p>⑤----- 및 제2항의--- 점검의 내용·방법, 평가의 범위·방법 그 밖에-----.</p>

현 행	개정안(1차협의)	개정안(2차협의)
<p><u>제26조</u> (토지등에의 출입등) ①연안정비사업시행자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점검을 실시하는 공무원은 연안정비사업 또는 연안의 조사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이 점용하는 토지나 연안해역(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재료적치장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죽목·토석 기타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이 점용하는 토지등에 출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출입하고자 하는 날의 5일전까지 그 점유자에게 그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그 점유자를 알 수 없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③일출전·일몰후에는 토지등의 점유자의 승낙 없이 택지 또는 담장이나 울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등에 출입할 수 없다.</p>	<p><u>제58조(토지 등에의 출입 등)</u> ①연안환경개선사업시행자 또는 연안재해방지사업시행자와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 및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점검을 실시하는 공무원(이하 "연안사업시행자 등"이라 한다)은 연안환경개선사업이나 연안재해방지사업 ----- ----- -----.</p> <p>② ----- -----, ----- 가 현장에 없거나 주소불명으로 그 동의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읍면동의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하며, 게시 또는 공고한 후 14일이 경과한 때에는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본다.</p> <p>③ (현행과 같음)</p>	<p><u>제58조(토지 등에의 출입 등)</u> ①연안환경개선사업시행자 또는 연안재해방지사업시행자와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 및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점검을 실시하는 공무원(이하 "연안사업시행자 등"이라 한다)은 연안환경개선사업이나 연안재해방지사업 ----- <u>출입(조사관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u> ----- -----.</p> <p>② ----- -----, ----- 가 현장에 없거나 주소불명으로 그 동의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읍면동의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하며, 게시 또는 공고한 후 14일이 경과한 때에는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본다.</p> <p>③ (현행과 같음)</p>

현 행	개정안(1차협의)	개정안(2차협의)
<p>④연안정비사업시행자 또는 조사등을 실시하는 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를 재료적치장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사용하거나 죽목·토석 기타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는 경우에는 토지 또는 장애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토지 또는 장애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을 알 수 없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신설></p> <p>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p>	<p>④연안사업시행자 등은 ----- ----- ----- ----- ----- ----- .</p> <p>⑤토지의 점유자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일시사용·조사관찰 행위 및 장애물의 변경·제거행위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지 못한다.</p> <p>⑥ (현행과 같음)</p>	<p>④연안사업시행자 등은 ----- ----- ----- ----- ----- ----- .</p> <p>⑤토지의 점유자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일시사용 및 장애물의 변경·제거행위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지 못한다.</p> <p>⑥ (현행과 같음)</p>
<p>제27조 (손실보상) ①연안정비사업시행자는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는 때에는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연안정</p>	<p>제59조(손실보상) ①연안사업시행자 등은 제58조제1항의 ----- ----- .</p> <p>②----- 연안사업시행자 등과</p>	<p>제59조(손실보상) ①연안사업시행자 등은 제58조제1항의 ----- ----- .</p> <p>②----- 연안사업시행자 등과</p>

현행	개정안(1차협의)	개정안(2차협의)
<p>비사업시행자와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하여야 한다.</p> <p>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p>	<p>-----</p> <p>③ (현행과 같음)</p>	<p>-----</p> <p>③ (현행과 같음)</p>
<p>제28조(권한의 위임·위탁) ①이 법에 의한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그 소속기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하거나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p> <p>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연안의 주기적 점검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자원의 보전 및 이용등에 관한 조사·연구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p>	<p>제60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현행과 같음)</p> <p>②-----제57조-----</p> <p>-----</p>	<p>제60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현행과 같음)</p> <p>②-----제57조-----</p> <p>-----</p>
<p><신설></p>	<p>제61조(자료제출 협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제8조제3항, 제28조제3항, 제36조제2항, 제54조제5항, 제55조제2항 및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p>	<p>제61조(자료제출 협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제8조제3항, 제28조제3항, 제36조제2항, 제54조제5항, 제55조제2항 및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p>

회 행	개정안(1차협의)	개정안(2차협의)
	응하여야 한다.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신설>	<p><u>제62조(연안의 이용·개발행위 등의 사후관리)</u> ①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2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협의나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허가면허·인가·승인 등(이하 이 조에서 “허가 등”이라 한다)을 하거나 협의내용을 반영하지 아니하고 허가 등을 한 때 또는 피허가자 등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협의를 한 때에는 그 허가 등의 취소, 사업의 중지, 공작물의 철거·운영정지 및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해당 행정기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행정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p> <p>②제1항의 해당 행정기관은 제25조제1항 및 제2항, 제29조제3항에 따른 협의의견을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하며, 피허가자 등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p>

현행	개정안(1차협의)	개정안(2차협의)
		행에 필요한 조치를 명령하여야 한다.
<u><신설></u>	제9장 벌칙	제9장 벌칙
<u><신설></u>	<p>제62조(벌칙) ①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연안완충대 관리를 위하여 제한된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1. 제25조 제1항 및 제2항,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받지 아니하고 이용 또는 개발행위 등을 한 자</p> <p>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5조 제1항 및 제2항,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 또는 승인을 받은 자</p>	<p>제63조(벌칙) ①연안완충대 안에서 제29조제2항 각 호의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②제25조 제1항 및 제2항,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협의를 하지 아니하거나(협의를 하였으나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포함) 협의내용을 위반하여 이용 또는 개발행위 등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u><신설></u>	<p>제6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에 종업원이 그 법인이나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2조 각 호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과한다.</p>	<p>제64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에 종업원이 그 법인이나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과한다.</p>

현행	개정안(1차협의)	개정안(2차협의)
<p>제29조(과태료) ①정당한 사유없이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 일시사용 및 장애물의 변경·제거를 방해 또는 거부한 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p> <p>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p> <p>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p> <p>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p>	<p>제64조(과태료) ①----- 제58조 제5항-----, 일시사용, 조사관찰 -----.</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 <p>④ (현행과 같음)</p> <p>⑤ (현행과 같음)</p>	<p>제64조(과태료) ①----- 제58조제5항-----, <u>일시사용 및 장애물의</u>-----.</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 <p>④ (현행과 같음)</p> <p>⑤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1차협의)	개정안(2차협의)
<신설>	제65조(위반행위의 통보) 해양수산부장관은 제62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고 당해 행위의 허가 또는 승인 등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삭제>
	부칙	부칙
<신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설>	제2조(연안관리지역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수립된 연안관리지역계획은 이 법에 의하여 새로이 수립 또는 변경되기 전까지는 이 법에 의하여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2조(연안관리지역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수립된 연안관리지역계획은 이 법에 의하여 새로이 수립 또는 변경되기 전까지는 이 법에 의하여 수립된 것으로 본다.

참 고 문 헌

- 갯벌생태계조사 및 지속가능한 이용방안 연구, 해양수산부, 2005
- 건설교통부, 하천일람, 2005.
- 건설교통부, 2006년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연차보고서, 2006.
- 김종덕, 연안역이용관리에 있어서 이해관계자 구성 및 시민참가에 관한 연구, 2003
- 남정호 외, 2004. 연안·해양보호구역 통합관리방안.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남정호, “연안해양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갈등관리 기본방향”, 「월간 해양수산」, 통권 246호, 해양수산개발원, 2005.
- 박규현, “우리나라의 연안통합관리 발전단계”, 「해양수산부-미해양대기청 연안통합관리 워크숍 자료집」, 2002. 12.
- 소방방재청, 재해연보, 2004.
- 육근형·남정호, 생물다양성협약(CBD) 동향 및 대응방향-연안·해양보호구역 분야,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월간해양수산 2007년 2월호
- 윤성순·최지연·주성재, 「연안관리지역계획 실효성 제고 및 계획수립 모형(안) 개발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3.
- 이지현, 사례지역에 대한 연안역 통합관리방안의 적용, 1998.
- 지속가능한 하구역 관리체계 구축방안 연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2006
- 지속위, 연안해양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 국정과제회의자료, 2005
- 최병두, “세계화 시대 지방통치와 지역발전”, 「근대적 공간의 한계」, 삼인, 2002.
- 최지연·주성재·윤성순, “연안관리지역계획 실효성 제고를 위한 연안구역 설정방안”, 「월간 해양수산」, 통권 234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4.
- 해양수산부 연안관리정보시스템 www.coast.go.kr
- 해양수산부, 「연안실태에 관한 기초조사」, 2003.
- 해양수산부, 「제2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2001. 7.
- 해양수산부, 연안실태에 관한 기초조사, 2003-2004
- 해양수산부, 연안침식 모니터링 체계구축, 2003-2006.

- A/57/57 Oceans and the law of the sea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2002
- Bernal, P. and Cicin-Sain, B., Toward The 2002 World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 Johannesburg: Ensuring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Oceans and Coasts A Call to Action, 2001.
- Cicin-Sain, B. and R. W. Knecht, Integrated Coastal and Ocean Management; Concepts and Practices, Univ. of Delaware Press, Washington D.C., 1998
- Cicin-Sain, B. and R. W. Knecht, The Future of U. S. Ocean Policy, Washington DC: Island Press, 2000.
- Coastal Resources Management Council, Rhode Island Coastal Management Program, 1999.
- Coastal Zone Management Act Funding Summary 2004, Office of Ocean and Coastal Resource Management, National Ocean Service, NOAA.
- Constanza et al, "The Value of the World's Ecosystem Services and Natural Capital", Nature, 387:253-260, 1997.
- Davis, B. C., "Inventory, Classification, and Analysis of Special Management Area Associated with U. S. Coastal Programs", Coastal Management, 31, 2003.
- Ehler, N., "The Evolution of Integrated Coastal Management in the United States: Lessons Learned and Next Steps", 「해양수산부-미해양대기청 연안통합관리 워크숍」 자료집, 2002.
- Elliot A. Norse, A zoning approach to manage the marine ecosystem, Marine Conservation Biology Institute, 2003.
- Ellsworth J., P., Hildebrand, L. P., Glover, E. A., "Canada's Atlantic Action Program: A community-based approach to collective governance", Ocean and Coastal Management 36:121-142, 1997.
- Environment Canada, An Evaluation of the Atlantic Coastal Action Program(ACAP) : Economic Impact and Return on Investment, 2002.
- Gibson, J., Legal and regulatory bodies: Appropriateness to integrated coastal zone management, European Commission-DG XI.D.2., 1999.
- Great Barrier Reef Marine Park Authority(GBRMPA), Summary report of the social and

- economic impacts of the rezoning of the Great Barrier Reef Marine Park, 2003.
- Hale, Z. L., Ronadue, D. D., "International Experience in Integrated Coastal Resource Management", 「The Fiji National Workshop on Integrated Coastal Resources Management」., 2002.
- helcom.fi/manandsea/fisheries.html
- Hong, H., How Scientific and Technical Support has Contributed to the Achievement of ICM Program in Xiamen, Xiamen International Training Center for Coastal Sustainable Development, 2004.
- Jack Wiggin, Ocean zoning for the Gulf of Maine, 2003.
- Juda, L., Changing National Approaches to Ocean Governance: The United States, Canada, and Australia, *Ocean Development & International Law*, 34:161-187., 2003.
- Lau, M., Integrated coastal zone management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n assessment of structural impacts on decision-making processes, *Ocean and Coastal Management* 48:115-159., 2005.
- Lawrence Juda, 2003, Changing National Approaches to Ocean Governance: The United States, Canada, and Australia, *Ocean Development & International Law*
- Lott, J., "Federal and State Interactions in the US Coastal Zone Management Program: Assistance, Oversight, and Mediation", 「해양수산부-미해양대기청 연안통합관리 워크숍」 자료집., 2002.
- McCleave, J., Xue X., Hong, H., Lessons learned from 'decentralized' ICM: an analysis of Canada's Atlantic Coastal Action Program and China's Xiamen ICM Program, *Ocean and Coastal Management* 46:59-76.,2003.
- Nick Harvey & Brian Caton, 2003, *Coastal Management -in Australia*, Oxford university press
- North Carolina Division of Coastal Management, Technical Manual for Coastal Land Use Planning, 2005.
- PEMSEA, Regional training workshop on the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f coastal use zoning plan and institutional framework, 2002
- Penny Doherty, *Ocean Zoning: the perspectives on a new vision for the Scotian shelf*

and Gulf of Maine, 2003.

Pred, A., "Place as Historically Contingent Process: Structuration and Time-geography of Becoming Place", *Annals of the 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 74(2), 1984.

Stojanovic, T., Ballinger, R. C., Lalwani, C. S., Successful integrated coastal management: measuring it with research and contributing to wise practice, *Ocean and Coastal Management* 47:273-298, 2004.

Urban Harbors Institute, New Jersey Coastal Program Boundary, the Univ. of Massachusetts Boston, 2003.

www.coasalguide.org/icm/baltic/main.html

www.env.go.jp/en/wpaper/1994/eae23000000055.html

www.helcom.fi/environment/introduction.html

www.helcom.fi/helcom/groupstaskforce/helcomhabitat.html

www.moct.go.kr

www.ramsar.org/forum/mitigation_hugett_bis.htm

www.unesco.org/csi/act/russia/legalpro5.htm

부 록



부록 1

연안용도구역제도 도입을 위한 현황 및 의향조사

조사의 목적

연안에서의 이용이 다양화, 고도화되면서 공간수요가 크게 증가하는 동시에 난개발과 같은 기존 이용행위의 적절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동일한 해양공간에 대한 이용개발과 보전의지가 상충되면서 이의 조정을 위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되고 때로는 심각한 사회갈등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우리 부에서는 이러한 선점식 해양공간이용방식에 따른 공공재의 불평등한 이용행태를 개선하고 적절한 용도구역 설정을 통하여, 보다 예측가능하고 과학적 근거와 사회적 합의에 바탕을 둔 선진적 해양공간이용방식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연안용도구역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는 연안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연안' 중 해역공간 이용실태와 연안용도구역제도 전반에 대한 여러분의 의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사취지 : 연안용도구역제도의 취지와 의의에 대한 인식도 조사

연안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예측가능한 관리를 위하여 이용형태, 과학적 자료, 이해관계자 합의를 바탕으로 해역의 용도 또는 기능을 미리 정하여 관리하는 연안용도구역제도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이러한 제도의 취지와 의의에 대하여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모름	거의 모름	약간 이해	대부분 이해	완전히 이해
1	2	3	4	5

귀하께서는 이 제도가 우리나라의 효과적인 해양국토관리를 위하여 어느 정도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필요없음	별로 필요없음	약간 필요함	상당히 필요함	반드시 필요함
1	2	3	4	5

우리나라 연안의 이용형태와 관리여건을 고려하였을 때 본 제도의 본격적인 도입시기는 언제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이후
1	2	3	4	5

조사취지 : 제도도입의 기대효과에 대한 인식조사

이 제도가 우리나라에 도입되는 경우 기대되는 가장 큰 효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본격적인 해양국토의 관리를 위한 체계 구축
- ② 불필요한 갈등요인을 사전예방하여 지속가능한 연안이용 도모
- ③ 무분별한 연안이용을 제어하여 해양환경과 생태계를 효과적으로 보호
- ④ 진취적인 해양개발과 안정적 경제활동을 위한 여건 조성

조사취지 : 제도의 관리체계에 대한 의향조사

연안용도구역제도를 도입한다면 어떤 체계가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해역 고유의 특성을 고려하여 토지의 용도지역제와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해역 관리가 용이한 체계로 구축
- ② 전체 국토이용과의 연계성 확보를 위하여 토지의 용도지역제와 일관성을 갖도록 구축
- ③ 연안의 범위가 육역과 해역을 모두 포함하므로 연안통합관리의 개념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육역 공통적으로 적용가능한 새로운 체계를 도입
- ④ 현실적으로 육역에 대한 추가적인 관리체계구축은 필요성이 없으므로 해역만을 대상으로 체계가 구축되는 것이 바람직함

□ 해역에 용도구역제도를 도입한다면 어느 범위까지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해양국토 관리차원에서 EEZ를 포함한 전 해역에 도입하는 것이 타당함
- ② 해양법 등 국제적인 규약과 연안관리법의 범위를 고려하여 영해에 한하여 도입하는 것이 타당함
- ③ 영해 내에서도 이용행위가 집중적으로 발생되고 갈등의 우려가 큰 일정수심이하(예 : 30m)의 해역에만 도입하는 것이 현실적임
- ④ 관리수요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灣위주의 특별한 범위를 정하여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함
- ⑤ 지방자치단체에 도입범위를 일임하여 자율적인 연안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조사취지 : 행위규제 및 이용우선순위 도입에 대한 의향조사

□ 보전용도나 이용개발제한연안으로 설정된 연안에 대하여 국립공원이나 자연환경보전지역과 같은 행위규제를 도입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의 실현을 위하여 육상과 유사한 강력한 규제조치를 법률로 정하여 관리하여야 함
- ② 규제조치가 포함되는 연안은 기존 법률에서 정하는 보호구역에 국한하되, 다만 보전적 기능이 우선되는 연안의 개념으로 관리하여야 함
- ③ 연안이 가지는 환경의 가변성과 어업활동, 단속의 곤란도 등을 고려할 때 행위제한을 두는 연안의 설정은 현실적으로 어려움

□ 용도구역별로 행위제한을 둔다면 어떤 방식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법률에 구체적인 불법행위와 제한행위를 명확하게 하여 제도의 투명성을 높이고 이용자의 이해를 돕도록 하는 것이 타당함
- ② 새로운 이용수요에 대처하고 유보가치를 존중한다는 측면에서 최소한의 제한행위만을 두도록 함

- ③ 제한행위를 판단할 명확한 근거가 부족한 상태이므로 행위제한은 배제하고 용도구역별 공유수면관리의 차별화를 통하여 사안별로 대처함
- ④ 제한행위보다는 가능행위를 설정하고 병존가능성 검토를 통한 우선순위 설정으로 갈등이나 이해침해가 최소화되도록 하는 방식이 바람직함

□ 용도구역별로 가능행위의 우선순위를 둔다면 무엇을 기준으로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현재 이용여건을 분석하여 가장 많은 이해관계자를 가진 행위를 중심으로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초기의 갈등요인을 저감시켜야 할 것임
- ② 현재의 이용행위를 고려하되 경제적인 기여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함
- ③ 국가적인 해양관리 정책방향에 부합되는 지를 가장 중요한 평가요인으로 두고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함
- ④ 자연생태환경요인에 가장 적합한 이용행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지속가능성에 주안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함

조사취지 : 기존 법률 또는 계획, 관행과의 관계에 대한 인식조사

□ 해역에는 이미 개별 법률과 각종 법정계획, 또는 관행에 따라 다양한 구역(항만구역, 광구, 어업권 등)이 지정되어 있거나 공유수면 점사용 등 이용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에 대하여 용도구역제도가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해양국토관리의 새로운 개념을 제시하는 제도의 취지에 맞도록 기존의 이용행위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재조정을 실시해야 함
- ②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한다면 적법한 근거를 가지고 지정된 구역이나 이용행위가 이루어지는 공간을 제외한 해역에 도입하는 것이 타당함
- ③ 포괄적인 용도구역을 설정하고 하위개념인 기능구를 도입하여 기존의 행위를 수용하되 기허가 사항의 취지를 최대한 반영하는 것이 타당함

□ 적절한 연안용도구역제도의 관리주체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갈등의 효과적인 조정과 구획결정을 위한 제반 정보의 수집, 불법행위의 단속능력 등을 고려할 때 해양수산부에서 직접 관리를 하는 것이 타당함
- ② 해양수산부는 제도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한 방침을 제정하여 시달하고 실질적인 이용행위자가 거주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방침에 준하여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함
- ③ 관할해역의 범위에 따라 관리청을 구분하고 공통의 지침을 활용하여 관리청별로 별도의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함

조사취지 : 제도도입에 있어서의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조사

□ 연안용도구역제도 도입에 있어서 예상되는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기존 이용행위간의 조정
- ② 과학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근거자료의 결여
- ③ 행위제한 설정 및 단속 등 실질적인 관리의 곤란
- ④ 분산된 관리청간의 권한 및 책임조정 등과 같은 관리체계의 구축
- ⑤ 국방, 외교 등 특수여건의 반영 및 조정

추가 의견

부록 2

연안관리법 개정 및 선진제도 도입을 위한 전문가 워크숍 개최결과 보고

2006. 6. 21 - 22

장소 : 강화군 강화로얄관광호텔

주최 : 해양수산부

주관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후원 : (주)비엔티솔루션, (주)지오시스템리서치

개최배경

해양수산부의 발족과 더불어 1999년 제정된 연안관리법은 우리나라의 통합적인 연안관리를 추진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든 획기적인 정책이었다.

연안의 효율적인 보전·이용 및 개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연안환경을 보전하고 연안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도모하여 연안을 쾌적하고 풍요로운 삶의 터전으로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연안관리법은 제정 이후 연안통합관리계획 및 연안관리지역계획의 수립을 통하여 실현되고 있다.

그러나 법제정 초기에 검토되었던 관리조정수단이 입법과정을 거치면서 크게 약화되어 실질적인 통합조정기능이 미흡한 상태로 추진되고 있어 계획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고 연안용도구역제와 같은 새로운 정책수단의 도입을 고려한 법 개정을 위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다.

개최 목적

본 워크숍에서는 우리나라 연안관리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을 도출하여 연안관리법의 개정방안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효과적인 연안관리를 위하여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연안용도구역제에 대한 논의를 통해 바람직한 정책 추진방향을 설정하고자 한다.

또한 현재 추진 중인 연안관리정보시스템의 구축과 새로운 정책과의 연계방안에 대하여 연안계획과, 연구용역진과 전문가 간의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개최되었다.

개최 일정 및 시간계획

□ 개최 일시 : 2006. 6.21 - 6.22(1박2일)

□ 개최 장소 : 강화군 강화로얄관광호텔

□ 참석 범위 : 해양수산부 연안계획과, 연안관리제도개선연구 연구진,
전문가 자문단, 초청 전문가 등 23명

□ 세부시간계획 (사회 연안계획과 권준영 서기관)

	시각	주요내용	비고
21일	15:00 - 15:05	개최인사	서병규 연안계획과장
	15:05 - 15:40	연안관리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KMI 윤진숙 부연구위원
	15:40 - 16:20	연안용도구역제 도입방안	KMI 김종덕 부연구위원
	16:20 - 16:30	휴식	
	16:30 - 18:00	전체토론	자문위원
	18:00 - 18:20	연안관리정보시스템 구축방향	비엔티솔루션
	18:20 - 19:00	토론	참석자
	19:00 -	식사 및 자유시간	
22일	09:00 - 10:30	연안관리 분야 정책방향 토의	참석자
	10:30 - 12:30	철새도래지 탐방 및 갯벌센타 방문	참석자
	12:30 - 13:30	점심식사	
	13:30	해산	

참석자 명단

번호	성명	소속	직위, 전공분야
해양수산부			
1	서병규	연안계획과	과장
2	권준영	"	서기관
3	김무홍	"	사무관
4	류중빈	"	사무관
5	황준	"	사무관
6	조형동	"	주무관
7	이외경	"	주무관
전문가 자문단			
8	김성태	국립수산과학원	제주, 동해지역 수산자원
9	최광호	"	서해, 남해지역 수산자원
10	강대석	부경대학교	해양생태계평가
11	권석재	한국해양연구원	해양경제학
12	이문숙	"	지역계획
연구진			
13	김종덕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안공간관리제도
14	윤진숙	"	연안 및 생태계관리
15	윤성순	"	연안관리계획
16	신철오	"	경제정책
17	박수진	"	해양법제
18	정명국	"	도시계획
19	최희정	"	연안관리정보
20	이원갑	"	연안관리 및 법제
연안관리정보시스템 개발팀			
21	김계영	비엔티솔루션	연안정보시스템
22	신영재	"	"
23	남수용	지오시스템리서치	해양모델 및 모니터링

□ 1일차(6월 21일) 토론내용

부문	내용
연안관리법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수산부 내부에서 연안관리법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에 대한 자성이 필요. 해양수산부 타 과에서 조차 연안관리법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타 부처와의 조정은 불가능함. - 도시계획은 지적도면과 행위규제규정 등 명확한 관리수단을 가지고 있어 잦은 인사이동에도 불구하고 행정집행이 용이하나, 현재의 연안관리계획은 도시계획과 같은 관리수단을 두지 않아 매우 어려워함. - 공청회 등 국민에게 연안관리에 대한 설명과 여론을 청취할 수 있는 방법이 강화되어야 함. - 연안관리제도의 수행성과에 대한 평가체계를 만들어 지금까지의 성과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 - 연안관리지역계획의 이행평가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를 고심해야함. 평가에 따른 지원 및 벌칙조항을 연안관리법에 둘 것인지 아니면 타 법률의 규정을 이용할 것인지를 검토가 필요하며, 이행평가와 지원방안, 벌칙조항의 연계가 중요함. - 연안통합관리계획 및 연안관리지역계획을 수립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지자체공무원들의 이해가 매우 부족하므로 이에 대한 보완책 필요함. - 현재 수립된 연안관리지역계획은 7년 동안 겨우 수립되었음. 연안통합계획의 변경 후 지역계획의 변경이 원활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통합계획의 변경 후 지역계획의 변경에 필요한 예산지원 및 강제수립기간에 대한 기준의 검토와 미 이행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함. - 연안정보화사업은 현재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으므로 이후 연안관리법 및 통합관리계획의 변경에서 이에 대한 근거설정이 필요함. - 지원체계에서 해수부내에서만 지원뿐만 아니라 타 부서의 제도를 이용한 지원체계의 검토가 필요(행자부에서 해안선길이를 기초로 교부금을 지원하는 것과 연계하는 등)

부문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안관리법과 공유수면관리법과의 관계에 대한 정립이 필요 - 해역이용영향평가제도를 연안관리에 도입하는 것은 해역이용협의 제도와 연계할 때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 필요 - 공유수면이용에 대한 배타적 권리가 이미 나타나고 있음. 따라서, 해양공간도 토지와 같이 공개념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함. - 연안이용행위를 규모에 따라 연안관리법 및 통합계획의 협의/허가 대상이 되도록 법에 반영되어야함. - 현재의 연안관리의 최대 인센티브는 연안정비사업임. 연안관리법 개정시에 연안정비사업만으로는 부족하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연안관리사업의 도입이 필요
통합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의 면적이 적은 우리나라의 특성에 맞도록 수정된 제도의 도입이 필요함. - 지방분권의 취지를 살려 중앙정부에서는 기본구상 및 방향만을 잡고, 지방정부에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연안관리심의회에서 연안구역의 설정이 제대로 되었는지에 대한 평가(심의)도 중요하지만 이행 및 보전행위에 대한 평가(심의)도 병행 - 중앙정부에서는 기본 방향만 정하고 지방정부에서 계획을 운영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것도 방안임 - 통합계획의 성격(공간관리계획, 정책계획, 가이드라인)에 대한 판단이 우선적으로 필요 - 타 부서 및 기관과의 협의에서 지역계획에 일임하는 것보다 통합계획에서 협의를 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함.
지역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계획 및 시범사업을 시범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모범사례를 만들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해양수산부 간의 MOU 체결 등의 제도적 지원방안의 검토가 필요 - 지역계획의 이행은 지역협의회 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계획을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 -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계획의 수립/변경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도록 하면 현재와 같이 지역계획의 수립/변경이 지체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며, 중앙정부에서는 수립 및 변경의 절차만 정하여 주면 됨.

부문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계획의 수립권자가 시장군수인데 수립권자가 요구하는 개발사업의 반영은 용역기관에서 반대하기 어려움. 따라서 지역계획 승인 이후 해당사업의 추진 등을 점검하여 일정기간 내에 사업수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삭제/배제되는 규정을 두어 운영하는 방안 필요 - 수립된 지역계획을 어떤 방법과 기준으로 점검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 - 연안지역에 대한 생태계조사가 금년부터 이루어지는데 연안관리에서 무척 중요하며 5년 후에는 이 자료가 확정되면 통합관리계획 및 지역계획에 반영하여야 함 - 개발연안으로 나타난 지역에 대해 투기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검토하여야 함. - 명예연안관리인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검토가 필요
연안관리심의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연안관리심의회에 소위원회 구성 시 상설로 할 것인가 현안이 있을 때 구성할 것인가에 대한 검토 필요. 상설시 전문인력의 확보가 절실함. - 중앙심의회에서 연안정비사업의 전문적인 부분을 심의할 수 없음. 전문심의단을 구성하여 중앙심의회에 전문성을 강화하거나 평가기능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 - 현재의 연안관리는 협의와 조정이 주요 기능인데 평가기능을 소위원회에 둔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소위원회에 평가기능을 두는 것 보다 별도의 평가기구를 두어 여기서 평가의 내용을 소위원회에 전달하여 소위원회에서 협의 조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턴키심사와 같은 다수(500~1000인)의 전문가풀을 두어 공유수면매립 심의기능 강화를 검토
zoning제도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지역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하여 구역을 구분하고 이용행위의 규모와 수준을 정하여 이에 따른 영향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함. - 용도지역제의 도입 및 설정에서 feed back 과정을 반드시 도입해야함. - 부족하지만 zoning제도를 도입하면 연안의 이용행위시 zoning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문의가 있을 것임. 설사

부문	내용
	<p>zoning제도가 허술하여 협의사항을 모두 들어주더라도 협의의견을 묻는 행정절차를 이행하게 될 것이며, 이를 토대로 해양에 영향을 미치는 육지지역의 zoning으로 이행해나가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지역계획이 연안구역은 실질적인 용도구역에 해당함. 향후 연안관리제도개선에서 현재의 연안구역을 어떻게 수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 - zoning제도를 도입하였을 경우 가장 큰 문제는 관리임. 현재의 지역계획 담당부서에서는 계획을 수립 및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함. 지역지방자치단체의 관리 및 운영역량을 강화 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전문직공무원 또는 전문위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함.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계획 수립을 촉구하는 등 외형적인 활동보다는 내실을 다질 수 있는 활동이 필요함. - 점사용 및 매립 등 연안공간을 지방자치단체가 이용하려는 경우 지역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이유로 협의하지 않으면서, 해양수산부에서 이용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는 등 불만의 소리가 있음. - 연안관리법 개정예 앞서 연안관리법 재정당시의 참여자를 초청하여 당시의 경험에 대한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을 듯함. - 연안관리제도를 이행하기 위한 기금의 마련이 필요함. - 기존 공유수면 점사용료 및 면허 관련한 예산을 활용한 기금의 구성을 논의하였으나 구체적인 안은 없음. - 민간의 이용이 가능한 지역을 처분하여 조성된 자금을 이용하여 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매입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음.



□ 연안관리에 있어서의 논점과 방향

부문	논의내용
<p>○ 연안계획과 기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인도서·해중·해저·공유수면(해수욕장) 등 공간관리, 연안경관관리, 연안재해, 해수면상승, 자연해안선관리, 심층수자원 관리, 연안육역이용협의, 공유수면점사용료 운용, 연안관리사업 실시, 지역계획 관리운영점검, 연안용도구역제 운영, 보호구역외 주요 서식지(갯벌, 하구역, 사구) 관리, 명예연안관리인제도 및 시민단체 지원, 연안관리정보시스템의 운영, 연안관리 국제협력사업 등이 업무로 검토할 수 있음 cf) 오염물질-해양환경과, 해양생물-해양환경발전팀, 폐기물-해양보전과 - EEZ, 공유수면매립, 준설토, 바다모래, 해양건축물, 항만구역외 국유재산관리, 실태조사, 국제협력 등의 범위가 과 기능으로 포함될 수 있음 - 연안관리청(자)의 지정 - 공유수면관리청과 동일하게 하는 방안 검토 - 국토의 연장선에서 해양의 관리가 정의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전체적인 해양의 관리방향이 먼저 정해지고 세부적인 방안이 논의되어야 함 - 바다를 디자인한다는 기본 정신을 가지고 추진 - 연안관리는 최상위 해양공간관리의 역할을 해야 할 것임. 더불어 세부적인 관리사업의 시행도 검토해야 함
<p>○ 연안관리법제의 개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안관리기본법 제정, 연안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정, 공유수면관리법과 매립법의 통합 등을 검토할 수 있음 - 공유수면과 연안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본법의 필요성 대두 - 생태계를 고려한다면 하천까지 포함하는 기본법이 필요 - 공유수면관리법과 연안관리법을 통합하는 것이 실제성을 가질 수 있음

부문	논의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안방재사업+연안정비사업=연안관리사업 - 국토기본법과의 위상의 재정립이 필요
○ 연안통합관리계획의 성격과 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성격(공간관리계획, 정책추진계획, 가이드라인)을 정할 필요가 있음 - 향후 연안관리지역계획과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가 필요(상위계획, 보완계획, 시행계획) - 공간적 분리를 통한 역할구분 가능한지를 검토(해양관리범위와 연계) - 점검 및 평가방안 (연안실태조사, 별도 점검시스템)
○ 연안관리지역계획의 성격과 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수립자(지자체)의 기능과 역할, 계획의 범위에 대한 논의 필요 - 계획의 위상(공유수면관리·해수욕장이용·보호구역설정 활용, 통제수단) - 연안관리지역계획 관리지침 마련 필요 - 점검 및 평가방안 검토(자체점검, 정기점검, 광역자치단체 역할) - 계획의 보완수정방법을 설정해야 함(정기적 재수립, 기준 재정립, 세부계획수립)
○ 연안실태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항목의 범위 설정, 동일시기 조사실시방안을 마련 - 연안백서로 전환 검토 - 조사와 연안통합관리계획 및 연안관리지역계획과의 연계방안 마련(수정보완의 근거, 점검 및 평가수단, 백서작성)
○ 공유수면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립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 시각에 대한 대책수립 필요 - 해수부내 매립수요에 대한 적절한 관리방안 - 연안관리지역계획과의 연계방안 (협의절차 간소화) - 이용 후 원상회복 규정 포함, 절차의 적합성을 점검하는 것도 포함 - 주기적인 점검, 구조물관리, 환경관리 등이 공유수면관리, 연안관리로 이어짐
○ 해역관리의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해:지자체가 국가의 가이드라인을 받아 관리, EEZ: 국가가 관리주도

부문	논의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립후 지자체 경계문제에 대비해야 함 - 연안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다. 연안관리 대상이 불명확한 부분이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안관리 조직의 기능개편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국토관리를 상징하는 과 명칭의 변경검토 (해양국토관리과, 연안관리과, 해양관리과, 연안해양관리과, 해양공간관리과) - 지자체 역량강화를 위한 조직확대 지원필요 - 해양수산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간의 역할정립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CCL 제도의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거마련이 가능한지 검토 필요(침식관측결과이용, 적정유효범위, 행위제한) - 범위 내에 포함되는 토지의 관리방안 마련(보상 후 국유화, 보호사업실시) - 바닷가조사결과의 우선 적용 가능성을 검토 - 재해와 관련하여 반드시 기준선의 설정이 필요함 - 연안관리선이라는 개념으로 도입을 검토 - 위험지역이 경우 토지교환으로 해결하는 방안도 검토 - 지역계획수립시 연안관리선 또는 과거 피해사실을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닷가(빈지)의 관리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수면과 분리를 검토(바닷가고시, 별도관리방안) - 평가 후 지적등록방안 설정 필요(등록변경승인절차, 관리주체, 사유화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안관리사업의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센티브제도로 활용 (토지취득·교환, 연안공원, 침식대책사업, 해역복원사업, 비수산자원의 조성) - 통합관리취지에 맞도록 육역과의 공동운영사업 추진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海·川·林 공생운동 등 시민운동 지원 · 회유성어종의 서식지보호 공동대응 - 경관관리

부문	논의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구식물, 식생조성, 침식방지효과 - 연안트레일구축, 산책로 - 레저항 개발, 해양관광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비쿼터스 시대의 연안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DA(개인휴대단말기)를 이용한 명예연안관리인의 모니터링 및 연안관리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한 실시간 연안관리시스템 구축 - 무인도서 및 해수욕장에 대한 비디오관측실시(지자체 협력), 대국민 서비스 - 행정선/해경감시선의 모니터링 참여 - 연안난개발 민원접수시스템 운영(휴대폰과의 연계, 연안파파라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수욕장관리의 선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수욕장관리후견인제도 : Beach Adopt 제도 도입(1사1해변도우기 운동) - 해양교육의 장으로서 활용방안 검토 - 해수욕장의 권역관리도입 - 해수욕장에서의 수질, 위생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연안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교육의 장, 노년층의 거주공간, 장애인의 휴양장소로 활용가능성 증대 - 소득증대에 따른 사회적 약자의 활동범위 증대 대응 - 고부가가치 연안이용 실현 - 연안시설기준 등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안관리정보시스템의 기능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안관리정보시스템의 위상과 관리운영에 대한 명확한 방안 필요 - 해양수산부 공간관리의 기본시스템으로 활용 - 시스템개발과 정보관리를 분리하는 방안 검토 - 연안정보서비스시스템을 구성하여 고품질의 정보제공방안 검토

부록 3

2007 연안관리 제도개선 전문가워크숍
개최결과 보고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개최목적

- 연안관리 제도개선 연구 최종결과보고 및 연안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자유토론을 통하여 문제점 도출 및 개선방안 검토
- 연안용도구역제, 자연해안 및 서식지 순손실방지제, 연안완충대 등 新연안관리법 핵심의제에 대한 전문가 의견수렴
- 연안관리 및 계획수립 전반에 관한 전문가 및 관계자 토론 실시

□ 개최일시 및 장소

- 일 시 : 2007. 2. 1 - 2. 2
- 장 소 : 대전광역시 유성호텔 2층 프린스홀

□ 세부 시간계획

일시	주요내용	비고	
2.1	14:00	대전유성호텔 집결	
	14:30	워크샵 개회	
		- 참석자 소개 및 일정 확인	KMI 김종덕
		- 인사말	연안계획과장
	14:40	연구진 결과발표	KMI 김종덕
	15:30	휴식	
	15:40	연구진 결과발표 계속	KMI 남정호
	16:20	질의 및 토론	
	19:30	- 인사말	연안계획과장
		- 종료	
19:40	저녁식사		
2.2	08:00	조찬	
	09:30	토론결과 정리보고 및 추가 논의	KMI 김종덕
	11:00	워크샵 종료	

□ 세부 참석자 : 총 20명

- 자문위원

성명	소속	전공분야
채미옥	국토연구원	토지이용계획
박성욱	한국해양연구원	연안관리정책
남수용	지오시스템리서치	연안재해
김계영	비엔티솔루션	연안정보시스템
박종화*	국립수산과학원	수산자원관리
김선희*	국토연구원	국토환경계획

* : 서면자문제출

- 해양수산부

성명	소속
서병규	연안계획과 과장
권준영	연안계획과 서기관
김무홍	연안계획과 사무관
이외경	연안계획과 주무관
박영기	연안계획과 주무관

- 지속위 : 물국토관리팀 남윤욱 과장

- KMI 연구진

성명	소속	참여분야
조동오	해양정책연구본부	본부장
김종덕	"	연구총괄책임자
윤진숙	"	연안관리체계 분야책임자
남정호	"	자연해안 및 서식지 분야책임자
윤성순	"	연구참여자
신철오	"	연구참여자
육근형	"	연구참여자
정명국	"	연구참여자
최희정	"	연구참여자
홍수진	"	연구지원

연안관리제도개선 전문가워크숍 세부토의내용

- 사회자 : 참석자 소개

- 연안계획과장 : 인사말
 - 연안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에서 출발한 것임.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하고 있음.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통해서 취지를 설명하고, 각계의 의견을 들어서 부처에 이해를 구할 수 있는가 하는 논의의 자리를 만들기 위함임. 국토계획과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 국토를 바람직하게 가지고 갈 수 있는 접근, 시각을 바꾸고자 하는 것입니다.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 박성욱
 - 개정안이 개별법의 내용을 전부 수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럴 경우 부적절한 계획의 조정과 같은 권한이 있어야 할 것임. 그렇지 않으면 기존의 계획이 있는데 그것을 모으는 의미 밖에 없다고 판단됨.
 - 순손실방지제 부분은 대체습지조성 연구사업을 통하여 연구당시 우리나라에 도입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음. 당초 취지가 매립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대체습지를 조성을 의무화 시키는 방안 또는 조성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이었는데 기술적으로 힘들다는 부분이 있었고, 현실에 적용시키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많았음. 그 당시의 연구결과와 상치된다는 느낌임. 또 그 내용을 공유수면매립법에 넣을 것을 잠정적인 안을 제시한 바 있음. 개정안에서 이러한 실현가능성 부분이 검토되었는지 궁금함

- 김종덕
 - 기존의 계획을 수용하는 것은 후발법령으로써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됨. 다만, 계획의 수립 후에는 관련계획의 변경이나 수정 시 협의를 통하여 타당성이 없다고 결론나면 제외하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임. 연안실태에 대한 점검에 대한 평가를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일정기간 이후 사업계획이 가시화되지 못한다든지, 계획이 취소된다든지 하는 경우 이를 지역계획에 반영해야 할 것임. 계획 수립부터 기존의 계획을 무시할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하고, 향후 협의를 통해서 조정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함.
 - 대체습지는 들어서 알고 있지만, 그 연구당시와 현재는 상황이 다르다고 생각됨. 새만금이나 장항갯벌 사업에서도 보듯이 매립에 대한 저항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대체습지를 조성하는 내용과 순손실방지제를 도입하는 것은 의미가 좀 다르다고 생각됨.

○ 남정호

- 순손실방지제는 공유수면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대체습지와 동일한 것은 아님. 순손실방지제의 원칙은 문제 발생을 회피하고, 최소화해서, 마지막 단계에 복원을 하는 것임. 기본적으로는 회피와 최소화를 고려해야한다는 것임.

○ 박성욱

- 그러한 내용은 지금 현재 있는 연안관리법이나 자연환경보전법 등에서도 가능하다고 생각됨. 그러나 궁극적으로 안되는 이유? 개발 압력이라고 생각합니다.

○ 남정호

- 향후 이용개발수요를 예측하여, 미리 개발에 대한 양을 정해 놓는 것임. 자연해안과 서식지 순손실 방지 목표를 정하고, 공유수면 뿐만 아니라 연안완충대 설정까지 포함하는 내용임. 현재 자연환경보전법, 습지보전법에서 할 수 있으나 생태계법의 제정은 다른 특성을 가진 것은 다르게 적용해서 정책에 반영하자는 것임. 최소한 연안에 관한 규율이 연안관리법에 이 부분을 정의하자는 것임.

○ 김종덕

- 사안별로 대응할 수 있는 체제는 되어 있지만, 조정을 할 수 있는 체제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임. 전체적인 총량을 정해 놓자는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하자는 것임.
- 결여된 부분을 연안관리법의 기본법 차원에서 반영할 필요가 있음.

○ 권준영

- 목표설정을 하였으나 관리수단에 있어서는 상당부분이 빠져 있는 것으로 판단함. 하위 법령을 만들 때 설정된 목표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해야함.
- 연안육역부분에 중복지정으로 일부 혼란을 초래하는 것은 사실이며, 행정관서에서도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를 도입한 이유는 연안을 연안답게 관리하지 못했기 때문임. 지금 계획으로는 연안을 연안답게 할 수 없기 때문에 15조 3항에서 변경할 수 있도록 하게 되어 있으며 설정된 용도구역에 대해서는 타 부처의 독단적인 권리를 막아보자는 것임.

○ 남정호

- 연안완충대를 설정하는 것은 순손실과 연계된 것임.

○ 권준영

- 연안완충대와 자연해안순손실방지제는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제시하기 때문에 근거 규정을 마련해야함.

○ 남수용

- 연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현재 추진 중인 개정 방향은 바람직함.
- 연안용도구역, 기능구, 자연해안선의 정의가 애매모호한 표현이라 생각함. 해안선은 실측 중에 있는데, 자연해안선에 대해서는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함.
- 자연현상을 연구하는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이 기후변화임.
- 재해관련해서 개발이 가능한 해안을 연안완충대로 지정했을 때, 이는 개발에 대한 제한이 됨. 재해를 목적으로 했을 때 설정될 수 있는 연안완충대의 범위에는 이미 건물이나 공공시설이 입지해 있으므로 시행의 측면에서는 어려운 점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특히 시행령을 만드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됨.

○ 김종덕

- 지적의 하천, 지형도의 하천은 매우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동시에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미국에서는 연안완충대에서 행위를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피해가 발생했을 때 소유자 책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유자가 자율적으로 판단 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 하천관리를 하고 있는 부처와 협의가 어렵겠지만, 연안관리법이 하천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영향을 받는 연안관리자가 협의권을 가지자는 것을 의미함.

○ 남수용

- 정확한 기준 선이 없을 때, 지역에 따라 다르게 해석할 수 있으므로 우선 이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가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권준영

- 기초조사나 실태조사가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 김종덕

- 법령에서 서식지의 종류를 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봤을 때, 정책의 대상으로 연안의 서식지라고 생각하는 것을 포함하였습니다.

○ 재미옥

- 토지정책, 토지이용, 토지구제를 연구하면서 아름다운 연안이 훼손되는 것에 대해서 맘이 아팠지만, 결국 이는 국가와 국민의 수준이 결정하는 것이라 생각함.
- 해양국토라는 개념이 진취적이라 생각하는데, 경제성장 측면, 보전적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며 필요한 부분이라는 점에서 공감함.
- 세부적으로 들어갔을 때, 용도구역제, 연안완충대, 순손실방지제와 관련한 유관부처와의 협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용도구역제는 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하는데, 연안관리법은 연안관리의 기본방향을 정하고,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국토의 기본방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됨.
- 연안관리법의 용도구역제는 국토계획법에서 정하는 국토의 관리 중에서 바다의 부분을 보완하는 것이라고 판단됨. 연안기능구는 용도지구개념이라고 보이나, 행위제한과 유도해야할 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명시하고 있는데 기능별로 너무 세분화되어 있어 상당부분은 합치는 과정을 통해서 단순화 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용도구역제의 성패는 행위제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현행 국토계획법상의 행위제한은 문제가 많습니다. 용도규제, 밀도규제, 높이규제를 하고 있는데 특히 용도규제가 문제가 되며 그 이유는 모든 것이 사람의 활동을 중심으로 용도규제가 되어 있다는 점임. 주거, 상업, 공업, 사람중심의 행위제한이 타당하나 녹지, 농림지역의 행위제한까지 사람중심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그 지정의미를 고려했을 때 어울리지 않는 부분임. 보전목적의 용도지역에서도 사람이 활동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소규모 난개발을 막지 못하고 결국 개발이 되고 마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음.
- 관리연안구역의 의미가 약간 모호하다고 생각됨. 개발을 유보하거나, 판단이 어려운 지역이 들어가 있는데 이에 대한 구분을 통하여 관리하고자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음.
- 연안완충대는 재해와 생태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경관에 공적 개념이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됨. 재해와 생태만을 포함한다면, 기능이나 역할이 제한적이고 국민을 설득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임.
- 용도구역 개념에 연안완충대 개념을 포함해야할 것으로 판단됨. 절벽지 같은 곳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생각됨. 그리고 재해 방지차원에서 필요하다면 건축허가를 할때 이를 충분히 고려해서, 다른 부처의 협조가 필요합니다만, 허가를 발급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피해지역이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피해가 나면 정부보상이 있을 것이라는 해이감에서 무리하게 추진하는 경우도 많으므로 이러한 곳은 정부가 매수해서 정리하는 것이 오히려 국가의 재정이나 관리방향으로 타당할 것임.
- 현재 실시중인 연안관리지역계획의 구분이 애매모호하다고 생각되나 개정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4개 용도구역과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어쨌든 계획은 마련되었고 이를 시행중이기 때문에 행정측면에서는 관리의 연속성을 고려해야 하고 변화가 있는 경우 이를 어떻게 수용할 것인지를 감안해야 할

것으로 보임.

- 순순실방지제는 개발총량제와 비슷한 개념임. 이것을 지역별로 안배하는 것은 현실상 어려울 것이라 생각됨. 그래서 역으로 개발수요가 얼마나 될 것인가를 보고 나머지 지역을 보전하는 구역으로 정해나가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됨. 주민의 반발이 문제인데, 매수청구권제도가 설정되어 있으나, 해안지역에서는 TDR(소유권과 개발권분리)을 도입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물론 해안지역만 할 수 있는 정책은 아니나 의미가 있을 것으로 봄. 사실 이 제도를 실시하는 것은 30년전부터 검토되었으나 못하는 이유가 소유권에서 개발권과 이용권을 분리하는 것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 토지이용규제가 완화되어 있어 시장형성이 어려운 점, 전국적으로 적용하려고 했을때 나타나는 문제점 때문임. 이 부분은 결국 개발이익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하는 것이 초점이고 이에 대한 논리가 만들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 유관부처간의 조정에 관해서는 건교부, 환경부, 문화재청이 대상 부처라고 생각되나 이 문제가 부처간의 주도권 싸움으로 보여서는 안되고 궁극적으로는 연안관리법이 아니라도 연안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이 있다면 대승적 차원에서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토지적성평가 제도를 개발하면서 남해군을 시범적으로 해봤는데, 해역부분에 추가적인 지표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음. 적성평가 개념을 보완해서 연안육역은 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다만, 해역의 경우에는 현재 검토중인 연안적성평가를 도입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김계영 비엔티솔루션 대표

- 기존 5개 연안구역을 연안용도구역제로 변경하면 4개로 조정이 가능한지 궁금함.
- 기존 지자체 연안관리지역계획을 정보화하면서 관련법령을 정리하고자 하였으나 지자체별로 적용하는 법률과 기준이 상이한 상태임(예, 제주특별자치도 등). 더욱이 계획 수립자에 의해 연안구역 지정이 주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향후에는 객관적인 자료에 의한 용도구역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러한 경우 기존의 연안구역을 새로운 기준 또는 용도구역 지정 기준에 따라 다시 지정하여야 하는 것인지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음.

○ 김종덕

- 일대일의 변경은 안 됨. 기존 연안구역 지정 기준은 다소 모호한 측면이 있으나 용도구역제에서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할 예정이며, 새로 제안되는 용도구역에서는 지정의 목적과 기준이 보다 명확해지고 변경절차 등 자세한 사항이 규정될 예정임.

- 권준영
 - 실무적인 입장에서 용도구역 지정의 기준이나 기존 연안구역의 변경 문제는 어려운 부분이기는 하나 일단 법률안에서는 지자체의 지역계획 수립을 의무화하였다는데 의의가 있고 곧 지역계획 수립 지침을 제시할 것임.

- 김종덕
 - 연안구역을 향후 용도구역으로 전환할 때는 기존의 사용하던 18개 연안기능구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채미옥
 - 구역의 전환이 문제가 되는데 이를 기술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즉, 기존의 연안구역 지정을 보전중심으로 해놓은 뒤 나중에 용도구역으로 지정할 경우 보전 중심의 연안구역을 세분하거나 풀어주는 방식의 접근을 말함.
 - 현실적으로 어렵다고는 하나 중앙연심회에서 충분히 통제할 수 있는 사항으로 판단됨.
 - 이용연안 등을 남발할 경우 육지에서 준농림지역의 난개발 상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 권준영
 - 중앙연심회에서 조건부 승인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으며 실제 완도군의 경우 이용 연안이 대폭 축소된 사례가 있음.

- 김계영
 - 지역계획의 범위에서 일부 연안은 제외된 곳도 있으며 관리의 대상이 되는 해역의 구분 역시 불분명한 상태임.

- 권준영
 - 연안관리법 상 필요한 범위만을 관리대상으로 하고 있어 나타나는 문제.

- 김종덕
 - 개정법률(안)에 연안의 범위를 우선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어 이 문제는 해소될 것으로 전망

○ 김계영

- 연안완충대를 보전연안구역으로 설정하는데 있어 다소 애매한 부분이 연안재해의 발생이 보전연안이 아닌 구역에서도 발생하는데 이 부분도 보전연안구역으로 설정할 수 있는가?

○ 김종덕

- 처음에 연안완충대의 개념이 바닷가를 대상으로 시작되어 이를 보전연안구역으로 설정하는 것을 구상하였으나, 연안완충대를 기계적으로 보전연안구역으로 하는 것은 지양하고 등급화나 기타 환경여건을 고려하여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 권준영

- 연안완충대의 보전연안구역 지정은 다소 다른 접근이 필요한데, 즉 이용연안이라도 연안완충대로 지정한 지역은 보전연안으로 또는 보전연안에 준하는 관리로 가는 것이 법률 개정의 골자임.

○ 채미옥

- 연안완충대는 해안경관과 공공가치 증진이 목적이 포함되어야 하며 법률개정과정에서 추진력을 얻기 위해서는 연안완충대를 전 연안에 대해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일부 필요한 구역을 제외하는 방식이 좋을 것임.

○ 서병규

- 실제 법률개정 과정을 보면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이나,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가능할 것으로 보임.

○ 남정호

- 도시지역의 경우 재해로 인한 피해액은 매우 커질 수 있음

○ 채미옥

- 재해가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 당장 규제하기는 어려우나 장기적으로는 재해에 대한 피해지원을 줄이는 방식 등으로 해당지역에서 가옥이나 구조물을 서서히 이주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김무홍

- 실제로 개인의 재산상 피해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인 보상은 거의 없음. 또한 재해와 관련해서 연안완충대를 두는 것은 다소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음.

○ 남정호

- 연안완충대 설정의 기본적인 목적은 재해방지뿐만 아니라 생태계 보호에도 있으며, 향후 재해가능 지역에 설치한 시설의 위험성을 알릴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음.

○ 김무홍

- 재해 발생은 산발적이고 예측이 불가능하므로 재해에 취약한 지역을 찾아내어 연안완충대를 지정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시설기준 등으로 접근하는 것이 낫다고 봄. 사적재산에 대해 연안완충대와 같은 규제를 실시하면 주민의 저항이 심할 수밖에 없음

○ 서병규

- 연안완충대는 전 연안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바람직하나 다만 재해방지 또는 생태계보호 등 다양한 목적을 연안완충대 개념에서 수용하여 목적별로 세분하거나 연안완충대 지정에서 제외하는 방식도 가능하다고 봄.

○ 권준영

- 연안관리는 연안완충대, 순손실방지제, 용도구역 등을 종합적으로 활용하나, 다만 법률 개정안에 전 연안을 연안완충대로 지정하자는 제안을 하면 법률개정이 매우 어려울 것임.

○ 서병규

- 법률 내에서 제시된 다양한 정책수단(완충대 등)의 관계가 법률 내에서 정치하게, 논리적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음.

○ 김계영

- 지역계획에 연안용도구역에 연안완충대가 포함되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함.

○ 권준영

- 연안완충대, 순손실방지제 등의 예민한 정책수단은 지역계획에 담기보다는 해수부가 주도하여 나가는 방식이 타당하다고 봄.

- 채미옥
 - 지역계획수립지침을 새로 만들 때 연안완충대, 순순실방지제 등의 정책수단을 고려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

- 김무홍
 -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안완충대를 매입하는 방식이 피해보상보다 유리할 것이며, 이런 정책수단의 도입 자체만 보아도 법률개정의 충분한 성과라 할 수 있으며 향후에 강화하는 전략이 유리함.

- 권준영
 - 연안완충대 개념은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반면, 지역계획 수립지침에는 제외되어 있는데 이는 지자체의 입장을 고려한 선택임.

- 김종덕
 - 연안완충대 설치에 토지이용규제의 심사대상이 될 수밖에 없음. 그런데 연안은 필지단위가 매우 큰데 전국을 대상으로 할 경우 필지 분할이나 관련된 문제가 커질 수 있음.

- 채미옥
 - 우리나라 용도구역 지정은 필지단위가 아닌 지형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그런 문제는 심각하지 않을 것임. 지적고시는 필지 선으로 가는 것이 아님.

- 남윤욱
 - 2차 부처 협의공문을 본 적이 있는데, 타 부처의 삭제요청과 해수부의 수용불가가 많았는데 향후 부처간에 충분한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시행령을 개발할 때 중앙연심회에 지속위의 국장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 권준영
 - 99년 연안관리법 제정 시 용도구역이 제외되었던 상황도 역시 부처간 갈등이 문제였고 현재에도 건교부 등에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음.

- 서병규
 - 보호이익과 개발이익의 병존이 연안계획과 업무에 있어 늘 화두로 등장함. 즉, 보호의 총효용이 개발의 총효용을 초과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논리 개발이 보호

의 측면에서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관리법은 개발사업에 대한 규제의 근거로 활용하고 있는데, 연안관리법 개정법률안이나 다른 해양수산부의 법률에서도 두 법률을 활용할 수 있는 연결고리가 어떤 것이 있을지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개정법률의 주무부서가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되어 있는데 이를 범 부처, 즉 타 부서의 협력을 끌어올 수 있도록 협력적으로 또는 일부 업무를 위임하는 방식으로 타 부서의 협력을 끌어오도록 할 필요가 있음(정부정책의 통합 고려)

o 채미옥

- 해양국토 지향은 바람직한 정책방향임. 다만 조선소와 같은 연안입지형 개발의 경우 부지를 일부 도서로 집중하여 개발을 쉽게 하면 자연스럽게 다른 연안에 대해서는 보전효과를 얻을 수 있음.

o 김무홍

- 도서의 경우 기반시설의 건설 등에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이 소요될 수 있음.
- 연안관리를 제대로 하는 것이 최종목적이라면, 부처의 반대에 대한 대응논리의 하나로 국토계획법에 나오는 용도구역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봄.

o 박성욱

- 4개 용도구역의 행위제한 사항이 법률안에는 모두 제시되지 않고 있는데 모든 구역 또는 일부 보전구역에 대해서 만이라도 행위제한 사항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지

o 서병규

- 부처 협의 시 필요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할 필요가 있어 이를 위한 전문가의 협조가 필요함. 예를 들어 작은 하천의 방조제, 축제식 양식장 등의 자료들은 파악한 것과 많이 다를 것임.
- 또한 작은 방조제나 저수지의 경우 인근에 묵논, 묵밭 등이 많아 해당지역에서는 이를 활용한 역간척의 요구가 있고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필요할 것임.

o 채미옥

- 연안실태조사와 관련하여 매립에 대한 시계열 조사를 포함하는 자료축적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육지의 행위제한과 연안의 행위제한의 차별성을 부각시킬 수 있을 것임.

- 윤진숙
 - 이력관리 등의 제도가 공유수면관리법에 포함될 예정임

- 김종덕
 - 대표적 연안에 대해서는 경관관리를 포함하여 시계열자료 확보 등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임

- 남수용
 - 통합영향평가법에 사후영향조사가 있으나 연안에는 그 정도 규모의 사업이 많지 않으므로, 연안관리법이나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관리법에서 추적자료의 확보가 필요할 것임. 다만 규모가 매우 작은 경우 사후관리의 비용이 과대할 수 있어 이에 대한 검토 필요

- 김무홍
 - 통합영향평가법에서 기준을 낮추는 방법을 고려. 또한 계획수립의 내실화를 위하여 지역계획 수립의 기간, 수립기관의 자격 등을 법률에 제시하여야 함.

- 권준영
 - 법률안 제52조 ‘청지기’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이는 ‘집사’라는 사전적 의미이기 때문에 다른 용어의 도입 필요
 - 이들에 대한 적절한 보수 또는 위촉장 등의 활용을 검토할 예정
 - 지자체 주도라는 원칙을 유지하고 이를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방식

- 남정호
 - 위탁계약 또는 위탁관리의 개념을 청지기 등 관련 조문에 포함하여 관리의 행정비용을 줄이고 효과적인 관리를 할 수 있음. 계약관계에 의해 얻어진 성과는 중앙정부가 확보



행사장 모습

부록 4

연안관리법 전부개정안 부처협의내용 검토

1. 종합검토의견

- 본 연안관리법 전부개정 추진은 지난 '99년 연안관리법 제정 이후 동 법에 근거하여 연안통합관리제도와 연안정비사업 등 연안관리제도 추진 상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그간 연안을 둘러싼 환경과 사회적 수요의 변화와 연안선진국의 연안관리 동향 등을 고려, 현행 연안관리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과 효과성이 입증된 선진연안관리제도 도입 등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연안 실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임.
- 개정안의 주요사항중 하나는 연안의 범위를 연안통합관리제도의 효율성 확보 차원에서 보다 명확화를 기하는 것임. 이는 기존의 거리단위로 일률적으로 연안의 범위를 확정하는데서 비롯되는 연안관리의 한계를 보완·극복하고 주변지역의 특성, 연안통합관리의 필요성, 연안통합관리의 특수성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하는 것임.
- 특히 연안육역의 범위 설정과 관련하여 연안관리의 특수성이 인정되고 연안통합관리제도 수행을 위하여 필연적으로 관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로 제한하고 있으며, 또한 기존의 법률·제도·관계부처 관할 등과의 혼선과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사전조정장치를 마련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것임.
- 연안용도구역제와 순손실방지제는 연안의 효율적 관리와 지속가능한 발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선진연안국에서는 시행되고 있는 제도임. 이들 제도는 관리역량과 과학적인 정보, 투명한 의사결정과정 및 이해관계자의 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연안관리방식임.
- 연안용도구역제도는 연안관리수단 중 가장 선진적인 방법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의 우리나라 도입은 연안통합관리의 정책적 효과를 제고하고 연안국토의 합리적 관리를 위해서 그리고 기존의 법률과 제도에서 반영되지 않은 연안·해양의 특성 및 이들과의 연계성을 고려한 국토의 보전·이용 및 개발행위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조치임.

- 자연해안과 연안서식지에 대한 순손실방지제의 도입은 연안환경 및 연안공간에 대한 체계적 관리기반을 확보하여 그동안 개발지향의 국토정책으로 심각하게 훼손된 연안공간을 보전·복원하고, 연안의 이용과 개발은 합리적이고 민주적 절차에 근거하여 설정된 관리목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임.

2. 세부 검토의견(부처별 회신의견에 대한 검토의견)

□ 건설교통부

개정안	회신의견	검토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안용도구역과 연안기능구 신설 및 연안완충제 설정은 토지이용에 관한 제한에 해당하므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입법예고 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u>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 심의를 요청하여야</u> 하며 ○ 토지이용에 관한 제한을 하는 지역지구 등에 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3조에 의거 제8조에 규정된 <u>주민의견청취, 지형도면고시 등의 조항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므로 동 내용을 개정안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u> ○ 또한, 심의후 신설이 필요하다면 개정안 부칙에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별표를 개정하여 연안용도구역과 연안기능구를 추가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안육역에 대한 용도구역지정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의 대상이 되므로 협의의견 수용 ○ 일부수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형도면고시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이미 규정되어 있으므로 개별법마다 같은 내용을 규정할 필요는 없음 - 주민의견청취는 개정안 제11조제4항 및 제28조제2항에 기 반영 ○ 조건부 수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별표개정 필요성 여부, 개정방법 등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와 별도협의 후 필요시 수용

개정안	회신 의견	검토 의견
<p>제2조(정의)</p> <p>1. “연안”이라 함은 연안해역과 연안육역을 말한다.</p> <p>2. “연안해역”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지역을 말한다.</p> <p>가. 바닷가(수로업무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해안선으로부터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를 말한다)</p> <p>나. 해안선으로부터 영해의 외측한계까지의 바다</p> <p><u>다. 제8호의 규정에 따른 하구역의 공유수면</u></p> <p>3. “연안육역”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지역을 말한다.</p> <p>가. 무인도서</p> <p>나. 연안해역의 육지쪽 경계선으로부터 500미터 (「항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항만, 「어촌·어항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어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경우에는 1천미터) 범위안의 육지지역, 「해양오염</p>	<p>제2조(정의)</p> <p>1. “연안”이라 함은 연안해역과 연안육역을 말한다. 다만, 「하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의한 하천구역은 제외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삭 제></p>	<p>○ 미반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안의 지속가능한 통합관리를 위해 하천 및 하구역관리는 불가피한 요소임 - 즉, 연안환경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오염원의 최대 유입경로가 하천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통합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해양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육지부인 하천구역중 일정지역을 포함하여 현행법률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특히, 하구역은 「해양환경관리법」 제22조제2항에서 해양환경관점에서 관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부내 관련대책 공조 및 역할분담 등을 위해서도 공간관리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연안관리법에 이에 대한 근거규정 마련이 필요시 됨 - 타 법률에 근거한 계획의 관리구역과 연안구역이 중첩되는 것은 각 개별법률의 제정취지, 정책목표 등의 차이에 따라 불가피한 것이며, 중첩에 따른 정책간 충돌·상충문제는 계획수립 및 정책집행시 관계행정기관간 협의를 통하여

개정안	회신 의견	검토 의견
<p>방지법」 제4조의4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환경보전해역 및 특별관리해역의 육지지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하구역의 육지부로서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연안통합관리계획에서 정한 지역</p> <p>다.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확대하여 지정한 연안육역</p>	<p><삭 제></p> <p><삭 제></p>	<p>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고려하여 개정안 제15조에서 연안관리계획 수립시 기 수립된 관련계획을 반영하도록 하고 있음</p> <p>○ 일부반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연안관리법은 연안의 범위를 주변지역의 특성, 통합관리의 필요성 등이 고려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500M로 규정하고 있어 연안통합관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500M를 약간 상회하는 도서와 수면 폭이 500M가 넘는 연안육역에 포함되는 저수지 등에 대한 관리의 모호함을 극복하기 위함) - 따라서 500M를 초과하는 육역의 경우에도 연안통합관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연안육역에 포함하여 관리하는 것이 국토의 효율적 보전과 이용을 위하여 바람직 <p>* 현행 법률하에서도 일률적으로 500M를 경계로 연안육역을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특성,</p>

개정안	회신 의견	검토 의견
<p><u>6.“연안용도구역”이라 함은 ...(중략)...연안관리 지역계획으로 결정하는 구역을 말한다.</u></p> <p><u>7.“연안기능구”라 함은 연안용도구역의 기능을 증진·보완하여 연안의 보전·이용 및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연안의 이용상태 및 기능에 따라 연안관리지역계획으로 정하는 구역을 말한다.</u></p>	<p><삭 제></p> <p><삭 제></p>	<p>관리계획 등을 고려하여 연안육역의 범위를 500M범위내에서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있음</p> <p>- 다만, 500M를 초과하는 지역에 대한 연안육역 지정이 필요이상으로 과도하게 설정되지 않도록 미리 관계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친 후 지정할 수 있도록 개정안 제12조 관련규정 보완</p> <p>○ 수용불가</p> <p>- 연안용도구역 도입의 목적은 체계적이고 예측가능한 연안관리행정 수행과 연안통합관리차원에서 연안보전·이용·개발수요에 적절하게 대처하려는 것임</p> <p>- 연안육역의 난개발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개별 입지나 필지별개발에 대한 대응이 없는 실정이고, 토지적성평가에서도 연안의 특성이 고려되지 않고 있어 연안의 난개발방지와 해역의 친환경적 관리를 위해 연안지역의 이용·개발에 대한 통합관리개념 도입 필요</p> <p>- 특히, 연안용도구역제는 관계부처 협의(건교부, 환경부 등)를 거쳐 대통령주재 국정과제회의(81회, '06.7.13)에서 국정과제로 선정되어 이를</p>

개정안	회신의견	검토의견
<p>8. “하구역”이라 함은 하천의 담수와 해수가 만나 혼합하는 공유수면 및 당해 공유수면에 영향을 미치는 육지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p> <p>10. “연안완충대”라 함은 연안재해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자연해안과 연안서식지의 기능을 유지·증진 및 공공의 연안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해안선으로부터 일정거리에 설정하는 육지부를 말한다.</p>	<p><삭 제></p> <p><삭 제></p>	<p>법령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수용곤란</p> <p>* 연안용도구역제, 연안기능구에 대한 회신의견에 대해서는 이하 별도 검토의견을 기술하지 않음</p> <p>○ 미반영</p> <p>- 하구역의 연안구역 포함 필요에 따라 하구역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려는 것임</p> <p>○ 미반영</p> <p>- 연안완충대는 연안재해피해(예:동해안 파랑피해)가 빈발하고 있고 그 규모 또한 대형화되어 가고 있는 최근의 연안환경변화를 반영하여 연안 기능을 보전하고 연안재해피해를 예방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재해복구관련 예산절감을 위하여 그 도입을 추진하려는 것임</p> <p>- 또한, 공공재인 해양으로의 자유로운 접근을 보장하기 위하여 해역과 접하는 일정구간을 확보하여 친환경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이며, 국내유 사사례로는 「산림문화휴양에관한법률」의 등</p>

개정안	회신 의견	검토 의견
<p>제9조(통합계획의 내용)</p> <p>① _____</p> <p>-----</p> <p>6. 연안용도구역 및 연안기능구의 설정방향 및</p>		<p>산로관리를 들 수 있음</p> <p>* 동 제도는 미국 등 선진외국에서도 연안침식, 연안재해 등을 고려하여 이미 SETBACK정책으로 도입·시행중</p> <p>- 연안완충대의 설정도 실제적절차적 민주주의의 원칙에 입각하여 결정하게 되며, 도입의 궁극적인 목적은 국토의 부가가치창출 극대화를 도모하려는 것임</p> <p>- <u>다만, 연안완충대 설정가능지역이 연안구역의 범위내에서만 설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자구수정</u></p> <p>○ 수용불가</p> <p>○ 미반영</p> <p>- 연안관리지역계획은 현장조사와 분석, 각종 국가계획과 지역계획을 반영하고, 주민공청회, 관계</p>

개정안	회신 의견	검토 의견
<p><u>관리목표</u></p> <p>제11조(연안관리지역계획의 수립 등) <u>⑦연안의 이용 및 개발은 지역계획의 범위내에서 실시되어야 한다.</u></p>	<p><삭 제></p> <p><삭 제></p>	<p>행정기관 협의, 지역·중앙연안관리심의회 심의 등 가능한 필요한 절차를 모두 거쳐서 확정되는 연안관리계획이므로 연안의 보전·이용 및 개발행위시 고려해야 할 기본이 되는 것은 타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히, 지역계획 수립시 관련계획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고, 상충이 예상되는 경우 사전조정하고 있어 다른 계획과의 모순충돌 등이 합리적으로 조정되어 국가정책간 혼선·상충을 초래하는 경우는 현재까지 없으며, - 필요한 경우 개정안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지역계획의 변경을 요구하여 지역계획의 내용에 다른 계획을 반영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등 국가지역계획 상호간 존중의 원칙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음 <p>○ 수용불가</p>

개정안	회신 의견	검토 의견
<p>제12조(지역계획의 내용)</p> <p>① _____ -----.</p> <p>5. 연안용도구역 및 연안기능구의 설정</p> <p>②<u>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조제3호나목 및 제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역적인 여건·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역계획에서 연안육역을 확대하여 지정할 수 있다.</u></p> <p>③<u>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연안의 범위설정에 대하여 지역계획 수립 전에 <u>해양수산부장관</u>과 협의하여야 한다.</u></p>	<p><삭 제></p> <p><삭 제></p> <p>③ _____ _____ <u>건설교통부장관</u> 및 <u>해양수산부장관</u>-----.</p>	<p>○ 일부반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조제3호나목 사유와 같음 - 다만, 연안육역 확대의 필요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고려하여 <u>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계획에서...</u>”로 수정하여 연안육역확대를 필요최소한의 범위로 제한하고, - 후단에 “<u>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u>”를 추가하여 관계행정기관과의 협의를 통하여 육역범위 확대여부를 결정하도록 보완 <p>○ 미반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토록 한 것은 연안통합관리를 주관하는 책임자로서 연안범위 설정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 건교부 등 타 중앙행정기관은 지역계획 수립 및 승인과정에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장치(관계기관 협의, 중앙연안관리심의회 등)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제도적 장치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 <p>* 정책간 상호연관성이 있는 경우 타 행정기관 등</p>

개정안	회신 의견	검토 의견
<p>제15조(다른 계획 등과 연계) ①통합계획은 「국토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국토종합계획,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환경종합계획 및 (중략) 등과 상호 연계하여 수립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u><삭 제></u></p>	<p>의 의견을 반영하는 통로를 마련하여 법률에 규정하는 것이 현행 법률체제 및 행정관리의 기본 원칙이며, 기관간 상호존중의 원칙 차원에서도 이러한 기본원칙을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p> <p>○ 일부반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 조에서의 “상호연계”는 통합계획 수립시 연안관리정책 및 관리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타 법률에 의한 계획을 충분히 고려하여 국가계획간 상충모순되는 사례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연안관리목표 달성을 위해 반영이 필요한 계획은 적극 반영하여 수립하여야 함을 의미하는 것임 - 이러한 취지는 국토계획과 환경계획간의 상호연계를 적극 고려하여 국가계획을 수립할 것을 결정한 국정과제회의 결정(81회)의 기본취지와도 같은 맥락임 - 다만, 부처간 불필요한 오해의 불식을 위해 “상호연계”를 “연계”로 수정

개정안	회신 의견	검토 의견
<p>②생략</p> <p>③해양수산부장관은 연안환경을 보전하고 연안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계획이나 지정된 구역 등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u>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u></p> <p>제3장 연안용도구역의 설정 제16조 내지 제27조</p> <p>제4장 해안 및 연안서식지 관리</p> <p>제28조(연안완충대의 설정) ~ 제33조(협외에 따른 토지 등의 매수교환)</p>	<p><삭 제></p> <p><삭 제></p> <p><삭 제></p>	<p>○ 수용 - 단서조항 삭제</p> <p>○ 수용불가</p> <p>○ 미반영 - 연안용도구역제 도입은 귀 부 주장대로 연안지역중 보전이 필요한 지역은 철저히 보전하고 개발이 필요한 지역은 환경적으로 건전한 조건하에 개발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며, 연안지역 전체의 절대보전화 및 개발금지를 목표로 하지 않고 있음. 그러한 목표달성을 정책으로 설정하는 것은 연안관리의 대명제인 “지속가능한 발전”의 개념과도 배치되는 것임</p>

개정안	회신 의견	검토 의견
		<p>- 연안완충대 설정은 일률적으로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연안재해피해방지 등을 위해 설정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기관 협의,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중앙연안관리심의회 심의 등의 절차를 경유하여 그 필요성을 엄격히 검증분석 후 설정목적사유가 타당한 경우에 한하여 설정되는 것임</p>
제53조(연안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 ①생략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연안현황을 조사하고 이를	제53조(연안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 ①좌동	

개정안	회신 의견	검토 의견
<p>지도로 제작하여 통합계획 또는 지역계획과 각종 연안이용계획의 수립과 집행 등을 위한 자료로 제공하여야 한다.</p>	<p>② 측량법에 의한 <u>측량법에 의한</u> 기본측량성과(기본도)를 활용하여 연안현황을 조사하고 이를</p> <p>-----</p>	<p>○ 미반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안현황도는 해안선 및 지적측량결과 뿐만 아니라 연안의 각종 정보가 포함되는 도명으로 기본도의 성격을 가지지 않음 - 다만, 연안기본조사 시 개정안 제54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관련국가조사사업과 연계 및 기존 조사자료 활용 등을 통하여 중복투자방지 및 기 구축된 자료를 최대한 활용할 계획임

□ 환경부

개정안	회신 의견	검토 의견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생략)</p> <p>2. “연안해역”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지역을 말한다.</p> <p>가. ~ 나.(생략)</p> <p>다. 제8호의 규정에 따른 하구역의 공유수면</p>	<p>제2조(정의)</p> <p>1. (개정안과 같음)</p> <p>2. -----</p> <p>가. ~ 나.(개정안과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u><삭 제></u></p>	<p>○ 미반영</p> <p>- 연안의 지속가능한 통합관리를 위해 하천 및 하구역관리는 불가피한 요소임</p> <p>- 즉, 연안환경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오염원의 최대 유입경로가 하천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통합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해양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육지부인 하천구역중 일정 지역을 포함하여 현행법률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p> <p>- 특히, 하구역은 「해양환경관리법」 제22조제2항에서 해양환경관점에서 관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부내 관련대책 공조 및 역할분담 등을</p>

개정안	회신의견	검토의견
<p>3. “연안육역”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지역을 말한다.</p> <p>가. 무인도서</p> <p>나. 연안해역의 육지쪽 경계선으로부터 500미터 (항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항만, 어촌어항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어항 또</p>	<p>3 _____ -----</p> <p>가. (현행과 같음)</p> <p>나 _____ _____ _____</p>	<p>위해서도 공간관리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연안관리법에 이에 대한 근거규정 마련이 필요</p> <p>- 타 법률에 근거한 계획의 관리구역과 연안구역이 중첩되는 것은 각 개별법률의 제정취지, 정책목표 등의 차이에 따라 불가피한 것이며, 중첩에 따른 정책간 충돌상충문제는 계획수립 및 정책집행시 관계행정기관간 협의를 통하여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고려하여 개정안 제15조에서 연안관리계획 수립시 기 수립된 관련계획을 반영하도록 하고 있음</p>

개정안	회신의견	검토의견
<p>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경우에는 1천미터) 범위안의 육지지역, 해양오염방지법 제4조의 4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환경보전해역 및 특별관리해역의 육지지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하구역의 육지부로서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연안통합관리계획에서 정한 지역</p> <p>다.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확대하여 지정한 연안육역</p>	<p style="text-align: center;"><u><삭 제></u></p>	<p>○ 일부반영</p> <p>- 연안의 범위를 무한대로 넓히는 것은 아니라 귀부 의견대로 일정지역의 육지지역까지 통합관리 할 것이 당연히 전제되어 있는 육지지역에 대한 관리를 위한 것임</p> <p>- 즉, 환경보전해역 및 특별관리해역은 우리부가 관장하는 기능을 위해 “필연적으로 같이 관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동 관리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육지부분은 동일부서의 관할범위 일치, 정책의 일관성 유지 등을 위해 연안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며, 또한 현재의 오염부하에 중점을 둔 관리방식을 보다 발전시켜 연안공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실시하여 동 지역에 대한 공간관리와 환경관리간 유기적 협조를 통한 연안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p> <p>* 환경보전해역 및 특별관리해역은 육상기인오염이 해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일정범</p>

개정안	회신 의견	검토 의견
		<p>위의 육지부분을 포함하여 우리부에서 지정관리하고 있음. 다만, 환경관리해역 관리계획과 상충모순되지 않도록 부내협의를 강화하여 연안관리 및 계획 상호간 시너지효과를 최대한 할 계획임</p> <p>- 또한, 현행 연안육역의 범위는 주변지역의 특성, 통합관리의 필요성 등이 고려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500M로 규정하고 있어 연안통합관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음 (500M를 약간 상회하는 도서와 수면 폭이 500M가 넘는 연안육역에 포함되는 저수지 등에 대한 관리의 모호함을 극복하기 위함)</p> <p>- 따라서 500M를 초과하는 육역의 경우에도 연안통합관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연안육역에 포함하여 관리하는 것이 국토의 효율적 보전과 이용을 위하여 바람직</p> <p>* 현행 법률하에서도 일률적으로 500M를 경계로 연안육역을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특성, 관리계획 등을 고려하여 연안육역의 범위를 500M범위내에서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있음</p>

개정안	회신의견	검토의견
<p>4. “연안환경개선사업”이라 함은 연안의 환경개선과 공공이용목적의 친수공간조성을 위하여 제 11조의 규정에 의한 연안관리지역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다음 각목의 사업을 말한다.</p> <p>가. 훼손된 연안서식지를 복원하고 기능을 증진하는 사업</p> <p>나. 연안경관을 보전하기 위한 사업</p> <p>다. 휴식공간조성, 시민의 접근성 증진을 위한 친수공간 조성사업</p> <p>라. 그 밖에 연안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p>	<p>4. ----- ----- ----- -----.</p> <p style="text-align: center;"><u><삭 제></u></p> <p style="text-align: center;"><u><삭 제></u></p> <p>가. ~ 나. (개정안 다목 및 라목과 같음)</p>	<p>- 다만, 500M를 초과하는 지역에 대한 연안육역 지정이 필요이상으로 과도하게 설정되지 않도록 미리 관계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친 후 지정할 수 있도록 개정안 제12조 관련규정 보완</p> <p>○ 수용</p> <p>- 훼손된 연안서식지는 훼손된 연안으로 자구수정</p> <p>- 연안서식지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순손실방지제 포함)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시행토록 조정</p> <p>○ 수용불가</p>

개정안	회신의견	검토의견
<p>5. (생략)</p> <p>6. “연안용도구역”이라 함은 효율적인 연안의 보전·이용 및 개발을 통하여 공공의 복리를 증진할 목적으로 연안의 용도를 미리 정하여 중복되지 아니하게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연안통합관리계획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연안관리지역계획으로 결정하는 구역을 말한다.</p> <p>7. “연안기능구”라 함은 연안용도구역의 기능을 증진·보완하여 연안의 합리적인 보전·이용 및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연안의 이용상태 및 기능에 따라 연안관리지역계획으로 정하는 구역을 말한다.</p>	<p>5. (개정안과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u><삭 제></u></p> <p style="text-align: center;"><u><삭 제></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안용도구역 도입의 목적은 체계적이고 예측가능한 연안관리행정 수행과 연안통합관리차원에서 연안이용수요에 적절하게 대처하려는 것임 - 연안육역의 난개발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개별 입지나 필지별개발에 대한 대응이 없는 실정이고, 토지적성평가에서도 연안의 특성이 고려되지 않고 있어 연안의 난개발방지와 해역의 친환경적 관리를 위해 연안지역의 이용개발에 대한 통합관리개념 도입 필요 - 연안용도구역은 연안통합관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도입하려는 것으로 국토계획법상의 용도지역 구분과는 그 성질 및 관리목적에 차이가 있음. 다만, 연안용도구역 설정시 기존에 설정된 구역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상호 충돌 및 이로 인한 혼란을 사전에 방지할 계획임 - 특히, 연안용도구역제는 관계부처 협의(건교부, 환경부 등)를 거쳐 대통령주재 국정과제회의(81회, '06.7.13)에서 국정과제로 선정되어 이를 법령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수용곤란 <p>* 연안용도구역제, 연안기능구에 대한 회신의견에</p>

개정안	회신 의견	검토 의견
<p>8. “하구역”이라 함은 하천의 담수와 해수가 만나 혼합하는 공유수면 및 당해 공유수면에 영향을 미치는 육지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u><삭 제></u></p>	<p>대해서는 이하 별도 검토의견을 기술하지 않음</p> <p>○ 미반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조제2호다목에서 하구역을 연안해역의 범위에 포함한 결과로 하구역에 대한 정의가 필요시 됨 - 특히, 하구역의 법적개념 정의를 포함하여 하구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에 대하여는 제62차 국정과제회의('05.6.22)에서 결정된 바 있어 가장 복잡하고 다양한 경제활동과 정책수요가 있는 하구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공간관리의 근거마련이 필요 - 또한, 하구역의 개념을 보전기능이 특화된 자연환경보전법이나 개발을 전제로 하는 개별법령에서 정의하는 것은 하구역 관리를 위한 정책의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어 연안공간에 관한 보전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연안관리법에 규정하는 것이 타당 <p>○ 미반영</p>

개정안	회신의견	검토의견
<p>9. “자연해안” 및 “연안서식지”는 다음 각 목을 말한다.</p> <p>가. 자연해안 : 바닷가 또는 일정구간의 연안에 인위적인 방법으로 조성된 시설, 도로 등의 구조물이 없어 자연상태의 해안선이 유지되고 있는 해안</p> <p>나. 연안서식지 : 해양생물의 산란, 서식, 생장에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공간</p>	<p>9. “자연해안”은 바닷가 또는 일정구간의 연안에 인위적인 방법으로 조성된 시설, 도로 등의 구조물이 없어 자연상태의 해안선이 유지되고 있는 해안</p> <p style="text-align: center;"><u><삭 제></u></p> <p style="text-align: center;"><u><삭 제></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해안·연안서식지 순손실방지제는 대통령주재 국정과제회의(제62회, '05.6.22)에서 국정과제로 선정되어 연안환경 및 연안공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금번 개정안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 이종 연안서식지의 보전과 관리에 관한 사항은 개별법률에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정책을 집행하는 것은 타당 - 다만, 연안관리법에서 연안서식지를 규정하는 것은 연안서식지의 순손실방지제라는 연안관리의 기본정책방향을 정하는 것을 의미하여, 연안서식지의 법적개념이 부재한 현행법률체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따라서 연안관리법에서 연안서식지 및 순손실방지제의 개념과 기본관리방향을 제시하고, 이에 따라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개별법령에서 개별사업과 정책을 수립·시행하면 될 것이므로 삭제할 필요성은 없다 할 것임

개정안	회신의견	검토의견
<p>10. “연안완충대”라 함은 연안재해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자연해안과 연안서식지의 기능을 유지증진 및 공공의 연안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해안선으로부터 일정거리에 설정하는 육지부를 말한다.</p>	<p>10. “연안완충대”라 함은 연안지역 중</p> <hr/> <hr/> <hr/> <hr/> <p>-----.</p>	<p>○ 수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안관리법이 연안지역을 대상으로 하므로 연안완충대 또한 당연히 연안지역에 국한되어 설정되는 것이나, 의미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시의견 수용 - “연안완충대”라 함은 연안재해로부터 국토를 (중략) 보장하기 위하여 「수로업무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해안선으로부터 연안육역방향으로 설정하는 연안의 특정지역을 말한다고 수정 <p>○ 일부수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안의 복원은 서식지 복원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연안시설의 복구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는 연안환경개선사업과 연안재해방지사업의 대상이 됨 - 연안의 복원 및 연안기능의 유지증진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

개정안	회신의견	검토의견
<p>제9조(통합계획의 내용) ①통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p>1.~4. (생략)</p> <p>5. 연안의 복원 및 연안경관의 보전방향</p> <p>6. 연안용도구역 및 연안기능구의 설정방향 및 관리목표</p> <p>7. 연안완충대 설정과 자연해안 및 연안서식지의 관리방향</p> <p>8.~9. (생략)</p>	<p>제9조(통합계획의 내용) ①----- -----.</p> <p>1.~4. (개정안과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u><삭 제></u></p> <p style="text-align: center;"><u><삭 제></u></p> <p style="text-align: center;"><u><삭 제></u></p> <p>8.~9. (개정안과 같음)</p>	<p>○ 수용불가</p> <p>○ 미반영</p> <p>- 연안완충대와 연안서식지와 관련한 검토의견은 위 참조</p> <p>- 통합계획 수립시 관계부처의 법령과 정책을 고려하고, 관계행정기관의 협의를 거쳐 수립되므로 부처간 이해관계 충돌이나 정책간 상충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음</p> <p>○ 미반영</p> <p>- 통합계획에 경관 등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실효성 있는 계획수립을 위하여 이와 관련되는 계획, 법령 등을</p>

개정안	회신의견	검토의견
<p>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연안의 범위 및 계획수립 대상지역을 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p> <p>1.~3. (생략)</p> <p>4. 연안환경 및 경관 등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p> <p>5.~7. (생략)</p> <p>제12조(지역계획의 내용) ①제11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p>1.~4. (생략)</p> <p>5. 연안용도구역 및 연안기능구의 설정</p> <p>6. 자연해안 및 연안서식지의 훼손방지 및 기능의 유지·증진을 위한 대책</p> <p>7.~8. (생략)</p>	<p>②_____</p> <p>_____</p> <p>_____.</p> <p>1.~3. (개정안과 같음)</p> <p>4. 연안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p> <p>5.~7. (개정안과 같음)</p> <p>제12조(지역계획의 내용) ①_____</p> <p>_____</p> <p>1.~4. (개정안과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u><삭 제></u></p> <p>6. <u>자연해안</u>의 _____</p>	<p>계획수립시 고려하여야 함을 의미함(이것이 제2항의 취지임)</p> <p>○ 수용불가</p> <p>○ 수용</p> <p>○ 일부반영</p> <p>- 제2조제3호다목 사유와 같음</p> <p>- 다만, 연안육역 확대의 필요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계획에서...”로 수정하여 연안육역확대를 필요최소한의 범위로 제한하고,</p> <p>- 후단에 “연안육역을 확대하여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를 추가하여 관계행정기관과의 협의를</p>

개정안	회신의견	검토의견
<p>②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조제3호나목 및 제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역적인 여건·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역계획에서 연안육역을 확대하여 지정할 수 있다.</p> <p>제15조(다른 계획 등과 연계)①통합계획은 「국토기본법」(중략)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등과 상호 연계하여 수립하여야 한다.</p> <p>②통합계획과 지역계획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의하여 수립되는 연안해역과 연안육역의 보전이 용 및 개발에 관한 계획의 기초가 된다. 다만,</p>	<p>7.~8. (개정안과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u><삭 제></u></p> <p>제15조(다른 계획 등과 연계)①-----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자연공원법 제11조의 공원기본계획 등과 ----- -----.</p>	<p>통하여 육역범위 확대여부를 결정하도록 보완</p> <p>○ 수용</p> <p>○ 수용곤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 조항은 연안계획이 관계기관의 협의와 조정, 공청회, 지역 및 중앙연안관리심의회 등의 절차를 거치는 등 충분한 논의를 바탕으로 작성되는 계획이므로 이를 존중하고 연안에 관한 기본계획으로서 기능을 해야 한다는 의미임 - 이는 동 조항 후단의 규정에서 알 수 있듯이 통합계획과 지역계획이 관련계획을 고려하도록 되어 있어 계획간 종속관계를 설정하는 것은 아님 - 또한 연안지역을 대상으로 수립된 타 계획들은 연안계획 수립시 충분히 반영되고 있으며, 상

개정안	회신의견	검토의견
<p><u>연안육역의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련계획을 고려하여 통합계획과 지역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u></p> <p><u>③해양수산부장관은 연안환경을 보전하고 연안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계획이나 지정된 구역 등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u></p>	<p><u><삭 제></u></p>	<p>호 충돌모순되는 경우 계획수립의 선행여부에 관계없이 연안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차원에서 상호 협의와 조정을 거쳐 보다 합리적인 국토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부수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경우...” 이하 삭제 - 상단 규정은 현행법률 내용 ○ 수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만, 제2조(정의)제10호에서 연안완충대의 개념

개정안	회신 의견	검토 의견
<p><u>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u></p> <p>제28조(연안완충대의 설정)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해일, 파랑, 해수 또는 이로 인한 지반의 침식 등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연안의 자연건강성을 유지하며 공공의 연안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u>해안선으로부터 연안육역 방향으로 일정거리에 연안완충대를 설정할 수 있다.</u></p> <p>②~⑤ (생략)</p> <p>제3장 연안용도구역의 설정(제16조~제27조)</p> <p>제34조(연안서식지의 보전과 복원) ①국가는 다음 <u>각호와 같은 연안서식지를 보전할 수 있도록 조</u></p>	<p><u><삭 제></u></p> <p>제28조(연안완충대의 설정) ①----- ----- ----- ----- <u>연안육역 중 해안선으로부터</u> ----- -----</p> <p>②~⑤ (개정안과 같음)</p>	<p>을 보완하여 재정의</p> <p>- 이에 따라 제1항의 “<u>해안선으로부터 연안육역 방향으로 일정거리에</u>” 문구가 불필요함에 따라 삭제</p> <p>○ 수용불가</p> <p>○ 일부수용</p> <p>- 제34조(연안서식지의 보전)으로 수정하고 제1항만 존치</p> <p>- 제2항 내지 제4항과 같은 구체적인 관리정책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시행하도록 조정</p>

개정안	회신의견	검토의견
<p>치를 강구하여야 한다.</p> <p>1. 간석지 및 하구역 등 연안습지</p> <p>2. 산호초 및 해초군락</p> <p>3. 해안사구</p> <p>4. 염생식물군락지</p> <p>5.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연안서식지</p> <p>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해안 및 연안서식지조사 또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해양생태계기본조사 등의 결과를 고려하여 연안서식지 보전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p> <p>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안서식지 보전대책을 수립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p> <p>④연안서식지 보전대책의 내용과 실시방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35조(순손실방지제 등) ①(생략)</p> <p>②국가는 훼손된 자연해안 및 연안서식지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연안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자</p>	<p><삭 제></p> <p><삭 제></p>	<p>○ 수용</p> <p>- 제2조제4호가목 수정에 따라 문구조정</p> <p>- “국가는(중략)자연해안을 복원하고 순손실방지제이 정책목표 달성을 위하여(중략)자연해안의 복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로 수정</p> <p>○ 수용</p>

개정안	회신 의견	검토 의견
<p>연해안 및 연안서식지의 복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p> <p>③(생략)</p> <p>제45조(인·허가 등의 의제) ①생략 1.~ 22. (생략)</p> <p>23. 「자연공원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공원사업시행 및 공원시설관리의 허가, 같은 법 제23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행위허가와 같은 법 제71조의 규정에 따른 공원관리청과의 협의</p> <p>24 .~ 26.(생략)</p> <p>② (생략)</p>	<p>제35조(순손실방지제 등) ①(개정안과 같음)</p> <p>② 자연해안의 자연해안의</p> <p>-----</p> <p>③(개정안과 같음)</p> <p>제45조(인·허가 등의 의제)①좌동 1.~ 22. 좌동</p> <p style="text-align: center;"><삭제></p>	

□ 법무부

개정안	회신 의견	검토 의견
<p>제29조(연안완충대의 관리) ①연안완충대는 제1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전연안구역으로 설정하도록 하며, 연안완충대 안에서는 연안환경의 변화를 야기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p> <p>1.~5. 생략</p> <p>②~④생략</p>	<p>○ 행위제한의 주체가 누락되어 있어 보완 필요</p> <p>○ 행위제한의 내용을 재량사항으로 하는 것에 대한 재검토 필요</p> <p>- 연안환경보호를 위한 필수사항은 법률에서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대안 검토 필요</p>	<p>○ 수용</p> <p>- “연안완충대는 제1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전연안구역으로 설정하도록 하며, <u>누구든지</u> 연안완충대 안에서는 연안환경의 변화를 야기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u>하여서는 아니된다.</u>”로 수정</p> <p>- 조문의 취지 및 의미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u>누구든지...</u>” 이하를 제29조제2항으로 분리</p>
<p>제62조(벌칙) ①생략</p> <p>②생략.</p> <p>1. 제25조 제1항 및 제2항,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받지 아니하고 이용 또는 개발 행위 등을 한 자</p>	<p>○ “협의를 받지 아니하고”의 의미를 명백하게 규정할 필요</p>	<p>○ 수용</p> <p>- 제25조 및 제29조의 협의는 행위협의를 규정한 조항으로서, 행위협의를 위한 일련의 절차를 포함하여 협의대상 행위에 대한 최종적인 협의를 포함하는 의미인 바, 이러한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자구수정</p> <p>- “협의를 하지 아니하거나(협의를 하였으나 <u>협의를 완료되지 않은 경우 포함</u>) 협의내용을 위</p>

개정안	회신 의견	검토 의견
<p>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5조 제1항 및 제2항,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 또는 승인을 받은 자</p>	<p>○ 타 법률에 의한 인가, 허가관련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을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부적절</p>	<p><u>반하여</u>”로 수정</p> <p>○ 수용 - 타 법률에 의한 처분행위는 벌칙조항에서 분리하여 별도로 부칙에 규정 * 「해양환경관리법」 제93조를 참고</p>
<p>제64조(과태료) ①정당한 사유없이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 일시사용, 조사관찰 및 장애물의 변경·제거를 방해 또는 거부한 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⑤ 생략</p>	<p>○ 일시사용의 개념, 기간, 사용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p> <p>○ 조사와 내용상 중복소지가 있는 관찰은 삭제 필요</p>	<p>○ 미반영 - 일시사용은 연안환경개선사업 또는 연안재해방지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적치장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적으로 최소한 사용하는 것으로, - 일시사용의 정도는 당해 사업의 공정, 특성 등에 따라 일시사용의 기간 및 범위 등을 달리하므로 법률에서 일괄적·구체적으로 일시사용의 내용기간 등을 규정하는 것은 곤란(현행 법률도 같음)</p> <p>○ 수용 - 다만, 조사와 관찰은 의미상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통상 혼용되어 사용되는 점과 출입시 조사 관찰이 수반됨을 고려하여 제58조제1항의 “출입”을 “출입(조사관찰을 포함한다. 이하 같</p>

개정안	회신 의견	검토 의견
		다)”로 수정하고, 제64조제1항의 조사관찰은 삭제

□ 해양수산부(항만국)

개정안	회신 의견	검토 의견
<p>제19조(연안용도구역의 지정) ①다음 각 호에 따라 지정 또는 고시된 구역 등은 이 법에 따른 이용연안 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p> <p>1. 「항만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항만</p> <p>2.~8. 생략</p>	<p>제19조(연안용도구역의 지정) ①좌동</p> <p>1. ~ 7. (개정안과 같음)</p> <p>8. 「<u>신항만건설촉진법</u>」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u>신항만건설예정지역</u></p> <p>9.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구역</p>	<p>○ 수용</p> <p>- 신항만건설예정지역도 항만구역임을 고려하여 제1호에 병합하여 반영</p> <p>- 1. 「항만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항만구역 및 「<u>신항만건설촉진법</u>」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u>신항만건설예정지역</u>으로 수정</p>

부록 5 우리나라 연안에서의 각종지역 등의 지정과 관리현황

연번	구분	근거법률	지역·지구 등 명칭	고시유형	도면축척	기타
1	육지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제3조	개발제한구역	지형도면	1:1,000; 1:5,000; 1:25,000	도시관리계획에 따름.
2	육지	건축법제12조	건축허가·착공제한지역	미정	미정	
3	공통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제4조	경제자유구역	지형도	1:5,000; 1:25,000	
4	육지	고도보존에관한특별법제8조	특별보존지구	미정	미정	
5	육지	고도보존에관한특별법제8조	역사문화환경지구	미정	미정	
6	육지	고속국도법제8조	접도구역	미정	미정	50m이하
7	공통	골재채취법제22조의2	골재채취금지구역	미정	미정	
8	공통	골재채취법제34조	골재채취단지	미정	미정	
9	공통	골재채취법제21조의2	골재채취예정지	미정	미정	
10	공통	골재채취법	골재채취구역	미정	미정	
11	공통	관광진흥법제50조	관광지	지형도 및 지적도	1:25,000 이상 지형도 1:500내지 1:6,000의 지적도	
12	공통	관광진흥법제50조	관광단지	지형도 및 지적도	1:25,000 이상 지형도 1:500내지 1:6,000의 지적도	
13	공통	관광진흥법제67조	관광특구	지형도 및 지적도	1:25,000 이상 지형도 1:500내지 1:6,000의 지적도	
14	육지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지형도	1:5,000; 1:25,000	
15	육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2조	도시계획시설부지	지형도면	1:1,000; 1:5,000; 1:25,000	
16	공통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6조	도시지역(주거, 상업, 공업, 녹지)	지형도면	1:1,000; 1:5,000; 1:25,000	
17	공통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6조	관리지역(보전, 생산, 계획)	지형도면	1:1,000; 1:5,000; 1:25,000	
18	공통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6조	농림지역	지형도면	1:1,000; 1:5,000; 1:25,000	

연번	구분	근거법률	지역·지구 등 명칭	고시유형	도면축척	기타
19	공통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6조	자연환경보전지역	지형도면	1:1,000; 1:5,000; 1:25,000	
20	공통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7조	특정용도제한지구	지형도면	1:1,000; 1:5,000; 1:25,000	
21	육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7조	경관지구	지형도면	1:1,000; 1:5,000; 1:25,000	
22	육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7조	미관지구	지형도면	1:1,000; 1:5,000; 1:25,000	
23	육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7조	고도지구	지형도면	1:1,000; 1:5,000; 1:25,000	
24	육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7조	방화지구	지형도면	1:1,000; 1:5,000; 1:25,000	
25	육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7조	방재지구	지형도면	1:1,000; 1:5,000; 1:25,000	
26	공통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7조	보존지구	지형도면	1:1,000; 1:5,000; 1:25,000	
27	공통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7조	시설보호지구	지형도면	1:1,000; 1:5,000; 1:25,000	
28	육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7조	취락지구	지형도면	1:1,000; 1:5,000; 1:25,000	
29	육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7조	개발진흥지구	지형도면	1:1,000; 1:5,000; 1:25,000	
30	육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8조의2	도시자연공원구역	지형도면	1:1,000; 1:5,000; 1:25,000	
31	육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9조	시가화조정구역	지형도면	1:1,000; 1:5,000; 1:25,000	
32	공통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40조	수산자원보호구역	지형도면	1:1,000; 1:5,000; 1:25,000	
33	육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50조	지구단위계획구역	지형도면	1:1,000; 1:5,000; 1:25,000	
34	육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51조	지구단위계획구역(1종, 2종)	지형도면	1:1,000; 1:5,000; 1:25,000	
35	육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63조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지형도면	1:1,000; 1:5,000; 1:25,000	
36	육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66조	개발밀도관리구역	지형도면	1:1,000; 1:5,000; 1:25,000	
37	육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67조	기반시설부담구역	지형도면	1:1,000; 1:5,000; 1:25,000	
38	공통	군사시설보호법제12조	대공방어협조구역	지형도면	1:25,000	민통선은 행정좌표로 고시
39	공통	군사시설보호법제4조	군사시설보호구역(통제보호,제한보호)	지형도면	1:25,000	민통선은 행정좌표로 고시
40	공통	군용전기통신법제9조	특별보호구역	미정	미정	2km이내

연번	구분	근거법률	지역·지구 등 명칭	고시유형	도면축척	기타
41	육지	군용항공기지법제21조의2	비상활주로	미정	미정	활주로를 기준으로 개별기준에 의한 작도
42	공통	군용항공기지법제21조의2	비상활주로의비행안전구역(1,2,3구역)	미정	미정	활주로를 기준으로 개별기준에 의한 작도
43	공통	군용항공기지법제4조	비행안전구역(헬기전용작전기지, 전술항공기, 지원항공기 및 예비기지)	미정	미정	활주로를 기준으로 개별기준에 의한 작도
44	공통	군용항공기지법제5조	기지보호구역	미정	미정	기지구역=1:25,000, 보호구역범위=5km 또는 2km
45	육지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제4조	수변구역	미정	미정	
46	육지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제7조	상수원보호구역	지적도	미정	
47	공통	기업도시개발특별법제5조	기업도시개발구역	지형도	1:25,000	
48	육지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제4조	수변구역	미정	미정	
49	육지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제7조	상수원보호구역	지적도	미정	
50	육지	농지법제30조제1항	농업진흥지역(진흥구역, 보호구역)	지형도면	미정	
51	육지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제4조	연구개발특구(주거구역, 상업구역, 녹지구역, 산업시설, 교육연구 등)	지형도 지적도, 임야도	1:25,000; 1:5,000 지형도 지적도 또는 임야도	
52	육지	도로법제25조	도로구역	지형도면	1:50,000 이상	
53	육지	도로법제50조	접도구역(입체적도로구역, 도로보전입체구역)	지형도면	1:50,000 이상	
54	육지	도시개발법제3조	도시개발구역	지형도	1:50,000; 1:25,000 위치도 1:5,000; 1:1000 경계설정	
55	육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4조	정비구역	미정	미정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 첨부
56	육지	독도등도서지역의생태계보전에관한특별법제4조	특정도서	미정	미정	개발행위는 1:25,000 이상의 지형도
57	육지	문화예술진흥법제10조의2	문화지구	지형도면	1:1,000; 1:5,000; 1:25,000	도시계획(도시관리계획)으로 지정

연번	구분	근거법률	지역·지구 등 명칭	고시유형	도면축척	기타
58	공통	문화재보호법제13조	가지정문화재구역	미정	미정	도시관리계획과 연계
59	공통	문화재보호법제2조제2항	국가지정문화재구역	미정	미정	도시관리계획과 연계
60	공통	문화재보호법제42조	등록문화재구역	미정	미정	도시관리계획과 연계
61	공통	문화재보호법제55조	시·도지정문화재구역	미정	미정	도시관리계획과 연계
62	공통	문화재보호법제55조	문화재자료구역	미정	미정	도시관리계획과 연계
63	공통	문화재보호법제8조	보호구역	미정	미정	도시관리계획과 연계
64	육지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제6조	백두대간보호지역(핵심, 완충)	지형도	1:25,000 이상	
65	육지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제17조	벤처기업전용단지	미정	미정	특별법의 기간 만료
66	육지	사방사업법제4조	사방지	지적 또는 임야도	1:6,000 이상 1:1,200 이하	
67	육지	산림법제31조	자연휴양림구역	임야도	1:25,000; 1:6,000	
68	육지	산림법제49조	채종림구역	미정	미정	
69	육지	산림법제56조	보안림구역	미정	미정	
70	육지	산림법제67조	산림유전자원보호림구역(시험림)	미정	미정	
71	공통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제6조	국가산업단지	미정	미정	
72	공통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제7조	일반지방산업단지	미정	미정	
73	공통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제7조의2	도시첨단산업단지	미정	미정	
74	공통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제8조	농공단지	미정	미정	행정구역명으로 고시
75	육지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제3조	과밀억제지역	미정	미정	행정구역명으로 고시
76	육지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제4조	성장관리지역	미정	미정	행정구역명으로 고시
77	육지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제4조의2	자연보전지역	미정	미정	행정구역명으로 고시
78	육지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제44조	특별유치업종을위한지역	미정	미정	산업단지내 지정
79	육지	산지관리법제28조	채석허가제한지역	지형도	1:25,000 이상	

연번	구분	근거법률	지역·지구 등 명칭	고시유형	도면축척	기타
80	육지	산지관리법제33조	토사채취허가제한지역	지형도	1:25,000 이상	
81	육지	산지관리법제4조	보전산지(임업용, 공익용)	지형도	1:25,000 이상	
82	육지	산지관리법제4조	준보전산지	지형도	1:25,000 이상	
83	육지	산지관리법제9조	산지전용제한지역	지형도	1:25,000 이상	
84	육지	소하천정비법제2조제2호	소하천구역	지형도	1:50,000 이상 1:500 이하	
85	육지	소하천정비법제4조	소하천예정지	지형도	1:6,000 이상 1:1,000 이하	
86	육지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	과밀억제권역	미정	미정	행정구역명의로 고시
87	육지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	성장관리권역	미정	미정	행정구역명의로 고시
88	육지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	자연보전권역	미정	미정	행정구역명의로 고시
89	육지	수도법제5조	상수원보호구역	지적도	미정	
90	육지	수목원조성및진흥에관한법률제19조	국립수목원완충지역	지형도	1:25,000, 1:6,000; 1:5,000	
91	육지	수질환경보전법제10조제6항(령9조)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미정	미정	
92	공통	습지보전법제8조	습지보호지역(주변관리, 개선)	미정	미정	좌표고시
93	공통	신항만건설촉진법제5조	신항만건설예정지역	지형도	1:25,000	
94	공통	야생동식물보호법제33조	야생동식물보호구역(특별, 시도)	지형도	1:25,000	
95	공통	어촌·어항법제17조	어항구역	지형도		좌표고시 병행
96	육지	연안관리법제2조제3호	연안육역	지형도	1:25,000; 1:5,000	
97	육지	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제4조	수변구역	미정	미정	
98	육지	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제7조	상수원보호구역	지적도	미정	
99	육지	온천법제3조	온천원보호지구	지형도	1:25,000	

연번	구분	근거법률	지역·지구 등 명칭	고시유형	도면축척	기타
100	육지	온천법제4조	온천공보호구역	지적도	미정	
101	육지	유통단지개발촉진법제5조	유통단지	미정	미정	
102	육지	자연공원법제18조제1항제1호	공원자연보존지구	지형도	1:25,000; 1:5,000	
103	육지	자연공원법제18조제1항제2호	공원자연환경지구	지형도	1:25,000; 1:5,000	
104	육지	자연공원법제18조제1항제3호	공원자연마을지구	지형도	1:25,000; 1:5,000	
105	육지	자연공원법제18조제1항제4호	공원밀집마을지구	지형도	1:25,000; 1:5,000	
106	육지	자연공원법제18조제1항제5호	공원집단시설지구	지형도	1:25,000; 1:5,000	
107	육지	자연공원법제25조	공원보호구역	지형도	1:25,000; 1:5,000	
108	공통	자연공원법제4조	자연공원(국립, 도립, 군립)	지형도	1:25,000; 1:5,000	
109	공통	자연환경보전법제12조	생태·경관보전지역(핵심, 완충, 전이, 시도)	지형도면	1:5,000	
110	공통	자연환경보전법제22조	자연유보지역	미정	미정	
111	공통	자연환경보전법제39조	자연휴식지	미정	미정	
112	공통	전원개발촉진법제11조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	지형도면	1:50,00 이상 1:25,000 이하	
113	공통	전원개발촉진법제5조	전원개발사업구역	지형도면	1:50,00 이상 1:25,001 이하	
114	육지	전통사찰보존법제4조의2	전통사찰보존구역	미정	미정	도시관리계획 연계
115	육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92조	절대보전지역	미정	미정	1:5,000 지형도면자료를 기반으로 GIS구축
116	육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93조	상대보전지역	미정	미정	1:5,000 지형도면자료를 기반으로 GIS구축
117	육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94조	관리보전지역	미정	미정	1:5,000 지형도면자료를 기반으로 GIS구축
118	육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94조	지하수자원보전지구	미정	미정	1:5,000 지형도면자료를 기반으로 GIS구축

연번	구분	근거법률	지역·지구 등 명칭	고시유형	도면축척	기타
119	공통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94조	생태계보전지구	미정	미정	1:5,000 지형도면자료를 기반으로 GIS구축
120	공통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94조	경관보전지구	미정	미정	1:5,000 지형도면자료를 기반으로 GIS구축
121	육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12조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	미정	미정	1:5,000 지형도면자료를 기반으로 GIS구축
122	육지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제44조	자유무역지역	미정	미정	신규법령에 누락됨.
123	육지	주차장법제12조제6항	노외주차장설치제한지역	미정	미정	
124	육지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제26조의3	특정지역	지형도 또는 지적도	1:5,000 이상	
125	육지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제9조	개발촉진지구	지형도 또는 지적도	1:5,000 이상	
126	육지	지역특화발전특구에대한규제특례법제9조	지역특화발전특구	미정	미정	
127	육지	지하수법제12조	지하수보전구역	지형도	1:5,000	
128	육지	철도안전법제45조	철도보호지구	미정	미정	철도경계로부터 300m 이내
129	육지	청소년활동진흥법제47조	청소년수련지구	지형도	1:25,000 이상	
130	육지	초지법제5조	초지	지형도	1:25,000	
131	공통	택지개발촉진법제3조	택지개발예정지구	지형도	1:25,000; 1:5,000	
132	육지	토양환경보전법제17조	토양보전대책지역	지형도	1:25,000 이상	
133	육지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제10조	폐기물처리시설입지	지적도(임야도)	1:1,200(1:6,000)	
134	육지	하천법제10조	연안구역	지형도면	1:5,000 이상	
135	육지	하천법제2조제1항제2호	하천구역	지형도면	1:5,000 이상	

연번	구분	근거법률	지역·지구 등 명칭	고시유형	도면축척	기타
136	육지	하천법제9조	하천예정지	지형도면	1:5,000 이상	
137	육지	학교보건법제5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미정	미정	교문을 기준으로 거리별 설정
138	육지	한강수계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제4조	수변구역	미정	미정	
139	육지	항공법제2조2호	공항구역	미정	미정	도시관리계획과 연계
140	공역	항공법제38조제2항	비행정보구역	미정	미정	
141	공역	항공법제2조	항공로	미정	미정	
142	공역	항공법제3조	관제구	미정	미정	
143	공통	항공법제107조	공항소음피해지역	미정	미정	소음수치 95db미만
144	공통	항공법제107조	공항소음피해예상지역	미정	미정	소음수치 75db이상
145	공통	항공법제2조제7호	공항구역	미정	미정	도시관리계획과 연계
146	공통	항만법제2조제4호	항만구역	지형도(해도)	1:5,000	
147	공통	항만법제2조제5호	임항구역(임항지역+항만시설보호구역)	지형도(해도)	1:5,000	도시관리계획과 연계
148	육지	항만법제36조	항만배후단지	미정	미정	
149	공통	항만법제49조제1항	임항지역	미정	미정	도시관리계획과 연계
150	육지	해군기지법제3조	해군기지구역 (통제보호,제한보호, 군항구역)	미정	1:50,000; 1:25,000 지형도 1:20,000; 1:10,000 해도 1:6,000; 1:1,200 지적도	육역:행정구역명으로 고시, 수역:좌표고시
151	공통	해양오염방지법제4조의4	환경관리해역(보전해역, 특별관리해역)	행정구역고시	-	좌표고시
152	공통	환경정책기본법제22조	특별대책지역	행정구역고시	-	좌표고시
153	육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2호	예정지역	지적도(임야도)	1:1,500 내지 1:500 1:3,000 내지 1:6,000 지적도	

연번	구분	근거법률	지역·지구 등 명칭	고시유형	도면축척	기타
154	육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3호	주변지역	지적도(임야도)	1:1,500 내지 1:500 1:3,000 내지 1:6,000 지적도	
155	육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8조	개발행위허가및건축허가제한지역	지적도(임야도)	1:1,500 내지 1:500 1:3,000 내지 1:6,000 지적도	
156	공통	광업법제5조	광구	미정	미정	구역도(경도 1도, 위도 1도 간격)
157	공통	해저광물자원개발법제2조	해저광물개발구역	미정	미정	주권 또는 주권적 권리를 향유하는 구역
158	공통	해저광물자원개발법제3조	해저광구	미정	미정	좌표
159	공통	해저광물자원개발법제2조	해저조광구	미정	미정	해저광구명 또는 좌표
160	해역	개항질서법제11조제1항	항로	해도	미정	
161	해역	개항질서법제6조	정박지	해도	미정	
162	해역	고래포획금지에관한고시	고래포획금지	미정	미정	좌표고시
163	해역	공유수면관리법제5조제1항또는제4항	점사용허가	지형도, 해도	1:25,000	
164	해역	공유수면매립법	매립예정지	지형도	1:25,000	
165	해역	기르는 어업육성법제10조	수산자원관리수면	미정	미정	
166	해역	기르는 어업육성법제7조	기르는어업 개발지구	미정	미정	
167	육지	내수면어업법제6조	면허어업	미정	미정	좌표 및 지명 병용
168	육지	내수면어업법제9조	허가어업	미정	미정	좌표 및 지명 병용
169	해역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의행사에관한법률	어업활동허가	미정	미정	단순허가행위
170	해역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의행사에관한법률제4조	특정금지구역	미정	미정	좌표고시

연번	구분	근거법률	지역·지구 등 명칭	고시유형	도면축척	기타
171	해역	선박안전법제9조제1항	항행구역 (평수구역, 연해구역, 근해구역, 원양구역)	해도	미정	좌표와 지명 병용 고시
172	해역	수상레저안전법제25조	수산레저활동금지구역	미정	미정	좌표고시
173	해역	수산물품질관리법제24조제1항	지정해역	해도	미정	좌표고시
174	해역	수산물품질관리법제24조제2항	주변해역	해도	미정	지정해역을 중심으로 작도
175	해역	수산업법제78조	어업의 금지구역	미정	미정	좌표고시
176	해역	수산업법제53조	조업수역	미정	미정	좌표고시
177	해역	수산업법제67조	보호수면	미정	미정	좌표고시
178	해역	수산업법제70조	육성수면	미정	미정	좌표고시
179	해역	수산업법제78조	특정어업의 금지구역	미정	미정	좌표고시
180	해역	수산업법제79조	어구사용금지구역	미정	미정	좌표고시
181	해역	수산업법 수산자원보호령제8조	포획금지구역	미정	미정	좌표고시
182	해역	수산업법제55조	유어장	미정	미정	좌표고시
183	해역	수산업법제8조	면허어업	미정	미정	좌표고시
184	해역	수산업법제41조	허가어업	미정	미정	좌표고시
185	해역	어장관리법제5조	어장관리해역	미정	미정	좌표고시비용 (1:50,000 이상의 도면으로 작성하는 경우)
186	해역	어장관리법제7조	어장관리특별해역	미정	미정	좌표고시비용 (1:50,000 이상의 도면으로 작성하는 경우)
187	해역	유선및도선사업법제8조	영업구역	미정	미정	
188	해역	해상교통안전법제45조	교통안전특정해역	미정	미정	좌표고시

연번	구분	근거법률	지역·지구 등 명칭	고시유형	도면축척	기타
189	해역	해상교통안전법제49조의2	유조선통항금지해역	미정	미정	좌표고시
190	해역	해양수산발전기본법제28조제2항	해중경관지구	미정	미정	
191	해역	해양오염방지법제16조제4항	폐기물배출해역	미정	미정	좌표고시
192	해역	배타적경제수역법제1조	배타적경제수역	미정	미정	직선기점을 기준으로 작도(좌표고시예정)

주1) 고시유형 중 '지형도면':지적이 표시된 지형도

주2) 고시유형 및 도면축 항목 중 '미정':관련규정에서 도면의 형태 및 축척등을 정하지 않은 경우

주3) 육지에서의 용도지역지정은 지적고시를 통해 완료되므로 고시의 형태가 미정인 항목은 지적고시로 보아도 무방함.

주4) 좌표고시(X, Y 좌표고시)의 경우 좌표를 독취한 기초도면의 형태 및 좌표계를 정하지 않고 있음.

부록 6. 토지이용규제를 하는 지역·지구 등(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5조)

연번	근거법률	지역·지구 등 명칭
1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제3조	개발제한구역
2	「건축법」제12조	건축허가·착공제한지역
3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제4조	경제자유구역
4	「고도보존에관한특별법」제8조제1항제1호	특별보존지구
5	「고도보존에관한특별법」제8조제1항제2호	역사문화환경지구
6	「고속국도법」제8조	접도구역
7	「골재채취법」제34조	골재채취단지
8	「골재채취법」제22조의2	골재채취금지구역
9	「관광진흥법」제50조	관광지
10	「관광진흥법」제50조	관광단지
11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	국민임대주택단지에정지구
1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2조제7호	도시계획시설부지
1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6조제1항제1호	도시지역
14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6조제1항제2호	관리지역
15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6조제1항제3호	농림지역
16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6조제1항제4호	자연환경보전지역
17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6조제1항제1호가목	주거지역
18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6조제1항제1호나목	상업지역
19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6조제1항제1호다목	공업지역
20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6조제1항제1호라목	녹지지역
2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6조제1항제2호가목	보전관리지역
2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6조제1항제2호나목	생산관리지역
2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6조제1항제2호다목	계획관리지역
24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7조제1항제1호	경관지구
25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7조제1항제2호	미관지구
26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7조제1항제3호	고도지구
27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7조제1항제4호	방화지구
28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7조제1항제5호	방재지구
29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7조제1항제6호	보존지구
30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7조제1항제7호	시설보호지구
3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7조제1항제8호	취락지구
3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7조제1항제9호	개발진흥지구
3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7조제1항제10호	특정용도제한지구
34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8조의2	도시자연공원구역
35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9조	시가화조정구역
36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40조	수산자원보호구역
37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50조	지구단위계획구역
38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51조제1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39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51조제3항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40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63조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4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66조	개발밀도관리구역
4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67조	기반시설부담구역
43	「군사시설보호법」제4조제1항	군사시설보호구역
44	「군사시설보호법」제4조제4항제1호가목	통제보호구역

연번	근거법률	지역·지구 등 명칭
45	「군사시설보호법」 제4조제4항제1호나목	제한보호구역
46	「군사시설보호법」 제12조제3항	대공방어협조구역
47	「군용전기통신법」 제9조	특별보호구역
48	「군용항공기지법」 제4조	비행안전구역
49	「군용항공기지법」 제4조	헬기전용작전기지의비행안전구역
50	「군용항공기지법」 제4조제1호가목	전술항공작전기지의비행안전제1구역
51	「군용항공기지법」 제4조제1호나목	전술항공작전기지의비행안전제2구역
52	「군용항공기지법」 제4조제1호다목	전술항공작전기지의비행안전제3구역
53	「군용항공기지법」 제4조제1호라목	전술항공작전기지의비행안전제4구역
54	「군용항공기지법」 제4조제1호마목	전술항공작전기지의비행안전제5구역
55	「군용항공기지법」 제4조제1호바목	전술항공작전기지의비행안전제6구역
56	「군용항공기지법」 제4조제2호가목	지원항공작전기지및예비기지의비행안전제1구역
57	「군용항공기지법」 제4조제2호나목	지원항공작전기지및예비기지의비행안전제2구역
58	「군용항공기지법」 제4조제2호다목	지원항공작전기지및예비기지의비행안전제3구역
59	「군용항공기지법」 제4조제2호라목	지원항공작전기지및예비기지의비행안전제4구역
60	「군용항공기지법」 제4조제2호마목	지원항공작전기지및예비기지의비행안전제5구역
61	「군용항공기지법」 제5조	기지보호구역
62	「군용항공기지법」 제21조의2제1항	비상활주로
63	「군용항공기지법」 제21조의2제3항제1호	비상활주로의비행안전제1구역
64	「군용항공기지법」 제21조의2제3항제2호	비상활주로의비행안전제2구역
65	「군용항공기지법」 제21조의2제3항제3호	비상활주로의비행안전제3구역
66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수변구역
67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7조	상수원보호구역
68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5조	기업도시개발구역
69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수변구역
70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7조	상수원보호구역
71	「농지법」 제30조제1항	농업진흥지역
72	「농지법」 제30조제2항제1호	농업진흥구역
73	「농지법」 제30조제2항제2호	농업보호구역
74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 제4조	연구개발특구
75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 제35조제1항제1호	주거구역
76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 제35조제1항제2호	상업구역
77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 제35조제1항제3호	녹지구역
78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 제35조제1항제4호	교육·연구및사업화시설구역
79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 제35조제1항제5호	산업시설구역
80	「도로법」 제25조	도로구역

연번	근거법률	지역·지구 등 명칭
81	「도로법」제50조	접도구역
82	「도로법」제50조의2	입체적도로구역
83	「도로법」제50조의3	도로보전입체구역
84	「도시개발법」제3조	도시개발구역
85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4조	정비구역
86	「독도등도서지역의생태계보전에관한특별법」제4조	특정도서
87	「독도등도서지역의생태계보전에관한특별법」제12조의3	시·도특정도서
88	「문화예술진흥법」제10조의2	문화지구
89	「문화재보호법」제2조제2항제1호	국가지정문화재구역
90	「문화재보호법」제8조	보호구역
91	「문화재보호법」제13조	가지정문화재구역
92	「문화재보호법」제42조	등록문화재구역
93	「문화재보호법」제55조제1항	시·도지정문화재구역
94	「문화재보호법」제55조제2항	문화재자료구역
95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제6조제2항	백두대간보호지역
96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제6조제2항제1호	핵심구역
97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제6조제2항제2호	완충구역
98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제17조	벤처기업전용단지
99	「사방사업법」제4조	사방지
100	「산림법」제31조	자연휴양림구역
101	「산림법」제49조	채종림구역
102	「산림법」제56조	보안림구역
103	「산림법」제67조	산림유전자원보호림구역
104	「산림법」제67조	시험림구역
105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제6조	국가산업단지
106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제7조	일반지방산업단지
107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제7조의2	도시첨단산업단지
108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제8조	농공단지
109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제2조제2호	과밀억제지역
110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제2조제3호	성장관리지역
111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제2조제4호	자연보전지역
112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제35조	특별유치업종을위한지역
113	「산지관리법」제4조제1항제1호	보전산지
114	「산지관리법」제4조제1항제1호가목	임업용산지
115	「산지관리법」제4조제1항제1호나목	공익용산지
116	「산지관리법」제9조	산지전용제한지역
117	「산지관리법」제28조	채석허가제한지역
118	「산지관리법」제33조	토사채취허가제한지역
119	「소하천정비법」제2조제2호	소하천구역
120	「소하천정비법」제4조	소하천예정지
121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제1항제1호	과밀억제권역
122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제1항제2호	성장관리권역
123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제1항제3호	자연보전권역
124	「수도법」제5조	상수원보호구역
125	「수목원조성및진흥에관한법률」제19조	국립수목원완충지역
126	「수질환경보전법」제10조제6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연번	근거법률	지역·지구 등 명칭
127	「습지보전법」 제8조제1항	습지보호지역
128	「습지보전법」 제8조제1항	습지주변관리지역
129	「습지보전법」 제8조제2항	습지개선지역
130	「신항만건설촉진법」 제5조	신항만건설예정지역
131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위한특별법 제2조제2호	예정지역
132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위한특별법 제2조제3호	주변지역
133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위한특별법 제8조	개발행위허가및건축허가제한지역
134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7조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
135	「야생동식물보호법」 제33조	시도야생동식물보호구역
136	「야생동식물보호법」 제33조	야생동식물보호구역
137	「어촌·어항법」 제17조	어항구역
138	「연안관리법」 제2조제3호	연안육역
139	「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수변구역
140	「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7조	상수원보호구역
141	「온천법」 제3조	온천원보호지구
142	「온천법」 제4조	온천공보호구역
143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5조	유통단지
144	「자연공원법」 제4조	국립공원
145	「자연공원법」 제4조	도립공원
146	「자연공원법」 제4조	군립공원
147	「자연공원법」 제18조제1항제1호	공원자연보존지구
148	「자연공원법」 제18조제1항제2호	공원자연환경지구
149	「자연공원법」 제18조제1항제3호	공원자연마을지구
150	「자연공원법」 제18조제1항제4호	공원밀집마을지구
151	「자연공원법」 제18조제1항제5호	공원집단지설지구
152	「자연공원법」 제25조	공원보호구역
153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제1항	생태·경관보전지역
154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제2항	생태·경관핵심보전구역
155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제2항	생태·경관완충보전구역
156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제2항	생태·경관전이보전구역
157	「자연환경보전법」 제22조	자연유보지역
158	「자연환경보전법」 제23조	시·도생태·경관보전지역
159	「자연환경보전법」 제39조	자연휴식지
160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전원개발사업구역
161	「전원개발촉진법」 제11조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
162	「전통사찰보존법」 제2조제6호	전통사찰보존구역
163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27조	절대보전지역
164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28조	상대보전지역
165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29조제1항	관리보전지역
166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29조제2항	지하수자원보전지구
167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29조제2항	생태계보전지구
168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29조제2항	경관보전지구
169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33조제8항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
170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44조	자유무역지역
171	「주차장법」 제12조제6항	노외주차장설치제한지역
172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9조	개발촉진지구

연번	근거법률	지역·지구 등 명칭
173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제26조의3	특정지역
174	「지역특화발전특구에대한규제특별법」제9조	지역특화발전특구
175	「지하수법」제12조	지하수보전구역
176	「철도안전법」제45조	철도보호지구
177	「청소년활동진흥법」제47조	청소년수련지구
178	「초지법」제5조	초지
179	「택지개발촉진법」제3조	택지개발예정지구
180	「토양환경보전법」제17조	토양보전대책지역
181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제10조	폐기물처리시설입지
182	「하천법」제2조제1항제2호	하천구역
183	「하천법」제9조	하천예정지
184	「하천법」제10조	연안구역
185	「학교보건법」제5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186	「한강수계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제4조	수변구역
187	「항공법」제2조제7호	공항구역
188	「항공법」제2조제11호	진입표면구역
189	「항공법」제2조제13호	수평표면구역
190	「항공법」제2조제14호	원추표면구역
191	「항공법」제2조제15호	전이표면구역
192	「항공법」제107조	공항소음피해지역
193	「항공법」제107조	공항소음피해예상지역
194	「항만법」제2조제4호	항만구역
195	「항만법」제2조제5호	입항구역
196	「항만법」제36조	항만배후단지
197	「항만법」제49조제1항	입항지역
198	「해군기지법」제3조제1항	해군기지구역(육상구역)
199	「해군기지법」제3조제1항	통제보호구역
200	「해군기지법」제3조제1항	제한보호구역
201	「해양오염방지법」제4조의4제1항	환경보전해역
202	「해양오염방지법」제4조의4제2항	특별관리해역
203	「환경정책기본법」제22조	특별대책지역

부록 7. 우리나라 산업단지 지정현황

2006년 6월말 현재

번호	시도	시군구	단지명	단지코드	유형	지정면적 (단위:m ²)	지정일	비 고
1	부산	해운대구	센텀시티(Centum City)	226040	지방	1,178,066	1997-08-01	
2		사하구	신평·장림지방산업단지	226030	지방	2,845,744	1986-07-19	
3		강서구	명지·녹산국가단지	126010	국가	10,486,768	1989-10-20	
4			명지·녹산(녹산지구)	126011	국가	8,643,890	1989-10-20	
5			명지·녹산(명지지구)	126012	국가	1,842,878	1989-10-20	
6			부산과학지방산업단지	226010	지방	1,972,170	1991-12-21	
7		기장군	신호지방산업단지	226020	지방	3,121,761	1994-01-01	
8			정관지방산업단지	226060	지방	1,203,926	2001-10-25	
9			기룡지방산업단지	226070	지방	83,841	2005-11-02	
10			장안일반지방산업단지	226080	지방	1,322,800	2005-11-16	
11			정관농공단지	326010	농공	248,669	1987-02-27	
12	인천	남구	인천기계산업단지	228020	지방	350,185	1967-11-23	
13			인천지방산업단지	228030	지방	1,136,000	1973-04-01	
14		연수구	송도지식정보산업단지	228060	지방	2,655,143	2000-09-18	
15		남동구	남동국가산업단지	128010	국가	9,573,978	1980-09-02	
16		서구	한국수출(주안지구)	111014	국가	1,136,000	1969-08-05	
17			인천서부산업단지	228040	지방	938,625	1992-07-29	
18			청라1지구지방산업단지	228050	지방	194,316	1997-08-06	
19		강화군	강화하점지방산업단지	228010	지방	58,688	1993-06-16	
20		울산	북구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131020	국가	48,055,000	1975-06-23
21	매곡지방산업단지			231010	지방	558,380	2000-10-09	
22	모듈화일반지방산업단지			231020	지방	840,940	2005-03-17	
23	달천농공단지			331010	농공	289,860	1997-03-11	
24	울주군		온산국가산업단지	131010	국가	24,995,807	1974-04-01	
25			신일반지방산업단지	231030	지방	2,490,512	2005-06-09	
26			길천일반지방산업단지	231040	지방	579,910	2005-08-18	
27			두동농공단지	331020	농공	69,600	1993-12-16	
28			두서농공단지	331030	농공	122,650	1990-02-02	
29			상북농공단지	331040	농공	138,550	1986-12-08	

번호	시도	시군구	단지명	단지코드	유형	지정면적 (단위:m ²)	지정일	비 고	
30	경기	평택시	아산국가산업단지	141020	국가	103,213,000	1979-12-14		
31			평택송탄지방산업단지	241090	지방	1,086,289	1991-07-31		
32			어연한산지방산업단지	241310	지방	689,508	1993-12-18		
33			장당지방산업단지	241320	지방	149,718	1995-02-20		
34			평택지방산업단지	241330	지방	534,798	1991-11-30		
35			추팔지방산업단지	241340	지방	609,999	1993-11-12		
36			칠괴지방산업단지	241350	지방	641,275	1995-03-04		
37			현곡일반지방산업단지	241360	지방	727,668	1993-12-28		
38			진위지방산업단지	241590	지방	499,254	2004-09-17		
39			오성지방산업단지	241650	지방	600,002	2005-11-07		
40			안산시	반월특수(반월지구)	141012	국가	59,199,588	1977-04-22	
41				반월도금지방산업단지	241100	지방	136,829	1988-02-16	
42			시흥시	반월특수(시화지구)	141011	국가	172,184,000	1986-09-27	
43		김포시	대벽지방산업단지	241020	지방	59,970	1996-12-02	해제	
44			상마지방산업단지	241030	지방	78,737	1996-09-12		
45			율생지방산업단지	241040	지방	48,758	1995-06-21		
46			학운지방산업단지	241050	지방	55,628	1993-06-17		
47			양촌지방산업단지	241580	지방	1,681,096	2004-09-15		
48			김포항공지방산업단지	241640	지방	295,000	2005-11-07		
49		화성시	장안첨단지방산업단지(1단지)	241390	지방	604,000	1995-11-28		
50			마도지방산업단지	241400	지방	942,000	1994-05-17		
51			발안지방산업단지	241410	지방	1,835,266	1997-08-23		
52			화성지방산업단지	241420	지방	970,880	1997-11-13		
53			향남제약지방산업단지	241430	지방	648,214	1985-05-14		
54			화남지방산업단지	241480	지방	207,614	2002-06-26		
55			장안첨단지방산업단지(2단지)	241620	지방	614,859	2005-03-31		
56		강원	강릉시	강릉과학일반지방산업단지	242010	지방	1,690,217	1993-12-15	
57				강릉중소지방산업단지	242020	지방	163,745	1980-04-05	
58				주문진농공단지	342010	농공	133,555	1988-08-16	
59			동해시	북평국가산업단지	142010	국가	4,030,000	1975-12-22	
60			속초시	대포농공단지	342040	농공	103,450	1989-12-30	
61			삼척시	근덕농공단지	342020	농공	130,414	1989-01-30	
62			고성군	향목농공단지	342110	농공	34,323	1987-07-01	
63			양양군	포월농공단지	342120	농공	111,193	1991-11-12	

번호	시도	시군구	단지명	단지코드	유형	지정면적 (단위:m ²)	지정일	비 고
64	충남	보령시	고정국가산업단지	144010	국가	4,749,253	1979-04-09	
65			관창지방산업단지	244030	지방	2,442,223	1991-01-13	
66			웅천석재농공단지	344100	농공	149,968	1995-12-30	
67			요암농공단지	344110	농공	102,359	1990-01-09	
68			웅천농공단지	344120	농공	228,946	1990-08-21	
69			주산농공단지	344130	농공	154,188	1992-02-06	
70			주포농공단지	344140	농공	171,571	1989-12-31	
71			아산시	탕정테크노컴플렉스지방산업단지	244070	지방	2,467,449	1995-12-22
72		인주지방산업단지		244080	지방	3,427,474	1993-06-02	
73		탕정제2일반지방산업단지		244230	지방	2,113,759	2004-07-30	
74		둔포 전자·정보 집적화 단지		244240	지방	2,372,000	2006-03-23	
75		둔포농공단지		344180	농공	76,056	1987-09-21	
76		득산농공단지		344190	농공	214,525	1988-07-07	
77		배미농공단지		344200	농공	75,041	1988-09-05	
78		신인농공단지		344210	농공	58,843	1990-02-12	
79		신창농공단지		344220	농공	56,572	1987-08-20	
80		영인농공단지		344230	농공	146,772	1987-09-23	
81		탕정농공단지		344240	농공	95,090	1986-12-15	
82		서산시		대죽자원비축산업단지	144020	국가	914,733	1997-03-26
83			서산지방산업단지	244040	지방	3,927,738	1997-01-24	
84			대산지방산업단지	2440500	지방	1,660,000	1998-03-13	해제
85			대죽지방산업단지	244060	지방	2,101,470	1991-12-06	
86			고북농공단지	344150	농공	124,631	1990-02-03	
87			성연농공단지	344160	농공	776,506	1989-11-01	
88			수석농공단지	344170	농공	230,612	1992-02-26	
89			서산자동차전문(명천농공)단지	344650	농공	143,982	2003-07-25	
90		서천군	군·장국가(장항지구)	145012	국가	14,711,600	1989-08-10	
91			장항농공단지	344400	농공	298,821	1988-12-30	
92			종천농공단지	344410	농공	251,611	1990-01-03	
93			장항원수제2농공단지	344590	농공	150,670	2001-09-29	
94		홍성군	광천농공단지	344560	농공	144,652	1989-11-24	
95			구항농공단지	344570	농공	153,898	1988-11-28	
96			은하농공단지	344580	농공	109,878	1998-12-28	
97			은하전문농공단지	344660	농공	94,901	2003-02-27	
98			결성농공단지	344680	농공	139,207	2003-09-15	
99		태안군	태안농공단지	344550	농공	106,000	1990-12-30	
100		당진군	석문국가산업단지	144030	국가	12,083,570	1991-12-31	
101			송산일반지방산업단지	244250	지방	3,173,760	2006-01-23	
102			당진농공단지	344310	농공	85,037	1987-12-29	
103			면천농공단지	344320	농공	134,938	1989-11-15	
104			석문농공단지	344330	농공	214,600	1990-07-25	
105			신평농공단지	344340	농공	131,191	1990-01-24	
106			합덕농공단지	344350	농공	106,212	1989-11-15	
107			송악농공단지	344600	농공	170,923	2001-07-12	
108			한진농공단지	344690	농공	143,697	2002-10-14	

번호	시도	시군구	단지명	단지코드	유형	지정면적 (단위:m ²)	지정일	비 고	
109	전북	군산시	군·장국가산업단지	145010	국가	65,201,317	1989-08-10		
110			군·장국가(군산지구)	145011	국가	50,489,717	1989-08-10		
111			군산국가산업단지	145020	국가	13,702,000	1987-08-17		
112			군산지방산업단지	245010	지방	5,641,220	1976-03-12		
113			서수농공단지	345010	농공	286,728	1989-10-26		
114			성산농공단지	345020	농공	141,541	1987-07-01		
115			옥구농공단지	345030	농공	140,093	1993-10-29		
116			김제시	김제순동지방산업단지	245020	지방	261,075	1995-07-08	
117		만경농공단지		345040	농공	216,000	1990-01-24		
118		봉황농공단지		345050	농공	233,082	1989-12-01		
119		서흥농공단지		345060	농공	279,999	1988-04-20		
120		월촌농공단지		345070	농공	145,199	1991-10-21		
121		황산농공단지		345080	농공	73,000	1986-11-17		
122		대동전문농공단지		345350	농공	330,302	2003-04-14		
123		고창군	고수농공단지	345200	농공	104,713	1989-07-27		
124			아산농공단지	345210	농공	139,894	1991-10-21		
125		부안군	부안농공단지	345230	농공	148,524	1996-07-26		
126			줄포농공단지	345240	농공	89,420	1989-01-07		
127		전남	목포시	삼진지방산업단지	246040	지방	212,277	1995-04-25	
128				산정농공단지	346040	농공	502,003	1987-10-06	
129			여수시	삼일자원비축단지	146030	국가	4,088,069	1991-08-03	
130				여수국가산업단지	146040	국가	60,180,946	1974-04-01	
131				여수오천지방산업단지	246070	지방	222,040	1979-06-14	
132				울촌제1지방산업단지	246080	지방	9,161,213	1992-05-13	
133				울촌제2지방산업단지	246090	지방	13,322,000	1997-10-09	
134				화양농공단지	346190	농공	119,307	1990-12-28	
135	순천시		순천지방산업단지	246050	지방	582,921	1974-05-18		
136			해룡지방산업단지	246060	지방	987,000	1998-04-23		
137			주암농공단지	346050	농공	105,644	1989-12-30		
138	광양시		광양국가산업단지	146010	국가	96,405,000	1982-04-02		
139	고흥군		풍양농공단지	346070	농공	54,696	1989-06-08		
140	보성군		미력농공단지	346170	농공	106,548	1991-01-12		
141			별교농공단지	346180	농공	145,276	1988-04-19		
142	장흥군		장평농공단지	346270	농공	119,283	1990-12-26		
143	강진군		마량농공단지	346060	농공	56,205	1988-01-27		
144	해남군		옥천농공단지	346310	농공	101,805	1989-07-14		

번호	시도	시군구	단지명	단지코드	유형	지정면적 (단위:m ²)	지정일	비 고	
145	전남	영암군	대불국가산업단지	146020	국가	20,887,000	1988-07-12		
146			삼호지방산업단지	246100	지방	2,913,841	1991-04-30		
147			군서농공단지	346200	농공	134,510	1990-07-03		
148			신북농공단지	346220	농공	132,232	1986-08-02		
149		무안군	삼향농공단지	346140	농공	220,160	1987-04-03		
150			일로농공단지	346150	농공	164,112	1990-12-26		
151			청계농공단지	346160	농공	314,194	1989-12-15		
152			청계2농공단지	346360	농공	306,533	2005-04-16		
153		함평군	학교농공단지	346290	농공	165,289	1984-09-07		
154			함평농공단지	346300	농공	103,164	1990-07-13		
155		영광군	군서농공단지	346210	농공	117,722	1990-07-03		
156		완도군	완도농공단지	346230	농공	336,416	1993-07-19		
157			죽청농공단지	346240	농공	223,305	1995-04-26		
158		진도군	고군농공단지	346280	농공	94,169	1993-12-28		
159		경북	포항시	포항국가산업단지	147040	국가	37,868,000	1975-06-23	
160				포항4일반지방산업단지	247180	지방	2,055,183	2002-01-24	
161				영일만항배후일반지방산업단지	247270	지방	980,771	2004-01-29	
162				영일만항배후2일반지방산업단지	247280	지방	762,410	2005-10-17	
163	청하농공단지			347350	농공	196,079	1989-11-21		
164	경주시		월성원전단지	147030	국가	4,134,393	1976-12-31		
165			건천제1지방산업단지	247030	지방	147,261	1993-07-28		
166			건천제2지방산업단지	247040	지방	236,771	1995-06-16		
167			냉천지방산업단지	247050	지방	215,802	1997-08-18		
168			석계지방산업단지	247060	지방	146,000	1998-01-12		
169			외동지방산업단지	247070	지방	141,644	1993-07-28		
170			화산지방산업단지	247080	지방	149,500	1998-07-06		
171			외동2일반지방산업단지	247220	지방	606,767	2003-12-08		
172			천북일반지방산업단지	247240	지방	991,740	2004-07-08		
173			건천농공단지	347010	농공	101,973	1988-04-18		
174			내남농공단지	347020	농공	89,927	1988-12-30		
175			서면농공단지	347030	농공	112,737	1993-01-01		
176			안강농공단지	347040	농공	149,650	1987-06-05		
177			외동농공단지	347050	농공	109,117	1987-05-30		
178	영덕군	영덕농공단지	347450	농공	145,846	1996-10-14			
179	울진군	울진농공단지	347470	농공	125,942	1991-09-13			

번호	시도	시군구	단지명	단지코드	유형	지정면적 (단위:m ²)	지정일	비 고	
180	경남	창원시	창원국가산업단지	148060	국가	52,595,000	1974-04-01		
181		마산시	진북일반지방산업단지	248110	지방	891,914	2004-04-01		
182			경남지능형융합산업도시첨단산업단지	248130	지방	143,930	2005-11-10		
183			진북농공단지	348070	농공	133,170	1989-12-15		
184		진해시	진해국가산업단지	148040	국가	1,312,810	1982-08-02		
185			마천지방산업단지	248070	지방	611,175	1992-08-22		
186			죽곡지방산업단지	248150	지방	138,624	2006-04-06		
187			이동농공단지	348200	농공	52,998	1987-06-09		
188		통영시	안정국가산업단지	148010	국가	2,876,617	1974-04-01		
189		사천시	진사일반지방산업단지	248020	지방	2,554,528	1991-12-28		
190			진사일반지방산업단지(2단지)	248030	지방	1,608,128	1997-01-17		
191			곤양농공단지	348120	농공	84,092	1988-11-28		
192			사남농공단지	348130	농공	567,762	1989-01-10		
193			송포농공단지	348140	농공	104,391	1989-12-15		
194			두량전문농공단지	348520	농공	117,036	2004-06-10		
195			거제시	옥포국가산업단지	148020	국가	6,167,000	1974-04-01	
196		죽도국가산업단지		148030	국가	3,568,000	1974-04-01		
197		지세포자원비축단지		148050	국가	2,930,000	1974-09-20		
198		오비일반지방산업단지		248100	지방	194,277	2003-10-16		
199		고성군	율대농공단지	348250	농공	110,220	1988-05-20		
200			회화농공단지	348260	농공	88,833	1992-04-27		
201		남해군	고현농공단지	348270	농공	57,270	1987-09-15		
202		하동군	고전농공단지	348360	농공	83,004	1988-12-02		
203			적량농공단지	348370	농공	74,768	1990-05-01		
204		제주	제주시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149010	국가	1,095,900	2004-10-23	
205			북제주군	구좌농공단지	349020	농공	67,481	1988-08-03	
206				금능농공단지	349030	농공	130,110	1992-11-11	
207	남제주군		대정농공단지	349010	농공	115,273	1990-01-12		

부록 8. 현행연안관리법과 하천법의 비교

비교항목	연안관리법	하천법
목적	- 연안의 효율적인 보전·이용 및 개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연안환경을 보전하고 연안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도모하여 연안을 쾌적하고 풍요로운 삶의 터전으로 조성하는 것	- 하천의 유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하천사용의 이익증진과 하천의 자연친화적인 정비·보전을 위하여 하천의 지정·관리·사용 및 보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하천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
용어정의 등	- 연안, 연안해역, 연안육역, 연안정비사업, 실태조사	- 하천, 하천구역, 하천부속물, 하천공사, 유역조사, 하천의 구분(국가하천, 지방1급, 지방2급)
귀속 및 권리승계	- 공유수면관리법에서 정하고 있으나 육역에 대해서는 규정없음	- 하천의 국유선언, 권리승계조항 포함
국가계획	- 연안통합관리계획(년한없음, 반의무) - 연안정비계획(10년, 반의무)	- 수자원장기종합계획(10년, 의무) - 하천유역종합치수계획(10년, 의무, 수자원계획범위에서 수립, 하천정비기본계획의 기본)
하위계획	- 연안관리지역계획(년한없음, 선택조항)	- 하천정비기본계획(10년, 의무)
계획준수의무	-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연안에서 연안의 보전·이용 및 개발에 관한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합계획 및 지역계획에 적합하게 하여야 함 - 공유수면관리법에서 별칙을 규정하고 있으나 연안육역의 경우 관련조항이 없음 - 연안정비사업관련 과태료규정은 포함되어 있음	- 하천구역, 하천예정지, 연안구역(대통령령으로 정함. 통상의 홍수가 미치는 구역 또는 하천 및 하천부속물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의 구역으로 하되, 하천구역의 경계로부터 50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관리청이 정함. 다만, 하천유역종합치수계획에서 정한 저류지가 필요한 지역에 연안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하천구역의 경계로부터 500미터를 초과하여 지정할 수 있음)에 대한 별칙 및 과태료조항을 두고 있음

비교항목	연안관리법	하천법
타계획과의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을 수립·변경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계획이 수립되어 있거나 용도지역등이 지정되어 있는 연안육역(환경보전관련 계획이 수립되어 있거나 용도지역등이 지정되어 있는 지역에 있어서는 연안해역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당해계획 또는 용도지역등의 범위안에서 이를 수립·변경하여야 함 - 연안환경을 보전하고 연안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계획이나 지정된 용도지역등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음 -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연안육역(환경보전관련 계획의 수립 또는 용도지역등의 지정 대상이 되는 지역에 있어서는 연안해역을 포함한다)에 대한 계획을 수립·변경하거나 용도지역등을 지정·변경·해제한 경우 통합계획 또는 지역계획에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법률에 의하여 하천구역안에서 권리를 설정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리청과 협의하거나 그 승인을 얻어야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 법에 의하여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업을 시행하는 행정청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관리청과 협의하거나 그 승인을 얻어야 함
관리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리청에 대한 규정이 없고 공유수면관리법에서 공유수면에 대해서 정하고 있으나 연안육역의 경우 관리청 규정이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하천은 건설교통부장관이 관리함 - 지방1급하천 및 지방2급하천은 당해 관할구역의 시·도지사가 관리함
실시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천정비시행계획
관련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안의 실태에 관한 기초조사, 보완조사, 정밀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역조사, 하천범람상황조사, 수자원자료정보화

비교항목	연안관리법	하천법
토지수용및 비용부담	- 연안정비사업의 경우 포함	- 하천에 관한 비용과 수익에 대한 조항 포함
심의 및 조정절차	- 중앙연안관리심의회, 지역연안관리심의회	- 중앙하천관리위원회, 지방하천관리위원회
민간참여	- 명예연안관리인 제도	- 규정없음
점검 등	- 통합계획 및 지역계획의 주기적 점검조항 포함	- 관리청감독, 하천감시 등 조항포함
금지행위	- 공유수면관리법에서 정하고 있으나 연안육역에 대해서는 관련 조항 없음	- 하천예정지 및 연안구역(공작물의 신축 또는 개축,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기타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재식의 경우 관리청 허가 필요) - 하천에 대한 금지행위(하천유수의 저류 또는 그 방향을 변경하는 행위, 하천의 부속물을 손괴하거나 손괴할 우려가 있는 행위, 하천정비기본계획으로 정하여지지 아니한 하천의 복개행위, 하천의 이용목적 및 수질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정지역에서의 야영, 취사와 떡밥·어분 등 미끼를 사용하여 하천을 오염시키는 낚시행위 등)
이용금지규정	- 규정없음	- 하천공사, 하천보전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공익을 위한 처분	- 공유수면관리법에서 정하고 있으나 육역의 경우는 관련 조항 없음	- 하천수량 부족 또는 하천상황 변경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 - 하천공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공익에 대한 피해를 제거하거나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비교항목	연안관리법	하천법
구역지정	- 연안에 대한 정의 조항에 포함	- 하천 : 국가하천 및 지방1급하천(건교부장관), 지방2급하천(시도지사) - 하천구역, 하천예정지, 연안구역 지정
관리방안	- 규정없음	- 하천대장
기타사업	- 규정없음	- 홍수예보시설설치계획, 홍수예보실시
잉여공간관리	- 공유수면관리법에서 바닷가로 관리되고 있으나, 별도의 이용방안에 대해서는 정하고 있지 않음	- 관리청은 하천공사 또는 홍수 그 밖의 자연현상으로 하천의 유로가 변경되어 하천구역에서 제외된 토지와 그 구역안의 하천부속물(폐천부지등)은 이를 치수 및 하천환경보전 등의 목적에 우선적으로 활용하여야 함
인허가의제	- 연안정비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 :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위험물안전관리법, 농어촌정비법, 농지법, 사방사업법, 산지관리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동·식물보호법, 초지법, 수산업법, 전기사업법, 도시계획법, 하수도법, 도로법, 사도법, 공유수면관리법, 공유수면매립법, 소하천정비법, 골재채취법,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 홍수예보시설설치계획 수립·고시한 경우, 하천정비시행계획 수립·고시한 경우, 하천공사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경우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도로법, 사도법, 골재채취법, 건축법, 지하수법,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관리법, 농지법, 농어촌정비법, 초지법, 산지관리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사방사업법, 자연공원법, 수도법, 하수도법, 광업법, 군사시설보호법, 장사등에관한법률

부록 9 일본 해양개발추진계획

2006년 3월 해양개발관계성청 연락회의

서 론

최근 경제의 세계화, 과학기술의 진전, 국가 상호 간의 관계와 교통·통상로의 복잡화 등에 따른 해양 이용 형태의 다양화, 지구 전체의 환경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고양 등, 해양을 둘러싼 사회 정세에는 커다란 변화가 생기고 있다. 또한 1994년 11월 UN 해양법 조약이 발효되고 1996년 6월에는 일본 역시 동 조약을 체결하는 등, 해양의 국제적 질서가 새로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배경으로 환경, 식료, 방재, 자원 및 에너지 등의 각 분야의 과제에 일본이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 2001년 4월에 문부 과학 대신으로부터 '장기적 전망에 입각한 해양 개발의 기본적 구상 및 추진 방안에 대하여'라는 자문을 받아, 과학 기술 학술 심의회 해양 개발 분과회를 중심으로, 향후 10년 정도를 내다 본 일본 전체의 해양 정책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져, 2002년 8월에 '21세기 초두 일본의 해양 정책'이라는 답신이 정리되었다. 답신에서는 해양의 혜택을 누리는 데에만 중점을 두어 온 지금까지의 정책에서, '지속 가능한 해양 이용'을 지향하는 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해양을 지키자', '해양을 이용하자', '해양을 알자'는 균형 잡힌 정책으로 전환하는 것, 국제적 시야에서 전략적인 해양 정책을 실시하는 것, 종합적인 시점에서 일본의 해양 정책을 입안하고 관련 성청이 연락을 취하며 시책을 실시하는 것을 기본적인 정책 입안의 골격으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은 흐름에 따라, 2002년 8월 20일 개최된 해양 개발 관계 성청 연락회의에서는 연락회의를 활성화하고 성청 간의 한층 더 긴밀한 시책 연계를 도모하기 위해, 그 전까지 매년 7월 경 해당 연도의 해양 개발 추진 계획을 취합하던 것을 정부 예산안을 바탕으로 연초에 차년도 추진 계획을 책정하게 되었다. 이 추진 계획에 따라, 관련 기관이 더욱 긴밀한 연계를 취하여 종합적인 해양 시책 추진에 기여하도록 한다.

제 1부 기본 추진 방안 및 실시 계획

해양은 방대한 양의 생물자원, 광물자원 및 석유 등의 에너지 자원을 갖고 있을 뿐 아니라, 광대한 공간이 있고 조류, 파도 등의 무한한 자연 에너지가 존재하는 곳이다. 또한 해양은 아름다운 경관과 친수 공간을 갖고 있으며, 국민 가치관의 다양화에 따라 정신적인 충족을 추구하는 의식이 높아지는 가운데, 휴식의 장, 레크리에이션의 장을 제공하는 등 다면적인 가치를 갖고 있다. 나아가 근년의 과학기술 진보는 해양의 자원과 공간에 대한 새로운 이용 방법을 낳고, 그 결과 해양의 개발 이용이 사회 경제 발전에 공헌하는 정도는 최근 비약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이처럼 21세기 일본의 발전에 있어 해양 개발이 하는 역할은 점점 커지고 있다.

한편 최근의 인구 증가와 경제 사회 활동의 확대 등에 따른 환경부하의 증대는 해양오염을 비롯해 해양 생태계 교란과 생물자원의 고갈 등을 일으키고 있다. 또한 지구 온난화 같은 국제적인 환경 문제가 세계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지표의 약 70%를 차지하는 해양은 이와 같은 문제들이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국제적인 연계 하에 과학에 기초해 해양과 지구의 변동을 예측하고 효과적인 대책을 시행하기 위한 정책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UN 해양법 조약이 1994년 11월에 발효되었고, 일본 역시 동 조약 및 동 조약 제 11부의 실시 협정을 1996년 6월에 체결했다. UN 해양법 조약은 국제사회의 안정된 해양의 법적 질서 확립에 기여할 뿐 아니라, 해양에 의존하는 부분이 큰 해양 국가인 일본의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국익에 따르는 것이다.

2002년 8월 과학기술·학술 심의회의 답신인 '장기적 전망에 입각한 해양 개발의 기본적 구상 및 추진 방안에 대하여'에서는, 지구 전체의 환경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고양, 해양 이용의 다양화, UN 해양법 조약에서 볼 수 있는 국제적 틀의 확립 등 해양을 둘러싼 사회 정세의 변화로부터 '지속 가능한 해양 이용의 실현'을 가장 중요한 해양 정책의 기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기본적인 해양 정책의 방향으로 다음의 세 가지를 제시했다.

- 해양의 혜택을 누리는 데에 주안점을 두었던 기존의 정책에서 '해양을 지키자', '해양을 이용하자', '해양을 알자'라는 균형 잡힌 정책으로 전환함
- 일본의 국제적 공헌과 국익 간의 균형을 피하면서 국제적 시야에 서서 전략적으로 해양 정책을 실시함
- 종합적인 시점에서 일본의 해양 정책을 입안하고 관련 성청이 연계하며 시책을 실시함

이와 같은 기본 원칙을 바탕으로, 일본의 해양 관련 각 분야의 기본적 추진 방안 및 2006년도 실시계획을 이하와 같이 책정한다.

I. 해양 보전

1. 해양 환경의 유지, 회복 및 환경을 배려하기 위한 대처 노력

(1) 기본 추진 방안

건전한 해양 환경을 구현하고, 아름답고 안전하며 살아 있는 바다를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기 위해서는, 해양 환경 문제의 근본적 문제인 인간 활동에 따른 육역, 해역, 대기로부터의 환경 부하를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특히 폐쇄성 해역에서는 수질 오탁에 관한 환경 기준의 달성 현황이 아직도 낮은 수준으로, 앞으로도 대책을 추진해 갈 필요가 있다.

해양 오염의 발생은 정화 능력을 넘어선 오염 물질 등이 해양으로 유입되는 것이 주된 원인이다. 따라서 육역으로부터의 오염 물질 유입의 규제, 유입 부하를 줄이기 위한 시설 정비 등을 추진하면서, 국제적인 기준 틀에 기초해 선박, 해양 투기 등에 기인하는 해양 오염 방지 대책 추진을 위해 노력한다. 특히 폐기물 등의 해양 투입 처리에 대해 규제를 강화할 목적으로 채택된 '1972년 폐기물 및 기타 물질 투기에 의한 해양 오염 방지 협약의 1996년 의정서'(이하 '런던 협약 의정서')가 2006년 3월에 발효함에 따라, 조기 체결을 위해 국내 체제를 확립한다. 또한 해양 정화를 위한 시책과 이를 위한 각종 기술 개발에 대해서는, 자연 에너지, 해양 자체의 자정 능력 등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원칙하에 그 추진을 위해 노력한다.

나아가 인공 화학 물질의 유입, 기름 유출 사고, 외래 생물종의 침입 등은 생태계에 큰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으며,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추진한다.

이와 같은 해양 오염 방지 대책을 추진하면서, 아직 규명되지 않은 점이 많은 해양 환경 문제에 관한 과학적 규명을 목표로 하는 조사 연구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해양 환경 문제는 한 나라만의 대처로는 불충분하여 국제적인 대처 노력이 필요한 과제이며, 국제적 협력을 통해 조사 연구, 기술 개발, 규제 등을 추진해 간다.

해변, 갯벌, 조장(藻場, 역주: submarine forest), 산호초 등은 생물종이 풍부하며, 이 생물들에 의한 이산화탄소, 질소, 인 등의 대사가 해양의 원활한 물질 순환과 정화에 중요한 역

할을 함과 동시에 산란과 치어 생육의 장으로서 높은 생물 생산력을 지닌다. 나아가 자연 경승지, 야생 생물의 생육지로서 국민의 레크리에이션, 자연 교육의 장이 되는 등, 인간 생활에 많은 편익을 주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해역 환경을 잘 유지하면서, 침식된 해변의 회복, 갯벌과 조장 등의 보전 및 재생 등을 통해 다양한 주체의 참여 하에 자연 환경의 회복, 창출을 앞으로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 간다.

또한 해역의 자연 환경 보전을 꾀하는 데 있어 필요한 기초적 데이터를 획득함과 동시에, 해역 환경이 탄산 동화 작용을 함으로써 대기 중의 온실가스 수지에 크게 관련되어 있는 해역에 대한 기초적인 데이터를 얻기 위해, 이들 해역의 생태계 규명 등 조사 연구를 추진한다.

해양이 지닌 다양한 혜택을 후세에 계승하고 해양을 지속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해양 개발을 실시할 때 해역이 가진 자정 능력과 생태계, 그리고 좋은 자연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해양 환경 보전을 최대한 배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앞으로도 연안역 개발의 다목적 이용과 각지의 개발 구상이 진전될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적절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사전 평가의 실시와 함께 해양 환경에 대한 영향의 중요성에 맞춰 개발 전후로 해양 환경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파악하고, 해양 환경 보전에 기여하기 위해 개발 전후의 데이터 수집, 관리가 체계적으로 실시되고 효율적으로 이용 가능하도록 검토한다. 또한 해양 환경 보전과 지속 가능한 해양 이용, 연안 방재 등과의 조화를 꾀하기 위해서는 해양 환경의 사회 경제적인 가치에 대한 적절한 평가가 중요하며, 사회 과학적인 관점을 포함한 다각적인 관점에서 해양 환경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기법에 대해 검토한다. 나아가 해양 자원 개발에 관해서도 새로운 해양 오염을 일으키지 않을 기술 개발을 함께 추진한다.

(2) 실시 계획

① 해양 환경의 유지 및 회복

- 폐쇄성 해역 등의 해양 환경 문제 대책

폐쇄성 해역의 수질 오탉에 관한 조사, 환경 회복 및 창조 기술의 개발과 그 효과의 검증에 관한 연구 및 폐쇄성 내만(內灣)의 환경 관리 기술에 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시행한다.

해역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해변에 부유하는 쓰레기와 기름의 회수를 계획적으로 실시한다. 또한 폐쇄성 해역의 종합적인 수질 보전 대책의 검토를 추진한다.

적조와 청조(靑潮)가 발생하고 환경 개선이 잘 되지 않는 도쿄만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만내 생태계를 포함한 자연 환경 메커니즘을 규명하고 환경 변동을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해양 단파 레이더를 이용한 만내 유동의 모니터링, 시뮬레이션 모델의 정비, 만구부 환경 관측 시설의 정비 등을 시행하면서, 환경 모니터링 조사 결과의 공유와 오염원에 대한 환경 개선 대책을 추진한다.

2001년 12월에 도시재생 프로젝트(제 3차 결정)의 '바다 재생'으로 선행적으로 도쿄만에 대한 활동이 결정되어, 이에 따라 2003년 3월에 책정된 '도쿄만 재생을 위한 행동 계획'에 기초하여 8개 도(都), 현, 시 및 관계 성청이 연계하여 갯벌, 조장, 천장(淺場, 해안에 가까운 바다의 얕은 곳) 등의 재생과 창출, 합류식 하수도의 개선, 하천의 직접 정화, 인공위성을 통한 적조 상시 감시 등, 도쿄만 재생을 위한 노력을 계속 추진한다.

또한 오사카만에 대해서도 2004년 3월에 책정된 '오사카만 재생 행동 계획'을 바탕으로 9개 부, 현, 시 및 관계 부처가 연계하여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시행한다.

나아가 다른 폐쇄성 해역에 대해서도 2004년 6월에 책정된 '국토교통성 환경 행동 계획'에 기초한 '전국 바다 재생 프로젝트'를 통해, 순차적으로 재생 행동 계획 책정 등을 위해 준비하고 있다.

- 갯벌, 조장, 산호초의 보전

개발에 의한 갯벌과 천장(淺場)의 소실은 내만(內灣) 및 연안역의 수질 악화와 생물 다양성 열화 등을 초래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남겨진 갯벌을 적절하게 보전하면서 잃어버린 갯벌의 재생과 회복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새로운 갯벌의 창출과 사라진 갯벌의 수복 기술 확립을 목표로, 갯벌 관측에 의한 정화 기능을 비롯한 갯벌의 기초적인 기능과 갯벌을 컨트롤하고 있는 환경 조건 등을 규명하고 갯벌 실험 시설과 조성 갯벌을 활용한 환경 수복 기술을 개발하면서, 끊임없이 불확실하게 변화하는 환경 조건에 대응하기 위한 순응적인 대처 방법에 대해서도 그 시행을 포함해 검토를 추진한다.

또한 갯벌 등의 수질 정화 기능을 비롯한 다양한 기능을 적절하게 파악하고 쉽게 평가하기 위한 지침을 책정한다.

조장이 대규모로 소실, 감소되는 갯녹음(백화현상)에 대해 그 원인을 알아내는 방법과 개선하기 위한 기술을 검토하면서, 갯녹음 대책의 가이드라인을 책정해 전국에 보급한다.

국제 산호초 연구·모니터링 센터를 거점으로 산호초 모니터링을 추진하고, 산호에 관한

정보를 수집, 제공한다.

또한 아열대 지역 농지에서 유출되는 세립 적토에 의해 해양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 연구를 시행한다.

나아가 해상 조건이 그 생육에 있어 불리한 해역의 수산 동식물의 증·양식 및 생육 환경의 보전과 창조를 꾀하기 위해, 산호의 증·양식 기술을 개발한다.

일본의 자연 환경에 대한 기초적인 자료 수집을 목적으로 한 조사(자연환경 보전 기초 조사)의 일환으로 천해역 생태계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계속한다.

- 유해 화학 물질 대책

'1973년의 선박에 의한 오염 방지를 위한 국제 조약에 관한 1978년 의정서(MARPOL 73/78 조약)'의 부속서 II에 기초한 미사정(未査定) 액체 물질의 적절한 사정, 잔류성 유기 오염 물질(POPs)에 의한 해양 오염 방지 대책의 검토, 폐기물 투입 처리 환경 영향 평가 조사 및 일본 주변 해양 환경 상황의 평가와 파악을 목적으로 한 생태계 보전을 포함한 종합적이고 계통적인 해양 환경 모니터링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POPs 모니터링 검토회에서 정한 모니터링 조사 기법을 바탕으로 POPs 오염 실태 조사를 전국적으로 시행한다.

폐쇄성이 높은 해역 등의 해양 오염 조사 및 서태평양, 일본 주변 해역의 해양 백그라운드(자연 방사능) 오염에 대한 관측을 지속적으로 시행한다.

나아가 내분비 교란 물질이 수산 자원에 미치는 영향의 상황 파악을 위한 조사 등, 다이옥신 같은 유해 물질의 축적 상황 파악, 어패류에서의 축적 메커니즘 규명에 기여하는 조사를 지속적으로 한다.

해양의 오염 방지 물질의 환경 리스크 평가 기법에 대한 연구 및 수산 생물에 대한 유독성 규명, 환경 보전 목표에 관한 연구를 지속한다.

항만 내 퇴적물에 축적되는 유해 화학 물질은 인간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우려되며, 합리적인 저질(底質, bottom material) 관리 기법을 제안하기 위해 화학 물질 오염의 실태 조사, 미세 입자의 거동 규명 등을 수행하고, 퇴적물 속 화학 물질 분포 예측 모델을 구축한다. 또한 항만 바닥에 퇴적되는 고농도의 다이옥신류를 포함한 저질을 제거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함과 동시에 그 준설 토사를 대량으로 처리하기 위한 기술을 개발한다.

조류, 해양 포유류 같은 야생 생물의 다이옥신 축적 현황과 인간 폭로(暴露) 실태를 조사한다.

인간의 건강과 생태계에 잠재적으로 유해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는 화학 물질이 대

기, 수질, 토양 등을 경유하여 환경 보전에 지장을 생기게 할 우려(환경 리스크)에 대한 정량적인 평가를 수행한다.

환경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미규제 물질에 대해, 문제가 드러났을 때 신속한 대처에 기여하기 위해 표준적인 분석 방법을 개발한다.

- 모래해변 소실 방지

방재 상의 기능과 함께 환경과 이용의 관점에서 유효한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갖춘 모래해변의 소실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연안 표사의 특성을 장기적으로 관측한다.

또한 토사 수지의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해 유효한 방법으로 어항, 항만과 그 주변에 퇴적된 모래를 해안침식 지대로 효과적, 효율적으로 수송, 배사(排砂)하는 샌드 바이패스 공법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 기름 유출 오염 대책

기름 유출 방제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대형 준설 겸용 기름 회수선의 정비와 배출 기름 방제 자기재(資機材)의 갱신 등을 시행한다.

또한 극동 지역의 기름 오염 대응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정보 수집 체제를 확립하고 관계 성청 간 연계를 강화하며 한국 등 이웃 국가들과의 합동 회의, 훈련을 통해 국제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보다 정도 높은 표류 예측을 수행하기 위해 리얼 타임 데이터의 내실화와 표류 예측 체제의 강화 및 파랑(波浪) 해역 등에 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한다. 특히 동해의 대규모 기름 유출 사고 시의 긴급 대응에 관한 일본, 중국, 한국 및 러시아 간 협력의 틀을 마련한 북서태평양 보전 실천 계획(NOWPAP) 지역 기름 유출 긴급 시 계획이 2004년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이를 계속 운영해 간다.

또한 대규모 기름 방제 활동을 정확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연안역 환경 보전 정보 및 자연 환경 보전, 생물 보호의 관점에서 기름 유출 사고 시에 활용할 취약 연안역도를 정비한다.

나아가 유처리제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조사, 유출된 기름 등의 해양 오염 물질을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한 항공 레이저 측량(LIDAR) 기술의 연구, 미생물에 의한 유출유 표착 해안의 환경 수복 기술에 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한다.

- 방치된 좌초선 대책

일정 선박에 보험 가입 등을 의무화하고, 무보험 선박은 입항을 금지하는 등의 제도를 도입했다(2005년 3월 1일 시행). 또한 지방 공공 단체가 어쩔 수 없이 취한 기름 방제 조치와 선박 철거에 관해 국가가 지원 조치를 시행함으로써 피해자 보호와 좋은 해양 환경의 보전과 형성을 꾀한다.

- 오타쿠 부하 감소를 위한 대처 노력

도쿄만, 이세(伊勢)만 및 세토나йка이(瀬戸内海)의 폐쇄성 해역에서는 제 6차 수질 총량 삭감 기본 방침을 책정하고, 1979년 이후 실시하고 있는 수질 총량 규제를 계속하여 오타쿠 부하를 줄인다.

오염 물질 제거 등의 해역 정화 대책 사업, 유역별 하수도 정비 종합 계획에 관한 기본 방침 책정 조사와 해양 오타쿠 부하 감소를 목적으로 하는 하수도 사업 등을 지속한다.

순시선정, 항공기를 이용하여 선박의 기름 등 불법 배출에 대한 감시 및 감독을 실시한다. 또한 공장 폐수의 불법 배출과 폐기물, 폐선 불법 투기에 대한 감시, 감독과 함께 지도 등을 통해 적절한 처리를 촉진한다.

해양 오염 방지를 위한 선박 구조 등의 개선에 관한 기술 기준 작성 및 조사 연구, 선박의 대기 오염 물질 및 온실가스 배출 감축 기술에 관한 연구, 선박 기름 유출 방지에 관한 연구, 손상된 선박 등의 예항(曳航) 기술에 관한 연구, 유해 배출 물질 감소를 위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한다.

FRP 폐선의 불법 투기, 방치된 상태의 침·폐선화 등에 대처하기 위해 FRP 선의 재활용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조사 및 검토, 지역 관계자 간 연락 조정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아열대 지역 농지의 세립 적토 유출 방지 기술 확립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다.

- 해양 정화

해양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오니 준설과 오니 복사(覆砂) 등을 시행하는 해역 환경 창조 사업, 어장 환경 보전 창조 사업을 추진하는 것 외에도, 해면에 부유하는 쓰레기와 기름을 회수하는 해양 환경 정비를 지속적으로 시행하면서, 수역 환경 개선을 위해 어항 수역 환경 보전 대책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아울러 어업 집락 배수 시설 정비를 위해 어업 집락 환경 정비 사업 등을 계속 실시한다.

어업 환경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어장의 장기적 환경 감시 조사를 실시하는 어업 환경 모니터링 조사 사업을 계속 시행한다.

해수 교환형 방파제 등의 해수 정화 기술 개발, 부착생물 및 저생생물의 유기적 제거 능력과 조석 작용 등을 이용한 해역 정화 기술의 개발을 지속적으로 수행한다.

Heterocapsa 등의 유해 플랑크톤에 의해 유발된 적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 개발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위성 데이터 등을 활용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종합적 모니터링, 평가 체제를 구축하면서 북서태평양 보전 실천 계획(NOWAP)을 추진하기 위해 도야마(富山)에 위성 데이터 수신국을 설치하고 해양 환경의 리모트 센싱 기법 개발을 실시한다.

연안 환경의 수질 악화 메커니즘의 규명 및 정화 기법에 대한 연구 개발을 추진한다.

- 해양 환경 영향 평가 기술 개발 연구

원자력 발전소 주변 주요 어장의 해양 환경 방사능 종합 평가를 계속 시행한다. 해역의 방사능 조사에 도움이 될 해양 모니터링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발한다.

나아가 광역 및 장기적 해양 환경의 변동을 관측, 예측하기 위해 해양 레이더와 부이 등을 이용한 해양 환경 평가 기법을 지속적으로 개발, 연구한다.

해수, 해저토 등의 해양 방사능 조사를 계속 시행한다.

- 연안역의 해양 보전을 위한 대처 노력

해안의 생태계 등 환경 정보를 광역 및 장기적으로 수집, 관리하기 위해 해안에 활동의 장을 갖고 있는 지역 수족관, 대학, NPO 법인, 시민 등과 협동, 연계한 조사 실시 체제와 기법에 대해 검토를 진행한다. 일반 시민들에게 해양 환경 보전 의식을 보급, 계발하기 위해 해안 청소, 표착 쓰레기 조사 등의 이벤트를 실시하고, 표착 쓰레기 조사 결과는 '쓰레기 지도'로 집계, 공표한다. 또한 지방 공공단체, NPO 등이 시행하는 해양 환경 보전 추진 활동에 협력한다.

그리고 해변 미화, 어장 쓰레기 등의 폐기물 회수 및 처리, 조업 시 어망에 걸린 쓰레기를 갖고 돌아와 처리하는 일 등을 계속 추진하면서, 자원봉사자들에 의한 해변 미화 활동, 생태계 보호 및 육성 활동 등을 지원, 협력한다.

나아가 자원봉사자들의 청소 활동에서 타의 모범이 되는 개인 및 단체에 대한 표창을 지속적으로 시행한다.

표류, 표착하는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국제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표류, 표착하는 쓰레기에 관한 국내외 정보 수집을 실시한다.

- 밸러스트수를 통한 외래 생물종 침입 방지 대책

선박의 밸러스트수 내에 섞여드는 플랑크톤 등의 생물이 선박의 이동과 함께 본래의 서식지가 아닌 장소로 이동함으로써 생태계와 인간의 건강에 끼칠 피해를 방지하는 등의 목적으로 국제해사기구(IMO)에서 채택된 밸러스트수 규제 관리 조약에 대응하여, 밸러스트수 내에 포함된 생물이 해양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조사를 시행한다. 또한 밸러스트 수를 적재하지 않아도 안전하게 항행 가능한 선형(비 밸러스트 선형) 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다.

- 해양의 건강 진단표 제공을 통한 해양 환경 보전

해양에 관한 다양한 관측 데이터를 수집, 정리하고 그 변화 동향을 평가한 ‘해양 건강 진단표’를 제공함으로써, 해양의 환경 상황을 상시 파악하면서 지구 온난화 예측에 바탕을 둔 적절한 대책, 해양 오염 방지 등 해양 환경 보전을 위한 대책의 책정과 실시에 기여한다.

② 해양 환경을 배려한 대처 노력

- 해안 보전에 있어 환경을 배려함

해안 주변에서 서식, 생육하는 동식물과 경관을 배려한, 친환경적인 해안 보전 시설의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 항만 및 어항 정비에 있어 환경을 배려함

항만에서는 개발·이용과 환경의 보전, 재생, 창출을 양대 축으로 한 ‘항만 행정의 그린화’를 꾀하기 위해, 생물을 배려한 소파블록, 호안, 방파제 등의 항만 구조물 정비, 오니와 기타 공해의 원인이 되는 물질의 제거, 복사를 통한 수질 및 저질 개선에 착수하는 것 외에도, 다양한 생물의 서식지인 갯벌, 해변, 조장 등의 재생을 계획적으로 시행한다. 순환형 사

회에 공헌하기 위해 자연 재생 사업을 실시하는 데 있어 준설 토사, 재활용 재료의 효과적 활용에 노력하면서 필요한 연구 개발을 진행한다.

또한 어항 환경 정비 시설, 어업 집락 환경 정비 사업, 연안 환경 긴급 회복 등의 사업을 종합적, 계획적으로 계속 실시하고, 어항의 수산 자원을 보전하기 위해서 해수 교류 기능을 가진 방파제 정비, 수산 동식물의 서식 및 번식이 가능한 호안의 정비, 자연 환경에 미칠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해변 정비를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자연과 조화된 활용형 어항·어장 만들기 추진 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한다.

- 해양 자원 이용에 있어 환경을 배려함

수산 가공 시 폐기물의 재자원화, 환경에 악영향을 주지 않고 어망이나 선저에 생물이 부착하는 것을 방지하는 기술의 개발 등을 지속적으로 수행한다.

또한 긴급도가 높고 조사 가능한 희소 수생생물에 대해 현지 조사, 보호 기법의 검토에 착수함과 동시에, 국제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상어류, 해조(海鳥)의 혼획에 대처하기 위해 상어류 보전, 관리 및 해조 혼획 줄이기에 관한 국내 행동 계획의 실시를 추진한다.

원격 해역의 석유 개발 시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는 가이드라인 초안 작성에 필요한 조사를 시행한다.

2. 지구 환경 문제에 대한 대처

(1) 기본 추진방안

지구 온난화 등의 전 세계적인 차원의 환경 변동과 함께, 해수면 상승, 해일 등의 재해, 수산 자원 변동 등의 식량 문제, 산호와 망그로브의 소실 등 환경에 미칠 영향이 우려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에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구 온난화 같은 지구환경 문제에 대응하여 전 세계적인 환경 보전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구 전체를 통일된 체계로서 이해하는 것을 바탕으로 그 기반이 되는 제반 현상을 규명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지구 전체의 기후 시스템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해양에 관한 식견을 쌓는 것이 필수적이다. 또한 전 세계적인 환경 변동에 따른 해양 환경 자체의 변화를 예측하기 위해서도 해양에 관한 식견을 쌓을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전 세계적인 해양 현상과 그 변동의 규명 및 예측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지구 전체의 관

측 수단을 적절히 배치하고 장기적인 관측으로 해양 현상을 상시적으로 관측하여 장기적인 트렌드를 파악하고, 또한 관련 기관의 능력을 결집시킨 집중 관측을 실시함으로써 특정 해양 현상의 메커니즘을 규명한다는 2가지 대처 노력을 효과적,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와 같은 글로벌한 관점에서 연구를 추진해야 할 분야에 관해서는 국제적인 협력체제 하의 추진이 필수적이며, 특히 북서태평양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에서 해양 관측 및 조사 측면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면서 선진 각국과의 협력 및 광대한 수역을 가진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과의 협력을 추진한다.

(2) 실시 계획

• 지구 변동 예측 연구

지구 온난화, 기상 이변 등의 전 세계적인 변동 현상의 규명과 예측을 실현하기 위해 기상 변동 예측, 물 순환 변동 예측, 지구 온난화 예측, 대기 조성 변동 예측, 생태계 변동 예측, 분야 횡단형 모델 개발 및 종합 연구와 같은 지구 환경 예측 연구를 추진한다. 엘니뇨 감시 예보 업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면서 수치 모델 기술 개발을 계속 진행한다.

나아가 지구 변동 예측을 위한 시뮬레이션 연구를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세계 최고 수준의 계산 능력을 지닌 계산기 '지구 시뮬레이터'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과 연구 개발 및 연구 지원 등을 수행한다.

• 탄소 순환 시스템 규명

해양 지구 연구선 '미라이(みらい)' 등을 이용해 일본 주변 및 북서태평양의 정사(精査) 해역에서 정도 높은 관측을 실시하고, 탄소 순환 메커니즘을 규명한다.

• 해수면 상승에 대처

검조소의 지심절대고(地心絶對高)를 인공위성 레이저 측정 등의 우주 기술을 이용하여 검출하는 조사, 해면 수위 변동 메커니즘의 규명 및 영향에 관한 연구, 해수면 상승을 검조(檢潮)와 범지구 측위 시스템(GPS), 초장기선 전파 간섭계 등의 측위학적 기법을 사용하여 검출하는 연구를 계속한다.

- 이산화탄소 해양 격리 기술 개발

육상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의 해양 용해, 심해 저류 등, 해양을 이산화탄소 격리의 장소로 이용하는 기술을 계속 검토한다. 또한 이러한 이산화탄소의 해양 격리법의 환경 영향 평가에 관련된 연구 개발을 지속적으로 수행한다.

- 산호초 보전

국제적인 산호초 보전을 추진하기 위해서, 국제 산호초 이니셔티브(ICRI) 사무국을 인계(2005년 7월부터 2년간)해 총회를 개최하면서, 산호초 모니터링 추진, 중요 천해역(淺海域)리스트 작성 등을 실시한다.

II. 해양 이용

1. 해양 생물자원 이용

(1) 기본적 추진 방안

해양 생물자원은 세계의 식량자원으로 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앞으로 그 지위는 점점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세계의 해양 생물자원 수급은 개발도상국의 인구 증가 등에 따라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어, 미래의 안정적 공급 확보 등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해양 생물자원은 재생산 가능한 자원으로서, 생태계 전체의 유지, 환경오염 방지 등을 배려하여 적절한 관리 및 보존을 하면 지속적인 이용이 가능하며,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자원 관리형 어업' 및 '만들어 키우는 어업'을 한층 더 추진하는 등, 해양 생물자원 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자원의 배양, 관리에 관한 기술 개발, 어업·어항·어촌의 정비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또한 공해를 비롯한 해역에서도 관련국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해양 생물자원의 적절한 보존, 관리, 이용 등을 실시한다.

일본 주변 해역은 세계 3대 어장의 하나라 할 정도로 생산력이 높은 해역이다. 특히 일본의 연안역은 생산성이 높을 뿐 아니라, 수요가 많은 어패류를 다종 생산하는 등 중요한 해역이다. 해양 생물자원은 복잡한 생태계 속에서 조화를 지키며 유지되고 있고, 해양 개발을 할 때는 수질 악화 등으로 해양 환경 및 해양 생물자원을 보호, 배양하는 곳이 파괴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대처하면서 육역 개발 역시 앞으로도 해양 환경을 배려할 필요가 있다.

해양 생물자원의 이용에 대해서는 기존의 이용 방식에 더해, 최근에는 인체에 좋은 영향을 주는 기능을 지닌 식품으로 가공하기 위한 이용 등 수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인 이용 방식과 해양 생물이 지닌 특수한 대사기능이나 생체물질 등을 공업, 의약품 원료로 이용하는 새로운 시도가 추진되고 있다. 해양 생물은 육상과는 다른 환경 하에 서식하며, 육상 생물과 비교해 그 기원이 오래되었고 종류와 개체수가 많다는 점에서 독특한 대사기능과 생체물질을 가진 것들이 많다. 이러한 특징들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해양 생물에 관한 기초적인 이해를 심화시킬 연구와 이용에 관한 연구를 추진하면서 폭넓은 연구 체계를 내실화한다.

(2) 실시 계획

① 수산자원의 지속적 이용 추진

수산 기반 정비에 관해서는, 어촌의 사회 경제적 조사와 향후의 수산 기반 정비(비 공공 기반 포함)의 기본 방침 책정 및 수산 기반 정비의 효과를 지역 경제에 파급시키는 등의 후속 조치에 필요한 기초 조사, 설계·계획 기술 기준의 책정 및 기술 정보의 처리와 분석에 필요한 기준 조사, 적산과 시공에 필요한 표준 적산과 시공 기준 등의 검토 및 시공 기술 개발에 필요한 시공 기술 조사, 큰 효과가 기대되는 새로운 수산 기반 시설의 신기술 개발에 필요한 조사 및 그 실용화를 위한 실증 시험을 수행하는 신기술 개발 조사, 수산 기반 시설이 생물 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효과의 파악과 생물 서식지를 효과적으로 창출하기 위해 필요한 생물 환경 조사, 수산 관련 공공사업의 사업 평가 및 정책 평가의 평가 기법 개발 등을 하는 사업 평가 조사와 근해역 기초 생산력 증대와 광역 수익이 예상되는 해역에서 대규모 사업화를 실시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하며, 사업화 계획을 책정하는 기본 계획 조사를 시행한다.

일본 주변 수역 내 어업자원의 현황 분석 등 자원 평가를 하기 위한 조사, 연근해 어해황 정보의 수집, 분석, 제공을 계속적으로 수행하면서, 대륙붕의 한계 연장이 예상되는 수역의 정착성 생물자원에 대한 기초 지식을 수집하기 위한 조사를 시행한다.

수산자원의 적절한 보존 관리를 위해, 특정 어종에 대해 총 허용 어획량(TAC)과 어획 노력 가능량(TAE)을 결정하는 등의 조취를 취하고 있는데, 그 일환으로 어획 정보 등을 취

합하는 컴퓨터 네트워크의 유지, 관리를 지속적으로 시행하면서 광역행정구역(都, 道, 府, 縣)과 어업 단체의 TAC, TAE 관리 실시를 지원한다.

특히 자원 상황이 악화된 어종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광역 또는 지역 차원에서 어획 노력량 줄이기, 자원의 적극적 배양, 어장 환경 보전 등의 자원 회복을 위한 조치를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자원 회복 계획' 작성을 추진하여 계획적으로 실시한다. 이와 함께 양뿐만 아니라 질과 비용의 개선에도 기여하는 대처 노력도 펼친다.

또한 어업협동조합 등이 지역 실정에 맞춘 질과 비용 개선에도 기여하는 대처 노력을 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처 방침을 시범적으로 작성한다.

어업 조사선 '가이요마루(開洋丸)' 등을 통해, 국제 협력 체제 하의 자원량 조사와 자원 동향에 영향을 미치는 해양 환경 조사를 계속 시행한다. 또한 새로운 어장의 개발 및 기존 어장의 확대를 피하면서 혼획을 피하는 기법을 도입하기 위한 기업화 조사 사업, 자원 수준에 맞춘 어획량이라도 생산 비용 절감 및 어획물의 부가 가치 향상을 통해 경영이 충분히 되는 합리적인 새로운 어업 생산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실증화 조사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것 외에도, 200해리 체제의 정착 및 공해상 어업 규제 등의 강화에 대응하여 일본의 200해리 내 근해 어장의 효과적 이용을 피하기 위해, 근해역에 설치한 중층형 부어초(中層型浮魚礁)의 효과적인 이용 방안에 관한 조사 및 어업 종사자들의 자발적인 자원 관리를 피하기 위한 조사 사업을 계속 시행한다.

2002년도를 초년도로 하는 어항 어장 정비 장기 계획에 기초하여 어초 설치, 증식장 조성, 양식장 조성, 어장 환경 보전 및 어항과 어촌의 정비를 종합적, 계획적으로 추진한다. 또한 재배 어업에 대해서는 자원 회복 지원 시설 정비 및 적지 종묘 방류의 지원을, 해면 양식업에 대해서는 양식 수산물의 브랜드화 추진 및 '지속적 양식 생산 확보법'에 기초한 어장 개선 계획의 보급 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책을 실시한다.

또한 연어, 송어 자원을 적절히 관리하면서 효율적인 방류를 수행한다.

② 해양 생물자원 이용을 위한 개발 연구

해양 생물자원인 키틴, 키토산의 미생물 생산과 이용화를 위한 연구 및 해양생물에 의한 바이오 미네랄화에 관한 연구를 계속적으로 수행한다.

또한 해양 및 심해저와 지각 내부와 같은 다양한 환경 하의 생물권에 서식하는 생물들의 유기 기능을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양 및 극한 환경 생물 연구를 실시하고 나아가

연구 성과의 민간 활용을 도모하기 위해 심해 바이오 사업화 추진 계획을 운영한다.

미이용 어패류의 효과적 이용과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기술 개발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면서, 이용 확대를 위한 중간 원료 개발 등의 가공 기술 고도화에 착수한다.

에너지 절약, 저비용 등의 관점에서 어구, 어법, 어선 등의 어업 신기술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2. 해양 에너지와 자원 이용

(1) 기본 추진 방안

해양에는 풍력, 파력, 조력, 온도차, 태양 등의 깨끗하고 바닥날 일이 없는 자연 에너지가 널리 분포하고 있으며, 순환형 사회 실현에 적용할 새로운 에너지 및 재생 가능한 에너지와 자원의 이용에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도서 지역 등의 로컬 에너지원으로서의 관점에서도 그 이용이 기대된다. 일본은 장기적 관점에서 해양 에너지 이용 기술의 연구 개발을 진행한다. 실용화를 위해서는 특히 수질 개선과 심층수 이용 등과의 복합적 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생각되며, 이러한 시스템의 개발을 추진하면서 해양 에너지 이용을 위해 보다 유리한 조건의 적지를 많이 갖고 있는 개발도상국에 적합한 시스템의 개발을 추진한다.

또한 일본의 영해, 배타적 경제 수역, 대륙붕 해저 및 해저 밑에는 여러 가지 광물자원, 에너지자원이 부존하고 있으며, 이러한 자원은 해양 생물자원 및 해양 에너지와 함께 일본의 생활 기반을 뒷받침하기 위해 중요하다. 광물 및 에너지 자원은 앞으로 국제적으로 부족해질 것이라는 예측도 있어, 환경 영향의 극소화를 피하면서 해양의 광물 및 에너지 자원에 대한 지속적인 개발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망간, 코발트, 니켈 등의 광물자원은 일용품에서 하이 테크놀로지 분야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으며, 또한 강한 경도와 강한 자성 등의 특성으로 인해 대체가 곤란한 중요 자원이다. 그러나 일본은 이러한 광물자원의 대부분을 수입하고 있으며, 또 그 대부분이 특정 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등 공급 구조가 매우 취약하다. 이러한 광물자원의 중장기적 안정 공급 체제의 확립은 일본의 사회 경제 활동은 물론 전 세계의 보다 많은 경제 발전의 기반이 되기도 한다는 점에서, 상당량이 부존할 가능성이 있는 해양의 조사, 개발 등을 UN 해양법 조약을 비롯한 해양의 법적 질서 하에 중장기적 관점에서 추진하는 것이 지극히 중요하다. 따라서 해양 광물 자원의 부존 상황 조사를 추진한다.

석유와 천연가스는 사회 경제 활동의 유지, 발전을 꾀하는 데에 중요한 열쇠가 되는데, 석유는 향후 특히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수급 곤란이 예상되며, 천연가스는 공급 형태에 제약은 있지만 석유를 대체하는 에너지의 하나로서, 또한 지구 환경에 끼치는 부하가 상대적으로 적은 현실적인 에너지로서 앞으로 그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 하에 이들 자원의 거의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는 일본으로서는, 전 세계의 중장기적인 안정 공급 체제 확립이 일본의 사회 경제 활동의 안정적인 발전으로 이어진다는 인식에 입각하여, 국제 협력을 기반으로 일본의 에너지 정책 전반과 조화를 꾀하면서 해양의 석유 및 천연가스 탐광과 개발을 통한 공급량 확보, 자원 보유국과의 우호 관계 유지와 증진, 자원 개발 기술의 개발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향후 해양의 석유와 천연가스의 탐광 및 개발 활동이 환경조건이 더 척박한 대수 심해역과 극지로 무게중심이 옮겨지면서, 발견되는 유전과 가스전의 규모도 중소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에서, 공급면의 다각화를 위해 장기적 관점에 서서 이들 제반 조건을 극복하기 위한 끊임없는 기술 개발을 실행한다.

대륙붕에 대해서는 UN 해양법 조약에서 해저의 지형과 지질이 일정 조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연안국은 200해리를 넘은 일정한 해저에 대해 대륙붕의 외측 한계를 연장시키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고 있으며, 지금까지의 조사 결과 새로이 일본의 대륙붕으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해역의 존재가 드러나고 있다. 대륙붕의 한계를 연장하려 할 때는 UN '대륙붕 한계 위원회'에 대륙붕의 지형과 지질에 관한 데이터 등 대륙붕의 한계에 관한 정보를 제출할 필요가 있으며, 일본의 경우는 2009년 5월까지 이를 시행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 점에서 관계 성정 간의 긴밀한 연계 하에 꾸준하고 효율적으로 대륙붕 조사를 실시한다.

(2) 실시 계획

① 재생 가능한 에너지와 자원의 이용

과 에너지를 이용하는 방파제의 실용화를 위한 장기 내구성 시험 성과를 바탕으로, 현지에 적용하는 방안의 검토를 진행한다.

해상 태양 에너지, 15MW 규모의 부체식(浮體式) 풍력 발전 유닛의 연구 개발을 추진한다.

해수 담수화 기술은 다른 담수화 방식에 비해 에너지 절약형, 저비용형인 '역침투법' 기술을 국내외로 보급, 도입한다.

② 해양광물 및 에너지자원의 이용

- 해양광물 이용

심해저 광물자원 탐사 전용선인 '제 2 하쿠레이 마루(第2白嶺丸)'로 서부 태평양 해역에 서의 코발트 리치 크러스트 광상의 부존 상황 조사를 계속한다.

- 에너지자원 이용

국내 석유 및 천연가스 기초 조사, 대수심 해역의 석유자원 등 기초 조사, 극한 해역의 해양 구조물 기초 조사 연구, 메탄 하이드레이트의 상업적 생산 기술 확립을 목표로 탐사, 생산 기술 등에 관한 연구 개발을 지속적으로 수행한다.

또한 대륙붕의 석유와 천연가스 개발에 관한 사업을 계속 진행한다.

- 자원 이용 등의 기본이 되는 지적 기반 정비

지질 조사선 등을 사용하여 일본 주변 해역의 해양 지질 조사 연구를 실시하고, 영해 및 대륙붕의 지질에 관한 기반 정보를 정비함과 동시에 해양 지질도와 각종 DB의 형태로 제공한다.

- 대륙붕 획정 조사

대륙붕 획정은 대륙붕 조사 및 해양자원에 관한 관계 성청 연락회의(대륙붕 조사에 관한 관계 성청 연락회의가 개편, 확대됨)에서 2004년 8월에 취합한 '대륙붕 획정을 위한 기본 방침'에 기초하여, 각 관계 성청 간의 긴밀한 연계 하에 UN '대륙붕 한계 위원회'에 대륙붕의 지형 및 지질에 관한 데이터 등 대륙붕의 한계에 관한 정보를 제출하기 위해 필요한 해역의 조사(정밀 해저 지형 조사, 지각 구조 탐사 및 기반암 채취)를 실시한다.

또한 대륙붕 한계 연장에 관한 정보 작성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 조사 성과를 일원적으로 수집, 정리, 보관, 제공한다.

3. 연안 공간의 이용

(1) 기본 추진 방안

일본의 해안 공간 이용에 대해서는 기존의 연안역 매립을 통한 공공시설용지, 주택용지, 공업용지 조성이 시도되고 있으며, 그 밖에 석유 비축 기지로서의 이용이 추진되고 있다. 또한 어장 정비 개발과 어항 정비, 항만 및 항로와 교량 등의 정비, 폐기물 처리장 정비 등도 이루어져 왔다. 나아가 최근 국민의 여가 수요 증대에 따라 해양 관련 레크리에이션을 위한 시설 정비와 해변 공간 정비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앞으로는 인공섬, 부체식 해양 구조물, 평온한 해역 만들기, 안전하고 쾌적한 연안역 만들기 등을 통한 새로운 복합적 해양 공간 창출도 요구되고 있다. 이처럼 해양 공간은 많은 이용 분야가 중복되고 있으며, 특히 해안선에 가까운 부분에서는 물리적으로도 포화 상태가 된 상황도 눈에 띈다. 또한 동시에 다양한 환경 하에 수많은 생물이 서식하며 지구 전체의 환경에도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공간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해양 공간 이용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자연 환경 보전, 뛰어난 환경 창출을 도모함과 함께, 지역과 해역의 특성과 기술 진보를 바탕으로, 이용 분야 간에 연계를 꾀하면서 다양화하는 이용 요청에 정확하게 부응한 질서 잡힌 이용을 추진한다. 또한 뛰어난 자연 환경을 보유한 연안역의 보호, 국토 보전, 해상 안전 확보, 연안역의 쓰나미 등에 의한 재해에 대한 대응을 도모한다.

최근 해양 공간의 이용은 연안역을 중심으로 지역 사회가 하나 되고 각국 간 상호 의존 관계가 심화되는 가운데, 다면적인 교류와 연계를 추진하기 위한 교류 거점의 형성과 지역 사회 경제의 특성에 강하게 의존한 다면적 이용 요청이 두드러지고 있다. 따라서 전국 종합 개발 계획인 '21세기 국토 청사진 - 지역 자립의 촉진과 아름다운 국토의 창조'의 기본 개념을 바탕으로 지역과 해역의 특성에 맞춘 연안역 이용을 촉진한다.

도쿄만, 이세만, 오사카만과 세토나이카이에서는 전부터 고밀도의 해양 공간 이용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생활, 산업, 물류 등의 각 방면에 걸쳐 귀중한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다. 이들 해역은 수도권 정비 계획의 연안역의 기본개념을 바탕으로 다양한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 종합적이고 장기적이며 광역적인 시점에 입각해 질서 잡힌 이용과 보전을 도모한다. 특히 오사카만은 오사카만 임해지역 개발 정비법의 취지를 바탕으로 적절한 정비를 추진한다. 또한 이들 해역의 새로운 매립지 구성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을 신중하게 검토하면서, 국토 보전과 해상 안전 확보를 도모하고 환경에 끼칠 영향을 충분히 고려한다. 나아가 이들

해역이 가진 해수 교환 특성 같은 자연 정화 기능을 복돋우며 뛰어난 수질, 저질(底質), 경관의 확보 등 적절한 보전 활동을 펼치고, 경제 사회의 진전과 산업 구조 변혁에 따른 다양한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 주변 연안역과 기능을 적절히 분담하면서 지역 특성을 살린 질서 잡힌 이용을 추진한다.

또한 해안 보전은 해안역에 집중하는 인명, 재산 및 좁은 국토를 지키면서 양호한 해안역 형성을 꾀하는 것으로서, 그 의의가 중요하다. 따라서 해일, 파랑, 쓰나미, 해안 침식 등에 대해 필요한 안전도 확보를 위한 해안 보전 시설 정비를 추진한다. 이 때 복수의 시설들을 조합하여 모래해변에 의한 소파 효과를 활용한 면적 방호 방식을 통한 정비를 추진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 바다와 접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니즈에 맞춰 환경사 호안, 산책로 등 물과 친해질 수 있는 기능을 부여하는 등, 매력 있는 해안 공간 만들기를 꾀하면서 해안의 우수한 자연 경관 보전을 추진한다.

(2) 실시 계획

① 환경을 배려한 공간 이용

• 항만 및 어항

항만에서는 개발, 이용과 환경 보전, 재생, 창출을 양대 축으로 한 ‘항만 행정의 그린화’를 추진하기 위해, 갯벌과 조장 등의 재생과 임해부의 폐기물 처리장 택지를 활용한 대규모 녹지의 정비 외에, 연안역의 자연 재생 사업 촉진과 해역 정화를 추진하기 위한 해역 환경 창조 사업, 뛰어난 항만 경관을 만들기 위한 항만 경관 형성 시범 사업 등, 사람들이 수제선(水際線)에 자유롭고 안전하며 쾌적하게 왕래할 수 있고 풍부한 생태계를 키울 수 있는 매력적인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

어항 역시 뛰어난 연안역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 중요한 조장 및 갯벌 같은 자연 환경을 보전, 창조하면서, 연안역을 고도로 이용하기 위한 자연 조화·활용형 어항, 어장 만들기 추진 사업 및 도시 주민 등 일반 방문자들과의 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어항 교류 광장 정비 사업을 추진한다. 어업 집락 환경 정비 사업 등을 통한 어촌 생활환경 개선에 필요한 시설 정비에 관해서는 ‘농·산·어촌 고품자 비전’을 바탕으로 고품자도 배려한 시설 정비를 지속적으로 펼친다.

순환형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해상 수송을 통한 효율적인 정맥 물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순환 자원의 전국적인 광역 유동을 촉진함과 함께 임해부에서 재활용 산업의 거점화를 추진하며, 종합 정맥 물류 거점항(recycle port) 형성을 추진한다.

- 폐기물 처리

폐기물은 발생 억제, 재사용, 재생 이용을 철저히 하는 것을 전제로 항만의 적절한 개발, 이용, 보전과의 정합성과 해양 환경의 보호 및 보전에 대해 적절히 배려하면서, 폐기물 해면 처리장과 페닉스 계획(역주: Phoenix Plan, 광역 임해 환경 정비 센터 사업)에 기초한 광역 처리장의 계획적 정비를 지속적으로 진행한다.

난관에 닥친 폐기물 처리 문제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중간 처리로 감량, 무해하게 된 폐기물을 폐기물 해면 처리장에 받아들인다.

- 해안 보전

바다거북의 산란장소인 모래 해변을 보전하기 위한 '에코 코스트(Eco Coast) 사업'과, 수산 생물의 산란, 육성의 장 조성, 배후의 해안을 일체적, 효율적으로 방호하는 '어류를 키우는 해안 만들기 사업' 등, 자연 환경과 조화를 이룬 해안 정비를 시행한다. 또한 백색의 모래 해변과 녹색의 송림이 이어지는, 뛰어난 경관을 가진 해안을 보전하기 위해 '자연이 가득한 바다와 숲 정비 대책 사업(白砂靑松 창출)'을 추진한다.

② 효율적인 공간 이용

- 방재

대규모 지진 발생에 대비해 항만과 어항 같은 시설의 내구성 강화와 액상화 대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면서, 방재 거점 정비를 추진한다. 구체적으로는 수도권 전체를 대상으로 한 광역 방재 오퍼레이션, 도시부의 대규모 오픈 스페이스인 도쿄만 임해부의 기간적 광역 방재 거점 정비 및 광역 방재 거점 네트워크 형성을 꾀한다. 나아가 지진 조사 연구 추진 본부인 '지진에 관한 기반적 조사 관측 등의 계획' 및 '향후 중점적 조사 관측에 대하여'를 바탕으로 해역에서의 기동적 관측 및 해저 지진 종합 관측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정비한다. 배후에 인구와 자산이 집중되어 있고 쓰나미, 해일, 침식에 의한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에서,

해안 보전 시설 정비 사업, 쓰나미 및 해일 위기관리 대책 긴급 사업, 해안 환경 정비 사업 등의 해안 사업을 계속 시행하며 해안 보전을 도모한다.

또한 도카이(東海) 지진, 도난카이(東南海)·난카이(南海) 지진 등의 대규모 지진과 그에 따른 쓰나미 재해에 대해, 제방 높이기, 내진화, 수문의 자동화 및 원격 조작화 등을 피하면서 해저드 맵 작성을 지원함으로써,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일체가 된 쓰나미 대책을 추진한다.

특히 2006년도에는 쓰나미와 해일 피해로부터 인명을 우선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2005년도에 창설한 쓰나미 위기관리 대책 긴급 사업을 0m 지대의 해일 대책으로도 확충하고, 수문의 자동화 및 원격 조정화, 제방 호안의 파제 방지, 쓰나미 및 해일에 관한 해저드 맵 작성 지원 등의 하드웨어 정비와 소프트웨어 대책을 일체적으로 추진하는 쓰나미 및 해일 위기관리 대책 긴급 사업을 창설하고, 해당 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또한 수문의 일원적인 원격 조작 및 쓰나미, 해일에 대한 정보 수집과 제공에 이바지하는 '쓰나미 및 해일 방재 스테이션' 정비, 재해 시 구호를 요하는 사람들을 쓰나미와 해일 등의 해안 재해로부터 보호하는 '재해 약자 대책 사업', 도난카이, 난카이, 도카이 지진 같은 대규모 지진과 쓰나미에 대응하는 '종합적인 쓰나미 및 해일 재해 대책 강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여기에 더해 해안 보전 시절의 기능 유지를 목적으로 '재해 관련 긴급 대규모 표착 유목 등 처리 대책 사업'을 활용하여 해안으로 흘러오는 표착유목을 적절하게 처리한다.

도카이 지진 등 대규모 지진의 발생이 우려되고 특히 도난카이, 난카이에서는 쓰나미 방재가 중요시되는 가운데, 2003년 도카치(十勝) 앞바다 지진에서 일어난 지진으로 큰 피해가 발생했다. 쓰나미 피해를 최소한으로 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쓰나미로 인한 해안의 상세한 침수 시뮬레이션과 피난 경계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항공기에서의 리모트 센싱(원격 탐사) 기술을 활용하여 해안 제방과 배후지반고(背後地盤高)를 합친 고밀도·고정도(오차 십 수cm)의 3D 전자 지도를 작성한다.

'대도시 대지진 재해 경감 특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도난카이, 난카이 지진을 대상으로 해서, 이들 지진이 일어나는 순서와 규모 등의 발생 패턴을 고려하면서 태평양 연안에 위치한 도카이 지방 서편의 대도시권을 덮칠 지진동, 쓰나미의 거동과 대규모 라이프 라인망의 안전성에 대한 종합적인 시뮬레이션 기술을 개발한다. 동시에 지진 발생 시 피해를 적게 하기 위해 관련 기관 및 개인의 재해 대응 행동을 최적화하기 위한 방안에 관한 연구 개발을 실시한다.

- 산업 창조

임해부 토지 조성 사업과 기존 임해부 용지의 재편, 안벽, 도로 등을 정비함으로써 질 높은 산업 공간을 계속적으로 정비한다. 특히 대도시 지역 임해부의 공장 터는 도시 재생 면에서도 커다란 잠재성을 지니고 있어서, 계속해서 관계 부처의 연계를 통해 대규모 프로젝트가 신속하고 원활하게 실시되도록 지원하는 등 효과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을 추진한다. 지속적인 생산 체제를 구축하는 데에 필요한 어업 생산 기반으로서의 공동 이용 시설을 지속적으로 정비한다. 또한 2002년도를 초년도로 하는 어항 어장 정비 장기 계획을 기초로 하여, 수산물 생산 유통의 효율화를 꾀하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어항 어장 정비 사업을 추진한다. 나아가 어항 시설 재해 복구 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한다.

다양화, 고도화하는 유통 및 소비 시스템에 정확하게 대응하고 안전하고 고품질의 수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함과 동시에, 수산물 유통 가공 분야가 '순환형 사회'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유통 및 가공 시설을 지속적으로 정비한다.

또한 낙도 등 생활 조건이 불리한 지역에서 생산, 생활과 교통 기반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 항만 및 어항을 지속적으로 정비하면서, 주요 산업인 수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어장, 어항 및 어촌의 정비를 종합적으로 추진한다. 나아가 여객 터미널 같은 주민들의 발이 되고 있는 생활 기반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정비를 촉진하면서, 여객용 승강 시설의 배리어 프리화 등 편의성 향상을 위한 개량을 실시한다. 해외로부터 자원, 에너지를 받아들이기 위한 안벽, 방파제 등의 수입 터미널을 정비하고 이를 저장하기 위한 장소를 제공하는 임해부 토지 조성 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한다.

- 도로, 공항 등의 정비

임해부의 생활 기반을 정비하기 위해 도로 사업과 하수도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시행한다.

도로 사업으로는 요코하마 요코스카(横浜横須賀) 도로, 이세 완간 도로 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한다. 간사이 국제 공항의 제 2기 공사는 두 번째 활주로 공용에 필수 불가결한 것으로 시설 정비를 한정해서 2007년 한정 공용을 위해 꾸준히 정비를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2006년도는 2005년도에 이어 '한정 공용'에 필요한 시설 정비를 진행한다. 또한 도쿄 국제 공항은 제 2 여객 터미널에 관련된 시설 정비 등을 시행하면서, 재확장 사업으로 신설 활주로 공사를 실시한다.

활력이 넘치는 워터 프론트를 만들기 위해 공원 및 녹지, 인공 해변 등을 지속적으로 정

비하면서, 민간 활력을 도입함으로써 문화 교류 시설 정비를 지속한다.

- 해안 보전

㉠해안 '방호'에 더해 '환경'과 '이용'을 목적으로 규정, ㉡해안보전구역 이외의 국유 해변지를 해안법의 대상에 추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계획 제도 창설, ㉣해안의 일상적 관리를 지역 자치 단체(市·町·村)가 발의를 바탕으로 실시 가능하게 하는 제도를 창설, ㉤자동차 입장 제한 등 해안 환경 보전을 위한 조치 도입, ㉥국가에 의한 직할관리 제도 창설 등에 관해 개정된 해안법을 바탕으로 하여, 2000년 5월에 책정한 해안 보전 기본 방침에 따라 방호, 환경, 이용이 조화를 이룬 해안 보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또한 약 40만km²의 배타적 경제 수역을 갖고 있는 오키노토리시마(沖ノ鳥島)에서는 노후한 해안 보전 시설의 적절한 유지 관리를 지속적으로 시행하면서, 해상 관측용 레이더 등 고도의 정보 수집 시스템을 활용하여 관리의 내실화를 꾀한다.

- 해안 공간 이용에 관한 조사, 기술 개발

매립지의 경제적인 지반 대책 공법에 관한 연구 및 원심력 모형 실험 시설을 이용하여, 지반 침하의 영향을 측정하는 연구들을 지속적으로 수행한다. 또한 지역 해양 통신 정비 사업을 계속한다. 나아가 항만 기반 시설의 제반 기능 변화와 수명 연장에 관한 연구, 지능화 재료를 이용한 모니터링 기술에 관한 연구, 장주기파에 관한 연구 및 양방향(bilateral) 조작계를 이용한 차세대 수중 작업 기계 시스템에 관한 연구, 파도에 의한 지반 액상화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면서, 전국 항만 해안 파랑 정보망을 통한 데이터 확보와 분석을 추진한다. 해안 사업에 관한 조사로서 해안 사업의 계획 및 실시에 관련된 조사, 침수 예측도 작성에 관한 3차원 전자 지도(DB) 구축을 지속적으로 수행함과 동시에, 오키노토리시마에서는 관리와 보전을 충실히 하기 위해 산호 증식을 통한 보전 방안과 전력 및 물 등의 확보 방안 검토를 추진한다.

해중 구조물 설치 기술의 연구 개발을 지속적으로 수행한다. 어항과 항만에서 안전성이 높고 친수 기능을 가진 방파제와 호안에 관한 개발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면서, 정보화된 시공 시스템 개발과 새로운 형식의 구조물, 시공 관리 기술의 연구 개발 및 현지 실증 시험 등을 지속적으로 진행한다.

③ 시민들이 가까이 하는 해양 공간

- 레크리에이션 공간 정비, 보급 촉진

‘미나토(ミナト, 항구)’가 가진 자산을 재평가하고, 지역 교류와 변화함의 거점으로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시민이 주체가 되어 계획을 세우고 ‘미나토’의 시설을 이용한 이벤트 등을 개최하며, 시민들이 가까이 할 수 있는 활력 있는 ‘미나토’ 공간을 형성하는 ‘미나토 거리 만들기(みなとまちづくり)’를 추진한다. 또한 지역 주민들과 관광객 등 많은 사람들이 편하게 들러 교류하는 휴식의 장소로서 해변과 여객 터미널, 광장 등 ‘미나토’의 시설과 스페이스를 활용한 주민 참여형의 지속적인 지역 진흥의 교류 거점이 되는 ‘미나토 오아시스’를 전개한다.

미나토의 관광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지역의 각 주체가 연계하여 소프트웨어적, 하드웨어적 시책을 중점적, 일체적으로 전개하는 ‘미나토 관광 촉진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해양 레크리에이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여유 있는 국민 생활 실현에 이바지하는 해양 레크리에이션에 관한 조사를 시행한다. 또한 해양 스포츠와 레저 등 해양 레크리에이션 활동 뿐 아니라, 자연 체험 활동이나 환경 교육 활동의 거점으로 마리나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해안부의 레크리에이션 시설 정비와 연계한 시책으로, 도로, 공원, 하수도, 해안 정비를 통합적으로 진행하고, 지역 진흥에 기여하는 ‘C.C.Z.(Coastal Community Zone)’과 해변에서의 자연 체험 활동, 환경 교육, 해양 스포츠 등에 이용하기 편한 해안을 만드는 ‘생생 · 바다 아이 · 해변 만들기(いきいき · 海の子 · 浜づくり)’, 소파공 등의 이형 블록을 근해역 시설로 전용하여 물가를 되살리는 ‘물가 리프레쉬 사업’, 해변의 건강 증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 정비로 고령자나 장애인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해안을 정비하는 ‘바다와 숲의 건강 지역 만들기(건강 해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리조트지는 해변을 다양하고 고도로 이용하기 위해, 비치 이용 촉진 시범 지구에서 마리나 등과 합친 대규모의 복합적인 인공 비치를 지속적으로 정비한다.

나아가 수산업과 해양 레크리에이션의 조화를 꾀하기 위해 낚싯배를 어선과 분리 수용하는 시설(fisherina)을 지속적으로 정비하면서, 해안 환경 정비 사업, 어항 환경 정비 사업을 통해 녹지, 광장, 친수 시설 등의 정비를 지속적으로 병행해 실시한다.

- 유람선의 적절한 계류 및 보관 촉진

항만에 대해서는 매력 넘치는 워터 프론트 공간을 창조하기 위해서 해양 레크리에이션의 핵심 시설인 마리나의 정비를 촉진하기 위해, 민간 사업자 및 제 3 섹터가 시행하는 마리나 정비에 대해 일본 정책 투자 은행 등을 통한 장기, 저금리 융자 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한편 방치정을 해소하고 임해부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규제 조치와 계류, 보관 능력의 향상을 양대 축으로 하는 대책이 필요하다. 항만에서는 항만법에 근거를 둔 선박 방치 금지 구역 지정은 촉진함과 함께, 운하와 수로 등의 기존 정온 수역을 활용하고 계류 시설(잔교, 계선항, 계선 부표 등), 주차장, 화장실, 경사로, 보트 야드 등의 최소한의 필요 설비를 갖춘 간이 계류 시설인 '보트 파크'의 정비를 추진한다.

- 크루즈 진흥

일본에서는 고령화 사회가 도래함에 따라 여유로운 생활을 지향하게 되는 가운데, 여객선 크루즈 여행의 매력이 새삼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크루즈 인구는 선진 외국에 비하면 아직 한참 적은 상황이며, 앞으로 보다 많은 국민들이 크루즈의 즐거움을 깊이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는 크루즈선의 안전 운항 확보와 함께 크루즈 회사, 여행 대리점, 항만 관리자, 관광 당국, 지자체, 항공 사업자 등 크루즈 관계자들 간의 연계를 심화시킬 필요가 있다.

따라서 지방의 크루즈 진흥을 위해 크루즈 관계자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설립된 '크루즈 진흥 지방 협의회'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 안전 확보

해양 레크리에이션 활동에 따른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포스터와 팸플릿을 제작, 배포하면서, 체험 승선이나 항내 일부를 개방하여 시행하는 보트 천국 등의 기회를 통해 안전에 대한 의식과 기술 향상을 꾀한다.

해양 레크리에이션의 안전에 도움이 되도록 인터넷 등을 이용해 기상 및 해양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안전성을 더욱 강화한다.

-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

유니버설 디자인의 개념을 도입하여, 지역의 교육, 복지 행정 등과 연계하면서 찾아오는 모든 이들이 이용하기 편한 해안 만들기를 추진한다.

- 주민 참여형 해변 만들기

해안 청소 등 지역 주민들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지역의 자연 환경과 지역 고유의 역사를 살려 해변과 사람들의 유대감이 밀접해지도록 촉진하고, 주민 참여형 해변 만들기를 추진한다.

4. 해상 수송

(1) 기본 추진 방안

사방이 바다에 둘러싸인 일본에게 해상 수송은 인류(人流), 물류의 양 측면에서 빼놓을 수 없는 수송 수단이며, 그 효율성과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은 국민 생활과 산업을 뒷받침하는 데 있어 필수적이다.

최근 내항 해운은 환경 부하 감소, 교통 혼잡 완화 등의 관점에서 각광을 받고 있으며, 트럭 같은 장거리 간선 수송에서 해상 수송으로의 모달 시프트(modal shift)를 추진하는 것이 중요해졌다. 따라서 해상 수송과 육상 수송이 원활하게 결합한 복합 일관 수송에 대응한 내무(内貿) 터미널 정비 등 국내 해상 교통 기반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항만의 중요성은 글로벌화하고 국경을 초월하는 경제 활동의 진전 등을 배경으로 점차 증대되고 있으며, 항만이 그 기능을 적절하게 발휘하고 국제 해상 수송의 안정적 확보를 도모하면서 수송비용 절감을 꾀하는 것이 국민 생활에도 기여하게 된다. 컨테이너선의 대형화에 맞춘 안벽의 대수심화, 국제 간선 항로 정비 등을 시행하며, 아시아의 주요 항만을 능가하는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2) 실시 계획

• 항만 정비

생활 잡화, 제품 등을 수송하기 위한 국제 해상 컨테이너 터미널, 산업 경쟁력 강화에 직결되는 다목적 국제 터미널 및 해륙 수송 모드 간의 결절 기능을 강화하는 간선 임항 도로 등의 중점적 정비, 여객선 터미널의 정비 등을 추진한다. 특히 항만의 국제 경쟁력 강화, 유지의 관점에서 아시아의 주요 항만을 능가하는 비용 및 서비스 수준 실현을 목표로, 터미널 시스템의 통합 및 대규모화, IT화 등의 대책을 선도적, 실험적으로 민·관이 하나 되어 전개하는 수퍼 중추 항만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이러한 공공사업의 정비와 연계를 피하면서 민간 활력을 활용하여 수입 촉진에 기여하는 종합 수입 터미널, 다기능의 여객 터미널 시설 지속적으로 정비하면서, 유통 가공 기능 같은 고도의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는 항만 로지스틱스 허브의 형성을 추진한다. 또한 지진 재해 시 긴급 물자의 해상 수송 및 재해 후 일정한 간선 화물 수송을 확보하기 위해 국제 해상 컨테이너 터미널을 중심으로 한 내진 강화 안벽의 정비를 추진하고, 안전하며 효율적인 물류를 확보하기 위해 항만 시설의 출입 관리를 고도화한다.

나아가 국제 해상 컨테이너 터미널의 효율적인 이용 및 대형 선박의 원활하고 안전한 항행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개발 보전 항로의 정비를 추진한다. 구체적으로는 도쿄만 입구 등의 주요 항만에 액세스하는 항로 및 간몬 해협(關門海峽, 역주: 시모노세키와 기타큐슈를 가로지르는 해협)처럼 국제선이 다수 항행하는 항로에 대해 중점적으로 정비를 추진한다.

또한 대 동아시아 물류의 준 국내 수송화가 가져올 새로운 물류 체계에 대응하여, 화물의 해상 수송과 다른 수송 모드의 접속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LCL(역주: Less than Container Load) 적체 원활화 지원 시설을 정비하며 스피디하고 끊임 없는, 국내외가 일체가 된 SCM corridor를 구축한다.

한편 인터모달 물류의 효율화 및 비용 절감, 항만 서비스의 고도화와 활성화를 꾀하는 해륙 일관 물류 시스템 구축을 추진함과 동시에 이러한 항만 관련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항만 사업 조사를 지속적으로 시행한다.

항만 네트워크를 활용한 지역 연계를 촉진하기 위해 세토우치 바닷길 사업(瀬戸内・海の路事業) 등을 추진한다.

- 해상 교통을 위한 정보 제공

항만 측량, 해도 및 항해용 전자해도 등 각종 수로도지의 간행을 지속적으로 시행한다.

항행의 안전 확보와 능률적인 운항을 위해 수로 통보, 항행 경보 업무를 지속적으로 시행하면서 지진 및 쓰나미에 관한 항행 경보 제공 체제를 강화한다.

해상 기상 및 해황의 관측, 예보 등의 업무 강화에 관해 기상 자료 종합 처리 시스템 운영을 지속적으로 시행한다. 또한 선박 해상 정보 DB의 내실화를 꾀한다. 해상 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인터넷 등을 통한 기상 및 해양 정보 제공을 강화한다.

쓰나미의 관측 및 예보를 지속적으로 시행하면서, 북서태평양 쓰나미 감시 시스템을 통해 일본 근해부터 태평양 전역에서 발생한 지진, 쓰나미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정보를 작성하고, 일본 국내를 비롯해 북서태평양 지역 국가들에 제공한다.

연안 해상의 교통안전을 위해 해일 및 높은 파도 관련 시설에 의한 관측과 연안 및 외양의 파랑 예보를 지속적으로 시행한다.

- 안전 확보

만에 하나 해난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승선자들의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수색 구조 및 구급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체제를 강화한다.

- 선박 기술의 연구 개발

전기 추진 시스템 같은 신기술을 활용한 경제적이고 친환경적인 선박(Super Eco Ship (SES) phase 1)의 건조를 지원함으로써 물류 효율화와 지구 온난화 같은 환경 부하의 감소를 촉진하고 내항 해운을 활성화하기 위해, 2005년도에 이어 독립 행정 법인 철도건설 및 운수시설 정비 지원 기구에 대해 출자를 함으로써, 선박 공유 건조 제도를 활용하여 SES phase 1을 건조하는 경우에 선박 사용료의 경감 조치를 강구한다.

나아가 고효율 박용 가스 터빈, 새로운 선형, 이중 반전 포드 프로펠러 및 성력화(省力化) 시스템을 활용하여 환경 부하 절감(NO_x 90% 감소, SO_x 60% 감소, CO₂ 25% 감소), 수송 효율 향상(연료 소비량 약 10% 절감, 적재량 약 20% 증대)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획기적인 신형선인 차세대 내항선(SES phase2)은, 제작된 이중 반전 포드 프로펠러 시험체를 실증선에 탑재하여 정지 시 실험역 실증 시험을 수행한다.

오츠크해 같은 빙해역의 안전 항행을 위해 빙중 항행 규제 제정을 위한 연구를 지속적

으로 수행한다.

또한 석유 같은 화석연료에 비해 CO₂, SO_x, NO_x 배출 면에서 환경 부하가 적은 천연 가스의 안정적 공급 확보에 기여하는 천연가스 하이드레이트 수송선과, 수생 생물이 해역간 이송되어 생태계 파괴의 원인이 되는 밸러스트 워터를 적재하지 않아도 안전하게 항행 가능한 비 밸러스트선 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나아가 최근의 해난 사고 원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휴먼 에러를 방지하기 위해 각종 항행 지원 장치에서 얻는 정보와 브릿지(선교)에서 본 해상 경관 정보를 통합, 처리하고 일원적으로 표시하는 '선진 안전 항행 지원 시스템(INT-NAV)'의 조사 연구를 추진한다.

- AIS를 활용한 차세대 항공 지원 시스템 정비

선박 교통의 안전 확보를 강화하기 위해 AIS(선박 자동식별 장치) 육상국의 정비를 추진 하면서 해상 교통 센터의 항행 안전 지원 기능을 강화한다.

- 선박에 의한 환경 부하 경감(대기 오염 및 지구 온난화 방지 관련)을 위한 종합대책

선박이 배출하는 가스에 의한 대기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마르폴 73\78 조약의 1997년 의정서'에 대응하기 위해 해양 오염 및 해상 재해 방지에 관한 법률 일부가 개정되어 2005년 5월 19일부터 시행되었다. 이를 통해, 도입된 선박에 탑재된 원동기와 소각로 등의 설비에 관한 검사 등, 선박에 의한 대기 오염 방지 규제 제도의 정착을 꾀한다.

선박이 배출하는 가스에 대해 환경 기준 등의 규제 책정, 실시와 신기술 개발 및 보급을 일체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대기오염 및 지구 온난화 방지를 도모한다. 이를 위해 ACF(활성 탄소 섬유)를 활용한 고기능 배연 처리 시스템과 초임계수를 활용한 박용 디젤기관 등 신기술의 연구 개발을 실시한다.

- 해상 하이웨이 네트워크 구축

고속 항행 선박의 기술 요건 검토 등 소프트웨어적 시책 및 국제 간선 항로, 중추·핵심 국제 항만 정비 등의 하드웨어적 시책을 유기적으로 조합함으로써 선박 항행의 안전성 및 해상 수송의 효율성을 양립시킨 해상 교통 환경으로, 해상 하이웨이 네트워크의 구축을 추진한다.

- 해적 대책

‘아시아 해상 안보 이니셔티브 2004’를 바탕으로, 동남아시아 주변 국가들과 상호 협력 및 연계를 추진, 강화한다. 구체적으로는 동남아 주변 해역에 순시선과 항공기를 파견하고, 공해상에서 초계를 실시하며 연계 훈련 등을 통해 기항국 해상 보안 기관과 연계를 강화하는 등의 시책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이와 함께 2001년 11월의 ASEAN+3 정상회담 때의 고이즈미 총리의 이니셔티브에 따라, 일본이 협상을 주도한 ‘아시아 해적 대책 지역 협력 협정’(ASEAN 각국, 중국, 한국, 인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일본 등 16개국이 협상에 참여)이 2004년 11월에 채택되었고, 일본은 2005년 4월에 체결했다. 앞으로 본 협정의 조기 발효 및 협정 실시를 통한 아시아 지역 해적 대책에 대한 관련 국가들의 협력 강화를 지향한다.

5. 해양 종합 이용

(1) 기본 추진 방안

일본은 국토가 좁은데다 평야부가 바닷가를 따라 집중되어 있어서 지금까지 국토의 연장선상에서 해양을 이용해 왔으며, 연안역을 중심으로 한 개발 계획은 증가 일로를 걷고 있다. 또한 해양 레크리에이션의 장으로서 이용 확대가 예상되는 것 외에도, 어업 등 기존 산업에 있어서도 만들어 키우는 어업 등 새로운 전개가 시도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 향후 연안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이용 요청이 보다 두드러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최근의 일본 주변과 전 세계적인 해양 오염을 생각하면, 해양의 지속적이고 건전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해양 환경 보전의 시점이 필수적이다. 이처럼 해양 이용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종합적 관리’와 ‘해양 보전의 조화’를 꾀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아가 연안역의 이용은 각 지역의 사회 경제가 가진 특성에 강하게 의존하는 것이며, 연안역의 다면적 이용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이끌어내고 종합적, 광역적으로 이용함으로써 한정된 공간인 연안역을 매력 넘치는 곳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지역의 독자성을 중시하고 지역을 중심으로 한 자립적인 해양 관리를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지방 공공단체가 주체가 되어 지역 계획과 정합성을 꾀하면서 연안역의 종합적인 이용 계획을 만들고, 국가는 기본 이념, 연안역의 구분, 계획사항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계획 책정을 위한 지침을 명확히 하는 것 외에도, 국가 제반 사업의 활용, 민간 활력의 유도

등을 통해 계획 실현을 위해 지방 공공단체를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종합적인 이용을 추진하는 데에는 연안역의 지역 특성, 이용 특성을 반영하면서 연안역의 환경 보전, 국토 보전과 안정성 확보를 도모함과 동시에, 기존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의 조화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복수의 지방 공공단체들이 관련된 이용 계획과 근해역 이용 계획 책정 방식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2) 실시 계획

• 종합적 관리 촉진

연안역권의 종합적 관리에 주체적으로 임할 지방 공공단체와 각종 민간 주체가 연안역권 종합 관리 계획을 책정, 추진할 때의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연안역권 종합 관리 계획 책정을 위한 지침'(2000년 2월 '21세기 국토 청사진' 추진 연합회의 결정)의 보급, 개발 및 지방 공공단체에 대한 필요한 지원을 실행한다. 1999년 4월 개정된 해안법 및 이를 바탕으로 책정된 해안 보전 기본 방침에 따라, 도·도·부·현의 광역 자치단체가 연안해에 책정한 해안 보전 기본 계획에 기초해 해안 정비를 추진한다.

바다의 다면적 이용을 관점으로 한 친근한 어항, 어촌 만들기를 시행하기 위한 친근한 어항 어촌 정비 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한다. 또한 농어촌을 모두 풍요롭고 윤택한 생산, 생활의 장으로 만들어가기 위해 생산 기반, 생활환경의 정비와 함께 숲과 물을 살린 아름다운 경관과 환경 보전을 배려한 정비 작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한다.

• 종합적 이용에 관한 조사 및 기술 개발

도쿄만, 오사카만 및 이세만 등 대도시권 연안역의 종합적 이용과 보전에 관한 조사를 지속적으로 수행한다.

연안역의 복합적 이용에 도움이 될 시설 정비를 촉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근해역 인공섬 정비를 지속적으로 시행한다.

또한 임해부 지역의 이용도가 낮거나 이용하지 않은 땅, 매립지를 활용한 새로운 거점 형성을 꾀하는 개발 프로젝트를 조기 실현하기 위한 항만 정비 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한다.

Ⅲ. 해양 연구

1. 기초 조사 연구

(1) 기본 추진 방안

미지의 프런티어로서 해양의 동태, 생물 활동, 해저 변동 등 해양의 제반 현상에 대해 조사 연구하는 것은 인류의 지적 자산 확대와 국가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일이며, 동시에 시민의 과학 기술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높이는 일로서도 중요하다.

또한 해양 제반 현상의 연구로 얻어지는 각종 지식과 기초적 해양 데이터는 해양을 보전하고 이용하는 시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도 근간이 되는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지식과 데이터는 지구 환경 문제를 규명하는 데에도, 지진 예보 등의 방재 면에서도 또한 해저 지각 변동이나 판구조론의 규명 등 지구과학 기술에 관한 연구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도 필수적이다. 따라서 이전보다 해양 제반 현상과 그 변동의 규명 및 예측, 해상 교통안전, 해양의 측지적, 지리적 정보 확보 등을 위한 각종 관측 조사 연구가 실시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러한 해양 조사 연구의 내실화, 강화를 도모하면서 계획적, 항상적, 연속적, 그리고 장기적으로 이러한 지식과 데이터를 획득해간다.

(2) 실시 계획

- 지구 환경 리모트 센싱 기술의 연구 개발

구름, 강수 등 대기 해양권에 대한 고정도 계측 및 지구 온난화와 지구 전체의 물 순환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빛과 전파에 의한 지구 환경 리모트 센싱 기술 및 해석과 검증 기술 등을 연구 개발한다. 그 가운데, 오키나와에서 개발 중인 아열대 지구 환경 계측 기술의 관측 장치인 원거리 해양 레이더를 이용해 해류, 연안류와 파랑 등의 2차원 분포를 높은 시간, 공간 분해능으로 관측하고, 해류 및 파랑 계측 기법의 개선 및 데이터 이용에 관한 연구를 실시한다.

- 선박 운항

해양 조사 연구 및 해양에 관한 학술 연구에 필요한 데이터 확보를 위해 연구선 및 심해 조사 시스템의 운항 및 공동 이용을 실시한다.

- 전 지구 해양 관측 시스템(GOOS) 구축을 위한 기초 연구

유네스코 정부 간 해양학 위원회(UNESCO/IOC)에 의해 해양의 글로벌한 관측망 정비를 목적으로 하여 개시된 장기적 국제 공동 프로그램인 전 지구 해양 관측 시스템(GOOS)에 대해, 일본 역시 국제적인 요청에 부응하고자 해양 환경의 변동 예측, 보전을 위한 종합적 관측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협력을 지속적으로 수행한다. 또한 GOOS의 지역 사업으로 동북아 지역 해양 관측 시스템(NEAR-GOOS)을 중국, 한국 및 러시아와의 협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 태평양의 종합적인 관측 연구

태평양의 해양 관측 연구를 미국과의 협력 하에 실시하는 태평양 종합 관측 연구 이니셔티브(TYKKI)에 관련된 관측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한다.

- 지구 관측 시스템 구축에 기여

제 3회 지구 관측 회의에서 채택된 전 지구 관측 시스템(GEOSS) 10년 실시 계획에서 제창된 사회 경제적 이익 분야에 공헌하는 지구 관측 시스템의 구축을 목표로, 경쟁적 연구 자금 제도 하에 지구 온난화 및 탄소 순환 관측, 아시아 몬순 지역의 물 순환 및 기후 변화 관측 분야의 연구 개발을 실시한다.

- 해양 중규모 현상 연구

해양 중규모 현상의 역할 모델 개발을 계속 수행한다.

- 해양 물질 수송 및 물질 순환 연구

지구 환경 변동에 대한 해양 물질 순환의 영향을 규명하는 연구를 계속 수행하면서, 지구 환경 변동 예측을 위해 과거 수온 등 해양 환경의 정도 높은 복원과 그 변화 요인에 관

한 연구를 수행한다.

또한 대륙붕의 물질 순환에 관한 생물, 화학적 연구, 해양의 탄소를 중심으로 한 물질 순환에 관한 연구 및 동향 조사를 계속한다.

온실가스의 해양 위와 내에서의 분포, 수송, 순환 및 대기-해양 간 교환 과정의 관측과 연구를 지속한다.

- 해양 생물 및 생태 등 조사 연구

지구 시스템에서 해양 생태계의 구조와 역할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해양 생태와 환경 연구를 수행한다. 특히 해양 생태계의 생물 생산과 물질 순환에 관련된 생물 기능의 규명 연구와 해양 생물을 통해 다양성을 창출하는 메커니즘의 규명하는 연구를 수행한다.

심해저와 지각 내 극한 환경 하의 생물권에 관한 제반 현상 규명에 대해 극한 환경 생물 전개 연구 및 지각 내 미생물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한다.

- 해양저 굴삭을 통한 해저 지각 구조 연구 조사

세계 각지의 해양저를 굴삭하여 지각 구조에 관한 지구과학적 연구를 수행하는 종합 국제 심해 굴삭 계획(IODP)에 적극적으로 참여, 공헌한다. 또한 2005년도에 완성한 IODP 실시시 필요한 지구 탐부 탐사선 '지큐(ちきゅう)'에 대해 2007년도 국제 운영 개시를 목표로 한 시험 운영을 계속 실시하면서,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굴삭 예정 해저의 사전 조사, 지구 탐부 탐사 센터 운영 등을 지속적으로 수행한다.

- 해양 조사선, 탐사기를 통한 심해역의 종합적 조사 연구

심해 조사 연구선인 '가이레(かいれい)'와 무인 탐사기 '하이퍼 돌핀(ハイパードルフィン)'을 이용한 심해역 조사 연구를 수행하면서, 지각 변동과 지구 내부 변동 등의 메커니즘 규명을 목표로 지구 내부 다이내믹스(dynamics)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다.

또한 구시로(釧路) 도카치 앞바다에 설치한 해저 지진 종합 관측 시스템에 의한 관측을 실시한다.

- 해양저 및 해저 굴삭공 내에서의 장기 물리 관측 연구

해저 굴삭공 내에 설치하여 지진 및 지구 전자기의 해저 장기 관측을 수행하기 위한 지구 심부 활동 모니터링을 연구 개발한다.

- 해저 지질 조사 연구

지질 정보에 관한 지적 기반 정비의 일환으로 일본 주변 해역 및 서태평양 해역의 해양 지질학적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한다.

- 해안 모니터링 조사

광역적 시점에서의 해안선 변화 상황 파악 등의 조사를 지속한다.

- 기상 및 해상 관측 연구

연안 방재, 지구과학 연구에 기여하는 기상 및 해상 관측 연구를 지속한다. 지구 전체의 환경 변동에 따라 물 순환 변화가 재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기술을 개발, 고도화하기 위해, 기준 해면 수위 관측을 지속적으로 수행한다.

2. 해양 보전 및 이용을 위한 연구

(1) 기본적 추진 방안

해양 환경을 유지하면서 해양을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 조건으로 해양과학을 발전, 심화시킴으로써 얻은 지식을 해양 보전과 이용에 도움이 되게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해양은 열 수송, 물 순환, 탄소 순환 등에서 기후 변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어, 해양의 제반 현상에 대한 이해는 지구 환경 문제 같은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하다. 또한 해역에서 발생하는 지진, 해저 화산 분화, 쓰나미와 해일, 높은 파도는 해안 지역에 막대한 재해를 가져오므로, 이러한 자연 재해를 예방하고 줄이기 위한 연구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해양생물, 광물, 에너지 등을 이용하기 위한 연구 개발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해양 보전, 해양 이용 등의 정책을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해양 연구는 국가적으

로 적극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며, 연구 체제의 내실화와 성과 및 정보의 유기적 이용을 도모하는 것이 중요하다.

(2) 실시 계획

- 지구 변동 예측을 위한 관측 연구

지구 변동 예측을 실현하기 위해, 해양 지구 연구선 ‘미라이’와 심해 조사 연구선 ‘가이레’ 등에 의한 해양 관측 연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면서, 기후 변화 관측, 물 순환 관측, 지구 온난화 관측, 해양 대순환 관측, 해양-육면-대기 간 상호작용의 종합 연구와 같은 지구 환경 관측 연구를 추진한다. 구체적으로는 열대역의 대기와 해양 관측 연구, 해양 대순환에 의한 태평양의 열, 물질 수송과 그 변화에 관련된 관측 연구, 북극 해역의 관측 연구, 해양의 화학 환경 변동 파악에 관련된 관측 연구 및 북태평양 시계열 관측 연구를 수행하면서, 해양 환경 변천의 규명에 관한 연구를 실시한다.

- 해양 대순환 연구

지구 온난화와 밀접하게 관련된 서태평양의 해수와 열의 장기적인 대순환을 파악하기 위해, 서태평양 해역 공동 조사(WESTPAC)을 지속적으로 수행한다.

기후 변화 관측, 감시 업무에 활용하기 위한 해양 데이터의 동화 기술을 확립한다. 해양 대순환 모델의 개발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면서, 이를 이용해 해양의 수십 년 후 변동 예측을 위한 연구를 계속한다.

- 해양생물 및 생태 조사 연구

연안역의 인공 갯벌 조성을 위한 생태계 관련 기초 연구 및 연안역의 생태계 변동 시스템을 규명하는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한다.

일본 아열대 해역의 해초 조장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기법에 관한 연구를 계속한다.

- 조석, 조류, 이상 수위 변동 관측 및 조사 연구

조석, 조류 등의 관측과 해석, 해일 및 쓰나미 대책 및 지구 온난화에 따른 해면 상승 등의 관측과 데이터의 즉각 이용, 나아가 쓰나미 예보 등을 발표하기 위한 쓰나미의 관측 및 해석을 계속한다. 또한 태풍 등으로 인한 해일 예측을 위한 수치 모델 운영을 계속 수행하면서, 모델의 고도화를 꾀한다. 나아가 일본 남안 연안 수위의 단주기 변동과 그 예측에 관한 연구를 계속 수행한다. 해안 사업 조사로는 조위, 조류 등의 연안 해상 조사를 계속한다.

- 지진 예지, 화산 분화 예지를 위한 해저 관측 연구

과학 기술 및 학술 심의회가 건의한 ‘지진 예지를 위한 새로운 관측 연구 계획(제 2차)의 추진에 대하여’ 및 ‘제 7차 화산 분화 예지 계획에 대하여’에 기초한 해저 관측 연구 및 해륙 경계 관측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한다.

지진 활동이나 해역 화산의 상세한 파악을 목적으로 하여, 자기부상 방식 해저 지진계에 의한 지진 조사 관측과 해저 지각 변동 관측을 계속 시행한다.

- 도난카이·난카이 지진 등 해구형 지진에 관한 조사 관측의 강화

지진 조사 연구 추진 본부가 책정한 ‘향후의 중점적 조사 관측에 대하여-활동층에서 발생하는 지진 및 해구형 지진을 대상으로 한 중점적 조사 관측, 활동층의 향후의 기반적 조사 관측의 추진 방식-’의 조사 관측 계획에 따라, 지진 발생 확률이 높은 해구형 지진을 대상으로 ①지각 활동 현황 파악의 고도화 등, 지진 발생 전후의 상황 파악, ②장기적인 지진 발생 시기, 지진 규모 예측의 정도 향상, ③강진동의 예측 정도 향상, ④쓰나미의 즉각적 예측 정도 향상을 목표로 하는 조사 연구를 추진한다. 특히 도난카이·난카이 지진 및 일본 해구와 지시마(千島) 해구 주변의 해구형 지진에 관해서는 플레이트의 형상과 강진동, 쓰나미 발생 영역을 상세하게 추정하기 위한 해저 지각 구조 조사 연구, 보다 정확한 지진 활동을 파악하기 위한 해저 지진 관측 연구 등을 수행한다.

- 해구형 거대 지진 및 쓰나미에 대응하는 해저 네트워크 시스템 구축을 위한 세계 최첨단 기술의 개발

일본 근해에서도 가정할 수 있는 해구형 거대 지진 및 쓰나미에 대해 ①정도 높은 지진 예측 모델 구축, ②지진 발생 직전에 지각 활동 현상이 발현하는 경우의 검지(檢知), ③지진

발생 직후의 지진 및 쓰나미 발생 정보의 조기 감지 등을 통한 신속하고 정확한 방재 대책에 공헌하기 위해 지진계, 쓰나미계 등 각종 관측 기기를 갖춘 해저 네트워크 시스템에 대한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이를 추정 진원역 해역에 부설(당초 계획은 일부를 제외하고 4년간 기이 반도(紀伊半島) 구마노나다(熊野灘) 앞바다에 부설 예정)한다.

- 도카이, 도난카이·난카이 지진 등 해구형 지진의 감시 체제 강화

도카이 지진의 예측 및 도난카이·난카이 지진에 대한 관측 업무에 도움이 되도록 수치 모델을 통한 지각 활동 예측 시뮬레이션, 새로운 관측 및 감시 기법의 연구와 개발을 추진한다. 나아가 도카이 지진의 추정 진원역 재검토에 대응한 감시 체제 확충 및 도난카이·난카이 지진 발생 메커니즘의 규명 등을 목적으로, 이미 설치한 도카이 앞바다 케이블 방식 해저 지진계의 서편에 긴급 지진 속보에 대응한 새로운 케이블 방식 해저 지진계를 4년 계획으로 정비한다.

- 쓰나미 및 지진 재해 축소를 위한 안구 개발

쓰나미 발생 시 원활한 피난, 신속한 응급 복구, 선박 피해 축소 등을 위해서 해안, 하천, 항만 시설의 쓰나미에 대한 재난 위험도 평가 기법과 인적, 사회적 피해의 영향을 평가하는 기법 등에 대해 연구 개발한다.

- 해황 관측 및 예보

해상 관측 같은 수로 업무 운영, 해양 기상 관측선 운항 및 관측선 측기 정비, 국제 해상 자료 통계 업무, 수온과 해류의 관측과 예보, 해양 기상 부이로봇 업무, 엘니뇨 감시 예보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한다. 해황 예보를 위한 연구 및 정보 수집을 계속한다.

- 연안 방재 기상 관측 및 조사

연안 방재 대책에 이바지하기 위한 파랑 관측 및 예보와 경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함과 함께, 관측 데이터의 DB화와 공개, 재해에 관련된 해양의 파동 현상에 관한 연구를 계속한다.

항만 정비 사업에 기여하기 위해, 네트워크로서의 연안 파랑 관측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면서 장주기파와 방향 스펙트럼의 관측 데이터를 해석한다. 연안 파랑 관측망으로 정비되고 있는 근해역의 해상계와 공사용 GPS 파랑계 부이 등을 활용한, 쓰나미 방재에 관한 연구

개발을 수행한다.

연안방재기상 관련업무로 해수관측, 예보 및 정보의 제공, 안개관측을 지속적으로 수행한다.
또한 해수 DB 정비를 계속한다.

3. 기반 기술 개발

(1) 기본 추진 방안

여러 분야의 해양 보전, 이용을 추진하는 데 있어, 이를 뒷받침할 과학기술의 존재는 필수 조건이다. 심해의 고수압, 파랑에 의한 충격압, 생물 부착, 부식, 정보 전달 장벽 등 해양이 지닌 까다로운 조건 하의 해양 조사를 수행하고 연구 개발 목적에 맞는 관측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는, 기존의 조사, 관측, 분석 기술의 정도와 계속성을 향상시키면서 여러 분야의 과학기술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개발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를 위한 연구 체제의 정비, 확충과 각종 시설, 설비의 꾸준한 정비를 추진한다.

앞으로 연구 개발을 새로이 전개하기 위해서는 독창적인 과학기술의 창출이 요구되는 바이며, 이러한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 기초 연구를 한층 더 충실하게 함과 동시에 연구 수단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기존에는 곤란하다 했던 분야의 연구에 임하는 등,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는 연구를 수행한다. 또한 해양의 개발 이용과 환경 보전에 관한 시스템적인 연구 등 학제적, 횡단적인 연구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2) 실시 계획

해양 조사에 관련된 해양 기기용 구조 부자재, 동력원, 센서와 환경 계측 기술 등 기반적, 선진적인 요소 기술에 대해 개발을 추진한다.

황천해역(荒天域)이나 빙해중 해역에서 장시간, 광범위한 해중 관측을 수행하기 위한 자율형 무인 잠수기(AUV) 연구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2003년 5월 소실된 무인 탐사기 '카이코(かいこう)'의 비클(vehicle)을 재건조하기 위한 연구 개발을 추진한다.

항만에서의 수중 작업의 효율화와 안전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수중 조사 및 시공을 하는 로봇에 대한 연구 개발을 지속한다.

심해 조사 연구선인 '가이레', 무인 탐사기 '하이퍼 돌핀', 7,000m급 무인 탐사기인 '가이코 7000', 유인 잠수 조사선 '신카이 6500', 심해저 현상의 장기 연속 관측을 위한 스테이션 등을 통해 심해 조사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한다.

또한 지구 환경 변동 예측에 기여, 거대 지진의 발생 메커니즘 규명, 지각 내 생명 탐구를 위해 건조된 지구 탐부 탐사선 '지큐'를 시험 운영하고, 굴삭 기술 향상을 도모한다.

IV. 해양 기반 정비

1. 계발 활동

(1) 기본 추진 방안

해양 정책을 적절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해양에 관련된 인재 육성이 필수적이나, 일본은 주변이 바다에 둘러싸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양에 관한 관심이 대체로 낮은 편으로 보이며, 해양에 관한 교육과 이해 증진에 있어서도 충분한 수준이라고는 할 수 없다. 지금까지도 해양국가 일본의 번영을 바라는 날로 '바다의 날'을 공휴일로 지정해 바다에 관련된 다양한 계발 활동을 펼쳐 왔지만, 지속적으로 학교 교육에서도 해양 교육 추진을 도모하면서 국가, 지방 공공단체, 학교, 기업, 자원봉사 단체 등이 협력하여 해양을 활용한 체험 활동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2) 실시 계획

'어린이들과 바다, 수산업과의 만남 추진 프로젝트'에 기초하여 어린이들이 어촌의 자연 속 놀이를 즐기면서 수산업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지역 환경 구축을 위한 노력을 추진한다.

또한 전국에 있는 청년의 집, 소년 자연의 집과 같은 교육 관련 시설에서 그 지역 특성에 맞는 체험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바다의 풍요로움이 가득한 지역에 있는 와카사(若狭)만 소년 자연의 집, 무로토(室戸) 소년 자연의 집, 에타지마(江田島) 청년의 집, 오스미(大隈) 소년 자연의 집, 오키나와 청년의 집 등의 시설에서는 생물 관찰, 커터(cutter, 역주: 구명정 등의 대형 보트) 연수, 해변 청소 활동, 갯벌 체험 같은 해양을 활용한 체험 활동을 실시한다.

나아가 대학, 대학원과 수산 계열 고등학교 등의 교육을 통해 해양 과학기술 분야와 해양에 관한 국내외 규범 등에 대해 폭넓은 지식을 지닌 인재를 육성한다.

해양 과학기술 전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해양 과학기술에 관한 문헌, 자료 정보 등을 광범위하게 수집, 관리, 제공한다.

2. 정보 유통

(1) 기본 추진 방안

해양에 관한 기초적 정보는 선박의 안전 항행, 방재, 자연 환경 보호, 수산, 관광 개발 등의 관점에서 신속하고 쉽게 입수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국내외 해양 관측 데이터를 집약해서 많은 이용자들이 집약된 데이터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체제를 정비하는 것이 해양 조사 연구를 추진하는 데 있어 빠질 수 없으며, 데이터의 품질 관리를 포함한 적절한 관리 및 제공 체제를 내실화, 강화해 간다.

(2) 실시 계획

- 측지 데이터 정비

해양 공간의 효과적 이용을 위해 해양 개발 기기 정비, 해양 데이터 고도 이용 시스템의 운영, 연안 방재 정보도, 연안 해역 지형도, 연안 해역 토지 조건도 등을 지속적으로 정비하면서, '국토 공간 데이터 기반 표준 및 정비 계획'(1999년 3월 지리 정보 시스템(GIS) 관계 성청 연합회의 결정)에 근거하여, 해역과 연안역에 관련된 GIS(지리 정보 시스템) 기반 정보의 정비 및 업데이트를 추진한다. 또한 초장기선 전파 간섭법, 전자 기준점 측량 등의 측지 측량을 지속적으로 수행한다. 천체력의 정도 유지와 향상에 필수인 성식 관측을 지속적으로 수행한다. 낙도 지역을 포함한 일본 열도의 위치를 정밀하게 측정하고 그 움직임을 파악하기 위한 측지 위성에 의한 해양 측지 기준점 측량 등과 지자기, 조위 변화를 측정하기 위한 관측을 지속한다.

해역의 지각 변동 검출을 목표로 도서 지역과 갑, 그리고 검조소에서 GPS 연속 관측을 지속적으로 수행한다.

또한 연안 해역 지형도, 연안 해역 토지 조건도를 만드는 연안 해역 기초 조사를 계속한다.

- 고도 해양 감시 시스템(ARGO 계획) 추진

세계 기상 기구(WMO), 유네스코 정부간 해양학 위원회(UNESCO/IOC) 등의 UN 기구가 지원하고 각국의 해양업무 및 연구 담당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전 세계 해양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위해 시작한 ARGO 계획에 참여하여, 최신 해양 관측 기술인 중층 플로트와 해양 단파 레이더 등에 의한 관측 및 데이터의 실시간 수집, 해석, 제공을 추진한다.

- 기후 변화에 관련한 관측 데이터 제공

이산화탄소 같은 온실가스 관측 데이터의 수집, 처리, 해석, 제공을 수행하기 위해, WMO 온실가스 세계 자료 센터를 계속 운영한다.

지구 온난화에 따른 해면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해안 승강 검지 센터를 계속 활용한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기후 변화, 지구 관측에 관한 종합적 센터라 할 수 있는 아시아 태평양 기후 센터에서는 관측 데이터의 수집과 품질 관리의 내실화, 위성 데이터를 이용한 기후 및 해양 정보의 고도화, 기후 예보 정보의 국내외 관련 기관으로 제공 등을 수행하면서, 여기에 필요한 국제회의 및 기술 향상과 정보 교환을 위한 전문가 회의 등을 진행한다.

- 해양 정보 및 데이터의 수집 제공

해양 정보 및 데이터의 수집, 처리, 해석, 제공을 효율화하기 위해 일본 해양 데이터 센터를 계속 운영하고, 해양 데이터 고도 이용 시스템을 유지, 운영한다.

해양 관측 부이 시스템 등으로 얻어진 방대한 양의 관측 데이터를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한 각종 DB를 정비한다.

해양 지구과학에 관한 관측 데이터, 자료 등을 포함한 전자화 정보의 수집과 축적, 발신 기지로서 국제 해양 환경 정보 센터를 운영하고, 지구 환경 변동 연구의 촉진과 주변 정보 기술 산업 및 과학 교육 현장에 정보 제공, 보급 및 촉진을 추진한다.

UNESCO/IOC가 해양 관측 자료와 정보의 수집, 해석, 배포를 목적으로 실시한 전 지구 해양 관측 시스템(GOOS) 등, 전 세계 주요 해역의 해양 관측과 공동 조사 연구 등에 참여하고 데이터 수집 등을 지속한다.

또한 지구 관측 회의에서 채택된 전 지구 관측 시스템(GEOSS) 10년 실시 계획을 바탕으로 한 GEOSS 구축과 통합 지구 관측 전략(IGOS)의 파트너십의 해양 테마로, 다양한 관측 시스템을 통합 발전시키기 위해 여러 기관 간에 필요한 조정을 추진 중이다. 인공위성으로

얻어진 해양 데이터(수온, 물 색깔 등)를 수집, 정보화, 제공하는 시스템의 기술 개발을 지속한다. 지구 및 해양 관측 데이터의 전송, 처리, 해석에 관한 연구를 계속한다.

또한 원양 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의 통신 개선을 위한 해양 통신 기술에 관한 조사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한다.

3. 국제 문제

(1) 기본 추진 방안

해양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제 공헌과 국익 확보 간에 균형을 꾀하면서, 국제적 협력의 틀을 정비하고 국제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개발도상국에 대해 지원하는 등의 국제 협력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구체적으로는 해양 조사, 해적 대책을 포함한 항행 안전 확보, 해양 환경 보전, 생물자원의 유지, 회복과 최적의 이용을 위해 양자 간 또는 국제사회 전체의 국제적 협력이 없어서는 안 된다.

해양은 광대하고 그 실태를 규명하는 것은 한 나라만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며, 또한 해양에 관한 과학적 지식, 데이터와 해양 개발에 관한 기술은 각국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해야 할 것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해양의 조사 연구와 기술 개발은 국제 협력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최근 사회 경제 활동이 확대되고 과학기술이 진전된 결과, 해양에 대한 조사 연구와 기술 개발의 대부분은 대규모화하고 있어 국제 협력의 필요성은 커지고 있다.

따라서 일본으로서는 양자 간 또는 국제기구를 통한 국제 협력을 더욱 더 추진하고 다양한 국제 협력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의 노력을 한다.

특히 국제 공헌의 관점에서 지구 전체의 과제인 지구 온난화 같은 지구 환경 문제의 과학적 규명을 위한 해양 관측과 조사 연구, 그리고 해양 오염 방지 대책 등 해양 환경 보전 시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인 역할을 한다. 또한 해양과 해저 하의 실태 규명을 통한 과학적 지식의 수집과 축적은 해양은 물론 지구 자체를 이해하는 데에도 중요하며, 향후 관련 연구를 더욱 더 추진한다. 나아가 해양 조사 연구의 국제적 수준 향상에 적극적으로 공헌하기 위해서 선진국들과 함께 출선하여 국제 프로젝트를 기획, 추진하면서, 국제적으로 매력적인 시설 설비를 꾸준히 정비하는 데 노력하고 이를 해외 연구자들과 공동으로 이용함으로써 적극적인 역할을 해나간다.

나아가 일본은 개발도상국의 이와 같은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자금 협력, 기술 협력, 개발

조사 등을 통한 정부 개발 원조(ODA)를 한층 더 효과적,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한다.

해양 개발에는 다국 간 국익 조정이 중요하며, 여러 국가의 협력 없이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도 있다. 따라서 2차 대전 후부터 해양의 개발 이용에 관련한 국제적 규범 제정이 추진되고 있으며, 특히 지금으로부터 30년 정도 전부터 과학기술의 진전을 배경으로 새로운 바다 이용 방법, 조건에 적합한 국제법 질서 확립이 회구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가운데 각국의 협력 하에 1973년부터 개최된 제 3차 UN 해양법 회의의 결과, UN 해양법 조약이 1982년에 채택되었고 이 조약은 1994년 11월 발효되었다. 또한 UN 해양법 조약 제 11부의 실시에 관한 협정은 1994년 7월에 채택되어 1996년 7월에 발효되었다.

동 조약 및 실시 협정은 영해 및 접속 수역, 배타적 경제 수역, 대륙붕, 공해, 심해저, 해양 환경의 보호 및 보전, 해양의 과학적 조사, 해양 기술의 발전 및 이전, 분쟁의 해결 등 해양에 관한 법적 질서에 대해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1996년에 일본은 UN 해양법 조약을 체결하면서 이에 따른 국내법 정비를 시행하고, 세계적으로도 유수의 면적을 지닌 배타적 경제 수역을 보유하게 되었다.

또한 해양 환경 보전에 관련된 생물 다양성 조약, 기후 변화 협약 등의 새로운 국제적 틀을 구축하고, 국제해사기구(IMO)를 통해 해상 안전, 해양 오염 방지 등의 제반 문제에 대처하며, 그 일환으로 폐기물의 해양 투기 처리에 대한 규제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런던 조약 의정서의 조기 발효를 위한 노력 등이 펼쳐지고 있다.

이러한 해양의 법적 질서에 관한 국제적 규범에 따른 일본의 권리 및 의무를 인식하고, 해양 정책에 반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2) 실시 계획

미-일, 일-불, 일-독 등 양국 간 과학기술 협력 협정에 따른 국제 협력의 일환으로, 미국 해양 대기 관리처, 미국 우즈홀 해양 연구소, 프랑스 국립 해양 개발 연구소, 독일 알프레드 베게너 극지 해양 연구소 등과의 해양 과학기술 분야 연구 협력을 지속적으로 수행한다. 이 밖에도 다국 간 국제 협력 프로젝트로서, 미국과 일본의 주도로 실시되는 통합 국제 심해 굴삭 계획(IODP), 기후변화 규명에 기여하기 위해 전 세계 해양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ARGO 계획을 추진한다. IODP에 대해서는 분담금 각출을 계속 시행한다.

서태평양 연안 국가들의 해양학에 관한 과학적 지식의 향상과 인재 육성에 이바지하기 위해 유네스코 정부간 해양학 위원회(UNESCO/IOC)가 수행하는 서태평양 해역 공동 조사

(WESTPAC)에 신탁 기금을 각출하고, 해양 데이터 관리 연수, 해양 오염에 관한 워크숍을 실시하는 등 UNESCO/IOC의 각종 사업에 참여하고 세계 주요 해역의 공동 연구를 지속하면서, 전 지구 해양 관측 시스템(GOOS) 구축에도 계속 참여한다. 나아가 중국, 한국 및 러시아와 협력하여 동북아시아 지역 해양 관측 시스템(NEAR-GOOS)을 계속 실시한다. 또한 호주, 미국, 프랑스, 영국 등과 협력하여 GOOS의 각종 사업의 하나인 전 지구 해양 데이터 동화 실험(GODAE) 계획을 실시한다.

동아시아 해양 환경 관리에 대해, 동아시아 12개국이 참여하는 동아시아 해역의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연계 강화를 목적으로 한 동아시아 환경 해역 관리 파트너십(PEMSEA)에 참여하고, 동아시아 해역의 지속 가능한 개발 전략(SES-SEA)을 실시하기 위한 노력을 추진한다.

해양 환경 보전의 중요성에 따라, 관련 국가들의 협조를 통한 행동을 추진하기 위해 일본, 중국, 한국, 러시아의 4개국이 채택한 '북서태평양 보전 실천 계획'(NOWPAP)에 근거를 둔, 특수 모니터링 및 연안 환경 평가에 관한 활동을 수행하는 지역 활동 센터(RAC)의 활동 등의 사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면서, NOWPAP 사무국인 지역 조정부(RCU)를 중심으로 한 협력 체제 구축을 추진한다.

제 2부 예산

2006년도 해양 과학기술 관련 경비 예산안 개요

(단위: 백만 엔)

성청	2005년도 예산액	2006년도 예산액	전년대비 증감△	비고
총무성	《38,108내수》	《36,964내수》	-	지구환경 리모트 센싱 기술 연구 개발 《정보통신 연구기구 운영비 교부금 내수》
문부과학성	43,435	42,795	△640 △1.5%	심해지구 드릴링 계획 추진 대륙붕 획정조사, 지구환경 측정연구(ARGO계획 포함), 지구환경예측연구, 지구 시물 레이터계획 추진 지구 내부 다이내믹스 연구, 해양 및 극한환경 생물 연구, 지진·쓰나미 관측·감시 시스템 등
농림수산성	5,825 [15,228 내수] 《15,412내수》	6,058 [11,823 내수] 《17,397내수》	233 4.0%	수산자원 조사·개발·관리 등, 어구·어법기술개발 해양환 경 보전대책 해양 공간 이용 조사, 해양자원이용 기술 개발 [강한 수산업 만들기 교부금 내수] 《수산종합연구센터 운영비 교부금 내수》
경제산업성	30,330 <3,965> <67,432>	32,896 <3,961> <66,437>	2,566 8.5%	심해저 광물자원 개발 조사, 국내 석유 천연가스 기초조 사, 3차원 물리 탐사선 건조, 대수심역의 석유자원 기초 조사, 메탄 하이드레이트 개발 촉진사업 등 <석유·천연가스·금속광물자원기구, 산업기술 종합연구 소에 관한 것은 운영비 교부금의 일부>
국토교통성	21,643	18,890	△2,752 △12.7%	조사 및 연구에 관한 경비(해양·연안역에 관한 조사와 연 구, 선박 오염 대책 추진 차세대 해상교통 시스템 개발 해양 및 연안역 방재대책 추진), 사업 조사비(해안사업 조 사, 항만사업 조사 등, 하수도사업조사, 간사이 국제 공항 정비사업 조사), 해양 및 연안역의 정보 정비에 필요한 경 비(해양 및 연안역 기초조사, 기상 및 기후 관측, 해양환경 조사, 해양 및 연안역의 방재와 안전정보 정비) 등
환경성	1,236	933	△303 △24.5%	지구환경보전대책, 수질오탁방지대책, 자연환경보전대책 등
합계	102,469	101,572	△897 △0.9%	

2006년도 해양 개발 사업 관계 경비 예산안 개요

(단위: 백만 원)

성청	2005년도 예산액	2006년도 예산액	전년대비 증감△	비고
농림수산성	184,352 [15,228 내수]	172,978 [11,823 내수]	△11,374 △6.2%	수산 관련 공공사업, 재배어업 진흥, 연어·송어자원의 관리추진, 어업구조 개선과 어촌 활성화, 해안보전에 관한 사업 [강한 수산업 만들기 교부금 내수]
경제산업성	[財投]	[財投]	-	대륙붕 석유·가연성 천연가스 개발용자, 해양개발기기 건조 용자[모두 財投]
국토교통성	485,401	531,622	46,220 9.5%	방치된 좌초선 대책 추진, 해안·항만 정비관련 사업, 해상공항 정비관련 사업, 연안 도로 및 공원 정비 관련 사업
합계	669,753	704,600	34,847 5.2%	

해양 개발 관계 성청 연락회의 설치에 대하여

1. 해양개발 추진에 관한 시책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 상호 간 사무의 긴밀한 연락을 도모하고 종합적인 시책 추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내각에 해양 개발 관계 성청 연락회의(이하 '연락회의')를 설치한다.

2. 연락회의의 구성은 다음과 같이 한다. 단,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성원을 추가할 수 있다.

의 장 내각관방 부장관(사무)

부의장 내각관방 부장관보

문부과학성 연구개발국장

구성원 총무성 정보통신정책국장

외무성 경제국장

농림수산성 수산청 차장

경제산업성 자원에너지청 차장

국토교통성 종합정책국장

환경성 종합환경정책국장

3. 연락회의에 간사를 둔다. 간사는 관계 행정기관 직원으로 의장이 지명하는 관직에 있는 자로 한다.

4. 연락회의의 사무는 관계 성청의 협력을 얻어 내각관방 및 문부과학성 연구개발국에서 처리한다.

5. 전 각호에 정한 사항 외에 연락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